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6

#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5

#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범례>

- 1)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중에서 주제에 따라 장절을 구분하여 탈초, 역주, 해설을 하였다. 이 고문서 '선집'은 1,000여 건의 영월신씨 고문서에서 주제에 관련된 자료만을 발췌하여 역주하였다.
- 2) 각 자료는 장 별로 각 자료의 제목, 해설, 역주, 원문 정서본 순으로 수록하였다.
  - 2-1) 역주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수준의 것으로 최소한 줄였다.
  - 2-2) 원문 정서본은 간자間字나 대두擡頭, 개행改行을 없애고,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반 칸을 떼어 구두를 대신하고 이두에는 밑줄을 그어줌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2-3) 결락된 부분은 '□'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3) 본 선집은 영월신씨 고문서 자료를 제1장 재산의 소유와 상속, 제2장 노비와 토지의 거래와 소송, 제3장 노비, 전답, 환곡, 잡역 관련 소송, 제4장 산송 관련 소송, 제5장 가계와 동족결합 등 5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4) 원문 이미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부터 제공 받아 수록하였다.
- 5) 제1·2장은 박경, 제3·4장은 김현영, 제5장은 박한남이 분담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2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집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 종 범



教旨

生員辛應望文科乙科第七人及  
第出身者

天啓四年十月 日

1624년 생원生員 신응망申應望 흥패紅牌

天啓四年十一月辛日子權知承文院副正字從仕郎應望處  
別給明文

右明文事改汝亦生纔五歲處失庭訓艱難鞠育得至今日

登第悲喜交極今當慶席不可不依例別給是予等以用澤

陽居嫫吳只二所生汝里金伊三所生嫫吳今四所生汝李卜嫫卧比西非一也生嫫

肉伊二也生嫫肉了目果及寒字番十五斗茲為五斗下庫君藏字番二十五

斗茲為五斗下庫索素字四斗茲為十九斗末庫永別給名去予後望

并以鎮長使用名予之事

財主 母李



通訓大夫給雲光府守鄭 亨二

通訓大夫外知提督官 韓 西

通訓大夫外知提督官 吳 高

年執務人進士年惟一 啓

1624년 신장길申長吉 처妻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捌年己十二月初九日爾後室子女中令終明文  
 右明文奉段甲午年令家翁身死未成文記似于  
 節田香叔輝乙家翁承重榮若于抽出後平均分終  
 為手矣先世承重田民及宗基段不當任意擅改故  
 全不奉論為稱忌祭及忌祭則依例輪回奉行  
 為跡新叔輝則昏嫁之日初不指忌出故令不分秋  
 為跡逃叔輝段不知去交乙仍于姑勿分終為手  
 後日推母之後平均執事

一承重榮輝春陽一兩生收春生輝上秋四兩生輝上冬  
 拜實字實得春兩兩拜拜字落只翻拜為字田冬手落  
 只印

一子祖震於輝上兩生收夏男三兩生輝上伊四兩生收吉伊  
 五兩生輝上禮叔論秋良甚并直三兩生輝上秋四兩生輝上  
 選輝上秋二兩生輝控上輝上令一兩生收次明三兩生輝  
 同光介四兩生輝同德以叔夏男一兩生輝老進輝九介一兩生  
 輝春陽春陽三兩生收俊一四兩生輝五以五兩生輝春吉  
 田香叔大三秋輝此字實得春兩兩拜拜字落只翻拜為字  
 買得春位斗落只取長五字香拾斗落只地地味字  
 字香胡斗落只留字香位斗落只內下是貳斗位升  
 落只霜字陽算春位斗落只大三秋兩字香陸  
 升落只大三秋玉田冬斗落只同拜玉字田前斗落只  
 字田武斗落只霜字田正斗落只兩字田下是止斗位  
 升落只印

一女宋文淵於論秋兩生輝控上五兩生輝上令輝控  
 上武兩生輝上選二兩生輝白下是貳兩生收白了全三  
 兩生輝選陽四兩生輝老即五兩輝加即輝上秋一兩  
 生輝控陽三兩輝控仁輝上令實兩生收次善輝春陽三  
 兩輝俊介以夏男二兩生輝今生輝九介貳兩輝上秋  
 輝控良一兩生輝上善田香叔尤入理實字前拾斗落只  
 全字蟹當拾斗落只去堂洞當拾斗落只南拾斗位  
 香滿斗落只地大坪向字香位斗落只內上是貳斗位  
 升落只大三秋兩字田正斗落只霜字田冬斗落只兩  
 字田上至是斗位分落只印  
 一進叔輝收叔鶴只良妻可庫海棠豆今豆山尼朴只輝  
 字田非兩產內伊內了月書

財主故學令辛應望妻丁  
 證知學字辛 胸印  
 知學字五子燈學姐券  
 羊知學再世孫辛燈券

1669년 신응망辛應望 처妻 정씨丁氏 분급문기分給文記



曹信漢  
 右謹陳所志矣段矣此兄生時郡居宋之亨婢良乙  
 昆作... 王長成之後李若金為名人家夫居  
 生之時五玉月乙丙子年分矣妹夫張萬保假名自  
 贖之後若金之身順日名遂退成文為白有如字同若金  
 無後身死乙仍于若金上典辛生負亦無後奴子已物是如  
 五玉自贖斜文及入接家舍所付文書稱以記上沒數奪去  
 為有知可到今累年之後始為出給於順日處而其處故賣  
 捧價以納云云為白臥乎此雅法曲所無之業因於辛生負之  
 侵不得已錢文三上兩條恰後同文記等物還推成文為白有  
 去乎此後辛生負子孫中如有難說之事是白置焉考及結  
 連文記牌子等詳細 下整教後論理立旨成恰為白也為  
 行下向教是事  
 合盟主 處分  
 丙戌二月日  
 看止...

1646년 조신한曹信漢 소지所志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앞면]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뒷면]

康熙五十六年五月 日禮書日立案

石立業為繼後事曹 啓目節呈故學生辛鼎受無後其妻柳氏亦以其家翁同姓八寸先萬挺茅  
二子龍伯立後為良法呈狀為白有乞取考向邊戶則入籍的實呈白在保柳氏亦志內家翁嫡妻  
俱無子身死家翁同姓八寸先萬挺茅二子龍伯欲為繼後向家同議呈狀依他立後事所志幼學辛萬挺  
所志內同姓八寸弟鼎受嫡妻俱無子身死家翁同姓八寸先萬挺茅二子龍伯欲為繼後向家同議呈狀依他立後事所志柳  
氏緘辭內家翁嫡妻俱無子身死家翁同姓八寸先萬挺茅二子龍伯欲為繼後向家同議呈狀的實辛  
萬挺條目內同姓八寸弟鼎受嫡妻俱無子身死矣茅二子龍伯欲為繼後向家同議呈狀的實辛鼎受辛  
萬挺茅門長幼學辛萬和條目內辛鼎受嫡妻俱無子身死其妻柳氏亦其家翁同姓八寸先萬挺茅  
二子龍伯欲為繼後向家同議呈狀的實事所志及緘辭條目據相考則大典立後條嫡妻俱無子者告  
官立同宗支子為後註向家父同命立之父歿則母告官事載錄向前辛龍伯之辛鼎受繼後何如康熙  
五十六年五月十七日右副承旨李聖澤汝知 啓依允教事是去有等以合行立案者

判書

參判

參議

正郎

佐郎

正郎

佐郎

正郎

佐郎

壬子年二月十日  
 大記戶部真同宗辛恒惺移心  
 伐私事相該移打呈如呈詳云  
 身為矣對平之境操心事禮居  
 在<sup>一</sup>里<sup>一</sup>成<sup>一</sup>居<sup>一</sup>生<sup>一</sup>多<sup>一</sup>他<sup>一</sup>能<sup>一</sup>去<sup>一</sup>曰<sup>一</sup>宗  
 之<sup>一</sup>批<sup>一</sup>一<sup>一</sup>曰<sup>一</sup>少<sup>一</sup>報<sup>一</sup>庭<sup>一</sup>事<sup>一</sup>係<sup>一</sup>風  
 化<sup>一</sup>故<sup>一</sup>亦<sup>一</sup>心<sup>一</sup>相<sup>一</sup>和<sup>一</sup>後<sup>一</sup>分<sup>一</sup>更<sup>一</sup>向<sup>一</sup>呈<sup>一</sup>詳  
 呈<sup>一</sup>美<sup>一</sup>一<sup>一</sup>有<sup>一</sup>更<sup>一</sup>詳<sup>一</sup>一<sup>一</sup>呈<sup>一</sup>向<sup>一</sup>有<sup>一</sup>及<sup>一</sup>左<sup>一</sup>  
 詳<sup>一</sup>以<sup>一</sup>及<sup>一</sup>他<sup>一</sup>宗<sup>一</sup>之<sup>一</sup>宗<sup>一</sup>  
 謹<sup>一</sup>此<sup>一</sup>辛<sup>一</sup>斗<sup>一</sup>宗<sup>一</sup>而  
 謹<sup>一</sup>人<sup>一</sup>風<sup>一</sup>居<sup>一</sup>李<sup>一</sup>一<sup>一</sup>太  
 檢<sup>一</sup>統<sup>一</sup>及<sup>一</sup>檢<sup>一</sup>院<sup>一</sup>朴<sup>一</sup>叔<sup>一</sup>一<sup>一</sup>而

1842년 기주記主 신두업辛斗業 수기手記

발간사 .....	3
화보 .....	5
<b>제1장 재산의 소유와 상속</b> .....	15
1-1. 재산 상속과 증여 .....	23
1-2. 시장柴場과 가사家솨의 매매 .....	77
1-3. 시장柴場과 송추松楸의 관리 운영 .....	121
<b>제2장 노비와 토지의 거래</b> .....	131
2-1. 노비 거래 .....	139
2-2. 토지 거래 .....	153
2-3. 채 무 .....	229
<b>제3장 노비, 전답, 환곡, 잡역 관련 소송</b> .....	233
<b>제4장 산송 관련 문서</b> .....	295
<b>제5장 가계와 동족결합</b> .....	427
5-1. 고신告身류 .....	439
5-2. 통문通文류 .....	455
5-3. 예조 입안禮曹立案 등 .....	467
5-4. 호구 자료 .....	473
<b>총목차</b> .....	631



天啓四年

別給明文

右明文事

登第悲士

陽居探莫

丙子伊二

斗在云六下庫累未字田十斗在云十九上三束庫永別給云云于後望  
并似鎮長使用存于事

財主 母李



字日子權知承文院副正字從仕郎應望處

纔五歲遽失庭訓艱難鞠育得至今日

不常慶席不可不依例別給是于等以用澤

全伊三所生探莫今四所生收李卜探卧比西非一所生探

及寒字番十五斗在云五十七下庫永威字番二十五

通訓大夫約靈光郎守鄭

通訓大夫行老何提督官 韓

通訓大夫行老何提督官 吳

年執族人道吉宗惟一

제1장

재산의 소유와 상속





## 해 제

## 1) 분재기로 본 신씨가의 재산상속과 증여

영광 입석리의 영월신씨 가계에는 재산상속과 증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분재기가 26점 전래하고 있다. 이 중 화회문기 및 분급문기 6점은 한 대에서 다음 대로 재산이 어떻게 전계傳繼되는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 20점 가까운 별급문기를 통해 어떤 사유로 재산이 증여되며, 누가 재산권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발급 및 수취자에 대한 집중도가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다. 그 외에 분재기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내용상 과거에 빌려졌던 물자나 자금에 대한 상환償還을 내용으로 하는 문기도 있고, 상속받은 재산을 반납 또는 납상納止하는 문기도 있다. 또한 상속 양상 뿐 아니라 상속 및 증여의 원인과 결과가 분재기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므로 가계 전반의 운영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재산의 소유와 상속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의 규모와 운영 양상이 드러나는 6점의 분재기는 1608년(광해군1)부터 1709년(숙종35) 사이에 작성되었다. 작성 주체 및 그와 관련된 가계를 간략히 장자長子 계열로 연결하면 아래와 같으며, 신장길부터 신시대 신시갑까지 6대에 걸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辛長吉 —— 應望 —— 翊震 —— 慶隆 —— 鼎和 —— 始泰(無後)  
(1543~1598) 鼎受 —— 始甲(1697~1743)

이 가계가 전라도 영광에 입향한 것은 15세기말~16세기초로 알려져 있다.<sup>1</sup> 입향 후 약 1세기 동안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문기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 후 별급문기가 20여년 더 이어질 뿐 분재기는 더 이상 없으나 노비 전답 시장柴場 가사家畝 매매문기가 19세기말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의 운용은 꽤 활발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상속과 증여 양상을 본 장의 1-1-1)부터 1-1-6)까지 6점의 문기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길의 처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준 문기가 38년의

1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27-영광 영월신씨편(1)』, 해제,

간격을 두고 1608년(선조41)과 1646년(인조24)에 각각 작성되었다. 모두 신장길의 계배繼配인 광주이씨 부인이 재주財主로서 재산을 분할한 것이다. 신장길은 능성구씨 부인을 초배初配로 맞이하였으나 구씨 부인이 1587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광주이씨 부인을 맞이하였다. 그 후 신장길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재주財主의 역할을 광주이씨 부인이 하게 된 것이다. 분재기 1-1-1)은 문기 첫 행에 쓰여 있듯이 전후실 자식 5남매에게 재산을 분할한 문기이다. 위로 두 딸이 전실 소생이고, 그 아래 두 딸과 아들 신용망이 이씨 소생이다. 서문에는 이들 5남매에게 균분한다는 원칙이 기술되어 있다. 또 승중조에도 전실 부인 구씨의 승중 몫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그로부터 38년 후에는 광주이씨 부인이 자신의 소생 3남매만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 그것이 분재기 1-1-2)이며 그 서문을 통해 분재 대상이 자신 쪽에서 전래된 재산임을 밝혔다. 즉 17세기 전반까지 이 집안은 재산을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에서 전래된 각각을 별도의 이력으로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분할해 준 광주이씨 부인 쪽으로 전래한 재산은 5남매 전부에게 상속한 남편 쪽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신장길의 자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재산 형성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신장길의 장남인 신용망과 관련된 2종의 분재기이다. 1-1-3)은 신용망이 처가인 부안김씨 집안에서 재산을 상속한 화회문기이다. 상속인은 신용망 처를 포함하여 2남 4녀의 6남매이나, 화회문기를 작성한 1650년(효종1)에 신용망의 처 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김씨 집안에서는 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만사위 신용망에게 균분상속을 하였고<sup>2</sup>, 몫 외에 등과별급까지 추가로 주었다. 이것은 그가 1624년(인조2)에 문과에 급제한 데에 따른 보상이었다. 하지만 6남매 중 5남매가 분재기 맨 뒤에 서명을 한 것과 달리 신용망은 이름은 쓰여 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참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후 신용망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그의 계배繼配인 영광정씨靈光丁氏가 1669년(현종10)에 재산을 분급해 주었다. 문기 1-1-4)가 그것이다. 이때에도 전후실 자식에게 재산을 분급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전후실 소생을 합해도 상속인은 2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시 유일한 아들 익진翊震(1624~1649)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17세기 후반에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많은 가문이 균분상속에 균열을 보인 시기이지만, 이 집안은 분재기 서문에서 분명히 균분을 명시했다. 다만 선세 승중조와 종기宗基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상속분과 승중조를 엄격히 구분하기

2 「경국대전」에도 자녀의 존몰存沒을 불문하고 균분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전, 사천조)

시작했고, 승중과 관련된 재산들을 종가에 계승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셋째, 1-1-5와 1-1-6은 위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용망으로부터 3대를 건너 뚫은 증손 세대의 분재이지만, 신용망 대의 분재기로부터 40년 만에 작성되어 단순히 대수代數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망의 아들 익진은 1649년에 사망했는데, 다행히 경릉慶隆(1646~1673)이 태어나 4세가 될 무렵이었다. 하지만 익진이 20대에 사망한 데 이어 그 아들 경릉 역시 20대에 세상을 떠났다. 이어 경릉의 맏아들 정화鼎和(1668~1698)도 서른을 갓 넘겨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 정수鼎受(1671~1700)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1-1-5와 1-1-6 두 분재기에서 '가화家禍'가 자주 언급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 정화에게는 외아들 시태始泰가 있었으나 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계는 정수의 아들 시갑始甲(1697~1743)이 이어 그 자손에게 계승되었다.

분재기 1-1-5는 1709년(숙종35)에 작성되었다. 그때는 맏아들 정화, 둘째 아들 정수, 그리고 정화의 아들 시태 모두 사망한 때였다. 그래서 정수의 처 서산유씨瑞山柳氏와 시태의 처 장택고씨長澤高氏가 신경룡 부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것이다. 3촌 숙모와 장질부長姪婦가 종가의 재산을 합의하에 상속하고 화회문기를 2부 작성하여 하나씩 나눠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 작성된 2부의 화회문기가 바로 1-1-5와 1-1-6인 것이다. 따라서 두 분재기는 같은 날 작성된 복본複本 분재기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한 노비를 양측이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방매하였다. 노비 방매에도 불구하고 화회문기를 구문기로 내어 줄 수 없으므로 방매할 때마다 분재기 뒷면에 배탈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두 분재기는 앞면은 대동소이하나 뒷면에 쓰인 배탈사급입안이 서로 다른 문서라 할 수 있다. 1-1-5에는 11건의 배탈사급입안이, 1-1-6에는 16건의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1709년 이후 이 집안의 재산상속 양상을 보여주는 분재기는 더 이상 전래하지 않는다. 대신 별급문기가 다채롭게 남아 있으므로 재산 운영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점 가까이 별급문기가 남아있으나 별급을 시행한 주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신장길처 이씨, 신경룡 처 박씨, 신정수 처 유씨가 시행한 별급문기가 각각 3점, 6점, 5점으로 이들에게 별급이 집중되고 있다. 신장길이 사망한 후 계배 이씨가 재산권을 행사했고, 그 증손자인 신경룡이 20대에 세상을 떠났고 그 장남 신정화마저 요절하여 신경룡처와 차남인 신정수의 처가 재산을 분할한 사연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래서 17세기 이후 가계경영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장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분위기에다 불구하고 신씨 집안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재주로 나선 각종 분재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 2) 시장柴場과 송추松楸, 가사家畬의 관리 및 경영

영광 입석리 영월신씨 집안의 재산 소유 및 경영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장柴場과 가사의 관리에 있다.<sup>3</sup> 40여점의 시장 매매명문과 10여점의 가사 매매명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시장 또는 가사 매매명문은 다른 가문에도 흔히 나오는 문기이지만 입석리 신씨의 경우 노비나 토지 매매명문과 비교하여 그 전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과 가사 매매명문은 대부분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이 시기 신씨가 시장과 가사 경영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집안에 전래하는 시장 매매명문은 구문기는 몇 점 없고 대부분 신씨 집안에서 매득할 당시에 작성된 것들이다. 시장 매매명문이 40여점이나 있지만 거래된 지역은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종가의 소재지이면서 신씨 집안의 오랜 세거지인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또는 입석촌立石村으로 지칭되는 지역의 매매가 가장 많다. 그 외에 같은 면內의 도동촌陶洞村도 거래 횟수가 매우 높으며 주록동走綠洞 등의 시장도 매매되었다. 같은 군內의 다른 면으로는 무장면畝長面 장등촌長燈村 소재 시장이 자주 매매되었고, 하진량면下陳良面 양동촌陽洞村 등의 시장도 몇 차례나 매득하였다. 이는 신씨 집안에서 세거지 및 선산 주변 시장을 매득하고, 이미 소유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로 파악된다. 그 밖에 무장현茂長縣 대제면大梯面 소재 시장에 대한 매매명문도 몇 점 있으나, 대제면이 영광군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신씨 종가 소재지인 입석리와 연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역시 세거지 주변 시장의 확보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매매명문 중에는 같은 신씨 일가로부터 매득한 사례는 물론이고, 문계門契 등과 거래한 문서도 있다. 모두 선산 주변 금양처禁養處를 타인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후손에게 전수하려는 노력에서 거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장 대제면의 경우 시장 뿐만 아니라 가사家畬 및 가대家垜를 매득한 명문까지 전래하고 있다. 가사 매매명문은 1816년(순조16)부터 1899년까지의 11점의 문서가 전래하고 있는데, 가사와 가대가 함께 거래되는 사례는 매우 일반적이며 가사와 시장을 함께 거래한 경우도 눈에 띈다. 이는 시장을 거주지 주변에 확보하는 전략과 유관하며 꾸준히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영월신씨가 경우 시장이나 가사는 세거 및 선산수호, 가계구성원의 결집과 관련하여

3 조선시대 양반가의 재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비와 토지이나, 다음 장에서 노비와 토지매매에 대한 자료를 망라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타 집안과는 달리 신씨의 재산 중 특징적인 항목인 시장柴場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영광 군내의 도내면이나 마촌면馬村面에 있는 가사와 가대가 신씨가에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 시기는 19세기로, 노비와 토지에 이어 새로운 경제적 기반으로 그 시기에 부상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장의 소유와 경영에 힘을 쏟았던 신씨 집안이므로 송추松楸 분쟁과 관련된 각종 소지류 역시 전래하고 있다. 여기에 몇 점의 소지도 수록하였는데 모두 선산의 송추를 함부로 작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소지 또는 소지의 초본들이다. 특히 이 집안에는 송추 분쟁 중 동부의 풍헌 박정록朴正祿 등과 벌인 소송 관련 문기들이 전래하고 있다. 영월신씨가의 선산으로부터 송추를 함부로 베어다가 배를 조성하기 위한 재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요청한 소지가 1843년에 작성되었고, 그 진행과정에 작성된 각종 문서가 남아있다. 그 외에 마촌면馬村面 소재 7대조모의 분묘墳墓 주변 송추 작별과 관련한 소지 등 송추를 지키기 위해 작성했던 문서들이 있다. 이런 문서들은 신씨 일가가 19세기에 시장을 꾸준히 매득하면서 확장해 나갔고, 이와 관련하여 조상의 분묘와 분묘 주변의 금양처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 1-1. 재산 상속과 증여

### 1-1-1) 1608년 신장길辛長吉 처妻 이씨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해설】 1608년에 신장길 처 이씨가 자식 1남4녀에게 재산을 분할해 준 분급문기이다. 5남매에는 전실 구씨부인 소생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구씨 부인의 봉사조도 따로 책정되어 있다. 자녀를 출생순으로 배열하였기 때문에 아들 신용망은 맨 뒤에 상속분이 수록되었다. 승중조를 전모, 계모, 전실 부인과 조상 승중 등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뒷면에는 이 분재기에 수록된 재산 중 일부가 매매되어 새로운 취득자에게 사급입인이 발급되었으나, 매매한 재산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만력 36년(1608, 선조41) 무신 3월 초7일 전후실前後室 5남매에게 허여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남편이 무술년(1598, 선조31)에 세상을 떠나고 문기를 작성하지 못했으므로 전답 노비를 균일하게 나눠주는 일이다.

일, 만사위 이극별李克穰의 몫

노 숙년叔年의 2소생 비 수대守代(43세, 병인생), 비 은정銀丁의 1소생 노 순림順林(33세, 을해생), 비 사월四月의 1소생 노 사동四同(49세, 경신생), 노 막정莫丁의 1소생 노 복지福只(44세, 을축생), 노 검금檢金의 1소생 노 막개莫介(51세, 무오생), 역수億守<sup>1</sup> 전田 6두 락지 내 동변東邊 1두 5승, 중석仲石 답畝 16두, 장하場下 답 상변 8두. 끝.

일, 차次 사위 이위李偉 몫

비 막개莫介의 2소생 비 설룡개雪弄介(14세, 을미생), 노 태근太斤의 3소생 비 태인서비太仁西非(14세, 을미생), 노 충금이充金伊 1소생 노 돌문이툼文伊(32세, 정축생), 노 복지福只의 1소생 노 봉선奉生(10세, 기축생), 노 귀근貴斤의 3소생 비 귀인개貴仁介(12세, 정유생), 역수 전 6두 락지 내 차변次邊 1두 5승, 강구수江丘水 답 7두, 영평택永平宅 답 7두, 원당元堂 장년張年 답 9두. 끝.

일, 차次 사위 정제원丁濟元 몫

노 태근太斤의 2소생 노 태인복太仁福(19세, 경인생), 노 독정禿丁의 1소생 노 정생丁生(8세, 신축생), 비 막개莫介의 1소생 비 녹옥綠玉(20세, 기축생), [비 신덕申德의 1소생 노 난이難伊(1세, 무신생)]<sup>2</sup>, 노 귀손貴孫의 4소생 노 귀근貴斤(65세, 계묘생), 역수億守 전 6

1 역수億守 : 작인作人 이름인지 양안에 등재된 양명量名인지 알 수 없다. 이하에도 전답 앞에 이름이 쓰인 경우는 모두 같은 형식이다.

2 [ ] : 원문에 효주爻周를 위한 표시처럼 타원형으로 글자를 둘러싸고 표시해 둔 부분이다. 이하 동.



두락지 내 차변次邊 1두 5승, 명수命守 답 12두, 주양酒盞 답 12두락지 내 상변 5두. 끝.

일, 차녀 몫

노 태석太石의 1소생 비 태지太之(33세, 정축생), 이 비의 2소생 비 윤화尹化(3세, 병오생), 노 원금이元金伊의 2소생 노 은학銀鶴(8세, 신축생), 3소생 노 애학愛鶴(1세, 무신생), 비 막개莫介의 3소생 노 난옹難翁(12세, 정유생), 억수 전田 6두락지 내 하변 1두 5승, 생곡택生谷宅 답 9두, 주양답 하변 5두. 끝.

일, 막내아들 응망應望 몫

노 수년守年의 2소생 노 원금이元金伊(41세, 무진생), 이 노의 1소생 노 언학彦鶴(11세, 무술생), 비 태지太之의 1소생 비 윤개尹介(6세, 계묘생), 노 박성林成의 3소생 노 검산檢山(36세, 계유생), 비 윤덕尹德의 2소생 노 정남丁男의 대노代奴 몽생夢生(7세, 임인생), 장하墻下 전 3두, 동답洞畓 23두. 끝.

일, 승중承重<sup>3</sup>

노 건리件里의 1소생 비 윤덕尹德(36세, 계유생), 이 비의 3소생 노 술이述伊(6세, 계묘생), 노 귀근貴斤의 1소생 비 신덕申德(25세, 갑신생), 비 윤덕의 1소생 비 유환流環[대비代婢 난춘難春(12세, 정유생)]

계모 오씨 승중<sup>4</sup>: 노 문갑文甲의 1소생 노 문절文節(49세, 경신생)

전실前室 구씨具氏 승중: 노 귀근의 2소생 노 귀인복貴仁福(17세, 신묘생)

조상 승중: 입석立石 전 8두, 입석 답 17두, 조도早稻 답<sup>5</sup> 6두

계모 오씨 승중: 장하墻下 답 8두. 끝.

일, 전모前母 송씨 승중 노비를 추심 후에 분급할 것

재주 故故 학생 신장길辛長吉 처 이씨 [도서]

장녀 유학 이극별李克撥 [작명]

차녀 유학 이위李偉 [작명]

차녀 유학 정제원丁濟元 [작명]

증證 유학 신석지辛錫祉 [작명]

유학 신유일辛惟一 [작명]

필 삼촌질三寸姪 생원 신응순辛應純 [작명]

- 3 승중承重: 제사지낼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편성한 재산이다. 봉사조奉祀條, 주사조主祀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인다.
- 4 계모 오씨 승중: 승중조 내에 따로 계모를 위한 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전실 구씨 승중도 마찬가지이다.
- 5 조도早稻 답: 앞에는 전답 앞에 입석立石이나 장하墻下 등 지명이나 전답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명칭이 쓰였으나, 조도답의 경우는 '올벼가 나는 논'을 의미하여 지명과는 다른 형식으로 표기된 것이다.

## 【뒷면】

천계 5년(1625, 인조3) 11월 13일 매득한 유학 이항李垣에게 사급斜給함. 끝.  
 행군수行郡守 [입]

萬曆三十六年戊申 三月初七日 前後室五娣妹亦中 許與明文  
 右明文事段 家翁亦 戊戌年分身死 未成文記乙仍于 田畚奴婢乙 均一分給事  
 一長女婿李克撥衿 奴叔年二所生婢守代年四十三丙寅 婢銀丁一所生奴順林年三十三乙亥  
 婢四月一所生奴  
 四同年四十九庚申 奴莫丁一所生奴福只年四十四乙丑 奴檢金一所生奴莫介年五十一戊午  
 億守田六斗落只內  
 東邊一斗五升 仲石畚十六斗 場下畚上邊八斗印  
 一次女婿李偉衿 婢莫介二所生婢雪弄介年十四乙未 奴太斤三所生婢太仁西非年十四乙未  
 奴充金伊一所生奴曷  
 文伊年三十二丁丑 奴福只一所生奴奉生年十己亥 奴貴斤三所生婢貴仁介年十二丁酉 億守  
 田六斗落只內次邊一  
 斗五升 江丘水畚七斗 永平宅畚七斗 元堂張年畚九斗印  
 一次女婿丁濟元衿 奴太斤二所生奴太仁福年十九庚寅 奴禿丁一所生奴丁生年八辛丑 婢莫  
 介一所生婢綠玉年二十  
 己丑 [婢申德一所生奴難伊年一戊申] 奴貴孫四所生奴貴斤年六十五癸卯 億守田六斗落只內  
 次邊一斗五升 命守  
 畚十二斗 酒盞畚十斗落只內上邊五斗印  
 一次女衿 奴太石一所生婢太之年三十三丁丑 同婢二所生婢尹化年三丙午 奴元金伊二所生  
 奴銀鶴年八辛丑 三  
 所生奴愛鶴年一戊申 婢莫介三所生奴難翁年十二丁酉 億守田六斗落只內下邊一斗五升 生  
 谷宅畚九斗 酒盞畚  
 下邊五斗印  
 一末子應望衿 奴守年二所生奴元金伊年四十一戊辰 同奴一所生奴彥鶴年十一戊戌 婢太之  
 一所生婢尹介年六癸  
 卯 奴朴成三所生奴檢山年三十六癸酉 婢尹德二所生奴丁男 代奴夢生年七壬寅 墻下田三斗  
 洞畚二十三斗印  
 一承重 奴件里一所生婢尹德年三十六癸酉 同婢三所生奴述伊年六癸卯 奴貴斤一所生婢申  
 德年二十五甲申 婢尹德一  
 所生婢流環[代婢難春年十二丁酉] 繼母吳氏承重 奴文甲一所生奴文節年四十九庚申 前室具

氏承重 奴貴斤二所生奴  
貴仁福年十七辛卯 祖上承重 立石田八斗 立石畚十七斗 早稻畚六斗 繼母吳氏承重 墻下畚八  
斗印

一前母宋氏承重奴婢乙 推尋後分給事

財主故學生辛長吉妻李氏 [圖書]

長女 幼學李克櫟 [着名]

次女 幼學 李偉 [着名]

次女 幼學丁濟元 [着名]

證 幼學辛錫祉 [着名]

幼學辛惟一 [着名]

筆 三寸姪生員辛應純 [着名]

【背面】

天啓五年十一月十三日 買得爲有在幼學李垣亦中 斜給印  
行郡守 [押]

### 1-1-2) 1646년 신장길 처 이씨 분급문기

【해설】 1646년에 신장길 처 이씨가 자기가 낳은 자식 1남 2녀에게 자기 쪽에서 전래한 재산을 분할 해 준 분급문기이다. 1608년에 전실과 후실 자녀 5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하였으나, 그것은 남편 이장길 쪽에서 전래한 재산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전래한 재산을 분급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낳은 3남매만을 상속인으로 하였다. 남편과 처의 재산이 각각 구별되어 관리 운영된다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순치 3년(1646, 인조24) 병술 3월 초10일 자녀들에게 몫을 나눠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남편 쪽 선세先世에서 전래한 전민田民을 전후 자녀들에게 이미 몫을 나누어 주었거니와, 내 쪽의 약간의 전민을 내 소생 자녀에게 몫으로 나누어 준다. 너희들은 이 문기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갈아먹으며, 훗날 잡담하지 말 일이다.

일, 만사위 정제원丁濟元 몫

비 감춘甘春의 1소생 노 감울甘粟(경오생), 비 철상哲上의 1소생 비 철옥哲玉(병술생), 분산동墳山洞 제자帝字 답畚 6두락지, 동자同字<sup>6</sup> 답 3두락지, 수자收字 전田 7두락지. 끝.

6 동자同字: 앞에 나온 전답과 자호가 같다는 뜻이다. 이하 동.

일, 둘째 사위 정윤丁鈞 沒

비 순덕順德의 1소생 비 순금順今(계축생), 이 비 순금의 1소생 노 순복順卜(계유생), 촌 전답村前畓 8두락지, 성자전成字田 9두락지. 끝.

일, 막내아들 응망應望 沒

비 수대水代의 2소생 비 갑생甲生(갑자생), 비 와질서비臥叱西非의 3소생 비 점이占伊(병오생), 비 하절夏節의 1소생 노 인금仁金(갑술생), 한사복평寒沙垞坪 경자답京字畓 10두락지, 동자同字 전田 7두락지. 끝.

재주 모母 이씨 [도서]

필집 가용 동성사촌 손孫 신흥효辛興孝 [착명]

順治三年丙戌 三月初十日 子女等處分衿明文

右明文爲 家翁邊先世傳來田民乙 前後子女等處 已爲分衿爲是 在果 己邊若干田民乙 己所生子女亦中 分衿爲去乎 汝矣等 依此文 使用耕食 而後無雜談事

一 長女婿丁濟元衿 婢甘春一所生奴甘栗年庚午 婢哲上一所生婢

哲玉年丙戌 墳山洞帝字畓陸斗落只 同字畓三斗落只 收字田

七斗落只印

一 次女婿丁鈞衿 婢順德一所生婢順今年癸丑 同婢順今一所生奴順

卜年癸酉 村前畓八斗落只 成字田九斗落只印

一 末子應望衿 婢水代二所生婢甲生年甲子 婢臥叱西非三所生

婢占伊年丙午 婢夏節一所生奴仁金年甲戌 寒沙垞坪京字畓十

斗落只 同字田七斗落只印

財主母 李 氏 [圖書]

筆執家翁同姓四寸孫辛興孝 [着名]

### 1-1-3) 1650년 신응망辛應望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와會文記

【해설】 1650년에 신응망이 처가인 부안김씨 집안의 화회분집에서 부인 沒의 재산을 상속한 화회문기이다. 신응망은 김씨 집안의 맏사위였고, 신응망을 포함한 2남 4녀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부모 사망 후 바로 화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20여년 만에 문기를 작성하였다. 문기 작성 당시 신응망의 처 김씨는 1639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신응망은 등과별급까지 받는 등 균분상속분 외에 많은 재산을 상속했지만 착명이나 서ाप이 빠져 있다. 따라서 화회분집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순치 7년(1650, 효종1) 경인 윤11월 초9일 6동생 화회명문

이 문기는 화회和會를 하는 일이다. 우리 동생同生<sup>7</sup>들이 미처 장성하기 전에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혼인을 모두 마치고 마땅히 회합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20년간 긴 병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지체하다가 이제 비로소 문기를 작성한다. 선세先世의 노비가 먼 곳에 흩어져 있고 그 중에는 혹 도망한 자도 있고, 혹은 투탁投托한 자도 있으며 혹은 자녀들이 은닉하고 있는 자도 있으나 명확히 알지 못하므로, 가지고 있는 화명花名<sup>8</sup>만으로 평균분집 한다. 훗날 동생 자손 중에 만일 추심하여 찾아내면 마땅히 유루遺漏<sup>9</sup>의 사례로 균분하며, 몫으로 나눈 것 중 미처 나누기 전에 사망한 자는 유루노비로 수를 채워 준다. 서로 합의하여 문서를 작성하니, 훗날 동생 자손 중 만일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이 중 영남 노비 등이 기상記上<sup>10</sup>한 전답은 먼 지역에 있어 나눠 갖기 어려울 듯하니, 다른 날 방매한 후 그 값을 균분한다.

승중질承重秩

노 예금제金 5소생 비 오십덕五十德(24세, 정묘생), 비 예진禮眞의 1소생 비 옥단玉丹(21세, 경오생), 노 엇금齡金 1소생 비 어질덕於叱德(20세, 신미생), 비 예양禮陽 1소생 노 여을미汝乙未(20세, 신미생), 노 진금晉金 2소생 노 복남卜男(20세, 신미생), 근謹자답 5두락지, 같은 답 4두락지, 욱辱자 대전堞田 5두락지, 태殆자 전田 10두락지. 끝.

장녀 신응망辛應望

신노비질新奴婢秩<sup>11</sup> : 노 경손京孫 1소생 노 경이京爾<sup>12</sup>, 노 동이同伊 2소생 노 순복順卜, 노 경손3소생 비 정화丁化, 노 필손必孫 2소생 비 수인遂人

등과별급 : 비 막개莫介 2소생 비 경화景化

깃득질衿得秩 : 비 자근개者斤介 2소생 노 정남丁男(50세, 신축생), 비 춘매春每 6소생 노

- 7 동생同生 : 아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자매를 일컫는 용어이다.
- 8 화명花名 : 일반적으로 노비 명단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하지만 전답이나 기타 물품을 나열할 때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 9 유루遺漏 :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추심하지 못해 분할하는 목록에서 빠졌던 재산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10 기상記上 : 일반적으로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등재한다'는 뜻을 비롯하여 다른 용어풀이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분재기나 매매문기 등 사문서에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
- 11 신노비질新奴婢 : 혼인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노비를 신노비라 한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신노, 신비라 부를 때도 있다. 아래 등과별급 역시 같은 이유로 나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2 신노비의 경우 나이를 쓰지 않았다. 혼인할 때 신노비를 주고 수십년 후 재산상속 때 이를 분재기에 수록하므로 증여 시점과 분재기에 오르는 시점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괴생怪生(7세, 갑신생), 노 울산鬱山 2소생 비 맹화孟化(51세, 경자생), 비 정월正月 3소생 비 동춘同春(41세, 경술생), 비 맹화孟化 1소생 노 덕일德日(34세, 정사생), 같은 비의 2소생 비 정춘丁春(26세, 을축생), 비 예춘禮春 2소생 노 천일天日(25세, 병인생), 비 복례卜禮 3소생 비 영옥永玉(17세, 갑술생), 비 구춘九春 7소생 노 말춘耑春(10세, 신사생), 비 동춘同春의 5소생 노 분손粉孫(7세, 갑신생), 노 덕일德日 2소생 노 봉례奉禮(10세, 신사생), 비 애화愛花 3소생 비 말량耑良(18세, 계유생), 노 계복戒卜 1소생 비 연화連化(39세, 임자생)

전답질 : 가嘉자 답 8두락지, 식植자답 동변東邊 4두락지, 천곡泉谷 전田 3두락지. 끝.

차녀 박옥朴曷

신노비질 : 비 득개禿介 3소생 노 세운世云, 비 예양禮陽 2소생 노 예남禮男, 비 사비士非 2소생 비 문금文君, 노 옥상玉上 1소생 비 예상禮上

깃득질 : 비 예양禮陽 3소생 노 백중白中(8세, 계미생), 비 춘매春每 1소생 비 자근덕者斤德(11세, 경진생), 비 정월正月 2소생 비 구춘九春(45세, 병오생), 같은 비의 4소생 비 향금香君(38세, 계축생), 비 구춘九春 2소생 노 말선耑宣(25세, 병인생), 같은 비<sup>13</sup>의 4소생 비 말개耑介(20세, 신미생), 비 향춘香春 1소생 노 말남耑男(12세, 을묘생), 비 동춘同春 1소생 비 분춘粉春(20세, 신미생), 같은 비의 2소생 비 분덕粉德(17세, 갑술생), 비 복례卜禮 4소생 비 영덕永德(14세, 정축생), 비 금춘今春 1소생 ○○○<sup>14</sup>(5세, 병술생), 비 애화愛化 2소생 비 순옥順玉(20세, 신미생), 노 계복戒卜 5소생 비 연금連君(21세, 경오생)

전답질 : 천곡泉谷 답 4두락지, 별모로別毛老 답 6두락지, 울수하면전粟藪下綿田 4두락지. 끝.

차녀 이형진李亨震

신노비질 : 비 돌개禿介 3소생 노 구목금求木君, 비 예진禮眞 2소생 노 소남小男, 노 경손京孫 2소생 비 은화恩化, 매득한 비 말생耑生

깃득질 : 비 예진禮眞 5소생 노 대길大吉(6세, 을유생), 노 만복萬卜 4소생 비 춘지春只(43세, 무신생), 이 비의 5소생 노 엇금唵金(9세, 임오생), 같은 비의 7소생 노 막생莫生(4세, 정해생), 노 성복成卜 1소생 비 금화今化(35세, 병진생), 비 구춘九春의 5소생 노 선남先男(17세, 갑술생), 비 필금必君 1소생 비 금춘今春(26세, 을축생), 비 금화今化 1소생 노 기양起陽(14세, 정축생), 같은 비의 2소생 노 기생起生(11세, 경진생), 같은 비의 3소생 비 기덕起德(10세, 신사생), 비 동춘同春 3소생 비 구월九月(13세, 무인생), 노 진금晉君 1소생

13 같은 비 : 원문은 '同婢'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바로 앞에는 노가 나오고, 그 앞의 비는 4소생이 이미 나왔다.

14 ○○○ :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지 비인지 여부와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이하 공란은 ○으로 표시한다.

노 사복土卜(28세, 계해생), 비 구월九月 4소생 비 순화順化, 순화1소생 비 목단牧丹  
전답질 : 변辨자 답 9두락지, 증증자 답 6두락지. 끝.

장자 김지만金之萬

신노비질 : 경손京孫 4소생 노 정해丁亥, 비 독개禿介 4소생 노 종생終生, 비 춘이春伊 1소  
생 비 애춘愛春, 비 사비士非 1소생 비 문개文介

깃득질 : 노 어질금於叱今 2소생 노 선룡先龍(11세, 경진생), 노 예금제金 4소생 비 예진  
禮眞(41세, 경술생), 비 춘지春只 3소생 노 돌생鬪生(13세, 무인생), 비 막개莫介 2소생 비  
예춘禮春(55세, 병신생), 비 정월正月 4소생 비 향춘香春(35세, 병진생), 비 복례卜禮 2소  
생 노 상수上守(23세, 무진생), 비 구춘九春 3소생 비 선옥先玉(21세, 경오생), 비 필금必  
今 2소생 노 묵이墨伊(18세, 계유생), 비 향금香今 1소생 비 감덕甘德(12세, 기묘생), 노  
덕일德日 1소생 비 봉향奉香(12세, 기묘생), 비 단이丹伊 2소생 비 ○○(3세, 무자생), 비  
구월九月 3소생 비 애화愛化, 노 계복戒卜 3소생 비 승화勝花(34세, 정사생)

전답질 : 지地자 답 12두락지, 약若자 전 4두락지. 끝.

차자 김지일金之鑑

신노비질 : 노 경손京孫 5소생 노 정일丁日, 비 예진禮眞 3소생 노 양이羊伊, 비 독개禿介  
2소생 비 세월世月, 비 막개莫介 1소생 비 춘화春化

깃득질 : 노 예금제金 3소생 비 예양禮陽(47세, 갑진생), 비 예진禮眞 4소생 비 단춘丹春(8  
세, 계미생), 비 자근개者斤介 1소생 노 자근복者斤卜(52세, 기해생), 노 어질금於叱金 3소  
생 노 선문先文(7세, 갑신생), 비 정월正月 1소생 비 복례卜禮(49세, 임인생), 비 구춘九春  
1소생 비 춘화春花(27세, 갑자생), 비 예춘禮春 1소생 비 단이丹伊(3세, 신유생), 같은 비  
의 3소생 노 해일海日(23세, 무진생), 비 필금必今 3소생 노 순승順承(16세, 기해생), 비  
구춘 6소생 비 정춘正春(13세, 무인생), 비 동춘同春 4소생 비 분화粉花(10세, 신사생),  
비 향금香今 3소생 비 감춘甘春(6세, 을유생), 비 애화愛化 1소생 비 애옥愛玉(26세, 을축  
생), 같은 비의 4소생 비 후량後良(16세, 을해생)

전답질 : 증증자답 8두락지, 임林자답 5두락지, 태태자답 2두 5승락지, 항抗자전 2두락  
지, 동전同田 2두락지, 태태자 대전埽田 2두락지. 끝.

차녀 정수화鄭綏和

신노비질 : 비 자근개者斤介 4소생 노 달망達望, 비 춘지春只 1소생 노 파회破回, 비 자근  
개 3소생 노 말춘耑春, 비 춘지 2소생 비 경춘京春

깃득질 : 노 말춘 1소생 비 말매耑每(21세, 경오생), 비 막개莫介 1소생 노 정이丁伊(55  
세, 병신생), 비 복례卜禮 1소생 노 상운上云(24세, 정묘생), 비 향금香今 2소생 노 감남甘  
男(10세, 신사생), 비 단이丹伊 1소생 노 단복丹卜(6세, 을유생), 비 정춘正春 1소생 노 정  
립丁立(4세, 정해생), 같은 비의 2소생 비 정생丁生(3세, 무자생), 비 후덕後德 1소생 비

덕 덕비德非(47세, 갑진생), 같은 비의 2소생 노 복지卜只(40세, 신해생), 같은 비의 3소생 노 후남後男(37세, 갑인생), 비 구월九月 1소생 노 모동毛同(56세, 을미생), 같은 비의 2소생 노 금이金伊(50세, 신축생), 노 계복戒卜 2소생 노 승남勝男(37세, 갑인생), 같은 노의 4소생 노 승룡勝龍(23세, 무진생)

전답질 : 가嘉자답 8두락지, 식植자답 서변西邊 5두락지. 끝.

통훈대부 전 행 파주목사 신응망  
 성균생원 박옥 [착명][서업]  
 필집 충의위 이형진 [착명][서업]  
 유학 김지일 [착명][서업]  
 유학 정수화  
 삼촌질三寸姪 유학 김훤金萱 [착명][서업]

順治七年庚寅 閏十一月初九日 六同生和會明文

右文爲和會事 惟我同生 未及成長 奄遭終天之痛 至於婚娶既畢 卽當會合成文 而二十年來長患連綿 遷延至今 今

始成文爲在果 先世奴婢散在遠地 其中或有逃亡者 或有投托者 或有隱匿子女者 而未能的知 只以所存花名 平均分執爲

去乎 後日同生子孫中 如有推得者 當以遺漏例 均分爲旣 衿分中如有未分前死亡者 以遺漏奴婢充數事 和議成文爲

去乎 後日同生子孫中 如有雜談者 以此文記辨正事 此亦中 嶺南奴婢等記上田畝 則遠地之物 分執似難 他日放賣後均分其價

承重秩 奴刈金五所生婢五十德年二十四丁卯 婢禮眞一所生婢玉丹年二十一庚午 奴詮金一所生婢於叱德年二十辛未 婢禮陽一所生奴汝

乙未年二十辛未 奴晉金二所生奴卜男年二十辛未 謹字畚五斗落只 同畚四斗落只 辱字岱田五斗落只 殆字田十斗落只印

長女辛應望 新奴婢秩 奴京孫一所生奴京爾 奴同伊二所生奴順卜 奴京孫三所生婢丁化 奴必孫二所生婢遂人 登科別給婢 莫介二所生婢景化

衿得秩 婢者斤介二所生奴丁男年五十辛丑 婢春每六所生奴怪生年七甲申 奴鬱山二所生婢孟化年五十一庚子 婢正月三所生婢同春年四

十一庚戌 婢孟化一所生奴德日年三十四丁巳 同婢二所生婢丁春年二十六乙丑 婢禮春二所生奴天日年二十五丙寅 婢卜禮三所生婢永玉年十七

甲戌 婢九春七所生奴黍春年十辛巳 婢同春五所生奴粉孫年七甲申 奴德日二所生奴奉禮年十辛巳 婢愛花三所生婢黍良年十八癸



西 奴戒卜一所生婢連化年三十九壬子 田畚秩 嘉字畚八斗落只 植字畚東邊四斗落只 泉谷田  
三斗落只印

次女朴彥 新奴婢秩 婢禿介三所生奴世云 婢禮陽二所生奴禮男 婢士非二所生婢文今 奴玉上  
一所生

婢禮上 衿得秩 婢禮陽三所生奴白中年八癸未

婢春每一所生婢者斤德年十一庚辰 婢正月二所生婢九春年四十五丙午 同婢四所生婢香今年  
三十八癸丑 婢九春二所生奴壽先年二十五丙

寅 同婢四所生婢壽介年二十辛未 婢香春一所生奴壽男年十二乙卯 婢同春一所生婢粉春年  
二十辛未 同婢二所生婢粉德年十七

甲戌 婢卜禮四所生婢永德年十四丁丑 婢今春一所生 年五丙戌 婢愛化二所生婢順玉年  
二十辛未 奴戒卜五所生婢連今年二十一庚

午 田畚秩 泉谷畚五斗落只 別毛老畚六斗落只 粟藪下綿田四斗落只印

次女李亨震 新奴婢秩 婢芟介三所生奴求木金 婢禮眞二所生奴小男 奴京孫二所生婢恩化 買  
得婢壽

生 衿得秩 婢禮眞五所生奴大

吉年六乙酉 奴萬卜四所生婢春只年四十三戊申 同婢五所生奴齡金年九壬午 同婢七所生奴  
莫生年四丁亥 奴戒卜一所生婢今化年三

十五丙辰 婢九春五所生奴先男年十七甲戌 婢必今一所生婢今春年二十六乙丑 婢今化一所  
生奴起陽年十四丁丑 同婢二所生奴起生年十

一庚辰 同婢三所生婢起德年十辛巳 婢同春三所生婢九月年十三戊寅 奴晉今一所生奴士卜  
年二十八癸亥 婢九月四所生婢順化年

順化一所生婢牧丹年 田畚秩 辨字畚九斗落只 增字畚六斗落只印

長子金之萬 新奴婢秩 京孫四所生奴丁亥 婢禿介四所生奴終生 婢春伊一所生婢愛春 婢士非  
一所生

婢文介 衿得秩 奴於叱今二所生

奴先龍年十一庚辰 奴刈金四所生婢禮眞年四十一庚戌 婢春只三所生奴芟生年十三戊寅 婢  
莫介二所生婢禮春年五十五丙申 婢正月五所生婢香

春年三十五丙辰 婢卜禮二所生奴上守年二十三戊辰 婢九春三所生婢先玉年二十一庚午 婢  
必今二所生奴墨伊年十八癸酉 婢香今一所生婢

甘德年十二己卯 奴德日一所生婢奉香年十二己卯 婢丹伊二所生婢 年三戊子 婢九月三所  
生婢愛化 奴戒卜三所生婢勝花年三十四丁巳

田畚秩 地字畚十二斗落只 若字田四斗落只印

次子金之鎰 新奴婢秩 奴京孫五所生奴丁日 婢禮眞三所生奴羊伊 婢禿介二所生婢世月 婢莫

介一所

生婢春化 衿得秩 奴刈金三所

生婢禮陽年四十七甲辰 婢禮眞四所生婢丹春年八癸未 婢者斤介一所生奴者斤卜年五十二己亥

奴於叱金三所生奴先文年七甲申 婢正

月一所生婢卜禮年四十九壬寅 婢九春一所生婢春花年二十七甲子 婢禮春一所生婢丹伊年三辛酉同婢三所生奴海日年二十三

戊辰 婢必今三所生奴順承年十六己亥 婢九春六所生婢正春年十三戊寅 婢同春四所生婢粉花年十辛巳 婢香今三所生婢甘

春年六乙酉 婢愛化一所生婢愛玉年二十六乙丑 同婢四所生婢後良年十六乙亥 田畚秩 增字 畚八斗落只 林字畚五斗落只 殆字

畚二斗五升落只 抗字田二斗落只 同田二斗落只 殆字垩田二斗落只印

次女鄭綏和 新奴婢秩 婢者斤介四所生奴達望 婢春只一所生奴破回 婢者斤介三所生奴忞春 婢春只

二所生婢京春 衿得秩 奴忞春一所

生婢忞每年二十一庚午 婢莫介一所生奴丁伊年五十五丙申 婢卜禮一所生奴上云年二十四丁卯 婢香今二所生奴甘男年十辛巳 婢丹伊一所生奴

丹卜年六乙酉 婢正春一所生奴丁立年四丁亥 同婢二所生婢丁生年三戊子 婢後德一所生婢德非年四十七甲辰 同婢二所生奴卜只年四十辛

亥 同婢三所生奴後男年三十七甲寅 婢九月一所生奴毛同年五十六乙未 同婢二所生奴金伊年五十辛丑 奴戒卜二所生奴勝男年三十七甲

寅 同奴四所生奴勝龍年二十三戊辰 田畚秩 嘉字畚八斗落只 植字畚西邊五斗落只印

通訓大夫前行坡州牧使辛應望

成均生員 朴 彧 [着名][署押]

筆執忠義衛 李亨震 [着名][署押]

幼學 金之鎰 [着名][署押]

幼學 鄭綏和

三寸姪幼學 金 萱 [着名][署押]

## 1-1-4) 1669년 신응망 처 정씨(丁氏) 분급문기

【해설】 1669년에 신응망의 처 영광정씨(靈光丁氏)가 전실 후실 자녀인 1남 1녀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

면서 작성한 분급문기이다. 남편 신용망이 사망한 지 15년만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서문에는 평균분급을 명시하였고, 선세 승중조와 종기宗基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평균분급 원칙은 지기되 증가 위주로 재산을 재편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노비의 경우 나이를 적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강희 8년(1669, 현종10) 기유 12월 초9일, 전후실前後室<sup>15</sup> 자녀에게 몫을 분할해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갑오년(1654, 효종5)에 남편이 사망하고 문기를 작성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전답과 노비를 남편의 승중조 약간을 제외한 후 평균분깃한다. 선세先世 승중 전민田民<sup>16</sup>과 종기宗基는 맘대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기제와 묘제는 전례前例에 따라 윤회輪回하여 받들며, 신노비新奴婢는 혼례날 애초에는 이름을 지명하여 정해서 내놓지는 않았으므로 지금 구분해서 나누지는 않는다. 도망노비는 간 곳을 모르므로 우선 몫을 분할하지는 않되, 훗날 추심한 후에 평균분집할 일이다.

일, 승중조

비 춘양春陽 1소생 노 춘생春生, 비 상추上秋 4소생 비 철금哲今, 한사평寒沙坪에 있는 매득한 운자雲字 답 2곳 합하여 5두락지, 표정瓢井의 위자爲字 전 3두락지. 끝.

일, 고故 자子 익진翊震 몫

비 철상哲上 1소생 노 두남豆男, 3소생 비 상이上伊, 4소생 노 길이吉伊, 5소생 비 상례上禮, 노 논추論秋와 양처가 함께 낳은 3소생 비 상추上秋, 4소생 비 상환上還, 비 상추의 2소생 비 철옥哲玉, 비 상금上今의 1소생 노 차명次明, 3소생 비 동질개同叱介, 4소생 비 동덕지同德只, 노 두남豆男의 1소생 비 노진老進, 비 윤개允介 1소생 비 춘양春陽, 춘양 2소생 노 준일俊一, 4소생 비 옥지玉只, 5소생 비 춘옥지春玉只

전답질田畝秩 대삼보평大三泚坪 곤자崑字 매득답 16두락지, 곤자 매득답 5두락지, 무장畝長 현자玄字 답 10두락지, 지부평地夫坪 우자宇字 답 8두락지, 주자宙字 답 5두락지 내하변下邊 2두 5승락지, 상자霜字 방축 아래 답 2두락지, 대삼보 강자崗字답 6승락지, 대삼보 옥전玉田 3두락지, 같은 평坪 옥자玉字 전 2두락지, 로자露字 전 2두락지, 상자霜字 전 1두락지, 우자雨字 전 하변 1두 5승락지. 끝.

15 전후실前後室 : 이 분재기의 재주財主 영광정씨 부인은 신용망의 계배繼配, 즉 후실 부인이다. 전실은 부안김씨로 1639년에 세상을 떠났다. 김씨 소생과 자신이 낳은 소생 모두에게 재산을 분할한 문기이다.

16 전민田民 : 전민은 '노비와 토지'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재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일, 여女 고故 송문연宋文淵 묵:노 논추論秋 2소생 비 철상哲上, 5소생 비 상금上今, 비 철상  
哲上 2소생 노 두생豆生, 비 상환上還 1소생 비 백은덕白隱德, 2소생 노 백은금白隱金, 3소생  
비 해양海陽, 4소생 비 노랑老郎, 5소생 비 가랑加郎, 비 상추上秋 1소생 비 철양哲陽, 3소생  
노 철인哲仁, 비 상금上今 2소생 노 차선次善, 비 춘양春陽 3소생 비 준개俊介, 노 두남豆男 2  
소생 비 금생今生, 비 윤개允介 2소생 비 추상秋上, 비 철양哲良 1소생 노 복선卜善.

전답질 우입리尤入里 곤자崑字 답 20두락지, 금자金字 해당蟹畓 11두락지, 서당동書堂洞  
로자露字 답 2두락지, 남죽南竹 수자收字 답 7두락지, 지부평地夫坪 주자宙字 답 5두락지  
내 상변上邊 2두 5승락지, 대삼보大三湫 곤자崑字 전 5두락지, 로자露字 전 3두락지, 우  
자雨字 전 상변 1두 5승락지. 끝.

일, 도노비질逃奴婢秩

노 학지鶴只와 양처가 함께 낳은 해당海棠, 두금豆今, 두산豆山, 돌박지堧朴只, 비 늘서비  
訥西非가 낳은 내은이內隱伊, 내은월內隱月 등.

재주 고故 장령 신응망 처 정씨丁氏

증證 유학 신구辛晌 [착명]

유학 오촌질五寸姪 신흥효辛興孝 [착명]

필筆 유학 재종손再從孫 신계문辛啓文 [착명]

康熙捌年己酉 十二月初九日 前後室子女中分衿明文

右明文事段 甲午年分 家翁身死 未成文記乙仍于

節田畚奴婢乙 家翁承重條若干抽出後 平均分衿

爲乎矣 先世承重田民及宗基段 不當任意擅斷 故

全不舉論爲旡 忌祭及墓祭 則依例輪回奉行

爲旡 新奴婢則昏嫁之日初不指名定出 故今不分秩

爲旡 逃奴婢段 不知去處乙仍于 姑勿分衿爲去乎

後日推尋之後 平均分執事

一承重條 婢春陽一所生奴春生 婢上秋四所生婢哲今 寒沙

坪雲字買得畚兩庫并伍斗落只 瓢井爲字田三斗落

只印

一故子翊震衿 婢哲上一所生奴豆男 三所生婢上伊 四所生奴吉伊

五所生婢上禮 奴論秋良妻并産三所生婢上秋 四所生婢上

還 婢上秋二所生婢哲玉 婢上今一所生奴次明 三所生婢

同叱介 四所生婢同德只 奴豆男一所生婢老進 婢允介一所生

婢春陽 春陽二所生奴俊一 四所生婢玉只 五所生婢春玉只

田畚秩 大三湫坪崑字買得畚拾陸斗落只 崑字  
買得畚伍斗落只 畝長玄字畚拾斗落只 地夫坪字  
字畚捌斗落只 宙字畚伍斗落只內下邊貳斗伍升  
落只 霜字防築底畚貳斗落只 大三湫崗字畚陸  
升落只 大三湫玉田參斗落只 同坪玉字田貳斗落只 露  
字田貳斗落只 霜字田壹斗落只 雨字田下邊壹斗伍  
升落只印  
一女故宋文淵衿 奴論秋貳所生婢哲上 五所生婢上今 婢哲  
上貳所生奴豆生 婢上還一所生婢白隱德 貳所生奴白隱金 三  
所生婢海陽 四所生婢老郎 五所生婢加郎 婢上秋一所  
生婢哲陽 三所生奴哲仁 婢上今貳所生奴次善 婢春陽三  
所生婢俊介 奴豆男二所生婢今生 婢允介貳所生婢秋上  
婢哲良一所生奴卜善 田畚秩 尤入里崑字畚貳拾斗落只  
金字蟹畚拾壹斗落只 書堂洞露字畚貳斗落只 南竹收字  
畚柒斗落只 地夫坪宙字畚伍斗落只內上邊貳斗伍  
升落只 大三湫崑字田伍斗落只 露字田參斗落只 雨  
字田上邊壹斗伍升落只印  
一逃奴婢秩 奴鶴只良妻并産海棠 豆今 豆山 芻朴只 婢  
訥西非所産內隱伊 內隱月等

財主 故掌令 辛應望妻丁氏

證 幼學 辛昉 [着名]

幼學 五寸姪 辛興孝 [着名]

筆 幼學 再從孫 辛啓文 [着名]

### 1-1-5) 1709년 장손 신시태辛始泰 처妻 고씨高氏와 차자次子 신정수辛鼎 受 처 유씨柳氏 화회문기와會文記

【해설】 1709년에 신경룡의 둘째 며느리 서산유씨와 신경룡의 장손부 장택고씨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화회문기이다. 신경룡의 장남 신정화辛鼎和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그 아들인 시태始泰가 사망하여 장남 계열로는 상속인이 시태의 처 고씨밖에 없었다. 신경룡의 차남 신정수도 사망하여 그 처인 유씨가 상속에 참여하였다. 결국 이 재산상속은 신경룡의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한 것이다. 신경룡의 장남을 대신하여 장남의 며느리가, 차남을 대신하여 차남의 처가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뒷

면에는 분재기에 수록된 노비를 10차례 방매하고 발급받은 배탈사급입안이 11건 수록되어 있다. 배탈사급입안은 이 분재기가 작성된 1709년부터 1786년까지 장기에 걸쳐 작성되었다.

강희 48년(1709, 숙종 35) 기축 3월 24일 화회문기

이 문서를 작성한다. 집안에 화禍가 끝이 없어 상사喪事가 이어지더니 남편 숙질이 또 서로 계속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오직 아직 살아있는 두 명은 가련한 운명이라 편안히 살지 못하고 지금 각기 떨어져 있으니, 전래한 약간의 전민田民을 부득이 화회和會하여 나눠가진다. 그 중 장령 조부모<sup>17</sup>의 제위답 5두<sup>斗</sup>는 중간에 상례 비용 때문에 방매하였으므로 다른 논으로 대신 내주며, 그 아래 2대 제위는 나머지 전민이 적으므로 간략히 뒤에 적는다. 여러 대에 걸친 천장遷葬으로 재력을 탕진했으므로 빠뜨렸던 전답 약간을 또 덜어내니, 기제와 묘제는 선조들이 만든 규범에 따라 윤회봉시輪廻奉行을 수행할 일이다. 훗날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일, 조상전래 승중조承重條

비 춘이春伊 1소생 노 소남小男, 2소생 비 내은지內隱之, 비 덕환德還 1소생 노 백이白伊, 2소생 노 이백二白, 3소생 노 삼백三白, 비 장덕長德 1소생 노 수만守萬, 2소생 비 도개道介, 3소생 노 만세萬世, 4소생 노 만학萬鶴, 노 아생牙生 1소생 비 예단禮丹, 2소생 노 돌시ᄇᆞᆫ屎, 비 예단 2소생 노 이금二金, 3소생 노 유봉流奉, 4소생 비 ○○, 비 처례處禮 2소생 비 인단仁丹, 3소생 비 인봉仁奉, 비 인양仁陽 1소생 노 만세萬世, 2소생 비 만례萬禮, 3소생 노 ○○, 비 은향恩香 1소생 비 일향日香, 2소생 비 월춘月春, 3소생 노 만이萬伊, 비 덕춘德春 1소생 비 개이介伊, 2소생 비 실양實陽, 3소생 노 봉이奉伊, 자은덕者隱德 1소생 비 자은금者隱今, 비 일향日香 1소생 비 애선愛先, 비 옥지玉只 1소생 노 천귀千貴, 노 춘생春生 양처병산 비 이레二禮, 5소생 노 노랑老郎, 도내리道內里의 종기宗基 노전露田<sup>18</sup> 8두락지, 위전爲田 8두락지, 촌전村前 올벼 답畓 2두락지, 한사평寒沙坪 영답靈畓 8두락지. 끝.

일, 장령 조부모 제위조

비 춘이양春伊陽 1소생 노 춘금春金, 비 상추上秋 4소생 비 철금哲今, 대삼보大三湫 곤답崑畓 16두락지 내 하변下邊 5두락지를 대신하여 낸 박천朴泉 위전爲田 3두락지.

중조부모 조부모 제위조 : 비 토옥土玉 1소생 노 정매正每, 비 월향月香 1소생 비 백옥白玉, 비 월현月賢 1소생 노 명세明世, 비 옥금玉今 2소생 비 감지甘之, 대삼보大三湫 곤답崑

17 장령 조부모 : 사헌부 장령을 지낸 조부 신응망辛應望(1595~1654) 부부를 가리킨다.

18 노전露田 : 노자전露字田의 의미로 보인다. 분재기의 경우 가문마다 표기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보통 전답을 표기할 때 자호를 '노자전'과 같이 넣어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분재기의 경우 '노전露田', '위전爲田', '영답靈畓' 등의 형식으로 쓰고 있다.

畚 16두락지 내 상변上邊 11두락지, 대삼보大三湊 곤전崑田 6두락지. 끝.

일, 고故 장손 신시태辛始泰 처 고씨 몫

비 순화順化 3소생 노 두은일豆隱日(52세, 무술), 비 사옥土玉 2소생 노 영만英萬(21세, 기사), 4소생 노 영산英山(19세, 신미), 비 옥금玉金(57세, 계사), 이 비의 4소생 노 우음금于音金(22세, 무진), 매득비 미양未陽 2소생 노 상명上明(23세, 병인), 같은 비의 4소생 노 상필上必(16세, 갑술), 비 사환土還 1소생 비 사계土桂(35세, 을묘), 비 사옥土玉 3소생 비 영금英金(19세, 신미), 비 월향月香(51세, 기해), 이 비의 3소생 비 산금蒜金(28세, 임술), 비 연향連香 1소생 비 취례翠禮(19세, 신미), 2소생 노 춘학春鶴, 4소생 비 가지加之, 매득비 미양未陽(57세, 계사)

전답질田畵秩: 입석立石 촌전村前 위답爲畚 4두락지 소경所耕 〇〇, 둔전屯田 〇〇 답 6두락지 소경 〇〇, 무장畝長 현답玄畚 6두락지 내 2두락지 소경 〇〇, 창교蒼橋 가락동可樂洞 답 7두락지 소경 〇〇, 창교 석교내石橋內 답 2두락지 소경 〇〇, 도내리道內里 부귀천夫貴泉 우전雨田 1두락지 소경 1복8속, 마분馬墳 상전霜田 2두락지 소경 5복卜, 금전金田 1두락지 소경 3복, 화촌禾村의 매득한 대전垵田 이진邇田 2두5승락지 소경 〇〇, 초가6칸, 고교高橋 시장柴場 주자宙字 2석락지. 끝.

일, 고 차자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 몫

비 순화順化 4소생 노 순일順日(44세, 병오), 비 사환土還 2소생 노 선흥先興(28세, 임술), 같은 비의 3소생 비 사랑土良(23세, 정묘), 같은 비의 4소생 비 사경土京(17세, 계유), 비 옥금玉金 3소생 노 감금甘金(26세, 갑자), 5소생 노 유두금流頭金, 매득비 미양未陽 1소생 노 상인上仁(32세, 무오), 3소생 노 상만上萬(21세, 기사), 비 월향月香 2소생 비 서운鋤云(30세, 경신), 4소생 비 혼전欣前(25세, 기축), 비 연향連香 4소생 비 가랑加郎, 비 사계土桂 1소생 비 소아少娥(2세, 무자), 비 승옥升玉 1소생 노 승만升萬(26세, 갑자), 비 순양順陽 3소생 비 연향連香(42세, 정미), 비 월생月生 2소생 노 월금月金(58세, 임진)

전답질: 입석立石 촌전村前 위답爲畚 4두락지 소경 33복 8속, 우평牛坪 곤답崑畚 1두 5승락지 소경 〇〇, 사발리沙鉢里 호답號畚 6두락지 소경 〇〇, 창교蒼橋 촌전村前 〇답 4두락지 소경 〇〇, 창교蒼橋 평전平田 〇답 3두락지 소경 〇〇, 도내리 우자雨字 대전垵田 5두락지 소경 15복 6속, 방축저防築底 위전爲田 3두락지 소경 3작作 13복 2속, 촌전村前의 매득한 위전爲田 2두락지 소경 〇〇, 관공官公 황자黃字 시장柴場 2석락지. 끝.

여기서 천장조遷葬條인 원당평元堂坪 옥답玉畚 6두락지, 대삼평大三坪 옥전玉田 4두락지, 약산곡藥山谷 묘직조墓直條로 제진祭盡한 운답雲畚 상변上邊 4두락지 대신 원당평元堂坪 옥답 4두락지, 노 만이萬伊(무술생)를 대신 냄

고故 장손 학생 신시태 처 고씨[도서]

고 차자 학생 신정수 처 유씨[도서]

문장門長 유학 신만휴[서업]  
 증證 유학 송상익宋相益[서업]  
 유학 신만상辛萬祥[서업]  
 필筆 유학 신만화辛萬和[서업]

## 【뒷면】

## 〈배탈사급입안 1〉

강희 48년(1709, 숙종 35) 8월 일 흥덕현 사급(斜給)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승옥承玉 1소생 노 승만升萬(26세, 갑자생) 1구를 방매한 것이 확실하므로 장자狀者에게 관례에 따라 사급함.

행현감[업]

## 〈배탈사급입안 2〉

옹정 11년(1733, 영조 9) 7월 일 전주부 사급배탈(斜給背頤)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인양仁陽의 2소생 비 만례萬禮(정축생), 이 비의 1소생 비 차진次眞(병신생), 2소생 노 보음금甫音金(임인생), 3소생 노 모진금毛眞金(기유생) 등 4구를 전錢 70냥을 값으로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김익련金益鍊에게 방매할 때 노비 주자필 유학 신시갑辛時甲, 증인 동생제 신경침辛景沉이 착명한 것이 확실함.

관[업]

## 〈배탈사급입안 3〉

건륭 2년(1737, 영조 13) 12월 일 장성부 배효背效<sup>19</sup>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인양仁陽 1소생 노 만세萬世 1구를 전錢 14냥을 값으로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장자狀者 진시종陳施宗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행부사[업]

## 〈배탈사급입안 4〉

건륭 3년(1738, 영조 14) 8월 일 흥덕현 사급배탈(斜給背頤)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춘이春伊 2소생 비 내은지內隱之의 1소생 비 귀례貴禮(32세), 2소생 노 소재小才(30세), 4소생 비 정이丁伊(24세), 비 소례小禮 1소생 비 복상卜上(14세), 2소생 비 복진卜眞(11세), 3소생 비 진이眞伊(8세), 4소생 노 노외盧外(3세), 5소생 비 혼진欣眞(1세) 등 8구를 전錢 80냥을 값으로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이위채李緯彩에게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업]

19 배효背效 : 효주배탈效周背頤을 줄여서 쓴 것으로 보인다. 앞면에 효주하고 효주한 사유를 뒷면에 따로 기록한다. 보통 분재기의 경우 앞면에 쓰인 노비를 방매하고 그에 대한 사급입안을 뒷면에 기록하였다.



〈배탈사급입안 5〉

건륭 6년(1741, 영조 17) 12월 일 장성부長城府

이 문기에 올라있는, 신경침辛景沉 망형亡兄의 양가養家로부터 전래한 노 감금甘金の 양처병산 태진太眞의 2소생 비 금개金介 1소생 비 내선內先(11세, 갑진생)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전錢 9냥을 값으로 받은 후 장자狀者 오진등吳震燈에게 영구히 방매했음이 분명함.

행부사[입]

〈배탈사급입안 6〉

건륭 10년(1745, 영조 21) 11월 일 무안현茂安縣 빗기斜只<sup>20</sup>

이 문기에 올라있는 노 순일順日의 양처병산 3소생 비 귀례貴禮의 1소생 비 구화九化(20세) 1구를 장자狀者 정현丁炫에게 값을 받고 방매하였음.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7〉

건륭 10년(1745, 영조 21) 12월 일 창평관昌平官 빗기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장덕丈德의 1소생 노 수만水萬의 양산良産<sup>21</sup> 1소생 노 원태元太(갑오생), 장덕의 2소생 비 도개道介(갑자생), 이 비의 1소생 노 독금秃金(신묘생), 장덕의 4소생 노 만학萬鶴(을해생) 4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하였음.

행현령[입]

〈배탈사급입안 8〉

건륭 16년(1751, 영조21) 3월 일 지도관智島官 빗기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혼전欣田의 1소생 비 욱덕辱德, 이 비의 1소생 비 정월正月, 2소생 비 정화正化, 3소생 비 악지惡只 등 4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장자狀者 이원래李元來에게 값을 받고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겸별장兼別將[입]

〈배탈사급입안 9〉

건륭 18년(1753, 영조23) 월 일 청양현靑陽縣 사급배효斜給背爻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가지加之의 1소생 비 순상順上(무신생) 1구를 전錢 14냥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장자狀者 송성宋星에게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20 빗기斜只 : 분재기 뒷면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의 경우 사급입안, 배탈, 입안 등 그 명칭이 다양하게 쓰여 있다. 빗기도 사급입안을 대신한 용어로 자주 쓰인다.

21 양산良産 : 양처병산을 줄여서 쓴 것이다. 주로 노부가 양인 처와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양처병산 또는 양산으로 표현하였다.

## 〈배탈사급입안 10〉

건륭 28년(1763, 영조33) 3월 일 무안현茂安縣 사급배효斜給背爻

이 문기에 올라있는 노 감금甘金の 양처병산 비 금덕金德의 3소생 비 화리덕禾里德(24세, 경신생), 이 비의 1소생 노 후선後先(4세, 경진생) 2구를 전錢 12냥을 값으로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장자狀者 박기朴檜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위의 노 감금 양처병산 비 금덕의 4소생 비 거합居合(22세, 임술생)과 이 비의 1소생 노 칠산七山(4세, 경진생) 2구를 전錢 12냥을 값으로 받고 장자狀者 김익추金益秋에게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 〈배탈사급입안 11〉

건륭 51년(1786, 정조 10) 11월 초5일 영광군 사급배탈斜給背頓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인봉仁奉의 1소생 비 소단小丹, 노 예선隸先 등 2구를 매득했으므로 □…□양소仰訴 하니 입안을 성급해주는 것이 적절함

행관(行官)[입]

康熙肆拾捌年己丑 三月二十四日 和會文記

右文爲 家禍罔極 喪憾連綿 家翁叔姪又相繼早世 惟二未死 薄命 不得安居 今當各離 傳來略干田民乙 不得已和會分執爲去乎 其中

掌令祖父母祭位番五斗廳乙 中年放賣於喪需是乎等以 他番代出爲乎旡 其下二代祭位段 以餘存田民數少乙仍于 略小後錄爲乎旡 累代遷葬財力板蕩乙仍于 遺漏中田番略干亦爲除出爲乎矣 忌祭奠祭段 依先規輪廻奉行事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 辨正事

一祖上傳來承重條 婢春伊一所生奴小男 二所生婢內隱之 婢德還一所生奴白伊 二所生奴二白 三所生奴三白 婢長德一所生奴守萬 二所生婢道介 三所生奴萬世 四所生奴萬鶴 奴牙生一所生婢禮丹 二所生奴互屎 婢禮丹 二所生奴二金 三所生奴流奉 四所生婢 婢處禮二所生婢仁丹 三所生婢仁奉 婢仁陽一所生奴萬世 二所生婢萬禮 三所生奴 婢恩香一所生婢日香 二所生婢月春 三所生奴萬伊 婢德春一所生婢介伊 二所生婢實陽 三所生奴奉伊 者隱德一所生 婢者隱今 婢日香一所生婢愛先 婢玉只一所生奴千貴 奴春生良妻并産婢二禮 五所生奴老郎 道內里 宗基露田八斗落只 爲田八斗落只 村前早稻番二斗落只 寒沙坪靈

畓八斗落只印

一掌令祖父母祭位條 婢春伊陽一所生奴春金 婢上秋四所生婢哲今 大  
三湫崑畓十六斗落只內下邊五斗落只 代出朴泉爲田三斗落只

曾祖父母祖父母祭位條 婢士玉一所生奴正每 婢月香一所生婢白玉 婢  
月賢一所生奴明世 婢玉今二所生婢甘之 大三湫崑畓十六斗落只內  
上邊十一斗落只 大三湫崑田六斗落只印

一故長孫辛始泰妻高氏衿 婢順化三所生奴豆隱日年五十二戊戌 婢士  
玉二所生奴英萬年二十一己巳 四所生奴英山年十九辛未 婢玉今年五十七  
癸巳 同婢四所生奴于音金年二十二戊辰 買得婢未陽二所生奴上明年  
二十三丙寅 同婢四所生奴上必年十六甲戌 婢士還一所生婢士桂年三十五  
乙卯 婢士玉三所生婢英今年十九辛未 婢月香年五十一己亥 同婢三所  
生婢蒜今年二十八壬戌 婢連香一所生婢翠禮年十九辛未 二所生奴春  
鶴年 四所生婢加之年 買得婢未陽年五十七癸巳 田畓秩 立石  
村前爲畓四斗落只所耕 芑田 畓六斗落只所耕 畓長玄  
畓六斗落只內二斗落只所耕 蒼橋可樂洞 畓七斗落只所耕

蒼橋石橋內 畓二斗落只所耕 道內里夫貴泉雨田一斗  
落只所耕一卜八束 馬墳霜田二斗落只所耕五卜 金田一斗落只所耕三卜  
禾村買得垵田 邇田二斗五升落只所耕 草家六間 高橋柴  
場宙字二石落只印

一故次子辛鼎受妻柳氏衿 婢順化四所生奴順日年四十四丙午 婢士  
還二所生奴先興年二十八壬戌 同婢三所生婢士良年二十三丁卯 同婢四所生  
婢士京年十七癸酉 婢玉今三所生奴甘金年二十六甲子 五所生奴流頭金年

買得婢未陽一所生奴上仁年三十二戊午 三所生奴上萬年二  
十一己巳 婢月香二所生婢鋤云年三十庚申 四所生婢欣前年二十五己丑  
婢連香四所生婢加郎年 婢士桂一所生婢少娥年二戊子 婢升  
玉一所生奴升萬年二十六甲子 婢順陽三所生婢連香年四十二丁未 婢月  
生二所生奴月金年五十八壬辰 田畓秩 立石村前爲畓四斗落只所耕三  
十三卜八束 牛坪崑畓一斗五升落只所耕 沙鉢里號畓六斗落只  
所耕 蒼橋村前 畓四斗落只所耕 蒼橋平田 畓  
三斗落只所耕 道內里雨字垵田五斗落只所耕十五卜六束  
防築底爲田三斗落只所耕三作十三卜二束 村前買得爲田二斗落只  
所耕 官公黃字柴場二石落只印

此亦中 遷葬條 元堂坪玉畓六斗落只 大三坪玉田

四斗落只 藥山谷墓直條 祭盡雲畚上邊四斗落只  
代元堂坪玉畚四斗落只 代出奴萬伊戊戌生

故長孫 學生 辛始泰妻高氏[圖署]

故次子 學生 辛鼎受妻柳氏[圖署]

門長 幼學 辛萬休[署押]

證 幼學 宋相益[署押]

幼學 辛萬祥[署押]

筆 幼學 辛萬和[署押]

【背面】

<背頃斜給立案 1>

康熙四十八年八月 日 興德縣斜給

右文付婢承玉壹所生奴升萬

年貳拾陸甲子生身壹口 放賣

的實是乎等以 狀者處 依例斜

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2>

乾隆二年十二月 日長城府背交

右付婢仁陽一所生奴萬世身一口乙

捧價錢十四兩爲遣 後所生并以 狀者

陳施宗處放賣的實印

行府使[押]

<背頃斜給立案 3>

乾隆三年八月 日 興德縣斜給背頃

右付婢春伊二所生婢內隱之一所生婢貴禮年三十二 二所生奴小才年三十

四所生婢丁伊年二十四 婢小禮一所生婢卜上年十四 二所生婢卜眞年

十一 三所生婢眞伊年八 四所生奴盧外年三 五所生婢欣眞年一

等捌口乙 捧價錢捌拾兩爲遣 後所生并以 李緯彩處 永

永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4>

乾隆六年十二月 日 長城府

右文付辛景沉亡兄養家傳來奴甘

金良妻并産太眞二所生婢金介  
一所生婢內先年十一甲辰生身一口乙後

所生并以 捧價錢玖兩後 狀者吳震  
燈前 永永放賣的實印

行府使[押]

<背頃斜給立案 5>

乾隆十年十一月 日 茂安縣斜只

右文付奴順日良妻并産三所生婢貴禮一所生婢九化年二十  
生身壹口 狀者丁炫處 捧價放賣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6>

乾隆十年十二月 日 昌平官斜只

右文付婢丈德一所生奴水萬良産一所生奴元太  
年甲午 丈德二所生婢道介年甲子 同婢一所生奴  
禿金年辛卯 丈德四所生奴萬鶴年乙亥四口

後所生并以 永永放賣印

行縣令[押]

<背頃斜給立案 7>

乾隆十六年三月 日 智島官斜只

右付婢欣田一所生婢辱德 同婢一所生

婢正月 二所生婢正化 三所生婢惡

只等四口身 後所生并以 狀者

李元來處 捧價永永放賣的實

印

兼別將[押]

<背頃斜給立案 8>

乾隆十八年 月 日 青陽縣斜給背交

右付婢加之一所生婢順上年戊申一口身乙

捧價錢十四兩爲遣 後所生并以 狀者宋

星處 永永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9>

乾隆二十八年三月日 茂安縣斜給背交

右文付奴甘金良妻并産婢金德三所生婢禾里德年  
二十四庚申 同婢一所生奴後先年四庚辰二口身乙 捧價錢  
十二兩爲遣 後所生并以 狀者朴愔處放賣的實印  
上項奴甘金良妻并産婢金德四所生婢居合年二十二壬  
戌生身果 同婢一所生奴七山年四庚辰生身二口乙  
捧價錢十二兩爲遣 狀者金益秋處 後所生并以  
永永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10>

乾隆五十一年十一月初五日 靈光郡斜給背頃  
右付婢仁奉一所生婢小丹 奴隸先并二口乙 買得乙仍于  
□…□仰訴爲去乎 立案成給的實耳  
行官[押]

<背頃斜給立案 11>

雍正十一年七月 日 全州府斜給背頃  
右付婢仁陽二所生婢萬禮年丁丑 同婢一所生婢次眞年丙申  
二所生奴甫音金年壬寅 三所生奴毛眞金年己酉等四口乙  
捧價錢七十兩爲遣 後所生并以 永永放賣於金益鍊處時  
奴婢主自筆幼學辛時甲 訂同生弟辛景沉 着名  
的實印

官[押]

## 1-1-6) 1709년 장손 신시태 처 고씨와 차자 신정수 처 유씨 화회문기

【해설】 1709년에 신경룡의 둘째 며느리 서산유씨와 신경룡의 장손부 장택고씨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화회문기이다. 앞의 화회문기와 복본<sub>復本</sub>이나 뒷면의 배탈사급입안이 서로 다르다. 즉 앞의 화회문기는 11건의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되었으나, 이 문기에는 16건이 수록되어 있다. 상속인이 2명이었으므로 각자가 보관하던 것이 모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희 48년(1709, 숙종 35) 기축<sup>22</sup> 3월 24일 화회문기

22 원문은 '康熙肆拾□年甲戌'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재기가 앞의 분재기와 동일한 문기로 그 내용도 한 두 글자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므로, 마멸된 한 글자는 '捌'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집안에 화禍가 끝이 없어 상사喪事가 이어지더니 남편 숙질이 또 서로 계속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오직 아직 살아있는 두 명은 가련한 운명이라 편안히 살지 못하고 지금 각기 떨어져 있으니, 전래한 약간의 전민田民을 부득이 화회和會하여 나눠가진다. 그 중 장령 조부모의 제위답 5두斗는 중간에 상례 비용 때문에 방배하였으므로 다른 논으로 대신 내주며, 그 아래 2대 제위는 나머지 전민이 적으므로 간략히 뒤에 적는다. 여러 대에 걸친 천장遷葬으로 재력을 탕진했으므로 빠뜨렸던 전답 약간을 또 덜어내니, 기제와 묘제는 선조들이 만든 규범에 따라 윤희봉사輪廻奉行을 수행할 일이다. 훗날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분재내용 및 서명 부분은 생략함]

【뒷면】

〈배탈사급입안 1〉

강희 48년(1709, 숙종 35) 기축 4월 24일 손만호孫萬戶에게 노 유봉流奉 1구를 방배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2〉

강희 61년(1722, 경종 2) 영광군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예단禮丹 2소생 유금有金(을해생) 1구를 조덕량趙德良에게 관례대로 사급하는 일임.

행군수[입]

〈배탈사급입안 3〉

강희 61년(1722, 경종2) 12월 영광군 입안

이 문기는 사급하는 일이다. 비 순화順化 3소생 노 두은일豆隱日, 무술생 1구를 장자狀者 전중락全重落에게 값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방배한 것이 확실함.

행군수[입]

〈배탈사급입안 4〉

강희 62년(1723, 경종3) 1월 일 무장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미양未陽 3소생 노 상만上萬(기사생)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현縣에 거주하는 임시명任時明에게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매겨서 받고 영구히 방배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5〉

옹정 1년(1723, 경종3) 3월 일 금산군錦山郡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미양未陽 2소생 노 상명尙明(병인생) 1구를 장자狀者 나두익羅斗

그렇다면 간지 역시 앞의 분재기와 동일하게 '己丑'이 되는 것이 맞다.

휙에게 값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방매한 것이 확실하니, 관례에 따라 사급함.

행군수[입]

〈배탈사급입안 6〉

용정 3년(1725, 영조1) 3월 일 무장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미양未陽의 4소생 노 상필上必(갑술생) 1구를 전문 7냥으로 값을 매겨서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현縣에 거주하는 김두은득金豆隱得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7〉

용정 10년(1732, 영조8) 3월 17일 태인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취란翠亂의 득후 1소생 □자字(□진생), 2소생 노 이자已字(무술생), 3소생 노 삼자三字(신축생), 연향連香 3소생 비 가복加卜(병술생), 이 비의 유복아遺腹兒 등을 전錢 20냥 값을 받고 재주財主 신시갑辛始甲이 조하준曹夏俊에게 이 노비의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8〉

건륭 8년(1743, 영조15) 4월 20일 영광군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인단仁丹의 1소생 노 만귀萬貴, 2소생 노 만석萬石 등 2구에 전錢 10냥을 값으로 받고 군郡에 거주하는 신생원노 예동禮同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군수[입]

〈배탈사급입안 9〉

건륭 9년(1744, 영조 16) 1월 일 무장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예단禮丹의 득후소생인 비 예덕譽德(갑진생), 4소생 비 자근연者斤延(기묘생) 등을 전문 21냥으로 값을 매겨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동지同知 이李□□에게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10〉

건륭 13년(1748, 영조 20) 3월 일 고창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예단禮丹 소생의 비 귀단貴丹의 1소생 비 귀룡貴龍(31세, 무진생)과 이 비의 1소생 비 정덕鄭德(5세, 갑자생) 2구를 고창에 거주하는 강범일姜範一에게 영구히 방매하고, 귀단貴丹 2소생 비 귀례貴禮(26세, 계묘생)을 고창의 강운일姜運一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11〉



건륭 14년(1749, 영조 21) 2월 함평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옥금玉壽의 3소생 노 감금甘金의 양처병산 비 금덕이金德伊의 1소생 노 □원元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군에 사는 김필경金弼慶에게 영구히 방매함.

현감업

〈배탈사급입안 12〉

건륭 14년(1749, 영조 21) 2월 일 함평현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옥금玉壽의 3소생 노 감금甘金의 양처병산 비 금덕이金德伊의 2소생 노 망산罔山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군에 사는 김필경金弼慶에게 영구히 방매함.

현감업

〈배탈사급입안 13〉

건륭 15년(1750, 영조 22) 3월 일 영광군 빗긔斜只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소아小娥의 득후 1소생 비 연순軟順(기유생), 이 비의 1소생 비 영애永愛(기해생)과 잉태한 지 3개월 태아를 값을 받고 김원기金元起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하니 관례에 따라 사급함.

행군수업

〈배탈사급입안 14〉

건륭 17년(1752, 영조 24) 3월 20일 영광군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노 백이白伊의 양처가 낳은 2소생 비 주은걸이注隱乞伊 1소생 청룡靑龍, 2소생 감룡甘龍 등 2구를 전錢 9냥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유학 신명응辛命凝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군수업

〈배탈사급입안 15〉

건륭 18년(1753, 영조 25) 2월 일 담양부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도개道介 1소생 비 애진愛眞(38세, 병신생), 이 비의 1소생 노 귀동貴童(19세, 을묘생), 2소생 비 귀향貴香(3세, 기사생) 3구를 부府에 거주하는 박향주朴香住에게 값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부사업

〈배탈사급입안 16〉

가경 14년(1809, 순조 9) 6월 일 영광군 입안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인봉仁奉 소생 소대(少大)의 1소생 비 아망개阿望介(을해생), 1소생 노 □□(을미생), 2소생 비 득례得禮(정사생) 합 3구를 매부妹夫 나원적羅元績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행군수업

康熙肆拾□(捌)年甲戌三月二十四日 和會文記

右文爲 家禍罔極 喪憾連綿 家翁叔姪又相繼早世 惟二未死薄  
命不得安居 今當各離 傳來若干田民乙 不得已和會分執爲去乎 其中  
掌令祖父母祭位畚五斗麿乙 中年放賣於喪需是乎等以 以他畚代出  
爲乎旆 其下二代祭位段 以餘存田民數小乙仍于 略小後錄爲乎旆  
累代遷葬 財力板蕩乙仍于 遺漏中田畚略干 亦爲除出爲乎矣  
忌祭墓祭段 依先規輪廻奉行事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  
文下正事

<중략>

【背面】

<背頃斜給立案 1>

康熙四十八年己丑四月二十四日孫萬戶處奴流奉一口身乙放賣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2>

康熙六十一年 靈光郡立案

右文付婢禮丹二所生有金年乙亥生身一口乙

趙德良處 依例斜給事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3>

康熙六十一年十二月 日 靈光郡立案

右文爲斜給事婢順化三所生奴豆隱日戊戌生身一口

狀者全重落處捧價後所生并以放賣的實印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4>

康熙六十二年正月 日 茂長縣立案

右文付婢未陽三所生奴上萬年己巳生身

一口乙 後所生并以 縣居任時明處 折價錢文捌

兩捧上爲遣 永永放賣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5>

雍正元年三月 日 錦山郡立案

右文付婢未陽二所生奴尙明年丙寅生身一口乙 狀者羅

斗益處捧價後 後所生并以 放賣的實是去乎

依例斜給印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6>

雍正三年三月 日 茂長縣立案

右文付婢未陽四所生奴上必年甲戌生

身一口乙 價折錢文柒兩捧上爲遣 後所生

并以 縣居金豆隱得處 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7>

雍正十年三月十七日 泰仁縣立案

右文所付婢翠亂得後一所生□字□辰生 二所生奴已字戊

戌生 三所生奴三字辛丑生 連香三所生婢加卜丙戌 同婢

遺腹兒等 價錢二十兩捧上後 財主辛始甲亦曹夏俊處

右奴婢後所生并以 永永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8>

乾隆八年四月廿日 靈光郡立案

右文付婢仁丹一所生奴萬貴 二所生奴萬石等二口良中

價錢拾兩捧上爲遣 郡居辛生員奴禮同處放賣

的實印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9>

乾隆九年正月 日 茂長縣立案

右文付婢禮丹得後所生婢譽德年

甲辰 四所生婢者斤延年己卯生等 價折錢文

貳拾壹兩捧上 後所生并以 同知李□□

處永永放賣的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10>

乾隆十三年三月 日 高敞縣立案

右文付婢禮丹所生婢貴丹一所生婢貴龍年三十一戊

辰生身果 同婢一所生婢鄭德年五甲子生身二口乙 高

敞居姜範一處 永永放賣爲遣 貴丹二所生婢貴禮

年二十六癸卯生身乙 高敞姜運一處 放賣的實  
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11>

乾隆十四年二月 日 咸平縣立案

右文付婢玉今三所生奴甘金良

妻并產婢金德伊一所生奴口

元身一口乙 後所生并以 群居金弼

慶處 永永放賣印

縣監[押]

<背頃斜給立案 12>

乾隆十四年二月 日 咸平縣立案

右文付婢玉今三所生奴甘金良妻并產婢金

德伊二所生奴罔山身一口乙 後所生并以 群

居金弼慶處 永永放賣印

縣監[押]

<背頃斜給立案 13>

乾隆十五年三月 日 靈光郡斜只

右文付婢小娥得後一所生婢軟順年

己酉 同婢一所生婢永愛年己亥 孕

胎三朔 亦捧價 放賣於金元起處

的實 依例斜給印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14>

乾隆十七年三月二十日 靈光郡立案

右文付奴白伊良妻所產二所生婢注隱乞伊

一所生青龍 二所生甘龍等二口 價錢玖兩

上 後所并以 幼學辛命凝處放賣的實

行郡守[押]

<背頃斜給立案 15>

乾隆十八年二月 日 潭陽府立案

右文付 婢道介一所生婢愛真年三十八丙申 同婢一所生奴貴

童年十九乙卯 二所生婢貴香年三己巳生身三口乙 府

居朴香住處捧價 後所生并以 永永放賣的實印

行府使[押]

<背頃斜給立案 16>

嘉慶十四年六月 日 靈光郡立案

右文付婢仁奉所生少大一所生婢阿望介

年乙亥 一所生奴□□年乙未 二所生婢得禮

年丁巳 合三口身 妹夫羅元續前 放賣的

實印

行郡守[押]

### 1-1-7) 1618년 신장길辛長吉 처妻 이씨李氏 별급문기

【해설】 1618년 신장길의 처 이씨가 아들 신용망의 사마시 합격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노비 2구와 논 20두락지를 별급하였다. 증인이 4명이나 되는 것은 축하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별급을 행하였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머니가 별급을 행했으므로 현관顯官 등의 권위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만력 46년(1618, 광해군10) 무오 2월 13일, 아들 생원 응망應望에게 별급하는 명문이 문기는 별급하는 일이다. 아들이 5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성장하였는데, 겨우 약관의 나이에 사마시에 합격하니 어미된 정으로 기쁨과 감격이 교차하였다. 지금 축하연을 벌이게 되니 전례前例에 따라 별급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담양潭陽에 사는 비婢 내은덕內隱德의 1소생 비 내은춘內隱春, 비 막지莫只의 1소생 노 이산里山 및 동답洞畓 20두락지를 영구히 별급한다. 후소생도 아울러서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고故 유학 신장길辛長吉 처 이씨

어모장군 전前 행行 용양위부사과 고부천高傳川

동생남同生甥 유학 이락李洛 [착명]

성균진사 정준鄭浚 [착명][서업]

생원 삼촌질 신용순辛應純 [착명]

필집 족인族人 진사 신유일辛惟一 [착명]

萬曆四十六年戊午 二月十三日 子生員應望亦中 別給明文

右文爲別給事 子亦五歲喪父 艱苦成長 年纔弱冠

幸參司馬 爲母之情感喜交并 今當慶席 不可不依例  
 別給是乎等乙以 潭陽居婢內隱德一所生婢內隱春 婢莫只  
 一所生奴里山 及洞雀貳拾斗落只庫并以 永永別給  
 爲去乎 後所生并以 鎮長使用事

- 財主故幼學辛長吉妻李 氏
- 禦侮將軍前行龍驤衛副司果高傳川
- 同生甥幼學李洛 [着名]
- 成均進士鄭浚 [着名][署押]
- 生員三寸姪辛應純 [着名]
- 筆執族人進士辛惟一 [着名]

### 1-1-8) 1624년 신장길 처 이씨 별급문기

【해설】 1624년 신장길의 처 이씨가 아들 신용망의 문과급제를 축하하면서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생원시에 입격한 지 6년만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생원시 축하 별급과 비교하여 많은 재산이 지급되었고, 영광군수를 비롯하여 명망있는 3명의 증인을 참여하게 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천계 4년(1624, 인조2) 갑자 11월 20일 아들 권지승문원부정자 종사랑 응망應望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어 어렵게 길러왔는데 오늘날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희비가 교차한다. 지금 마땅히 축하연을 벌이면서 별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담양潭陽에 거주하는 비막지莫只의 2소생 노 이금이里金伊, 3소생 비막금莫歙, 4소생 노 이복里卜 및 한자寒字 답畚 15두락지 57복卜과, 장자藏字 답 25두락지 61복과, 래자來字 전田 10두락지 19복 3속을 영구히 허급한다. 후소생과 아울러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 재주 모母 이씨
- 통훈대부 행 영광군수 정鄭 [작명][서업]
- 통훈대부 행 광주제독관光州提督官 한韓 [작명][서업]
- 통훈대부 전前 행 광양현감 오吳 [작명][서업]

天啓四年甲子 十一月二十日 子權知承文院副正字從仕郎應望  
 處別給明文

右明文事段 汝亦 生纔三歲 遽失庭訓 艱難鞠育 得至今日登第之日  
悲喜交極 今當慶席 不可無別給是乎等乙以 用潭陽居婢莫只二所生奴  
里金伊 三所生婢莫今 四所生奴里卜 及寒字畚十五斗落只五十七卜庫  
果 藏字畚二十五斗落只六十一卜庫果 來字田十斗落只十九卜三束庫乙  
永永許給爲去乎 後所生并以 鎖長使用事

財主母 李 氏

通訓大夫行靈光郡守鄭 [着名][署押]

通訓大夫行光州提督官韓 [着名][署押]

通訓大夫前行光陽縣監吳 [着名][署押]

### 1-1-9) 1624년 신장길 처 이씨 별급문기

【해설】 1624년 신장길의 처 이씨가 아들 신용망의 문과급제를 축하하면서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sup>23</sup> 노비 5구와 논 40두락지, 밭 10두락지 등 많은 재산이 별급되었다.

천계 4년(1624, 인조2) 갑자 11월 20일 아들 권지승문원부정자 종사랑 응망應望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지 5년만에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어 어렵게 길러왔는데 오늘날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희비가 교차한다. 지금 마땅히 축하연을 벌이면서 전례前례대로 별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담양潭陽에 거주하는 비 막지莫只의 2소생 노 이금이里金伊, 3소생 비 막금莫今, 4소생 노 이복李卜, 비 와질서비歐叱西非의 1소생 비 내은이內隱伊, 2소생 비 내은월內隱月<sup>24</sup> 및 한자寒字 답畚 15두락지 57복과, 장자藏字 답 25두락지 61복과, 래자來字 전田 10두락지 19복 3속을 영구히 허급한다. 후소생과 아울러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母 이씨 [도서]

통훈대부 행 영광군수 정鄭 [착명][서압]

통훈대부 행 광주제독관光州提督官 한韓 [착명][서압]

23 앞의 별급문기와 발급자, 수취자, 증인 및 필집, 작성일자가 동일하며 내용도 거의 동일하나 별급한 노비명과 토지내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앞의 별급문기는 재주財主의 서명이 없으나, 이 문기에는 서명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4명은 두 문기 모두 서명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문기를 초문기로 보기도 어렵고 왜 같은 내용의 별급문기가 두 번 작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24 비 와질서비歐叱西非 ~ 내은월內隱月 : 앞의 별급문기에는 없으나 이 문기에 보충된 부분이 비 내은이와 비 내은월 등 2구의 노비이다.

天啓四年甲子 十一月二十日 子權知承文院副正字從仕郎應望處

別給明文

右明文事段 汝亦 生纔五歲 遽失庭訓 艱難鞠育 得至今日

登第 悲喜交極 今當慶席 不可不依例別給是乎等以 用潭

陽居婢莫只二所生奴里金伊 三所生婢莫今 四所生奴李卜 婢臥叱西非一所生婢

內隱伊 二所生婢內隱月果 及寒字番十五斗落只五十七卜庫果 藏字番二十五

斗落只六十一卜庫果 來字田十斗落只十九卜三束 永永別給爲去乎 後所生

并以 鎮長使用 爲乎乙事

財主 母李 氏 [圖書]

通訓大夫行靈光郡守鄭 [着名][署押]

通訓大夫行光州提督官韓 [着名][署押]

通訓大夫前行光陽縣監吳 [着名][署押]

筆執族人進士辛惟一 [着名][署押]

### 1-1-10) 1624년 이성異姓 삼촌숙三寸叔 이락李珞 별급문기

【해설】 1624년 외삼촌 이락李珞이 조카 신응망의 문과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노비를 별급한 문기이다. 신응망의 어머니 이씨가 별급할 때와 동일한 3명의 증인이 참석하고 서명하였다.

천계 4년(1624, 인조2) 갑자 11월 20일 이성異姓 3촌조카인 신급제新及第 신응망辛應望에게 별급하는 문기

이 별급을 하는 것은, 조카 응망應望이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가문의 명성을 떨 어뜨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소과에 합격했고 또 대과에 급제하여 외람되게 축하 연을 열었으니 희비가 교차한다. 이에 비 영춘永春의 2소생 노 언덕彦德(19세, 병오생)을 후소생과 아울러 별급하니, 훗날 자손 중 다른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기로 관 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주奴主 이성異姓 삼촌숙三寸叔 이락李珞 [작명][서업]

통훈대부 행 영광군수 정鄭 [작명][서업]

통훈대부 행 광주제독관 한韓 [작명][서업]

통훈대부 전前 행 광양현감 오똥 [작명][서업]



天啓四年甲子 十一月二十日 異姓三寸姪新及第辛應望處別給成文  
右別給事段 姪子應望亦 早喪慈父 不墜家聲 既中蓮榜 又  
折桂枝 忝在慶席 悲喜并至 婢永春二所生奴彥德年十九  
丙午生身乙 後所生并以 別給爲去乎 後次子孫中雜談隅有去乙  
等 此文記以告官辨正事

奴主異姓三寸叔李珞 [着名][署押]

通訓大夫行靈光郡守鄭 [着名][署押]

通訓大夫行光州提督官韓 [着名][署押]

通訓大夫前行光陽縣監吳 [着名][署押]

### 1-1-11) 1670년 계조모繼祖母 정씨丁氏 별급문기別給文記

【해설】 1670년에 신응망 처 영광정씨靈光丁氏가 손자인 신경룡에게 제위 명목으로 노비와 토지를 허여한 별급문기이다. 증인 2명을 모두 자신의 동생으로 세웠고, 필집 역시 친정 조카이다. 즉 자신의 제위를 별급한 것이므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문기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강희 9년(1670, 현종11) 경술 5월 27일, 손자 신경룡辛慶隆에게 허여하는 명문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조모가<sup>25</sup> 나이가 장차 60세로 노병老病이 날로 깊어지니 생사를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사망 후의 제위祭位를 생전에 처리해 두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신비新婢 영대水代의 1소생 비 갑생甲生과, 영대의 3소생 노 준이俊伊 합하여 2구와, 남죽사입평南竹沙入坪에 있는 기妓자 답畝 4두락지 소경所耕 ○○<sup>26</sup>복卜 ○속束을 함께 너에게 영구히 하여한다. 나중에 동생同生 자손 중에서 잡담하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재주 계조모繼祖母 정씨丁氏<sup>27</sup>[도서]

증인 동생同生 정현丁穗[착명]

증보 동생 정두丁耉[착명]

- 25 조모가 : 손자에게 별급하는 것이므로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조모가' 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지칭하였다.
- 26 '우'를 쓰고 그 이하를 공란으로 두었다. 따라서 10여복임을 알 수 있다.
- 27 계조모繼祖母 정씨丁氏 : 별급을 받는 손자 신경룡은 신응망의 손자인데, 신응망의 전실前室 부인이 낳은 장남 翊震의 맏아들이다. 신응망의 후실後室 부인이 영광정씨인데, 이 분재기의 재주財主이다. 영광정씨는 익진에게는 계모가 되며, 익진의 아들인 경룡에게는 계조모가 된다.

康熙九年庚戌 五月二十七日 孫兒辛慶隆處許與明文  
 右明文事段 祖母亦 年將六十 老病日深 生死難期乙仍于  
 身後祭位 生前不可不處置爲乎等以 新婢水代一所生  
 婢甲生身果 水代三所生奴俊伊並二口果 南竹沙入  
 坪伏在爲在妓番四斗落只 所耕十 卜 束  
 庫並以 汝身處永永許與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孫中雜談  
 爲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財主 繼祖母 丁氏[圖書]

證人 同生 丁櫨[着名]

證保 同生 丁料[着名]

筆執 三寸姪 丁壽一[着名]

### 1-1-12) 1689년 신경룡辛慶隆 처妻 박씨朴氏 별급문기

【해설】 1689년에 신경룡의 처 함양박씨가 장남 정화鼎和에게 그가 득남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노비를 별급한 문기이다. 뒷면에는 그로부터 3년 후 그 노비가 방매됨에 따라 새 주인에게 사급해 준 배탈 사급입안이 있다. 장남 구생久生에게 별급한다고 했으나, 구생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한 점과 득남했다고 한 점에서 구생이 정화임을 알 수 있다. 신정화는 6세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이 문서가 작성된 1689년에 아들 시태始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강희 28년(1689, 숙종15) 기사 정월 초10일, 큰아들 구생久生<sup>28</sup>에게 특별히 증여하는 문서<sup>29</sup>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네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다행히 장성하였고 또 다행스럽게도 아들을 낳으니 어미된 정으로 기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그러므로 선세先世로부터 전래해온 비 춘양春陽의 2소생 노 준일俊日(34세, 병신생) 및 4소생 노 태일太一(22세, 무신생)을 너에게 특별히 증여하니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母 박씨[도서]

28 구생久生 : 신경룡의 장남 정화鼎和(1668~1698)를 가리킨다.

29 특별히 증여하는 문서 : 일반적으로 '별급명문' 으로 쓰는데, 이 문서의 경우 '별증문 別贈文'으로 생소한 제목으로 문기를 작성하였다.

필집 차자次子 구세久世[작명]

【뒷면】

강희 31년(1692, 숙종18) 3월, 해남현 사급斜給

영암靈巖에 사는 박기원朴己元이, 비 춘양春良 2소생 노 준일後日(37세, 병신생), 4소생 노 태일太一(25세, 무신생) 2구를<sup>30</sup> 신생원辛生員 덕 노 돌세堧世에게 값을 주고 매득한 것이 사실임을 소장訴狀으로 올렸다. 이에 증인과 필집인 들을 조사한 후 후소생과 아울러 박기원에게 영구히 사급함.

행현감行縣監 [압]

康熙二十八年己巳 正月初十日 長子久生處別贈文

右文爲 汝亦早失所怙 幸得長成 又幸而

生男 爲母之情不可不志喜 故先世傳來

婢春陽二所生奴俊日年三十四丙申生身

及四所生奴太一年二十二戊申生身乙 汝矣

處別贈爲去乎 鎮長使用事

財主 母 朴氏[圖書]

筆執 次子 久世[着名]

【背面】

康熙卅一年三月 海南縣斜

靈巖居朴己元狀以 婢春良二所生奴俊日年三十七

丙申 四所生奴太一年二十五戊申生身二口乙 辛

生員宅奴丕世處 給價買得的實事 證筆人等處

推閱後 後所生并以 朴己元處 永永斜給印

行縣監 [押]

### 1-1-13) 1689년 신경룡 처 박씨 별급문기

(해설)1689년에 조모祖母인 신경룡辛慶隆 처박씨가 새로 태어난 장손 수룡首龍의 출생을 축하하고 자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기와, 20년 후 그 중 노비 1구를 방매하고 함평현에서 발급받은 배탈사급 입안이다. 같은 날 수룡의 아버지인 장남 구생久生에게도 득남을 축하하는 별급을 시행하였다. 즉 장

30 2구를: 앞에 별급문기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별급받은 2구의 노비를 모두 방매하였다.

남에게 득남을 축하하고, 태어난 장손에게도 축하 별급을 동시에 한 것이다.

기사년(1689, 숙종15) 정월 초3일, 장손 수룡<sup>31</sup>에게 특별히 증여하는 문서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지내면서 너의 아버지를 어렵게 길러 혼인시킨 후 단지 아들 낳기만을 바랐다. 너의 아버지가 이미 현명한 아내를 얻었으니 우리 집안의 큰 다행인데, 또 너를 낳았으니 우리 집안의 더욱 큰 경사이다. 남편을 여윈 사람으로서 이런 큰 경사를 보았으니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비 순양<sup>順陽</sup>의 5소생 비 운양<sup>雲陽</sup>(기묘생), 비 옥금<sup>玉金</sup>의 3소생 노 옥봉<sup>玉峯</sup>(기미생) 및 원당<sup>元堂</sup>의 ○자 답 6두<sup>斗</sup>를 특별히 증여하니, 오래도록 사용하고 갈아먹을 일이다.

재주 조모 박씨

필<sup>筆</sup> 차자<sup>次子</sup> 구세<sup>久世</sup> [착명]

### 【뒷면】

강희 48년(1709, 숙종35) 기축 10월 일, 함평<sup>咸平</sup>현 입안  
비 옥금<sup>玉金</sup>의 3소생 노 옥봉<sup>玉峯</sup>(기미생, 31세) 1구를 전문<sup>錢文</sup> 60냥을 받고 후소생과 아울러 오준<sup>吳俊</sup>에게 영구히 방매한 것이 사실이니, 예례에 따라 배탈<sup>背頓</sup><sup>32</sup>하는 일임.

관[압]

己巳正月初三日 長孫首龍

處別贈文

右文爲 吾亦早年寡居 艱養

汝父成婚之後 所望只是生男 汝

父既得賢妻 吾家一大幸也 又得生

汝 吾家尤大慶也 未亡之人 見此

大慶 不可不志喜 婢順陽五所生

婢雲陽年乙卯 婢玉今三所生奴

玉峯年己未身 及元堂坪

字畚六斗庫 特爲別贈 鎮

長使用耕食事

財主 祖母 朴氏

31 수룡<sup>首龍</sup>: 장손 수룡은 신경룡의 손자 시대<sup>始泰</sup>이다.

32 배탈<sup>背頓</sup>: 문기 앞면에 수록된 부분 중 일부를 특정한 사유로 인해 효주<sup>效周</sup>하고 그 사유를 뒷면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筆 次子 久世[着名]

【背面】

康熙四十八年己丑 十月 日 咸平縣立案

婢玉今三所生奴玉峯年三十一

己未生一口乙 錢文六十兩捧上爲

遣 後所生并以 吳俊玆處 永永

放賣的實是置 依例背頃事

官[着官][署押]

### 1-1-14) 1693년 신경룡 처 박씨 별급문기

【해설】 1693년에 신경룡辛慶隆 처妻 박씨朴氏가 장남 정화鼎和에게 연달아 아들 둘을 낳는 등 기쁜 일을 축하하며 노비 2구와 논 15두락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뒷면에는 이 중 노비 1구를 방매하고 영광 군수로부터 받은 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별급문기보다 뒷면 사급입안이 6년이나 앞서 작성되었으므로, 배탈사급입안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희 32년(1693, 숙종19) 계유 9월 초7일, 장자 정화鼎和에게 특별히 증여하는 명문이 명문을 작성한다. 네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성장하여 연달아 아들 둘을 낳았고 또한 모두 빼어나고 수려하니 어머니된 정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진주晉州에 사는 비 기화己化의 1소생 비 업랑業娘(27세, 정사생)과, 2소생 노 노랑老郎(11세, 계해생)과, 한사寒沙 님 15두락지를 너에게 영구히 허급하니, 마음껏 오래오래 사용할 일이다.

재주 母 박씨[도서]

필집 차자 정수鼎受[착명]

【뒷면】

강희 26년(1687, 숙종13) 정묘 2월 일 영광군

이 비 기화己化의 1소생 비 업랑業郎(21세, 정사생)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매득한 것이 확실한 경상도 진주에 사는 최철현崔鐵賢에게 법에 의거하여 사급斜給 함. 끝.

행군수

康熙三十二年癸酉 九月初七日 長子鼎和處別贈明文

右明文爲 汝亦早失所怙 艱難長成 連生二子 亦皆俊秀

爲母之情 不可不志喜 故用晉州居婢己化一所生婢業娘  
 年二十七丁巳生身果 二所生奴老郎年十一癸亥生身  
 果 寒沙番十五斗落只庫乙 汝矣處永永許給  
 爲去乎 任意鎮長使用事

財主 母 朴氏[圖書]

筆執 次子 鼎受[着名]

【背面】

康熙二十六年丁卯 二月日靈光郡

右婢己化一所生婢業郎年二十一丁巳生身壹口 後所生并以

買得的實爲在慶尙道晉州居崔鐵賢處 依法

斜給印

行郡守

## 1-1-15) 1693년 신경룡 처 박씨 별급문기

【해설】 1693년에 신경룡辛慶隆 처妻 박씨朴氏가 차남 정수鼎受에게 가정을 이룬 것을 축하하고자 노비 2구를 별급한 문기이다. 뒷면에는 이듬해에 이 중 노비 1구를 방매하고 영암군에서 받은 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강희 32년(1693, 숙종19) 계유 4월 초3일 차자次子 정수鼎受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네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길러졌는데 나이가 이  
 미 장성하여 벌써 가정을 이루니 어머니 된 정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다. 이에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비婢로서 영암靈巖에 거주하는 춘양春陽의 1소생 노  
 춘생春生(42세, 임진생) 및 양처良妻와 3소생 비 옥이玉伊(28세, 병오생)을 소생과 아울  
 러 너에게 영구히 허여하니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母 박씨[도서]

필집 장자 正化鼎和[착명]

【뒷면】

강희 33년(1694, 숙종20) 12월 일 영암군 입안

이 뒷면에 올라 있는 비 춘양春良의 3소생 비 옥이玉伊(30세) 및 춘생春生의 양처良妻 1  
 소생 비 일례日禮(20세), □소생 노 용이龍伊(16세) 2구를 값을 주고 매득한 것이 확실하  
 므로 장자狀者에게 관례에 따라 사급斜給 함.

행군수[압]

康熙三十二癸酉年 四月初三日 次子鼎受處別贈明文  
右明文事段 汝亦早失所怙 艱難鞠養 年既長  
成 奄有家室 爲母之情 不可不志喜 故祖上  
傳來婢靈巖居春陽一所生奴春生年四十二壬  
辰生身 及良妻并產果 三所生婢玉伊年二  
十八丙午生身乙 所生并以 汝矣處 永永許與  
爲去乎 鎮長使用事

財主 母 朴氏[圖書]

筆執 長子 鼎和[着名]

【背面】

康熙三十三年十二月 日 靈巖郡立案  
右背付婢春良三所生婢玉伊年三十 及春生良妻一所生婢  
日禮年二十 □所生奴龍伊年十六二口 准折價買得的實  
爲有等以 狀者處 依例斜給者  
行郡守[着官][押]

1-1-16) 1693년 신경룡 처 박씨 별급문기

【해설】 1693년에 신경룡의 처 박씨가 차남 정수鼎受에게 가정을 이룬 것을 축하하고자 노비 2구를 별급한 문기이다. 뒷면에는 노비 각각을 방매하고 받은 하동현 배탈사급입안 2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별급문기는 매우 흡사한 별급문기가 앞에 또 있다. 별급사유와 발급자, 수취자는 두 문기 모두 동일하나, 앞의 것은 약간 마멸된 부분이 있고 배탈사급입안이 1건만 수록되어 있다. 또 별급한 노비는 두 문기에서 1구만 일치하며, 1구는 서로 다르다. 두 문기 모두 뒷면의 배탈사급입안에 관에서 입押을 한 것으로 보아 원본으로 보인다. 같은 날짜에 왜 이와 같이 2점의 별급문기를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강희 32년(1693, 숙종19) 계유 4월 초3일 차자 정수鼎受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네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길러졌는데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 벌써 가정을 이루니 어머니 된 정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비婢로서 영암靈巖에 거주하는 춘양春陽의 3소생 비 옥이玉伊(28세, 병오생)와 하동에 사는 비 기환己還의 1소생 노 천립千立(정유생)

을 후소생과 아울러 너에게 영구히 허여하니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후 박씨[도서]

필집 장자 정화鼎和[작명]

【뒷면】

<배탈사급입안 1>

강희 37년(1698, 숙종24) 2월 일 하동현河東縣 빗기斜只

이 문기에 올라있는 천립(天立)<sup>33</sup>의 득후소생 비 □정□丁을 현縣에 사는 김두삼金斗三에게 후소생과 아울러 방매했으므로 사급함.

행현감[압]

<배탈사급입안 2>

강희 37년(1698, 숙종24) 2월 일 하동현

비 기환己還의 1소생 노 천립千立(42세, 정유생), □□□1소생 비 애구愛九(14세, 을축생) 2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현에 사는 이말석李耑石에게 방매함.

행현감[압]

康熙三十二癸酉年 四月初三日 次子鼎受處別贈明文

右明文爲 汝亦早失所怙 艱難鞠養 年既長成 奄

有室家 爲母之情 不可不志喜 故祖上傳來婢靈

巖居春陽三所生婢玉伊丙午生身果 河東居婢己還

一所生奴千立丁酉生身乙 後所生并以 汝矣處 永永許與

爲去乎 鎮長使用事

財主 母 朴氏[圖書]

筆執 長子 鼎和[着名]

【背面】

<背嶼斜給立案 1>

康熙三十七年 二月日 河東縣斜只

右文記付爲乎 天立得後生婢□丁身乙 縣居金斗三處 後所生并以 放賣斜只印

行縣監[着官][署押]

<背嶼斜給立案 2>

康熙三十七年二月日 河東縣

婢己還壹所生奴千立年四十二丁酉生 □□□壹所生婢愛九年十四乙丑生貳□ 後所生并以

33 앞면 분재기에는 千立



永永放賣於縣居李衺石處印  
行縣監[着官][署押]

### 1-1-17) 1694년 신경룡 처 박씨 별급문기

【해설】 1694년에 신경룡의 처 박씨가 차남 정수鼎受에게 가정을 이룬 것을 축하하고자 노비 5구를 별급한 문기이다. 같은 이유로 1693년에 두 차례나 정수에게 별급을 시행하였다. 같은 사유로 별급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강희 33년(1694, 숙종20) 갑술 3월 초3일 차자 정수鼎受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네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길러  
졌는데 오늘날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루니 감격과 기쁨이 교차한다. 별  
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업祖業<sup>34</sup>이 매우 적어 달리 덜어낼 것이 없으므로 조모 쪽  
에서 몫으로 받은 창원에 사는 동춘同春의 5소생 노 분손粉孫(52세, 계미생)과 6소생  
비 생춘生春(38세, 정유생)과 이 비의 1소생 비 망금亡今(10세), 2소생 노 만석萬石(10  
세)<sup>35</sup>, 3소생 비 ○○ 등을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허여하니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뎌 박씨[도서]  
필집 장자 정화鼎和[착명]

康熙三十三年甲戌 三月初三日 次子鼎受處別贈明文  
右明文事段 汝亦 幼失所怙 艱難鞠育 得至今  
日成立 且有室家 感喜交極 不可無別贈  
而祖業甚些 無他除出者 故祖母主邊  
衿得昌原居同春五所生奴粉孫年五十  
二癸未生身果 六所生婢生春年三十八丁酉  
生身果 同婢一所生婢亡今年十 二所生奴萬  
石年十 三所生婢 年 等乙 後所生并以  
永永許與爲去乎 鎮長使用事

34 조업祖業 :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재산을 조업 또는 조업전민祖業田民으로 부른다. 당대에 매득한 재산과 대비하여 부르는 말이다.  
35 2소생 노 만석萬石(10세) : 바로 앞에 1소생의 나이도 10세였으므로 2소생의 나이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간지干支는 쓰여있지 않아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財主 母 朴氏[圖書]

筆執 長子 鼎和[着名]

## 1-1-18) 1704년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 별급문기

【해설】신경릉辛慶隆의 차남인 신정수의 처 서산유씨가 남편의 조카인 시태始泰에게 노비 3구를 별급한 문기이다. 부모를 일찍 여의어 숙모 유씨와 모자지간처럼 보냈는데 무사히 장성하여 관례를 치른 것을 축하하고자 별급한 것이다.

조카 시태始泰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네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나를 어머니처럼 여겼고 나또한 너를 내 아들과 다름없이 보살펴왔다. 지금 네가 이미 장성했고 또 관례를 치렀으니 가업을 떨어뜨리지 않은 기쁨과 다행스러움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에 흑산도에 사는 비 명례命禮의 1소생 노 도적道赤, 2소생 노 ○○, 3소생 비 ○○ 3구를 전후소생과 아울러 문서를 작성하고 너에게 주어 내 뜻을 표하고자 한다. 너는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갑신년 8월 15일 숙모 유씨[도서]

필집 이성異姓 6촌 제弟 이사현李師賢[작명]

別贈姪子始泰處明文

右明文事 汝亦早失所怙 視吾

猶己母 吾亦撫汝無異己子 今汝

旣長且冠 不墜家業 其爲喜幸

何極 茲以黑山島居婢命禮一所生

奴道赤 二所生奴 三所生婢 三

口 前後所生并 成文給汝 以表余意

汝亦鎮長使用事

甲申 八月十五日 叔母 柳氏[圖書]

筆執 異姓六寸弟 李師賢[着名]

### 1-1-19) 1713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해설】 1713년에 신정수辛鼎受의 처 유씨가 아들 영룡永龍에게 무사히 성장한 것을 기쁘게 여겨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강희 52년(1713, 숙종39) 계축 1월 초2일 아들 영룡永龍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네가 일찍 아버이를 여의고 어렵게 길러졌는데, 나이가 점차 장성해지니 어머니 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성長城에 사는 비 연향烟香 2소생 노 춘학春鶴(갑술생)과 안음安陰에 사는 비 기환既還 2소생 비 기옥既玉(신축생)과 이 비의 3소생 노 기발既發(기유생)과 노 천립千立 3소생 비 부례芙禮와 비 기화既花 2소생 노 노랑老郎(임술생)과 관공關公 황자黃字 답畚 16두락 지 소경 23복 곳을 너에게 영구히 별급하니 마음껏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다.

재주 모母 유씨柳氏[도서]

필집 족질族姪 신경홍辛景泓[서업]

康熙五十二年癸巳 正月初二日 子永龍處別給明文

右明文爲 汝亦早失所怙 艱難鞠育 年漸長成

爲母之心 不可不志喜 故用長城居婢烟香二所生奴

春鶴年甲戌身果 安陰居婢既還二所生婢既玉年

辛丑生身果 同婢三所生奴既發年己酉生身果 奴千立三所

生婢芙禮年 生身果 婢既花二所生奴老郎年壬戌生身果 關公黃字畚壹六斗落只所耕二

十三卜庫乙 汝矣處永永別給爲去乎 任意鎮長使用事

財主母柳氏[圖書]

筆執 族姪辛景泓[署押]

### 1-1-20) 1720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해설】 1720년에 신정수辛鼎受의 처 유씨가 아들 시갑始甲에게 고향에 들어와 살게 되어 조상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시갑은 신정수의 양자로서 제사를 받을 유일한 아들이다. 따라서 별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증여한 재산의 양이 매우 많다. 특히 분급한 노비는 진주, 창원 등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가 많아 도망했거나 파락이 안되는 상태인 경우도

많은 듯하다. 뒷면에는 분재받은 노비를 방매하고 받은 배탈사급입안 6건이 수록되어 있다. 배탈사급 입안은 모두 1736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번 별급 이후 16년 만에 노비를 방매한 것이다.

강희 59년(1720, 숙종 46) 경자 11월 13일 아들 시갑始甲에게 별급하는 문기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타향을 떠돌다가 지금 고향에 들어  
와 편안히 살게 되었고, 네가 이미 장성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게 되었으니 옛  
일을 추억하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 과부로 산 이래 집안의  
도리가 크게 상하여 누대累代의 조상을 위한 일들이 적체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뜻  
이 있어도 미칠 수 없어 근심되는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느냐. 약간의 전민을 나눠  
주고, 오래전에 도망한 노비는 뭍을 나는 중에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처에  
있는 노비 이름을 뒤에 써 두니, 너는 힘을 다해 추심하여 앞으로 행할 위선爲先의 큰일  
에 사용하도록 하라. 훗날 만일 다투는 폐해가 있으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진주晉州에 사는 도망비 와질서비臥叱西非 1소생 비 내은이內隱伊, 2소생 비 내은월內隱  
月, 3소생 비 점이占伊, 내은월 1소생 비 내은화內隱化(기미생), 2소생 노 계문戒門(을축  
생), 3소생 노 계손戒孫(정묘생), 4소생 노 계승戒升, 5소생 비 계량戒良, 6소생 비 예옥禮  
玉(을해생), 7소생 비 예진禮眞(신사생), 창원昌原에 사는 비 막개莫介의 2소생 비 기화  
棄化, 비 춘매春梅 6소생 노 울산鬱山, 2소생 비 맹화孟化, 맹화 1소생 노 덕일德日, 2소생  
비 정춘丁春, 비 예춘禮春의 2소생 노 천일千日, 비 복례卜禮의 3소생 비 영옥永玉, 비 구  
춘九春 7소생 노 말춘謫春, 비 동춘同春 5소생 노 분손分孫, 노 계복戒卜의 양처가 낳은 1  
소생 비 연화連化, 2소생 노 승남承男, 3소생 노 승환承還, 4소생 노 승운承云, 비 애화愛  
化의 3소생 비 말량謫良, 장덕長德의 1소생 비 도개道介. 끝.

재주 모母 유씨[도서]

필 가옹家翁 재종질 신경침辛景沉[서업]

### 【뒷면】

#### 〈배탈사급입안 1〉

건륭 1년(1736, 영조12) 5월 일 진주목 배효背爻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내은월內隱月 2소생 노 계문戒門, 계문 2소생 비 시월十月, 시월  
2소생 노 사남士男, 사남의 양처병산 1소생 노 복발卜發(갑오생), 2소생 비 개춘介春(무  
술생), 3소생 비 개덕介惠(정미생) 등 3구를 매득한 장자狀者 이유주李有柱에게 추열推閱  
하여 사급斜給 함.

진주목사[업]

#### 〈배탈사급입안 2〉

건륭 1년(1736, 영조12) 5월 일 진주목 배효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내은월內隱月 소생 비 계랑戒娘, 계랑 3소생 비 종월從月, 종월 1소생 비 상월尙月(갑오생), 이 비의 1소생 비 월련月連(을묘생) 2구를 매득한 장자 민영운閔榮雲에게 추열하여 사급함.

진주목사업

<배탈사급입안 3>

건륭 1년(1736, 영조12) 5월 일 진주목 배효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내은월內隱月 1소생 비 예안禮安, 예안 3소생 비 일덕日德, 일덕 1소생 비 □□(을유생) 1구를 매득한 장자 정달진鄭達珍에게 추열하여 사급함.

진주목사업

<배탈사급입안 4>

건륭 1년(1736, 영조12) 5월 일 진주목 배효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내은월內隱月 2소생 계문戒門<sup>36</sup>, 계문 5소생 예안禮安<sup>37</sup>, 예안 1소생 비 일춘日春, 일춘 1소생 비 정금丁今 1구를 매득한 장자 정팽조鄭陞組에게 추열하여 사급함.

진주목사업

<배탈사급입안 5>

건륭 1년(1736, 영조12) 7월 일 성주목 빗기斜只

성주에 사는 신순창申舜昌의 소장訴狀으로, 유학 신시갑辛始甲에게 비 내은월內隱月 4소생 비 계랑戒娘, 이 비의 4소생 비 춘월春月, 같은 비의 2소생 비 상화尙化(정묘생), 5소생 비 덕랑德娘(무자생), 비 상화 1소생 비 명랑命娘(갑오생), 3소생 비 위창渭昌(무술생), 4소생 노 봉이奉伊(임인생), 5소생 노 학년鶴年(을사생), 노 봉선奉先(무신생), 비 명랑命娘 1소생 비 위심渭心(신해생), 비 덕랑 1소생 금덕今德(병진생) 등 9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추열推闡하여 사급斜給 함.

성주목사업

<배탈사급입안 6>

건륭 1년(1736, 영조12) 9월 19일 영광군 빗기

이 문기에 올라있는 비 내은월內隱月 1소생 비 내은화內隱化, 비 순량順良 1소생 노 잇금齡金, 2소생 비 식량息良, 노 계립戒立 1소생 노 예봉禮奉, 2소생 노 예발禮發, 3소생 노 가음리加音里, 4소생 비 월화月化, 비 영한永汗 2소생 노 일전日田, 비 영춘永春 1소생 노 팔생八生, 2소생 노 상발尙發, 2소생 비 영단永丹 등 11구를 값을 주고 매득하였기에 사급斜給함.

행군수[업]

36 계문戒門: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앞면 분재기에 따르면 노奴로 확인된다.

37 예안禮安: 같은 방식으로 예안은 비婢로 확인된다.

康熙五十九年庚子 十一月十三日 子始甲處別給文

右文爲 家翁棄世之後 流寓他鄉 今還古土

安堵 汝既長成可奉先祀 而追想疇昔 不

勝痛泣之心 寡居以來 家道大敗 累代爲

先大事 積滯已久 有意莫遂 悶切何道 略干

田民乙 分衿是遣 久遠逃亡奴婢段 全不舉

論於分衿中 而各在奴婢之名 後錄爲去

乎 汝其極力推得 以助來頭爲

先大事之地爲乎矣 日後如有紛競之弊是

去等 以此文下正事

晉州居逃亡婢臥叱西非一所生婢內隱伊 二所生婢內隱月

三所生婢占伊 內隱月一所生婢內隱化年己未 二所生奴戒

門年乙丑 三所生奴戒孫年丁卯 四所生奴戒升 五所生婢

戒良 六所生婢禮玉年乙亥 七所生婢禮眞年辛巳 昌原

居婢莫介二所生婢棄化 婢春梅六所生奴鬱山 二所生

婢孟化 孟化一所生奴德日 二所生婢丁春 婢禮春二所生奴千日

婢卜禮三所生婢永玉 婢九春七所生奴忝春 婢同春五所生奴

分孫 奴戒卜良產一所生婢連化 二所生奴承男 三所生奴承還 四所

生奴承云 婢愛化三所生婢忝良 長德一所生婢道介

印

財主 母柳 氏[圖署]

筆 家翁再從姪辛景沉[着名]

【背面】

<背頃斜給立案 1>

乾隆元年五月 日 晉州牧背爻

右文付婢內隱月二所生奴戒門 戒門二所生婢十月 十月二所生奴士男 士男良產一所生奴卜

發甲午生 二所生婢介春戊戌生 三所生婢介憲

丁未等三口乙 買得狀者李有柱處 推閱斜給印

晉州牧使[押]

<背頃斜給立案 2>

乾隆元年五月 日 晉州牧背爻

右文付婢內隱月所生婢戒娘 戒娘三所生婢從月 從月一所生婢尙月 甲午生 同婢一所生婢月

連乙卯生身二口乙 買得  
狀者閔榮雲處 推閱斜給印

晉州牧使[押]

<背頃斜給立案 3>

乾隆元年五月 日 晉州牧背交

右文付婢內隱月一所生婢禮安 禮安三所生婢日德 日德一所生婢□□乙酉生一口乙 買得狀  
者鄭達珍處 推閱斜

給印

晉州牧使[押]

<背頃斜給立案 4>

乾隆元年五月 日 晉州牧背交

右文付婢內隱月二所生戒門 戒門五所生禮安 禮安一所生婢日春 日春一所生婢丁今一口乙  
買得狀者鄭彭租處 推閱斜給印

晉州牧使[押]

<背頃斜給立案 5>

乾隆元年七月 日 星州牧斜只 州居申舜昌狀以 幼學辛始甲處 婢內隱月四所生婢戒良 同婢四  
所生婢春月 同婢

二所生婢尚化年丁卯生 五所生婢德娘年戊子生 婢尚化一所生婢命娘年甲午生 三所生婢渭  
昌年戊戌生 四所生奴

奴奉伊年壬寅生 五所生奴鶴年乙巳生 奴奉先年戊申生 婢命娘一所婢渭心年辛亥生 婢德娘  
一所生今德

年丙辰等九口身乙 後所生并以 推閱斜給印

星州牧使[押]

<背頃斜給立案 6>

乾隆元年九月十九日 靈光郡斜只

右文記付婢內隱月一所生婢內隱化 婢順良一所生奴齡金 二所生婢息良 奴戒立一所生奴禮  
奉 二所奴禮發 三所生奴加音里 四所生婢月化

婢永汗二所生奴日田 婢永春一所生奴八生 二所生奴尙發 二所生婢永丹等十一口乙 給價買  
得斜給印

行郡守[押]

## 1-1-21) 1720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해설】 1720년에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가 며느리의 임신을 기뻐하며 아들 윤掄에게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뒷면에는 3년 후 노비 1구를 방매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강희 59년(1720, 숙종46) 10월 초5일 아들 윤掄에게 별급함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신부를 얻은 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끝이 없었는데, 지금 또 하늘의 도움을 입어 아이를 가졌으니 경사롭고 행복함을 어찌 하겠는가. 이에 비 감지甘知 1소생 노 북원北元(정해생)과 비 사계四戚 1소생 비 북애北艾(무자생), 매득한 노 상필尙必(갑술생), 가락동歌樂洞에 있는 천자답天字畓 6두락지를 허여하니 오래도록 사환하고 갈아먹을 일이다.

재주 모후 유씨柳氏[도서]

필집 족질 신경침辛景沉[서업]

## 【뒷면】

옹정 1년(1723, 경종3) 3월 일 영광군

이 비 감지甘知 1소생 노 북원北元(정해생) 1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전錢 8냥을 값으로 받고 매득한 것이 확실하니 읍에 거주하는 손기성孫起成에게 법에 의거하여 사급함

행군수[업]

康熙五十九年庚子 十月初五日 子掄處別給  
右文爲 自得新婦之後 中心喜幸 罔有其極  
今又賴天之祐 方有胎異 私心慶幸 亦復如何  
茲將婢甘知一所生奴北元年丁亥身 婢□…□  
戊子生身 買得奴尙必甲戌生身果 歌樂  
洞伏在天字畓六斗落只 許與爲去乎  
鎮長使喚耕食事

財主 母 柳氏[圖書]

筆執 族姪 辛景沉[署押]

## 【背面】

雍正元年三月 日 靈光郡

右婢甘知一所生奴北元年丁亥生身一口

後所生并以 捧價錢捌兩後 買得的



實邑居孫起成處 依法斜給印  
行郡守[押]

### 1-1-22) 1731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해설】 1731년에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가 새 며느리 김씨를 맞이하면서 노비를 별급한 문기이다. 새 며느리 김씨는 신정수의 아들 시갑始甲의 처 선산김씨善山金氏이다. 아들 시갑의 첫 번째 처 서산유씨瑞山柳氏가 1730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이듬해에 두 번째 배필을 맞이한 것이다. 이 문기의 초반부에 집안에 화禍가 가혹했다고 한 데에는 첫 번째 며느리의 사망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기의 뒷면에는 별급받은 노비 중 2구를 방매하여 무장현으로부터 사급받은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옹정 9년(1731, 영조7) 신해 8월 초6일 신부 김씨에게 별급하는 명문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우리 집에 화禍가 가혹했음을 어찌 차마 말로 다 하겠는가. 지금까지 남아서 죽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신부新婦를 보게 되었으니 슬픔과 기쁨을 헤아리기 어렵다. 게다가 현명하고 고우니 가문의 경사가 또한 어떠하겠는가. 이에 곤답崑畚 8두락지 소경所耕 30복卜과 비 사계四戒 1소생 비 소수少受, 노 생이生伊 1소생 도석道石, 비 연향軟香 1소생 비 춘례春禮의 1소생 노 세종世宗, 2소생 노 기종己宗, 3소생 노 삼종三宗, 연향 3소생 비 춘덕春德 등을 후소생과 아울러 너에게 별급하니 오래도록 사환할 일이다.

재주 모 유씨柳氏[도서]

필 가옹 동성삼촌질 신경침辛景沉[서압]

【뒷면】

건륭 9년(1744, 영조20) 2월 16일 무장현 사급

이 문기에 올라있는 노 도석道石의 양처병산 비 매이每伊(31세, 갑오생)와 이 비의 1소생 노 상남尙男(6세, 기미생) 2구를 박씨에게 방매하였음.

현감[압]

雍正九年辛亥八月初六日 新婦金氏處別給明文

右文爲 吾家禍酷 尙忍言哉 到此餘生不死 今

日得見新婦 悲喜難量 而矧且賢美 家門之

慶 亦復如何 茲將崑畚八斗落只所耕三十卜庫

果 婢四戒一所生婢少受 奴生伊一所生道石 婢軟香一所生婢春禮一所

生奴世宗 二所生奴己宗 三所生奴三宗 軟香三所生婢  
春德等 後所生并以 汝矣處別給爲去乎 鎮長  
使喚事

財主 母 柳氏[圖書]

筆 家翁同姓三從姪 辛景沉[署押]

【背面】

乾隆九年二月十六日 茂長縣斜給

右文付奴道石良妻并産婢每伊年三十一甲午生 同婢一所生奴

尙男年六己未生身二口乙 朴氏處放賣印

縣監[押]

### 1-1-23) 갑술년 부父 별급문기

【해설】 갑술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한 문기이다. 받는 사람을 장남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별급문기로 볼 수 있으나, 내용 중 '뭇으로 나누어 준다'고 표현한 데에서 분깃문기의 특징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작성시기도 갑술년 이외에는 정보가 없다.

장자에게

가양평加樣坪에 있는 금자답金字畓 4두락지 6야미 소경 ○부 ○속을 뭇으로 나눠주니,  
영구히 갈아먹고 이 문기로 빙고할 것

갑술 2월 13일 부父[서업]

長子處

加樣坪伏在金字

畓四斗落只六夜

味所耕負束庫乙

分衿以給 永世耕

食 而以此亦爲憑考

次

甲戌 二月十三日 父[署押]

### 1-1-24) 1709년 신정수 처 유씨 노비 상환문기償還文記

【해설】 1709년에 신정수辛鼎受의 처 서산유씨瑞山柳氏가 장질인 신시태辛始泰의 처 장택고씨長澤高氏의 노비를 속신해 주고 그 댓가를 받아썼다가 다른 노비로 상환하는 문기이다. 발급문기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빌렸던 노비를 갚는 상환문기로 볼 수 있다. 가족간에 이처럼 재산을 빌려주고 갚으면서 정식 명문을 작성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뒷면에 해당 노비의 소생을 방매하고 발급받은 배탈사급 입안이 수록되었으나, 발급 연도와 발급한 관청 명칭이 빠져 있다.

강희 48년(1709, 숙종35) 기축 3월 25일 장질부長姪婦 고씨에게 주는 명문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지난 겨울 장자長子의 상喪을 당하고 몸을 상한 나머지 상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으므로 장질長姪 신시태辛始泰가 별득別得한 옥금玉金 1소생 노억봉億奉 1구에게 속신을 허락하고 팔아 썼으니, 남편이 몫으로 받은 옥금玉金の 3소생 노 감금甘金을 대신 지급하고 문서를 작성한다. 후소생과 아울러 오래도록 사환하되, 훗날 만약 다른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노주奴主 삼촌숙모 유씨柳氏[도서]

필筆 신경홍辛景泓[서업]

#### 【뒷면】

이 문기에 올라있는 노 감금甘金の 양처가 낳은 비 태진太眞 4소생 비 막상莫上(13세, 신축생) 1구를 장자狀者 박이동朴以東이 매득한 것이 확실함.

행군수[업]

康熙肆拾捌年己丑 三月二十五日 長姪婦高氏處明文

右文爲 去年冬 慘遭長子之喪 積敗之餘 喪需乙 無路辦備乙仍于 長姪辛始泰別得玉今一所生奴 億奉身一口乙 許贖賣用是如乎 家翁衿得玉今三 所奴甘金身乙 代給成文爲去乎 後所生并以 鎮長 使喚爲乎矣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奴主三寸叔母 柳氏[圖書]

筆 辛景泓[署押]

#### 【背面】

右文付奴甘金良妻婢太眞四所生婢莫上  
年十三辛丑生身一口 狀者朴以東買得的實  
印

### 1-1-25) 1609년 이극벌李克櫟 증여문기

【해설】 1609년에 신씨 집안의 사위 이극벌이 제사유행에서 빠지기 위해 처남인 신용망에게 제사조를 지급한 문서이다. 보통 별급문기로 분류를 하지만 재산 상속보다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납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16세기에는 이와 같이 사위들이 처가 제사를 반납하면서 동시에 봉사조로 재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다른 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만력 37년(1609, 광해1) 기유 1월 4일 처남 신용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처가의 제사를 먼 곳에서 마련하여 보내기가 어려우므로 처변에서 묵으로 받은 비 막개婢莫(52세, 무오생)와 장하답場下畝 8두락지 등을 처부모 기제 및 사명절 제사조로 영구히 허급한다. 훗날 다른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재주財主 자필 충의위 이극벌李克櫟 [착명][서압]

萬曆三十七年己酉 正月四日 妻甥辛應望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妻家祭祀 遠路辦送爲難  
仍于 妻邊衿得婢莫介五十二戊午生身 及場下畝八  
斗落只等乙 妻父母忌祭及四明節<sup>38</sup> 掃墳祭條以  
永永許給爲去乎 後次雜談隅有去乙等 此文記以 卞  
正事

財主 自筆 忠義衛 李克櫟[着名][署押]

### 1-1-26) 1609년 정제원丁濟園 증여문기

【해설】 1609년에 신씨 집안의 사위 정제원丁濟園이 제사유행에서 빠지기 위해 처남인 신용망에게 노비를 증여한 문서이다. 위의 이극벌 증여문기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극벌은 ‘영구히 허급’ 한다고 밝혔으나, 이 문기에서 정제원은 ‘기한期限 허급’이라 표현하

38 四明節：四名節의 오기이다.

여 영구히 재산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16세기에 사위들이 처가에 재산과 제사를 반납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만력 37년(1609, 광해군1) 기유 3월 10일 처남 신응망辛應望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처변妻邊의 기일忌日과 사명절四名節 제사를 일일이 거행하기  
어려우므로 처변에서 온 비 신덕申德의 1소생 깃득노衿得奴 난이難伊(1세, 무신생)를 기한  
동안 허급하는 일이다. 나중에 잡담하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 유학 매부妹夫 정제원丁濟園[작명][서업]

萬曆三十七年己酉 三月初十日 妻甥辛

應望處明文

右明文事段 妻邊忌日四名節祭

祀 一一舉行難爲乙仍于 妻邊

婢申德一所生衿得奴難伊年一

戊申生身乙 期限許給爲去乎 後

次雜談爲去等 此文以告官卞正事

自筆 幼學 妹夫 丁濟園[着名][署押]

## 1-2. 시장柴場과 가사家畬의 매매

### 1-2-1) 1584년 임인수林寅洙 시장柴場 매매명문

【해설】 1854년에 임인수林寅洙로부터 대제면大梯面 소재 柴場을 매득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 문서이다. 매득한 이의 이름은 공란으로 두고 유학이라는 직역만 썼다.

함풍 4년(1854, 철종5) 갑인 12월 9일 유학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해오던 것을 묵으로 받아 예취세取하다가 빚이 많아  
값을 길이 없으므로 대제면大梯面 광대촌廣大村 뒤편에 있는 전자轉字 시장柴場 20부負  
예취할 수 있는 곳을 전문錢文 3냥 5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수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단서가 있  
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밝힐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학 임인수林寅洙 [서업]  
증필證筆        유학 정혁원鄭赫源 [서업]

咸豐肆年甲寅 十二月初九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衿得刈取是如可  
私債許多 備報無路 故伏在大梯面  
廣大村後 轉字柴場二十負刈取應乙  
價折錢文參兩伍錢 依數捧上爲遣 右  
人前 以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詳<sup>39</sup>之端是去等 以此文記  
告官憑考事

柴場主    幼學林寅洙 [署押]  
證筆      幼學鄭赫源 [署押]

39 爻詳: 효상爻象으로 쓰는 것이 맞다.

## 1-2-2) 1789년 신희묵辛希默 시장 매매명문

【해설】 1789년에 5촌 조카 신희묵辛希默이 종계장宗稷丈 신태성辛兌成에게 입석촌立石村 주변에 있는 시장柴場과 밭 등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신씨 집안 종가가 있는 지역의 시장이므로 타 성他姓에 팔지 않고 종계장에게 방매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54년(1789, 정조13) 기유 11월 21일 종계장宗稷丈 5촌숙 신태성辛兌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입석촌立石村 뒤편 우자雨字 시장 30복卜 예취제取하는 곳과, 같은 자호의 전田 1두락 소경所耕 ○복 ○속과, 같은 자호의 대전垡田 5승락 소경 2작作 ○복 ○속 곳을 전문 11냥으로 값을 정하여 그 수만 큼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여기에서 본문기는 잃어버렸으므로 내주지 못함

시장 전주田主 5촌질 신희묵辛希默[서업]

증證 4촌제弟 신천묵辛天默[서업]

필筆 유학 정달천丁達天[서업]

乾隆五十四年己酉 十一月二十一日 宗稷丈五寸叔

辛兌成前明文

右文爲事 切有緊用處 立石村後雨字柴

場三十卜刈取處臥 同字田一斗落所

耕 卜 束果 同字垡田五升落所耕二

作 卜 束庫 價折錢文拾壹兩依數

捧上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

去等 以此下正事

此亦中 本文記段 迺失故不得出給次

柴場田主五寸侄辛希默[署押]

證 四寸弟辛天默[署押]

筆 幼學 丁達天[署押]

## 1-2-3) 1792년 김명철金明喆 시장 매매명문

【해설】 1792년에 양시원梁時元이 김명철金明喆로부터 방축 건너편에 있는 시장柴場을 매득할 때 작성된 매매명문이다. 신씨 집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신씨 집안이 시장을 매득할 때 구문기로 달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기이다.

건륭 57년(1792, 정조16) 임자 11월 12일 양시원梁時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쓸 데가 있어서 방축防築 건너에 있는 시장柴場을 전문 5냥에 값을 매겨 그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본문기는 전부터 없었으므로 내어 줄 수 없으니 훗날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김명철金明喆[서업]

필집 이동옥李東玉[서업]

乾隆伍拾柒年壬子 十一月十二日 梁時元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伏在防築

越柴場庫乙 價折錢文五兩依數

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段 前無故不得出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卜正事

柴場主 金明喆[署押]

筆執 李東玉[署押]

## 1-2-4) 1792년 오상준吳相準 시장 매매명문과 1793년 진광進光 수기手記

【해설】 두 건의 문기가 점련되어 있다. 앞의 문기는 1792년에 오상준吳相準이 신생원에게 영광 도내 면道內面에 있는 시장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뒤의 것은 그 이듬해인 1793년에 진광進光이라는 사람이 신생원에게 써 준 수기이다. 즉 진광으로부터 오상준이 시장을 매득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신씨 집안에 팔았다. 그러나 전前 주인 진광이 신생원에게 오상준으로부터 신씨 집안이 매득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건륭 57년(1792, 정조16) 임자 12월 28일 유학○○○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쓸 데가 있어서 전래하던 것을 몫으로 받은 영광靈光 도내



면道內面

곡다회촌曲多回村 앞 도남동道男洞에 있는 담자談字 진전시장陳田柴場 소경所耕 61부負 6속束을 전錢 4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오상준吳相準[서업]

【접련】

계축<sup>40</sup> 8월 13일 신생원辛生員에게 주는 수기手記

이 수기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 조부의 3형제가 몹으로 받은 담자談字 진전陳田 61복 卜 6속束을 오생원吳生員에게 방매하여 그대로 금호禁護하고 예취제取해 왔는데, 오생원택이 또 이 택에 방매하였으므로 진전을 영구히 바치고 시초柴草는 산지기가 하던 것처럼 예취하라는 뜻으로 수기를 작성하여 바치는 일이다. 훗날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기주記主 진광進光[서업]

필筆 장張 □□[서업]

乾隆伍拾柒年壬子 十二月二十八日 幼學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傳來衿得是在 靈光

道內面曲多回村前道男洞伏在談字陳田柴

場 所耕陸拾壹負陸束庫乙 價錢肆兩 依數捧

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柴場主 自筆 幼學 吳相準[署押]

【粘連】

癸丑八月十三日 辛生員前

手記

右手記事段 矣祖三兄弟

衿得談字陳田六十一卜六束

庫乙 放賣於吳生員 而

因爲禁護刈取矣 吳生員

宅又爲放賣於右宅 故

陳田永永納上 而柴草一依

40 계축 : 1793년(정조17)을 가리킨다. 1792년에 이어 1년만에 시장이 다시 매매되었음을 뜻한다.

山直例刈取之意 成手記

納上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下

正事

記主 進光[署押]

筆 張□□[署押]

### 1-2-5) 1793년 서팽석徐彭石 시장 매매명문

**[해설]** 1793년에 서팽석徐彭石이 시장을 방매하고, 매득한 신생원택辛生員宅 노부 수원水元에게 작성해 준 시장 매매명문이다.

건륭 58년(1793, 정조17) 계축 12월 16일 신생원택 노 수원水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몫으로 받은 시장柴場을 예초刈草하다가 쓸 데가 있어서 주록동走鹿洞에 있는 담자淡字 시장 13부負의 예초하던 곳을 전문 1냥 4전으로 값을 매겨 교역交易하고 매긴 만큼 받아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동생 자손<sup>41</sup> 중 만약 서로 다투는 폐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본문기는 도문기에 쓰여져 있으므로 내어주지 못함

시장주 자필 서팽석徐彭石 [상중이므로 서명하지 않음<sup>42</sup>]

乾隆伍拾捌年癸丑 十二月十六日 辛生員宅奴水元前明文

右明文爲事段 衿得柴場刈草是如可 要用

所致 走鹿洞伏在淡字柴場拾三負

刈草庫乙 價折錢文一兩五錢交易 依數

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同姓子孫中 若有相爭之弊

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本文記都文書在 故不得

出給

41 동생 자손 : 원문은 '동성同姓' 자손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 '동생同生' 자손이 맞을 것 같다. '동생자손' 운운한 표현은 분재기나 매매문기에 상용적으로 쓰인다.

42 [] : 보통 '상불착喪不着' 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죄불착罪不着'으로 되어 있다.

### 1-2-6) 1794년 양시원梁時元 시장 매매명문

【해설】 1794년에 양시원梁時元이 신생원에게 도내면道內面에 있는 시장을 방매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방매자 양시원은 자신이 매득한 시장을 방매한다고 썼는데, 양시원이 매득한 것은 1792년이고 당시 작성한 매매명문은 신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1-2-3번 문서) 바로 이번 매매가 성사될 때 구문기로 떨어져 온 것이다.

건륭 59년(1794, 정조18) 12월 19일 신생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나 자신이 매득했다가 쓸 데가 있으므로 도내면道內面 방축 건너 등성이에 있는 시장柴場 60복卜의 예취세取하던 곳을 전문 7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택에 구문서舊文書 1장과 함께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다른 말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양시원梁時元[서업]

필집 유학 신중현辛重鉉[서업]

乾隆伍拾玖年甲寅 十二月十九日 辛生員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是如可 要用

所致 伏在道內面防築越嶺柴

場六十卜刈取處乙 價折錢

文柒兩 依數捧上爲遣 右宅

前 舊文書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

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下

定事

柴場主 梁時元[署押]

筆執 幼學 辛重鉉[署押]

### 1-2-7) 1804년 이동신李東信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04년에 한량閔良 이동신李東信이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

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가경 9년(1804, 순조4) 갑자 3월 초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내가 매득하여 예취세取하다가 쓸 데가 있어서 하는 수없이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앞에 있는 장승평長承坪의 위자爲字 시장 절반을 전문 22냥  
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댁에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본문기는 다른 시장  
柴場이 함께 올라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으니, 훗날 만약 잡담하거든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한량閑良 이동신李東信[서업]

증인 유학 정운丁潤[서업]

필집 유학 신중권辛重權[서업]

嘉慶玖年甲子 三月初四日 前明文  
右明文爲事段 自己買得刈取是如  
可 要用所致 勢不得已 伏在道內面  
立石村前 爲字長承坪柴場絕半 價折錢  
文貳拾貳兩依數捧上爲遣 右宅  
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柴場并付 故不得出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卞  
正事

柴場主 閑良 李東信[署押]

證人 幼學 丁潤[署押]

筆執<sup>43</sup> 幼學 辛重權[署押]

## 1-2-8) 1814년 성규진成奎鎭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14년에 성규진成奎鎭이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득자  
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43 筆執: 원문에는 필집의 '집執' 대신에 '세勢'로 되어 있으나 '집'이 맞으므로 수정하였다.

가경 19년(1814, 순조14) 갑술 3월 2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몫으로 받아 예초제草하다가 쓸 곳이 있어서 영광靈光 도내면道內面 주록동走線洞에 있는 담자淡字 시장 15부負를 전문 2냥으로 값을 매겨 그만큼 받고 본문기는 다른 전답문서가 함께 올라 있으므로 내어주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자손 중 만약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 시장주柴場主 유학 성규진成奎鎭[서업]

嘉慶十九年甲戌 三月二十六日 明文前明文前<sup>44</sup>

右明文事段 父母前衿得刈草

是如 要用所致 靈光道內面走線

洞伏在淡字柴場拾五負刈草庫

以 價折錢文二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段 他田畚文書并符<sup>45</sup> 故不得出給

爲去乎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相爭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自筆 柴場主 幼學 成奎鎭[署押]

### 1-2-9) 1815년 이진우李辰友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15년에 이진우李辰友가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다.

가경 19년<sup>46</sup>(1815, 순조15) 을해 9월 18일 유학 ○○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몫으로 받아 예취제取하다가 여러번 흥년을 지내다보니 살아갈 방도가 없기에 하는 수없이 본군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에 있는 방축 건너편 들의 상자霜字 시장柴場 30부負를 전문 1냥 7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본문서

44 明文前: '○○前明文'이 맞다.

45 并符: '并付'로 쓰는 것이 맞으나, 음가가 같으므로 符를 잘못 쓴 것 같다.

46 가경19년: 가경 19년은 1814년이지만 '을해'라는 간지로 보아 가경20년인 1815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는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내어주지 못하고 이 데에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자손 중에 만일 서로 다투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증거로 삼아 조사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한량 이진우李辰友[서업]

증인 한귀남韓貴男[서업]

필집 박용하朴龍河[서업]

嘉慶拾玖年乙亥 九月十八日 幼學 明文

右明文事段 衿得刈取是如可 累經

大殺之年 則生活無路 故不得已

伏在本郡道內面立石里防

築越坪霜字柴場三十負

艾<sup>47</sup>取庫乙 價決錢文一兩七

錢 依數捧上爲遣矣 本文

書段 中間見失 故不得出給

而右宅前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子孫中如或有相

左之弊 則以此文記告

官憑考事

柴場主閑良李辰友[署押]

訂人韓貴男[署押]

筆執朴龍河[署押]

## 1-2-10) 1819년 이진관李振寬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19년에 이진관李振寬이 도내면道內面 방축 건너편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한 사람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가경 20년<sup>48</sup>(1819, 순조19) 기묘 2월 8일 유학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하는 것을 예취제取해 왔으나 이번 흉년을 당하여 살

47 艾: 재가 맞다.

48 가경 20년: '기묘' 라는 간지干支와 일치하려면 '가경 24년'으로 써야 맞다.

기가 어려워 하는수없이 방축 건너편 들 결자結字 시장柴場 40여 복卜을 전문 5냥 4전  
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댁에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이진관李振寬[서업]

증필訂筆 박용하朴龍河[서업]

嘉慶貳拾年己卯 二月初八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 傳來刈取矣

當此窮節 生道爲難 故勢出不

已 伏在防築越坪結字柴場四十餘卜

價折錢文五兩四錢 依數捧上 右宅

前永永放賣去爲乎<sup>49</sup> 日後以此

文記告官卜正事

柴場主李振寬[署押]

訂筆朴龍河[署押]

### 1-2-11) 1828년 한명희韓明禧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28년에 한명희韓明禧가 도동촌陶洞村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한 사  
람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도광 8년(1828, 순조28) 무오 3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해 온 시장柴場을 해마다 예초刈草하다가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본면 도동촌陶洞村 뒤편 시장 20부負를 전문 2냥 5전으로 값을 매  
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  
으면 이 문기를 증거로 삼아 바로잡을 일이다.

여기서 본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내어주지 못함

시장주柴場主 유학 한명희韓明禧[서업]

증필 재종형再從兄 한명희韓明和[작명]

49 去爲乎：‘爲去乎’이 맞다.

道光捌年戊午 三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柴場 年年刈草是如

可 稅米辦納無路 故伏在本面陶

洞村後柴場二十負刈處庫乙 價折

錢文貳兩伍錢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憑

考事

此如中 本文記中間

迺失 故不得出給事

柴場主 幼學 韓明禧[署押]

訂筆 再從兄 韓明和[着名]

## 1-2-12) 1834년 강현회姜賢會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4년에 강현회姜賢會가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이 문기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구문기를 반으로 쪼개어 준다'는 부분이다. 보통 구문기는 함께 주거나(并付), 또는 사유가 있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문기를 건네 주는 방식이 특이하다.

도광 14년(1834, 순조34) 갑오 7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하다가 쓸 곳이 있어서 도내면道內面 입석立石 방축 등성이의 시장柴場 20부負와, 입석촌 뒤편 10부를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여기서 구문기舊文記는 반으로 쪼개어 나눠 줌

시장주柴場主 유학 강현회姜賢會 상불착喪不着

증필 유학 김문철金文喆[서업]

道光拾肆年甲午 七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刈草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道內面立石防

築嶝柴場二十負庫果

立石村後十負庫乙價

折錢文參兩伍錢 依

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

卞正事

此亦中 舊文記割半分給事

柴場主 幼學 姜賢會 喪不着

證筆 幼學 金文喆[署押]

### 1-2-13) 1834년 신기복辛基復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4년에 신기복辛基復이 신항엽辛恒爨에게 도동陶洞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道光 14년(1834, 순조34) 갑오 2월 29일 신항엽辛恒爨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래하여 몫으로 받은 우자雨字 시장柴場으로 도동陶洞 안산案山 남쪽 경계를 나누는 곳에 있는 한 조각 시장을 방매하고자 전문 1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은 일이다. 훗날 자손 중 만약 다른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동성同姓 상인喪人 기복基復 불착不着

道光拾肆年甲午 二月二十九日 辛恒爨前 明文

右明文事段 傳來衿得雨字柴場

陶洞案山南邊分界之地壹片柴

場放賣次 價折錢文壹兩 依數捧上爲去

乎 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卞正事

柴場主 同姓喪人 基復 不着

## 1-2-14) 1835년 신응룡辛應龍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5년에 신응룡辛應龍이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도광 35년(1835, 헌종1) 을미 2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때移賣<sup>50</sup>하기 위해 해전蟹田 등성이의 한 조각 시장柴場을  
전문 3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일 소란하게 다투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신응룡辛應龍[서업]

道光十五年乙未 二月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移賣次 蟹田嶺

一片柴場 價折錢文參兩 依

數捧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紛紜之端 則以

此文記憑考事

柴場主 自筆 辛應龍[署押]

## 1-2-15) 1835년 이귀룡李貴龍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5년에 이귀룡李貴龍이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시장과 함께 소나무 3그루도 방매하였다.

도광 35년(1835, 헌종1) 을미 11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동생同生의 환곡還穀과 작전作錢을 변통하여 바칠 길이 없  
으므로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앞 안산案山에 있는 묵으로 받은 상자霜字 시장柴場  
70부負의 예취제取하던 곳 및 중송中松 3그루를 함께 전문 12냥으로 값을 매기고 매긴  
만큼 받아 이 데에 본문기와 함께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생기거  
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고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이귀룡李貴龍[서업]

50 이매移賣: 한 곳의 토지를 팔고 다른 곳을 구입할 때 그 사유를 주로 '이매' 라고 한다. 보통은 한자로 '移賣'라고 쓰나 '移賣'도 통용한다. 이매는 전답의 방매 사유로 주로 등장하는 편이다.

공원公員           한귀남韓貴男[서업]  
증인                신후곤辛厚坤[서업]  
풍헌風憲           정율丁(燾)[서업]  
필筆 김환유사檢還有司 신기용辛基瑢[서업]

道光拾伍年乙未 十一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 同生還穀與作錢辨納無路

故伏在道內面立石村前案山霜字

衿得柴場七十負 及中松三柱并以 刈

取處庫乙 價折錢文拾貳兩 依數

捧爲遣 右宅前 本文記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弊是

去等 以此文記告官卞正事

柴場主 李貴龍[署押]

公員 韓貴男[署押]

證人 辛厚坤[署押]

風憲 丁燾[署押]

筆 檢還有司 辛基瑢[署押]

### 1-2-16) 1838년 신영섭辛永燮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8년 신영섭辛永燮이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방매사유는 상채喪債 때문이며, 빚을 내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하고 추가로 돈을 받아 시장을 넘겨주고 있다. 금년까지는 방매자가 시초柴草를 베어 쓰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광 18년(1838, 현종4) 무술 7월 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매득하여 예취세取하다가 흉년을 당하여 상채喪債를 갚을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없이 영광靈光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 앞에 있는 우자雨字 시장柴場 40여복卜으로 전에 빚졌던 4냥을 본전과 이자 합하여 제하여 갚고, 또 전錢 1냥 5전을 보태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생기거든 이것을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신영섭辛永燮 상불착喪不着  
증證 이귀용李貴用[서압]

여기에서 금년 시초柴草는 판 사람이 예취세取하게 하며, 또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시장  
柴場이 문기에 함께 올라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음

道光拾捌年戊戌 七月初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買得刈取是如可 當此

歉年 喪債辦出無路 故不得已

靈光道內面陶洞村前雨字柴場四

十餘卜庫乙 前債錢四兩並本利除報

又添錢一兩五錢爲遣 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弊

是去等 以此憑考事

柴場主 辛永燮 喪不着

證 李貴用[署押]

此亦中 今年柴草段 賣

人刈取次 又本文記他柴場文

記並付 故不得出給事

### 1-2-17) 1839년 신영섭辛永燮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39년에 신영섭辛永燮이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신영섭은 전년前年에도 상채喪債를 갚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장을 방매한 사람이다.

도광 19년(1839, 헌종5) 기해 4월 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내가 매득하여 예취세取하다가 본면 장성長城 건너 등성이  
에 있는 시장柴場 40복卜을 전문 6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구문서舊文書 1장  
과 함께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생기면 이것으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신영섭辛永燮 상불착喪不着

道光十九年己亥 四月初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刈取是如可 伏在  
本面長城越嶝柴場四十卜庫乙  
價折錢文陸兩 依數捧上爲遣  
舊文書一丈並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  
之弊 以此憑考事  
柴場主 自筆 幼學 辛永燮 喪不着

### 1-2-18) 1840년 박석윤朴錫潤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40년에 박석윤朴錫潤이 무장면畝長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방매 사유는 세미稅米를 납부하기 위해서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도광 20년(1840, 현종6) 경자 3월 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본군 무장면畝長面 장등촌長嶝村 뒤편 북평北坪에 있는 시장柴場 30부負를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해 오다가 올봄 세미稅米가 많으므로 하는 수없이 이 시장을 전문 4냥 5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기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박석윤朴錫潤[서업]  
증인 김광철金光哲[서업]

道光貳拾年庚子 三月初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本郡畝長面長嶝村後北  
坪柴場三十負刈草厖 自己買  
得刈草是如可 今春稅米許多  
不得已右柴場價折錢文肆  
兩伍錢 依數捧用是遣 本文記并  
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  
象是去等 以此文記憑告事  
柴場主 自筆 朴錫潤[署押]  
證人 金光哲[署押]

## 1-2-19) 1840년 신항룡辛恒龍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40년에 9촌 숙부 신항룡辛恒龍이 족질 신광규에게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도내면 道內面의 상자霜字 및 우자雨字 시장으로 구문기 2장도 첨부하였다. 이 집안의 시장 매매문기 중 상자霜字와 우자雨字 자호는 비교적 자주 나온다. 시장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자주 매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광 20년(1840, 현종6) 경자 8월 17일 족질 신광규辛宏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쓸 곳이 있어서 내가 매득하여 예취세取하다가 도내면 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앞에 있는 상자霜字 시장柴場 70복卜과, 같은 면 도동촌陶洞村 앞에 있는 우자雨字 시장 40복을 전문 26냥 5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구문기 2장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학 9촌숙 신항룡辛恒龍[서업]

증필 유학 최치현崔致鉉[서업]

道光貳拾年庚子 八月十七日 族侄辛宏珪處明文

右明文事 要用所致 自己買得刈取是

如可 伏在道內面立石村前霜字柴場七

十卜庫果 同面陶洞村前雨字柴場四

十卜庫乙 價折錢文貳拾陸兩伍錢

依數捧上是遺 舊文記二丈并以永

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

端是去等 以此文記告官下定

事

柴場主 幼學 九寸叔 辛恒龍[署押]

證筆 幼學 崔致鉉[署押]

## 1-2-20) 1842년 신항룡辛恒龍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42년에 신항룡辛恒龍이 도내면 道內面 입석촌의 결자結字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신항룡은 이 집안 종손인 신광규의 9촌 숙부이다.

道光 22년(1842, 현종8) 임인 5월 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했다가 쓸 곳이 있어서 도내면道內面 입석立石  
마을의 안산案山 시장柴場 결자結字 40복卜을 전문 4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구문서 1장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자손 중 만약 서로 다투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서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신항룡辛恒龍[서업]

증인 한귀남韓貴男[서업]

道光二十二年壬寅 五月初九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道內面立石

邨案山柴場結字庫

肆拾卜刈取處乙 價折錢文

肆兩 依數捧用是遣 右人

前舊文書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

孫中如有紛紜之端 則以

此文憑考事

柴場主 自筆 幼學 辛恒龍[署押]

證人 韓貴男[署押]

## 1-2-21) 1850년 신광섭辛光燮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0년에 신광섭辛光燮이 도내면道內面 소재 치자致字 시장柴場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  
다. 방매 사유는 환채還債 때문이며,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道光 30년(1850, 철종1) 경술 12월 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하여 예취刈取해 오다가 환곡還穀을 값을 길이  
없어서 도내면道內面 도동陶洞의 안산案山에 있는 치자致字 시장柴場 20복卜을 전문 5  
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  
일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보이거든 이 문기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신광섭辛光燮[서업]

증필 신항일辛恒一[서업]

여기에서 구문기는 서실했으므로 내어주지 못함

道光三十年庚戌 十二月初八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刈取是如可 還穀

辦納無路 故伏在道內面陶洞案山致

字柴場二十卜刈取庫乙 價折錢文

伍兩 依數捧用是遣 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 則

以此文憑考事

柴場主 辛光燮[署押]

證筆 辛恒一[署押]

此亦中 舊文記段闕失 故

不得出給事

## 1-2-22) 1850년 이생원李生員 노奴 어남於南 전당명문典當明文

【해설】 1850년에 이생원李生員이 노奴를 시켜 예초처제草處와 전田 값 70냥 대신 선산先山을 전당典當하는 문기이다. 즉, 선산을 전당하고 그 대신에 시장과 밭을 매득한 것이다.

도광 30년(1850, 철종1) 경술 12월 6일 ○○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선산先山이 있는 향양동촌向陽洞村 남쪽땅 언덕에 있는데 예초제草하던 곳 1결락結落과 척자尺字 전田 3두락지를 함께 전문 70냥으로 값을 매겼으므로 하는 수없이 이 값 대신으로 전당典當하되 증조曾祖 분묘墳墓부터 사방 15보를 한계로 하여 이 사람에게 문기를 작성해 준다. 훗날 만약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있거나 문기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중에 빙고할 일이다.

시장전주柴場田主 유幼<sup>51</sup> 이생원李生員 노奴 어남於南[서업]

증필 유幼 나羅 상불착喪不着

道光參拾年庚戌 十二月初六日 明文

51 유幼 : 신씨 집안 명문문기류에 유幼가 나온 경우가 많은데 명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이 경우 '유幼 이생원' 이라고 했으므로 유학幼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右明文事 先山在於向陽洞村南土峙嶝刈  
草處一結落果 尺字田參斗落只併以  
折價錢文柒拾兩 故勢不得已右錢代  
典當是矣 自曾祖墳墓四方十五步爲  
限界爲遣 右人處成文爲去乎 日後若  
有相雜之弊 則自文記爻象是乎 則  
日後憑考事

柴場田主 幼 李生員奴於南[署押]

證筆 幼 羅 喪不着

### 1-2-23) 1851년 신항신(辛恒愼)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1년에 신항신(辛恒愼)이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서계(書契)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방매 사유는 관곡(官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환곡을 갚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함풍1년(1851, 철종2) 신해 12월 10일 서계(書契)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흉년을 당하여 관곡(官穀)을 마련해 바칠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없이 친산(親山) 등성이에 있는 시장(柴場) 25복(卜)이 도내면(道內面) 대도동(大陶洞) 뒤편 기슭에 있는데 2냥 6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본문기와 함께 이 계(契)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다투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학(幼學) 신항신(辛恒愼) 상불착(喪不着)

증필(證筆) 유학(幼學) 신항원(辛恒元)[서업]

咸豐元年辛亥 十二月初十日 書契前明文

右明文事 當此歉年 官穀辦納無路

故不得已親山嶝柴場二十五卜刈取處

在於道內面大陶洞後麓 而折價貳兩

陸錢 依數捧上是遣 本文記并以 右

契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紛

紜之端 則以此文記告官下正事

柴場主 幼學 辛恒愼 喪不着

證筆 幼學 辛恒元[署押]

## 1-2-24) 1851년 신응록辛應祿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1년 신응록辛應祿이 선산先山이 있는 등성이의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방매자, 증인, 필집이 모두 신씨이며, 매득자 역시 이름은 쓰여있지 않으나 신씨 일가로 추정된다. 선산先山과 가까운 곳이므로 신씨 일가끼리 매매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함풍1년(1851, 철종2) 신해 12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흉년을 만나 또한 연말이 되니 노친을 모시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하는 수없이 도내면道內面 부평富坪 윗편 가마加馬 등성이에 있는 우자雨字 시장柴場의 선산先山이 있는 등성이 20부負를 전문 5냥 8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다투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고 바로잡을 일이다.

이 중에서 구문기는 서실하여 내어줄 수 없음  
시장주柴場主 동몽童蒙 신응록辛應祿[서업]  
증證 당질堂侄 유학 신기수辛基壽[서업]  
필집 유학 신항일辛恒一[서업]

咸豐元年辛亥 十二月二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當此歉年 又臨歲末 老親之下 生活無路 故不得已 伏在道內面富坪上加馬嶺雨字柴場 先山嶺貳拾負刈取處 價折錢文 伍兩捌錢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紛紜之端是去等 以此文記告官卞定事  
此亦中 舊文記闕失 不得出給事

柴場主 童蒙 辛應祿[署押]  
證 堂侄 幼學 辛基壽[署押]  
筆執 幼學 辛恒一[署押]

## 1-2-25) 1852년 신항유辛恒維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2년에 신항유辛恒維가 도동촌陶洞村 주변 선산 등성이의 시장을 서계書契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앞에도 서계에 시장을 방매한 사례가 나왔고, 일가 끼리 매매한 사례도 나왔다. 모두 선산 주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거래라 할 수 있다.

합풍 2년(1852, 철종 3) 임자 2월 7일 서계書契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흥황이 든 봄을 맞아 세稅를 바칠 길이 없으므로 도내면  
道內面 대도동촌大陶洞村 뒤편에 있는 선산先山 등성이의 치자致字 시장柴場 20복卜을  
전문 5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계중稷中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다  
투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학 신항유辛恒維 상배착喪背着<sup>52</sup>

증인證人 이흥필李興必[서업]

필집 형兄 유학 신항일辛恒一[서업]

「시장가柴場價 5냥

송추가松楸價 4냥

합 9냥」<sup>53</sup>

咸豐二年壬子 二月初七日 書契前前<sup>54</sup>明文

右明文事 當此歉春 納稅無路 故

伏在道內面大陶洞村後先山嶺致字柴

場二十卜刈取處 價折錢文五兩 依

數捧上是遣 右稷中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紛紜之端 則以此文記告

官卞正事

柴場主 幼學 辛恒維 喪背着[背署]

證人 李興必[署押]

筆執兄幼學辛恒一[署押]

52 상배착喪背着 : 상중이므로 뒷면에 착압 하였다는 뜻이다. 실제 문기의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다. 상중에는 '상불착喪不着'이라고 쓰고 착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뒷면에 한 것이 특이하다.

53 「 」: 이 3행은 작은 쪽지에 써서 풀로 붙인 부분이다. 매매가로 되어 있는 5냥은 시장柴場의 값일 뿐이고 송추는 따로 가격을 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54 前前: 前 하나는 빼는 게 맞다.

柴場價五兩

松楸價四兩

合九兩

## 1-2-26) 1852년 신광섭辛光燮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2년에 신광섭辛光燮이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서계書契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함풍 2년(1852, 철종 3) 임자 2월 20일 서계書契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궁춘窮春을 맞이하여 세稅를 바칠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도내면道內面 대도동大陶洞 뒤편 산록에 있는 치자致字 시장柴場 10부負를 내가 매 득하여 예취세取하다가 전문 2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대로 받고 구문기 1장과 아울러 이 계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고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柴場<sup>55</sup> 유학 신광섭辛光燮[서업]

증證 유학 재종질 신기영辛基永[서업]

필집 유학 신항일辛恒一[서업]

咸豐貳年壬子 二月二十日 書契前明文

右明文事 當此窮春 納稅無路 故不得已伏在

道內面大陶洞後麓致字柴場十負刈取庫乙 自

己買得刈取是如可 價折錢文貳兩 依數捧用

是遣 舊文記一丈并以 右契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交象是去等 以此文記告官下正事

柴場 幼學 辛光燮[署押]

證 幼學 再從侄 辛基永[署押]

筆執 幼學 辛恒一[署押]

55 시장柴場: 시장주柴場主를 지칭한다.

## 1-2-27) 1854년 신생원택辛生員宅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4년에 신생원택辛生員宅이 무장면畝長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이거移去를 이유로 방매하고 있으나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함풍 4년(1854, 철종5) 갑인 2월 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본군 무장면畝長面 장등촌長嶝村 뒤편 북평北坪에 있는 시장柴場 30부負를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해 왔는데 이거移去하고자 이 시장을 전문 4냥 5전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본문기와 함께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신생원택辛生員宅[서업]

咸豐肆年甲寅 二月七日 處明文

右明文事 本郡畝長面長嶝村後

北坪柴場三十負刈草庫乙 自己

買得刈草是如可 移去次 右柴場

價折錢文肆兩伍錢 依數捧用是

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若有相左之端是去乎 以此文記

憑考事

柴場主 辛生員宅[署押]

## 1-2-28) 1854년 신항두辛恒斗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4년에 신항두辛恒斗가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신광규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이미 방매한 시장인데, 올해 세稅 부담 때문에 원래 가격에 추가로 값을 더해 재차 방매한 것이다. 방매자 본인도 재차 방매하는 것이 사리상 마땅치 않다고 표현하였으나, 신씨 일가끼리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함풍 4년(1854, 철종5) 갑인 10월 1일 유학 신광규辛光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선산先山의 시장柴場이 도내면道內面 도동陶洞 안산案山에 있는데 지난 무술년(1838, 헌종4)에 하는 수없이 이 사람에게 30냥으로 값을 매겨 받아쓰고 방

매하였다. 올해가 되니 세미稅米 대전代錢 10냥을 마련하여 바칠 길이 없어서 값을 쳐서 방매한 후 값에 다시 값을 더하는 것은 사리상 마땅치 않음에도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말하여 스스로 전문 10냥을 더해서 받아서 납세納稅하고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신항두辛恒斗[서업]  
증참證參 유학 신기영辛基永[서업]

咸豐肆年甲寅 十月初一日 幼學 辛宏珪前明文  
右明文事 先山柴場在於道內面陶洞案山 而  
去戊戌年良中 勢不得已 右人前折價參拾兩捧  
用放賣矣 當此今年 稅米代錢拾兩辦納無  
路 故折價放賣之後 價上加價 事理之不當  
而冒沒更說 自謂加文拾兩錢捧上納稅  
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  
象之弊是去等 以此文記告官下正事

柴場主 自筆 幼學 辛恒斗[署押]  
證參 幼學 辛基永[署押]

### 1-2-29) 1856년 김송강金松江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6년에 김송강金松江이 하진량면下陳良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함풍 6년(1856, 철종7) 병진 3월 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하진량下陳良 향양동촌向陽洞村 남쪽 물가 건너 토치동土峙洞에 있는 적자積字 시장柴場 50부負를 전문 13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구문기와 함께 신문기로 이 데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빙고할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김송강金松江[서업]  
증보訂保 장필혁張弼赫[서업]  
필筆 석규환昔圭煥[서업]

咸豐陸年丙辰 三月初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刈草是如可 緊有用處 故  
下陳良向陽洞村南水越土峙洞伏在積字柴  
場刈草五拾負廳 折價錢文拾參兩 依數  
捧上爲遣 舊文併以 新文一張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柴場主 金松江[署押]

訂保 張弼赫[署押]

筆 昔圭煥[署押]

### 1-2-30) 1858년 이자여李子汝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8년에 이자여李子汝가 하진량면下陳良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함풍 8년(1858, 철종9) 무오 3월 1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하다가 쓸 곳이 있으므로 하진량면下陳良面 양동촌陽洞村 남쪽에 있는 적자積字 시장柴場 40부負를 전문 11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구문舊文은 중간에 서실闕失하였으므로 신문新文 1장으로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학 이자여李子汝[서압]

증인 유幼 박성회朴聖會[서압]

필筆 유幼 김찬명金贊明[서압]

咸豐捌年戊午 三月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刈草是如可 要用  
所致 故下陳良面陽洞村南伏在積字  
柴場刈取肆拾負廳 價折錢文拾  
壹兩 依數捧上爲遣 舊文中間闕失  
故新文一丈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携二之端 則以此文憑考事

柴場主	幼學	李子汝[署押]
訂人	幼	朴聖會[署押]
筆	幼	金贊明[署押]

### 1-2-31) 1859년 박윤희朴允會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59년에 박윤희朴允會가 하진량면下陳良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시장은 방매하되, 송추는 올해 가을에 본주本主가 베어서 쓰도록 합의한 것이 특이하다. 시장과 송추 가격을 따로따로 매긴 사례가 있었듯이 시장과 송추 각각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풍 9년(1859, 철종10) 기미 3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내가 매득하여 예초刈草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하진량면(下陳良面) 양동촌(陽洞村) 남쪽 적자積字 시장柴場 20부負를 전문 4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되, 송추松楸는 돌아오는 가을에 본주本主가 베기로 하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구문舊文은 다른 것이 함께 올라 있으므로 신문新文 1장으로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만약 다른 생각을 하거든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박윤희朴允會[서업]
필집	석규환昔圭煥[서업]

咸豐玖年己未 三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刈草是如可  
 緊有用處 故下陳良面陽洞村南積  
 字柴場貳拾負刈取廳 價折錢文  
 肆兩 依數捧上爲矣 松楸段 還秋  
 本主拔伐之意 如是成文爲遣 舊文  
 他文併付 故新文一丈 右人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携貳之端 則以  
 此文記憑考事

柴場主 朴允會[署押]



### 1-2-32) 1863년 신진규辛縉珪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6년에 신진규辛縉珪가 도내면道內面 소재 시장을 계중稷中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으나 본문 중 계중에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씨 집안에서 서계書契에 시장을 방매한 문기가 앞에서 몇 종 나왔으므로 그와 유사한 문기로 판단된다.

광서 2년<sup>56</sup>(1876, 고종 13) 병자 12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받아 예취세取하다가 흥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도내면道內面 상마동上馬洞에 있는 노자露字 등성이의 시장柴場 15복卜을 전문 4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이 계중稷中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증거로 삼아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신진규辛縉珪[서업]

同治二年丙子 十二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刈取是如可  
當此歉年 生活無路 故伏在  
道內面上馬洞露字燈柴  
場十五卜刈取庫乙 價折錢  
文肆兩 依數捧用是遣 右稷  
中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爻象是去等 以此文記憑考事

柴場主 自筆 幼學 辛縉珪[署押]

### 1-2-33) 1863년 신항석辛恒石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63년에 신항석辛恒石이 관전官錢을 납부하기 위해 선산先山 국내局內的 시장을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56 광서 2년 : 원문은 동치 2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병자년이면 광서 2년이 맞다.

동치 2년(1863, 철종14) 계해 9월 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관전官錢을 마련하여 바칠 계책이 없어서 하는 수없이 선  
산先山 서당山書堂山 60복卜의 국내局內 한 등성이의 곳을 전문 20냥으로 값을 매겨 매  
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  
거든 이 문기를 증거로 삼아 바로잡을 일이다.

이 중 구문기舊文記는 도문서都文書에 올라 있으므로 내어 주지 못함  
시장주柴場主 유학 신항석辛恒石[서업]  
증필 유학 재종형 신항일辛恒一[서업]

同治二年癸亥 九月初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官錢辦納無計 不得已先  
山書堂山六十卜刈取 局內一嶺處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是遣 右  
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交  
象是去等 以此文記憑考事  
此亦中 舊文記付於都文書 故不得出給  
事

柴場主 幼學 辛恒石[署押]  
證筆 幼學 再從兄 辛恒一[署押]

## 1-2-34) 1870년 유재영庾載盈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0년에 유재영庾載盈이 무장현茂長縣 대제면大梯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동치 9년(1870, 고종7) 경오 7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하여 예초제草하다가 쓸 곳이 있어서 무장현茂  
長縣 대제면大梯面 용강촌龍崗村 앞에 있는 ○자字 시장柴場 5부負를 전문 2냥으로 값을  
매겨서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유재영庾載盈[서업]

同治九年庚午 七月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刈草是如可

要用所致 茂長縣大梯面龍崗村

前 字柴場伍負刈取庫乙 價折

錢文貳<sup>57</sup>捧上是遣 永永右人前放

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是去

等 以此文記憑考事

柴場主 自筆 幼學 庾載盈[着名]

### 1-2-35) 1870년 신진규辛縉珪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0년에 신진규辛縉珪가 무장면畝長面 소재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동치 9년(1870, 고종7) 경오 11월 1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받아 예취刈取하다가 묵은 선척조先尺租<sup>58</sup>를 마련하여 내놓을 길이 없기에 무장면畝長面 장호등長虎嶺에 있는 현자玄字 시장柴場 15복卜을 전문 4냥으로 값을 매겨 이 선척조 1석石 10두斗 대신 이 사람에게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이 중에서 구문기는 서실闕失했으므로 내어 줄 수 없음

시장주柴場主 자필 유학 신진규辛縉珪[서업]

同治九年庚午 十一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刈取是如可 舊

先尺租辦出無路 故伏在畝長面

長虎嶺玄字柴場十五卜刈取庫乙

價折錢文肆兩是遣 右先尺租壹

石拾斗代 右人前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爲去等 以此文記憑

考事

57 錢文貳: 뒤에 '냥兩'이 빠졌다.

58 선척조先尺租: 작인作人 등에게서 받은 지대地代 또는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출납 곡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선자조'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此亦中 舊文記闕失 故不得出給  
耳

柴場主 自筆 幼學 辛縉珪[署押]

### 1-2-36) 1877년 신문규辛文珪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7년에 신문규辛文珪가 도내면道內面 소재 선산先山에서 금양해 온 시장과, 저전苧田을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광서 3년(1877, 고종14) 정축 3월 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대홍년의 해를 맞이하여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 뒤편에 있는 선산先山の 금양禁養하는 곳 시장柴場 40복卜과, 본면本面 입석촌立石村 우자雨字 저전苧田 5승락 소경所耕 ○부 ○속을 아울러 8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柴場 저전주苧田主 유학 신문규辛文珪[서업]  
증필 종형從兄 신진규辛縉珪[서업]

光緒三年丁丑 三月初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當此大荒之年 生活無路  
故不得已伏在道內面陶洞村後先  
山禁養之地柴場肆拾卜刈取庫  
果 本面立石村雨字苧田五升落所  
耕 負 束庫乙 併折價捌兩 依數捧  
用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  
憑考事

柴場苧田主 幼學 辛文珪[署押]  
證筆 從兄 辛縉珪[署押]

## 1-2-37) 1877년 오치인吳致仁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7년에 오치인吳致仁이 무장茂長 대제면大梯面 소재 시장을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광서 3년(1877, 고종14) 정축 9월 1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선산先山이 무장茂長 대제면大梯面 안진鴈田 후록에 있는 데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해 왔으나 봉향奉享할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없이 금양禁養 내의 시장柴場 30부負를 동로東路부터 서변西邊까지에 한하여 전문 25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신문新文 1장으로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유幼 오치인吳致仁  
오상월吳相月  
증필 유幼 신취규辛寗圭

光緒三年丁丑 九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 先山嶝在於茂長太梯面  
鴈田後麓 而定山直守護矣 奉享  
之道未由 故不得已禁養內柴場參  
拾負廳乙 東路至西邊爲限 價折  
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新  
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交象 則以此文記憑考事

柴場主 幼 吳致仁  
吳相月  
證筆 幼 辛寗圭

## 1-2-38) 1888년 신항흔辛恒忻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88년에 신항흔辛恒忻이 재종손再從孫에게 도내면道內面 소재 2곳의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으나, 방매자가 자신을 재종조再從祖라고 관계를 밝혔으므로 일가 끼리 매매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안 시장 매매명문에 일가 또는 계중에 방매한 사례가

매우 많은데, 선산이 있는 곳을 방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꺼린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서 14년(1888, 고종25) 무자 10월 2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래해 온 시장柴場이 있는데 살 길이 없으므로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앞쪽 결자結字 시장 15부負와, 입석立石 북麓北麓의 우자雨字 시장 15부를 전문 10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신문新文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시장주柴場主 재종조再從祖 신항흔辛恒忻[서압]  
증인證人 상제喪制 정석연鄭錫衍 상불착喪不着

光緒十四年戊子 十月二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柴場是如 生活無路 故

伏在道內面立石村前結字柴場拾五

負庫果 立石北麓雨字柴場拾五負廳

乙 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憑

考事

柴場主 再從祖 辛恒忻[署押]

證人 喪制 鄭錫衍 喪不着

## 1-2-39) 계유년 모某 시장 증여문기 및 매매명문

【해설】 두 건의 문기를 점련해 놓았다. 앞의 문기는 계유년 4월 13일에 모某가 큰 딸에게 마촌면馬村面 소재 시장을 허급한 문기이다. 매매명문보다는 발급문기에 가깝다. 자신을 '부父' 라고만 썼기 때문에 발급자와 수취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뒤의 문기는 이로부터 나흘 뒤인 4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시장을 만사위에게 돈을 받고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자를 빙옹氷翁 천남天南 이라고 썼는데 실명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앞 문기의 발급자와 동일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명문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해 온 마촌면馬村面 장등長登 시장柴場 50복卜을 장녀

에게 허급하는 일임.

계유 4월 13일 부딿[서업]

【점련】

명문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전래해 온 마촌면馬村面 장등長登 시장柴場을 만사위에게 20냥으로 값을 매겨 방매하니,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계유 4월 17일 시장주柴場主 장인 천남天南[서업]

明文

右文事 傳來馬村面長登柴

場五十卜刈取處 長女許給事

癸酉四月十三日 父[署押]

【粘連】

明文

右文事 傳來馬村面長登柴場

長女婿許 折價二十兩 放賣爲去

乎 日後如有交象 以此憑考事

癸酉 四月十七日 柴場主 氷翁

天南[署押]

### 1-2-40) 1816년 이진백李鎭白 가대家垵 매매명문

【해설】 1816년에 이진백李鎭白이 신생원덕에 가대家垵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매득자로  
는 신생원을 대신하여 노 오봉五奉을 내세웠다. 매매 대상 가대의 소재지는 쓰여 있지 않다.

가경 21년(1816, 순조16) 병자 1월 18일 신생원辛生員 덕 노 오봉五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해주는 것은, 살고 있던 가대家垵 3칸 소경所耕 3복卜을 전문 1냥 5전으  
로 값을 매기고 매긴 만큼 받아쓰고 이 덕에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일 다른  
말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垵主 이진백李鎭白 상불착喪不着

증필 박용철朴龍哲 상불착

嘉慶二十一年丙子 正月十八日 辛生員

宅奴五奉前明文

右明文事 生居是如可 家垞三

間所耕三卜廳 價折錢文

壹兩五錢 依數捧用爲

遣 右宅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以此文告官下正事

家垞主 李鎮白 喪不着

訂筆 朴龍哲 喪不着

## 1-2-41) 1818년 김복남金福男 가사家舍 매매명문

【해설】 1818년에 김복남金福男이 3칸짜리 가사家舍를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 가사의 소재 지 등은 쓰여 있지 않다.

가경 23년<sup>59</sup>(1818, 순조18) 무인 8월 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내가 부주浮柱 3칸을 매득하여 여러 해 살다가 병자년에 선척先尺해 준 조租 10두斗를 바치지 못하였는데 이 때 대전代錢 2냥이므로 하는 수없이 로자露字 부주 3칸을 이 데에 명문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훗날 여력이 없으면 다시 환퇴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방매하겠다는 뜻이니 이 문기로 증거를 삼을 일이다.

가주家主 김복남金福男<sup>60</sup>

필집 박용하朴龍河[서업]

嘉慶貳拾玖年戊寅 八月初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浮柱三間 自己買得累年

居生是如可 當於丙子年 先尺租十斗乙

未能納上 則當此時代錢二兩也 故勢出

不已 伏在露字浮柱三間 右宅前成明

文爲乎矣 日後不有餘力 則更爲還

59 가경 23년: 원문은 '가경 29년'으로 되어 있으나 간지干支가 '무인' 이므로 23년이 맞다.

60 방매자의 이름만 쓰여 있고 서명이 없다.



退之意是去乃 若不然則永永放賣之意  
以此憑考事

家主 金福男  
筆執 朴龍河[署押]

### 1-2-42) 1825년 이치룡李治龍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25년에 이치룡李治龍이 영광군 도내면 소재 가사家畝와 가대家垵, 치자답致字畓 등을 신생원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5년(1825, 순조25) 을유 12월 26일 신생원辛生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뭇으로 받아 생활하고 갈아먹으며 예취세取하다가 쓸 곳  
이 있어서 입석촌立石村에 있는 노자露字 가대家垵 및 부주浮柱 5칸과 해전蟹田 등성이  
에 있는 시장柴場 40복卜과 방축 바깥 등성이 2곳의 시장 60복과, 부정평富井坪에 있는  
치자致字 답畓 2두락지 4야미 소경所耕 60복을 전문 30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  
고 이 데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다른 말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  
여 바로잡을 일이다.

여기에서 본문기는 모두 유실하여 내어줄 수 없음  
가대주家垵主 자필 이치룡李治龍[서압]  
증證 동성구촌同姓九寸 이진관李辰官[서압]

道光五年乙酉 十二月二十六日 辛生員前明文  
右明文事 矜<sup>61</sup>得生居耕食刈取是如可  
要用所致 伏在立石村露字家垵浮柱五間  
果 伏在蟹田嶝柴場四十卜刈取處果 防築外嶝  
二處柴場六十卜刈取處果 伏在富井坪致字  
畓二斗落只四夜味所耕六卜庫乙 價折錢文  
參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宅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61 [綺]

此如中 本文記皆遺

失 不得出給事

家垞主 自筆 李治龍[署押]

證 同姓九寸 李辰官[署押]

### 1-2-43) 1835년 신영섭辛永燮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35년에 신영섭辛永燮이 가대家垞와 가사家畝를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과, 가사의 소재지 등은 쓰여 있지 않다.

도광 15년(1835, 현종1) 을미 3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쓸 곳이 있어서 가대家垞 부주浮柱 5칸 소경所耕 2부 8속을 전문 40냥으로 값을 매겨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로 빙고憑考할 일이다.

가대주家垞主 자필 유학 신영섭辛永燮[서업]

道光十五年乙未 三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家

垞浮柱五間 所耕貳負捌

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相左之弊是去等 以此憑考

爲乎事

家垞主 筆 幼學 辛永燮[署押]

### 1-2-44) 1865년 이식원李植遠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65년에 이식원李植遠이 문장門長으로서 보시講事에 쓰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 서재書齋에 전래하는 초가草家와 대전垞田을 방매한 문기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동치 4년(1865, 고종2) 을축 12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문중 서재書齋에 전래하여 수호해 오다가 보시譜事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영광靈光 도내道內 소계蘇溪에 있는 초가草家 4칸과, 개자芥字 대전垆田 2두락 소경所耕 ○부 ○속을 전문 30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훗날 자손 중에 만약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생기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垆主 문장門長 이식원李植遠[서업]

유사有司 이건규李建奎[서업]

끝

同治四年乙丑 十二月二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門中書齋傳來守護是如可 譜

事所入辦出無路 故伏在靈光道內蘇溪草

家四間果 芥字垆田二斗落 所耕 負

束庫乙 折價錢文參拾兩 依數捧上是遣 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若有

相佐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家垆主 門長 李植遠[署押]

有司 李建奎[署押]

際

### 1-2-45) 1867년 이봉채李鳳彩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67년에 이봉채李鳳彩가 신생원택에 무장현茂長縣 대제면大梯面에 있는 가사家舍와 대전垆田을 방매한 문기이다.

동치 6년(1867, 고종4) 정묘 11월 25일 신생원택辛生員宅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연말이 되어 많고 많은 공전公錢을 마련하여 바칠 일이 없으므로 하는 수없이 무장현茂長縣 대제면大梯面 안전촌鴈田村에 있는, 내가 지어 살던 집 5칸과 내자內字 대전垆田 2두락 소경所耕 ○부 ○속을 전문 40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고 이 택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垆主 자필 이봉채李鳳彩[서업]

同治六年丁卯 十一月二十五日 辛生員宅前明文

右明文事 當此歲末 公錢夥多辦

納無路 故不得已 茂長縣大梯面鴈田村

自己構居浮柱五間果 內字垞田二斗落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 依

數捧用是遣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弊 則以此文記告

官下正事

家垞主 自筆 李鳳彩[署押]

## 1-2-46) 1870년 정재형(丁載亨) 가사 전당명문

【해설】 1870년에 정재형(丁載亨)이 도조(賭租) 때문에 자신의 초가(草家)를 전당하고, 금년 10월까지 값을 것을 약속하는 문기이다.

동치 9년(1870, 고종7) 경오 3월 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지어서 살던, 도내(道內) 송계(松溪)에 있는 초가 3칸을 지난해 도조(賭租) 7두락 대신에 이 사람에게 전당(典當)하고 기한은 금년 10월 말일 이내에 갚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한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영구히 차지할 일이다.

가대주(家垞主) 유학 정재형(丁載亨)[서업]

증필(證筆) 상(喪) 정석기(丁錫基) 상불착(喪不着)

끝

同治九年庚午 三月初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作造居生是

加矣 伏在道內松溪草家三間

去年賭租七斗落代 右人前典

當是遣 限則今十月晦內備報

之意 如是成文爲去乎 若過

限 則永永次持<sup>62</sup>事

62 次持: '차지(次知)' 라고 쓰는 것이 맞다.

家垞主 幼學 丁載亨[署押]

證筆 喪 丁錫基 喪不着

際

## 1-2-47) 1871년 유방갑庾邦甲 가사 및 시장 매매명문

【해설】 1871년에 유방갑庾邦甲이 무장현茂長縣 대제면大梯面에 있는 가대家垞와 가사家舍, 시장柴場을 방매한 문기이다. 가사 또는 가대 매매명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시장 매매명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문기이다.

동치 10년(1871, 고종8) 신미 2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관宦에 바칠 것이 많으므로, 하는 수없이 묵으로 받은 가대家垞가 무장茂長 대제大梯 월곡촌月谷村에 있는데 4칸 집과 명자明字 시장柴場 1복卜과 기자既字 시장 50복과 ○자 전田 2두 5승락 소경所耕 ○부 ○속을 전문 60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 및 시장주柴場主 동몽童蒙 유방갑庾邦甲 상불착喪不着

증필證筆 유幼 재종조再從祖 유길엽庾吉擘[서업]

同治十年辛未 二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 官納夥多 不得已衿得

家垞在於茂長大梯月谷村 而浮柱

四間果 明字柴場一伏<sup>63</sup>庫果 既字柴

五十卜庫果 字田二斗五升落 所耕

負 束庫乙 折價錢文六十兩 依數捧用

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交象

是去等 以此文記告官憑考事

家垞柴場主 童蒙 庾邦甲 喪不着

證筆 幼 再從祖 庾吉擘[署押]

63 柴場一伏：‘伏’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시장의 경우 면적이 와야 하므로 ‘복卜’이 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2-48) 1873년 정석희丁錫禧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73년에 정석희丁錫禧가 이거할 목적으로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소재 초가 8칸을 방매한 문기이다. 그런데 대전垡田은 이미 매득자 소유이므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가사와 대전이 별도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치 12년(1873, 고종10) 계유 2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거移去 하려고 군郡의 도내면道內面 송계松溪에 있는 곳으로 뭍으로 받아 살아오던 초가집 위아래 합하여 8칸을 전문 65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다. 대전垡田은 이 사람의 땅이므로 방매하는 중에 거론하지 않거니와, 소경所耕은 ○부 ○속이니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垡主 정석희丁錫禧[서업]

증필證筆 이병호李秉顥[서업]

끝

同治十二年癸酉 二月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移去次 伏在郡地道內面

松溪 衿得居生浮柱草家上下合八間

價折錢文六拾伍兩 捧用是遣 右前

永永放賣 而垡田則右人地 而不論於

放賣中是遣果<sup>64</sup> 所耕則 負 束 日後

如有交象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家垡主 丁錫禧[署押]

證筆 李秉顥[署押]

際

## 1-2-49) 1886년 이계하李啓夏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86년에 이계하李啓夏가 이거할 목적으로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소재 가대家垡 4칸을 방매한 문기이다.

64 是在果 음이 같으므로

광서 12년(1886, 고종23) 병술 2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매득하여 살다가 이거하기 위해 하는 수없이 도내  
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에 있는 우자雨字 가대家垜 4칸을 전문 6냥으로 값을 매겨 매긴  
만큼 받아쓰고 이 사람에게 구문舊文記와 함께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  
운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垜主 자필 유幼 이계하李啓夏[서업]

증참證參 유幼 신항진辛恒振[서업]

끝

光緒十二年丙戌 二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居生是多可<sup>65</sup>

移去次 不得已伏在道內面立石村

雨字家垜四間 價折錢文陸兩 依

數捧用是遣 右人前并舊文記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 則

以此文記憑考事

家垜主 自筆 幼 李啓夏[署押]

證參 幼 辛恒振[署押]

際

### 1-2-50) 1899년 한영의韓永儀 가사 매매명문

【해설】 1899년에 한영의韓永儀가 부채를 갚기 위해 마촌면馬村面 소재 가대家垜와 태전太田, 저전부田  
을 방매한 문기이다.

광무 3년(1899) 기해 7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당숙께서 돌아가신 후 이 사람에게 부채 31냥을 값을 길이 없기에  
하는 수없이 군지郡地 마촌면馬村面 신대촌新垜村 앞에 있는 가대家垜 2칸과, 태전太田 1두 5승  
락과, 저전부田 5승락 소경所耕 합 4부 7속을 전문 31냥 대신으로 주고 영구히 방매하는 일이  
다. 훗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65 是多可: 이두로서 '~이다가' 의 뜻으로 쓰려면 '是如可'가 맞다.

이 중에서 구문기는 서실闕失 했으므로 내어주지 못함  
 가대家垵 전주田主 유학 한영의韓永儀[서업]  
 증인 유학 오재홍吳在洪[서업]  
 필집 유학 김기원金璣源[서업]  
 끝

光武三年己亥 七月二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黨叔<sup>66</sup>身死後 右  
 前債文參拾壹兩報給無路 故  
 不得已伏在郡地馬村面新垵村前家垵二間果 太田一斗五升  
 落果 苧田五升落 所耕合肆負柒束  
 麤 價折錢文參拾壹兩代給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  
 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此亦中 舊文記闕失 故不得出給  
 事

家垵田主 幼學 韓永儀[署押]  
 證人 幼學 吳在洪[署押]  
 筆執 幼學 金璣源[署押]  
 際

66 黨叔: '堂叔'이 맞다





## 1-3. 시장柴場과 송추松楸의 관리 운영

### 1-3-1) 19세기 중엽 송추松楸 분쟁 소지所志 초본

【해설】 동부東部 풍헌이 신복현辛復鉉 등과 함께 선산先山의 송추松楸를 남작濫斫하여 나룻배를 조성하기 위한 재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소지의 초본이다. 초본이므로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있고, 발급자 및 수취자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1843년에 신씨 집안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 전후 시기에 작성된 소지의 초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운운. 저는 지난 그믐에 동부東部 풍헌이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과 함께 저의 사산私山 송추松楸를 남작濫斫하고 그 값을 서로 미룬 일로 소장訴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데깁에, ‘패牌를 내어 치죄하되, 지금은 때가 아니니 새해가 되기를 기다려 마땅히 추급推給하라’고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번거롭게 하여 매우 죄송하오나 이 또한 저의 뼈를 깎는 분통함이 있어서이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대개 와탄진瓦灘津의 나룻배는 본디 동서부東西部에서 조성造成하는데, 매번 배를 조성할 때가 되면 동서부의 하민下民이 스스로 목재를 구입하고 관가에서 기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복현 등이 몰래 송추를 작별할 계획을 세워 동부의 면임面任과 부화뇌동하여 관가에 거짓으로 고하고 전령傳令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이미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전령 내에 단지 4그루를 55냥으로 값을 정했는데 15그루를 더 베어냈으니, 면임이 남벌濫伐한 것과 신복현 등이 몰래 작별한 것을 어찌 법 아래의 백성이 할 짓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지난 8월의 일로 말하자면, 신기순辛基峯이 도당徒黨을 이끌고 와서 저희 집을 업신여기며 짓밟을 때 저희 처씨는 구타를 당하여 엎어져 기도가 막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붙잡아 질질 끌면서 때리고 발로 차서 이빨 3개가 부러졌고, 새로 시집간 제 딸 또한 도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창황蒼黃한 모양과 천지가 아득했던 상황은 그들이 비록 무식하고 우매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가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9월과 10월에 신기순 등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제 외랑外廊에 있던 유기鑪器, 요강, 말안장 등의 물건을 수거하여 거리낌없이 가지고 갔으니, 그가 행한 일을 생각해보면 백주대낮에 화적질을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 어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면임을 몰래 사주하여 소나무를 작별할 계획을 세우고 남작濫斫을 아무렇지 않게 해냈으니, 면임이 남작한 것은 이미 논할 것도 없고 함께 모의한 신기순 신복현 또한 가히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송금松禁’ 한 조목은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남작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엇드려 바라건대 동부 풍헌과 신복현 신기순 등의 죄상을 굵어 살펴서 전령의 내용 중에 있는 4그루의 송가松價 15냥과 추가로 작별한 15그루의 송가를 아울러 한날에 동부 풍헌으로부터 징출徵出 하시고, 신복현과 신기순 등이 남작한 죄는 율전律典에 의거하여 감영에 보고하고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云云 民於去晦 以東部風憲 與  
辛復鉉辛基峴濫斫民之  
私山松楸而價錢相推事仰  
訴 則題音內 發牌治罪  
此非其時 待新年 當推給  
事 行下是乎 則屢次煩瀆  
極爲悚仄 然亦有民之刻  
骨憤痛 伏願細細垂察  
焉 大抵瓦灘津船 本自  
東西部造成 則每當造船之  
時 東西部下民 私自買  
材 而非官家所察是去  
乙 今者辛復鉉等 暗生斫  
松之計 符同東部面任 而  
瞞告官家 至於傳令 則其  
所設計 已爲奸譎 而傳令內  
只以四株爲定價伍十五兩 而  
加斫十五株 則面任之濫伐  
辛復鉉等之偷斫 豈可  
謂有法之民乎 且以去八月  
事言之 辛基峴之聚率  
徒黨 凌踏民家之際 民之  
妻被毆顛仆 氣塞致  
傷 民之婦拏曳打蹴  
三齒折落 民之新嫁女  
亦被斧傷 則民東

手坐視 蒼黃景色 天地茫茫  
 渠雖無識愚氓 是可忍也  
 孰不可忍是乎旂 又於九月十  
 月 辛基峴等聚黨來  
 收民之外廊所在鑿器溺  
 缸馬鞍等物 恬然挈去  
 則究厥行事 無異白晝火  
 賊 豈可成說是乎旂 至  
 於今者 暗囑面任 鑄出斫  
 松之計 而濫斫無難 則面  
 任之濫斫 已無可論 而協  
 謀之辛基峴辛復鉉  
 亦可謂有人理乎  
 松禁一款 卽有國之  
 大禁 有是濫斫 不可  
 尋常拋置是乎所 伏  
 願  
 洞燭東部風憲與辛復  
 鉉辛基峴等罪狀 而  
 傳令內四株松價十五兩果  
 加斫松十五株價 并一日  
 徵出於東部風憲是  
 遣 辛復鉉辛基  
 峴等濫斫罪段 依  
 律典 報營勘處  
 之地爲只爲

### 1-3-2) 19세기 중엽 송추松楸 분쟁 소지所志 초본

【해설】 동부東部 풍헌 박정록朴正祿이 신복현辛復鉉 등과 함께 선산先山의 송추松楸를 남작濫斫하여 나  
 릿배를 조성하기 위한 재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소지의 초본이다. 앞의 소지(1-3-1  
 번 문서)와 같은 사안으로 작성되었으나, 앞에서는 풍헌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이 문서는 박정

록차正祿을 명시하였다.

운운. 지난해 12월에 동부東部의 풍헌風憲 박정록朴正祿이 제 사산私山 송추松楸를 함부로 벤 일로 처음에 정소呈訴 했더니, 향청鄉廳에 분부하시어 두 차례 발교發校하여 송근松根을 적간한 후 송가松價를 징급徵給한다는 뜻으로 풍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헌이 징급하지 않으므로 다시 정소했더니, “이미 관이 판결했으니 우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데김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저는 관의 데김에 따라 12월 그믐까지 기다렸사온대, 이 풍헌이 관령官令을 멸시하여 징급하려는 뜻이 없기에 지난 그믐 28일에 다시 정소하였습니다. 이 때 데김의 내용을 “패牌를 내어 치죄하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므로 새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추급推給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내려 주셨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번거롭게 말씀드립니다. 대개 와탄진瓦灘津의 나룻배는 본디 동서부東西部에서 조성造成하는데, 매번 배를 조성할 때가 되면 동서부 두 면面에서 스스로 목재를 구입하고 관가에서 기찰하지 않았습다. 그런데 이번에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 등이 몰래 송추를 작별할 계획을 세워 동부의 면임面任과 부화뇌동하여 관가에 거짓으로 고하고 전령傳令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이미 간사한 속임수이며 어찌 법 아래의 백성이 할 짓이라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급어 살피신 후 동부東部 풍헌 박정록朴正祿은 차인을 보내 붙잡아다가 우선 관령을 거역한 죄를 다스린 연후 4그루의 송가松價 15냥과 추가로 작별한 15그루의 값을 한꺼번에 징수하시고, 범송犯松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에 따라 감영에 보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云云 去年十二月良中 東  
部風憲朴正祿 以濫斫民之  
私山松楸事 初巡呈訴 則  
分付鄉廳 再度發校 摘  
奸松根後 松價徵給之意  
分付於風憲是白矣 同風  
憲終不徵給 故再巡呈訴  
則既有官決 姑待無妨之  
意 題下是乎所 民依官  
題 待之至于臘晦是矣 同  
風憲蔑視官令 萬無  
徵給之道 故去晦廿八日之中 更爲呈訴

則題音內 發牌治罪 此非其  
 時 待新年當推給之意  
 題下是白齊 茲敢冒死更瀆  
 爲去乎 大抵瓦灘津船 本自東  
 西部造成 則每當造船之時  
 東西部兩面 私自質材 而非  
 官家所察是去乙 今者辛復  
 鉉辛基峴等 暗生非理之欲符  
 同東部面任 瞞告官家 至於  
 傳令 則所設計已爲奸譎 而是  
 可謂有法之民乎 伏乞細細  
 洞燭教是後 東部風憲朴正  
 祿發差捉致 爲先重繩其  
 拒逆官令之罪然後 四株松  
 價十五兩果 加斫松十五株價  
 並一一徵給是乎尒 至於犯松  
 律報營勘處之地望良  
 只爲

### 1-3-3) 마촌면馬村面 분묘墳墓 송추松楸 분쟁 소지 초본

【해설】 마촌면馬村面 소재 7대조모의 분묘墳墓에서 송추松楸를 함부로 작벌斫伐한 이무겸李武兼을 처벌해 달라고 올린 소지의 초본이다.

제 7대 조모의 분묘墳墓가 마촌면馬村面 신대촌新大村 앞 산기슭에 있으므로 송추松楸를 기른지가 이미 몇 년이 되어 재목과 동량棟樑으로 쓰일 만합니다. 봄에 묘소를 돌아보며 산을 살펴보니 관목棺木을 벤 흔적이 분산墳山에 드러나 있기에, 산지기에 물어있더니 산지기의 말이 숨기기에 급급하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에 이무겸李武兼이라는 사람이 본디 패악한 무리로, 역정役丁을 많이 이끌고 와서는 어려움 없이 작벌하기에 이치를 들먹이며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큰 소리로 위협하며 말하기를, “이미 산주山主에게서 샀으니 베든 안베든 산지기와 무슨 상관이나?” 라면서 붙잡아 발로 차고 또 말하기를, “마을에서 지금 성조成造 하는데 이 산의 소나

무가 아니면 우리 일은 작파되고 만다. 성조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모두 네 입에 달렸다. 함구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주먹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므로 그 강악強惡이 두렵고 위협을 못이겨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니 그 잔약함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 무겸이 한 짓은 그가 비록 악을 행하는 무리라 하더라도 이와같이 해서는 안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상을 위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목邱木을 이와 같이 함부로 가져간다면 돌이켜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더라도 필시 조상이 없는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양산私養山 송금松禁에 대한 것은 나라의 대전大典에 규정되어 있으니, 율律을 범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형정刑庭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도 없고 법도 없는 어지러운 백성은 붙잡아다 엄히 형刑을 집행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흉악을 행하는 무리가 어느 대代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마촌면馬村面 월산月山에 사는 이무겸李武兼의 과거에 보거나 들은 적 없는 패악 같겠습니까. 대략적인 것을 들어 우러러 호소하오니 굽어살피 주십시오.

民之七代祖母墳墓 在  
於馬村面新大村前麓  
而培養松楸 已有年所  
材及棟樑是白齊 春望間  
省楸之行看山 亂斫之  
斧棺 見露於墳山 故問于  
山直 則山直言內 尙此隱慝  
之急 無辭可答 而去月  
初 李武兼爲名人  
素是敗惡之輩  
多率役丁 無難斫伐 故舉理責之  
則先以揚臂大談曰 既買於  
山主 斫之不斫 何關於山直乎  
蹴而搏之 而且曰 村方成  
造 若非此山之松 吾事  
破矣 成造之爲不爲 都  
在於爾口 含口則已 不  
然則吾拳在此云云 故畏  
其強惡 不勝威脅 某未

聞知者此也云 則殘弱與人  
 似是無異 而究其武兼  
 之所爲 渠雖行惡之輩  
 爲此不爲之行惡乎 爲先之  
 心 人皆有之 而他人邱木 採取  
 如是 則反究諸己<sup>67</sup>之間 必是  
 無先之類 論以私養松禁  
 國之大典 而不憚犯律  
 刑庭之所不容也 此  
 等 無先無法之亂氓 捉致嚴刑 以一懲百  
 之地  
 行凶作惡之輩 何代無之 而  
 豈有如馬村面月山居李  
 武兼之前古未見未聞之  
 悖惡乎 舉槩仰訴 垂察  
 焉

### 1-3-4) 을유년 화민化民 신복렬辛復烈 등 소지

【해설】 영광군에 있는 악마동躍馬洞의 조상 분묘墳墓에서 송추를 작벌斫伐한 임세위林世位 등을 처벌하고 송추를 추급推給해 줄 것을 요청하며 수령에게 올린 소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복렬辛復烈, 신양렬辛亮烈, 신서辛墅 등  
 삼가 소지所志를 아뢰는 것은, 소나무 또한 삼금三禁 중 하나입니다. 비록 놀리는 땅에 스스로 나고 스스로 자란 물건이라도 백성된 자들이 범해서는 안되며, 법을 적용하는 이들이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양반 집안의 산소에서 금양禁養 해 온 것이겠습니까. 군郡의 동쪽 악마동躍馬洞은 저희 조상 묘소가 있는 곳으로, 어렵게 송추松楸를 길러가까스로 택조宅兆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산의 북쪽은 무장동畝長洞과 효동孝洞입니다. 산의 남쪽은 황량동黃良洞과 초포동草浦洞으로서 바로 산지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니, 초포는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동만 홀로 가슴앓이해 온 것이 이미 고질이 되어 출입하며 송추를 베는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고 또 방자해지면서

67 反究諸己: '反求諸己'가 맞다.



도 만족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세위(林世位), 임세주(林世主), 윤소회(尹所回), 김상공(金尙公), 주령(柱令)이라는 놈들이 무뢰배들을 모아 밤을 틈타 당(黨)을 만들어서는 재목으로 쓸 만한 중송(中松) 수백여 그루를 도끼로 베어 마음대로 훔쳐갔으니, 이 무슨 참혹하고 괴이한 일입니까. 무리를 모아 작당(作黨)한 것이 이미 심상한 일이 아니며, 밤을 틈타 훔친 일을 행했으니 바로 큰 도적입니다. 산등성이를 깎쓸이하고 의리를 다 버렸으며 이런 죄악이 이미 찰대로 찼으니, 제 분통함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우러러 호소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엄격하고 현명하게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께서 이 놈들의 죄악을 밝게 살피시고 특별히 제 분통함을 보시어 한편으로는 율(律)에 따라 법사에 보고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목을 추급(推給)하게 하시어 앞으로 묘소를 잘 보전하게 해주십시오. 처분해 주십시오.

성주(城主) 처분

을유년 2월 일

[제사(題辭)]

양반가에서 오랫동안 길러온 구목(丘木)을 임세위(林世位) 등이 작당하여 작별하기를 거리낌없이 했더니 매우 놀랍다. 조사하고 심문하여 엄히 다스리고 금단(禁斷)하기 위해 임세위 일당 5명을 면임(面任)과 힘을 합쳐 급히 붙잡아올 것. 초7일. 면임에게.

관(官) [업]

「초포답(草浦답) 소지 및 작송(斫松) 소지 등(騰)」<sup>68</sup>

道內化民辛復烈辛亮烈辛墅等

右謹言所志矣段 松亦三禁之一也 雖閑土自生自長之物 爲民者不可犯 而按法者不可赦也 則況兩班家山所禁養者乎 郡之

東躍馬洞 乃矣等先墓所在 艱養松楸 僅庇宅兆 而山之陰乃畝長孝洞也 山之陽乃黃良草浦 而卽山直所居村也 則草浦之

不敢侵犯 而孝洞之獨爲心腹之疾 盖已痼矣 出入刈斫者 不知其幾 而又肆無厭之欲 林世位林世主尹所回金尙公柱令爲名漢 嘯

聚無賴 乘夜結黨 中松可材者數百餘株 斧之鉅之 恣意竊去 此何等慘怪事乎 聚徒作黨 已非尋常乘夜行凶 直是大

盜 凡濯丘壟 全掃義理 此等之罪 已極貫盈 而矣身之憤 爲如何哉 茲以仰訴 伏乞

嚴明按法之下 洞燭右漢輩之罪惡 特察矣身之憤冤 一以報司依律 一以推給木物 俾杜日後之漸幸保丘墓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68 「」: 문서의 여백에 띠지를 붙여서 써 놓은 부분이다.

城主 處分

乙酉二月 日

[題辭]

兩班家長養丘木

林世位等之作儻

斫伐 無所顧藉者

萬萬可駭 查問

嚴治禁斷次

林世位五漢 面任

眼同 火迫捉來

事 初七

面任

官 [押]

「草浦畚所志又斫松所志膽」



卷之七

右明

故自

知十... 生身乙價折... 文... 指

西... 依... 持... 上... 為... 遺... 右... 人... 為... 永... 放... 賣

兩... 舊... 文... 記... 事... 為... 出... 後... 是... 去

丁... 亥... 其... 母... 順... 心... 乙... 賣... 於... 羅... 丹... 平... 里... 而... 東... 山

丁... 亥... 五... 月... 如... 子... 幼... 學... 辛... 恒... 慄... 前

明... 文

波... 長... 債... 許... 美... 備... 報... 若... 路

長... 罪... 順... 心... 一... 乙... 生... 杯... 点... 丹

제 2 장

노비와 토지의 거래



# 해 제

## 2-1. 노비 거래

### 1) 노비 매매와 거래

조선시대에 재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와 노비 거래였다. 영월 신씨 가문에는 특히 토지 매매 문기가 많이 전해진다. 노비를 거래한 문기로는 매매 문기와 허급 문기가 있으며, 매매 문기를 영광군에서 공증받은 사급 입안이 점련된 문서도 2건 남아있다. 또한 양인이 자신이나 가족을 팔아 노비 신분이 되었던 매매 거래시 작성했던 자매 문기도 2건 전해진다.

노비 매매 문기는 노비 몇 구를 얼마의 가격에 매매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노비 매매 문기를 관에서 공증한 사급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비 방매자(放賣者)가 해당 노비를 소유하게 된 과정이 드러난다. 매매 거래 후 노비 매득자가 매매 문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에 매매 문기와 함께 이를 사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지를 올려 관에서 사급 입안을 발급받았다. 노비 매득자가 사급 입안을 발급해 달라는 소지를 올리면 관에서는 이 소지와 함께 제출된 매매 문기를 검토한 후 방매자와 이 거래에 참여한 증인의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노비 방매자가 정당한 노비 소유자였는지를 증빙하는 문서를 확인한 후 입안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매매 문기를 사급받은 경우 이 매매 문기와 함께 매득자가 올린 소지, 방매자의 초사, 증인의 초사, 사급 입안이 점련되어 있다. 이는 영월 신씨가에 전해지는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도 예외가 아니다.

1608년(선조 41) 영광군에서 신장길 처 이씨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에서는 영광군에서 노비 방매자 정견이 정당한 노비 소유권자인지 확인했다. 이때 노비 1구는 매매 문기가 증빙 문서가 되었지만 1구는 정유 왜란 때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득 문기와 매매 문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공증받은 입안이 증빙 문서가 되었다.

영월 신씨 집안에 남아있는 1609년(광해군 원년) 노비 허급 문기는 처가 쪽 조상에게 받은 노비를 처쪽의 기일제와 사망절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하기 위해 처남에게 기한을 정하여 허급한 문서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조상에게서 받은 노비는 생존

한 배우자가 부리다가 자손이나 부부의 제사를 담당할 가계계승자 등 합법적, 관행적 증여 상속 대상자에게 주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 제사 비용에 충당한다거나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경우 이를 팔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처남에게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부리도록 하고 처의 제사 비용을 충당했다.

## 2) 자매自賣

자매는 자신이나 가족을 팔아 노비나 고공이 되는 것이다. 자매할 때에도 다른 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작성하여 훗날 증빙으로 삼았다. 영월 신씨가에 전해지는 2건의 자매 문기는 각각 딸과 여동생을 매매한 문기이다.

1852년(철종 3)에 김순일과 최 조이 부부는 흉년으로 부모와 딸이 아사할 지경이 된 지 오래되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전문 10냥을 받고 딸 복녀를 매매했다. 1877년(고종 14)에 박 조이는 지난 달 아버지가 아사하자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동생 자근녀를 15냥을 받고 신 생원택에 매매했다.

조선 후기 흉년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는 이유로 주로 자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아사할 지경이어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부모 장례를 치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효심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월 신씨가에 전해지는 자매 문기도 이러한 문서이다.

## 2-2. 토지 거래

### 1) 개인간의 전답 거래

영월 신씨가에 전해지는 토지 매매 문기는 다른 문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논과 밭을 매매한 전답 매매 문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전답 매매 문기에는 매매 이유와 모처에 있는 논이나 밭을 얼마의 가격을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영월 신씨가의 전답 매매 문기에 기재된 토지 매매 이유로는 주로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가난해서 방매한다는 내용이 많다. 이 외에 이매移賣하기 위해, 빚이나 세곡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방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주인이 노비의 논을 매매한 문기가 있다. 1684년(숙종 10) 유학 정두서가 노동이가 박차흥 집에서 정목 30필을 빌렸다가 갚지 않자 동이의 논을 방매했다. 이를 통해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재산권 행사에 이와 같이 주인의 통제를 받

았음을 알 수 있다.

영월 신씨가에 전해지는 전답 매매 문기의 내용 중에는 본문기本文記, 즉 매매 대상 논밭의 이전 거래 문기나 증여·상속받은 문기를 매득자에게 함께 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본문기는 방매자가 이전 거래나 증여·상속을 통해 정당한 재산 소유자가 되었음을 증빙하는 문서로 매득자 입장에서든 본문기를 받았을 때 추후 자신의 소유권을 더 안전하게 증빙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기를 추후에 찾아보낸다거나 잃어버려서 주지 못한다고 기재하고 매매 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된다. 본문기를 잃어버린 경우 본문기 대신 관에서 그 사실을 증빙받은 입지立旨를 내어주기도 했다. 또한 도문서都文書라서 본문기를 내 주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부모, 조부모 등이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모든 재산 상속 대상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에는 다른 증여·상속 대상자의 재산과 자신의 다른 재산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문기가 이러한 도문서인 경우에 내어주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본문기에 매매 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주지 못했다..

문서 말미에 논밭을 방매한 사람과 증인, 필집이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을 하는데, 상증인 경우에는 착명하지 않았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상증에는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착명하지 않을만큼 효가 매우 중요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월 신씨가에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의 매매 문기도 전해지는데,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매매 대상 토지를 기술할 때 자호 뿐 아니라 지번도 기입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매득자와 방매자의 명칭이 매수인, 매도인을 바뀌어 하단에 함께 기록되었으며, 이들이 각각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문서 형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방매자가 매득자에게 주는 문서라는 차원에서 방매자는 하단에 기록하고 착명을 했고, 매득자는 '○년 ○월 ○일 ○○○에게 드리는 명문'의 형식으로 상단에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 문서에서는 아직 '명문'이라고 하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매수인, 매도인 양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한편, 1916년 신씨 문중에서 논 4두락지를 48월에 매매한 문서가 전해지는데, 이 문서 첫 줄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명기되어 있다.

## 2) 문종과 계의 전답 거래

영월 신씨가에는 분묘 관리나 제위祭位 경영을 위해 전답을 거래한 문서들도 전해진다. 우선 친족간에 증조모 분산 관리를 위해 값을 받지 않고 진전陳田을 허급한 문



서가 있다. 증조모 분산 근처 진전(陳田)에 소나무를 길렀는데 왜란 후에 서당이 무너져 내리고 묘지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곳을 관리하지 못해 산림이 번져 산림을 기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1612년(광해 4) 유학 신유일, 신수일은 산 근처에 사는 생원 신용순에게 화재를 방지하여 산림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을 증여했다. 1814년(순조 14)에 종손 신항엽은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으로 받은 논을 팔아 7대조의 제위에 보태었다.

영월 신씨가에서는 문계(門契)나 사문중(私門中)에 전답을 방매하거나 문계에서 받은 전답을 방매한 문서도 전해진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집안 문계나 문중에서도 전답을 매득하거나 방매하며 경영했고, 이는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전답의 거래와 노비의 역할

조선시대 양반 계층에서 매매 거래를 할 때 집안의 노비에게 대신 거래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상전이 특정 노비에게 거래를 맡기며, 배자(牌子)를 써 주면, 그 노비가 그 배자에 의거하여 거래를 했다. 영월 신씨가에도 이러한 문서들이 남아있다. 자신 소유의 논을 방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7세기 말에 노 막생이 노 신금에게 상전택(上田)을 매매한 거래에서는 소유 노비가 묵으로 받은 재산을 방매한 사례가 나타난다. 송씨 성을 가진 상전이 자신의 노 막생에게 배자를 주어 “네가 영광의 노 돌평의 죽은 자식 순화 묵의 논 도내 추자답 5두락지를 방매하여 바치되 급하지 않게 거행하라.” 라고 하며 사망한 노비의 재산을 팔도록 지시했다. 이에 막생은 이 논 5두락지를 세포 4필을 받고 방매했다. 이는 자신 소유 노비가 사망하자 노비의 재산을 기상받아 방매했던 사례로 보인다.

### 4) 기타 전답 거래

조선시대 전답 거래 중에는 매매 거래 외에도 납상(納上) 혹은 허급하거나 다른 전답과 상환한 거래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답을 납상한 사례 중에는 어려울 때 친족의 재산을 이용하고, 나중에 자신의 전답으로 갚는 사례도 있고, 천재지변 때문에 경작하던 땅 대신 자신의 전답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708년(숙종 34) 고 신시대 처 고씨는 남편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숙모 유씨의 논 5두락지를 급히 팔아 썼는데, 1709년(숙종 35) 남편 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그 중 논 6두락지를 유씨에게 바쳐 갚았다. 이는 급한

상황에서 친족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경우이다.

그런데 양반층의 전답을 부쳐먹던 하층민이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땅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1774년(영조 50) 박거골이는 이 생원택의 논을 선자례先尺例로 여러해 경작했는데, 큰 물난리에 논이 잠겨 없어지자 자신의 논 1두락지, 밭 2두락지를 바쳐 갚았다.

한편, 전답을 완전히 매매하지 않고 환퇴還退 조건부로 매매하거나 전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846년(헌종 12) 정석진은 논 5두락지를 전문 10냥에 매매하면서 전문 10냥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후에는 환퇴한다는 조건을 달아 문서를 작성했다. 1845년(헌종 11) 유문복은 자신의 논 3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전문 12냥 5전을 9월을 기한으로 이자없이 받아쓰고 이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논을 영원히 준다는 조건을 달아 문서를 작성했다.



## 2-1. 노비 거래

### (노비 매매)

#### 2-1-1) 1608년 영광군에서 신장길 처 이씨 측에 발급한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

【해설】 이 문서는 1608년(선조 41) 정견이 신장길 처 이씨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한 후 이씨의 대노代奴 원금이 영광 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이 문서를 사급받은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점려된 것이다. 이씨의 대노 원금이 영광 군수에게 올린 소지, 정견이 신장길 처 이씨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한 매매 문기, 노비주 정견의 초사, 증인, 필집의 초사, 영광군에서 발급한 사급 입안의 순으로 점려되어 있다.

##### ① 이씨의 대노 원금이 영광 군수에게 올린 소지

도내리에 사는 이씨 대노代奴 원금

이 삼가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려 문기를 상고하여 예례에 의하여 사급斜給하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군수님 처분

만력 36년(1608, 선조 41) 2월 일 소지

[25일 형방]

道內里接李氏代奴元金

右謹陳所志矣段 粘連文記相考 依例斜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郡守主 處分

萬曆卅六年二月日 所志

[廿五日]

刑]

② 정견이 신장길 처 이씨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한 매매 문기

만력 36년 무신년(1608, 선조 41) 2월 25일 고 학생 신장길 처 이씨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데가 있어 사서 부리던 비婢 귀서비의 첫 번째 소생 비 난춘 12세 정유년생과  
비 석금의 첫 번째 소생 노녀 몽생 6세 계묘년생을 저화 6천장 대신 정목 1동으로 값을  
쳐서 교역하여 받고 후소생을 아울러 영영 방매放賣하니, 뒤에 자손들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노비주 정병 정견  
증인 유학 한몽성 [착명]  
증보 전 참봉 신지량 [착명]  
필집 유학 정의달 [착명]

萬曆三十六年戊申二月二十五日 故學生辛長吉妻李氏前 明文  
右明文爲臥事段<sup>1</sup> 要用所致以 買得使喚爲如乎  
婢貴西非一所生婢難春年十二丁酉 婢石今一所生  
奴夢生年六癸卯身等乙 楮貨六千張本 價折  
正木一同 交易捧上爲遣 後所生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 雜談爲去等 此文  
記 告官下正事

奴婢主 正兵 丁堅 [着名]  
證人 幼學 韓夢星 [着名]  
證保 前參奉 辛支諒 [着名]  
筆 幼學 丁義達 [着名]

③ 노비주 정견의 초사

무신년(1608, 선조 41) 2월 25일 정병 정견 52세  
아웁니다. 이씨의 대노 원금의 소지에 따라 노비 방매放賣의 진위를 추문推問하시기에  
아웁니다. 제가 긴히 쓸데가 있어 매득買得하여 부리던 비 귀서비의 첫 번째 소생 비  
난춘 12세 정유년생, 비 석금의 첫 번째 소생 노 몽생 6세 계묘년생 등 2구를 정목 1동

1 '爲臥事段'은 '爲臥乎事段'의 오키이다.

으로 값을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후소생을 아울러 영영 방매하니, 진위는 참석한 증인 각 사람들을 마땅히 추문하십시오.

아뢴 [차명]  
관 [압]

戊申二月二十五日 正兵丁堅 年五十二  
白等 李氏代奴元金所志內乙用良 奴婢  
放賣眞僞 推問教是臥乎在亦 矣身亦  
要用所致以 買得使喚爲如乎 婢貴西  
非一所生婢難春年十二丁酉生 婢石今  
一所生奴夢生年六癸卯生等 貳口乙  
價折正木一同 交易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并以 永永放賣爲去乎 眞僞乙  
良 參證各人等 當推施行教事

官 [押] 白 [着名]

④ 증인, 필집의 초사

같은 날, 증인 유학 한몽성 43세, 증보 전 참봉 신지량 50세, 필집 유학 정의달 29세  
아됩니다. 노비주인 정견의 초사 내용에 따라 노비를 매매할 때 증인으로 참석했는지  
의 진위를 추열하시기에 아됩니다.  
위의 정견이 긴히 쓸 데가 있어 그가 매득하여 부리던 비 귀비의 첫 번째 소생 노 난  
춘, 비 석금의 첫 번째 소생 노 몽생 등 2구를 정목 1동으로 값을 쳐서 교역하여 받고  
후소생을 아울러 앞의 이씨에게 방매할 때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 확실합니다.

同日 證人 幼學韓夢星年四十三 證保 前參奉辛支諒年五十  
筆執 幼學丁義達年二十九  
白等 奴主丁堅招內乙用良 奴婢買賣時 參證眞僞 推問  
是白乎在亦 同丁堅亦 要用所致以 其矣買得使喚爲如乎 婢貴  
非一所生奴難春 婢石今一所生奴夢生等 貳口乙 價折正  
木一同以 交易捧上爲遣 後所生并以 向前李氏亦中  
放賣時 各各參證 的只臥乎事

官 [押] 白 [着名]

白 [着名]

白 [着名]

⑤ 영광군에서 발급한 사급 입안

만력 36년 (1608, 선조 41) 2월 25일 영광군 입안

이 입안은 사급을 위한 것이다.

접련된 소지 및 재주, 증인 각인 등의 초사였기에 본 천적賤籍을 제출받아 상고했다.

만력 33년 을사년(1605년, 선조 38) 10월 16일 노비주 총의위 이종복, 증인 동성 3촌 질 이지두, 증보 정로위 김영주, 필집 사노私奴 주청석 등이 착명하여 작성한 명문을 요약하면, “긴히 쓸 데가 있어 아버지 쪽에서 뭍으로 받아 부리던 노 돌문이 양인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번째 소생 비 석금의 첫 번째 소생 노 몽생 3세 계묘년생을 정견에게 5, 6승 목면 35필을 받고 판” 문기를 접련한 만력 33년(1605년, 선조 38) 12월 일 함평현에서 관을 거쳐 사출받은 문기이다.

동시에 제출한 문기를 상고했다. 만력 30년(1602년, 선조 35) 2월 초9일 도내리 보병 정견이 착명하여 올린 소지에 연이어진 입안에는, “정견이 정유년의 난에 조상으로 부터 뭍으로 받은 문안과 매득 문안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니 뒤에 상고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을 접련하여 되돌려 준다”는 입안이다.

소지에는 “정유왜란 때 조상으로부터 뭍으로 받은 문기와 매득 사출 문기를 모두 잃어버렸으니 뒷날 상고하기 위해 후록後錄을 상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한 소지이다. 후록 내에 매득한 노비 명단에 “비 덕비의 첫 번째 소생 비 귀서비 36세” 및 다른 노비가 함께 기록된 후록이다. 위의 비 난춘은 그 어미 비 귀서비의 득후 소생으로 후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노 몽생은 본문기 내 이름이 기록된 곳 뒷면에 효주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비 난춘, 노 몽생 등 2구를 정목 1동을 값으로 쳐서 받고 후소생을 아울러 이씨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뒤에 상고하기 위해 날장 문서를 접련하여 되돌려주고 입안을 발급한다.

행 군수 [압]

萬曆三十六年二月二十五日 靈光

郡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所志及財

證各人等招辭是置有亦 本賤籍取

納相考爲乎矣 萬曆三十三年乙巳十月十六日

奴婢主忠義衛李從福 證人同姓三寸姪李支  
 斗 證保定虜衛金永柱 筆執私奴周  
 青碩等 着名成置明文內 節該 要用口(所)  
 致以 父邊衿得使喚奴玆文 良妻并産 三所  
 生婢石今 一所生奴夢生年三癸卯生身乙 丁堅  
 亦中 五六木綿三十五匹捧上爲遣 放賣文  
 記粘連 萬曆三十三年十二月日 咸平縣經官  
 斜出立案是齊 一時現納文記相考爲乎  
 萬曆三十年二月初九日 道內里步兵丁  
 堅着名呈所志 連次立案內 丁堅亦 丁酉之  
 亂 祖上衿得買得文案等乙 蕩失的只去乎  
 後考次以 立案粘退立案是齊 所志  
 內 丁酉倭亂時 祖上衿得 及買得斜出文記  
 盡數闕失爲白有去乎 後日相考次以  
 後錄相考 立案成給爲只爲所志 後  
 錄內 買得秩 婢德非一所生婢貴西非年  
 三十六 及他奴婢并付 後錄是在果 同  
 婢難春段 其母婢貴西非身乙 得後所  
 生以 後錄不付爲有齊 奴夢生段 本  
 文記內 名付處背周爲在果 上項婢  
 難春奴夢生等貳口乙 價折正  
 木壹同捧上爲遣 後所生  
 李氏亦中 放賣的實爲乎等以  
 後考次 葉作粘退 合行  
 立案者

行郡守 [押]

## 2-1-2) 1678년 영광군에서 박철생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

【해설】 이 문서는 1678년(숙종 4) 소필굉이 박철생에게 여종 2구를 방매한 후 박철생이 영광 군수에 게 소지를 올려 매매 문기를 사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점련된 것이다. 박철생이 영광 군수에게 올린 소지, 소필굉이 박철생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한 매매 문기, 비주婢主 소필굉의 초사, 증인, 필



집의 초사, 영광군에서 박철생에게 발급한 사급 입안의 순으로 접련되어 있다.

① 박철생이 영광 군수에게 올린 소지

도내에 사는 박철생

이 삼가 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광군에 사는 소필굉에게 비 2구를 후소생  
을 아울러 매득買得하니, 예례에 의해 사급斜給하도록 처분해주시시오.

영감님 처분

무오년(1678, 숙종 4) 11월 일

관 [압]

[제사] 예례에 의해 사급하라. 28일

道內居朴哲生

右謹陳所志矣段 郡居蘇必宏處 婢二口後所生

并以 買得爲有去乎 依例斜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戊午十一月日

官 [押]

[題辭] 依例斜

給向事

廿八

告金先

② 소필굉이 박철생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한 매매 문기

강희 17년 무오년(1678, 숙종 4) 10월 그믐날 박철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데가 있어 조상에게서 전해 와 몫으로 얻어 부  
리던 비 인개의 첫 번째 소생 노 득생이 양인 처와 낳은 그의 세 번째 소생 비 미양 22  
세 정유생과 네 번째 소생 비 순화 19세 경자생을 백미 170두를 교역하여 수대로 받  
고 그를 후소생을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아무 동생同生이나  
자손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비주婢主 소필굉 [작명]

증인 □휘발 [착명]

증보 박만립 [좌촌]

필집 김시주 [착명]

康熙拾柒年戊午拾月晦日 朴鐵生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衿得使  
 喚婢仁介 一所生奴得生亦 良妻所產故也 其矣  
 三所生婢味陽年二十二丁酉生身果 四所生婢順  
 花年拾玖庚子生身等乙 白米一百柒拾斗  
 交易依數捧上爲遣 其矣身乙 後所生并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某同生  
 子孫中 雜談爲去乙等 此文記以 告官下正事

□…□(婢主 蘇必宏) [着名]

□…□ [着名]

證保 朴萬立 [左寸]

筆執 金時柱 [着名]

### ③ 비주婢主 소필굉의 초사

무오년 11월 18일 비주 소필굉 나이

아됩니다. 영광군에 사는 박철생의 소지에 의거하여 여종을 방매한 근인根因을 바로 고하라고 추문하시기에 아됩니다.

긴히 쓸 데가 있어 조상에게서 전해 와 묵으로 받은 비 서개 소생 비 인개, 위 비의 첫 번째 소생 노 득생이 양인 처와 낳은 세 번째 소생 비 미양 22세 정유년생, 네 번째 소생 비 순화 19세 경자년생 등 2구를 백미 170두를 수대로 받고 후소생을 아울러 소지를 올린 박철생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합니다. 진위는 증인과 필집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물어 시행하십시오.

아림 [착명]

관 [압]

戊午十一月廿八日 婢主蘇必宏年

白等 郡居朴哲生課狀據 婢子放賣根因直

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要用所致以 祖上

傳來衿得婢西介所生婢仁介 同婢一所生奴  
得生 □(良)妻并産 三所生婢味陽年二十二丁酉  
四所生婢順花十九庚子生身等 二口乙 白米  
一百七十斗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并以 狀者  
處 放賣的實爲去乎 眞僞乙良 訂筆執  
各人等處 當問施行教事  
官 [押] 白 [着名]

④ 증인, 필집의 초사

같은 날, 증인 □輝發 나이, 증보 박만립 나이, 필집 김시주 나이  
아됩니다. 영광군에 사는 박철생의 소지에 의거하여 비주의 초사 내용에 따라 여종을  
매매할 때 증인, 필집이었는지의 진위를 추문推問하시기에 아됩니다.  
위의 비주 소필공이 긴히 쓸 데가 있다고 하며 그의 조상에게서 전해 와 몫으로 받은 비  
서개 소생 비 인개, 위의 비 첫 번째 소생 노 득생이 양인 처와 낳은 두 번째 소생 비 미양,  
네 번째 소생 비 순화 등 2구에 값으로 쌀 170두를 받고 위 여종의 후소생을 아울러 박  
철생에게 영원히 방매할 때 저희들이 각각 증인,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뢴 [작명]  
아뢴 [좌촌]  
아뢴 [작명]  
관 [압]

同日 □□輝發年 證保 朴萬立  
年 筆執 金時柱年  
白等 郡居朴哲生課狀據 婢主招內乙用良  
婢子買賣時 訂筆執眞僞 推問教是臥乎在  
亦 上項婢主蘇必宏亦 有要用處是如  
其矣祖上傳來衿得婢西介所生婢仁介  
同婢一所生奴得生 良妻并産 二所生婢  
味陽 四所生婢順化等 二口良中 價米一百  
七十斗 捧上爲遣 同婢後所生并以 朴哲生  
處 永永放賣時 矣徒等 各各叅訂筆 的只乎事  
白 [着名]

白 [左寸]  
官 [押] 白 [着名]

⑤ 영광군에서 박철생에게 발급한 사급 입안

강희 17년(1678, 숙종 4) 11월 일 영광군 입안

이 입안은 사급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영광군에 사는 박철생의 소지에 의거하여 점련문기 및 각 사람들의 초사가 있었기에 본 천적賤籍을 제출받아 상고했다.

만력 19년 임진년 8월 초7일 재주 자필自筆 아버지 소필굉이 착명하여 첩자 천억에게 작성해 준 별급 명문에 “왜적이 경성에 돌입하여 임금과 신하가 피난했으니, 아! 나라를 위한 충분忠憤에 누가 통곡하지 않겠는가? 의기義氣있는 자들이 동서에서 봉기하는데 내가 비록 상중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안심하고 집에 있겠는가? 나와 의승義僧 수 백인이 바로 전장에 들어가 죽어 돌아올 것이니 기필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너에게 조상에게서 전해 온 노 개미치의 첫 번째 소생 노 조을동, 비장덕의 첫 번째 소생 노 천산, 노 금음금의 두 번째 소생 비 귀기리, 비 보화의 첫 번째 소생 노 묵수 첫 번째 소생 비 서개, 두 번째 소생 비 세금, 세 번째 소생 비 길개, 논 20두라지를 아울러 영원히 별급하니 전소생, 후소생을 아울러 영원히 차지하여 갈아먹고 부리라”9번 관을 거쳐 사급받은 문기 1통이다.

위의 비 서개 소생 비 인개, 위 비의 첫 번째 소생 노 득생이 양처와 낳은 세 번째 소생 비 미양 나이 22세 정유년생, 네 번째 소생 비 순화 19세 경자년생 등 2구를 후소생과 아울러 매득한 것이 확실한 영광군에 사는 박철생에게 예례에 의하여 사급한다. 그리고 위 여중들이 서개의 득후 소생의 소생으로 이름이 본 천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개의 이름이 기재된 곳에 논리論理하여 배탈背頓한다. 또한 뒤에 상고하도록 하기 위해 엽질을 점련하여 되돌려주고 입안을 발급한다.

행 군수 [압]

康熙十七年十一月日 靈光郡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節郡居朴哲生課狀

據 粘連文記及各等<sup>2</sup>招辭是置有亦 本賤籍

取納相考爲乎矣 萬曆十九年壬辰<sup>3</sup>八月初七日 財

2 ‘各等’은 ‘各人等’에서 ‘人’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만력 19년은 1591년이고, 임진년은 1592년이다. 왜군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문서 내용을

主自筆父蘇着名 妾子千億亦中 別給成置  
明文內 倭賊突入京城 君臣播越 嗟呼爲國忠  
憤 孰不痛哭乎 而有義氣者 東西蜂起 而我雖  
喪人 何安心而在家乎 吾與義僧數百人 直  
入戰所故歸 則無以還心必矣 是故汝矣處 祖上  
傳來奴介未致一所生奴鋤乙同 婢章德一所生奴  
千山 奴金音金二所生婢貴其里 婢寶化一所生奴默  
水一所生婢西介 二所生婢世今 三所生婢吉介 番二十  
斗落只并以 永永別給爲去乎 前後并以 永執  
耕食使喚事 九度經官文記一度是齊 上項  
婢西介所生婢仁介 同婢一所生奴得生 良妻并  
産 三所生婢味陽年二十二丁酉 四所生婢順花年  
十九庚子生等 貳口 後所生并以 買得的實爲在  
郡居朴哲生處 依例斜給爲旣 同婢等 以西  
介得後所生之所生 名不付本賤籍乙仍  
于 西介名付處 論理背頃爲遣 後考  
次以 葉作粘退 合行立案者  
行郡守 [押]

## 2-1-3) 1756년(영조 32) 신태운이 신태성에게 노비를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6년(영조 32) 유학 신태운이 여종 1구를 전문 4냥 값에 유학 신태성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신태운은 방매 이유에 대해서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매우 어려워서라고 했다.

건륭 21년 병자년(1756, 영조 32) 6월 27일 유학 신태성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번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매우 어려워  
조상으로부터 전해와 묵으로 받은 비 봉화 1소생 비 복덕 11세 을축년생 1구를 전문  
4냥 값으로 쳐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다.

비주婢主 유학 신태운 [착명]

---

통해 볼 때 이 중 만력 19년(1591)이 만력 20년(1592)의 오기로 판단된다.

증인 유학 신태성 [착명]  
 유학 신태건 [착명]  
 필집 유학 신태형 [착명]

乾隆貳拾壹年丙子六月二十七日 幼學辛兌成前

明文

右明文事段 逢此殺年 生道極難  
 傳來衿得婢奉化一所生婢福德  
 年十一乙丑 一口身乙 價折錢文  
 肆兩 捧上爲遣 右人前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持此文 卞正事

婢主 幼學 辛兌潤 [着名]

證 幼學 辛兌瑞 [着名]

幼學 辛兌建 [着名]

筆 幼學 辛兌亨 [着名]

## (노비 허급)

### 2-1-4) 1609년 정제원이 신용망에게 노비를 허급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09년(광해군 원년) 정제원이 처남인 신용망에게 처쪽 조상에게 전해 받은 여종 신덕의 첫째인 노 난이를 기일을 한정하여 처남 신용망에게 허급한 문기이다. 정제원이 노 난이를 허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처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만력 37년 기유년(1609년, 광해군 원년) 3월 초 10일 처남 신용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 쪽의 기일제와 사명절四名節 제사를 하나하나 거행하기 어려우므로 처쪽 비婢 신덕의 첫 번째 소생으로 묵으로 받은 노녀 난이 1세 무신년생을 기일을 한정하여 허급許給하니, 뒤에 다른 말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매부 정제원 [착명][착압]

萬曆三十七年己酉三月初十日 妻嫻辛

應望處 明文

右明文事段 妻邊忌日四名節祭祭

祀 一一舉行難爲乙仍于 妻邊

婢申德一所生衿得奴難伊年一

戊申生身乙 期限許給爲去乎 後

次雜談爲去等 此文以告官下正事

自筆 幼學妹夫丁濟園 [着名][着押]

### (자매自賣)

#### 2-1-5) 1852년 김순일이 딸 복녀를 자매自賣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2년(철종 3) 김순일이 자신의 딸 복녀를 전문 10냥을 받고 자매하며 작성한 문기이다. 딸을 판 상대, 즉 딸을 산 사람의 이름은 비워두었다. 그는 딸을 매매한 이유에 대해 죽을 지경에 이른 부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합풍 2년 임자년(1852, 철종 3) 4월 17일 ○…○께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딸의 나이가 겨우 11살인데, 이번 큰 흉년을 맞아 제 딸과 부모가 아사할 지경인지 오래되었고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정도가 있겠습니까? 백번을 생각해 도 굶어죽어야 끝날 것입니다. 전문 10냥을 받고 제 딸을 영원히 자매自賣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부모의 목숨을 구하니, 이날 이후 만약 동생同生 형제, 친척 중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노비의 아버지 김순일 [착명]

노비의 어머니 최조이 [수장]

자매비 복녀

증인 김삼중 [착명]

필집 유학 최기환 [착명]

咸豐貳年壬子四月十七日 … 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女年纔十一歲 而當此大無之年

矣女父母轉壑日久 生活無路 故於子於女慕其  
 父母之心 抑有何等 百番思之 餓死乃已 捧錢文  
 拾兩 矣女之身 永永自賣 以救父母殯<sup>4</sup>死之命  
 爲去乎 日後如有同生兄弟親戚中 爰象之端  
 則以此文記 告官下<sup>5</sup>定事

奴父 金順一 [着名]

母 崔召史 [手掌]

自賣婢 福女

證人 金三宗 [着名]

筆 幼學崔杞煥 [着名]

## 2-1-6) 1877년 박 조이가 동생 자근녀를 신 생원택에 자매自賣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77년(고종 14) 박 조이가 15냥을 받고 여동생 자근녀를 신 생원택에 자매한 문기이다. 그는 여동생을 매매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 장사를 지내기 위해라고 했다.

광서 3년 정축년(1877, 고종 14) 2월 20일 신 생원택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두 딸만 있는데, 지난 달 아사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업토掩土할 방법이 전혀 없어 셀 수 없이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10살인 여동생 자근녀를 15냥의 돈으로 위 덕에 자매自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자근녀의 언니 박 조이 [수장]

증인 손일삼 [착명]

필집筆執 유학 신진규 [착명]

光緒三年丁丑二月二十日 辛生員宅前 明文  
 右明文事 矣女之父 只有二女是如  
 可 去月未免餓死 而掩土沒無其  
 策 故不得已萬思之餘 十歲  
 弟女者斤女 以拾伍兩錢 自賣於右宅前

4 '殯'은 '瀕'의 오기로 판단된다.

5 '定'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爲去乎 日後如有爻象之端 則以

此文記 告官下正事

者斤女兄 朴召史 [手掌]

證人 孫日三 [着名]

筆執 幼學辛縉珪 [着名]

## 2-2. 토지 거래

### (논밭 매매)

#### 2-2-1) 1646년 김성기가 신씨가 노 일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46년(인조 24) 유학 김성기가 신씨가 노 일수에게 논 총 19두락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순치 3년 병술(1646, 인조 24) 7월 13일 신씨가 노 일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쪽에서 묵으로 받은 영광 도내면道內面 신촌  
新村 앞 위치에 있는 논 10두락지 7배미, 수확물 39복 8속인 곳을 정목 2동 25필 안으  
로 값을 치고, 무장 원송면 고현 남산 밖 진자에 있는 논 9두락지 1배미, 수확물 22복 5  
속인 곳을 1동 5필을 받고, 그 나머지는 정목 70필을 아울러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어떤 자손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  
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김성기 [작명]

順治三年丙戌七月十三日 辛奴一水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妻邊衿得靈光道內口(面)  
新村之前 爲字伏在畚拾斗落只七夜未 所耕  
三十九卜八束庫乙 價折正木二同二十五疋內 茂長  
元松面古縣南山外 眞字伏在畚九斗落只一夜  
未 所耕二十二卜五束庫乙 一同五疋以 捧上爲遣  
其餘段 正木七十疋并以 交易依數捧上爲遣 同人  
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某子孫中 雜  
談爲去乙等 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畝主 自筆 幼學金性奇 [着名]

## 2-2-2) 1649년 신철성이 신 장령 댁에 발급한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이 문서는 1649년 신철성이 논 2두락지를 정목 4필을 받고 신 장령 댁에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순치 6년 기축년(1649, 인조 27) 4월 초8일 신 장령댁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히 쓸 데가 있어 사노私奴 늬배에게 매득買得한 무장에 있는 주자답 2두락지, 수확물 3부 2속인 곳을 정목 4필을 교역하여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니, 뒤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畜主 신철성 [좌촌]

증인 신자근금 [좌촌]

필집 김호남 [작명]

順治陸年己丑四月初八日 辛掌令宅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私奴訥陪處買得 敵長

伏在宙字畜貳斗落只 所耕參負貳束庫乙

正木肆疋 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雜談爲去等 此文記 告官卜正事

畜主 辛鐵成 [左寸]

證人 辛者斤金 [左寸]

筆執 金虎南 [着名]

## 2-2-3) 1673년 사노 파회가 신 생원댁 노 갑생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이 문서는 1673년(현종 원년) 사노인 파회가 조상에게 몫으로 받아 갈아먹던 논 6두락지를 정목 3동을 받고 신 생원댁 노 갑생에게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파회는 논을 판 이유에 대해 전염병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관판棺板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강희 12년 계축년(1673, 현종 원년) 정월 초 10일 신 생원댁 노 갑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작년 3월에 전염병으로 병자를 수용하는 막사에 계시다가 병으로 사망한 후 관판棺板을 마련할 길이 없어 형세상 부득이하게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몫으로 받아 갈아먹던 촌 앞 위자답 6두락지 6배미 수확

물 ○부 ○속인 곳을 정목 3동 값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행여 동생이나 자손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畜主 사노 파회 [좌촌]

증인 노 칠생 [좌촌]

증보 노 생금 [좌촌]

필집 신천익 [작명]

康熙拾貳年癸丑正月初十日 辛生員宅奴甲生處

明文

右明文事段 父亦 上年三月分 染病出幕爲有如可 因病致

死之後 棺板措備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衿得

耕食爲如乎 村前爲字畚六斗落只陸夜未 所

耕 … 庫乙<sup>6</sup> 價折正木參同以 交易依數

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幸有

同生子孫中 萬一雜談爲去乎等 將此文記乙 告

官下正事

畜主 私奴 破回 [左寸]

證人 奴哲生 [左寸]

證保 奴生金 [左寸]

筆執 辛天益 [着名]

## 2-2-4) 1682년 상남이 명세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82년(숙종 8) 상남이 조상으로부터 몫으로 받아 갈아먹던 밭 5두락지를 조 10두를 받고 이성 조카 명세에게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강희 21년 임술(1682, 숙종 8) 10월 26일 명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몫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위자전 5승락지, 수확물 4속인 곳을 값 조 10

6 '庫' 앞에 부 속이 기재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두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이성 조카 명세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행여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전주田主 상남 [좌촌]

증인 임금 [좌촌]

증보 두질남 [좌촌]

필집 박돌천 [착명]

康熙二十一年壬戌十月二十六日 明世處 明文

右明文事段 貧寒所致以 祖上衿得耕

食爲如可 道內立石村 爲字田五刀

落只 所耕四束庫 價租十斗以 交易依

數捧上爲遣 二往<sup>7</sup>姪子明世處 永永放賣

爲去乎 後次幸有雜談爲去等 此文記以 告

官下正事

田主 上男 [左寸]

證人 壬金 [左寸]

證保 豆叱男 [左寸]

筆執 朴夏天 [着名]

## 2-2-5) 1686년 박축금이 노 만이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박축금이 논 5두락지를 정조正租 30석을 받고 노 만이에게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박축금은 흉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논을 방매했다고 했다.

강희 25년 병인(1686, 숙종 12) 3월 초9일 노 만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매우 가난한 까닭으로 이번 큰 흉년을 당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우므로 형세상 부득이하여 도내리道內里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옥자답 5두락지 4배미, 수확물 9부 4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정조正租 30석을 값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행여 동생 同生, 자손 중에 만일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아울러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7 '二往'은 '異姓'의 오기이다.

康熙貳十五年丙寅三月初九日 奴萬伊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貧迫所致以 值此大無之  
 年 資生爲難乙仍于 勢不得已 道內里元堂□(坪)  
 伏在 玉字畚伍斗落只肆夜味 所耕玖負肆束  
 庫乙 同人處 價折正租三十石以 交易依數捧  
 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後次幸爲同生子孫中 萬日<sup>8</sup>雜  
 談有去乙等 此文記并以 告  
 官辨正事

畚主 自筆 朴丑金 [着名]

## 2-2-6) 1684년 정두서가 박자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84년(숙종 10) 유학 정두서가 노 동이의 논 8두락지를 박자흥에게 정조正租 24석을 받고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노 동이가 박자흥에게 정목 30필을 빌렸다가 갚지 않자 주인인 정두서가 동이의 논 8두락지를 박자흥에게 주고 정조 24석을 받았다.

강희 23년 갑자년(1684, 숙종 10) 10월 13일 박자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 동이가 위 댁의 정목 30필을 빌렸다가 바로 갚추어 바치지 않으므로 그의 대삼평大三坪에 있는 봉배미 곤자답 8두락지 내 종자 5두락지, 수확물 19부 8속인 곳을 문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긴히 쓰기 위해 정조正租 24석을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畚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정두서 [작명]

康熙二十三年甲子十月十三日 朴自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奴同伊亦 同宅正木三十疋 出價是  
 如可 趁不備納乙仍于 其矣大三坪伏在 蓬夜味崑

8 '답'은 '一'의 오기이다.

字畚八斗落只內種子五斗落只 所耕十九負八束  
庫乙 成文納上是如乎 要用次以 正租二十四石乙 依  
數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下正  
事  
畚主 自筆 幼學丁斗瑞 [着名]

## 2-2-7) 1696년 사노 파회가 신 생원택 노 소남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96년(숙종 22) 사노 파회가 콩밭 2두락지를 정조正租 2석 2두를 받고 신 생원택 노 소남에게 방매한 매매 문기이다. 파회는 가난하여 큰 흉년에 살아가기 어려워 밭을 매매한다고 했다.

강희 35년 병자년(1696, 숙종 22) 2월 20일 신 생원택 노 소남에게 준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까닭으로 이번 큰 흉년을 당하여 살아  
가기가 어려우므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묵으로 받은 집 앞 위자전에 있는 콩을 파  
종한 4두락지 내 동쪽 2두락지, 수확물 6부 5속인 곳을 정조正租 2석 2두 값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동생同生, 자손 중에 만  
일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전주田主 사노 파회 [좌촌]  
증인 최사봉  
증보 시노寺奴 천발  
필집 신천익 [착명]

## 2-2-8) 1708년 신만상이 신운룡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08년(숙종 34) 문중 숙부 신만상이 콩을 심은 밭 3두락지를 문중 조카에게 방매  
한 매매 문기이다.

강희 47년 무자년(1708, 숙종 34) 11월 초10일 문중 조카 신운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큰 흉년을 만나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묵으로 받아 갈아  
먹던 위자전에 있는 콩 종자를 심은 밭 3두락지, 수확물 9복 9속인 곳을 정조正租 4석

10두를 값으로 쳐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이나 동생同生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전주田主 스스로 문서를 쓴 문중의 숙부 신만상 [착명]

康熙肆拾柒年戊子十一月初十日 門姪辛雲龍處 明文  
 右明文爲 逢此大無之年 資生爲難乙仍于 衿得  
 耕食爲在 伏在爲字田太種三斗落只 所耕九卜九束廳乙 價折  
 正租四石十斗乙 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子孫同生中 雜談是去等 以此文 告官  
 卞正事

田主 自筆 門叔 辛萬祥 [着名]

康熙參拾五年丙子二月二十日 辛生員宅奴小男處 明文  
 右明文事段 貧寒所致以 值此大無之年 資生爲難乙  
 仍于 祖上傳來衿得爲在 家前爲字伏在 太種四斗落  
 只內 東邊貳斗落只 所耕陸負五束庫乙 價折  
 正租貳石貳斗以 交易依數捧上爲遣 同人處 永  
 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孫中 萬一雜談  
 爲去乎等 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私奴破回 [左寸]

證人 崔士奉

證保 寺奴千發

筆執 辛天益 [着名]

## 2-2-9) 1755년 김증재가 신헌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5년(영조 31) 김증재가 묘답인 논 1두 5승락지를 전문 6냥을 받고 신헌의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20년 을해년(1755, 영조 31) 11월 4일 신헌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뭇으로 받아 갈아먹다



가 가난한 까닭으로 형세상 부득이하어 황량면黃良面 초포점草浦店 뒷 마을에 있는 담  
자답 1두 5승락지[매서: 초포의 묘답墓畝], 수확물 5부 5속인 곳을 전문 6냥으로 교역  
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 문기 후에  
동생同生, 자손 중에 행여 다른 말하며 다투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畝主 김중재 [착명]

증인 신한추 [착명]

필집 신재봉 [착명]

[매서] 합의가 산지기가 되었으므로 산지기의 이름으로 문서를 받음.

乾隆貳拾年乙亥十一月十四日 辛咸意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祖上傳來衿得耕食爲如可 貧寒  
所致以 勢不得已 黃良面草浦店後洞伏在  
談字畝一斗五升落只[背書: 草浦墓畝] 所耕五負五束庫乙 價折錢  
文六兩以 交易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文記後良中 同生子孫中  
幸有雜談相爭之弊是去等 此文記 告官  
卞正事

畝主 金宗才 [着名]

證人 申漢秋 [着名]

筆執 辛再鳳 [着名]

[背書] 咸儀爲山直 故以山直名捧文書

## 2-2-10) 1756년 신태서가 이이탄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6년(영조 32) 신태서가 논 5두락지를 전문 17냥 값에 이이탄에게 방매한 문기  
이다. 신태서는 방매 이유에 대해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건륭 21년 병자년(1756, 영조 32) 정월 초9일 이이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번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부  
득이하게 조상으로부터 전해 온 논인 마을 앞 결자답 5두락지 6배미, 수확물 25부인  
곳을 전문 17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한다.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다.

답주畝主 유학 신태서 [착명]

증인 동성 4촌 신태운 [착명]

증보 동성 8촌 신태형 [착명]

필집 동성 8촌 유학 신태성 [착명]

乾隆貳拾壹年丙子正月初九日 李貳坦處 明文

右明文事 逢此大無之年 資生無路 故

不得已 傳來畝村前結字畝五斗落只六夜未 所耕二十五

負庫乙 價折錢文七十兩乙 依數捧

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內分<sup>9</sup>畝并付 故不得出給

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卞正事

畝主 幼學辛兌瑞 [着名]

證人 同姓四寸 辛兌潤 [着名]

證保 同姓八寸 辛兌亨 [着名]

筆執 同姓八寸 幼學辛兌成 [着名]

## 2-2-11) 1756년 정원창이 정최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6년(영조 32) 얼자인 정원창이 제위답인 논 3두락지를 적장嫡長 정최옥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정원창은 논을 방매한 이유에 대해 큰 흉년에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건륭 21년 병자년(1756, 영조 32) 4월 20일 적장嫡長 정최옥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큰 흉년에 살아갈 길이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조상으로부터 전해 온 제위답祭位畝 장등長登 다보평多堡坪에 있는 생자답 3두락지 1배미, 수확물 10복 〇속인 곳을 전문 1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합니다. 본문기는 도문서都文書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허급할 수 없습

9 '內分'은 '他田'의 오기로 보인다.

니다. 이날 이후 동생同生,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면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畵主 문중의 일자 정원창 [좌촌]

증인 매부 김태정 [좌명]

증인 적장 적최경 [좌명]

乾隆貳拾壹年丙子四月二十日 嫡長丁最煜前 明文

右明文事段 當此殺年 生道爲難 不得已

傳來祭位畵 伏在長登多堡坪生字畵三斗

落只一夜味 所耕拾卜 束庫乙 價折錢文

拾參兩 依依<sup>10</sup>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

賣爲乎矣 本文記段 都文書中載錄 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

談是等以<sup>11</sup> 告官卞正事

畵主 門擊 丁元昌 [左寸]

證 妹夫 金兌貞 [着名]

筆 嫡長 丁最慶 [着名]

## 2-2-12) 1759년 이행민이 외5촌숙 신상관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9년(영조 35) 이행민이 토지 10두락지를 전문 53냥 값에 외5촌숙 신상관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24년 기묘년(1759, 영조 35) 10월 26일 외5촌숙 신상관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히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대삼평大 三坪에 있는 외가에서 묵으로 받은 논 5두락지와 제가 매득買得한 위쪽 5두락지, 수확 물 도합 50복 2속인 곳을 전문 53냥을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합니다. 위쪽 5두락지는 제가 매득했으므로 본문서 1장을 내 드리지만 아래 쪽 땅의 문기는 묵으로 받은 것으로 도문서에 기록되어 있어 내 드리지 못합니다.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상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畵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이행민, 상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착서하지 못함.

10 두 번째 '依'는 '數'의 오기이다.

11 '是等以(인 줄로)'는 '是去等(이면)'의 오기로 보인다.

乾隆二十四年己卯十月二十六日 外五寸叔辛象觀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道內大三坪伏在 外

家衿得畚五斗落果 自己買得畚上邊

五斗落 所耕合五十卜二束庫乙 價折錢

文五十三兩乙 依數捧上爲遣 右人

前 永永放賣爲乎矣 上邊五斗落 以自

己買得 故本文書一丈出給爲乎矣 下邊文記

段 以衿得都文書載錄 故不得許給

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

相考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李行敏 喪人故不得着曙<sup>12</sup>耳

## 2-2-13) 1767년 양성원이 정최갑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67년(영조 43) 양성원이 이매移買하기 위해 논 5두락지를 52냥 값에 생원 정최갑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32년 정해년(1767, 영조 43) 2월 초2일 정 생원 최갑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매移買하기 위해 내가 매득買得한 논 도내면道內面 대삼평大三坪에 있는 곤자답 5두락지, 수확물 3작 다해서 25부인 곳을 전문 52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문기 3장을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 만약 다른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답주畚主 양성원 [착명]

필집 정기득 [착명]

乾隆參拾貳年丁亥二月初八日 丁生員最甲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畚 道內

大三坪伏在 崑字畚伍斗落只 所耕

三作并二十五負庫乙 價折錢文伍拾

12 '曙'는 '霧'의 오기이다.

貳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三丈  
并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  
文 卞正者

畚主 梁聖源 [着名]  
筆 丁奇得 [着名]

## 2-2-14) 1770년 장한규가 신 생원 노 원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0년(영조 46) 장한규가 자신이 매득한 논 3두락지를 전문 12냥 5전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장한규는 논을 매매한 이유에 대해 전염병이 크게 돌아 피접을 나왔는데, 춘궁기에 끼니를 잇기 어려워서라고 했다.

건륭 35년 경인년(1770년 영조 46) 3월 초4일 신 생원 노 원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논을 갈아먹다가 금년에 전  
염병이 크게 성하여 피접하기 위해 와진촌臥津村에 나왔는데, 이번 춘궁기 매우 곤궁  
하던 때 끼니를 잇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도내면道內面 대삼평大三坪에 있는 곤자답 3  
두락지 1배미, 수확물 9부 1속인 곳을 전문 12냥 5전을 값으로 쳐서 받고 본문기 3장  
을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동생同生이나 조카들이 혹 다  
른 말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스스로 문서를 쓴 답주畚主 장한규 [작명]

乾隆參拾伍年庚寅三月初四日 辛生員奴元太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今年染役[疫]<sup>13</sup>  
大熾 故避接次 臥津村出來爲有矣 當此窮春  
赤立之日 繼糧極難 故道內面大三坪伏在  
崑字畚參斗落只一夜味 所耕玖負壹束庫 價  
折錢文十貳兩伍錢捧上 本文記三丈并以 右  
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侄子等 或有  
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13 '役은' '疫'의 오기로 보인다.

## 2-2-15) 1770년 박상우가 신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이 문서는 1770년(영조 46) 박상우가 논 5승락지를 전문 5냥 값에 신함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35년 경인년(1770, 영조 46) 3월 초4일 신함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가난한 까닭으  
로 형세상 부득이하여 황량면黃良面 초포점草浦店 뒷 마을 피자답 3배미 5승락지, 수확  
물 6속인 곳을 전문 5냥 값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  
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이나 동생同生 중에 행여 다투는 폐단이 있  
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畚主 박상우 [착명]

필집 김재여 [착명]

[배서] 함의는 산지기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문서를 받는다.

乾隆三十五年庚寅三月初四日 辛函前 文明<sup>14</sup>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耕食

爲自如可 貧寒所致以 勢不得以<sup>15</sup>

黃良面草浦店後洞 彼字畚三夜

五升落只 所耕六束庫乙 價折錢文五兩

以 交易依數捧上爲白遣 右人前 奉<sup>16</sup>文

記并以 永永仿<sup>17</sup>賣爲去乎 日後子孫

同生中 幸有相爭之弊是去等 持此

文記以 告官卞正事

畚主 朴尙右 [着名]

筆執 金再與 [着名]

[背書] 咸儀乃山直也 故以此名受文書

14 '文明'은 '明文'의 오기이다.

15 '以'는 '己'의 오기이다.

16 '奉'은 '本'의 오기이다.

17 '仿'은 '放'의 오기이다.

## 2-2-16) 1770년(영조 46) 신 조이가 신함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0년(영조 46) 신 조이가 논 2두락지를 7냥 5전 값에 신함의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신 조이는 매매 이유에 대해 남편이 사망한 후 세곡을 납부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륭 35년 경인년(1770, 영조 46) 4월 20일 신함의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세곡을 납부할 길이 없으므로 황량면黃良面 초포草浦 양마동평羊馬洞坪에 있는 답자답 2두락지, 수확물 1복 5속인 곳을 전문 7냥 5전을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동성 자손 중에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畝主 신 조이 [좌촌]

증인 5촌 김창득

증보 남자 형제 신성재 [착명]

필집 김치유 [착명]

乾隆三十五年庚寅四月二十日 辛咸儀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家夫

身死後 稅穀備納無路 故黃良面草浦羊

馬洞坪 談字畝二斗落只 所耕一卜五束 價折

錢文柒兩五錢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同姓子孫

中 雜談爲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畝主 申召史 [左寸]

證人 柴五寸 金昌得

保 甥 申成才 [着名]

筆 金致裕 [着名]

## 2-2-17) 1772년 박거구리가 김태관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2년(영조 48) 박거구리가 밭 2두락지를 전문 6냥 5전 값에 김태관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37년 임진년(1772년, 영조 48) 2월 14일 김태관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낱히 쓸 데  
가 있어 본면 방죽 내에 있는 결자전 2두락지, 수확물 ○복인 곳을 전문 6냥 5전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문서를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이나 족속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  
십시오.

전주田主 박거구리 [착명]

증인 김수옥 [착명]

필집 한량 이인성 [착명]

[배서] 도내 사개방죽 옆 절자답 문서 2장

乾隆參拾柒年壬辰二月十四日 金兌觀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買得耕食

是如可 要用所致以 本面防築內伏

在 結字田二斗落只 所耕 卜庫乙 價折

錢文陸兩伍錢 依數捧上爲遣

本文書并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談之

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朴去句里 [着名]

訂人 金守郁 [着名]

筆執 閑良李寅成 [着名]

[背書] 도내 사개방축변 절조답쳐 문서 두장

## 2-2-18) 1772년 심무가 이기진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2년(영조 48) 유학 심무가 논 45두락지를 전문 350냥 값에 유학 이기진에게 방  
매한 문기이다. 심무는 매매 이유를 이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건륭 37년 임진년(1772년, 영조 48) 정월 19일 유학 이기진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매移買하기 위해 영광 도내면道內面 장



등평長等坪에 있는 곤자답 5두락지, 수확물 18복 3속인 곳과 생자답 6두락지, 수확물 ○복○속인 곳과 금자답 5두락지, 수확물 12복 1속인 곳과 생자답 8두락지, 수확물 20복인 곳과 우자답 6두락지, 수확물 18복인 곳과 금자 3두락지, 수확물 7복 6속인 곳과 생자답 12두락지, 수확물 35복 2속인 곳을 전문 35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합니다. 본문기는 추후에 찾아 보낼 계획입니다.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심무 [착명]

乾隆三十七年壬辰正月十九日 幼學李基鎮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靈光道內面長等坪伏  
在 崑字畝五斗落 所耕十八卜三束庫果 生字六斗落  
所耕 … 庫果 金字五斗落 所耕十二卜一束庫果 生字八  
斗落 所耕二十卜庫果 字字六斗落 所耕十八卜庫果  
金字三斗落 所耕七卜六束庫果 生字十二斗落 所耕三十五卜二束  
庫乙 價折錢文三百五十兩 依數捧上爲遣 右  
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從後搜送計料  
爲去乎 日後如有雜言 以此文下正事  
畝主 自筆 幼學沈鏊 [着名]

## 2-2-19) 1780년대 이동신이 김순택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년) 혹은 1781년(정조 5년)에 이동신이 이성 5촌인 김순택에게 논 3두락지를 전문 6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46년(1781, 정조 5) 경자년(1780, 정조 4)<sup>18</sup> 11월 11일 김순택에게 주는 명문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묵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이매하기 위해 입석촌立石村 앞 들에 있는 위자답 5두락지 내 아래 쪽 논 3두락지 3배미, 수확물 13복 4속인 곳을 값 전문 60냥을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서는 위의 자호의 답(위자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한다. 이날 이후 자손, 족속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

18 건륭 46년은 1781년(정조 5년)이고, 경자년은 1780년(정조 4년)이다. 따라서 '건륭 46년'과 '경자년' 중 하나는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 이성 5촌 이동신 [작명]

증참 동생형 이동옥

필집 이인성 [작명]

乾隆肆拾陸年庚子十一月十一日 金順澤處 明文

右明文事段 傳來衿得耕食是如可 移買次

立石村前坪伏在 爲字畝五斗落只內 下

邊畝參斗落只三夜味 所耕十三卜四束庫乙 價錢

陸拾兩 依數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

賣爲乎矣 本文書段 同字畝並付仍于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畝主 異姓五寸 李東新 [着名]

證參 同生兄 李東玉

筆執 李寅成 [着名]

## 2-2-20) 1794년 동신이 3촌질 백열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94년(정조 18) 막내 3촌숙 동신이 논 2두락지를 전문 28냥을 받고 3촌질 백열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59년 갑인년(1794, 정조 18) 2월 17일 3촌질 백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부채가 많아 뭇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본면 입석촌立石村 앞에 있는 답자답 2두락지 2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28냥을 수대로 받고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에 만약 다른 말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로 빙고할 것이다.

답주畝主 막내 3촌숙 동신 [작명]

필집 큰형 이동옥 [작명]

乾隆伍拾玖年甲寅二月十七日 三寸侄白悅前 明文

右明文事段 負債許多 衿得耕食是如可

伏在本面立石村前 談字畚二斗落只二夜味  
所耕 負 束廳 錢文二十八兩 依數捧上爲遣  
本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  
有雜談之弊是去等 以此憑考事  
畚主 季三寸叔 東信 [着名]  
筆 長兄 李東玉 [着名]

## 2-2-21) 1811년 김준득이 신행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1년(순조 11) 김준득이 논 6두락지를 전문 50냥 값을 받고 신행온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손아래 동생과 제수의 장례에 빚을 진데다 사채빚을 갚고 공곡公穀을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가경 16년 신미년(1811, 순조 11) 3월 초3일 유학 신행온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갑자기 동생제同生弟와 제수의 상을 당해 그 초종장례에 빚을 많이 졌을 뿐 아니라 더욱 이 사채와 공곡公穀을 마련해 낼 방도가 없으므로 도내면道內面 보리산평甫里山坪에 있는 수두리水頭里의 논 〇자, 수확물 〇부 〇속 5두락지 1배미와 같은 보리산평의 이웃한 논 〇자 수확물 〇부 〇속 5두락지 1배미, 도합 6두락지를 전문 5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합니다.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문기를 작성합니다. 이날 이후 자손, 동생同生, 족속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답주畚主 김준득 [착명]  
필집 유학 최광효 [착명]  
증보 노奴 이선 [착명]

嘉慶拾陸年辛未三月初三日 幼學辛行溫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奄遭同生弟  
與弟嫂喪變 其於初終葬禮 負債許多瓮不  
喻 又重之 以私債與公穀 萬無辦出之道爲白良  
道內面甫里山坪伏在 水頭里畚 字庫 所耕 負  
束五斗落壹夜味果 同坪隣畚 字 所耕

負 束壹斗落庫壹夜味 合陸斗落庫乙  
 價折錢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  
 爲去乎 本文記段 中間闕失乙仍于 成文記爲白  
 乎所 日後子孫同生族屬良中 如有雜談是良置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金俊得 [着名]

筆執 幼學 崔光孝 [着名]

證保 奴二先 [着名]

## 2-2-22) 1816년 신호묵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6년(순조 16) 신호묵이 논 5두락지를 전문 8냥 값으로 신모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가경 21년 병자년(1816, 순조 16) 2월 초1일 신○○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히 쓸 데가 있어 내가 매득買得한 나의  
 영광 도내면道內面 대삼보평大三深坪에 있는 곧자답 5두락지, 수확물 2부 속 ○곳을 전  
 문 8냥 값으로 처서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  
 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畚主 스스로 문서를 쓴 신호묵 상인喪人

증인 한귀남 [착명]

이 경우에 배자를 아울러 전문기前文記 3장을 내어 줌.

嘉慶貳拾壹年丙子二月初一日 辛

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

得矣 靈光道內面 伏在大三深坪 崑

字畚伍斗落只 所耕貳負

束 庫乙 價折錢文捌兩 右人

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持此

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自筆 辛孝默 喪人  
證 韓貴男 [着名]

此亦中 牌子并以前  
文記三丈 出給耳

## 2-2-23) 1816년 이진백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6년(순조 16) 이진백이 논 4두락지를 전문 11냥 값으로 신모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긴히 쓸 데가 있다는 일반적인 이유와 함께 환곡을 바치라는 관의 독촉을 못 이겨서라고 했다.

가경 21년 병자년(1816, 순조 16) 2월 초5일 신○○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히 쓸 데가 있는데, 이번에 바쳐야 할 환곡이 많으므로 관의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방죽 아래에 있는 위자답 4두락지, 수확물 ○부 ○속인 곳을 갈아먹다가 전문 11냥 값으로 처서 위 사람에게 수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畚主 상인喪人 이진백  
증인 한귀남 [착명]

嘉慶貳拾壹年丙子十二月初五日 辛 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當此還  
穀許多 故不勝官督 伏  
在防築堤下 爲字畚肆斗  
落只 所耕負束庫乙  
耕食是多可<sup>19</sup> 價折  
錢文拾壹兩 右人前 依數  
捧上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若有雜談

19 '是如可'를 '是多可'로 표기했다.

是去等 持此文記 卞正事

畚主 喪人 李辰伯

證 韓貴男 [着名]

## 2-2-24) 1810년대 이영식이 신덕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8년(순조 18) 혹은 1816년(순조 16) 이영식이 논 3두락지를 전문 42냥 값에 신덕태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사채가 많아서라고 했다.

가경 23년(1818, 순조 18) 병자년(1816, 순조 16) 신덕태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여러 해 갈아먹다가 사채가 많아 황량면黃良面 초포草浦 앞들 피자답 3두락지 6배미, 부수 7부 2속을 전문 42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문기는 잃어버린 채로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畚主 이영식 [작명]

증인 김계철 [작명]

필집 김택서 [작명]

嘉慶貳拾參年丙子 辛德太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

如可 私債許多 故黃良面草浦前坪

彼字畚三斗落六夜味 負數七負二束庫乙叱<sup>20</sup>

價折錢文肆拾貳兩 依數捧上爲遣 本文

記失之次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呈<sup>21</sup>事

畚主 李永植 [着名]

證人 金啓哲 [着名]

筆執 金宅西 [着名]

20 '庫乙叱'은 '廳乙'의 오기로 판단된다.

21 '呈'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 2-2-25) 1819년 이흥건이 한광심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9년(순조 19) 유학 이흥건이 이매하기 위해 문중 논 6두락지를 전문 25냥 값에 한광심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가경 24년 기묘년(1819, 순조 19) 2월 초6일 한광심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중 논을 이매移買할 계획으로 도내  
면道內面 대삼보평大三堡坪에 있는 출자답 6두락지, 수확물 〇속 2배미와 작은 1배미를  
전문 2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구문기舊文記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  
放賣하니, 이날 이후 문중에서 만약 어지럽게 쟁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  
고 빙고憑考하십시오.

답주畝主 문장門長 유학 이흥건 [착명]  
필집 문중 유사有司 유학 이필렴 [착명]  
증보證保 유학 이봉관 [착명]

嘉慶貳拾肆年己卯二月初六日 韓光心前 明文  
右明文事段 惟我門畝移買之意 道內面大三  
堡坪伏在 出字畝陸斗落只 所耕 束庫  
二夜味小一夜味 價折錢文貳拾伍兩 依數  
捧上爲遣 右人前 舊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門中若有紛紜之端 則持此  
文記 憑考事

畝主 門長 幼學 李弘建 [着名]  
筆執 門有司 幼學 李必廉 [着名]  
證保 幼學 李鳳觀 [着名]

## 2-2-26) 1819년 최연갑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9년(순조 19) 무학武學 최연갑이 논 6두락지를 전문 22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공사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경 24년 기묘년(1819, 순조 19) 2월 19일 유학 〇〇〇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채가 많아 도내면道內面 청동평靑銅坪에 있는 이자답 6두락지 4배미, 수확물 ○부○속인 곳을 전문 22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문기를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동생同生,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畜主 무학武學 최연갑 [작명]

증인 양인 이선 [작명]

필집 유학 정재옥. 상중이라 작명하지 않음.

산쪽 1두락지 1배미는 본문기를 잃어버려 내 주지 못함. 끝.

嘉慶貳拾肆年己卯 二月十九日 幼學 前 明文

右明文事段 公私債許多 故伏在道內

面靑銅坪 異字畜六斗落四夜味 所

耕 負 束庫 價折錢文貳拾貳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並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下

正事

畜主 武學崔延甲 [着名]

訂人 良人李仙 [着名]

筆執 幼學丁載郁 喪不着

山邊一斗落一夜味段 本文記闕失不

得出給印

## 2-2-27) 1821년 박용하가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21년(순조 21) 박용하가 논 6두락지를 전문 50냥 값에 유학 신모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이매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도광 원년 신사년(1821, 순조 21) 12월 11일 유학 신○○께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편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방죽 아래에 있는 상자답 3두락지, 수확물 12부인 곳과 그 아래 위자답 3두락지, 수



확물 11부 2속인 곳, 도합 6두락지를 전문 5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박용하 [작명]

이 경우에 위자답 본문서 1장을 아울러 드리되 상자답 본문서는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내주지 못함. 끝.

道光元年辛巳十二月十一日 幼學辛 明文

右明文事段 衿得耕食是如可 移  
買次 伏在防築底 霜字畝三斗落  
所耕拾貳負庫果 其下爲字畝三斗  
落 所耕拾壹負二束庫 合陸斗  
落只庫乙 價折錢文伍拾兩 依數擿  
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畝主 自筆 朴龍河 [着名]

此亦中 爲字畝本文  
書一丈并以 爲乎矣  
霜字畝本文書段  
中間闕失 故不得出  
給印

## 2-2-28) 1826년 김재황이 이응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26년(순조 26) 김재황이 논 2두락지를 전문 30냥 값에 이응천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부채가 산과 같이 많아서라고 했다.

도광 6년 병술년(1826, 순조 26) 10월 17일 이응천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뭇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부채가 산과 같아 형세상 부득이하여 황량면黃良面 초포촌草浦村 앞들 시자답 8승락지 1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과 건너 냇가에 있는 답자답 1두 2승락지 3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

도합 2두락지를 전문 3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여러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김재황 [작명]

증보訂保 동성질 갑철 [작명]

필집 춘갑 [작명]

이 경우에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반을 잘라서 줌.

道光六年丙戌十月十七日 李應千前 明文  
右明文事段 衿得耕食是如可 負債如山 勢  
不得已 伏在黃良面草浦村前坪 恃字畝  
八升落一夜味 所耕 負 束廳果 越川邊  
伏在談字畝一斗二升落三夜味 所耕 負束  
庫 合二斗落 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  
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諸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下正事

畝主 金才璜 [着名]

訂保 同姓侄 甲哲 [着名]

筆子 春甲 [着名]

此亦中 本文記段

他田畝并付 故

折半割給事

## 2-2-29) 1827년 신중현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27년(순조 27) 신중현이 논 3두락지를 전문 2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7년 정해년(1827, 순조 27) 정월 26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히 쓸 데가 있어 무장제방 아래에 있는 상자답 3두락지 3배미, 수확물 14부인 곳을 2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합니다. 본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렸

으므로 내 주지 못하고 새로 작성한 문서 1장으로 방매하니, 이날 이후 혹 다른 말하  
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신중현 [작명]

道光七年丁亥正月二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耕食是如

可 要用所致 畝長堤下伏在 霜

字畝三斗落三夜味 所耕十四負

庫乙 價折貳拾伍兩 依數

捧上 右人前 永永放賣爲乎

矣 本文記段 中間闕失 故不得

出給爲遺 以新文一張放賣 日後或有

雜談 以此文 憑考事

畝主 自筆 幼學 辛重鉉 [着名]

## 2-2-30) 1827년 이지용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27년(순조 27) 이지용이 논 4두락지를 전문 24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7년 정해년(1827, 순조 27) 11월 28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한 논을 갈아먹다가 긴히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출자답 4두락지 3배미, 수확물 15부 5속인  
곳을 전문 24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다른 말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 1장을 아울러 내줌.

답주畝主 이지용 [着名]

증인 이응적 [작명]

道光七年丁亥十一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道內面元堂坪伏在 出字畝四斗

落只三夜味 所耕十五負五束庫乙 折價

錢文貳拾肆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之弊 則以此  
 文記 告官下正事  
 此亦中 舊文記一張并以  
 出給次  
 畚主 李之用 [着名]  
 證人 李應迪 [着名]

## 2-2-31) 1828년 정재욱이 박명량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28년(순조 28) 정재욱이 박명량에게 논 5두락지를 전문 8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8년 무자년(1828, 순조 28) 정월 초7일 박명량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도내면道內  
 面내의 오서교五瑞橋내 일자답 5두락지 4배미, 수확물 〇부 〇속인 곳을 전문 18냥 값  
 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다른 말하는 사  
 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이 경우에 본문기는 도문기都文記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함. 끝.

답주畚主 유학 정재욱 [착명]  
 증필證筆 박석량 [착명]

道光八年戊子正月初七日 朴明良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起<sup>22</sup>買得是如可 道  
 內面內 五瑞橋內 日字畚伍斗落肆  
 夜味 所耕 負 束廳 價折  
 錢文捌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 告  
 官下正事

22 '起'는 '근'의 오기로 판단된다.

此亦中 本文記段 都文記在

錄 故不得出給印

畚主 幼學 丁載郁 [著名]

證筆 朴碩良 [著名]

## 2-2-32) 1830년 표인득이 이응종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0년(순조 30) 표인득이 논 2두락지를 전문 20냥 값에 이응종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표인득은 진전이었던 처가 논을 매득하여 갈아먹다가 세곡을 납부할 길이 없어 방매한다고 했다.]

도광 10년 경인년(1830, 순조 30) 윤 4월 12일 이응종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가의 논 2두락지가 갑술년 이후 묵은 땅  
이 되었으므로 위 진전의 수확물이 매년 귀속될 곳이 없어 나에게 오로지 팔았습니  
다. 처남 박복득에게서 영원히 백문기를 받고 매득買得한 후 개간하여 갈아먹다가 위  
처가의 진전陳田을 세곡稅穀을 바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황량면黃良面 초포草浦 양마  
洞養馬洞에 있는 담자담 2두락지, 수확물 〇부 〇속인 곳을 전문 27냥 값으로 처서 수  
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과 처족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이 경우에 본문기는 잃어버렸으므로 소지를 관에 올려 받은 입지立旨를 내 주니, 이날  
이후 빙고하십시오.

답주畚主 표인득 [착명]

증인 유세위 [착명]

필집 유학 박률 [착명]

道光十年庚寅潤<sup>23</sup>四月十二日 李應宗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家畚二斗落 甲戌以後陳弊

故右陳田所耕每年歸屬無處 專賣於

我矣 妻男朴福得處 永永白文買得 起懇<sup>24</sup>

耕食是如可 右妻家陳田 稅穀納上之道

無路 故不得已黃良面草浦養馬洞伏

23 潤은 '閏'의 오기로 판단된다.

24 懇은 '懇'의 오기로 판단된다.

在談字畚二斗落只所耕 負 束庫乙價  
 折錢文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  
 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與妻族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定<sup>25</sup>  
 事  
 此亦中 本文記段 見失 故立旨所志呈官  
 出給爲去乎 日後憑考事

畚主 表仁得 [着名]

證人 劉世位 [着名]

筆 幼朴律 [着名]

## 2-2-33) 1830년 신계가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이 문서는 1830년(순조 30) 신계가 논 5두락지를 전문 55냥 값에 친족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0년 경인년(1830, 순조 30) 윤4월 27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입석立石 제방 아래 위자답 5두락지 6배미, 수확물 20부○  
 속인 곳을 전문 5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  
 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이 경우에 본문기는 아래 쪽 땅의 논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함.

답주畚主 스스로 문서를 쓴 친족 신계 [착명]

증참證參 친족 신흥록 [착명]

道光拾年庚寅閏四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道內面立石防築  
 底 爲字畚五斗落六夜味 所耕二  
 十 負 束庫乙價折文伍拾  
 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

25 '定'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

以此文 憑考事

此亦中 本文記段 下邊

地畝並付 故未得出給耳

畝主 自筆 族 辛桂 [着名]

證參 族 辛興祿 [着名]

## 2-2-34) 1835년 신영진이 족장族丈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5년(헌종 원년) 유학 신영진이 논 12두락지를 전문 40냥 값에 족장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5년 을미년(1835, 헌종 원년) 12월 초9일 족장族丈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내면道內面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출자답 5  
두락지 1배미와 옥자답 7두락지 3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4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시끄  
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답주畝主 유학 신영진.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증필證筆 형 신영섭.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道光十五年乙未十二月初九日 族丈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邊衿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道內面元堂坪出字畝

五斗落一犯味庫果 玉字畝柒斗落三犯[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文肆拾

兩 依數捧上爲遣 右處 本文記一丈

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紛紜

之弊 以此憑考事

畝主 幼學辛永鎮 喪不着

證筆 舍兄 辛永燮 喪不着

## 2-2-35) 1836년 김씨가 이옥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6년(헌종 2) 김씨가 이옥련에게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던 논 4두락지를 전문 7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6년 병신년(1836, 헌종 2) 10월 15일 이옥련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sub>買得</sub>해서 갈아먹다가 부득이 황  
량 초포기동<sub>黃良草浦基洞</sub> 망자답 4두락지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75냥 값으로  
쳐서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sub>放賣</sub>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  
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빙고<sub>憑考</sub>하십시오.

답주<sub>畜主</sub> 시수<sub>總嫂</sub> 김씨<sub>金氏</sub> [수장]

증인 김화일 [착명]

필집 박률 [착명]

道光拾陸年丙申十月十五日 李玉連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不得已 伏在黃良  
草浦基洞 罔字畚四斗落只 所耕 負 束庫乙 價折  
錢文柒拾伍兩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憑考事

畜主 總嫂 金氏 [手掌]

證人 金和日 [着名]

筆 朴律 [着名]

## 2-2-36) 1837년 강기회가 표종형에게 밭과 시장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7년(헌종 3) 강기회가 밭 3두락지와 시장<sub>柴場</sub>을 전문 20냥 값에 표종형<sub>表從兄</sub>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7년 정유년(1837, 헌종 3) 5월 초1일 표종형<sub>表從兄</sub>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몫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  
가 있어 도내면<sub>道內面</sub> 입석촌<sub>立石村</sub> 뒤에 있는 우자전 3두락지, 수확물 ○부 ○속인 곳  
과 말 무덤 아래 냇가 80복을 벨 수 있는 시장<sub>柴場</sub>을 전문 2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



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  
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전주田主 유학 강기회 [착명]

증필證筆 유학 신항렬 [착명]

이 경우에는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전답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함.

道光拾柒年丁酉五月初一日 表從兄

前 明文

右明文事 衿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道內面立石村後

雨字田參斗落 所耕 負 束

庫果 馬墳下川邊 捌拾卜刈

取柴場庫乙 價折錢文貳拾

兩 依數捧上是遣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

是去等 以此文 告官下定<sup>26</sup>

事

田主 幼學 姜璣會 [着名]

證筆 幼學 辛恒烈 [着名]

此亦中 舊文記他田畝並

付 故不得出給事

## 2-2-37) 1838년 신항준이 종인宗人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8년(헌종 4) 신항준이 논 4두락지를 전문 19냥 값에 종인宗人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8년 무술년(1838, 헌종 4) 윤4월 21일 종인宗人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원당보평元堂溲坪 려자답 4두락지, 수확물이 19부 5속인 곳

26 '定'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을 전문 19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 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畜主 유학 신항준 [작명]

증참證參 한귀남 [작명]

道光十八年戊戌閏四月二十一日 宗人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

致 伏在道內面元堂深坪 麗字畜四斗落只 所耕

十九負五束庫乙 價折錢文拾玖兩 依數捧上爲

遣 右人前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如有雜談是去筭 以此文記 告官卜定<sup>27</sup>事

畜主 幼學 辛恒俊 [着名]

證參 韓貴男 [着名]

## 2-2-38) 1841년 이응종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1년(헌종 7) 이응종이 이사를 위해 집터의 건물, 텃밭과 논밭, 시장柴場 등을 36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21년 신축년(1841, 헌종 7) 정월 28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옮겨 거주하기 위해 황량면黃良面 초포草浦 앞뒤 들에 있는 피자 자호의 집터 4간, 행랑 3간, 헐가俠家 2간, 측간 2간, 채소밭 4승락지, 삼밭 3승락지, 아래 들의 능자답 1두 5승락지, 강자 6두락지, 망자전 4두락지, 담자답 5두 5승락지, 윗 들의 단자답 3두 5승락지, 망자 2두락지, 능자전 2두 5승락지, 담자전 2두락지, 계단식 밭 1두락지, 시자콩밭 3두락지, 시장柴場 10부와 외서해동外西海洞 충자답 10두락지 수확물이 ○복 ○속 인 곳과 명주 고개 소나무 밭 4곳과 약간의 농사철 도움받은 물건을 아울러 값 360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27 '定'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답주畝主 이응중 [착명]  
필집 박기 [착명]

道光貳拾一年辛丑正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起<sup>28</sup>買得耕食是如可 移居次 黃良面草浦前後坪伏在 彼字  
家垵四間果 行廊三間 伙家二間 厠間二間果 菜田四升落 麻田三升落 下坪 能字  
畝一斗五升落 岡字六斗落 岡字畝四斗落 談字畝五斗五升落 上坪 短字畝  
三斗伍升落 忘字二斗落 能字田二斗伍升落 談字田二斗落 梯田一斗落 恃字  
太田三斗落 柴場十負庫果 外西海洞 忠字畝十斗落 所耕 卜 東庫乙果 明  
珠峙松田四庫果 如干農時所輔之物并以 折價參百陸拾兩 依數捧上  
爲去乎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  
卜定<sup>29</sup>事

畝主 李應宗 [着名]  
筆 朴琦 [着名]

## 2-2-39) 1847년 한명화가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7년(헌종 13) 유학 한명화가 논 4두 3승락지를 전문 27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가산을 탕진하여 세금 낼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도광 27년 정미년(1847, 헌종 13) 2월 19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뭇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가산을 탕진한 나머지 세금을 낼 길이 없으므로 도내면道內面 대삼평大參坪에 있는 곤자답 위쪽 3두 락지 3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과 아래 쪽 곤자답 1두 3승락지 2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27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 하십시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한명화 [착명]  
증참證參 유학 신항렬 [착명]

이 경우에 본문기를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내 주지 못함.

28 起는 '근'의 오기로 판단된다.

29 定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道光貳拾柒年丁未二月十九日 前 明文  
 右明文事段 衿得耕食是如可 喪敗之餘 納稅  
 無路 故伏在道內面大參坪 崑字畚上邊三斗落  
 三夜味 所耕 負 束庫果 下邊崑字畚一斗參升落  
 二夜味 所耕 負 束庫叱 價折錢文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  
 有雜談是去筭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韓明和 [着名]

證參 幼學 辛恒烈 [着名]

此亦中 本文記中間闕失 故不得出給事

## 2-2-40) 1847년 정훤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7년(헌종 13) 정훤이 처가에서 몫으로 바다 경작하던 논 6두락지를 전문 83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27년 정미년(1847, 헌종 13) 3월 22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가에서 몫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긴급하  
 게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보리산평甫里山坪에 있는 수두답水頭畓 한자 자호의 논,  
 수확물 ○부 ○속인 곳 5두락지 1배미와 같은 보리산평의 이웃한 논 왕자답 수확물 ○  
 부 ○속 1두락지인 곳 1배미, 도합 6두락지를 전문 83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  
 문기 1장을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동생同生이나 자손 중  
 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  
 시오.

답주畓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정훤 [착명]

증인 유학 신치현 [착명]

道光二十七年丁未三月二十二日 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家衿得耕食是如可 切有用  
 處 故道內面甫里山坪伏在 水頭畓寒字庫  
 所耕 負 束 五斗落壹夜味果 同坪隣  
 畓往字畓 所耕 負 束壹斗落庫壹夜

味 合陸斗落庫乙 價折錢捌拾參兩 依數捧  
上爲遣 本文一丈并以 右人前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丁暄 [着名]  
證人 幼學 辛致賢 [着名]

## 2-2-41) 1847년 최치현이 모시밭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7년(헌종 13) 유학 최치현이 모시밭 5승락지를 전문 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광무 27년 정미년(1847, 헌종 13) 11월 21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내가 매득買得하다  
가 부득이하게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내의 우자 모시밭 5승락지, 수확물 ○부 ○속  
인 곳을 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  
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는 가대 문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함.

모시밭 주인 유학 최치현 [착명]  
증필證筆 유학 신항일 [착명]

道光貳拾柒年丁未十一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如可  
不得已 伏在道內立石村中 兩字亭田五升落  
所耕 負 束庫乙 價折五兩 依數  
捧用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如有相左之端 則以此文 憑  
攷事  
此亦中 舊文記段 并付於家  
垚文記 故不得出給事

亭田主 幼學 崔致鉉 [着名]  
證筆 幼學 辛恒一 [着名]

## 2-2-42) 1853년 신항유가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3년(철종 4) 신항유가 논 5두락지를 전문 6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함풍 3년 계축년(1853, 철종 4) 11월 초 9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의 집에서 몫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긴히 쓸 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도내면道內面 방죽 건너 들 상자답 5두락지 10배미, 수  
확물 ○부 ○속을 전문 6냥 값으로 처서 받아쓰고,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렸으므로 내 주지 못함.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신항유 [작명]

咸豐三年癸丑十一月初九日 前明文

右明文事 養家衿得耕

食是如可 要用所致 不得已

伏在道內面防築越坪 霜字

畝五斗落只十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文陸

兩捧用是遣 右人前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

左之端 則以此文記 憑攷

事

此亦中 舊文記闕失 故不得

出給事

畝主 自筆 辛恒惟 [着名]

## 2-2-43) 1896년 이이춘이 신 생원에게 묵은 땅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96년(건양 원년) 이이춘이 묵은 땅 2곳과 소 목장 1곳을 전문 20냥 값에 신 생원  
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병신년(1896, 건양 원년) 6월 20일 신 생원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앞 위덕 시장柴場 북쪽길 아래 묵은 땅 한 조각과 그 묵은 땅 아래 소 목장 1조각과 소 목장 아래 제언 동쪽 묵은 땅 한 조각을 전문 2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쓰고 위 덕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묵은 땅 주인 도내면道內面에 새로운 사람이이춘[착명]  
필집 유학 신진규[착명]  
증인 유학 정석연[착명]

丙申六月二十日 辛生員前 明文  
右明文事 由來道內立石村前 右宅  
柴場北邊路下 陳處一片果 陳處  
下牛場一片果 牛場下築堰東邊  
陳處一片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  
捧用是遣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  
憑考事

陳處主 道內新人 李以春[着名]  
執筆 幼 辛縉珪[着名]  
證人 幼 鄭錫衍[着名]  
際

## 2-2-44) 1898년 박상록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98년(광무 2년) 박상록이 논 6두락지를 전문 15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대한 광무 2년 무술년(1898) 3월 21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도내면道內面 흥건평洪巾坪 사자답 6두락지 2배미, 수확물 ○부○속을 값 전문 150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모두 내 주지 못함.

답주畜主 주록동走鹿洞 박상록 [작명]

증인 문서를 쓴 서순화 [작명]

끝

大韓光武貳年戊戌三月二十一日 明文

右明文事 傳來耕食是多可<sup>30</sup> 切爲

用處 故不得已 伏在道內面洪巾

坪師字畜六斗落二夜味 所耕

負束庫乙 折價錢文壹佰伍拾兩 依

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若有携貳之端 則以此

文記 憑考事

此亦中 舊文記中間闕失 故

未得并以出給事

畜主 走鹿洞 朴相祿 [着名]

證人 筆 徐順化 [着名]

際

## 2-2-45) 1898년 정영동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1898년(광무 2) 유학 정영동이 논 2두 5승락지를 전문 27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광무 2년 무술년(1898) 7월 25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본현 장자산莊子山 대촌大村 뒷들 꺾자답 2두 5승락지 6배미, 수확물 〇부 〇속인 곳을 값 전문 27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신문기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려 내주지 못함. 끝.

답주畜主 유학 정영동 [작명]

30 '是如可'를 '是多可'로 표기했다.



증필證筆 김대유 [착명]  
증참參證 이대중 [착명]

光武二年戊戌七月二十五日 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不得已 伏在本縣莊子山大村  
後坪 厥字畝二斗五升落六夜味 所耕  
負 束廳 折價錢文貳拾柒兩 依數捧  
上是遣 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則是去等  
文記以此憑考事  
此亦中 舊文記中間闕失  
故不得出給 印

畝主 幼丁永童 [착명]  
證筆 金大有 [착명]  
參證 李大仲 [착명]

## 2-2-46) 1900년 김경석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900년(광무 4년) 김경석이 논 4두락지를 전문 22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대한 광무 4년 경자년(1900) 4월 초4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  
가 있어 부득이하게 영광군 대제면大梯面 토보평土堡坪에 있는 봉자답 3배미 4두락지,  
수확물 〇부 〇속인 곳을 전문 220냥 값으로 처서 수대로 받아쓰고 새로 작성한 명문  
2장으로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갖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답주畝主 김경석 [착명]  
증필訂筆 유덕홍 [착명]  
끝.

大韓光武四年庚子四月初四日 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收人是如可 要  
 用所致 不得已 伏在郡地大梯面土堡  
 坪 封字畚三夜味四斗落只 所耕 負  
 束廩 價折錢文貳佰貳拾兩 依  
 數捧用是遣 以新明文二丈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交象 則以  
 此文 憑考事

畚主 金京錫 [着名]

訂筆 庾德弘 [着名]

際

## 2-2-47) 1913년 신태현이 신극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913년 도내면 황량면 죽동리에 사는 신태현이 논 5두락을 전문 500냥 값에 입석리에 사는 신극수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문서 하단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따로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착명 대신 도장을 찍었으며, 자호 뿐 아니라 지번도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매매 문기와 차이가 있다.

대정 2년(1913) 2월 25일 ○○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영광군 황량면黃良面 초포草浦 방저평方底坪에 있는 담자 161답 3두락지와 안산평案山坪 199답 8승락지와 같은 안산평 같은 자의 202답 1두 2승락지 도합 5두락지, 결結 23부 5속을 전문 50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쓰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매수인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신극수 [인]

매도인 황량면 죽동리竹洞里 신태현 [인]

끝.

大正二年二月二十五日 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耕食是多可<sup>31</sup>

31 '是如可'를 '是多可'로 표기했다.

要用所致 故不得已 伏在郡地黃良面  
草浦方底坪 談字一六一番三斗落果  
案山坪 一九九番八升落果 同坪 同字  
二〇二番一斗二升落 合五斗落 結貳  
拾參負六束庫乙 價折錢文伍百兩  
依數捧用是遣 右前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 憑考事

買受人 道內面立石里

辛克洙 [印]

賣渡人 黃良面竹洞里

辛太鉉 [印]

際

### (문중 및 계契의 논밭 거래)

2-2-48) 1612년 신유일, 신수일이 신응순에게 진전陳田을 허급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12년(광해 4) 유학 신유일, 신수일이 동성 친족인 생원 신응순에게 진전陳田을 허급한 문기이다. 신유일 등은 왜란 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화재를 방지하지 못해 증조모 분묘 근처 진전의 산림을 기르지 못한다며, 증조모 분묘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진전을 허급한다고 했다.

만력 40년 임자(1612, 광해 4) 8월 초2일 동성 친족인 생원 신응순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는 다음과 같다. 신북身北 2도 정동평丁洞坪의 오래된 진전陳田은 조상의 소유였다. 증조모 분산 근처로 소나무를 길렀는데, 왜란 후에는 서당이 무너져 내렸고, 또 묘지기가 없고 더욱이 들불이 번져 산림을 기를 길이 없었다. 처음에 위 사람의 집 안산으로 화재를 방지하여 산림을 기르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산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영원히 허급許給한다.

스스로 문서를 쓴 전주田主 유학 신유일 [착명], 수일 [착명]

증인 동성 7촌질 신숙 [착명]

萬曆四十年壬子八月初二日 姓族生員辛應純處 明文

右文 身北二道上丁洞坪久遠陳田亦 祖上己  
 物是在果 曾祖母墳山近處以 長養松木爲如乎  
 亂後段 書堂既廢 又無墓直 加之以野火延燒  
 養山無路 初亦 同人家案山以 無爲禁火養  
 山是在如中 墳山以不爲無助是乎等乙以 永永  
 許給爲臥乎事

自筆田主 幼學 辛惟一 [着名]

守一 [着名]

證 同姓七寸姪辛淑 [着名]

## 2-2-49) 1754년 신명응이 문장 신경룡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54년(영조 30) 문중 사람인 신명응이 논 3두락지를 전문 30냥 값에 문계門契에 방매하고, 문장 신경룡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건륭 19년 갑술년(1754, 영조 30) 4월 21일 문장 신경룡께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히 쓸 데가 있어 방죽 아래 들에 있는 위  
 자답 3두락지 4배미, 수확물 11복 5속인 곳을 전문 30냥을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문계門契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되 본문기를 아울러 전해 주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  
 약 다른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답주畝主 족말族末 신명응 [착명]

필집 족말 신익수 [착명]

乾隆十九年甲戌四月二十一日 門長辛慶龍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伏在防築

底坪 爲字畝三斗落只四夜味 所耕十

一卜五束庫乙 價折錢文三十兩

依數捧上爲遺 門契中 永永放賣

爲乎矣 本文并以 傳授爲去乎 日後

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卜正事

畝主 族末 辛命凝 [着名]

筆 族末 辛益壽 [着名]

## 2-2-50) 1770년대 경침이 족제族弟 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7년(정조 원년) 혹은 1778년(정조 2년)에 경침이 논 3두락지를 족제族弟인 단에게 전문 40냥을 받고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42년((1777, 정조 원년) 무술년(1778년 정조 2년)<sup>32</sup> 10월 초 1일 족제族弟 단에게 드리는 명문

이 문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문계門契에서 분급한 논인 방죽 아래에 있는 3두락지, 수확물 ○복 ○속, 4배미, 값 전문 40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만약 뒷날 시끄러운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족형族兄 경침 [착명]

乾隆四十二年戊戌十月初一日

族弟檀前 明文

右文爲 要用所致 自門契分給畝

伏在防築底三斗落只 所耕 卜

東 四夜味庫 價錢四十兩 捧上

永永放賣 如後有擾端 則持

此卜呈<sup>33</sup>者

畝主 自筆 族兄 景沉 [着名]

## 2-2-51) 1787년 신우곤이 과계장 신치묵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87년(정조 11) 유학 신우곤이 과계장科契長인 신치묵에게 논 2두락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32 건륭 42년은 1777년(정조 원년)이고, 무술년은 1778년(정조 2년)이다. 따라서 '건륭 42년'과 '무술년' 중 하나는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보'은 '표'의 오기이다.

건륭 52년 정미년(1787, 정조 11) 11월 22일 과계장科稷長 신치묵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출  
자답 2두락지 2배미, 수확물 ○부○속인 곳을 1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계중稷  
中에 본문기 1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할 것이다.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신우곤 [작명]

乾隆五十二年丁未十一月二十二日 科稷長

辛致默處 明文

右明文爲 要用所致 伏在元堂

坪 出字畝二斗落只二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錢十五兩 依數捧上爲遣

右稷中 本文記一張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以此文 下正事

畝主 自筆 幼學辛佑坤 [着名]

## 2-2-52) 1789년 정천달이 문계장 신태성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89년(정조 13) 계 공사원 정천달이 문계장 신태성에게 논 2두락지를 방매한 문기이  
다.

건륭 54년 기유년(1789, 정조 13) 11월 초10일 문계장門稷丈 신태성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계科稷에서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출자답  
2두락지, 수확물 ○복 ○속인 곳을 매득買得했습니다. 그런데 상수喪守가 끝났으므로  
부득이 전문 10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계중稷中에 본문기를 아울러 영영 방매放  
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  
십시오.

답주畝主 계 공사원公事員 스스로 문서를 쓴 정달천 [작명]

乾隆五十四年己酉十一月初十日 門稷丈

辛兌成前 明文

右明文事 自科稷 伏在元堂坪 出字  
畚二斗落只 所耕 卜 束庫 買得  
矣 喪守則罷 故不得已價折錢文  
拾兩 依數捧上 右稷中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是去等 以此下正事

畚主 稷公事員 自筆 丁達天 [着名]

## 2-2-53) 1789년 이동옥이 문계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89년(정조 13) 이동옥이 논 4두락지를 문계장門稷長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54년 기유년(1789, 정조 13) 4월 초9일 문계장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부채  
가 많으므로 부득이 본면 퇴보평退漚坪에 있는 생자답 4두락지, 수확물 12부 ○속인 곳  
을 전문 25냥을 수대로 받고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畚主 스스로 문서를 쓴 이동옥 [착명]

乾隆伍拾肆年己酉四月初九日 門稷長 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買得耕食是如可 負債  
許多 故不得已本面退漚坪伏在 生字畚四斗落只  
所耕十二負 束廳乙 錢文二十五兩 依數捧上爲  
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以此下政<sup>34</sup>事

畚主 自筆 李東玉 [着名]

34 '政'은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 2-2-54) 1790년 이득채가 계장 신의묵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90년(정조 14) 이득채가 논 3두락지를 전문 17냥을 받고 계장 稷長 신의묵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문기 작성시 방매자인 이득채는 상중이어서 착명하지 않았다.

건륭 55년 경술년(1790, 정조 14) 정월 27일 계장 稷長 신의묵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은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득 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도내면 道內面 퇴평 耒坪에 있는 생자답 3두락지 2배미, 수확물 11부 ○ 속인 곳을 값 전문 17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본문기 2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 放賣하니, 이날 이후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 畝主 상인 喪人 이득채 착명하지 않음.

증인 김서옥 [착명]

필집 이동옥 [착명]

乾隆伍拾伍年庚戌 正月二十七日 稷長辛誼默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以 道內面耒坪伏在 生字畝參斗落只二夜味 所

耕十一負 束廩 價錢拾柒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下正事

畝主 喪人 李得采 不着

證人 金瑞郁 [着名]

筆執 李東玉 [着名]

## 2-2-55) 1791년 계공원 稷公員 김영옥이 신생원택 노 시원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91년(정조 15) 계공원 稷公員 김영옥이 계 소유 논 3두락지를 전문 55냥을 받고 신생원택 노 시원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건륭 56년 신해년(1791, 정조 15) 11월 11일 신생원택 노 시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8사람이 계를 만들었는데, 금년에 이르러 각 계원이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계에서 산 논을 이와 같이 판다. 도내면道內面 우평牛坪에 있는 강자답 3두락지 3배미, 수확물 12부 5속인 곳과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출자답 2두락지 2배미, 수확물 7부인 곳과 본면 퇴평垈坪 3두락지 1배미를 합하여 값 전문 55냥을 수대로 받고 3곳 본문기 6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할 것이다.

답주畝主 계공원稷公員 김영옥 [착명]

증인 김명철 [착명]

필집 김동옥 [착명]

乾隆伍拾陸年辛亥十一月二十一日 辛生員宅奴時元 明文  
右明文事 惟我八員作稷矣 至於今年 各員生  
活無路 故不得已自稷買畝如是發賣爲去乎  
伏在爲[道]內牛坪崗字畝三斗落只三夜味 所耕十二負五束庫果  
伏在元堂坪出字畝二斗落只二夜味 所耕七負  
廳果 本面耒坪三斗落只一夜味廳乙 合價錢  
伍拾伍兩 依數捧上爲遣 三庫本文記六丈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是去等 以此文記 卞正事

畝主 稷公員 金靈玉 [着名]

訂人 金明喆 [着名]

筆 李東玉 [着名]

## 2-2-56) 1814년 신항엽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4년(순조 14) 신항엽이 논 4두락지를 13냥 값을 받고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이유는 7대조 장령공掌令公의 제위祭位 경영을 위해서라고 했다.

갑술년(1814, 순조 14) 12월 초10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7대조 장령공掌令公의 분묘가 진양면陳良面 백옥개白玉介 남쪽 들에 있고, 나의 돌아가신 조부와 아버지때부터 제위祭位를 경영하던 것이 나로부터 3세대가 된다. 아! 우리 7대 자손이 나의 숙부와 조카, 부자 수삼명에

불과하고 또 가산이 없어 뜻은 있는데 행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난 봄에 비로소 약간의 재물을 얻게 되어 내심 이익을 볼릴 가망이 있었는데, 또 금년에 큰 흉년을 만나 수삼의 자손이 입에 풀칠할 방도가 전혀 없으니 하늘의 무정함에 개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했다. 종이를 대하니 한심했지만 3세대 동안 경영해왔는데 나누어 먹기를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뭇으로 받은 논 가양평(加陽坪) 4두락지, 수확물 〇인 곳을 전문 13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 써 영원히 7대조 제위답에 바쳐 어진 자손이 영세토록 잊지 않고 제사를 끊어버리지 않도록 천만 기원한다.

宗孫 스스로 문서를 쓴 항엽 [작명]

甲戌十二月初十日 前 明文  
 右明文事 七代祖掌令公墳墓 在  
 於陳良面白玉介南向之原 而自  
 我先祖父所營祭位者 相我  
 爲三世 嗟我七代子孫不過吾叔  
 姪父子數三 又無家產 有意未遂  
 者 積有年矣 前春始得如干物 內  
 心息利幾有可成之望 而又庸  
 今年之大無 數三子孫萬無糊口  
 之道 此卽皇天之不弔耶 不  
 堪慨然 臨紙寒心 然三世所營  
 之事 不可以以爭公食 故矜[矜]得  
 畚加陽坪四斗落只 所耕 庫乙 價  
 折錢文十三兩 依數用之 永永  
 納於七代祖祭位畚 以待賢子孫永  
 世不忘不絕香火者 千萬祝手爲  
 臥乎事

宗孫 自筆 恒曄 [着名]

## 2-2-57) 1833년 문장 신계가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3년(순조 33) 문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문장(門長)인 신계가 논 5두 5승락지를 전문 5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13년 계사년(1833, 순조 33) 2월 21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길이 없으므로  
영광군 도내면 도동촌陶洞村 앞 들에 있는 등자답, 치자답 5두 5승락지 13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55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하십시오.

문장 신계.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증인 신호목 [착명] 신기원[착명]

필집 신기순 [착명]

道光拾參年癸巳二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 門中納稅無路 故伏在郡地

道內面陶洞村前坪 騰字致字畝五斗五升

落十三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

文五拾五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門長 辛桂 喪不着

證人 辛孝默 [着名]

辛基元 [着名]

筆 辛基岫 [着名]

## 2-2-58) 1850년 신광섭이 입석촌 계에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0년(철종 원년) 유학 신광섭이 논 4두락지를 전문 9냥 값에 입석촌 계에 방매한  
문기이다.

도광 30년 경술년(1850년, 철종 원년) 1월 초10일 입석촌立石村 계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  
요하게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대삼보평大三堡坪 강자답 4두락지 2배미 수확물 14  
부인 곳을 전문 9냥 값으로 쳐서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  
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유학 신광섭 [착명]

증인 유학 신항원 [착명]

필집 유학 신항일 [착명]

道光參拾年庚戌十一月初十日 立石村稷中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伏在道內面大三堡坪 崗字畝

四斗落只二夜味 所耕十四負庫乙 價折

錢文玖兩 依數捧用是遣 舊文一文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交

象之端是去等 以此文記 卞正事

畝主 幼學 辛光燮 [着名]

證 幼學 辛恒元 [着名]

筆 幼學 辛恒一 [着名]

## 2-2-59) 1853년 문중에서 신광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3년(철종 4) 문중에서 논 3두락지를 전문 6냥 값에 신광규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함평묘에서 세금을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함평 3년 계축년(1853, 철종 4) 3월 20일 신광규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평묘咸平墓에서 세금을 납부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 앞 들 치자·우자답 3두락지 6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6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문중 유사有司 신항렬 [착명]

증인 신광섭 [착명]

신기영 [착명]

신기보 [착명]

필집 신항일 [착명]

증참證參 신기원 [착명]

咸豐參年癸丑三月二十日 辛宏珪前 明文  
右明文事 咸平墓陳納稅無路 故不得已  
伏在道內面陶洞村前坪 致雨字畚三斗  
落只六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文  
陸兩 依數捧上是遣 舊文記一丈並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爻象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 畚主 門有司 辛恒烈 [着名]
- 證 辛光燮 [着名]
- 辛基永 [着名]
- 辛基輔 [着名]
- 筆執 辛恒一 [着名]
- 證參 辛基元 [着名]

## 2-2-60) 1861년 신용규가 사문중私門中에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81년(철종 12) 유학 신용규가 논 3두락지를 전문 13냥 값에 사문중私門中에 방매한 문기이다.

함풍 11년 신유년(1861, 철종 12) 11월 13일 사문중私門中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원당평元堂坪 옥자답 3두락지 2배미, 수확물 〇부 〇속을 전문 13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문중에 구문기舊文記 1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 답주畚主 유학 신용규.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 형 유학 신병규.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 증필證筆 유학 신항일 [착명]

咸豐十一年辛酉十一月十三日 私門中前 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

致 伏在道內面元堂坪 玉字番三斗落二夜味  
 所耕 負 束庫乙 價折錢文拾參兩 依數  
 捧用是遣 右中舊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交象是去等 以此文記 下正事  
 番主 幼學 辛用珪 喪不着  
 兄 幼學 辛丙珪 喪不着  
 證筆 幼學 辛恒一 [着名]

## 2-2-61) 1916년 신씨 문중에서 논을 매매한 토지매매 계약서

【해설】이 문서는 1916년 신씨 문중에서 논 4두락지를 48원 값에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했고, 문서 이름을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명기했다.

### 토지 매매 계약서

이 계약서는 영광군 영광면 신대리新垈里에 있는 생자 53번답 5배미 4두락지, 결結 19부 1속인 곳을 값 금金 48원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오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신문서 1장으로 빙고憑考할 일.

대정 5년 병진년(1916) 12월 22일

매도인 신씨 문중 신휘준 [인], 신중규 [인], 신극성 [인], 신한협 [인], 신극의 [인], 신상협 [인], 신기협 [인], 신극원 [인]

증참인證參人 강영제 [인]

같은 증참인 한영백 [인]

### 土地賣買契約書

右契約事는 伏在靈光郡靈光面新垈里 生字五三

番番五夜味四斗落 結拾九負壹束廳 折價金

四拾八圓 依數捧上이고 右前에 永永放賣하오니

日後若有異言 則以此新文一張으로 憑考

할 事

大正五年丙辰拾二月二十二日

賣渡人 辛門中 辛徽峻 [印]

辛仲珪 [印]

辛徽榮 [印]  
辛克聲 [印]  
辛瀚俠 [印]  
辛克義 [印]  
辛尙俠 [印]  
辛基俠 [印]  
辛克元 [印]  
證參人 姜永齊 [印]  
全 韓永伯 [印]

### (논밭의 거래와 노비의 역할)

#### 2-2-62) 17세기 말 노 막생이 노 신금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해설】 이 문서는 1689년(숙종 15) 혹은 1688년(숙종 16)에 노 막생이 상전덕 논 5두락지를 세포細布 4필에 노 신금에게 방매하고 작성해 준 매매 문기와 막생의 상전 송모가 막생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한 배자가 접련된 문서이다. 이때 매매한 논은 사망한 종 순화의 재산이었다. 이 논은 순화가 자식 없이 사망하자 상전에게 기상된 논으로 보인다.

#### ① 노 막생이 노 신금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강희 27년 □사년 정월 초2일 노 신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데가 있어 저의 상전님 댁 배자에 따라 영광도내면에 사는 노 돌평의 사망한 자식 순화가 몫으로 받았다고 하는 도내면에 있는 추자답 5두락지 4배미, 수확물 2작 15복 ○속인 곳을 세포細布 4필 값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뒤에 저의 상전님 족속 중에 행여 다른 말하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답주 노 막생 [좌촌]  
증인 노 복남 [착명]  
증보 노 생립 [좌촌]  
필집 어영균 김대강 [착명]

康熙二十七年□(己)巳<sup>35</sup>正月初二日 奴申金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矣上典主宅牌子  
 導良 靈光道內面居 奴互坪故子息順化衿得云云 道內  
 面伏在 推字番五斗落只四夜味 所耕二作十五卜 束庫乙  
 價折細布四疋以 交易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  
 賣爲去乎 後次矣上典主族屬中 幸有雜談爲去乙等  
 此文記以 告官下正爲臥乎事

番主 奴莫生 [左寸]

證人 奴福男 [着名]

證保 奴生立 [左寸]

筆執 御營軍金大江 [着名]

## ② 상전 송모가 노 막생에게 논 매매를 위임한 배자

노 막생

다름이 아니라 네가 영광의 노 돌평의 죽은 자식 순화 몫의 논 도내 추자답 5두락지를  
 방매하여 바치되 급하지 않게 거행하라.

기사년(1689, 숙종 15) 정월 초2일

상전 송 [작명]

奴莫生

無他 汝亦 靈光奴互坪

故子息順化衿番 道內推

字五斗落只廳乙

放賣納上爲乎矣 不徑

舉行向事

己巳正月初二日

上典 宋 [着名]

35 강희 27년은 1688년(숙종 14)으로 무진년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강희 27년 다음에 '戊辰'이 아닌 '己巳'라고 기재되어 있다. '己巳'는 상전이 노 막생에게 거래를 위임한 배자에 연도가 '己巳'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己巳'는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희 27년'은 1688년(숙종 14) 무진년이고, 기사년은 1689년(숙종 15)이다.



## 2-2-63) 1778년 이 생원 노 당감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해설】 이 문서는 1778년(정조 2) 이 생원의 종 당감이 이생원에게 위임을 받아 논 14두락지와 진답, 진전을 방매할 때 작성된 2건의 문기이다. 상전인 이 생원이 노 당감에게 배자를 주어 논밭을 팔아바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당감이 상전이 지시에 따라 논밭을 방매했다.

① 상전인 이 생원이 종 당감에게 논밭을 팔아바치도록 한 배자

차노差奴 당감에게

다름이 아니라 급히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가양평可樣坪에 있는 생자답 2배미 10두락지, 위쪽 들 4두락지, 금자답 4두락지 6배미를 이 배자에 따라 팔아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우에 북쪽 진진陳田 및 진답陳畝를 모두 팔아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무술년(1778, 정조 2) 3월 초4일

상전 이 [작성]

差奴當甘處

無他 急有要用處 靈光郡

道內面可樣坪伏在 生字

畚二夜味十斗落只 上坪四

斗落只 金字畚四斗落只

六夜味庫乙 此牌導良 □<sup>36</sup>

納宜當事

此亦中 北邊陳田及陳畝

並爲賣納 宜當事

戊戌三月初四日

上典

李 [着署]

36 글자를 잘못 썼다 덮어 써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지만 새로 기입한 글자를 ‘賣’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 ② 이 생원 노 당감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

건륭 43년 무술년(1778, 정조 2) 3월 초 6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전님 댁 배자에 의거하여 영광군 도내 면道內面 가양평可陽坪에 있는 생자답 2배미 10두락지와 위쪽 들 진전陳田 4두락지와 위의 들 금자답 4두락지 6배미 합하여 답 14두락지,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12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아울러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상전님 댁에서 만약 시비를 따지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이 경우에 북쪽 진전답陳田畝와 남쪽의 진전을 아울러 방매합니다.

답주畝主 남산南山 이 생원 노 당감 [좌장]

증인 도내면 도동陶洞 김호백 [착명]

필집 성동城東 이경원 [착명]

乾隆四十三年戊戌三月初六日 … 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上典主宅牌子據 靈光

道內面可陽坪伏在 生字畝二夜味拾斗

畝落只果 上坪陳田肆斗落只果 同坪金

字畝肆斗落只六夜味廳 合畝拾肆斗

落只 所耕 負 束廳乙 價折錢文

壹百貳拾兩乙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上典主宅

若有是非之弊 則持此文 告官下正事

此亦中 北邊陳田畝 南邊陳田 并以 放賣事

畝主 南山李生員奴 當甘 [左掌]

證人 道內陶洞 金虎白 [着名]

筆執 城東 李慶遠 [着名]

## 2-2-64) 1798년 신 생원 노 회금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해설】 이 문서는 1798년(정조 22) 신 생원의 노 회금이 상전 신 생원의 위임을 받아 논을 방매할 때 작성된 2건의 문기이다. 상전인 신 생원이 노 회금에게 배자를 주어 논을 팔아버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회금이 상전이 지시에 따라 논 3두락지를 29냥 값에 방매했다.

① 상전인 신 생원이 종 회금에게 논을 팔아바치도록 한 배자

노 회금에게

다름이 아니라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 방죽 아래에 있는 위자답 수확물 ○부 ○속, 내가 매득買得한 곳을 방매放賣하고자 하니 값 30냥으로 쳐서 모인某人에게 영원히 방매하여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상전 신 [착서]

奴晦金處

無他 要用所致 防築

下伏在 爲字畝 所耕

負 束 自己買得庫乙

將欲放賣 價折三十

兩 某人處 永永放賣以

納 宜當事

上典 辛 [着署]

② 신 생원의 종 회금이 박사근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가경 3년 무오년(1798, 정조 22) 정월 20일 신계원 박사근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전택 배자에 의거하여 긴히 쓸 데가 있어 방주 밑 위자답 3두락지,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29냥 값으로 쳐서 본문기 2장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신 생원 노 회금 [착명]

필집 한량 이일봉 [착명]

증인 한량 이득채

嘉慶三年戊午正月廿日 新稷員朴思根

前 明文

右明文事 上典宅牌子據 要用

所致 伏在防築底 爲字畝三

斗落只 所耕 負 束庫乙 價

折錢文貳拾玖兩 依數捧上爲  
 遣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下正事

番主 辛生員奴 晦金 [着名]

筆 閑良李一鳳 [着名]

證 閑良李得采

## 2-2-65) 1860년 김 생원택 노 유철이 신 생원택 노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60년(철종 11) 김 생원택 노奴 유철이 상전의 배지에 의거하여 논 46두락지를 전 문 330냥 값에 신 생원택 노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합풍 10년 경신년(1860, 철종 11) 2월 그믐날 신 생원택 노奴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전택의 배지에 의거하여 도내면道內面 원당  
 평元堂坪에 있는 ○자답 5두락지, ○자답 3두락지, ○자답 4두락지, ○자답 5두락지, ○자답  
 3두락지, ○자답 6두락지, ○자답 5두락지와 대삼보大三堡의 ○자답 7두락지, ○자답 3두락  
 지와 해룡평海龍坪 ○자답 5두락지 도합 46두락지를 전문 33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너의 상전택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하십시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렸으므로 내 주지 못함.

답주番主 원당元堂 김 생원택 노奴 유철 [착명]

증인 신흥新興 유학 서 생원 [착명]

끝.

咸豐十年庚申二月晦日 辛生員宅奴

前 明文

右明文事 上典宅牌旨據 伏在道內面元

堂坪 字畝五斗落果 字畝三斗落果 字畝

四斗落果 字畝五斗落 字畝三斗落果 字畝六斗

落果 字畝五斗落果 大三堡 字畝七斗落果 字畝

三斗落果 海龍坪 字畝五斗落 合畝四十陸斗落 價

折錢文參佰參拾兩 依數捧上是遣 汝矣上典宅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 以此憑考事

此亦<sup>37</sup> 舊文記闕失 故

不得出給事

畚主 元堂 金生員宅奴 有哲 [着名]

證人 新興 幼學 徐生員 [着名]

際

### (논밭 납상納上, 상환相換 등)

#### 2-2-66) 1685년 노 생이가 상전에게 토지를 납상納上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685년(숙종 11) 노 생이가 큰 흉년에 상전에게 정조 4석을 받고 위자전 3두락지를 바친 문기이다.

강희 24년 을축년(1685, 숙종 11) 3월 15일 상전택에 바친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와 여러 해 경작하다가 이번 큰 흉년에 형세상 부득이 위자전 3두락지, 수확물 8부인 곳을 정조正租 4석을 받고 상전택에 바치니,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전주田主 노 생이 [좌촌]

필집 노 사금 [착명]

康熙二十四年乙丑三月十五日 上典宅 納上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貧寒所致以 祖上傳來 累年起耕

爲自如可 值此大荒 勢不得已 爲字田三斗落只 所耕八負

庫乙 正租四石捧上爲遣 上典宅納上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有去乙等 此文下事

田主 奴生伊 [左寸]

筆執 奴士金 [着名]

37 '此亦'은 '此亦中'에서 '中'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 2-2-67) 1709년 고 신시태 처 고씨가 3촌 숙모인 유씨에게 논을 값은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09년(숙종 35) 고 신시태 처 고씨가 3촌 숙모 유씨에게 바친 토지 문기이다. 고씨는 1708년(숙종 34) 봄 남편이 사망한 후 장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유씨의 논 5두락지를 빌려 팔아 썼다. 그런데 1709년 화회 후 남편 몫으로 받은 재산이 생기자 유씨에게 논 6두락지를 바쳐 값고, 이 문서를 작성했다.

강희 48년 기축년(1709, 숙종 35) 3월 25일 3촌 숙모 유씨께 드리는 명문  
이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봄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는데, 망극한 중에 상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고, 매매할 길도 끊어졌습니다. 숙모님께서 사사로이 산 ○자답 우평에 있는 5두락지, 수확물 26복 5속인 곳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급히 써야할 곳에 팔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화회和會 후에 남편 몫으로 받은 둔전 ○자답 6두락지, 수확물 ○복 ○속인 곳을 문서를 작성하여 값으니,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답주畝主 3촌질 고 신시태 처 고씨 [도서]

필집 신경홍 [착명]

康熙肆拾捌年己丑三月二五日 三寸叔母柳

氏前 明文

右文爲 去年春 家翁喪事出於染患 罔極

之中 喪需無路辦備 而買賣之道亦絕 叔母

主私買 字畚牛坪伏在五斗落只 所耕二十六卜

五束庫乙 有欲買者 故急於用處 已爲賣用 故今此

和會之後 家翁衿得菑田 字畚六斗落只 所耕

… 庫乙 成文還報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

此文下正事

畚主 三寸姪 故辛始泰妻高氏 [圖署]

筆 辛景泓 [着名]

## 2-2-68) 1775년 박거골이가 이생원댁 노녀에게 논밭을 바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775년(영조 51) 박거골이가 자신이 갈아먹던 이 생원댁 논이 수해로 없어졌다 하

여 자신이 매득한 논 1두락지, 밭 2두락지를 이 생원택에 바친 문기이다.

건륭 40년 을미년(1775, 영조 51) 4월 21일 이 생원택 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위 택의 논을 선차례先尺例로 여러해  
갈아 먹었는데, 지난 해 큰 물난리에 논이 형체도 없이 잠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언을 수축할 길이 없으므로 약간의 물자에 전문 3냥을 보태어 쓰고, 대신 제가 스스로  
매득買得한 생자답 1두락지, 같은 자(생자)전 2두락지, 수확물 7복 5속인 곳을 위 택에  
본문서 1장을 아울러 영원히 드리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  
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전답주田畝主 박거골이 [착명]

증참證參 김태관 [착명]

필집 이동옥 [착명]

乾隆肆拾年乙未四月二十一日 李生員宅奴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 右宅畝庫乙 先尺例 累年

耕食是在 去年大水 畝庫無形潰破 而堤堰

修築之道未由 故略干物力錢參兩補用 代

自己買得生字畝一斗落只 同字田二斗落只

所耕七卜伍束庫乙 右宅前 本文書一丈并以 永

許納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

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畝主 朴去骨伊 [着名]

證參 金泰觀 [着名]

筆執 李東玉 [着名]

## 2-2-69) 1810년 신중덕이 족질과 밭을 상환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0년(순조 10) 족속族叔인 신중덕이 밭 2두락지를 족질 소유의 우자 진전陳田 1두  
락지와 상환한 문기이다. 상환 이유는 부모 묘 용미 위를 금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신중덕 소유 옛  
집터에 있는 밭 2두락지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고, 우자 진전은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두 땅의 가치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덕 소유 밭의 수확물은 신중덕이 그대로 가지고 땅의 소유만 바꾸었다.

가경 15년 경오년(1810, 순조 10) 3월 21일 족질 ○○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옛 집터에 있는 노자전 2두락지, 수확물 7부 6속  
인 곳을 위 댁의 가장산 우자 진전陳田 1두락지와 상환한 일은 부모 묘 용미 위이므로 금  
양禁養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대저 우리 옛 집터는 경작하는 곳이 있고 위의 진전은 경  
작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상환하는 도리에 균등하지 않은 바가 있다 하니 위의 경작  
하여 수확한 7부 5속은 우리 집에서 가지고 땅만 영원히 상환한다. 그러므로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전주田主 스스로 문서를 쓴 족숙族叔 신중덕.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嘉慶十五年庚午三月二十一日 族侄 前明文  
右文事 舊基伏在 露字田貳斗落只 所耕  
七負六束庫乙 以右宅加長山雨字陳田壹斗落  
只 相換事 親山龍尾上 故不得不禁養是乎  
所 大抵吾家舊基有所耕是遣 右陳田無所耕  
則相換之道有所不均是如爲臥乎所 右所耕  
七負六束自當是遣 但以地畝 永永相換爲去  
乎 日後如有他言是去等 以此文憑考事  
田主 自筆 族叔 辛重德 喪不着

## 2-2-70) 1850년 신광섭이 문중에 논을 바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0년(철종 원년) 신광섭이 논 3두락지를 전문 9냥 3전 3분 값에 문중에 바친 문기  
이다. 이 문서에는 그가 이 논을 문중에 바친 이유가 부기되어 있는데, 문중의 돈을 빌려 썼는데 값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값을 여력이 생기면 본 가격에 환퇴한다는 내용도 부기되어 있다.

도광 30년 경술년(1850년, 철종 원년) 5월 초4일 문중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도내면道內  
面 도동촌 앞 들 치자 우자답 3두락지 6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9냥 3전 3  
분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으니, 이날 이후 만약 자손 중에 다른 말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답주畝主 유학 신광섭 [착명]

증인 유학 신항렬 [착명]



필집 신기보 [착명]

문중 유사有司 신항운 [착명]

막중한 문중의 돈을 얻어 썼는데, 전문을 마련해 낼 길이 없어 구문서, 신문서를 모두 바칩니다. 그런데 본 주인이 만약 여력이 생기면 본 가격에 환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道光參拾年庚戌五月初四日 門中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道內

陶洞村前坪 致雨字畝三斗落只六夜味 所耕負束

庫乙 價折錢文玖兩參錢參分 依數

捧上爲遣去乎<sup>38</sup> 日後若有子孫中

交象之弊 則指<sup>39</sup>此文記 告官下呈<sup>40</sup>[正]

事

畝主 幼學 辛光燮 [着名]

登<sup>41</sup>[證]人 幼學 辛恒烈 [着名]

筆執 辛基輔 [着名]

門有司 辛恒運 [着名]

莫重門錢得用矣 錢文辦出無路 故

舊文書新文書并 捧上矣 本主若有餘力 則

本價還退 宜當事

## (소작과 전당, 환퇴)

### 2-2-71) 1837년 오정린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37년(헌종 3) 오정린이 논 4두락지를 전문 16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세미稔米를 마련해 바칠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이 문서에서는 훗날 혹 환퇴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퇴가에 대해서도 부기했다.

38 '爲遣去乎'은 처음에 '爲遣'를 썼다가 문맥상 '爲去乎'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遣'를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爲遣'는 '하고'의 의미이고, '爲去乎'은 '하니'의 의미이다.

39 '指'는 '持'의 오기로 판단된다.

40 '보'는 '正'의 오기로 판단된다.

41 '登'은 '證'의 오기로 판단된다.

도광 17년 정유년(1837, 현종 3) 12월 20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몫으로 받아 갈아먹다가 이번에 흉년을 만나 세미稅米를 마련해 바칠 길이 없으므로 도내 원당평元堂坪에 있는 옥자답 4두락 지 5배미, 수확물 13복 1속에 해당하는 곳을 값 전문 16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하십시오.

답주畝主 유학 오정린 [작명]

이 경우에 본문기는 다른 문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내 주지 못함. 끝. 이날 이후 혹여 되파는 일이 있으면 본가本價에 의하여 환퇴還退할 것.

道光十七年丁酉十二月二十日 前明文  
右明文段 衿得耕食是如可 當此歉年 稅米  
辦納無路 故伏在道內元堂坪 玉字畝四斗落只  
五夜味 所耕十三卜一束廳乙 折價錢文十六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以此  
憑考事

畝主 幼學 吳廷麟 [着名]

此亦中 本文記載於他文記 故  
不得出給印 日後或有還賣之  
道 則依本價還退次

## 2-2-72) 1843년 오진규가 논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수표手標

【해설】 이 2건의 문서는 1843년 3월 28일 오진규가 논 10두락지를 전문 105냥 값에 방매하고 작성한 매매 문기와 매매 당일 방매한 땅을 오진규가 경작하되 도조賭租와 세미稅米의 납부 기한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경작자를 바꾸도록 한 수표手標이다. 이 문서들은 각각의 문서이지만 매매 현장에서 함께 작성된 관련 문서이기 때문에 한 제목하에 수록했다.

### ① 1843년 오진규가 논을 매매한 문기

도광 23년 계묘년(1843, 현종 9) 3월 28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아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영광 도내면道內面 장보평長堡坪에 있는 과자답 7두락지 5배미, 수

확물 23부 4속인 곳과 같은 장보평 과자답 3두락지 1배미, 수확물 9부 3속인 곳을 전 문 105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이 경우에 본문기는 잃어버렸으므로 내 주지 못함. 끝.

답주畝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학 오진규.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증보證保 이춘만 [착명]

道光二十三年癸卯三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靈光道內長堡坪 果字畝七斗落  
五夜味 所耕二十三負四束麩果 同坪同字  
畝三斗落一夜味 所耕九負三束麩乙 價折  
錢文壹百五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之端 則以此  
文記 告官卞正事  
此與<sup>42</sup>中 本文記段 入於遺  
失 故不得出給 印  
畝主 自筆 幼學 吳晉圭 喪不着  
證保 李春晚 [著名]

② 1843년 오진규가 작성한 수표手標

수표手標

이 수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보평 10두락지를 지금 방매하고 맡아 경작하는데, 이날 이후 도조賭租와 세미稅米 중 비록 증가, 흙[畝]의 곡식이라도 만약 기한을 어기는 단서가 있으면 바로 경작자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시오.

계묘년(1843, 현종 9) 3월 28일 표주標主 오윳 [착명]

手標

右手標事 長保坪十斗落  
今爲放賣 擔當時作 而日後

42 '此與中'는 '此亦中'의 '亦'을 '與'로 쓴 것이다.

賭租與稅米中 雖升合穀如

有愆期之端 則卽爲移作

於他人事

癸卯三月二十八日 標主 吳 [着名]

## 2-2-73) 1845년 유문복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5년(헌종 11)에 유문복이 논 3두락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논 3두락지를 방매한다고 했지만 부기한 내용을 보면 방매 문기라기 보다는 전당 문기에 가깝다. 방매자인 유문복은 도내면 수남평에 있는 모자답 3두락지를 맡기고, 12냥 5전을 받아 썼으며, 9월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논을 맡겨둔 사람에게 영원히 결급하기로 했다. 또, 돈을 갚을 때는 이자 없이 본 가격만 지불하기로 명시했다.

道光 25년 을사년(1845, 헌종 11) 2월 30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내가 매득買得한 도내면道內面 수남평水南坪에 있는 모자 자호의 논 3두락지를 위 사람에게 방매放賣하니,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문 12냥 5전을 오는 9월 내를 기한으로 이자 없이 받아 쓸 것이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논을 영원히 결급決給할 것이고, 돈으로 갚을 때 또한 이자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가하니, 서로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리로 꾸짖을 것이다. 전화주錢貨主는 논을 전당으로 결급받되 이자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차간에 서로 믿는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답주畜主 스스로 문서를 쓴 유문복 [착명]

道光二十五年乙巳二月三十日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 自己買得是在 道內

面水南坪畓 某字參斗落庫乙 放賣於右人

前爲去乎 以此文記 告官下正爲乎乙事

此亦中 錢文拾貳兩五錢 限來九月內 無

邊利得用爲去乎 若不以限內備報 則

以畓庫 永永決給 而錢報之時 亦有

利說爲事 決不可 以相孚之義責之 錢

貨之主 以番典當決給 不可以取利事  
彼此相信之意而已耳

番主 自筆 柳文復 [着名]

## 2-2-74) 1846년 정석진이 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46년(헌종 12) 유학 정석진이 논 5두락지를 전문 1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그런데 문서의 뒷 부분에 전문 10냥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환퇴한다는 내용을 부기했다. 매매가를 이자와 함께 갚는다면 환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매매 사례인 것이다.

도광 26년 병오년(1846, 헌종 12) 3월 25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다가 긴요하게 쓸데가 있어 도내면道內面 한사평間沙坪에 있는 우자답 3두락지 5배미와 원당평元堂坪 옥자답 2두락지 2배미, 수확물 ○부 ○속인 곳을 전문 1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하십시오.

답주番主 유학 정석진 [착명]

증필證筆 김덕언 [착명]

이 경우에는 전문 10냥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은 후에 환퇴還退한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道光貳拾陸年丙午三月二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

多可<sup>43</sup> 以要用所致 伏在道內間

沙坪 雨字番三斗落只五夜

味果 元堂坪玉字番二斗

落只二夜味 所耕 負 束

庫乙 價折錢文十兩 依數捧

上爲遣 右人前 永永放

買<sup>44</sup>[賣]爲去乎 日後若有交

43 '是如可'를 '是多可'로 표기했다.

44 '買'는 '賣'의 오키로 판단된다.

象之端 以此文 憑考事

畚主 幼學 丁錫震 [著名]

證筆 金德彥 [著名]

此亦中 錢十兩并 本利備報之後 還退之

意 如是成文

## (산지와 묘 석물 매매)

### 2-2-75) 1850년 이봉채가 신광규에게 산지를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50년(철종 원년) 이봉채가 조상 5위의 묘가 있는 산지를 170냥 값에 신광규에게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공채公債와 사채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이 문서에는 이 산지를 팔면서 조상 5위의 이장 시기에 대한 약속도 기록되어 있다.

도광 30년 경술년(1850년, 철종 원년) 10월 초4일 상인喪人 신광규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채公債와 사채가 많아 무장 대체면大梯面 광대촌廣大村 방죽 비탈에 증조모, 조부모, 부모님을 장사지내 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채와 사채를 마련해 바치고 갚을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위의 3위位는 장사지내기 전 옮겨 매장하고, 아래의 2위는 장사지낸 후 이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위의 산지를 위 사람에게 전문 170냥 값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 쓰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여러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산지주인이봉채 [착명]

4촌 아우 이봉욱 [착명]

증인 유치민 [착명]

최경순 [착명]

필집 신항일 [착명]

道光參拾年庚戌十月初四日 喪人辛宏珪前 明文

右明文事 公債與私債許多 故茂長大梯面廣大

村後防築嶝 曾祖母祖父母考妣位入葬守護矣 以

公私債備納備報無路 故不得已以上三位葬前移窆

是遣 下二位葬後移葬 以此結約 右山地 右人前 價折  
錢文壹百柒拾兩 依數捧用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諸孫中 如有爰象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山地主 李鳳彩 [着名]

四寸弟 李鳳旭 [着名]

證 庾致民 [着名]

崔景淳 [着名]

筆執 辛恒一 [着名]

## 2-2-76) 1873년 정창섭이 비석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73년(고종 10) 정창섭이 비석 3개를 전문 11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정창섭은 가산을 탕진하여 생계를 영위할 길이 없어 선산 비탈 산지를 전당했으나 이를 값은 길이 없어 선산 비탈의 비석 3개를 팔게 되었다고 했다.

동치 12년 계유년(1873, 고종 10) 2월 29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생계를 영위할 길이 없으므로 선산 비탈 산지를 여러 해 전당했다. 그러나 값아낼 길이 없어 아들된 도리에 비록 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부득이하여 무장면畝長面 초당동草堂洞 선산 비탈의 비석 3개를 값 전문 11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할 것이다.

비석 주인 정창섭 [착명]

증인 정석희 [착명]

필집 이화엽 [착명]

同治拾貳年癸酉二月廿九日 明文

右明文事段 家勢蕩敗 生計無路

故先山嶺山地 典當累年是矣 贖出無

路 故人子之道 雖不爲之事也 然不得已

畝長面草堂洞 先山嶺碑石參价 折價

錢文拾壹兩 依數捧上是遣 永永放賣

爲去乎 日后若有爰象 則持此文記 告

官下正事

碑石主 丁昌攝 [着名]

證人 丁錫希 [着名]

筆執 李化燁 [着名]

## 2-2-77) 1874년 이돈중이 신광규에게 산지를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14년(고종 11) 유학 이돈중이 조모와 어머니를 장사지낸 땅을 전문 10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방매 이유는 자식의 혼인을 준비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동치 13년 갑술년(1814, 고종 11) 11월 11일 신광규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모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사지낸 땅이 마촌면馬村面 신대촌新垞村 앞 평지산 무적암武敵岩 아래에 있습니다. 자식의 혼인날이 멀지 않아 모든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책이 전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값 전문 10냥으로 처서 수대로 받아쓰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이 경우에 구문기舊文記가 불에 타버려 내주지 못함.

선산先山 장손 유학 이돈중 [작명]

증인 유학 김정신 [작명]

필집筆執 이한근 [작명]

同治十三年甲戌十一月十一日 辛宏珪前 明文

右明文事 祖母與先妣入葬之地 在於

馬村面新垞村前平地山武敵岩下矣

子婚定日不遠 凡節營備 沒無其策 故

不得已 折價錢文拾兩 依數捧用是

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

中 若有爻象之端 以此文記 告官

下正事

此亦中 舊文記入於燒火中 故不得

出給事

先山長孫 幼學 李敦中 [着名]



證人 幼學 金廷臣 [著名]  
筆執 李漢根 [著名]

## 2-2-78) 1879년 오치인이 산지를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79년(고종 16) 유학 오치인이 산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2년전인 1877년(고종 14) 오치인이 6대조 묘지가 있는 산지를 전문 35냥 값에 방매했는데, 방매한 곳 중 김씨 묘의 주인이 자신 묘지를 쓸 때 사들였다고 하면서 빼앗자 빼앗긴 산지 대신 일부 산지를 더 보충해 주면서 5냥을 추가로 받은 문기이다.

광서 5년 기묘년(1879, 고종 16) 4월 초2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대조 묘지가 무장 대제면大梯面 안전촌鴈田村 뒤 기슭에 있는데, 지난 정축년(1877, 고종 14) 9월 부득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값 전문 35냥으로 쳐서 받고 방매放賣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매한 곳 중 서쪽의 김씨 묘의 주인이 묘지를 쓸 때 사들였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땅을 행패를 부려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미 판 땅이라 대신 충당해주지 않을 수 없어 동쪽의 용미龍尾 위 작은 길을 한도로 값5냥을 더하여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십시오.

산지 주인 유학 오치인 [작명]  
오상월 [작명]  
오상영 [작명]  
증필證筆 유학 신취규 [작명]

光緒五年己卯四月初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六代祖山 在於茂長大梯面鴈田村後麓 而去丁丑九月 不得已自西邊至東邊 折價錢文參拾伍兩 捧上放賣矣 意外放賣中西邊金塚主 稱以用山時買取云 而不少之地 作梗奪取是如 既賣之地 不得不代充 故東邊龍尾上小路爲限 添價伍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交象之端 則以此文記 告官下正事

山地主 幼學 吳致仁 [著名]

吳相月 [着名]  
 吳判詠 [着名]  
 證筆 幼學 辛最珪 [着名]

## 2-2-79) 1886년 김경조가 선산 석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86년(고종 23) 김경조가 선산의 석물인 망주석 2건, 반석 2건을 전문 25냥 값에 방매한 문기이다. 김경조는 가세가 매우 가난하여 아사할 지경이라 살기 위해 선산 석물을 팔게 되었다고 했다.

광서 12년 병술년(1886, 고종 23) 9월 초7일 ○○○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세家勢가 매우 가난하여 아사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음 속에서 살기를 구하여 부득이하게 선산先山の 석물 망주석 2건, 반석盤石 2건을 값 전문 25냥을 수대로 받아쓰고 위 닥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석물 주인 김경조 [착명]

증인 윤종진 [착명]

光緒十二年丙戌九月初七日前 明文  
 右明文事 家勢甚貧 至  
 於餓死之境 死中求生 不得  
 已 先山石物 望柱二件 盤石  
 二件 折價錢文貳拾伍兩  
 依數捧用是遣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若有交象 則以此文  
 記 告官卜正事

石物主 金鏡照 [着名]

證人 尹鍾鎮 [着名]

## 2-2-80) 1887년 김경조가 신 생원택에 선산 석물을 매매한 문기

【해설】 이 문서는 1887년(고종 24) 종손인 김경조가 자신의 고조모, 증조모 묘 앞의 향석香石 3건과 망주석 1쌍을 전문 30냥 값에 신 생원택에 방매한 문기이다.

광서 13년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19일 신 생원택에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고조모, 증조모의 묘가 동부면東部面  
고도치古道峙 북쪽 기슭에 있는데, 사세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위 조상 묘지 앞에 있  
는 향석香石 3건, 망주석 1쌍을 전문 30냥 값으로 처서 위 택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날 이후 자손이나 여러 족속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  
고 관에 고하여 바르게 변별하십시오.

표주標主 종손 김경조 [착명]

증참訂參 표중表從 이성연 [착명]

光緒拾三年丁亥四月十九日 辛生員宅前

明文

右明文事 矣身高祖妣曾祖母山 在於東  
部面古道峙北麓 而事勢未由 右先山前  
所在 香石三件 望柱一雙 價折錢文參拾  
兩 依數捧上爲遣 右宅前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子孫諸族中 如有相佐<sup>45</sup> 則以此  
文記 告官卞正事

標主 宗孫 金敬祚 [着名]

訂參 表從 李聖燦 [着名]

## (논발 거래에 수반되어 작성된 문서들)

### 2-2-81) 1766년 신갑수 등의 완의完議

【해설】 이 문서는 1766년(영조 42) 종손이 서해종에게 방매한 승중조 논을 신씨가 자손들이 환퇴받은

45 '佐'는 '左'의 오기로 판단된다.

후 본문기 유실을 염려하여 완의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완의 내용을 각 파에서 보관하여 훗날 빙고하도록 하기 위해 서갑수 등 4인이 완의하여 이 문서를 작성했다.

### 완의完議

이 완의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9대 동안 승중조로 전해 온 논 10두락지 숙자 6배미로 경작하고 있는 55복 5속이 영광도내 귀미평에 있다. 지난 무인년(1758, 영조 34)에 종손이 서해종에게 방매放賣했는데, 여러 자손들이 매우 개탄하여 자금을 모으기를 여러 해 동안 열심히 하여 본 가격인 돈 130냥을 마련했다. 그리고 겨우 환퇴還退하여 9대조의 일제一祭에 소용되는 묘답墓畝으로 삼았다. 그런데 혹 연대가 오래되면 본문기가 분실될까 두렵다. 그러므로 따로 완의하여 각 파의 각각의 그 자손에게 전하여 상자에 깊게 넣어두어 빙고憑考하도록 한다.

신갑수

신익환

신경침

신상규

건륭 31년 병술년(1766, 영조 42) 12월 29일

### 完議

右完議事 惟我九代承重傳來畚十斗落  
只宿字六夜味所耕五十五卜五束庫在於靈  
光道內龜尾坪矣 去戊寅年分宗孫放賣于  
徐海宗處是去乙諸子孫不勝慨然鳩聚錢  
財積年拮据備給本價錢一百三十兩而僅爲還  
退以爲九代祖一祭墓畝是在果或年代久  
遠恐有本文之闕失故別爲完議傳于各派  
各其子孫深藏篋笥以爲憑考事

辛甲壽

辛益煥

辛景沉

辛象奎

乾隆參十一年丙戌十二月二十九日

## 2-2-82) 병자년 원창 처 임씨가 정 생원 적장택에 써 준 불망기

【해설】 이 문서는 원창 처 임씨가 남편의 장례를 위해 적장택의 곡식을 받은 후 앞으로는 남편이 적장택에 방매한 후 병작하던 논의 소출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적장택에 바치겠다고 한 불망기이다.

병자년 윤9월 21일 정 생원 적장택 불망기

이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매우 가난하던 날에 남편이 금자답 3두락지를 값 30냥을 받고 적장택에 방매放賣하여 병작했습니다. 불행히 그 후에 남편이 사망하고 금년에는 곡식이 부족하던 중에 남편을 매장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셔서 영장永葬하도록 해주시라고 간청하니 적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병작하여 먹지 않고 수확물을 적장택에 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기 1장을 아울러 추심하여 바칩니다. 끝.

주인 고 원창 처 임성 [우장]

필집 생부生父 득수 [착명]

丙子閏九月二十一日 丁生員嫡長

宅 不忘記

右不忘記事段 去四月赤立之日 家

夫 金字畚參斗落只庫 捧價拾

參兩是遣 嫡長宅放賣而并

作矣 不幸其後家夫身死

是遣 今年禾穀板蕩中

家夫末由奄(掩)<sup>46</sup>土 故禾谷許給 以

爲永葬之意懇乞 則嫡長

主快許是如乎 日後 則不爲

并食 而出給嫡長宅是遣

本文記一丈并以 推尋納上印

主 故元昌妻林姓 [右掌]

筆 生父得秀 [著名]

46 '掩'은 '奄'으로 표기하였다.

## 2-3. 채무

### 2-3-1) 1842년 신항업이 작성한 수표手標

【해설】 이 문서는 1842년(현종 8) 신항업이 돈 20냥을 매월 5분의 이자로 빌린 후 내년 봄 2월 그믐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작성한 수표이다.

임인년(1842, 현종 8) 11월 21일 수표  
이 수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위 사람에게 전문 20냥을 매월 5분의 이자로 얻어 쓰고, 내년 봄 2월 그믐 안에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수표를 작성한다. 이후 만약 이에 어긋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표주標主 신항업 [작명]

壬寅十一月二十一日 手標  
右手標事 切有用處 故右人前  
錢貳拾兩 每月五分邊以 得用  
而來春二月晦內 並本利備報  
之意 成手標爲去乎 日後如有  
相左之端 則以此文記憑考  
事

標主 辛恒慳 [着名]

### 2-3-2) 1844년 은기경이 작성한 수기手記

【해설】 이 문서는 1844년(현종 10) 은기경이 금년 11월 그믐날까지 사망한 아버지가 신 생원택에서 빌린 24냥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작성한 수기이다.

도광 24년 갑진년(1844, 현종 10) 8월 초8일 수기  
이 수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도내 석촌에 사는 신 생원택에 전문 24냥을 빚 낸 예례로 얻어 썼다. 그런데 아버님이 불행히 세상을 떠나고

돈의 주인이 이 돈을 받고자 하므로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쓴 물건을 갚지 않을 수 없어 금년 11월 그믐날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갖추어 갚겠다는 내용으로 수기를 작성한다. 그러니 이후 만약 이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이 수표를 가지고 빙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표주標主 은기경.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음.

을사년(1845, 현종 11) 정월 일 내가 교한校汗에 아뢰었다.

道光二十四年甲辰八月初八日 手記

右手記事先人在世時 道內石村

居辛生員宅錢二十四兩 以債例得

用矣 先人不幸棄世 而錢主

欲捧是錢 故爲子之道 先人所

用之物 不可不報 以今年十一月

晦日內 俱本利備報之意 成手

記爲去乎 日後如有交象 持此手

標以爲憑考辨正事

標主 殷基敬 喪不着

乙巳正月日 予稟於校汗

### 2-3-3) 1854년 신봉규가 작성한 수표

[이 문서는 1854년(철종 5) 신봉규가 4종 동생에게 매달 5분의 이자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수표이다.]

갑인년(1854, 철종 5) 2월 초4일 수표

이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쓸 데가 있어 전문 9냥을 얻어 썼는데, 매달 5분의 이자의 예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표를 작성한다.

표주票主 4종형 신봉규 [착명]

甲寅二月初四日 手標

右標事 切有用處 錢玖兩得用

是矣 每朔五邊例備報之意 如是

成票爲臥事<sup>47</sup>

票主 四從兄 辛鳳珪 [着名]

## 2-3-4) 갑자년 신경로가 작성한 수표

[이 문서는 갑자년에 신경로가 내년 3월 그믐날까지 300냥의 원금과 3분의 이자를 모두 갚겠다며 작성한 수표이다.]

갑자년 12월 12일

이 표票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데가 있어 300냥을 3분의 이자 예례로 얻어 썼는데, 내년 3월 그믐까지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표를 작성한다. 끝

표주標主 신경로 [착명]

甲子十二月十二日

右標事 切有用處 參百兩以三

邊例得用 而明年三月晦內 並

本邊備報之意 成標 印

標主 辛景老 [着名]

## 2-3-5) 1887년 신취년이 작성한 수표

[이 문서는 1887년(고종 24) 신취년이 누이가 혼인할 때 빌려쓰다가 잃어버린 혼구婚具 등의 비용을 금년 10월 그믐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수표이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4일 수표

이 표票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난 정묘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누이 동생을 시집보내는데 위 닥의 혼구婚具, 배자를 빌려 쓰다 잃어버렸다. 여러 해 그 값을 독촉받았으므로 그 아들된 사람으로 굳이 물리칠 수 없어 위 값 전문 15냥을 금년 10월 그믐 내에 거두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표를 작성한다.

47 '爲臥事'은 '爲臥乎事'에서 '乎'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표주票主 신휘년 [착명]

丁亥三月二十四日 手票  
右票事 已去丁卯年 亡父生  
時 舍妹出嫁之地 右宅婚具背  
子借用流失矣 累年督責其  
價 故爲其後子 不能牢却 右價文  
拾伍兩 今年十月晦內 徵給之  
意 如是成票事

票主 辛徽年 [着名]

靈光 長 幸免由且幸邦默去

鐘言伏以選卿偷葬之習何限而致

則龍尾似有莎草穿祭之痕故

成為名人自現末言曰吾果曾法乎

拙去萬望勿為起訟云云故急往看

其庚庚然後可以舉事故隱忍至

身納屍者其罪尤甚於掘塚決不可

行下向教是事

處分

甲申十月 日

제 3 장

노비, 전답, 환곡, 잡역 관련 소송

常幸微一幸微昂等

之下者前所未聞之變惟也民等之十二代祖妣墓所在於 治下莊子山守護四百餘年無一點他塚矣

矣是夜不知何許人自掘其屍骸而去民等始知平葬之的實方欲搜覓塚主告 官施法之際 治下

人選為出給也究其設心反以民等掘塚匿屍之人凶待甚矣數日後又未言曰前掘之平葬果是

掘塚而毀破民等之先墓封墳斜穿深入納屍於舊棺之下民等不覺心寒骨冷欲死無地然此

兩塚中一塚未知何許漢所為一塚則渠既自首而其個出屍與否尚未可詳知則萬端疑慮終難解

訴為去乎上項李春成發差提治嚴查其出屍與否以掘塚之罪報 營刑祀以洩幽明之冤憤事

連此等如後日有

涉之者理平少替

祀等去月移其等

心亦去成堂拉者

勤美如事

二



## 해 제

3장과 4장은 모두 소지류 문서인데, 본 3장에서는 영월신씨 가에 전해 내려오는 소지류 문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산송과 관련이 없는 쟁송, 청원 문서를 먼저 제시하였다. 즉 노비 추심, 환곡 면제, 잡역 면제를 요청하는 소지류 문서이다.

- 3-1) 1610년 초동草童 신응망辛應望 소지所志
- 3-2) 1610년 관동卍童 신응망 소지
- 3-3) 1624년 생원生員 화민化民 신응망 발괄白括
- 3-4) 1629년 신 생원택辛生員宅 세전노世傳奴 자갈者曷 입지立旨
- 3-5) 1631년 찰방察訪 신응망 정사呈辭
- 3-6) 1642년 신 생원택 노辛生員宅奴 두질일豆叱日 소지
- 3-7) 1643년 신 생원택 노 독일豆一日 소지
- 3-8) 1646년 조신한曹信漢 소지
- 3-9) 1648년 신 장령택辛掌令宅 노奴 독일, 순일順日 소지
- 3-10) 1658년 장령 신응망 처妻 정씨丁氏 소지
- 3-11) 1659년 신 호노辛戶奴 독일, 소남小男 소지
- 3-12) 1662년 신호노辛戶奴 인봉仁奉 입지立旨
- 3-13) 166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경릉辛慶隆 단자單子
- 3-14) 1669년 유학 화민 신경릉 소지
- 3-15) 1671~1700년 화민 신정수辛鼎受 단자
- 3-16) 1674년 유학 화민 신흥효辛興孝 입지
- 3-17) 1695년 유학 화민 신정화辛鼎和 소지
- 3-18)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
- 3-19)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
- 3-20) 1736년 김원익金元益 등 소지
- 3-21)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
- 3-22)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
- 3-23) 1747년 신태기辛兌基 입지立旨
- 3-24) 183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

- 3-25) 1832년 화민化民 신대원辛大元 등 소지
- 3-26) 1838년 공원公員 수본手本
- 3-27) 1838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
- 3-28) 1838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
- 3-29) 1838년 화민化民 신항준辛恒俊 수기手記
- 3-30) 1839년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소지
- 3-31) 1843년 소주所主 입지
- 3-32) 1843년 화민 신항업辛恒業 소지

이와 관련된 신씨가의 계보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辛應望(1595~1654) - 翊震(1624~1649) - 慶隆(1646~1673) - 鼎和(1668~1698)/  
鼎受(1671~1700)/鼎季 - (계)始甲(1697~1743) - 兌成(性烈, 1735~1810) - 致默  
(1756~1787)/諠默(1764~1821)/修默(1768~1822) - (계)辛恒業(1789~1850, 생부 수묵)  
- 宏珪(1815~1886) - 徽常(1836~1924)

\* 辛興孝(應純의 3子)

\* 辛始甲(1697~1743)은 應純의 증손인 萬挺이 생부.

소지류 문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1610년에 초동草童 신용망辛應望이 올린 소지所志는 두 건이다.(3-1, 3-2) 선대로부터 깃급받은 노비들을 추심하는 소지이다. 1610년(광해군3) 16세의 어린 신용망이 자신의 할아버지 신관辛寬(1516~1585)이 법전대로 깃급받고, 아버지 신장길辛長吉(1543~1598)이 승중조承重條로 받은 송씨 집안의 노비를, 난리 후에 송씨 문중의 열속孽屬 송대봉과 정병 정순매가 횡탈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심해달라는 소지이다. 신관의 초취 부인은 신평 송씨新平宋氏로 후사後嗣는 없다. 신평 송씨의 남편으로 깃급받은 노비에 대해서 손자인 어린 신용망이 노비 거주지인 담양에 솟장을 올린 것이다. 신용망이 공론公論에 따라 단결斷決하겠다는 부사의 제사에 따라 노비가 살고 있는 대곡의 척족들과 노비들에게 물어보니 사촌인 신용순의 호노비라고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자 부사가 방 주인과 색장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여 소송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비 추심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629년 신 생원택의 세전노 자갈의 입지(3-4)와 1642년, 43년 신 생원택 노 독일의 소지는 신용망의 사촌인 생원 신용순(1572~1636)이 올린 소지이다.(3-6, 3-7) 이 시기에 생원을 한 사람은 사촌인 신용순 밖에 없으므로 신용순이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문서가 신용망을 계승한 가계에 전해져 오는 것은 신시갑이 신용망의 손자인 신정수에게 양자로 가면서 신용순의 문서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용순의 세전 노인 자갈의 입지는 자신이 지난 식년에 호적을 올리면서 글자를 몰라서 영암의 한가韓哥 양반의 노로 주인을 잘못 현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입지를 해달라는 소지이고 이에 대해서 '빙고하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한다'고 제사를 함으로써 입지가 발급된 것이다. 입지는 입안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게 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 관계가 명확할 때에 이용되는 공증 제도이다.

1642년, 43년 신 생원택 노 독일의 소지에서 신 생원은 신용망의 사촌 신용순이다. 독일의 한자 표기가 두질일호叱日과 독일호七日로 다르게 표기된 것은 '두'와 '일' 사이의 축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글 표기는 독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노 독일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상전 집의 상화喪禍가 참혹하여 안주인이 광주光州의 본가로 가면서 자신에게 맡긴 논 6마지기를 막복과 상환 매매를 하였는데, 그 논을 또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여 도로 원래의 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 논은 또 다른 사람이 부쳐 먹고 있어서 이를 찾으려고 하는 소지이다. 안주인이 광주로 가면서 독일에게 맡긴 구수면 논이 경작하기에 너무 멀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내면의 이막복 논과 상환 매매를 하였는데, 이막복의 도내면 논이 좀 복잡한 상환 과정이 또 있었다.(아래 표 참조) 즉 이막복이 황사신과 상환을 하고 황사신은 또 순창의 홍가 양반과 상환을 하였다. 순창의 홍가 양반이 황사신에게 다시 환퇴를 하니 황사신도 이막복에게 환퇴를 하여 신가 양반도 다시 이막복에게 환퇴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지였고, 영광 관에서는 그 순서대로 환퇴할 것을 명하였다. 환퇴에 관련된 문서 중 두 번째 문서는 제사가 두 번 내려졌는데, 한 번 내린 판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한번 제음을 확실하게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상환) 신가 양반 ↔ 이막복 [↔ 황사신 ↔ (홍자고 9마지기) 순창 홍가 양반]

무후無後 노비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 관련 분쟁도 있었다.

1646년 조신한曹信漢이 올린 소지(3-8)는 무후 노비의 재산을 노비 주인이 기상記上하여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다. 조신한이라는 사람이 신 생원(신용순)이 자신의 노였던 약금이 후손 없이 죽자 무후노비의 재산은 기상하여 노비 상전의 재산이 된다는 주장을 하여 침탈을 한 것에 대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입지를 써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이에 대하여 영광 군수는 침탈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여 신 생원을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서인 이 소지 자체가 신씨 문서에 들어와 있다고 하

는 것은 비록 신용순을 잡아오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신용순이 기상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계속 소유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658년 장령 신용망 처 정씨丁氏의 소지(3-10)는 무후 망처 재산을 본손에게 돌리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다. 신용망의 전후실前後室 동생同生 5남매가 노비를 각각 5구씩 분깃分給하였는데 둘째 매부[次妹夫] 이위李偉의 처는 후사後嗣 없이 죽었다. 후사 없이 죽은 형제자매의 재산은 제위조祭位條 외에는 법전에 따라서 당연히 본손本孫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게다가 이위라고 하는 사람은 광해군 때에 폐비 상소를 하여서 집안에서는 그를 모두 원수처럼 대하고 상종하지 않으니 당연히 환추還推해야 하는데 그 전민田民을 환추하지 않았는데 장성長城에 살고 있는 그의 몫 노 봉생奉生 1구만을 장성에서 추래推來하여 40여 년을 사환使喚한 것이다. 그런데 4월 초3일에 장을 보려고 목면 2필과 조 10두를 가지고 시장에 간 양역노 봉생의 아들 일수一水를 이위와 그의 후실後室 자子 상익相益이 일수를 결박하고 난타하여 목필과 곡물을 빼앗아 가고 또 부 봉생이 공선貢膳을 준비해서 내현來現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신용망 쪽의 입장에서는 법전에 실린 “무후無後 동생同生 전민田民은 본손本孫에게 돌린다”고 하는 조항을 들어 신용망의 누이가 잇급 받은 전민은 제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손인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신용망 누이의 남편인 이위는 다른 모든 전민을 도집都執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민이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우연히 본손에게 가서 양역한 봉생의 오랜 노비공을 추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망 쪽에서는 신용망이 죽고 연약한 아내가 집안을 관리하니 이위 쪽에서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그의 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또 지금 양역하고 있는 노비공까지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에서는 이위 및 이상익을 잡아 구속하고 취초取招를 받아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청원은 영광 군수가 공관空官일 때에 주변관이 겸관兼官을 할 때에 올린 것이다. 이위와 그의 후처 소생 이상익을 잡아 취초하라고 지시한 것은 영광 유향소留鄉所였다. 유향소에서 이위와 같은 무단 양반을 잡아다가 취초할 강제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외에도 1659년에 신가의 호노 독일과 소남이 창원의 노비 수공을 하러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물금첩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소지(3-11), 1662년에는 신가의 토지를 양전할 때에 자신의 6촌노 후백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라가 있는데, 뒷날 상고하기 위하여 입지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가노 인봉의 소지(3-12)도 있다.

노비의 역역과 관련해서는 1669년 신경릉辛慶隆이 올린 단자가 있다. 영광의 유학 신경룡이 자신의 양역노 아리금이 제 어미가 있는 무장현에 1개월간 휴가를 받아 간

병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무장현에서 아리금을 무장현 속오의 역에 차정한 것이다. 아리금은 자신이 사대부가의 양역노라고 항변하였는데, 영광군의 호적에 아리금의 금자를 개서하였다고 부인하므로 영광군에서 무장현에 문서를 보내서 이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단자이다.(3-13)

(3-15)(3-16) 문서는 신정수辛鼎受, 신흥효辛興孝가 마촌면馬村面 마치산馬峙山에 있는 할머니의 산소를 금양하여 수호할 수 있도록 입지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소지, 신흥효가 5촌 숙부인 장령 신응망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요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화가 분산이 불길하다고 하여 지사에게 새로 개장할 산을 점지하고 다른 사람이 투점하거나 작희作戲하지 못하도록 입지를 받아둔 것이다. 또 신정화辛鼎和는 진량면 선산을 상놈들이 관 조사摘姪 전에 마음대로 초목을 예취刈取하는 데, 이를 막아달라는 소지도 있다.

(3-27)(3-28) 문서는 신행업辛恒業 환곡이 포함된 것을 일족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분족分族 문제로 올린 소지이다. 1843년 신행업은 족인인 신원종의 환곡 포함 문제로 족징을 하려 하자 후보책을 찾아서 신원종의 환곡이 14량 3전 3푼만 환조사대이고 9량은 대거한 것이며, 이것도 외종조인 봉인겸과 나누어 갚은 것이니 갚을 것이 없다고 항변한 소지이다.

이외에도 고 신정수의 처 유씨가 멀리 김해 교촌에 도망하여 많은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비 점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절족인 신천익에게 대신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 점이가 수록되어 있는 분재기를 관에서 전준해줄 것을 요청한 소지(3-18, 19). 이 소지의 이면에 분재기를 전준하였다. 전준이란 어떤 문서를 관에서 똑같이 써서 공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노비 추쇄에도 전준 문서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양안 전주田主의 현록懸錄에 묘직이가 대신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소지(3-21, 22), 민전 3마지기를 사서 도랑을 개통하고 독을 막고 논을 만들려고 입지를 요청한 방언 작답 입지(3-23), 노비 추심을 위한 입지(3-24) 등도 있다.





## 3-1) 1610년 2월 초동草童 신응망辛應望 소지所志

【해설】 1610년(광해군3) 어린 신응망이 자신의 할아버지 신관辛寬1516~1585이 법전 대로 깃급 받고, 아버지 신장길辛長吉1543~1598이 승중조로 받은 송씨 집안의 노비를, 난리 후에 송씨 문중의 일속 송대봉과 정병 정순매가 횡탈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심해달라는 소지. 신관의 초취 부인은 신평 송씨新平宋氏로 후사後嗣는 없다. 신평 송씨의 남편으로 깃급받은 노비에 대해서 손자인 어린 신응망이 노비 거주지인 담양에 솟장을 올린 것이다.

## 영광군 관동卍童 신응망辛應望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의 전 할머니前祖母 송씨宋氏의 신노비新奴婢 노奴 막동莫同, 노 口번필口(番)必 비婢 백口지白口之 등이 본부本府에 사는데 모두 죽었습니다.【物故 오직 번필番必 소생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신관辛寬이 법전에 따라 깃급給 받은 1소생 비 시월十月, 2소생 노 금이동金伊同, 4소생 비 막지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장길長吉 승중조承重條이옵고, 3소생 비 수대守代는 돌아가신 저의 口부 영길永吉 제사조祭祀條이옵니다. 정유년丁酉年 피난할 때에 적봉에 완전히 몰살하였는가 하였더니 본부에 사는 송가 문중의 일속孽屬 송대봉宋大鵬과 정병正兵 정순매鄭順每 등이 횡득橫得할 계획을 가지고 주인이 없는 노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쟁송하였습니다. 난리 초에 부사府使 최경장崔慶長이 청송聽訟하여 결절決折하기를 신 아무개辛某가 난리에도 생존하였는데, 너희들이 주인이 있는 노비를 비리非理로 쟁송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각 사람들을 머리끄덩이를 잡아 즉시 쫓아내라고 한 후 송대봉은 저의 아버지가 생존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는 횡득할 뜻이 없었는데, 정순매는 더욱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한악悍惡하고 횡남橫濫한 사람으로 문득 협박하여 사환하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온 후에 막 관에 솟장을 올려 통렬히 다스리려고 하다가 마침 저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과부와 어린 이들이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문傳聞하니 송대봉이 피고隻 정순매와 소송을 하여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정순매가 협박하여 사환한 일은 횡람한 것이 막심하니 그 했수로는 저의 할아버지가 17세에 송씨를 취하여 수 년이 지난 후에 부인이 죽어서 묘가 저의 사당祠堂 뒷산 기슭에 있는 것이 지금 이미 80년이요 그 지세地勢는 이 노비가 거주하는 곳에서 순매의 집은 연화상망烟火相望하는 가까운 곳이고 저희 집은 몇 일 거리數日程입니다. 난리 전에는 저의 할아버지가 원지의 사람으로서 70년이나 수공收貢하였는데, 이 순매는 집이 가까운 거리임에도 전혀 한마디도 없다가 난리 뒤에야 문등 간사한 꾀를 내서 정상을 봐서 횡람하였습니다. 송대봉도 봉사奉祀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데 적실의 제위를 함부로 솟장을 올려서 빼앗으려고 하였으니 범분犯分에 관

련됩니다. 저는 비록 미열하지마는 가장 가까운 장자장손長子長孫으로 억지로 남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조상을 모시는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나 의리상으로나 불가불 추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3척三尺에 불과한 고아孤兒이지만 애써서 멀리 와서 감히 밝은 청송관의 귀를 더럽힙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관부의 밝은 정사 아래에서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위 번필番必 소생을 널리 한 마을 및 송가 문중의 공론을 채집하여 송대부의 결입안은 환수하시고, 위 정순매는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린 후에 위의 노비 매년 신공身貢을 구수口數에 따라 계산하여 하나하나 당연히 징계하여 한편으로는 횡람하려는 것을 다스리시고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공홀히 여겨주십시오.

처분해주십시오.

부사 처분

만력 38년(1610, 광해군 10) 2월 일

[제사題辭]

정순매를 잡아와서 입송立訟할 것. 15일.

靈光郡卍童辛應望

右謹言 矣前祖母宋氏新奴婢 奴莫同奴□(番)必婢白□之等 居本府 皆物故 唯只番必所生分  
此現存矣 祖辛

寬 依法典衿給 一所生婢十月 二所生奴金伊同 四所生婢莫只段 故矣父長吉承重條是白遣 三  
所生婢守代段 故

矣□父永吉祭祀條是白置 丁酉年避亂之□(際) 賊鋒全沒爲乎可向入 本府居宋門孽屬宋大鵬  
(福) 正兵鄭順

每等亦 橫得設計 無主奴婢樣以 自相爭訟爲去□ 亂初府使崔慶長 聽訟決折爲乎矣 辛某亦  
亂離生存爲有

去□(乙) 汝矣等 有主奴婢乙 非理爭訟 極爲駭愕□□爲遣 各人等乙 頭髮扶曳 卽令驅出爲乎  
後 宋大鵬段 矣父生存

的知爲遣 無意橫得爲去乙 鄭順每段 尤于不干爲乎矣 本以悍惡橫濫之人 便亦迫脅使喚 隱匿  
不現爲去乙 避亂還

集之後 方欲呈官痛治爲如可 適音矣父病死 寡婦弱子以 下手不得爲有如乎 節傳聞爲乎矣 宋  
大鵬亦 隻鄭順每□

訟得決是如爲白昆 大槩鄭順每 迫脅使喚事段 橫濫莫甚 以其年數 則矣祖十七歲聚宋氏 歷數  
年 喪室 墓在矣祠堂

後山麓 今已八十年是旣 以其地勢 則於右奴婢所居地良中 順每家 則烟火相望 矣家則數日程

是在如中 亂前段 矣祖口  
 遠地之人以 七十年收貢爲乎矣 同順每段 家在近里 而寂無一言爲如可 亂後良中沙 便生奸謀  
 情狀橫濫爲在果 宋大鵬  
 段置 奉祀之人 時方現在爲去乙 嫡室祭位乙 冒呈謀奪 亦涉犯分爲白置 矣身必于迷劣爲乎乙  
 喻良置 最只長子長孫  
 以 苟延餘喘 粗識奉先之道 以法以義 不可不推 矣身三尺孤兒以 黽勉遠來 敢瀆明聽爲去乎  
 如此  
 令府明政之下 特加分揀 同番必所生乙 博採一鄉及宋門公論 宋大鵬決立案還收爲白遣 同鄭  
 順每乙良 依法重治後 上項奴  
 婢 每年身貢乙 逐口計數 一一當懲 一以治橫濫 一以恤孤寡爲白爲只  
 行下向教是事

府使 處分

萬曆三十八年二月 日

[題辭]

鄭順每捉來立

訟向事

十五

### 3-2) 1610년 2월 관동卍童 신응망辛應望 소지所志

【해설】 앞의 문서의 연속임. 관동 신응망이 할아버지 신관이 처가 신평 송씨로부터 갖급받고, 아버지 신장길의 제위조로 받은 노비를 난리 전후에 송대붕과 정순매가 횡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신응망이 이를 찾으려고 올린 소지. 신응망이 공론에 의하여 단결하겠다는 부사의 제사에 따라 노비가 살고 있는 대곡의 척족들과 노비들에게 물어보니 사촌인 신응순의 호노비라고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자 부사가 방 주인과 색장을 잡아오라고 지시함.

영광군 관동 신응망辛應望 재정□□서再報□□書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의 정실은 이미 여러 번 ...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시험공부를 폐하고 멀리 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부득이 다시 진소陳訴합니다. 먼저 (정)순매와 (송)대붕의 간람한 것 ... 으로 저의 민박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난후의 입안에 허위가 날로 늘어나서 임인년(1602, 선조 35)에 서울과 지방에 정한定限을 두어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에게 증인을 갖추어 다짐을 받고 ... 입

안하여 성급해주고 나머지 다른 입안은 일체 사실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 사목인데, 위의 순매와 대봉의 형 대□ 등이 처음에는 주인 없는 노비처럼 해서 횡탈 해서 얻을 계획을 하다가 죄 부사에게서 죄를 얻은 후에 다시 간사한 꾀를 내어서 말을 꾸며서 관을 속이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인지도 모르게 한 장의 입안을 만들어 냈다가 어느어느 위단(僞端)은 또 밝은 영감에게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순매의 간람입니다. 전실, 후실 중에 비록 후사가 없다하더라도 신노비는 의례 제위로 하기 때문에 본래 본족에게 환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봉이 범필에 대해서는 하나는 적실의 신노비이고 하나는 적실의 제위인데도 범물을 범하여 모탈하려고 하니, 이는 대봉의 간람입니다. 하물며 소한, 대한을 지났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민을 서로 침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범필이 ... 자자손손 70년이 나 수공(收貢)을 했는데, 위 두 사람은 여기에서 낳고 여기에서 자랐으며 더불어 이웃이 되어 함께 서로 접경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찍이 ...하지 않다가 난리 후에야 갑자기 소송을 하여 횡탈하려고 하니, 이는 두 사람이 간사하고 남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접때 두 사람이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귀일하는 바가 없어서 명부(明府)께서 공론(公論)으로 단안(斷案)을 하려고 하여 대곡(大谷)의 송가 문종의 척속(戚屬)인 이 아무개, 김 아무개 및 여종 아무개 등에게 증거를 취하니 정鄭이라고도 하지 않고 송宋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도모하지 않아도 똑같이 모두 영광의 신응순(辛應純) 호노비(戶奴婢)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응순은 저의 사촌형입니다. 원파가 막 나뉘었지만 모두 봉선하는 사람으로서 종형 한 사람을 거론하면 아우도 역시 그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즉 두 사람 ...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는 것입니다. 간사한 형상이 이미 저러하고 공론도 또 이와 같으니 하나하나 밝히 살펴볼 필요도 없거니와 먼저 민박한 정유는 제가 미열한 아동으로 ... 일정이나 되는 타관에서 진실로 동자가 할 바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제위(祭位)를 지금 잃어버리고 추심하지 않는다면 조잔한 손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 멀리 와서 부정(府庭)에 정소(呈訴)하는 것입니다. 위 송대봉이 관의 패자(牌字)를 발송하자 명감지하(明鑑之下)에 민지(民志)를 크게 두려워하고 스스로 이굴(理屈)하다는 것을 알아서 도피하고 나타나지 않으니 금성(金城) ... 행차소(行次所)에서 또 발괄(白括)하여 목패(木牌)를 받아 자취를 찾았지만 가족(家屬)들까지 이끌고 거처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삼척(三尺)밖에 안되는 고아(孤兒)가 멀리 타관에 와서 피고를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열흘이 되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望雲之情)은 하루가 절실합니다. 이에 민박하여서 다시 명청(明聽)을 더럽히니 위의 모탈한 제위를 비리로 호송하는 송대봉을 이와 같은 명정지하에 세세히 분간하여 아무쪼록 각별히 독촉하여 나타나게 하여 법에 따라 ... 타관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걱정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처분해주십시오.

부사 처분

만력 38년(1610) 2월 일

[제사]

신노비의 허실虛實은 빙고憑考할 길이 없지만 대질하려고 하니 본방 주인<sup>1</sup>을 차송하고 두세 색장을 잡아올 것. 22일.

靈光郡卍童辛應望再呈□□書

右謹言 矣大[身]段 情實乙 既已累陳於全□…□之前爲有在果 矣身違親廢業 遠來已久 不得已更□(良)

陳訴爲白乎矣 先之以順每大鵬奸濫□…□以 矣身憫迫之情爲白齊 亂後立案 虛僞滋生 故壬寅年分 京外定限 切隣色掌 具證受拷□…□案成給爲白遣 自餘立案乙良 一切取實安徐亦 該□□事目是去乙等 同順每及大鵬之兄大□等□(亦) 始則無主奴婢樣以 橫得設計爲如可 受罪於崔府使 [又受罪於]

[金府使]後 則更生奸謀 飾辭瞞官 不知某年月 圖出一張紙立案爲有如可 某某僞端 又莫逃於明鑑云 此則順

每之奸濫也 前室後室中 必于無後爲乎乙喻良置 新奴新婢 則例爲祭位 故本無本族還推之法 是白去乙等 同

□(身)大鵬之於番必 一則嫡室新奴婢 一則嫡室祭位 而敢欲犯律謀奪 此則大鵬之奸濫也 況旡 過小限大限 則一應

田民乙 不得相侵奪是去乙等 今此番必所□…□祖 若子若孫七十年至 收貢爲去乙 同兩人等 段 生於斯長於斯

與之爲隣 與之[相]接境爲乎矣 其間曾無[不]□□或及爲如可 亂後耳亦 遽欲冒訟橫奪 此則兩人之奸濫 皆可見

矣 況旡頃者兩人冒訟之際 俱無歸一之所是去乙 明府教是 欲以公論爲斷案 取證於大谷宋門戚屬李某金

某及某婢等 則不曰鄭不曰宋 不謀而同 皆以爲靈光辛應純戶奴婢云 所謂應純 矣四寸兄也 源派纔分 均是奉先

之人 則舉一從兄 而弟亦在其中矣 此則兩人□□不攻自破矣 奸狀旡如彼 公論又如此 則不須一一於明鑑是白

在果 先可憫迫情由段 矣身迷劣兒童□…□日程 他官固非童子輩所爲 而不小祭位乙 失今不

1 방 주인: 부에 있는 행정 단위인 방의 읍내 책임자.

推 則孱孫之責 亦有所  
 歸 故强起遠來 呈訴府庭爲乎矣 同宋大鵬亦 官牌字發送爲去乙 明鑑之下 大畏民志 自知理  
 屈 逃避不  
 現是如爲白去乙 金城□…□行次所良中 又爲白活 受木牌尋蹤爲白乎矣 至於率家屬 無去處  
 逃去是如爲白  
 有昆 三尺孤兒 以遠來他官 待隻之際 居然一旬 望雲之情 日切一日 慈以憫迫 再瀆明聽爲白  
 去乎 上項  
 謀奪祭位 非理好訟爲在大鵬乙 如此  
 明政之下 細細分揀 某條以 各別督現 依法□□□ 解他官久留之憫爲白爲只  
 行下向教是事  
 府使 處分  
 萬曆三十八年二月 日  
 [題辭]  
 新奴婢虛實 憑考無路爲在  
 果 □對次以 本防[坊]主人乙 差送  
 爲遣 兩三色掌 當捉來事  
 廿二

### 3-3) 1624년 생원生員 화민化民 신응망辛應望 발괄[白活]

【해설】 위의 문서와 연속되는 문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송기룡과 소송을 하는데 저쪽에서 화회문기를 제출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석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서울에 회시를 보러 가야 하므로 응송할 겨를이 없으니 다녀와서 응하게 해달라는 발괄. 전 문서에서 관동이었던 신응망은 14년이 지나 생원으로서 발괄을 올리고 이해에 문과에까지 급제하였다.(등제별급문기 참조)

영감전 令鑒前 발괄[白活]

화민化民 생원生員 신응망辛應望

진실로 황공하게도 영감의 번거롭게 하는 것은 송자訟者 송기룡宋起龍이 송씨의 화회문기를 작년 11월 27일에 현납하겠다고 공초供招하고는 석달이 지나도록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이번야 현신한 바, 그 마음보를 쓰는 형상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저는 다음 5일에 상경하는데, 그간의 일자가 많지 않아서 응송應訟할 겨를이 없어서 민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향한 후에 응송하도록 각별히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영감 처분

천계 4년(1624, 인조 2) 정월 일

[제사]

정해진 기한에서 석달이 지난 후에 문기를 가지고 나타난 정상은 확실하여 의심이 없지만, 회시를 보러가는 것도 매우 중하므로 갔다가 와서 응송할 것. 21일 [??]

관 [서업]

令鑒前 白活

化民 生員 辛應望

誠惶誠恐仰瀆

藻鑑 訟者宋起龍亦 宋氏和會文記乙 去年十一月二十七日以 現納是如供招 而去越三月 迄無形影爲白如可 節良中沙 現身爲白臥乎所 其用術之狀 不言可知是白在果 大槩矣身 以來五日上京爲白去乙等 其間日子不多 無暇應訟 不勝憫望爲白去乎 還鄉後應訟事乙

各別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鑒 處分

天啓四年 正月 日

[題辭]

定限過/三朔後 持/文記來現/情狀 綢繆/無疑是在/果 往赴會試/極重 往還後/□□訟事 廿一日 □□□

官[署押]

### 3-4) 1629년 신 생원덕후生員宅 세전노世傳奴 자갈者曷 입지立旨

【해설】 신 생원(신응순)의 세전노世傳奴인 자갈이 지난 식년 입호 시에 자신이 글자를 몰라서 대서하게 하였는데, 주인을 현혹하는 것을 신 생원으로 하지 않고 영암의 양반 한가로 하였는데, 이는 실수이니 그것을 확인하는 관의 공증을 해달라는 입지. 자갈은 낮은 지위의 관속인 사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령使令 자갈者曷

여기에 삼가 소지를 하는 것은, 제가 도내의 신 생원 덕 세전 노자世傳奴子로 매년 공헌  
貢獻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식년式年에 입호立戶할 때에 제가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기  
때문에 동 호구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도록借書 한 즉 현주懸主를 저의 상전 신 생  
원으로 하지 않고 영암의 한가 양반으로 하였는바, 이는 차서인이 잘못 기록한 소치  
입니다. 혹이 뒤에 올 횡침의 걱정이 있으므로 양소仰訴하오니 헤아려 살피신 후에 후  
고차後考次로 입지立旨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해주십시오.

영감님 처분

무신년 12월 일

[제사]

빙고憑考하기 위하여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함.

25일.

관 [서업]

使令者曷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以道內辛生員宅世傳奴子 年  
年貢獻爲有如其乎 去式年立戶時 矣身目不知書乙仍于 同  
戶口 借書于他人是乎 則懸主乙 不以矣上典辛生員 而以  
靈岩韓哥兩班爲有如其乎 此不過借書人誤錄之致  
是乎所 慮或有後來之橫侵是良置 仰訴爲去乎  
參商教是後 後考次 立旨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庚申十二月 日

[題辭]

憑考次

立旨成

給事

廿五

官 [署押]

## 3-5) 1631년 찰방察訪 신응망辛應望 정사呈辭

【해설】 금교도金郊道 찰방 신응망이 귀근歸覲을 왔다가 아들 상, 처 상을 당하고 이어서 어머니도 놀라서 병환이 위중하여 찰방 직임에 빨리 귀임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말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체임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국왕에게 계문하여 빨리 후임을 차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걱정 말라는 순찰사의 제사가 있음.

금교도 찰방金郊道察訪 신응망辛應望(수결)

여기에 삼가 소지를 하는 것은, 제가 지난해 9월에 본직(자여도 찰방)에 제수되어 11월 초10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일이 많은 연고로 해가 지났어도 귀근歸覲할 수가 없었습니다. 칙사勅使를 지과支過한 후, 노친을 뵈기 위하여 7월 22일에 수유受由를 하여 8월 초5일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10일에 아들 상이 나고 9월 13일에는 처 상이 났는데 모두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80 먹은 병든 어머니가 놀라고 비통하여 내상증內傷症이 되어 식음을 전혀 폐하니 원기元氣가 크게 패상敗喪하여 하루에도 두세 번 기절합니다. 저는 본래 형제가 없고 또 나이든 자녀도 없습니다. 주야로 병간호를 하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던 때에 본 역 색리 고목告目을 보니, 도道에서 빨리 귀환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임기[瓜期]가 단지 한 달 남았는데, 만약 아버이 병이 위독하지 않고 사정이 절박하지 않다면 당연히 직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독자의 몸으로 아버이의 병이 이와 같아서 천 리나 멀리 이별하게 되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을 모셔다가 약제를 끓이는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된 정리로서 조금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며 돌아보면 바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병세가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주야를 잊고 달려갈 생각입니다만, 병환의 지속遲速을 미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로直路의 마관馬官은 오래 비워둘 수가 없으니 사또께서는 위로는 효리孝理의 정치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민박한 사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잘 계문하여 처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분해주시시오.

순찰사巡察使 처분

승덕 4년(1631, 인조9) 9월 24일

[제사]

상이 나고 병이 나니 매우 놀랍고 걱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임박하였으니 빨리 후임을 차출하라는 뜻으로 이미 치계馳啓를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 것.

사[서업]

10월 초6일 이방 영리에게

金郊道察訪辛應望 (手法)

右謹言所志矣段 矣身上年九月本職除授 十一月初十日赴任 爲緣多事 經年不得歸覲爲白如  
乎 勅使支過後 老親相見次以 七月二十二日受由 八

月初五日還家 初十日喪子 九月十三日喪妻 而皆爲急死乙仍于 八十病母 驚動悲痛 仍成內傷  
之症 食飲頓廢 元氣大敗 一日之內 再三絕氣 矣身

本無兄弟 又乏年長子女 晝夜侍病 暫不離側之際 得見本驛色吏告目 則自道有催還之命是如  
爲臥乎所 瓜期只隔一月 若非親病之危劇

情事之切迫 則職當還任 以盡餘日 而身爲獨子 親病若此 千里遠別 情所不忍不喻 迎醫湯藥  
顧托無人 人子私情 方寸斷絕 迴遑顧復 不得

卽發 姑待症勢之暫歇 罔夜馳赴計料爲白在果 病患遲速 不可預料 而直路馬官 難容久曠 道  
以上念孝理之政 下恤悶迫之情 善

啓處置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巡察使處分

崇德四年九月二十四日

[題辭]

喪患病患 極爲驚/慮 箇滿臨迫 斯速/本差之意 已爲馳/啓 勿以爲慮向事

使 [署押]

吏 十月初六

### 3-6) 1642년 신 생원택 노辛生員宅奴 두질일豆叱日 소지所志

【해설】 신 생원택 노 두질일이 상전 집의 상화喪禍가 참혹하여 안주인이 광주의 본가로 가면서 자신  
에게 맡긴 논 6마지기를 막복과 상환매매를 하였는데, 그 논을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여 도로 원래의  
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 논은 또 다른 사람이 부쳐먹고 있어서 이를 찾으려고 하는 소지, 소지를  
올린 신 생원은 신용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망은 이미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추정된다. 신씨 집안에서 이때에 생원을 한 사람은 신용순(1572~1636) 한  
사람 뿐이다. 1642년에 신용순이 이미 사망하였어도 신 생원택으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내면道內面에 사는 신 생원택 노辛生員宅奴 두질일豆叱日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민박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가가 상화喪禍  
가 참혹하여 남김 없이 모두 사망하였기에 안 상전이 청년 과부로 돌아갈 곳이 없어

수년 전에 광주의 본가에 가서 의탁하고 이곳의 전답은 모두 저에게 부쳐서 맡아서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저의 상전의 논 6두락지는 구수면九畝面에 있고, 구수에 사는 막복莫卜의 논 6두락은 제가 사는 촌에 있어서 서로 편하도록 상환하여 매매하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 막복의 논을 광주에 사는 흥 생원이 전에 자신이 산 것이라고 문기를 가지고 와서 추심하기에 저의 본래의 논을 역시 추심하니, 그 논을 시집時執하고 있는 칠금七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양반의 노자奴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의 상전의 위세를 믿고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환한 논이 이미 원래로 돌아갔으면 본래의 논을 환추還推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칠금은 제가 막복에게서 샀다고 하니 논은 법에 따라 내준 후에 산 값을 당연히 처음 산 사람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인데, 다만 위세만 믿고 법리는 없기에 이러한 사정情由를 여러 번 정소呈訴하니 지금 부쳐먹는 사람時付時을 잡아오라고 제음題音을 하셨습니다. 소지를 가지고 칠금의 집에 가니 서울에 갔다고 칭탁하고 끝내 나오지 않다가 오늘에 또 나아가니 저의 상전가가 주관하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여, 한결같이 거역하고 소송에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 힘으로는 전혀 안전案前에까지 잡아낼 전망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다시 헤아리시고 위 칠금을 패자牌子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비도非道の 죄를 중치重治하시고 저의 본래의 논을 금년 농작까지 내주실 것을 행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해주시시오.

영감님 처분

임오년(1642, 인조 20) 2월 일 소지

[제사]

추문推問하여 처치處置하기 위하여 잡아올 것. 초1일.

관 [서업]

道內面居 辛生員宅奴 豆叱日

右謹陳所志悶迫情段 奴矣上典家 喪口慘酷 死亡無餘乙仍于 內上典 以青年寡婦(無)所依歸 數年前 往依於光州本家爲白遣 此地田畝段 皆付於矣身處爲白良 使之次知守護爲白在如中 奴矣上典家畝六斗落只口(在)於九畝面爲白遣 九畝居莫卜畝六斗落 在於奴矣所居村下是乎等以 從便相換買賣成文爲有如乎 同莫卜本畝乙 光州居洪生員 以爲曾前所買是如 持文記來推是乎等 奴矣本畝乙 亦爲推尋是乎 則同畝庫時執是在七金稱名人 以京居兩班奴子 自恃其上典之勢 不爲出給爲白臥乎所 相換畝庫 既爲見口 則還推本畝 在法當然是白遣 至於七金段置 渠亦買得於莫卜 則畝庫段 依法出給後 所買之價 當徵於初買之人 事理當然是 在乙 只是恃勢 不有法理是乎等以 似此情由 累度呈

訴 則時付人捉來亦 題下教是去乙 所志持□□(是遣) 時往七金家 則稱以上京□(是)  
如 終不出見是白如可 今日良中 又爲進去 則矣上典家 無所主管是可入 一向拒逆  
無意就訴爲臥乎所 以矣身私力 萬無捉致案前之望是白去乎 右良緣由乙 更  
良參商教是 同七金發牌推捉 重治非道之罪教是遣 矣本番乙 今年  
農作及良 出給事乙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壬午二月 日 所志

[題辭]

推問處/置次 捉/來事 初一日

官[署押]

### 3-7) 1643년 신 생원댁 노후生員宅奴 독일료□日 소지所志

(해설)신생원=독일(구수면 논)—(도내면 논)이막복=황사신(순창 논)=광주 흥 생원

도내면道內面에 사는 신 생원댁 노 독일료□日

여기에 삼가 민박悶迫한 정유情由를 말합니다. 저의 상전 논의 구수면九水面에 있고 구수에 사는 이막복李莫卜의 논의 도내면道內面에 있어서 피차간에 편하기 위해서 상환하여 영원히 매매를 하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위 막복莫卜의 논은 원래 황사신黃士申이 그의 순창淳昌 논을 광주 흥 생원의 본군 도내면에 있는 논과 상환한 것입니다. 차차로 상환하여 각각 매매문서를 만들어 갈아먹다가 어제 추열推閱할 때에 황사신이 그의 순창 본답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상환한 도내답을 흥 생원의 노에게서 도로 추심할 것을 처분하셨는데, 대개 이 논은 차차로 상환하였다가 지금은 차차로 환되하는 것이니 각각 그 본래의 논을 가지게 되면 위의 구수답을 저의 상전이 도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매매명문을 만들어서 환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황사신은 흥 생원과의 매매명문은 전임 수령께서 열람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지를 하여 제사를 받았습니다. 문기를 보면 영구히 상환한 것이 확실한데, 흥가는 거짓으로 임시로 상환하였다고 썼다고 하다가 이제는 임시로 상환한 문기를 수령에게 제출하니 그간의 진실은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신이 이미 막복과 매매를 했고 저도 역시 막복과 매매를 했는데, 제의 본래의 논을 추심하기 전에 도내답을 전혀 흥생원에게 내줄리는 없을 것이며 또 만약 사신이 순창의 본답을 도로

추심하였다면 차차로 환추하여 홍생원에게 그의 본답을 추심하게 하고 저도 역시 그 본답을 추심하게 한다면 저의 구수면 본답의 시집한 사람은 마땅히 그 논값을 이막복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며 막복은 마땅히 황사신에게서 논값을 추심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극히 공명한 판관께서는 위와 같은 곡절을 자세히 헤아리신 후에 저의 상전의 본답을 도로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행하해주십시오.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감님 처분

계미년 12월 일 소지

[제사]

홍가洪哥와 사신土申은 이미 환퇴還退하였으면 차차로 환퇴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고 매매명문을 가지고 구애되어서는 안된다. 그 사이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관 [서업]

【점련】

황사진黃土申과 순창淳昌 양반 홍가洪哥가 상환한 논 흥자곳興字庫 9마지기를 막복莫卜에게 방매하였고 막복은 신가辛哥 양반과 상환하였다가 이제 와서 사신과 홍가가 환퇴還退하였기 때문에 홍가가 이미 막복에게 추심하였고 사신이 왕자답을 신가에게 방매한 논은 신가가 역시 마땅히 막복에게서 본답을 추심하여야 하였다. 칠금은 논값을 막복에게서 추심하고 막복은 사신에게서 추심하는 것이 의당하다.

계미년 12월 26일

관 [서업]

道內面居 辛生員宅奴豆□日

右謹陳悶迫情由段 矣上典畝庫 在於九水面是白遣 九水居李莫卜畝庫 在於道內面 故彼此從便相換

永永買賣等以 成文爲乎矣 同莫卜畝庫 元來黃土申 以其淳昌畝 相換於光州洪生員之本郡道內畝者也

次次相換 各以買賣成文耕食是如可 昨日推闕時 以黃土申賣食其淳昌本畝之故 矣身所換道內畝乙

洪生員奴還推事乙 行下爲有臥乎所 大槩此畝 次次相換是白如可 今則次次還退 各執其本畝 則同九水

本畝乙 矣上典還爲次知 事理當然是白置 若以買賣成文而不可還退云 則當然黃土申與洪生

員買賣

成文 而前等時案前閱覽 故矣身立旨題辭 至有以文記見之 則永換的實 而洪哥假稱姑換之題  
是如可 今

番則以姑換文記 納於案前 則其間情偽 有難的知是白遣 士申既與莫卜買賣 而矣身亦與莫卜  
買賣

矣身本畚未推之前 道內畚庫乙 萬無出給於洪生員之理是乎旡 且若以士申還推淳昌本畚之  
故 而次次

推而使洪生員推其本畚 使矣身亦推其本畚 則矣九水本畚時執之人 則所當推價於李莫卜是  
乎旡 莫

卜則所當推價於黃士申者 自是理勢之當然是如乎 伏乞

至公至明之下 右良曲折乙 細細參商教是後 矣上典本畚乙 還爲次知事 各別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癸未十二月 日 所志

[題辭]

洪哥士申 既已還退 則次次還退 理勢當然 不可/以買賣成文 有所拘/碍 未知其間 或有□(曲)

官[署押]

【粘連】

黃士申與淳昌兩班洪哥相換之/畚興字庫九斗落只 放賣於莫/卜 莫卜與辛哥兩班相換是如可/

到今士申與洪哥還退乙仍于 洪/哥既推尋莫卜 士申所放賣王字畚於/辛哥 則辛哥亦當推尋

本畚於/莫卜處是置 七金段 畚價推/尋於莫卜 莫卜推尋於士申處/ 宜當事

癸未十二月廿六

官[署押]

### 3-8) 1646년 조신한曹信漢 소지所志

【해설】 조신한이라는 사람이 신 생원이 법외로 자신의 노였던 약금이 후손 없이 죽자 무후노비의 재  
산은 기상하여 노비 상전의 재산이 된다는 주장을 하여 침탈을 함. 침범하지 않도록 입지를 써줄 것  
을 요청하는 소지. 이에 대하여 영광 군수는 침탈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여 신 생원을 잡아오라고 지  
시하였다.

조신한曹信漢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의 죽은 형이 살아있을 때에 군에 사는 송지형宋之亨의 비婢 간을곤良乙

昆이 작첩作妾하여 비婢 오옥五玉을 낳았는데 장성한 뒤에 이약금李若金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하여 살고 있을 때에 오옥의 몸을 병자년에 저희 매부妹夫 장만걸張萬傑이 가명假名으로 자속自贖한 후에 약금의 동생 순일順日의 이름으로 환퇴성문還退成文을 하셨습니다. 위의 약금은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약금의 상전인 신 생원辛生員이 무후노자無後奴子는 기물己物이라고 오옥의 자속사문自贖斜文(입안) 및 살고 있는 가사家舍가 붙어있는 문서를 기상記上이라고 칭하면서 모두 빼앗아갔다가 지금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비로소 순일順日에게 내주어 모처某處에 방매放賣하여 값을 받아다가 바쳤다고 운운합니다. 이는 비록 법전에 없는 일이지만 신 생원의 침해하는 데에 곤경을 겪다가 부득이 전문錢文 31량을 준비해서 준 후에 위의 문기文記 등 물품을 도로 거두기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신 생원의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빙고憑考하기 위하여 점련한 문기와 배자牌子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신 후에 논리論理대로 입지立旨를 성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해주십시오.

영감님 처분

병술丙戌 2월 일

[제사]

법외法外의 일로 과연 이처럼 횡탈橫奪하니 단지 입지立旨로 그쳐서는 안된다. 추열推關하기 위해서 신 생원을 잡아올 것.

19일

관 [서업]

曹信漢

右謹陳所志矣段 矣亡兄生時 郡居宋之亨婢良乙

昆作妾產婢五玉 長成之後 李若金爲名人 娶夫居

生之時 五玉身乙 丙子年分 矣妹夫張萬傑 假名自

贖之後 若金之弟順日名還退成文爲白有如乎 同若金

無後身死乙仍于 若金上典辛生員亦 無後奴子己物是如

五玉自贖斜文及入接家舍所付文書 稱以記上 沒數奪去

爲有如可 到今累年之後 始爲出給於順日處 而某處放賣

捧價以納云云爲白臥乎所 此雖法典所無之事 困於辛生員之口

侵 不得已錢文三十一兩備給後 同文記等物 還推成文爲白有



去乎 此後辛生員子孫中 如有雜談之事是白良置 憑考次粘

連文記牌子等 詳細下監教後 論理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丙戌二月 日

[題辭]

法外之事 果如是/橫奪 則不可立旨/而止 推闕次/ 所謂辛生員/捉來事

十九日

官[署押]

### 3-9) 1648년 신 장령택辛掌宅 노부 독일료□日, 순일順日 소지所志

【해설】 산송. 상한 이동원이 장령 분산 국내에 투장.

도내면道內面에 사는 고故 신 장령辛掌宅 노부 독일료□日, 순일順日 등

여기에 삼가 통박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법성法聖에 사는 상놈[常漢] 이동원李東元이 저의 상전인 고 장령掌宅의 분산墳山 국내局內的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偷葬할 계획을 하기에 제가 정장呈狀을 올려 잡아왔는데 아직 결송決訟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의 동원東元이 한편으로는 응송應訟을 하고 한편으로는 결송이 되기 전에 투장을 하기에 지난 번에 추열을 할 때에 위의 동원에게 태장笞杖 15도度を 쳐서 그의 투장한 죄를 징계 하여 그 덕에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또 굴이掘移하라고 발괄[白括]을 하니 동원이 하는 말이 “일찍이 상놈 복선卜先도 역시 상전 분산의 더욱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는데 제가 일찍이 금단한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니, 영감님의 행하에 복선이 매장한 곳은 동원이 매장한 곳과 비교하여 步數로는 더욱 가깝지만 일찍이 굴이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동원이 매장한 것은 우선 掘出하기가 어렵다고 분부하신 후에 두 쪽을 모두 退出시켰습니다.

대개 저의 상전은 가화家禍가 매우 혹심하여 연 4대를 단선으로 전해오고 모두 30세에 요사夭死하였고 또 10촌 내에는 족당族黨이 없습니다. 단지 혈혈子子 과부덕寡宅이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광주光州 땅에 避禍하였는데, 법성의 강악強惡한 상놈 복선이 그 상전이 상패喪敗한 상황을 노려서 임의로 국내局內的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위 산직山直은 과연 와서 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노班奴가 끝내 금단禁斷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전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동원이 투장할 때에 상전이 마침 구장舊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산직이 가 몰래 통고하기에 제가 처음으로 금단하는 거조를 했는데, 위의 동복이 먼저 투장한 일은 동원이 투장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선의 투장한 곳은 동원이 투장한 곳에 더 가까워서 먼저 복선이 매장한 것을 파낸 연후에 다음에 동원이 매장한 것을 파내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니 지난 번에 행하行下한 것은 정말로 지당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 항소합니다. 대개 저의 상전은 이미 근시近侍와 대관臺官을 지냈으니 그 분산 국내에는 전부터 금단하는 곳이 있어서 상놈은 입장해서는 안 되고 이미 투장했으면 도로 파가는 것이 법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동원이 투장한 곳은 저의 상전이 개장하려고 점혈占穴해둔 곳입니다. 그 선산의 국내이므로 비록 매표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번 지사地師를 청하여 점혈한 상황을 동내의 양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진술한 상놈 김후백金厚白과 노랑老郎 등이 앞뒤로 번갈아 나와서 투장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탐지하고 금단하여 관에 정소하여 득송得訟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입장入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에 올린 문서가 소연昭然하게 모두 있습니다. 전날에 제가 황겁惶怯한 소치로 문서를 납상納上하여 감당監當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김후백과 노랑 등이 이미 패소한 곳을 위의 동원이 마음대로 결승이 나기 전에 투장을 하니 사리로 보면 당연히 파내야 합니다.

저의 상전 본손은 단지 한 사람 과부여서 비록 입송을 할 수가 없으나 그 외손 양반들은 멀리 백 리 밖에 있어서 와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솟장을 올리니 바라건대 인정을 하고 적선을 하시는 수령께서 특별히 저의 상전 집이 불쌍하게 된 정상을 살피셔서 이번 달에 투장한 복선을 먼저 잡아들여 사대부 분산에 투장한 죄를 각별히 중하게 처벌하여 엄히 구속한 후에 위의 복선 및 동원이 투장한 분묘는 기한 내에刻期 파갈 것을 엄명하게 행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해주십시오.

영감님 처분

무자년 10월 일 소지

[제사]

이제송李齊松은 송리訟理의 곡직曲直을 막론하고 관가官家의 적간摘奸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입장入葬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과연 치죄를 하였는데, 매장한 곳은 보수步數가 이미 멀고 또 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가 조금 가까워 보이는 곳도 상놈이 입장入葬한다고 해도 금단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송만 유독 금장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금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분부하거니와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파내려고 하면 그 입장된 해가 오래된 것은 실로 법리의 밖에 해당되는 것이니 관에서는 청리聽理할 수가 없음. 30일.

道內面居 故辛掌令宅奴豆 日順日等

右謹陳痛迫情由段 法聖居常漢李東元亦 矣上典故掌令墳山局內至近之處 偷葬設計爲白去

乙 矣身呈狀推捉 未及決訟之際 同東元亦 一

邊應訟爲遣 一邊偷葬於未決訟前爲有等以 頃日推闕時 同東元笞杖十五度 懲其偷葬之罪 不

勝感德爲在果 矣身又以掘移事白活 則同東

元執言內 曾者常漢卜先 亦爲偷葬於上典墳山尤近之處 而矣身曾無禁斷之事是如 以此執言 則令監主行下內 卜先所葬 比東元所葬處 步數尤近 而曾無掘移之事 則東元所葬 姑難掘出是如

分付教是後 退出兩隻爲有如乎 大槩矣上典 家禍

孔酷 連四代單傳 俱於三十夭死是遣 且無十寸內族黨乙仍于 只有子子寡宅 率二稚兒 避禍於

光州地是乎等以 法聖強惡常漢卜先亦 覘其矣上典喪敗

之狀 任意偷葬於局內至近之處是乎矣 同山直果無來告之事 故矣身班奴輩 終不能禁斷 至□

□日 全然不知爲有如可 今者東元偷葬之時 則□

內上典適音來在舊庄 故同山直潛爲通告是去乙 矣身始爲禁斷之舉 而同卜先偷葬之事乙 至

於東元偷葬之時 始得知之爲有如乎 卜先偷葬

之處 尤近於東元偷葬處 則先掘卜先之葬 然後次掘東元之葬者 事理當然 則頃日行下 誠爲至

當 故敢此仰訴爲遣果 蓋矣上典既

經近侍臺官 則其墳山局內 自前禁斷之處 常漢不當入葬爲白遣 既已偷葬 則還爲掘去 法理當

然是如乎 且東元所葬處段 矣上典欲

爲改葬占穴之處也 以其先山局內 故雖無埋標之事是乎乃 累度請地師占穴之狀 洞內兩班 無

不知之是乎等以 前者陳良常漢金厚白老

郎等 前後迭出 欲爲偷葬是如可 矣等探知禁斷 呈官得訟 故終未入葬爲有如乎 其時呈官文書

昭然皆在是乎矣 頃日矣身惶怯所致

不得納上監當爲有如乎 上項金厚白老郎等 既已見敗之處 同東元肆然偷葬於未決訟前 則揆

諸事理 所當掘出是白置 矣上

典本孫 則只有一寡婦 雖不能立訟是乎乃 其外孫兩班 則遠在百里外 未及來會 故矣身爲先呈

狀爲去乎 伏乞

仁政積善之下 特察矣上典家可矜情狀爲白良 當朔偷葬爲在卜先 爲先推捉 士大夫墳山偷葬

之罪乙 各別重治嚴囚後 同卜

先及東元偷葬爲在墳墓 刻期掘去事 嚴明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戊子十月 日 所志

[題辭]

李齊松 母論訟理曲直 不待官家摘奸 徑自入葬不當/ 故果爲治罪 而至於葬處 則/步數既遠  
 且不相見叱分不喻 步數/稍近相見處 常漢入葬 亦不得禁/斷 則李齊松耳亦 獨爲禁葬不可/  
 故不得禁斷之意 分付是在果 以此展轉 乃欲掘移 其入葬年久/者 實是法理之外 官不得聽  
 理事

卅

### 3-10) 1658년 장령掌令 신응망辛應望 처妻 정씨丁氏 소지所志

【해설】무후 전민 소송

고故 장령掌令 신응망辛應望 처妻 정씨丁氏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의 가옹家翁의 전후실前後室 동생同生 5남매에게 노비 각 5구를 분깃分給하였습니다. 차매부次妹夫 이위李偉는 그의 처가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이미 후사 없이 죽었으면 위 이위의 처妻 몫衿으로 나는 전민田民은 제위祭位 외에는 법전에 따라서 사리상 당연히 본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가옹에게 이위는 비록 일가의 의리는 있지만 이위가 혼조昏朝(광해군) 때에 대비를 폐비하자고 혼자 상소를 한 후에는 피차간에 모두 원수가 되어서 가옹을 대하기를 악인과는 상접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사리상 당연히 환추還推해야 할 전민을 환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몫 노봉생奉生 1구만 장성長城 땅에 살고 있어서 가옹이 장성에서 추래推來하여 사환使喚한 것이 지금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3일 장시場市에서 위의 노 봉생奉生의 자子 일수一水가 양역노자仰役奴子로서 상전의 집 장을 보려고 목면 2필과 조 10두를 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에 위의 이위가 그의 후실後室 자子 상익相益을 데리고 많은 노들을 이끌고 위의 노 일수를 업포 결박하고 무수히 난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의 목필과 곡물을 역시 모두 빼앗아 가서 사실私室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위 노 일수의 노봉생을 공선貢膳을 준비해서 내현來現하라고 운운하고 빼앗을 계획을 하는 바 매우 불측不測한 것입니다.

대개 법전에는 “무후無後 동생同生 전민田民은 본손本孫에게 돌린다”고 한즉 이위는 그가 지금 경식하고 사환하는 전민을 이치상으로는 당연히 제위조를 제외하고는 본손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전답 30여 두락 곳과 노비 4구 및 소산의 다수를 모두 도집하고 있으니 탐악한 마음도 부족해서 위의 노 봉생 1구까지 도로 모두 빼앗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 실로 불측합니다. 하물며 위의 노 봉생은 저의 고모와 가옹이 살

아있을 때에 데리고 와서 사환하던 자로 장차 40여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감히 한번도 입을 뻥긋하지 않다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아들과 노를 데리고 시장 문안에서 때리고 묶고 화물을 겁탈하였으며, 위의 노 봉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자식이 없는 고단한 과부인가 해서 이처럼 횡탈하는 것입니다. 혼조에 다하지 못했던 흥계를 가련한 미망인에게 시도하려고 하니 이위의 흉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물며 이위의 후실 자식 상익은 이미 신 씨의 소출이 아니니 더욱 관계가 없는데 그의 높고 흉악한 아버지를 끼고 이처럼 근거 없는 불측한 일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고단한 과부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밝은 정치로 위의 이위 부자가 이치에 맞지 않게 횡탈한 죄를 각별히 중치하시고 제위조 외의 전민 및 겁탈한 곡식과 목면 등 물품을 하나하나 도로 받아낼 것을 각별히 발명하여 행하해주십시오. 처분해주십시오.

검관님 처분

무술년 4월 일 소지

[제사]

무후無後 전민田民은 제위조를 제외하고는 본손本孫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 도집都執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하물며 20년 전에 본손에게 돌린 노를 무단히 탈취한 것은 더욱 놀랍다. 이위 및 이상익을 잡아 구속하고 취초取招를 받아 보고할 것.

초9일. 영광 유향소留鄉所에

검관 [서업]

故掌令辛應望妻 丁氏

右謹陳所志矣段 女矣家翁前後室同生五娣妹亦中 奴婢各五口分衿爲有如乎 次妹夫李偉 則其妻無

後身死爲白齊 既爲無後身死 則同李偉妻衿分田民乙 祭位外 依法典 理當還本孫是乎矣 家翁之於李偉 雖

有一家之義 而自李偉 昏朝時廢大妃獨疏之後 彼此皆以仇讐 待之家翁 亦不欲與惡人相接乙 仍于 理當

還推之田民乙 不爲還推爲白遣 其矣衿奴奉生一口叱分 居在長城地是白去乙 家翁亦 自長城推來使喚者 今至四十

餘年是白如乎 今月初三日場市良中 同奴奉生子一水亦 仰役奴子以 上典家買物次以 木二疋租十斗持入市門之時

同李偉亦 其矣後室子相益率良遣 多率奴輩 同奴一水乙 掩捕結縛 無數亂打 幾至死域叱分不

諭 同木疋穀物乙

亦爲沒數據奪爲乎旡 囚置私室爲白遣 同奴一水父奉生乙 備貢膳來現云云 而據奪設計爲臥  
乎所 極爲不測爲白齊

大槩法典內 無後同生田民乙 還本孫 則同李偉亦 其矣時方耕食使喚爲在田民乙 理當祭位外  
還本孫是白去乙 田畚三

十餘斗庫果 奴婢四口 多數所產乙 沒數都執是乎矣 貪惡之心 猶以爲不足 同奴奉生一口乙沙  
還爲盡奪設計爲臥乎所

實爲不測爲乎旡 況旡同奴奉生乙 女矣姑與家翁生時推來使喚者 將至四十餘年之久 而其間  
不敢一番開口是如可

及至今日良中沙 挾子率奴 而至於市門毆縛恟奪貨物爲乎旡 同奴奉生乙 據奪爲臥乎所 此不  
過無子息孤單

寡婦是可向入 如是橫奪爲去乎 昏朝未盡之凶計乙 欲試於未亡可憐之人 李偉之凶慘 則不須  
云 而況旡李偉之後

室子相益 既非辛氏所出 則加于不干是去乙 挾其老凶之父 做此無據不測之事 此而不治 則孤  
單寡婦支保不得去乙

明政之下 同李偉父子非理橫奪之罪乙 各別重治後 祭位外田民及恟奪穀木等物乙 一一還推  
事 各別

發明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官主 處分

戊戌 四月日 所志

[題辭]

無後田民乙 祭位外還本孫/ 載在法典是去乙 都執不還/ 已極可駭 況旡二十年前還/本孫之奴  
乙 無端奪取 尤極駭/愕 李偉及相益乙 捉囚捧/招舉報事

初九

靈光留鄉所

兼官[署押]

3-11) 1659년 신 호노辛戶奴 독일豆(口日), 소남小男 소지所志

[해설] 창원 노비 수공 물금첩

전라도 영광靈光, 무장茂長에 사는 신부 호노戶奴 소남小男, 독일豆□日 등  
여기 소지를 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저희들이 상전의 배자牌字에 의거하여  
창원昌原 땅의 노비奴婢 수공收貢을 하는데 소 4마리를 끌고 갑니다. 허락할 때에 혹 금방  
禁防하는 거조가 있어도 이러한 연유로 분간하여 금하지 말도록 행하하여 주십시오.  
처분해주십시오.

창원 부사님 차분

을해년 2월 일

[제사]

성급成給할 것. 14일.

행사 [서압]

【점련】

행 경상도 창원대도호부사가 물금勿禁함.

숫장을 올린 사람 소남小男이 그의 상전 배지에 따라 노비를 방매하고 소 4마리 등을  
끌고 갑니다. 도착하는 곳에서 물금할 것을 시행하라는 첩帖임.

이것을 각관 각읍에 내림. 이에 준함,

을해년 2월 14일

행관 [서압]

全羅道靈光茂長居辛戶奴 小男豆□日等

右所志爲白內等 奴矣等上典牌字據 昌原地奴婢收貢

爲在 牛四隻牽去是如乎 許諾之時 或有禁防之舉

爲乎乙良諭置 緣由分揀勿禁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昌府原使主處分

乙亥二月日

[題辭]

成給事

十四

行使[署押]

【粘連】

行慶尙道昌原大都護府使爲勿禁

事 狀者小男 以其上典牌旨據 奴婢放

賣牛四隻等 牽去是如爲置 到處

勿禁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各官各邑準此  
 乙亥二月十四日  
 行官[署押]

### 3-12) 1662년 신륵노辛楡奴 인봉仁奉 입지立旨

【해설】 양전할 때에 6촌 노 후백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라있는 것을 후고하기 위하여 입지해줄 것을 요청함.

광주光州에 우거寓居하는 신륵辛楡의 노奴 인봉仁奉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저의 상전의 노 □□이 본군 도내의 사람으로 가화家禍가 이어져서 외가인 광주 땅에 우거하여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전답을 본면에 사는 노배와 일가 노속들에게 병작並作을 주었는데, 이번에 개량改量을 할 때에 본면 운자雲字 논 8마지기(남쪽으로는 2등 직답直畝 25부負 6속束 남이작南二作 3등 직답直畝 16부 1속) 곳을 저의 상전上典 6촌 노奴 후백厚白이 병식并食하고 있어서 양임量任으로서 병식 인구 후백을 양명量名으로 현록懸錄하였는 바, 당연히 진즉에 정장보狀을 하여 저희 덕宅 양명量名 원금元金으로 개록改錄해야하는데 비단 저의 상전이 사고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가의 노명奴名으로 현록되어 있어서 방해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등한시하고 미루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양안을 생각하면 막중한 양명을 비록 이것이 일가의 노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자名字로 현록되어 있어서 매우 허소虛疎합니다. 그래서 이에 양소仰訴하오니 내용을 헤아리신 후에 후고後考하기 위하여 입지立旨를 제하題下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영감님令監主 처분

임인년 정월 일 입지立旨

[제사]

입지立旨함.

11일.

영광관靈光官 [서업]

光州寓居 辛楡 奴 仁奉

右謹陳所志矣段 矣上典奴□□本郡道內之人 家禍連仍 寓居于



外家光州之地者 于今十 八年 間是在如中 略干田畝乙 本面居  
奴輩及一家奴屬處 竝作出給是如乎 今番改量時 本面雲字  
畝八斗落只 南犯二等直畝二十五負六束南二作三等直畝十六負一束  
應 矣上典六寸奴厚白并食是乎等以 量任以 并食人厚白量  
名懸錄爲在臥乎所 所當趁卽呈狀 以矣宅量名元金改錄是乎  
矣 非但矣上典事故多□□ 是一家奴名懸錄 則似無妨害是  
如 等閑遷就是白如乎 到今思量莫重量名乙 雖是一家奴名 以他  
人名字懸錄 極涉虛疎是乎等以 敢此仰訴爲去乎  
參商緣由 後考以立旨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壬寅正月 日立旨

[題辭]

立旨事

十一

靈光官[署押]

### 3-13) 166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경릉辛慶隆 단자單子

【해설】 영광의 유학 신경릉이 자신의 양역노 아리금이 제 어머니가 있는 무장현에 1개월간 휴가를 받아 간병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무장현에서 아리금을 무장현 속오의 역에 차정함. 이에 사대부가의 양역노라고 항변하였는데, 영광군의 호적에 아리금의 금자를 개서하였다고 부인하므로 영광군에서 무장현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단자. 아래 문서와 점련되어 있음.

성주에게 올리는 단자單子

화민化民 유학 신경릉

황송하게도 성주 합하게 진달합니다. 저의 양역노仰役奴 아리금牙里金이 그의 어머니가 무장茂長에 있는데 병이 중하여 위의 아리금이 1개월간 수유受由(휴가)를 받아서 그 어머니의 병을 간호하였습니다. 위 아리금이 ... 사람인 것처럼 그 지역 사람이 본현에 무소誣訴를 하여 속오束伍의 역역에 충정하여 그의 어머니 연화延化가 지금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關他官의 사부士夫 집 양역노가 다른 관의 속오 역을 대담對答하는 것은 이미 법례法例를 위반하였고 또 사정私情이 걱정스럽고 절박하므로 사유를 갖추어

무장현에 소지를 올리니 ... 호구에 아리금의 금자金字를 개서하였다고 의심하고 논리  
論理로 제송題送하였습니다.

저는 나이 어린 유생으로 실로 위조하거나 기망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한 글자를 당  
초에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양역하고 있는 노를 다른 관에 빼앗긴다면 그 억울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정私情이 절박하여 감히 양소하니, 바라건대 성주께서는  
특별히 백성을 사랑하는 어짐을 더해주시고 위의 중 아리금이 지금 양역하고 있는 형  
상을 관에서 무장현에 이문을 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기유년 9월 일

[제사]

위에 따라 이문할 것.

초6일

관 [서업]

城主前 單子

化民 幼學 辛慶□(隆)

惶悚仰達于

□□(城主)閣下 伏以民之仰役奴牙里金 其母□於茂長 而病重乙仍于 同奴牙里金一月間□  
□(受由)□…□

□其母病是如乎 同奴牙里金□…□人樣以 其地之人巫[誣]訴於本縣 充定於束伍之役□…□  
延化方入獄中 而以他官士夫家仰□…□對答他官束伍之役 既違法例 而又迫私情是乎等以  
□…□

具由呈所志於茂長縣 則□□戶口內□□(牙里)金之金字乙 改書是如致疑 而論理題送爲有臥  
乎□…□

民以年少儒生 實無偽造欺罔之事 而若以一字當初誤書之故 時方仰役之奴□…□見奪之  
他官 則其爲冤悶 有不可言 私情切迫 敢發仰訴爲去乎 伏乞

城主 特加愛民之仁 同奴牙里金 時方仰役之狀乙 自官移文於茂長縣 俾無冤悶之弊爲□□(只  
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己酉九月 日

[題辭]

依移□□□(文向事)

初六日

官[署押]

### 3-14) 166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경릉辛慶隆 소지所志

【해설】 위 문서와 점련된 문서로, 아리금이 무장현의 속오 역에 차출된 것에 대해서 사대부 집의 양역 노이므로 그 역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소지. 호적 자료에 주협무개인에 협서가 없는데 3자가 개서되었으니 상고하라는 제사가 있다.

영광靈光 유학 신경릉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저의 양역노<sup>노</sup>仰役奴 아리금<sup>牙</sup>里金이 그의 어미 연화<sup>延</sup>화가 본현의 대계면<sup>大</sup>梯面 광대촌<sup>廣</sup>大村에 이거<sup>移</sup>移居하였기에 위의 노 아리금이 1개월간의 수유<sup>受</sup>受由를 받아 그의 늙은 어미의 병을 구완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위의 노 아리금이 속오군으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리금이 도로 저의 집에서 양역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신하지 않아서 노비 연화가 지금 수옥 중에 있다고 하는 바, 위의 노 아리금이 만약에 저의 집에서 양역하지 않고 과연 치하에서 산다면 속오의 역은 당연히 말아야 할 직이지만, 다른 관의 사부의 양역 노가 다른 관의 속오 역에 대답한다는 것은, 사리로 보건대 매우 억울합니다. 위의 아리금 양역 여부를 영광군에 이문하여 자세히 알려져서 특별히 분간하여 억울한 폐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무장현감 처분

기유년 9월 일

[제사]

호구戶口를 상고<sup>相</sup>相考하니 주협무개인<sup>周</sup>挾無改印에 협서<sup>俠</sup>書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주협무개인 중 3자가 개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례가 아니니 상고하여 시행할 것.

초5일

관 [서업]

靈光 幼學 辛慶隆

右謹言所志矣段 矣仰役奴牙里金 其母延化移居本縣大梯面廣大村乙仍于 同

奴牙里金亦 一月間受由 歸救其老母之病是如乎 節所聞爲乎矣 同奴牙里金亦 被訴

於束伍軍 而牙里金還爲仰役於矣家 未卽現身之故 老婢延化 方在囚獄中是  
 如爲臥乎所 同奴牙里金 若不仰役於矣家 而果爲居生於治下 束伍之役 常當之  
 職是乎矣 以他官士夫仰役之奴 對答他官束伍之役 揆之事理 極爲悶冤□(是)齊 同奴牙  
 里金仰役與否乙 移文詳聞於靈光郡 特爲分揀 俾無冤悶之弊爲只爲  
 行下向教是事

茂長縣監 處分

己酉九月 日

[題辭]

戶口相考 則周挾無

改印者 無俠書之謂

也 且周挾無改印[五字]

中參字改書□云者 非法例

也 相考施行事

初五

官[署押]

### 3-15) 1671~1700년 화민化民 신정수辛鼎受 단자單子

【해설】 고을 백성 신정수辛鼎受가 마촌면馬村面 마치산馬峙山에 있는 할머니의 산소를 금양하여 수호  
 할 수 있도록 입지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소지. 뒷 부분이 결락되어 실제로 입지가 발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성주城主에게 올리는 단자單子

화민化民 신정수辛鼎受

황공하게도 성주 합하城主閣下에게 진달합니다. 저의 조모祖母의 분영墳塋이 마촌면馬  
 村面 마치산馬峙山에 있습니다. 들으니 관가官家에서의 금양禁養 중에는 사부士夫의 영  
 역塋域 국내局內에서는 각각 그 자손이 수호守護하여 금벌禁伐하라는 관의 분부가 이  
 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喪을 당하여 슬픈 나머지 온 집안이 겨를이 없다가 오늘  
 저녁에야 듣고 이제 비로로 소를 제기하니 바라건대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주께서 특  
 별히 긍휼히 생각하셔서 분영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성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결락)

城主前 單子

化民 辛鼎受

惶恐仰達于

城主閣下 伏以民祖母墳塋 在于馬村面馬峙山是如乎 仄聞官家 禁養中士夫塋域局內 各其子  
孫守護禁伐亦 已有官分付是如爲乎矣 民以喪憾餘生 靡室奔遑聞知 此晚今始仰訴 伏乞  
仁恕之下 特加矜念 使之守護事 立旨成給爲只爲

(후반부 결락)

### 3-16) 1674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흥효辛興孝 입지立旨

【해설】 영광에 사는 유학 신흥효가 5촌 숙부인 장령 신응망의 아들, 손자가 모두 요절하므로 이러한 상화가 분산이 불길하다고 하여 지사에게 새로 개장할 산을 점지하고 다른 사람이 투점하거나 작희(作戲)하지 못하도록 입지를 받아둔 것.

화민化民 유학 신흥효辛興孝

여기에 삼가 소지를 하는 것은 저의 동성 5촌숙同姓五寸叔 고故 장령掌令 신응망辛應望 이 단지 아들 하나, 손자 하나입니다. 5촌숙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도 20년 전에 죽었고 그 손자도 또 작년에 요절하였습니다. 상화喪禍가 참혹한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地師에게 물으니 5촌숙의 분산墳山이 불길不吉한 소치라고 하여 지사地師를 데리고 진량면占山於陳良面 삼구릉로三丘陵路 하자룡下子龍 계좌정향 지지癸坐丁向之地에 산을 점지하여 장차 개장改葬을 하려고 합니다. 점득占得한 후에 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투점偷占하거나 작희作戲하는 사람이 있어도 각별하게 논리論理하도록 입지立旨를 성급해주십시오.

행하行下해주십시오.

성주城主 처분處分

갑인년 2월 일

[제사]

빙고憑考하기 위하여 입지를 함. 초5일.

관 [서업]

化民幼學辛興孝

右謹言所志矣段 民之同姓五寸叔 故掌令辛應望 只有一子一孫是如乎 五

寸叔身死之後 其子身死於二十年前 而其孫又夭於去年 喪禍之慘 人間無比 問於地師 則五寸叔墳山不吉所致是如爲去乙 率地師占山於陳良面三丘陵路下子龍癸坐丁向之地 而將營改葬是去乎 占得之後 卽爲成表是在果 前頭如有偷占及作戲之人是乎乙喻良置 各別論理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寅二月 日

[題辭]

憑考次 立

旨事 初五

官[署押]

### 3-17) 169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정화辛鼎和 소지所志

【해설】진량면 선산을 상놈들이 관 조사[擲] 전에 마음대로 예취하는 데, 이를 막아달라는 소지.

도내면道內面 화민化民 상인喪人 신정화辛鼎和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려 민박悶迫한 사정을 진술합니다. 제가 진량면陳良面の 선산先山을 금초禁樵하는 일로 관에서 조사[擲]하도록 행하셔서 이번 달 초6일에 종일토록 산소에서 대령하였다가 계속 산직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위 이현촌梨峴村의 상놈[常漢] 노랑老郎, 걸이傑伊 등 8인이 관령官令도 없이 위의 분산墳山 국내局內的 몇 년 동안 금양禁養한 초목草木을 마음대로 예취[取]하여 저는 오히려 관에서 조사하기 전에는 예취하면 안된다는 뜻을 말했는데도 그들은 흉년의 백성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세력을 믿고 능욕을 하며 마음대로 예취하기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하였습니다. 작별한 땀감을 이슬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녁에 채취하여 아침이슬이 찰 때까지 모두 저의 집으로 운반해갔습니다. 나머지 땀감을 또 베어서 운반해 가려고 하기에 제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정私情이 급박하므로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제음題音에 “매일 정장呈狀을 하니 마치 서로 압박하는 것 같다”고 하여 매우 황송하여 대죄待罪하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6, 7년 동안 고생하여 기른 송목松木, 울목栗木 및 잡목雜木이 푸른 숲을 이루어 잔 등성이를 덮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고을의 상놈의 손에 벌거숭이가 되도록

벌채를 하여 마음 놓고 나뭇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리情理가 원통하고 급박하여  
죽히 말할 것이 없습시다만 하물며 관가에서는 왜 저들이 조사를 기다렸다가 차단하  
지 않고 사대부의 분산墳山에서 작난作亂하는 광경을 과연 한 고을의 양반을 마음대로  
능욕하는 거조 이것은 결코 화외化外의 백성인 바, 이러한 습속을 만약 관에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려 금단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고약孤弱한 상인喪人은 전혀 사적으로  
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예취하도록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  
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행을 부리고 몽땅 난작亂斫하는 바, 잔산단록殘山斷麓의 약간의  
기른 나무를 지난달 그믐에서 지금까지 열흘 사이에 매일 예취하고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여서 불과 몇 일 동안에 산은 장차 벌거숭이가 될 것인 바, 마음속으로는 매우 애  
통하고 놀랍니다. 이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하오니, 바라건대 명정明政 아래에서 위  
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의 사람들을 추문推問하여 중히 다스리실 것  
이며 위의 분산에 남아있는 나무를 그들이 관에서 조사하여 처결하기 전에는 우선 예  
취하지 말 것을 분부해주시시오. 행하해주시시오.

성주 처분

을해년 9월 일 소지所志

[제사]

조사摘奸하기 전에 만약 예초刈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올 것. 11일.

관 [서업]

道內面化民 喪人 辛鼎和

右謹陳所志悶迫情由段 民以陳良面先山禁樵事

官摘奸行下導良 今月初六日良中 終日待令于山所 仍爲留宿於山直家是白如乎

同梨峴村常漢老卽傑伊等八人亦 不有官令爲白遣 同墳山局內積年禁養草木乙 任意刈取是

白去乙 民尙諭其官摘奸前不可刈取之意是乎 則其矣等 稱以凶歲之民乙 何以爲之是如 依勢凌

辱 肆然刈取 有同己物是白乎旣 所斫之柴乙 不計沾顯爲白遣 采暮夜及朝霞 沒數運入渠

家 而所餘之柴乙 又爲刈束運入是白乎等以 民目觀此狀 不勝痛冤 私情所迫 更敢煩訴是白如乎

題音內 逐日呈狀 有若相迫者然是 白 如爲臥乎所 極爲惶恐待罪是白在果 大槩民六七年辛

苦所養

松木栗木及雜木 儼成蒼翠 庇護殘隴 而一朝緒伐於一鄉常漢之手 任作樵牧之場者 情理痛

迫 有不足言 而況旣官家爲如何 而其矣等 不待摘奸處斷爲白遣 士大夫墳山作亂之狀 果一鄉

兩班乙 肆

然凌辱之舉 決是化外之民是乎所 如此之習 若不自官依法重治禁斷 則以民孤弱喪人 萬無

私自禁斷之理 故任其刈取 不敢下手是乎等以 其矣等益肆其惡 沒數亂斫爲白臥乎所 殘山斷

麓略干所養之木乙 自去月晦日至今一旬之間 逐日刈取 唯恐不及 不過數日山將童凡是乎所  
私心極爲痛愕 敢此更瀆是白去乎 伏乞  
明政之下 右良情由乙 細細洞燭教是後 右人等乙 推問重治爲白乎旆 同墳山所餘之木乙  
其矣等處 官摘奸處決之前 姑勿刈取事乙 分付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乙亥九月 日 所志

[題辭]

摘奸之前 若有刈草之人 卽爲捉來事 十一日

官[署押]

### 3-18)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해설】 고 신정수의 처 유씨가 멀리 김해 교촌에 도망하여 많은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비 점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절족인 신천익에게 대신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 점이가 수록되어 있는 분재기를 관에서 전준해줄 것을 요청한 소지. 이 소지의 이면에 분재기를 전준하였다. 전준이란 어떤 문서를 관에서 똑같이 써서 공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노비 추쇄에도 전준 문서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도내면道內面 고故 신정수辛鼎受 처 柳氏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저의 남편[家翁] 증조부가 깃든한 비婢 점이占伊가 김해 金海 교촌校村에 도망하여 자녀를 많이 낳고 산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 대에 독자로 죽은 후에 단지 한 명의 고아만 있으나 나이가 아직 장성하지 않아서 달리 돌보고 추심推尋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절족切族인 신천익辛天益을 지금 막 간청하여 보내려고 하니, 위 비가 수록되어 있는 문기를 불가불 전준傳準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 문기와 함께 점련하여 우러러 진달하오니 전례에 따라서 전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관주官主 처분

갑오년 11월 일

[제사]

전준할 것. 23일

관[서압]



[뒷면]

갑오년 11월 23일

행 군수가 전준함. 순치順治3년 경술3월 초10일 자녀에게 갖급하는 문서

필집筆執 남편[家翁] 동성同姓 4촌 신탁효辛卓孝 작명着名

재주財主 모母 이씨李氏 착도서着圖署

이 문서는 가옹家翁 쪽 선세先世의 전래 전민田民을 전후 자녀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는데, 자기쪽의 약간의 전민을 자신의 소생 자녀에게 나누어주니 그들은 이 문기에 따라 사용使用하고 경식耕食하며 앞으로 잡담이 없게 할 것.

일, 장녀 사위長女婿 정방원丁房元 묵: 비婢 감춘甘春의 1소생 노녀 감울甘粟 나이 경□, 비 철상哲上 1소생 비 철옥哲玉 나이 병술丙戌. 분산동墳山洞 명자命字 논 7마지기, 전자田字 논畝 3마지기, 수자收字 ... 마지기 끝.

일, 차녀 사위 정연丁鉉 묵: 비 순덕順德 1소생 비 순금順金 나이 계축癸丑, 비 순 ... 소생 노 순복 나이 계유癸酉, 촌전村前 논 8마지기, 래자來字 밭 9마지기 끝.

일, 막내 응생應生 묵: 비 수대 2소생 비 갑생甲生 나이 갑자甲子, 비 와서비臥西非 ... 비 □□ 나이 병오丙午, 비 하절夏節 1소생 비 인금仁金 나이 병술丙戌, 평북평平湫坪 ... 10마지기, □자 논 7마지기 끝.

행 영광군수 [서업]

道內面 故 辛鼎受 妻 柳氏

右謹言所志 女矣家翁曾祖父衿得婢占伊亦 逃居于金海校村 多産子女 而矣家翁代 以獨子身 死之後 只有一孤兒 年未長成是遣

他無顧見推尋之人 故家翁切族辛天益乙 今方懇請起送爲乎旡 同婢所付文記乙 不可不傳準 故敢同文記並以 帖連仰

達爲去乎 依例傳準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官主 處分

甲午十一月 日

[題辭]

□(傳)準事 廿三

官[署押]

<背面>

甲午十一月廿三日

行郡守爲傳準事 順治三年庚戌三月初十日 子女衿□(給)文 筆執

家翁同姓四寸孫辛卓孝着名 財主母李氏着圖署 右文爲家翁邊先世  
 傳來田民乙 前後子女等處 已爲分衿爲有去乎 己邊若干田民乙 己所生  
 子女亦中 分衿爲去乎 其矣等 依此文使用耕食 日後無雜談事  
 一長女婿丁房元衿 婢甘春一所生奴甘栗年□(庚)□ 婢哲上一所生婢哲玉年丙戌 墳山洞  
 命字番柒斗落只 田字番參斗落只 收字□…□落只印  
 一次女婿丁銳衿 婢順德一所生婢順今年癸丑 婢順□…□所生奴順卜年癸酉 村前番捌斗  
 落只 來字田玖斗落只印  
 一末子應生衿 婢水代二□□(所生)婢甲生年甲子 婢臥西非□…□婢□□年丙午 婢夏節一所  
 生婢仁金  
 年丙戌 平淤坪□…□拾斗落只 □字田柒斗落□(只)印  
 行靈光郡守 [署押]

### 3-19)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해설】 신정수의 처 서산유씨가 경상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노비를 추심하기 위한 상언의 초고이다. 남편 쪽의 도망 비 룽서비의 딸 내은이, 내은월, 점이의 소생이 100년 동안 경상도 각지에 300여구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특히 김해 향교의 교노비로 투탁해있는 노비들을 추심하려고 하자 김해부사가 연한이 지났다고 청리를 거부함으로 이에 대해서 사대부가의 전래 노비는 연한이 없음을 들어 국왕에게 직접 호소한 상언의 초고이다. 실제로 올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운운. 저는 선조신先朝臣 장령掌令 신응망辛應望의 증손 며느리입니다. 저의 집은 선대로부터 대대로 독자獨子일 뿐만 아니라 가화家禍가 빌미가 되어 계속하여 일찍 죽었습니다. 상패喪敗한 여생餘生은 오직 이 일개 과부의 몸[과 삼척三尺의 손주 뿐이고 또 재앙이 올까 두려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백 리 밖 먼곳에 피난을 보냈습니다.] 저의 가화家禍가 참혹한 것은 팔도를 통털어서 한 사람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독자의 정황으로 아무 데도 진달할 곳이 없어서 이에 지극히 원통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알립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공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예외적으로 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남편 집 도망 비 룽서비婁□西非가 경상도에서 사는데, 딸 내은이內隱伊, 내은월內隱月, 점이占伊 3구를 낳아서 그 소생이 300여 구나 될 정도로 많은데, 각각 김해金海, 진주晉州, 하동河東, 안음安陰, 창원昌原, 밀양密陽, 칠원柒原 등지에 흩어져서 산 것이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다. 김해에 사는 비 점이의 소생은 그 현의 교노비로 붙어 의탁하

고 있으며, 진주에 사는 비 내은월의 소생은 그 고을의 정가의 노비로 투탁하기도 하였  
고 후 충주의 이가 노비로 투탁하였기에, 저의 남편 생시인 갑자년에 이가에게 투탁한  
노비는 소송을 하여 추속推贖을 하였고 정가에게 투탁한 노비도 관에 정소를 하여 득송  
得訟하여 결입안決立案을 받았지만 정가가 끝내 내놓지 않아서 추속推贖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그후 저의 남편이 또 가화家禍로 계속하여 일찍 죽고 종친 10촌 내에 한 사람의  
남정男丁도 없어서 다시는 추심을 할 수가 없었다가 지금 을미년에 김해부에 정소하여  
추심하려고 하니 그 노비들이 이미 교종의 노비로 붙어 투탁하였고 또 김해 수령이 사  
류士流들에게 견제되어 연한이 지났다고 하면서 물리고 청리聽理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조상 노비는 연한年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전교傳敎에 확실  
한데 ... 어찌 연한이 지났다고 하여 청리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공도公道가 없어져서 각읍의 송관들이 청탁하며 추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  
하께서 과부를 긍휼이 여기는 덕이 아니라면 조상 노비를 끝내 추심해낼 수 없는 바,  
저는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천청天聽에 진달하오니, 다시 전하께서는 꼭진히 정세를  
살피셔서 반드시 추심할 수 있게 하셔서 끝내 필부가 원한을 품는 폐단이 없게 하신  
다면 저는 마땅히 절초보은하겠습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云云 女矣身乃先朝臣掌令辛應望之曾孫婦也  
女矣夫家 自先以來 代代獨子分叱不喻 家禍所崇 相繼  
早死是乎所 喪敗餘生 惟此一箇孀身[及三尺孫兒]  
[而已乙仍于 且畏災孽之來祛 不得存家 避送于百里外]  
[遠地]是白置 女矣身家禍之慘 甚通八道 無一人可與  
比者是乎旂 靡依寡獨之情勢 無處陳達是乎等以  
茲將至冤之痛 謹昧萬死以聞 伏乞  
殿下 特垂矜憐 拔例採納焉 女矣夫家逃亡婢婁□西非  
居生于慶尙道 產女內隱伊 內隱月 占伊三口爲白良 其所  
生多過於三百餘口 而各自散居于金海 晉州 河東 安  
陰 昌原 密陽 柒原等地者 幾近於百年是乎所 金海居  
婢占伊所產 則附托爲其縣校奴婢是乎旂 晉州居婢內隱  
月所生 則或托爲其州鄭哥之奴婢 或托爲忠州李哥之  
奴婢爲有去乙 女矣家翁生時 甲子年分 李哥之所託奴婢  
段 呈訟推贖是白遣 鄭哥之所托奴婢段置 呈官得訟  
受出決立案是乎矣 鄭哥終不出給乙仍于 不得推贖  
爲有如乎 厥後女矣家翁 又以家禍 繼爲早沒是遣 宗

親十寸內 無一人男丁 不得更爲推尋爲有如可 今乙未  
 年良中 呈于金海府 欲爲推得是乎 則其奴婢等  
 既已附托於校中奴婢乙仍于 金海倅有拘於土流 稱  
 以過年限 退不爲聽理爲臥乎所 竊伏聞祖上奴婢 勿  
 限年者我國家傳教之丁寧 則□□可以過限 不爲  
 聽理是乎矣 近來公道掃地 各邑訟官 稱托不爲  
 推給爲臥乎所 若非  
 殿下恤寡之德 則祖上奴婢 未由推得是乎所 女矣身 敢  
 此冒死以達于天聽爲白去乎 更伏乞  
 殿下 曲採情勢 使之必推 終無匹婦含冤之弊是乎  
 則女矣身 當結魏顆之草 不勝祈懇之至

### 3-20) 1736년 김원익金元益 등 소지所志

【해설】 미발 문서. 노와 주인 간의 분쟁으로 흉악한 노들로부터 보호하고 입안을 달라는 소지의 초고이다.

전광도全光道 영광靈光에 사는 신시갑辛始甲, 김원익金元益 등  
 여기에 삼가 소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송관訟官의 분부에 따라 돌아올 때에  
 노奴 예봉禮奉은 타살打殺하라고 하시기에 소지를 올리니, 제음題音에 “이미 노주奴主  
 의 분분이 있는데 상전을 능욕하면 예봉의 죄상罪狀은 죽여도 아깝지 않으나 그 형을  
 죽인 후에 아우가 호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고하라고 하였기에 감히 여  
 기에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저희들의 사정을 헤아리셔서 노의 흉한凶悍으로부터 저  
 희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은덕이 장차 어떻겠습니까? 노 예봉은 분부에 따  
 라 죽이고 돌아갈 계획이니 저희를 방면하여 주십시오. 몽필夢必은 절대 호송할 뜻이  
 없으니 몽필에게 다시 분부하시거나 현필賢必이라는 자에게 호송하게 하거나 참작  
 하여 분부하시고, 노 예산禮山은 엄히 구속하시어 저희들이 일 없이 귀가하게 하시고,  
 입안立案을 출급出給하는 일은 어떻게 처치할지 제가 여러 달 체류하다가 입안은 받아  
 가지를 못하니 경영한 것이 끝내 허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특별히 저의 사  
 정을 살피셔서 입안을 내주실 것을 바로 처치하셔서 특별히 행하해주십시오.

송관訟官 처분

병진년 5월 일

全光道 靈光居 辛始甲 金元益等  
 右謹言所志事段 矣亦昨日良中 依訟官分付還歸之時 奴禮奉 則打殺亦  
 教是乎等以 呈所志 則題音內 既定奴主之分 凌辱上典 則禮奉罪狀 殺  
 之無倦是乎乃 殺其兄地後 而弟護送不可是如 更告亦爲有是乎等以 敢此  
 仰訴爲去乎 伏乞矣等之情曲參商 奴者之凶悍 使矣等無事還  
 歸 則其爲恩德 將復如何 奴禮奉 則依分付殺歸伏計 放給矣身教是遣  
 夢必則萬無護送之意是如乎 夢必處 更爲分付教是去乃 使賢必者護送  
 教是去乃 參酌分付是遣 奴禮山則凶悍甚於其兄 則中路作  
 梗 明若觀火是置 奴禮山則嚴囚爲白良 使矣等無故歸家是遣 立案  
 出給事 何以處置爲乎乙喻 矣身累朔留滯是如可 立案不得受去 所營竟  
 歸虛地 更伏乞特察矣身□□情曲 立案出給 則即處置事 特爲行下爲  
 只爲  
 行下向教是事

訟官 處分

丙辰五月 日

### 3-21)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所志

【해설】 연속되는 가화를 피하여 있는 동안 기해 양전 때에 진량면 장령공 산소 전후의 전답을 묘직이 인 주삼걸이 개량할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현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소지. 산사算士가 조사하도록 지시함.

도내道內면 고故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노奴 태이太伊  
 여기에 삼가 소지를 진달하는 것은 저희 덕 고조 장령공의 산소가 진량면陳良面 백오개 산白五介山에 있는데, 연속 4대에 걸쳐서 혈혈 독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가화家禍가 매우 참혹하여 단지 과부인 상전만 있다가 본택인 광주光州 땅으로 화를 피한 것이 40여 년이나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간에 산소를 수호하고 간검할 사람이 없는 고로 오로지 산직山直인 주삼걸周三乞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기해년에 개량改量을 할 때에 위의 산 묘의 전답과 진황처를 모두 그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가운데에서 농간한 흔적을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고 등한시하고 버려두었다가 연전年前에 비로소 고토故土에 돌아와서 산소를 간심하니 묘소의 앞뒤로 모두 기간起墾을 하고 양안에 올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대부 산소의 전답을

무단히 상놈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니, 어찌 이와 같은 불측不測한 변이 있겠습니까? 이  
러는 사이에 상전덕의 처참한 경상景象은 다 진달할 수 없지만, 바라건대 영감님의 엄명  
한 집법으로 위 주삼걸을 관전官前에 잡아와서 저와 대면한 후에 삼걸이가 양반 집의 산  
소 전답을 몰래 양안에 올린(偷量) 죄를 각별히 중치한 후에 저희 덕 노의 이름으로 양안  
에 현록하게 하여, 앞으로 저렇게 횡침하는 폐단을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영감님 처분

정묘년 월 일

[뒷면]

진량면陳良面 백오개白五介

적자積字 20번 4등 규답圭畓 7복卜

22번 5등 직전直田 6복卜 1속束

23번 5등 직전直田 4복卜 9속束

46번 4등 직답直畓 3복卜 7속束

[제사]

상세히 상고하여 줄 것.

초10일 산사算士에게

관 [서업]

道內 故 辛始甲 妻 金氏 奴 太伊

右謹陳所志矣段 矣宅高祖掌令山所 在於陳良面白五介山是如乎 連四代子子獨子岔不喻 家  
禍孔慘

只有寡上典 遜禍於本宅光州之地者 至於四十餘年之久 則其間守護山所 無他看檢之人 故專  
委於山

直周三乞是如乎 己亥改量之時 同山墓田畓陳處並以 一併量付於其矣名下是乎矣 其間從中  
弄奸

之迹 無人擠發 等閑棄置是如可 年前始歸故土 看審山所是乎 則墓所前後 沒數起壘 而以量  
付稱云

因作己物之計爲臥乎所 士大夫山所田畓 至於無端被奪於常漢者 豈有如此理□不測之變乎  
如此

之間 上典宅慘慘景像 不可盡達是白在果 伏乞

令監主 嚴明執法之下 上項周三乞 捉致官前 與矣頭面後 三乞之偷量兩班家山所田畓之罪

各別重治教是後 矣宅奴名懸錄於量案中 俾無日後如許橫侵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丁卯口月日 後

陳良面白五介

積字二十四等圭畝七卜

二十二五等直田六卜一束

二十三五等直田四卜九束

四十六四等直畝三卜七束

[題辭]

詳細考

給事

初十 算士

官[署押]

### 3-22)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所志

【해설】 연속되는 가화를 피하여 있는 동안 기해 양전 때에 진량면 장령공 산소 전후의 전답을 묘직이 인 주삼걸의 이름으로 현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소지. 서원, 산사가 조사하여 개량하도록 한번 제하하였으나 주삼걸이를 잡아서 대면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주삼걸을 잡아오게 다시 제하하여 달라는 요청이다.

도내道内の 고故 신시갑辛始甲의 처妻 김씨金氏 노奴 태이太伊

여기에 삼가 소지를 진달하는 것은, 진량면陳良面 백오개산白五介山은 저희 덕 고조인 장령공掌令公의 산소입니다. 가화家禍가 매우 참혹하여 여러 해 동안 피우避寓를 하는 동안 산직山直인 주삼걸周三乞이라는 자가 지난 기해己亥 양전量田 때의 묘직墓直으로서, 앞뒤의 전답을 그의 이름으로 몰래 양안에 현록懸錄하였습니다. 어제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니 제음題音에 “상세히 상고하여 지급할 것. 서원書員, 산사算士에게”라고 제하題下하였습니다. 이미 양안을 살펴보니 애초에 서원, 산사가 다시 상고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어서 주삼걸을 잡아와서 한 곳에서 대면한 후에 저희 덕 노의 이름으로 다시 양안에 부치는 것이 좋겠으므로 이와 같이 다시 정소합니다. 주삼걸을 잡아와서 대면하도록 제하해주시오.

영감님令監主 처분

정묘년 정월 일

[제사]

주삼걸을 데려와서 대변對辨할 것.

11일

관[서업]

道內 故 辛始甲 妻 金氏 奴 太伊

右謹陳所志矣段 陳良面白五介山 乃是矣宅高祖掌令山所也 家禍孔酷 累  
 年奔遜之間 山直周三乞者 去己亥量墓直 前後田畝 以其矣名偷量懸錄是乎  
 等以 昨日良中 具由仰達 則題音內 詳細考給次 書院算士處題下教是  
 乎矣 既已考見量案 則元非書院算士之更爲考給 推捉周三乞 一處頭面後  
 以矣宅奴名 改爲量付之事 故如是更呈爲去乎 周三乞捉致頭面事  
 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丁卯正月日

[題辭]

周三乞率

來對卜事

十一

官[署押]

## 3-23) 1747년 신태기辛兌基 입지立旨

【해설】도내면의 대삼보와 한사보 사이에 민전 3마지기를 사서 도랑을 개통하고 독을 막고 논을 만들  
 려고 입지를 요청한 소지. 입지를 발급 받았다. 중간에 메모로 쓰인 것은 개간한 논을 사면서 다른 문  
 기는 받지 못하고 이문기만 받았다고 하는 것임.

도내면 입석리立石里 신태기辛兌基

여기에 입안立案하는 것은 본면本面 대삼보大三湫 아래 한사보寒沙湫 위 위자爲字 상자  
 霜字 두 자字 사이에 독을 막고 논을 만들[防堰作畝]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전  
 民田 3마지기를 사서 도랑[川渠]을 개통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장래에



야료가 일어날 단서를 걱정하여 감히 이렇게 호소하오니 바라건대 사정을 헤아리셔서 입지를 제하題下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갑술년 3월 일

계미년 가을에 돈을 주고 매득하였으나 문서를 받지 못하고 다만 본문기만 받음.

[제사]

과연 공한지라면 입지를 성급할 것.

초5일

행관行官 [서업]

道內 立石里 辛兌基

右立案事段 本面大三淤下寒沙淤上 爲霜兩字 際有防堰作畚處 故先買民田三斗落 以爲開川

通渠之

計是乎矣 慮或有將來起鬮之端 敢此仰訴爲去乎 伏乞

參商情由 立旨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戌三月 日

癸未秋給價買得 而不

捧文書 只推本文記

[題辭]

果是空閑

之地 則立旨

成給事

初五

行官[署押]

### 3-24) 183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立旨

【해설】 신항업이 세전 호비 중상의 소생 노비 4구가 지난 3월 21일 밤에 도주하여 바로 추심하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하여 받은 입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전世傳 호비戶婢 중상中尙의 1소생 화섬花蟾(29), 2소생 과중過中(17), 화섬의 1소생 점덕占德(6세), 2소생(3세)인데, 지난 3월 21일 밤에 모두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추심推尋하려는 뜻으로 입지立旨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빙고憑考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진년 5월 일

[제사]

입지를 성급할 것. 초1일.

행관 [서업]

道內化民 辛恒業

右謹言情由事 民有世傳戶婢中尙 一所生花蟾年二十九 二所生過中年十七 花蟾一所生占德  
年六歲 二所生

三歲奴是白如可 去三月二十一日夜良中 盡爲逃走是乎所 卽爲推尋之意 立旨成給 以爲日後  
憑考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辰五月 日

[題辭]

立旨成給/事 初一日

行官[署押]

### 3-25) 1832년 화민化民 신대원辛大元 등 소지所志

【해설】 신씨 족계전을 빌려주고 동종인 점한 신덕태로부터 전답 문기 2장을 전당 받은 것을 척매하기 위하여 입지해달라는 소지.

내동內東 화민化民 신태관辛兌寬, 무장茂長 신영묵辛榮默, 함평咸平 신대원辛大元, 도내道內 신항정辛恒禎, 신행온辛行溫 등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추오秋烏도 반포反哺의 효도가 있고 시달豺獺도 역

시 보본報本의 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불초하다고는 해도 유독 추원모선追遠慕先의 성의가 없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이 10대조를 위하여 계稷를 만든 것은 한편으로는 분묘를 수호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봄가을로 향화香火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가을 강신講信 때에 초포草浦에 사는 신덕태辛德太가 그의 아들 복실卜實을 시켜서 6마지기 신구新舊 논문기畝文記를 가지고 와서 계전稷錢 50량을 청하여 저희들은 다만 그 신실信實한 것만 믿고 그의 간협奸險은 몰랐으며, 또 저자가 점한店汗이라고 하더라도 동성同姓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돈이 소중한 것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문권文券을 받고 요청한 대로 주었습니다. 올봄 강신일講信日에 당하여 이른바 덕태德太가 감히 비리非理의 욕심이 생겨서 특별히 간활奸猾한 계책을 드러내고 한 점도 비보備報하려는 생각이 없이 도리어 발악을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논문기를 받았으니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척매斥賣하려고 하였더니 위의 덕태德太가 또 큰소리로 말하기를 “논은 나의 논이다. 그 걸 책임지는 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것을 사겠는가?” 하고 이러는 사이에 허다한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논할 것도 없습니다. 대개 저희들은 약한 자손으로 각처에 산재하고 있으면서 재물을 모아서 선조를 위하여 계를 만들었다가 하루 아침에 잃게 되었으니 그 원왕冤枉이 어떻겠습니까?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사력私力으로는 추봉推捧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신구 논문기 두 장을 함께 점련하여 소리를 함께 하여 양약仰籲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신덕태를 패자를 발하여 법정에 잡아들이셔서 먼저 그의 간활한 죄를 중히 다스리시고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받은 논문기를 바로 입지立旨로 성첩成帖해서 주셔서 척매斥賣할 수 있게 하여 유명幽明에서 호원呼冤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진년 3월

[제사]

동종同宗 종계宗稷의 돈을 빌려쓰고 답권畝券을 전당典當한 것은 법으로나 종중으로 보나 당연히 바로 갚아야 하는데 갚기는커녕 감히 도리어 악설惡說을 하고 본답本畝를 척매하지 못하도록 하니 전혀 무상無狀하다. 신덕태를 잡아와서 대변對卜할 것.

22일

행관 [서업]

內東化民辛兌寬 茂長辛榮默 咸平辛大元 道內辛恒禎·辛行溫等

右謹言情由事 秋鳥已有反哺之孝 豺獮亦有報本之道 則民等雖云不肖 獨無追遠慕先之誠乎

伏以民等爲十代祖作稷 一爲守護墳墓之道 一爲春  
 秋香火之望矣 去年十一月秋講信時 草浦居辛德太 使其子卜實 持六斗落新舊畚文記 來請稷  
 錢五十兩是乎所 民等但知其信實 不知其奸險是矣 且  
 渠雖店汗 旣以同姓爲名 則此錢所重 亦有異於他人 故民等不疑不卜 捧文券 依所請以給矣  
 當今春講信日 所謂德太 敢生非理之欲 特逞奸猾之計 無一毫備  
 報之思 還爲肆惡 罔有記極是乎所 民等旣捧畚文記 則勢在不得已 欲爲斥賣是白加尼 同德太  
 又爲大談曰 畚吾畚也 責之者其誰 誰能買之乎 如是之間 許多怪學 已  
 無可論 而大抵民等 以弱子孱孫 散在各處 鳩財爲先作稷是如可 一朝見失 則其爲冤枉 倘復  
 如何哉 事旣至此 以私力無推捧之道 故民等所捧  
 新舊畚文記二張 并以帖連 齊聲仰籲爲去乎 伏乞  
 參商教是後 上項辛德泰 發牌捉致法庭 爲先重繩其奸猾之罪 然後民等所捧畚文記 卽爲立旨  
 成帖以給 俾得斥賣 無至幽明呼冤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辰三月

[題辭]

債用同宗宗稷/之錢 典當畚/券 以法以宗/ 所當卽報 而/報給新反/ 敢反惡說/ 至於本畚/之不  
 許斥/賣 萬萬無/狀 辛德太/捉來對卜/事

廿二日

行官[署押]

### 3-26) 1838년 공원공員 수본手本

【해설】도내면 도동리 공원이 같은 마을에 사는 신항준이라는 양반이 세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자 그의 논을 방매하여 납세하겠다는 뜻으로 관의 인증을 해달라는 수본. 해주지 않음.

도내면道內面 도동리陶洞里 공원공員 수본手本

여기에 수본手本을 합니다. 저희 촌에 사는 신항준辛恒俊이라는 양반이 세미稅米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거중도去重徒에 부득이 신가 양반이 갈아먹던 논을 방매하여 납세하려는 뜻으로 양소仰訴하니 제음題音에 '면임面任 및 관官으로 하여금 검독檢督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방매하여 곧 필납畢納하도록 할 것'이라고 행하行下한 바, 어제 풍검風檢에게 이미 사실을 조사하여 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 양반이 그 논은

납세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자이고 그 세를 촌중에서 징수하게 할 것이고, 그 논은 바로 차지한다면 앞으로 작경(作梗)할 장본(張本)입니다. 이에 감히 풍검(風檢)의 수표(手票)를 점련하여 양소하니 헤아리신 후에 위 수표 중에 답인 성첩하고 역시 입지를 제공해주어서 앞으로 억측을 분분하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사또 처분

무술년 3월

[제사]

어찌 본촌에 일을 알아서 필집과 증인(筆證)을 할 사람이 없이 유독 관 감독(官檢督)이 표를 성급했는지, 표가 이미 사실이라면 또 왜 관의 답인을 기다리는가?

27일

행관 [서업]

道內面陶洞里公員 手本

右手本事 矣村居辛恒俊兩班 不納稅米 仍爲逃走是  
乎所 去重徒良中 不得已辛班耕食畚 放賣納稅之意仰  
訴 則題音內 使面任及官 檢督查實放賣 以爲不日畢  
納之地向事 行下是乎所 昨日良中 風檢處 既爲查實捧票  
是乎乃 右班有其畚不納稅逃走者 使其稅徵於村中是遣 使其  
畚卽爲次持 必爲日後作梗之張本也 茲敢風檢手票帖連 仰  
訴爲去乎 參商教是後 同手票中踏印成帖是遣  
亦爲立旨題給 俾無日後行臆紛紜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 處分

戊戌三月

[題辭]

何無本/村知事/人筆證 而/惟獨以官/檢督成票/是隱喻 票/既着實 則/又何待官踏/印事

廿七日

行官[署押]

### 3-27) 1838년 화민(化民) 신흥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정재일 전결세 문제로 강재우, 강재흠과 신흥업이 모두 정재일의 사촌으로 분납해야 하는데

도내道內 화민化民 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옳드려 생각건대 제가 일전에 정재일丁載一의 전결田結 문제로 문례問禮에 사는 강재우居姜在佑, 강재흠姜在欽과 저가 모두 정재일의 사촌이고 위의 전결을 3분하여 나누어 징수한다는 뜻으로 양소하니 제음에 “자기 몫[分]을 담당한다는 뜻으로 가서 징수하여 납부하되 만약 완강히 거절하면 잡아올 것”이라고 행하한 바, 제음을 가지고 위 두 사람에게 가니 전혀 징납할 뜻이 없으며 역시 와서 기다릴 뜻도 없는 바, 이에 감히 다시 양소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정재일의 전결을 삼분하는 예에 따라서 특별히 강재우, 강재흠에게 분부하고 관가에서 이징하여 황량黃良 풍검風檢으로 하여금 징납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무술년 3월 일

[제사]

관제官題가 내려졌는데 어찌 오지 않는 백성이 있는지, 먼저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장자狀者が 함께眼同 잡아올릴 것.

초9일 해면該面 면임面任

행관 [서업]

道內化民辛恒業

右謹言情由 伏以民日前良中 以丁載一田結事 問禮居姜在佑 姜在欽與民 同是丁載一之四寸 而右結三分

分徵之意仰訴 則題音內 以分當之義 往徵以納是矣 如或頑拒捉來向事 行下是乎所 奉題音往于

右兩人處 萬無徵納之意是乎余 亦無來待之意是乎所 茲敢更訴爲去乎 伏乞

參商教是後 右丁載一田結 以三分例 特爲分付於姜在佑 姜在欽處 自官家移徵 使黃良風檢 以爲檢納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戊戌三月 日

[題辭]

官題之下 寧有/不來之民是乙喻 爲先嚴/治次 狀者眼同捉/上事

初九日 該面面任  
行官[署押]

### 3-28) 1838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이 황량면 문례동에 사는 정재일의 전답 세미를 족장으로 분담 납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지. 위와 연속되는 사항.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제가 4촌의 검세유사檢稅有司로서 저간의 변출하기 어려운 것을 허다하게 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비록 전토田土를 팔려고 해도 흉년[歉年] 때문에 매매할 길이 없어서 거의 유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재일丁載一의 세미稅米는 저의 이종姨從 사촌으로 어제 관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미 납부하여야 하니 반드시 다시 번거롭게 할 것이 없는데, 위 전결田結은 이미 사촌이 이징移徵한 것이니 황량면黃良面 문례間禮에 사는 강재우姜在佑는 바로 정재일의 내종內從 사촌입니다. 강재흙姜在欽도 역시 정재일의 이종 사촌이고 모두 풍요하게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같은 사촌간이면 한 말 한 되라도 대략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이러한 연유로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특별히 황량면 풍검風檢에게 분부하셔서 위 정재일의 전결 세미田結稅米를 강재우, 강재흙에게서 분징分徵하게 하여 이 쇠잔한 백성에게 편파적으로 징수하여 앞으로 영원히 고폐痼弊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무술년 3월 일

[제사]

나누어 담당해야 할 수를 가서 징수하여 납부하되 만약 완강하게 거절하면 잡아올 것.

초6일.

행관 [서압]

道內化民辛恒業

右謹言情由事 伏以民以四村檢稅有司 這間難辨 許多徵納 雖賣田土 歉年之情 買賣無路 幾至流離之境

是白加尼 今此丁載一稅米 以民之姨從四寸 昨日官決之下 既爲當納 則不必更瀆是乎矣 右田

結 既是以四寸移  
 徵 則黃良面問禮居姜在佑 卽丁載一之內從四寸也 姜在欽亦丁載一之姨從四寸 而皆是饒居  
 之民也 同是四寸間  
 一斗一升 略略分當 事理當然 故茲敢緣由仰訴 伏乞  
 參商教是後 特爲分付於黃良面風檢處 右丁載一田結稅米 分徵於姜在佑 姜在欽處 俾此殘民  
 無至偏徵 以  
 爲日後永永痼弊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戊戌三月 日  
 [題辭]  
 以分當之數 往/徵以納是矣 如或/頑拒 捉來事  
 初六日  
 行官[署押]

### 3-29) 1838년 화민化民 신흥준辛恒俊 수기手記

【해설】 신흥준이 납부해야 할 세미 11두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가 경작하던 논을 전당 잡아서 대신 세미를 납부하고 앞으로 이자와 함께 다 갚으면 도로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촌의 소유로 할 것을 다 짐한 수기.

무술년 3월 23일

본촌本村 신흥준辛恒俊이 납부해야 할 세미稅米 11두를 지금 이미 관출하여 납부할 길  
 이 없고 또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는데, 세미는 기어이 납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  
 득이 그가 경작하던 논 본면 원당평元堂坪 대삼보大三湫 안의 여자麗字 답畝 4마지기 곳  
 을 잡아서 지급한다. 촌에서 이 세미를 금번 중重徒로 출채出債하여 체납替納하고 앞으  
 로 이 세미稅米 대전代錢 7량 5전은 이자와 함께 갚으면 이 논은 도로 내주고, 한결같이  
 갚지 않으면 이 논을 촌에서 영구히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수기手記를 만든다. 만  
 약 잡담이 있거든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빙고할 것.

관검독官檢督 신흥길申興吉 [작명]

戊戌三月廿三日



本村辛恒俊所納稅米十一斗  
今已辦納無路 且逃避不見  
而稅米 則期於納上爲已 故不得已  
其矣耕食畚 本面元堂坪大  
三湫內麗字畚四斗落庫乙 執  
給 自村中右稅米出債替納  
於今番重徒 而日後同稅  
米代錢七兩五錢 并利報給  
則右畚還爲出給 一向不報則  
右畚自村中永永次持之  
意 茲以成手記爲去乎 如有  
雜談是去等 以此告官  
憑考事

官檢督 申興吉 [着名]

### 3-30) 1839년 화민化民 신흥규辛宏珪 소지所志

【해설】남의 선산 구목을 작별한 이남서를 잡아서 치죄해 달라고 하는 소지.

도내면 화민 신흥업, 신흥언, 신흥규 등

여기에 삼가 분하고 절박하고 걱정스럽고 절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선릉先塋을 수호하는 데에는 세상에 귀천이 없습니다. 자손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추松楸를 마음대로 작별하는 것은 나라의 큰 금령입니다.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의 구목邱木에 이르러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6대 조모의 분묘가 마촌면 내동촌 앞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 산 모양이 태산泰山의 행룡行龍 한 줄기에서 나와 미미하게 산을 만들었으니 바라보면 마치 둥근 덮개 모양이고 가서 보면 마치 표주박을 걸어놓은 형국입니다. 사방의 둘레가 100보를 넘지 않고 좌우의 긴 골짜기가 있어서 분계分界가 확실합니다. 나아가도 한 자 한 치를 더 얻을 수 없고 물러나도 한 자 한 치를 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호해온 것이 거의 300여 년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산 아래 내동촌內洞村에 사는 이남서李南緒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가 수호하는 땅을 저들의 시장柴場이라고 칭하면서 오래 기른 송추松楸를 몰래 작별합니

다. 여러 세대 동안 봉금하고 심어 놓은 공로가 하루 아침에 별거승이로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자손된 사람으로서 통곡을 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도 없고 법을 무시하는 무지한 백성은 사사로운 힘으로 쉽게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급한 목소리로 밝은 정치를 하시고 효성으로 다스리는 원님께 우리러 호소하오니 바라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위의 이남서를 차사를 발하여 잡아들여 그가 마음대로 타인의 금양한 구목을 작별한 죄를 먼저 중한 법으로 다스리고 그후에 특별히 법률과 법전을 더해서 지하의 원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기해년(1839), 정월 일

[제사] 송추를 범하고 작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법률이 있으니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이남서를 잡아올 것. 장자(숫장을 올린 사람). 관 [서압]

道內化民辛恒慄 辛恒彥 辛宏珪等

右謹言憤迫憫痛情由事 守護先壠 世無貴賤 爲人子孫者 莫不尊重 濫斫松楸 國之大禁 其爲人民者 愚夫愚婦 莫不畏讐 而況人」

之邱木乎 罪民之六代祖母墳墓 在於馬村面內洞村前麓 而其爲山形 泰山行龍一脈中來微微 作局 望如圓蓋之狀 見若掛瓢之形 四方周回 不」

過百步之地 左右長谷 分界昭然 則進不得尺寸 退不得尺寸 于今守護者 將至三百餘年矣 不意今者 山下內洞村居李南緒爲名人 以罪民守護之」

地 稱以渠之柴場 長養松楸 暗自斫伐 數世封植之功 一朝緒根 而已爲其子孫者 痛哭號天 溘然無地 如此理外法外之氓 不可以私力尋常」

處之 茲敢疾聲仰籲於」

明政孝理之下爲去乎 伏乞參商教是後 同李南緒 發差捉致 爲先重繩 其濫斫他人禁養邱木之罪 然後另加律典 以雪幽明之冤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己亥正月 日

[題辭]

犯斫松楸 自有/當律 嚴治次/ 李南緒捉來事

狀者

官[署押]

### 3-31) 1843년 소주所主 입지立旨

【해설】 환포 분족 문제로 침탈하지 말 것을 입지함.

도내면道內面 입석立石 신가의 노[辛奴] 귀남貴男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믐 사이에 신원종辛元宗이라는 양반이 환곡의 포흠을 일족에게 나눈다는 뜻으로 저희 덕의 상전에게 패자牌子를 냈습니다. 저의 상전이 창소倉所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니 저 사람의 결환結還은 바로 읍인邑人의 답결환番結還입니다. 소위 50여 석을 포흠한 것은 조병길曹丙吉과 사사로이 주고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양소하니 제음에 “사실을 조사하여 아될 것”이라고 향청에 분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소하니 또 사창감관司倉監官에게 분부하여 사실을 조사하라고 하신 바, 저의 상전이 들어와서 조병길과 상송相訟하려고 하니 창소주所主 및 사창감관주司倉監官主가 조사朝仕할 때에 장방長房에 앉아서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저 사람의 결환은 읍인邑人의 답결番結로 징족徵族하는 것이니 과연 5량과 4량 동銅에 해당하므로 이미 이는 빌려간 물건이니 전혀 부당한 물건입니다. 13량 4전 8푼을 척尺으로 대거代去하였다고 하는데 혹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주所主 및 감관주監官主는 불가불 그것을 징납하여야 하는 고로 상전이 부득이 저와 함께 봉반奉班하여 이미 분당分當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신원종辛元宗이라는 양반의 소위所爲는 황당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연유를 말씀드리고 양소하오니 헤아리신 후에 특별히 입지를 성급해주셔서 앞으로 횡징橫徵하는 폐를 막아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소주所主 처분處分

계묘년 12월 일

[제사]

입지立旨를 성급할 것.

초2일.

행관行官 좌수座首 [서압]

道內面立石 辛奴 貴男

右謹陳情由事 去十月晦間 以辛元宗兩班 還逋分族之意 出牌於矣宅上典是乎所 矣上典往于倉所查實 則渠之結還 乃邑人番結還也 所謂五十餘石 負逋者 與曹丙吉私相與受者也 以此緣由仰訴 則題音內 從實查稟事 分付於鄉廳是白遣 再巡呈訴 則又爲分付於司倉監官 以爲查實是乎所 矣上典

入來 與丙吉欲爲相訟 則所主及司倉監官主朝仕時 坐于長房請來矣 上  
 典曰 渠之結還 邑人畚結徵族 果當五兩與四兩銅 既是貸去之物 則萬不當之  
 物也 十三兩四錢八分 稱以尺代去云 則或有可欺之方 則所主及監官主 不可不徵納  
 之故 矣上典不得已與生谷奉班 既爲分當是乎乃 大抵辛元宗兩班所爲 恍  
 惚難狀 故茲敢緣由仰訴 參商教是後 特爲立旨成給 以杜日後橫徵之弊爲只爲  
 行下向教是事

所主 處分

癸卯十二月 日

[題辭]

立旨成給向事

初二日

行官 座首 [署押]

### 3-32)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이 족인인 신원종의 환곡 포흠 문제로 족징을 하려 하자 후보책을 찾아서 신원종의 환곡이 14량 3전 3푼만 환조자대이고 9량은 대거한 것이며, 이것도 외종조인 봉인겸과 나누어 갚은 것이니 갚을 것이 없다고 항변한 소지. 검관에게 소지를 올려 처분을 받았다.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본군의 성주城主가 좌정座廷하였을 때에 저의 족인族人 신원종辛元宗의 환포還逋 문제로 출패出牌<sup>2</sup>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창색倉色 문서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신원종의 환곡은 마치 다른 사람 답결환畚結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창색倉色이 사채私債로 작환作還한 것입니다. 대개 조병길曹丙吉의 후보책推報冊 3행行에서 제1행에 14량 3전 8푼으로 환조자대還租尺代라고 하였고 제2행에 5량과 제3행의 4량은 모두 대거貸去라고 하는 바, 저는 이러한 연유로 두 차례 정소한 즉 제음題音에 조사하여 품처하라[査稟]는 뜻으로 향청鄉廳과 사창司倉에 행하行下하였습니다. 사정査定할 때에 미처서는 좌수座首와 감관監官의 말

2 출패出牌 : 패자牌子를 내주는 것. 어떤 일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령이 장교나 차사에게 어떤 일을 집행하라는 패.

에 “결환結還<sup>3</sup>은 각자 결주結主<sup>4</sup>가 있으니 결주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조병길의 추보 책 중 9량전은 이미 대거하였다고 하니 이는 사채私債임이 분명하니 거론할 것이 없지만 그 이른바 13량 4전 8푼은 환조자대還租尺代라고 칭하였으니 만약에 속이는 방법이 있다면 불가불 징납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 신원종辛元宗과 함께 직외종조直外從祖인 봉인겸奉仁謙에게서 이미 나누어 징납하였다면 저 사람의 이름 밑에 이미 한 흙의 환곡도 없을 텐데 또 횡징橫徵할 계책을 내서 타인 답결환番結還<sup>5</sup>과 조병길의 사채환私債還을 스스로 이미 포함이 되었다고 하여 초보招報 중에 모입하려 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타관他官을 기다려 하게 하니 앞으로의 작경作梗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본음에서 향청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특별히 논리를 따져서 엄한 제음을 내려 입지를 성급해서 후일에 생경하는 폐단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 성주兼城主 처분

계묘년 12월 일

[제사]

이것이 무슨 위절委折인지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초5일.

[서업]

靈光化民 辛恒牒

右謹言情由事 去十月 本郡城主座廷時 以民之族人辛元宗還逋事出牌是乎所 民即到往見倉色文書 則所謂元宗之還 若非他人番結還 則皆是倉色私債作還者也 大抵曹丙吉推報冊并書三行內 第一行十四兩三錢八分以還租尺代云是遣 第二行五兩果第三行四兩段 皆以貸去云是乎所 民以此緣由 兩次呈訴 則題音內查稟之意 行下於鄉廳與司倉是乎所 及其查定時 座首與監官言內 結還段 自有結主 歸之於結主是遣 至於曹丙吉推報冊中九兩錢 既是貸去云 則是私債分明 不足舉論 而其所謂十三兩四錢八分 稱以還租尺代云 則若有可欺之方 不可不徵納之意(共共)云云

- 3 결환結還: 전결 단위로 나누어 주는 환곡. 원래 환곡은 춘궁기 진휼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조선 후말기에는 관의 고리대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어 전결 또는 호 단위로 강제적으로 분배되었다.
- 4 결주結主: 전결의 소유주.
- 5 답결환番結還: 결환結還과 같은 의미. 논에 부과된 결환.

故民不得已與辛元宗 直外從祖奉仁

謙 既爲分當徵納 則於渠名下 已無一合穀還 而又出橫徵之計 以他人畚結還果 曹丙吉私債還

自以爲已逋 冒入於招報中 至於捉待他官 則日

後作梗 未知至於何境 茲敢自本邑呈鄉廳所志 帖連仰訴 伏乞

參商教是後 特爲論理嚴題立旨成給 以杜後日更爲生梗之弊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癸卯十二月 日

[題辭]

是何委折/ 查實釐/正 俾無呼/冤事 初五

[署押]



城土閣下伏以天下之大經緯莫大於忠孝

一節早廢科業托志於嚴教避跡於林

薦時優蒙我城王養賢之澤... 考父

前狀不必枚舉而... 人孰不無思親

淚也... 為敢以老父之率性... 謹欺罔

七差老母之供養無人故... 蓬素忱而

食夫... 老人指亦... 一坎處而去... 明

發... 感... 之所共傳也... 一箇微息不... 能

非以利害仰陳其... 行寂矣子職... 降矣故... 敢仰願伏願

城王 前

제 4 장

산송 관련 문서

行之源故人皆有親未能一盡孝則特出於萬人之上然後士林之翹望

掌教之厲刻皆

昭代之感舉也民之老父

亦定省之節志口之養無不極力遵則故本邑之多士一遁之幸甫以芽舉狀屢登於

木及回題之間不才入於回祿為人子者方寸豈不崩隕哉卒故城王之德化更報

而書盡善盡孝父母之前臥祈寒虐雪不敢籠衣酷暑蒸雨不敢揮扇而班爛之戲不下於老萊供養之誠不

唯在下賤之流若以孝親之聲譽入聞則必躬牲饋米而問之及夫待人接物輕財重義莫不盡心而庚戌遭外艱呼

之子政長三十里地等土室于墓側而蔬食水飲朝夕未嘗揮淚者樹立痕斑... 跪膝祭奠草根枯... 居處

不瀉出... 非至誠感神乎雖七十老人三年之內無一病呻吟及其終制而下家後雖想兒收豎不忍折草踐土曰此

子不愧哉以前... 官家時由... 於... 恆復... 戶... 獨... 枝... 末... 許... 苑... 之... 意... 究... 之... 昭... 然... 矣... 民... 之... 誠... 意... 產... 雪... 落... 漏... 木

委察後特下... 核例之恩渥休養... 核力... 或... 役... 俾... 蒙... 官家待賢之感德千萬才甚

已卯十二月 日

山

山

官家... 山... 前... 職... 以... 自... 誠





## 해 제

4-5)~10)까지 1778년부터 1784년까지 6년간의 소지는 신태기, 신원묵이 도선산都先山을 둘러싼 쟁송이 본격화한 시기의 것이다. 1840년 이후의 소지 및 관련 문서는 신항엽(1789~1850)-신광규(1815~1886) 부자가 상대방인 신복현과 계속 도선산의 소유권 및 용익권을 둘러싸고 다툰 지리한 쟁송이다. 영광 군수에서부터 겸관시, 나아가서는 관찰사 및 암행어사에게 서로 청원서를 올리고 또 상대방이 무력으로 이쪽의 재물을 탈취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쟁송 문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1778년, 1784년의 소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78년 소지 초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지 내용에 지금 83세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시갑辛始甲, 1697~1743)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서 신시갑은 문중의 신수경辛守經, 신광혁辛光赫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산을 빼앗으려고 소지를 올렸다는 것이다. 신수경과 신시갑이 같은 선조에서 내려왔지만 후대로 내려와서는 각각 그 선산의 소유권을 두고 이렇게 다투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지는 실제로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신시갑의 아들 신태기가 쓴 소지가 있는데, 이 역시 실제로는 올리지 않은 문서이다. 그러나 향후 같은 영월 신씨 내에서 벌어지는 도선산의 소유권, 용익권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서는 영월 신씨 종손의 정통성까지 문제가 되는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이다. 먼저 신태성(辛兌成, 1735~1810)은 영월 신씨가 영광에 입향하게 된 내력을 말하고 이어서 상대방과 9대조에서 갈라졌으며, 각각 선산을 나누어 제한界限을 정해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400여 년 동안 별 문제없이 지내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족장族丈 신익수辛益壽가 그 땅을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칭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국내局內를 양산養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문중에 회문回文을 발하여 여러 족속들과 함께 그 땅을 허납許納한 것처럼 불망기不忘記를 받아서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이들이 도선산을 중심으로 나뉘게 된 것은 큰집 종손인 신수경의 7대조인 주석이 형제를 낳아 신수경의 6대조인 장자 이녕과 차자 이온이 갈라지게 된 데서 비롯된다.

9대조

8대조

신수경의 6대조

8대조(영광군수 辛保安) - 7대조 한이의 사위 斯龜 - 柱石 - 6대조 형제 장자 以寧 - 世仁

- 몽현(호 연재)=석록 - 숙=광계=**수경** (큰집 종손)

8대조(영광군수 辛保安)---7대조 한이의 사위 사귀 - 주석 - 6대조 형제 차자 以穩 -  
世弼 - 寬 - 長吉 - 應望=익진=경룡=정수=시갑=**태성**

같은 집안 내에서 도선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위와 같이 상대방인 신수경의 6대조이녕과 소지를 올린 신태성의 9대조 이온이 형제로 나뉘면서 각각 마을 뒷산의 선산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관습적으로 나누어 관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4-5) 1778년 소지所志 초抄

4-6) 1778년 화민化民 신태기辛兌基 등 소지所志

4-7)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4-8)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4-9) 1784년 화민化民 신지묵辛之默 등 소지所志

이러한 쟁송으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난 1841년에 다시 비화되었고, 1841년부터 1843년까지 도선산의 소유권, 용의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4-24) 1841년 수옥민囚獄民 신헌업辛恒業 소지所志

4-25) 1841년 화민化民 신헌辛檄 소지

4-26) 1841년 화민 신규현辛圭鉉 등 소지

4-27) 1841년 화민 신기년辛基年 등 소지

4-28) 1841년 화민 신명도辛命道 소지

4-29) 1841년 화민 신영규辛齡奎 소지

4-30) 1841년 화민 신태명 辛兌明 소지

4-31) 1841년 화민 신태익 辛兌翊 소지

4-32) 1841년 화민 신헌언 辛恒彦 소지

4-33) 1841년 화민 신헌언 辛恒彦 소지

4-34) 1841년 화민 신헌업 辛恒業 소지

4-35) 1841년 화민 신헌업 辛恒業 소지

4-36) 1841년 화민 신헌업 辛恒業 소지

4-37) 1842년 기주記主 신두업辛斗業 수기手記

- 4-38) 1842년 수옥죄인囚獄罪人 신영규辛齡奎 소지  
 4-39) 1842년 유학幼學 신영규 소지 초  
 4-40) 1842년 유학 신태명辛兌明 의송議送  
 4-41) 1842년 유학 신헌업辛恒業 소지  
 4-42) 1842년 유학 신헌업 의송  
 4-43) 1842년 죄민罪民 신기원辛基元 소지  
 4-44) 1842년 화민化民 신경辛敬 소지  
 4-45) 1842년 화민 신흥규辛宏珪 소지  
 4-46) 1842년 화민 신연규辛年奎 소지  
 4-47) 1842년 화민 신영규辛齡奎 소지  
 4-48) 1842년 화민 신영규 소지  
 4-49) 1842년 화민 신영규 소지  
 4-50) 1842년 화민 신헌업辛恒業 소지  
 4-51) 1842년 화민 신헌업 소지  
 4-52) 1842년 화민 신헌업 소지  
 4-53) 1842년 화민 신헌업 소지  
 4-54) 1843년 소지所志 초  
 4-55) 1843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立旨  
 4-56) 1843년 화민化民 신경辛敬 소지  
 4-57) 1843년 화민 신흥한辛光漢 소지  
 4-58) 1843년 화민 신흥규辛宏珪 소지  
 4-59) 1843년 화민 신흥규 소지  
 4-60) 1843년 화민 신기복辛基復 소지  
 4-61) 1843년 화민 신헌업辛恒業 소지  
 4-62) 1843년 화민 신헌업 소지  
 4-63) 1843년 화민化民 신헌업 소지  
 4-64) 1843년 화민 신헌업 소지  
 4-65) 1843년 화민 신헌업 소지  
 4-66) 1843년 화민 신헌업 소지

먼저 1841년에 구속된 수옥민囚獄民 신헌업辛恒業의 소지에서 분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죽인 간의 도선산都先山 소유권, 용익권用益權을 둘러싼 분쟁이 주요 쟁점이다. 선산의 구목을 방매하는데 종인 신기순 등이 종중을 위하여 60량을 요구하였

다. 안주면 수영에 정소하겠다고 협박도 하였다. 도선산 산송은 신항업이 원고가 되고 신복현이 피고가 되어 진선津船, 향교, 아사衙舍 수리를 위한 구목丘木 매도와 이에 따른 수영水營에의 정소보訴가 주를 이루고 있다.(4-24)

이러한 과정에서 1841년 화민化民 신경辛敬 소지(4-25)는 문중 선산 문제에서 적서嫡庶의 문제로까지 논점이 비화하였다. 신경은 문장으로서 신항업을 제각祭閣으로 불러도 오지 않고 문중 사람들을 보내니 신항업은 그 친족들과 함께 그들을 때리고 문얼이라고 욕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신경은 신항업을 불러서 문중 얼족이라는 설을 분간해주기 바란다고 소지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의 소지가 신항업 쪽의 자료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이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적절히 화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4-26)번 문서는 신경, 신규현 등 신항업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신항업을 상대로 신항업 선산 구목을 몰래 판 일에 대하여 송가松價를 문중에서 받도록 해달라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올려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 1841년 신명도辛命道 소지(4-28)는 신항업이 문중 선산 송목을 투매한 것은 돈 욕심이 아니라 종통宗統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금松禁에 관한 것은 따로 정소할 곳이 있다는 군의 제음이 있었다. 이에 신기년辛基年 등이 소지를 올려 신항업 등이 선산 송추를 마음대로 판 대금을 종종에 돌려달라고 하였다. 해문海門 30리에서 사양산私養山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국가의 법령이 있다고 하면서 수영水營에 제소하였다.(4-27)

그 결과 신항업은 구속되어 곤장을 맞게 된다. 따라서 그의 아들 신영규가 이제 대신 나서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 1841년 신영규辛齡奎 소지(4-29)은 신영규가 자신의 아버가 종종 구목을 투매하였다고 고소하여 곤장을 맞고 구속이 되어 죽게 생겼으니 대수代囚하거나 주인보수主人保囚하여 풀어주기를 바라는 소지이다. 이에 관에서는 신항업이 선산의 소나무를 투작하여 투매했는지를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소송의 쟁점이 바뀌게 된다. 즉 같은 해 신태명辛兌明이 올린 소지(4-30)에서는 신복현 등이 신항업의 사산 구목 투매 대금을 위선이니 문중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수영에 정소하여 100량을 받아내서는 문중에 내지 않고 사사로이 써버렸다고 그 돈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4-31)번 문서는 신태익辛兌翊이 신항업이 선산 구목을 투매한 일로 수영에 제소하여 분계 차지, 문얼, 편재 사송 문제를 거론하였고, (4-32)번 문서는 신항언辛恒彦이 구속된 형 신항업이 숙병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는 소지이다. 결국 주인보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아들 신영규가 신항업을 위해 올린 소지(4-29)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올린 소지라고 하겠다. 주인보수의 결과 신항업 대신에 아들인 신영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생 신헌

언(辛恒彦)이 대신 쟁송을 이어가고 있다.(4-32) 신항언은 조카 신영규가 구속되어 있는데 사실 구목가를 200량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량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구속에서 풀려난 신항업은 선산의 나무를 투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목 별레 먹은 것, 굽은 것을 법성포 전세 창고와 성전 수리를 위해 작별한 것을 종인 신복현의 구무(構誣)한 것이니 무함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4-34) 군수는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다고 처분하였다. 이렇게 문중 내에서 지속적인 쟁송에 짜증이 난 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한다.(4-37, 1842년 辛斗業手記) 즉 동중 신항업과 별송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같은 곳에 살고 동중 지친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 앞으로 다시 소송을 하면 반좌지율(反坐之律)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수기이다. 이는 암행어사에게 올린 소지에 접련된 문서이다.

이와 같이 영월 신씨 같은 문중 내의 다툼은 1843년까지 선산의 작별 매매 등 계쟁물(係爭物)을 바꾸어 가면서 지속되었다. 관할 수령이나 암행어사, 관찰사 등도 이러한 문중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남보다 못한 쟁송을 계속 이어갔다.



## 4-1) 1707년 화민化民 신만상辛萬祥 등 소지所志

【해설】 신만휴 등이 신성중 등과 산을 두고 다툰 의송 소지. 10대조가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 세장해온 선산을 후손들이 소원해진 이후에 경계를 두고 각각 차지하면서 다투게 된 소송이다.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으로 관찰사는 본관(영광군수)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영광에 사는 유학 신만휴辛萬休, 신만상辛萬祥, 신만화辛萬和 등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희들 10대조가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 세장世葬 선산先山이 집 뒤에 있어서 기슭을 나누어 산을 사용한지가 이미 3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소원疎遠해진 뒤에 각각 차지次知를 하면서 경계를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전해온 가법家法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문손門孫인 신성중辛聖中이 까탈 없이 소요를 일으켜 감히 경계를 넘어 도점圖占하려고 하는 바, 이는 매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저희들 7대조와 성중의 7대조는 실제로 친형제여서 산기슭을 나누어 산을 사용한 후에 예전부터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한계를 하였고 지금도 명백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선영先塋 층대層臺의 밑은 옛 원터舊院墟인데 저의 선조가 차지하다가 묘 밑으로 이거한 후에 지금 금호禁護를 하고 차지하고 있으며 안산案山도 이는 저의 선조가 양안에 부쳐 금양하던 곳입니다. 상변동上下洞은 고 신유일故辛惟一 형제가 저의 증조에게 성문하였고 신성중辛聖中의 증조曾祖도 증참證參이었으며, 중간의 한 기슭은 고 신응림故辛應霖의 선산先山입니다. 자손들이 고향을 떠난 후에 저의 증조에게 성문成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곳을 모두 신성중이 소요를 일으킨 곳입니다. 백 년 전에 전래해오고 차지하던 땅을 성중이 뒤끝의 젊은 후생後生으로서 사리를 모르고 감히 빼앗을 마음으로 이처럼 쟁송을 일으킨 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바라건대 사또께서 엄명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하나하나 헤아려서 사실대로 조사[摘姪]하여 처치하시기를 본관에게 행하하여 주십시오.

행하行下하여 주십시오.

순사도巡使道 처분

정해년 8월 일 의송議送

[제사]

자세히 조사하여 처치할 것. 본관本官. 28일

고리 정우성丁佑星

겸사兼使 [서업]

靈光居 幼學 辛萬休 · 辛萬祥 · 辛萬和等



右謹言所志矣段 矣等十代祖 自京下來之後 世葬先山 在于家後 分麓用山 亦已近三百年 後  
 屬疎遠之後 各有次知 限界分張者  
 自是矣等傳來家法是如乎 到于今日 門孫辛聖中亦 無端起擾 敢生越界圖占之計爲臥乎所 殊  
 極無據事段 大槩矣等七代祖 與  
 聖中七代祖 實爲親兄弟 分麓用山之後 自古有掘土成坎限界 今猶明白可證是乎旡 先塋層臺  
 下 則舊院墟也 自矣先祖次知 而□  
 移居墓下之後 時方禁護次知是乎旡 案山段置 自是矣先祖量付禁養處是乎旡 上下洞 則故辛  
 惟一兄弟成文於矣曾祖處 而辛  
 聖中曾祖爲證參是乎旡 中間一麓段 故辛應霖先山是如乎 子孫離鄉後 成文於矣曾祖處是去  
 乙 右項皆辛聖中惹起擾  
 之處 而以百年前傳來次知之地乙 聖中以末後年少後生 不識事理 敢生攘奪之心 如是起爭之  
 狀 殊極駭鶻是去乎 伏乞  
 使道嚴明執法之下 一一參商 從實摘奸處置事乙 本官良中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 處分

丁亥八月 日 議送

[題辭]

詳查處置

事

本官 廿八

告丁佑星

兼使[署押]

#### 4-2) 1709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해설】 신정수(1671~1700)의 처 유씨(서산유씨, 1673~1737)가 자신의 시부모[舅姑]와 망자[先子]의 묘를 쓰려고 무장에 있는 신가 문중 산에 길지를 점지하여 이장, 매장하려고 하자 같은 문중 사람인 신성중이 금장을 하여 제기된 소송. 문중 산이어서 신가들은 모두 입장할 수 있는데, 신성중이 자신의 증조부의 묘에 가깝다고 하여 사산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금하여 소송이 전개됨. 신성중은 산이 무장에 있다고 하여 이송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려고 하였으나 모두 이쪽에서 승소한 소송임.

도내면道內面에 사는 고故 학생學生 신정수辛鼎受의 처妻 유씨柳氏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통박痛迫한 사정은 저의 시부모 묘를 개장改葬하려고 제 남편의 10대 조모祖母 한씨韓氏의 묘 서쪽 조금 먼 곳에 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난 10월 ...에 망자亡子의 장례를 먼저 치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본면에 사는 신성중辛聖中이 금단禁斷을 하여 직접 애걸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략하게 언문 소장諺狀을 만들어 관전官前에 정소呈訴하니 “소장에 나오는 사람을 잡아와서 추핵推覈하여 처치處置하라”는 제사題辭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가지고 신성중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취변하라고 하니 고아와 과부만 있는 집에서 소송에 나갈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고舅姑를 개장하는 산을 역시 여러 노복의 손에 맡겨서 쉽게歇後 송변訟下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불편한 형세를 계산하지 않고 직접 송정에 들어가려고 관문官門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신성중에게 나오도록 독촉을 하니 위의 신성중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취변就下할 뜻이 없이 관지官旨를 무시하고 안연晏然히 물러나 앉은 형상인데 이는 시일을 천연하여 아이의 매장을 낭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씀이 매우 간교하니 이 일의 곡직은 여러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신씨 문중에서는 이미 정론이 있어서 만약 관가에서 문장門長 및 공증인公證人에게 추문하면 명감明鑑 아래에서 실상을 변별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의 외로운 형상과 통박한 사정은 아무 데도 고소할 데가 없어서 감히 여기에 진달합니다. 대개 저의 운수가 기험하여 하늘에 죄를 저서 남편의 형제가 계속 이어서 일찍 죽었고 남편 종족은 이미 촌내村內的 친족이 없고 단지 자질子姪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모두 유약幼弱하였습니다. 밤낮으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집안 문호를 잇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쌓인 악행이 몸에 있어서 남은 양화殃禍가 없어지지 않아 지난 해 봄과 겨울에 獨姪독질이 아들도 없이 죽었고 맏아들도 장가도 못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가의 혈속은 단지 10세의 고아 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양화가 고금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만, 어찌 저의 남편 집안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집안의 양화가 두려워서 어린 아이를 수 백 리 바깥으로 피난을 보내고 단지 질부姪婦와 둘이 서로 지키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 두 과부만 외롭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세간에 과부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만 어찌 저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편 집안의 선영이 모두 길지吉地가 아니고 또 산가山家(地官)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개장을 하여 독자獨子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만 누가 분주히 산을 구하겠으며 또 누가 능히 먼 곳에 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니 정리情理가 통박하였습니다. 마침 남편 집안의 10대 조모의 산소가 영광靈光과 무장茂長의 접계에 있고 공터에 쓸 만한 곳이 있어서 저는 마음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선산의 옆이고 거리가 가까워서 자손 여러 집이 각각 사분私墳을 써서 전후좌우에 각

각 묘를 이루고 있으니 저의 남편 집안의 같은 자손입니다. 하물며 접지한 곳이 또 선산이 아니고 여러 집의 사분私墳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피차간의 분영墳塋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이미 매장된 여러 분묘와 멀고 가까움이 간격이 있고 일의 형세로 보아도 왜 유독 이곳만 매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시부모의 묘를 개장하려고 하지만 당시는 매우 추운 날씨여서 파묘破墓하기가 어려워 접지한 곳의 옆에다 먼저 죽은 아들을 매장하고 다음 봄을 기다렸다가 개뫼改窆을 하려는 계획이어서 지난 16일을 장례일로 복정卜定하고 11일에 먼저 후토신后土神에 제사를 지내고 12일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신성중이 무장에 사는 신가 성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곳에 와서 사산私山이라고 칭하면서 일꾼들을 협박하여 못하게 금지하여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조를 보고 괴패乖悖한 일이 될 것 같으므로 과부의 집 노복이 위겁威嚇을 두려워하여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바로 파하여 돌아왔습니다. 관에 고소하여 송변訟卹하여 신리伸理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형세를 돌아보면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또 소송을 하다가 날짜만 허비하고 제때에 맞추어 과정을 할 수가 없기에 사정私情이 긴박하여 예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신성중의 집에 가서 애걸복걸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가 문중의 문장門長이 그 두 아들을 보내어 금단할 수 없다는 뜻을 힘써 말했고 문중의 노소도 역시 모두 신성중이 근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중이 스스로 자신의 이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말을 바꾸어 비로소 내년 봄에 개장하는 것은 허락하고 지금의 아이의 매장은 끝내 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은 이미 허락하였으면서 그 손자를 빈소에서 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소재를 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성중이 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증조모曾祖母와 종조모從祖母를 매장했고 일찍이 그 장례 때에도 다른 지손 죽인의 장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하였고 송변에 이르러서 끝에 입장入葬을 할 수가 없었으니 당초 신성중이 생색을 내는 것이 어찌 같은 선세의 산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다른 지손의 사산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이는 어찌 유독 신성중의 사산이 되겠으며 다른 자손이 착수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가 문중의 세장 땅이 또 집 뒤에 있고 종손이나 지손을 막론하고 각각 서로 입장入葬을 하고 혹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여 처음에는 보수步數가 없었으니 이는 장차 누구 집의 사산이어서 누가 다시 금장禁葬을 하겠습니까? 신성중이 어찌 이것을 사산이라고 하지 않고 유독 그것만 사산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 어찌 이곳에서는 금장할 수가 없고 유독 그곳에서만 금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만약 과연 신성중의 사산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왜 가벼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하였습니까? 이것으로 변별을 한다면 곡직을 알 수가 있고 당초에 점혈占穴할 때에 혹 다른 집에서 횡점橫占하여 혈穴 뒤 3, 4보步 위에 치표置標할 것을

염려하였는데, 신성중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므로 다시 간청을 하여 신가 문중의 장로 耆老가 산소에서 회합하여 땅을 분획하여 경계로 하고 명확히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지표한 곳을 사용할 곳에 옮기고 먼저 망자<sub>亡子</sub>를 그 밑에 매장한다고 하니 신성중이 또 접지한 곳을 보통으로 매장할 혈에 들어왔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여 만약 먼저 아이를 매장한다면 뒤에는 금단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특히 아이의 매장이 선산 국내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같은 기슭에 매장한다는 규정은 각각 그 사분 근처에서 매장하는 것은 이미 사리가 맞고 법도 역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의 매장을 가지고 말하려고 해도 신성중 사분私墳에 필장<sub>逼葬</sub>을 했다면 송관<sub>訟官</sub>이 어찌 기꺼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성중의 뜻은 형세를 잘 알고서 고약<sub>孤弱</sub>한 사람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것이니, 저가 이와 같다고 하여도 감히 서로 항쟁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여 먼저 아이의 매장을 금하고 다음에는 대장<sub>大葬</sub>을 금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원통함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아<sub>亡兒</sub>의 장례는 이미 소상<sub>小祥</sub>에 이르렀는데 아직 흠을 덮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장할 곳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옆에 매장한 것은 고혼<sub>孤魂</sub>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달이 지나면 장차 3년이 되고 또 신성중이 장난을 쳐서 이미 장일<sub>葬日</sub>을 정하였는데도 입장<sub>入葬</sub>을 못하였으니 모자<sub>母子</sub>의 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다툼 전말을 피차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시비가 있거늘, 신성중이 그 강함을 믿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득이 정소한 후에 또 산이 무장에 있다고 하여 마땅히 산이 있는 관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조금도 응송<sub>應訟</sub>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정말로 과부 집의 사력<sub>私力</sub>으로는 관전<sub>官前</sub>에 잡아올 수가 없으므로 산이 비록 무장에 있어도 양쪽이 모두 본군의 사람이니 하필 본관을 버리고 무장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하며 또 하필 본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꼭 무장으로 이송<sub>移訟</sub>하려고 하는지, 관사<sub>官司</sub>께서 특별히 양찰<sub>量察</sub>을 하시고 다시 공홀히 여기셔서 각별히 신씨 문장 및 다른 공증인을 추문하신 후에 이어서 처결해주시어 비법<sub>非法</sub>을 금하여 무고<sub>無告</sub>한 과부가 망자를 세전에 장례할 수 있도록 천만번 바랍니다.

행하<sub>行下</sub>해주십시오.

관사<sub>官司</sub> 처분

기축년 12월 일 소지

[제사]

산이 있는 관에서 결송하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며 전후의 정소가 이와 같으므로 이는 그만둘 수가 없다. 소위 신성중과 문장을 사열차로 면임관이 급히 잡아올 것.

18일

고리告吏 황처곤黃處坤

관 [서업]

【뒷면】

신성중을 문초하니 치표처置標處가 과연 그의 종조부 입장한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  
이어서 금단하려고 하였고 그 바깥은 처음부터 쟁단을 일으켜 쟁송하려는 뜻이 없  
고 하므로 위 산소를 너에게 결급하나, 앞으로 쟁집爭執하는 단서가 없지 않으므로 입  
장入葬할 때에 금단할 수 없다는 뜻을 성중에게 다짐을 받아서 줌.

21일 고리 황처곤

관 [서업]

道內面居 故 學生 辛鼎受 妻 柳氏

右謹言所志 痛迫情由段 女矣身爲舅姑改葬 占山於夫家十代祖母韓氏墓西邊稍遠之地 而將  
以去十□□先

過亡子之葬是如乎 不意爲本面居辛聖中所禁斷 親自哀乞 終不聽許乙仍于 不得已略具諺狀  
呈訴

官前是乎 則狀付人捉來推覈處置亦 題下教是去乙 卽以題辭往示辛聖中 使之就下 而孤子  
寡家 無人□

訟岔不喻 舅姑改葬之山 亦不可付諸奴僕之手 而歇後訟下是乎等以 矣身不計難便之勢 欲親  
入訟庭 來到官門外

而送人催促於辛聖中 則同辛聖中亦 互相推誘 無意就下是乎所 不有官旨 晏然退坐之狀 不過  
遷延時日 以敗

兒葬是置 其爲設心 極爲奸巧是去乎 此事曲直 不須多談 辛氏門中 已有定論 若自官家推問  
於門長及公證人

則明鑑之下 可下實狀是在果 矣身孤子之狀 痛迫之情 無處告訴 敢此陳達是去乎 大槩矣身賦  
命奇嶮 獲

罪於天 家夫兄弟 相繼夭亡是遣 夫家宗族 既無寸內之親 而但有子姪三人 亦皆幼弱是乎所  
日夜所默禱於心者

惟冀三兒成立 以繼家戶是如乎 積惡在躬 餘禍未艾 去年春冬 獨姪無子而死 伯子未娶而夭是  
遣 辛家血屬 只

是十歲孤兒一人是置 人家禍殃 今古何限 而豈復有如矣夫家者是乎旣 畏恻家禍 避送稚兒於  
數百里外 而只

與姪婦相依守爲命 一家兩孀 子子無依是乎所 世間寡居者 亦非不多 而又豈有如矣身者乎 夫  
家先塋 皆非吉

地 又不得不動心於山家之說 欲爲改葬 以安獨子 而誰能主張奔走求山是乎旡 又誰能致力於  
 遠地用山乎 思之  
 至此 情理痛迫是如乎 適聞夫家十代祖母山所 在於靈茂兩邑之交 而有空地可用之處是如爲  
 去乙 矣身心竊  
 自幸 以爲先山之側 道里便近 而子孫諸家 各葬私墳 前後左右 已成叢塚 則矣身夫家 同是子  
 孫 況此所占 又非  
 先山 及諸家私墳 相距稍間 彼此墳塋 各相不見是乎所 視諸已葬諸墳 遠近有間 求之事勢 何  
 獨不葬 定欲  
 改葬舅姑是乎矣 時當極寒 勢難破墓乙仍于 欲就所占之側 先埋亡子 差待開春 以爲改窆之計  
 爲白良  
 卜定葬日於去十六日 而十一日先祀后土 十二日將爲始役是如乎 上項辛聖中 亦與茂長居辛  
 姓數人 來到  
 役所 稱以私山 而呵禁役夫 使不得始役 觀其舉措 似有乖悖之事是乎等以 寡家奴僕 畏怖威  
 恟 莫敢誰  
 何 旋即罷歸是乎所 非不知呈官訟卜 期於伸理是乎矣 顧此形勢 無能舉訟 而又恐呈卜之際  
 虛費日子  
 不得及期過葬是乎等以 迫於私情 不拘禮節 矣身親往辛聖中家 哀辭懇乞 至於累度分叱不喻 辛  
 家門長 送其兩子 力言其不可禁斷之意 而門中老小 亦皆以辛聖中爲無據 故辛聖中自知理曲  
 變其說 始  
 許明春改葬 而卽今兒葬 終始牢拒爲臥乎所 既許其祖來頭之葬 而不許其孫在殯之窆者 其心  
 所在  
 實不可知是置 辛聖中之稱以私山者 蓋以葬其曾祖母與從祖母 而嘗其葬時 亦取他支孫族葬  
 至近之地 至於訟卜 終  
 得入葬是如爲去乎 當初辛聖中之生意 豈非以同先世山所之故 而其時訟官之許葬 亦以非他  
 支孫私山之故是  
 去乎 此何獨爲辛聖中之私山而他子孫不得着手是乎旡 辛門世葬之地 又在家後 而無論宗支  
 各相入葬 或  
 上或下 初無步數 則此將爲誰家私山 而誰復禁葬是乎乙喻 辛聖中何不以此謂之私山 而獨以  
 彼爲私山是乎旡 又  
 何不禁葬於此 而獨乃禁葬於彼是乎喻 若果爲辛聖中私山 則初何可輕許於人乎 以此卜別 可  
 知曲直是遣 當初  
 占穴之時 或慮爲他家所橫占置標於穴後三四步之上是如乎 辛聖中以此爲言是去乙 乃復懇  
 請 以爲辛門丈老

會于山所 劃地爲限 明立文案 則當移所置之表於用處 而先埋亡子於其下云云是乎 則辛聖中  
又以爲所占之處 不

入凡眼當葬之穴 必在他處 若先葬兒 後難禁斷是如爲臥乎所 殊不知兒葬不足爲有無於先山  
局內故也 凡葬

同麓之規 各就其私墳近處而葬之者 既合事理 於法亦然 矣身後雖欲以兒葬爲言 而逼葬於辛  
聖中私墳

訟官亦豈肯許之哉 聖中之意 不過稔知形勢 凌侮孤弱 渠雖如此 無敢相抗是乎乙向入 欲爲先  
禁兒葬 而次禁

大葬之計是去乎 其爲冤痛 罔有窮已分叱不喻 亡兒之葬 已及小祥 尙未掩土者 必欲占得改葬  
之地 而葬于其側

使不爲孤魂是乎所 若過今月 將爲三年 而又爲辛聖中之所沮戲 既定葬日 未克入葬 母子之情  
當復如何 所

爭顛末 不待彼此之言 而自有公是非是去乙 辛聖中自恃其強 不爲聽從分叱不喻 及今不得已  
既呈之後 又

以爲山在茂長 當訟於山在官是如爲遣 又無一分應訟之意是乎所 固不可以寡家私力捉致官  
前是去乎 山雖

在於茂長 而兩隻俱是本郡之人 則何必舍本官 而就訟於茂長是乎旡 又以何必不遵本官之令  
而必欲

移訟於茂長是乎喻 官司教是 特垂量察 更加矜恤 各別推問於辛氏門長及他公證人教是後  
連爲

處決 以禁非法 使無告寡婦 得葬亡子於歲前教是乎乙可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官司 處分

己丑十二月 日所志

[題辭]

山在官(處) 欲爲決訟 未知何

意是在果 前後呈訴如

此 此不可置之 所謂辛聖

中與門長 查閱次以

面任官星火捉來向事

十八日

告黃處坤

官[署押]

招內辛聖中 則置標處  
 果與其矣從祖父入葬處切近  
 是如 欲爲禁斷 而其外 則初  
 無起鬪爭訟之意云是乎等  
 以 同山所 汝矣處決給爲乎  
 矣 不無日後爭執之端是乎  
 等以 入葬時 不可歇禁斷  
 之意 聖中處 捧俵音以  
 給事 廿一日 告黃處坤  
 官[署押]

#### 4-3) 1733년 화민化民 신경침辛景沈 등 소지所志

[해설] 영광 화민 신시갑(1697~1743) 등이 고조부인 장령 신응망의 산소가 있는 진량면 수남산에 투장한 자를 잡아서 파내가게 하도록 요청한 소지.

화민化民 신시갑辛始甲, 신경침辛景沈

여기에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저의 고조부高祖父 장령掌令의 산소山所가 진량陳良 수남산水南山에 있는 바, 근래에 인심이 불측不測하여 투장偷葬하는 폐단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진년에 산소 주맥主脈에 무덤을 쓰고 금년 9월 초8일에 또 무덤을 썼습니다. 이달 18일 밤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전후 무덤을 쓴 곳에 투장을 하였습니다. 그 투장한 사람을 지금 막 밤낮으로 간심하여 탐지한 후에 이름을 알아서 현고現告하니 해당 면의 면임을 시켜서 새로 반포한 사목에 따라서 기한을 정하여 굴이掘移할 것을 제하題下하여 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城主 처분

계축년 10월 일

[제사]

투장하는 습관이 매우 놀랍다. 나타나서 관에 고하면 마땅히 중하게 다스리고 굴이하게 할 것.

23일 고리 김 아무개

관[서업]



化民 辛始甲 辛景沈

右謹言所志 矣高祖父掌令山所 在於陳良水南山是如乎 近來人心不測 偷葬之弊 比比有之 故

去壬辰年分 置塚於山所

主脈是遣 今年九月初八日 又爲置塚爲有如乎 今月十八日夜 不知何許人 偷葬於前後置塚處

爲有臥乎所 同偷葬之人

今方日夜跟尋爲去乎 探知後知名現告 則使該面面任 一依新頒事目 刻期掘移事 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丑十月 日

[題辭]

偷葬之習 極爲

痛駭 現出告官

則當重治掘移事

廿三 告金□□

官[署押]

#### 4-4) 173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구생辛久生 발괄[白活]

【해설】영광에 사는 유학 신구생이 자신의 증조부 장령공의 산소가 있는 진량면 백현 땅에 있는 곳에 투장한 이득길의 묘와 국내에 자신의 밭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금戊金の 처의 투장을 금지해달라는 발괄.

성주城主 앞 발괄[白活]

화민化民 유학幼學 신구생辛久生

진실로 황공하옵게도 성주 합하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저의 증조부 장령의 산소가 진량면陳良面 백현白峴 땅에 있는데 지세가 짧고 좁아 전후좌우가 모두 낮은 들의 조그만 산기슭입니다. 산직이가 수호하여 송추松楸를 금양禁養한지 30여 년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산직이 촌에 사는 사람 무금戊金の 처가 저의 선영 청룡靑龍 국내局内の 아주 가까운 곳을 그의 밭이 있는 곳이라고 칭하고 투장하려고 계획한 바 제가 직접 그 곳에 도착하여 사대부의 산안에는 입장入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악한 여자가 감히 무소誣訴하기를 위 선영 국내에는 한 모래 만큼의 떨어진 곳이 없는데도 태령泰嶺이 가운데에 막고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의 기망하여 무소한 것이 매우 통악합니다. 저의 대부는 일찍이 문관을 하였고 여러 번 청현직

에서 드날렸습니다만 저는 여러 세대 동안 독자 독손으로 상화의 끝에 본리에 전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득길이 투장하는 변고가 있어서 분통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득길이 투장한 곳은 이 여자가 점지한 곳에서 비록 약간 간격이 있지만 지보地步로 보면 역시 서로 바라보이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바라건대 엄명嚴明한 통치하에서 저 여자가 악행을 믿고 무소誣訴한 죄를 각별히 중치重治하여 금단禁斷해주시기 바라며 이득길이 투장한 묘도 역시 법에 따라 파갈 것을 거듭 밝혀서 행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을묘년 9월 일

[제사]

득길은 이미 장례를 했으니 지금은 파울기기가 어렵고, 과연 이것이 용호龍虎의 안이라면 저의 밭에다가 그의 남편을 매장할 수는 없다. 장령의 분묘와 거리가 몇 보이며 도국都局 안이 적실의實한지 타량打量 조사摘知하여 보고할 것.

26일 향소鄉所에게

관 [서업]

城主前 白活

化民 幼學 辛久生

誠惶誠恐 仰達于

城主閣下 伏以民曾大父掌令山所在於陳良面白峴地 而地勢短狹 前後左右 皆是殘原小麓之餘是白齊 山直守護 禁養松楸 三十餘年是去乎 不意今者 山直村居人戊金之妻亦民先塋青龍局內至近處乙 其矣田庫所在是如 依稱爲遣 偷葬設計爲白臥乎所 民親到其矣處 諭其士大夫□山內 不可入葬之意 則□以奸惡之女 敢爲誣訴爲乎□□ 同先塋局內 無一砂相隔之處乙 瞞以泰嶺中阻是如爲有臥乎所 其矣欺罔誣訴之□ 極爲痛惡 是白齊 民大父以早年文官 累揚清顯 而民以累世獨孫 喪禍之餘 不得奠居於本里中間 致有李得吉偷葬之變是乎所 不勝憤痛是白齊 得吉偷葬之處 與此女所占 雖若有間 而揆以地步 則亦是相望不遠之地是白去乎 伏乞嚴明之下 渠女恃惡誣訴之罪乙 各別重治禁斷爲乎旡 得吉偷葬乙 亦爲依法掘出事乙 申明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乙卯九月 日

[題辭]

得吉則已葬 今難掘

移是在果 果是龍虎之

內 則不可以渠田 埋葬其

夫是遣 與掌令墳 相距

幾步是旂 都局之內 的實

是喻 打量摘奸來告事

廿六 鄉所

官[署押]

#### 4-5) 1778년 소지所志 초草

【해설】 문중 구성원 간에 선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소지의 초고. 이쪽은 80이 넘는 노인이고 상대방은 신수경 등이다.

소지所志 초草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본군 도내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70년 이래로 가화家禍가 매우 참혹하여 어쩔 수 없이 본군의 삼남리森南里로 옮겨 산 것이 지금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지금 나이는 83세입니다. 한번 이거한 후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문중의 신수경辛守經, 신광혁辛光赫이라는 오직 이익만을 힘쓰는 무리들이 전에 없는 우스운 간계를 만들어서 제가 대대로 차지하며 죽으나 사나 살아오던 안산案山 및 저들의 조부가 증참證參으로 성문한 문서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솟장을 올리는 거조가 있습니다. 선세부터의 돈목하던 의리는 이에 이르러 쓸어 없어졌습니다. 말이 이에 미치니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일찍이 들었던 것 및 살면서 일찍이 보았던 것들을 대략 줄거리를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서울의 세가였습니다. 9(8)대조가 본군의 군수가 되어 본리에 사는 부윤府尹 한이韓彝와 잘 지냈습니다. 뒤에는 광주목사가 되어서 둘째 아들이 한이의 사위가 되어 이로 인해 본리에 살게 되었으니 바로 저의 8(7)대조입니다. 그 사는 곳은 북향의 마을이었는데 그가 죽자 그 뒷산의 남향한 들판에 매장을 하고 7(6)대조에 이르러서 또 아버지의 분묘 앞에 매장을 하였고 7(6)대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본터에 살았으니 바로 신수경의 7(6)대조입니다. 차자는 선영 아래 기슭 남향한 동네에

터를 점지하였으니 바로 저의 6(5)대조입니다. 수경의 7(6)대조도 역시 아버지의 분묘 앞에 매장을 해서 기택이 이미 다했습니다. 저의 6(5)대조는 선영의 서쪽 매우 가까운 산기슭에 매장을 했는데 여러 대에 걸쳐 자손들이 대대로 세장을 하여 묘문墓門의 향배가 모두 선영과 같았고 심지어 신수경의 6대 조모는 아버지 분묘의 아래에 다시는 남은 땅이 없어서 조금 먼 건너편 한 골짜기의 동향 기슭에 매장을 하였고 여러 대의 자손들도 역시 차지하며 입장하였고 기슭을 나누어 한계로 하고 각각 금호禁護를 하였으며 한계 바깥으로는 넘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문규門規입니다.

선영의 국내에 각각 그 주인이 있고 안산에 이르러서는 저의 5대조가 터를 점지한 후에는 차지하여 금호를 하여 지금까지 이미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위 신수경의 고조 신몽현辛夢賢도 학행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묘 옆에다가 재사齋舍를 짓고 그 재사의 이름을 연재戀齋라고 하고 아침저녁으로 분묘에 올라가 산을 순시하여 금벌禁伐을 하였습니다만 안산을 차지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대로 금호한 때문입니다. 연재戀齋의 어머니 아버지 묘에 이르러서 서당 주변의 문중 얼속孽屬 및 상놈들이 모두 입장入葬하는데도 금억禁抑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한계 밖을 넘어서는 금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의 조선祖先이 안산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큰 명증이 있습니다. 저의 조부 형제들이 거상을 할 때에 위의 한 부윤 후손들이 안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의 마주보는 곳을 점지하여 매장을 하였는데 묘문의 향배가 바로 8(7)대조의 영역을 향하고 있고 위 영역이 한가가 점지한 곳보다 좀 낮아서 한가가 점지한 곳이 가장 높아서 상대하여 억누르고 있어서 신수경 등의 조선이 같은 자손이지만 저의 집에서 대대로 금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쟁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의 조부가 어쩔 수 없이 송변하니 한가가 점지한 곳의 아래에 관로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성주는 그 관로를 계한으로 하고 길 아래는 저의 조부가 차지하고 길 위로는 한가가 차지하라고 하여 드디어 한가가 입장하게 되어 피차간의 자손들이 각각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 한가의 후손은 같은 마을에 사는데 가서 물어보니 그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조선이 성문한 땅을 도로 빼앗는 것은 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묘 옆에 재사를 지어 선영과 안산을 금양하였습니다만, 그때 문인인 진사 신유일도 역시 그 증조모의 분산 근처에 대대로 진전陳田을 전래해왔는데 그 진전도 역시 저의 아버지의 안산이므로 위 안산과 함께 금양하려고 두 차례 전 임자년壬子年에 자필로 성문하여 위 신수경의 할아버지 신숙辛淑이 종손으로서 역시 증참證參을 하였습니다. 저들의 무고한 숫장 중에 하나는 원래 매매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전주田主가 자필로 쓰고 종손宗孫이 증인이 되었으니 비록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路 사람에게 주어도 그 자손된 사람은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 장의 휴지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그 선조가 만든 문서를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또 하나는 사는 곳이 조금 멀어서 금호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위의 신유일 형제 및 신숙은 본터에 살고 저의 아버지가 사는 곳과는 닭이나 개가 서로 따르는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그 묘에서 얼마나 멀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기를 받은 후에 절대로 금양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의 아버지가 금양할 때에는 호랑이 표범이 무리를 이루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으니 그것이 과연 금양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르러서 저의 장형의 아들 형제가 본터에 살고 있었기에 하루는 촌에 사는 천얼(賤孽)을 초치하여 분산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말하였고 겸하여 증조부가 만들어둔 약간의 묘직 답을 허락하여 산직으로 하였습니다. 또 근처의 성족(姓族)에게 부탁하여 서로 계를 만들어 분영 산록을 금양하여 여러 산록의 소나무들이 이미 울창하게 되었고 상장례(喪葬禮) 및 부득이한 용도에는 각자 차지한 산록에서 취하여 쓰고 한계 외에서 혼동하여 작별(斫)할 수 없는 것이 역시 계규(契規)입니다. 또 계중에서 별도로 송목을 쓸 일이 있어도 역시 여러 산기슭에서 취하여 쓰고 일찍이 안산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스스로 계를 하여 공양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스스로 계를 만들어 과연 함께 금양한다고 하면 전혀 안산의 소나무에는 미칠 리가 없고 단지 구목(朽木)을 벌목할 것이 이치이거늘, 저들은 백지에 날조하여 스스로 계를 만들어 같이 금양한다고 하면서 감히 이렇게 무소(誣訴)하니 어찌 분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의 종손 신만휴 등은 안산에 적토가 있는 곳을 파서 나무와 소나무를 심을 때에 저들은 한 사람도 일을 도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스스로 계를 만들어 함께 금양한다는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건대 겸성주(兼城主)께서는 자세히 헤아리신 후에 신수경 등에게 하문(下問)하시되 위의 안산을 너의 조선(祖先)이 금호한 일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또 하문하시되 계(契)를 만든 후에 안산의 소나무를 계중(契中)에서 혼동하여 취용(取用)하였는가를 물으십시오. 그 답변을 보면 밝은 해가 있는 밑에서 저들이 어찌 감히 다시 헛소리를 만들어서 윗 사람을 기망하는 죄에 빠지겠습니까? 또 저도 역시 유가(儒家)의 자지(子枝)로서 더군다나 모질(耄耄)의 나이가 되어 이와 같이 거의 사망할 날을 당하여 어찌 감히 다른 사람과 서로 다들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명감(明鑑) 하에서 무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개 신수경 등이 이러한 비리(非理)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수경의 7, 8대 조의 묘 용미(龍尾)의 매우 가까운 곳의 금양하는 곳에 신수경 등이 저의 밭(田畔)이라고 칭하고 매년 기경(起耕)을 하였는데 저의 종손(從孫) 신만휴(辛萬休) 종형제 등이 이치에 근거하여 금억(禁抑)을 하니 신수경 등이 정지(停止)를 하지 않고 도리어 분함을 품었다가 신만휴가 용슬(容膝)을 영조(營造)할 때에 위 안산에서 그가 기르는 소나무 5, 6그루를 취

용取用하니까 신수경 등이 처음으로 문중 족산族山 안산이라고 칭하고 몰래 횡탈할 계획을 내서 거짓을 꾸며서 솟장을 올려서 신만휴를 잡아들였습니다. 만휴 등이 장차 함께 관에 들어가니 수경 등이 반대로 만휴를 꼬이어 사화私和를 칭하였습니다. 만휴가 그의 말을 믿고 따라서 수경 등과 한 곳에 모여서 토파吐破할 때에 수경 등이 또 간사한 꾀를 만들어 바로 서계 중에 약문을 하여 위 안산에서 기르는 소나무 및 그의 조선祖先이 성문한 땅을 계중에서 혼동하여 차지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 문서를 작성하여 만휴를 꼬이어 함께 착명하였습니다. 만휴 등의 말에 '위 안산 및 문서의 땅은 계중에서 혼동하여 차지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 저희들이 착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수경 등이 또 교묘하게 꼬여서 '이 문서는 영원한 문서가 아니다. 우선 초기草記를 하여 그에 따라 토파하였다가, 문중에 함께 나아가 문장에게 보이고 완의를 개조하여 정서한 후에 소를 잡고 강신을 하여 다시는 불화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만휴 등이 소년으로서 무모하게 그들의 술책에 빠져서 함께 착명하였다고 하는 바, 이른바 문장이라는 것은 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바로 수경 등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하여금 약문約文을 가지고 와서 보이라고 하니 신광혁辛光赫이라는 자는 겨우 답서를 하고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으며, 수경 등이 나와서는 도리어 끝내 답변을 하지 않은 바, 그 계책이 제가 완의를 개정할 때에 반드시 저들이 혼동하여 차지하려는 뜻에 따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계책이 간교한 것이 막심합니다. 저는 나이가 80이 넘는 노인이고 겸하여 매우 세상 일에는 뜻이 없어서 실로 솟장을 올려서 다스리고 싶지는 않지만 일이 선대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수경 등의 심술이 진실로 증오할 만하여 부득불 이처럼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겸성주께서는 솟장 중의 사연을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엄명하게 처치하여 수경 등이 비리로 횡탈하는 풍습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所志草

伏以民亦 本郡道內居生是如乎 七十年來 家禍孔酷 勢不得已 移寓於本  
郡森南里者 今至四十餘年 而民之時年則八十有三歲矣 一自移接之後 戀  
舊之忱 去而彌篤是白如乎 不幸今者 門中辛守經 光赫 唯利是務之輩  
做出無前可笑之奸計 欲奪民世世次知生死居案山 及其矣祖父證參成文之地  
而至有呈狀之舉 自先世敦睦之義 到此掃地 言念及此 不禁嗟咄 姑以家庭之  
所嘗聞 及生來所嘗見者 略陳梗槩爲齊 民本以京中世家也 九[八]代祖爲本郡守  
與本里居府尹韓彝相善 後爲光州牧 以次子爲韓彝之婿 因居本里 卽民之八[七]  
代祖也 其居址則北向之洞 而及其沒也 葬于其後南向之原 至於七[六]代祖 又葬于考  
墳前 而七[六]代祖有二子 長子則居于本基 卽守經之七[六]代祖也 次子則點基于先塋

下麓南向之洞 卽民之六[五]代祖也 守經之七[六]代祖 亦葬于考墳前 則脈已盡矣 民之六[五]代祖 葬于先塋西邊至近之麓 而累代子孫 次次世葬 墓門向背 皆與先塋相同 至於守經六代祖母 則考墳下更無餘地 故葬于差遠越一洞東向之麓 而累代子孫 亦爲次知入葬 分麓限界 各爲禁護 而不得踰越於限外者 乃是門規是乎等以 先塋局內 各有其主 而至於案山 則自民五代祖占基之後 次知禁護 以至於今者 已過二百餘年是去乎 同守經之高祖夢賢 亦有學行之人也 構齋考妣塋側 名其齋曰戀齋 齋朝夕上塚 徇山禁伐 而不爲次知案山者 以民世世禁護之故也 至於戀齋考妣之墓 書堂邊門擊及常漢 皆爲入葬 而不得禁抑者 以其限外不爲踰護之致也 況其矣祖先不爲案山次知者 又有一大明證焉 在民祖父兄弟居喪之時 上項韓府尹後孫 占葬於案山至近相對之處 墓門向背 直向于八[七]代祖塋域 而同塋域則抵下韓所占 則最爲高峻 相對壓臨 而守經等祖先 同爲子孫是乎矣 以民家世護之地 故無一人爭下是白遣 民祖父 勢不得已 至於訟下 則韓所占之下 有橫截官路 故其時城主 以路爲限 自路以下 使民祖父次知 自路以上 韓次知亦爲有等以 韓遂入葬 彼此子孫 各自世守爲白齊 同韓之後孫 居在一洞 推而問之 可知其實是乎旡 至於其矣祖先成文之地還奪事段 民父在世之日 構齋塋側 禁養先塋及案山爲有如乎 其時門人進士辛惟一 亦其曾祖母墳山近處 有世傳陳田 而同陳田 亦爲民父家案山是乎等以 與上項案山 并爲禁養次以 二去壬子年 自筆成文 而同守經之祖淑 以宗孫 亦爲證參爲有去乙 其矣等誣狀中 一則曰 元無買賣之事是如爲臥乎所 田主自筆 宗孫爲證 則雖給路人 爲其子孫者 似無後言是乎旡 一則曰 不過一張休紙是如爲臥乎所 其先所成之文乙 謂之以休紙 是何道理是乎旡 一則曰 所居稍遠 不得禁護是如爲臥乎所 同辛惟一兄弟 及辛淑居在本基 而與民父所居 鷄犬相隨之地 則於其墓有何稍遠之事是旡 一則曰 受文記之後 絕無禁養之事是如爲臥乎所 民父禁養之時 虎豹成羣 民所目見 則其果無禁養之事乎 至於數十年前 民之長兄之子兄弟 居在本基乙仍于 一日招致村居賤擊 言以墳山守護之意 兼許曾祖父所置略[若]干墓直畚庫 以爲山直 又囑近處姓族 相與作契 禁養塋麓 而諸麓松翠 已成茂蔚之後 至喪葬及不得已之用 各自取用於次知之麓 而不得渾同斫伐於限外者 亦是契規也 又於契中別用松木之事 亦爲取用於諸麓 而未嘗或及於案山 則渠等所謂自契共養者 未知何所據而云耶 若有自契 果爲同禁 則萬無不及於案山之松 而只伐丘木之理是去乙 渠等白地捏造 以爲自契同養 而敢此誣訴者 豈不痛哉 況民之從孫萬休等 於案山穿破赤土處 種樹

松木之時 渠等無一人助役之事爲有臥乎所 以此推之 則自契同養之誼[意] 果安在哉 伏乞兼城主 細細參商教是後 下問於守經等爲有乎矣 同案山 汝矣祖先 其有禁護之事是旣 又爲下問爲有矣 作契之後 案山之松乙 契中渾同取用乎 以試其答 則昭昭天日之下 渠豈敢更造虛說 自陷於罔上之罪乎 且民亦儒家子 枝加 以耄耄之年 當此死亡之日 豈敢有與人相詰之意 而亦豈敢一分誣罔於明鑑之下哉 大槩守經等 爲此非理之事者 無他民與守經之八[七] 九[八]代祖墓龍尾至近禁養之處 守經等稱以其矣田畔 連年起 耕是去乙 民從孫萬休從兄弟等 據理禁抑 則守經等不爲停止 反爲含怒爲有有如可 萬休營造容膝之時 同案山 其矣所養松木五六株取用乙仍于 守經等 始稱以門中族山案山 而暗生橫奪之計 誣飾呈狀 推捉萬休是去乙 萬休等將無[欲]與之入官 則守經等反爲巧誘萬休 請以私和是去乙 萬休信從其言 與守經等 會于一處吐破之時 守經等又做奸謀 卽書稷中約文爲乎矣 同案山所養之松 及其矣祖先成文之地 稷中渾同次知樣以 造語成文 誘使萬休 同爲着名爲去乙 萬休等言內 同案山及文書之地 稷中渾同次知樣以造語 則吾等不可着名云云 則守經等又爲巧誘 曰此文非牢定之文也 姑爲草記 以依吐破之意爲有如可 門中齊進 示之於門長 而改造完議定書後 椎牛講信 更無不和之事是如去乙 萬休等 以少年無謀 陷於術中 同爲着名云云爲臥乎所 所謂門長 指民而言也 民得聞此言之後 卽爲作書於守經等處 使之持約文來示 則光赫者[段] 董爲答書 而托故不來爲 遣 守經等進來 新反終不答書爲臥所 其爲計 不過民改定完議之際 必不從其矣等渾同次知之意也 其爲計奸巧 莫甚是齊 民年過八十老 昏 兼極無意世事 實不欲呈狀以治 而事係先代叱分不喻 守經等心術 誠爲可惡 故不得不已敢此煩瀆爲去乎 伏乞兼城主 狀中辭緣 商細 鑑當教是後 嚴明處置 以杜守經等非理橫奪之習爲只爲

#### 4-6) 1778년 화민化民 신태기辛兌基 등 소지所志

【해설】 미발 문서. 신태성辛兌成(性烈, 1735~1810) 등이 족장 신익수 등이 도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선대부터 상송했던 소지. 의송, 문서 등을 토대로 반박한 장문의 소지 초.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역대 다른 종인들과 다투는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문서이다.



도내道內 화민 신태성辛兌成, 신태서辛兌瑞, 신태기辛兌基 등

여기에 삼가 놀랍고 아픈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 단열單劣하고 궁졸窮拙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 일찍이 다른 사람과 다툼 까탈이 없었는데 하물며 성족姓族 간에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선대先代에서 나왔고 법이 풍화風化에 관계되므로 내가 비록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소송을 해왔으므로 이미 남의 자손으로서 어찌 입을 다물고 제약을 받아서 선조를 배반하고 망각하는 지경에 빠지겠습니까?

대개 저의 집은 낙향한 이후에 비로소 9대조 형제 항렬에서 분파가 되어 마을을 나누어 대대로 살고 산기슭을 나누어 대대로 장례를 하여 각각 제한界限이 있어서 한번도 침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4백 년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족장族丈 신익수辛益壽가 저의 집 9대 이하 세거하고 세장世葬하던 땅을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칭하고 국내局內에 몰래 깊고 먼 계획을 내어서 양산養山이라고 제목題目을 하고 홀로 회문回文을 발하여 여러 족속들을 부동扶動하여 여러 힘을 합하여 관에 정소한다고 협박하여 9대 이하의 세장世葬한 땅을 억지로 허납許納한 것처럼 불망기不忘記를 독촉하여 받아 크게 풍파를 일으키고 크게 노단鬧端을 일으켰습니다.

대개 신익수는 저의 파의 자손으로 먼 종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權輿과 유래는 점차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초로 야료를 일으킨 자는 바로 그의 양조養祖 신수경辛守經입니다. 그때 척雠이 된 것은 바로 저희들의 방고조旁高祖이고 신익수의 생증조生曾祖입니다. 시조 이하로 전후의 사실이 모두 방고조旁高祖의 소지초所志草에 있고 시비곡절을 확연히 한눈에 알 수 있고 저희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족히 일대증안一大證案입니다. 그 대략에 엮드려 생각건대 저는 본군 도내道內에 살았는데, 70년 이래 가화家禍가 매우 혹독하여 어쩔 수 없이 본군의 삼남리參南里로 이사한 것이 지금 40여 년입니다. 저의 지금 나이는 83세입니다. 한번 이접移接한 후에 옛 고향이 그리운 것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불행히 지금 문중의 신수경辛守經, 광혁光赫은 오직 이익만 힘쓰는 무리들로서 전에 없던 가소로운 간계를 내어서 제가 대대로 차지하고 죽거나 살거나 거주하던 안산案山과 그의 조부가 증참證參이 되어 만든 문서의 땅을 빼앗으려고 정장呈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대부터의 돈목敦睦하던 의리가 여기에 이르러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이에 미치니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일찍이 듣고 나서부터 일찍이 보았던 것을 대강 그 줄거리를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서울의 세가世家였습니다. 8대조가 본군의 수령이 되어서 본리에 사는 부윤府尹 한이韓彝와 잘 지내고 뒤에 광주목사가 되어서는 차자次子를 한이韓彝의 사위로 보내어 계속하여 본리에 거주하였으니 바로 저의 7대조입니다. 그 사는 곳은 북향의 마을이고 죽으면 그 뒤쪽의 남향 언덕에 장례를 합니다. 6대조에 이르러서는 또 아

버지[考]의 분묘 앞에 장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대조가 두 아들이 있어서 장자長子는 본래의 터에 살았으니 바로 수경의 6대조입니다. 차자次子는 선영 아래 기슭 남향한 마을에 점지하고 터를 잡았으니 바로 저의 5대조입니다. 수경의 6대조도 역시 아버지의 분묘 앞에 장례를 지냈는데 용맥이 이미 다하여서 저의 5대조는 선영의 서쪽 아주 가까운 산기슭에 장례를 하고 여러 대의 자손들이 차차로 장례를 하였습니다. 묘문墓門의 향배向背는 모두 선영과 같습니다. 수경의 6대 조모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분묘 아래가 남은 땅이 없어서 조금 먼 건너편 한 골짜기 동향한 기슭에 장례하여 여러 대의 자손이 역시 차지하고 입장入葬하여 산기슭을 한계로 하여 각각 금호禁護하고 한계 외로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규門規이기에 선영先塋의 국내局內에는 각각 그 주인이 있고 안산案山에 이르러서는 저의 5대조가 점지占基한 후에 차지하며 금호禁護를 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이미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위 수경의 고조 몽현夢賢도 역시 학행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비考妣의 무덤 옆에 서재를 짓고 그 재사의 이름을 연재戀齋라고 하고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산을 순찰하면서 금벌禁伐을 했지만 안산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대대로 금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재戀齋 고비考妣의 묘 서당 옆에 문열門擘 및 상늪[常澳]들이 모두 입장入葬하고 금절禁折하지 않은 것은 그곳이 한외限外여서 넘어가서 금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의 조선이 안산으로 차지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큰 명증明證입니다.

저의 조부 형제가 거상居喪하던 날 위 한 부운의 후손이 안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 마주보는 곳에 점장占葬하여 묘문墓門의 향배가 바로 7대조의 영역塋域을 향하고 있는데 위 영역은 좀 낮고 한가가 점한 곳은 가장 고준高峻하여 상대하여 압림壓臨하고 있습니다. 수경 등의 조선祖先은 같은 자손이지만 저희 집이 대대로 수호한 땅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쟁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조부가 어쩔 수 없이 송변訟下하기에 이른 즉 한가가 점한 곳의 아래에 관로官路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때의 성주가 길을 가지고 한계를 하여 길의 아래는 저의 조부가 차지하고 길의 위쪽은 한가가 차지하라고 하여, 한가가 드디어 입장入葬하고 피차간의 자손들이 각각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 한가의 후손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가서 물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조선이 성문成文한 땅을 도로 빼앗은 일은 저의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에 무덤 옆에 재사를 짓고 선영과 안산을 금양하였는데, 그때의 문인門人 진사進士 신유일辛惟一도 역시 그의 증조모의 분산 근처에 대대로 내려오던 진전陳田이 있었고 이 동쪽 진전이 저의 아버지 집 안산이기에 위의 안산과 함께 금양하기 위하여 두 갑자 전의 임자년壬子年에 자필自筆로 성문成文하였습니다. 위 수경의 할아버지 숙淑이 종손宗孫으로서 역시 증참證參을 하였으니 그들의 무장誣狀 중에 “원래 매매한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전주田主가 자필自筆로 쓰고 종손宗孫이 증인이 되었으니 비록 길거리 사람에게

게 주었어도 그 자손된 사람들은 뒷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한 장의 휴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바 그 선조가 만든 문서를 휴지라고 하는 것이 이 무슨 도리입니까? 하나는 “사는 곳이 조금 멀어서 금호禁護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 위 신유일 형제 및 신숙辛淑은 본기本基에 살고 있고 저의 아버지가 사는 곳과는 계견상수鷄犬相隨의 땅이니 그 묘가 어찌 조금 먼 것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기를 받은 후에 절대로 금양한 일이 없다”고 하는 바, 저의 아버지가 금양할 때에는 호랑이 표범이 무리를 이루어서 저도 눈으로 본 즉 과연 금양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르러서 저의 장형長兄의 아들 형제가 본기本基에 살고 있어서 하루는 촌에 사는 천얼賤孽들을 초치해서 분산墳山을 수호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겸하여 증조부가 둔 약간의 묘직답고墓直畚庫를 허락해주고 산직山直으로 삼았습니다. 또 근처의 성족姓族에게 부탁하여 서로 계를 만들어 영록瑩麓을 금양禁養하여 여러 산기슭의 소나무들이 이미 울창하게 된 후에 상장喪葬 및 부득이 한 소용에는 각자 차지한 산기슭에서 취용取用하도록 하였고 한외限外에는 혼동하여 작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계규稷規입니다. 또 계중稷中에서는 별도로 송목松木을 쓸 일이 있으면 역시 여러 산기슭에서 취하여 쓰도록 하였고 일찍이 안산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니다. 저들이 말하는 계에서 공양共養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여 하는 말입니까? 만약에 계가 있어서 과연 같이 금하였다면 전혀 안산의 소나무에 미쳐서 단지 구목을 벌채할 리가 없는데 저들은 터무니 없이 날조하여 계에서 같이 금양하였다고 하여 감히 이 무소誣訴를 하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의 종손從孫 만휴萬休 등은 안산에서 적토赤土있는 곳을 파뚫어서 송목松木을 심을 때에 저들은 한 사람도 조역助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계에서 함께 금양하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겸성주兼城主께서는 자세히 헤아리신 후에 수경 등에게 하문下問하시되 위의 안산이 너의 조선祖先이 금호禁護한 일이 있는가, 또 하문하시되 계를 한 이 후에 안산의 소나무를 계중에서 혼동하여 취용한 적이 있는가 하여 그 답을 보면 밝은 천일天日 아래에서 저들이 어찌 감히 다시 헛소리를 만들어서 망상罔上의 죄에 스스로 빠지겠습니까? 또 저도 유가儒家의 자지子枝로서 모질糞糞의 나이가 되어 이 사망할 날에 당하여 어찌 감히 다른 사람과 싸울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감히 한푼이라고 명감明鑑을 무망罔罔하겠습니까? 대개 수경 등이 이러한 비리의 짓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수경의 7, 8대조의 묘 용미龍尾에 아주 가까운 금양처에 수경 등이 그의 밭두둑(田陬)이라고 칭하면서 매년 기경하고 있는데 저의 종손 만휴 종형제 등이 이치를 들어 금억禁抑하니 수경 등은 정지를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품었다가 만휴가 영조용승營造容膝을 할 때에 위 안산에 저가 기른 송목松木 5, 6 그루를 취용取用하니 수경 등이 처음 문중의 족산族山 안산案山이라고 칭하며 몰래 횡탈할 계획을 내

서 거짓을 꾸며서 정장보狀을 하여 만휴를 추착推捉하였습니다. 만휴 등이 장차 함께 관정官庭에 들어가니 수경 등은 도리어 만휴를 교묘히 꼬여서 사화私和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만휴가 그의 말을 믿고 따라서 수경 등과 한 곳에 모여 토파吐破할 때에 수경 등이 또 간사한 꾀를 내어 바로 계중약문稷中約文을 쓰되 위 안산에서 기른 소나무 및 그의 조선祖先이 성문한 땅을 계중에서 혼동하여 차지한 것처럼 말을 만들었으니 저희들은 착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경 등이 또 교묘히 꼬여서 말하기는 “이 문서는 뇌정牢定하는 문서가 아니다. 우선 초기草記로 하고 토파한다는 뜻으로 하였다가 문중에서 함께 가서 문장門長에게 보이고 문장이 완의完議를 개조하여 정서한 후에 소를 잡고 강신講信을 하여 다시는 불화不和하는 것이 없게 하자고 하여 만휴 등이 젊은 나이에 꾀가 없어서 술수에 빠져서 같이 착명着名 운운” 한 바 이른바 문장은 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후에 바로 수경 등에게 문서를 만들어서 하여금 약문約文을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니 광혁光赫은 겨우 답장 편지는 하였지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고 수경 등이 와서는 도리어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하는 것이 제가 완의를 개정할 때에 아마 그들이 혼동하여 차지한다는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계산이 간교하기 막심합니다.

저는 나이가 80이 넘어 늙고 어지럽고 또 겸하여 세상일에 뜻이 없어서 실로 정장보狀을 해서 다스리고 싶지는 않지만 일이 선대先代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경 등의 심술이 진실로 밍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히 이처럼 번거롭게 하오니 바라건대 겸성주兼城主께서는 소장의 사연을 상세히 감당鑑當하신 후에 엄명하게 처치하여 수경 등이 비리로 횡탈하려는 습성을 막아주시시오 운운 하였습니다.

대개 그 유래와 사실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감이 한 자라도 증감增減하여 선조를 무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본지本紙를 가져다가 살펴보십시오. 이 이후에 다시는 기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중년에 그의 아들 신성중辛聖中이 다시 계발繼發하였는데 그때 특히 척隻이 된 자는 바로 저희들의 아버지 향렬입니다. 그 의송議送 중에 “저희들 10대조가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 선산에 대대로 장례를 지냈는데, 집 뒤를 기슭을 나누어 산을 쓴 것이 역시 이미 거의 300년 뒤에 소원해지게 된 후에 각각 한계를 나누어 차지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저희들이 가법家法을 전래해왔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문손門孫 신성중辛聖中이 까닭 없이 기노起鬧하여 감히 경계를 넘어 도점圖占하려고 하는 바, 이는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대개 저희들 7대조와 성중의 7대조는 실로 친형제입니다. 산기슭을 나누어 산을 사용한 뒤로 예부터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한계를 했는데 지금도 명백하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영의 층대層臺 아래는 구원舊院 터였습니다. 저의 선조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묘 아래로 이거한 후에 지금도 금호하며 차지하고 있으며 안산을

개치改置한 것은 저의 선조가 금양처를 양안에 올렸습니다. 상마동上馬洞은 고 신유일辛惟一 형제가 저의 증조에게 문서를 만들어주었고 신성중 증조가 증참證參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한 기슭은 고 신응림辛應霖의 선산입니다만, 자손이 고향을 떠난 후에 저의 증조에게 문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위의 것들은 모두 신성중이 시끄럽게 한 곳이지만 100년 전에 전래해와서 차지한 땅입니다. 성중이 뒤에 온 나이 젊은 후생後生으로서 사리를 모르고 감히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쟁단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엄명하게 집법執法을 하셔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사실 대로 조사하여 처치하시고 본관本官에게 행하行下 운운”이라고 한 즉 “자세히 조사하여 처치하라”고 제하題下하셨습니다. 저의 집은 원래 빼앗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신익수辛益壽가 저희들 방고조旁高祖의 증손으로서 그의 양가養家를 이어서 또 노단欄端을 일으키니 그 체면과 도리가 실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옳든 그르든 간에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근 사백 년 차지한 것이니 헛수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연속 8, 9대가 입장入葬하였으니 대수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대부터 전래해오던 규정이 이미 저처럼 확연하고 선부형先父兄들의 문자의 자취가 또 이처럼 확실하니 장차 전래해오던 규정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문자의 자취를 거짓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자손된 도리로서는 진실로 마땅히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관가官家의 처분도 역시 마땅히 문서에 따라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례에 따라서 엄단하여 밝게 처분해주시고 결안決案을 제급題給 하셔서 후대의 자손들이 끝없이 다투는 우환을 막아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무술년 월 일

道內 化民 辛兌成 · 辛兌瑞 · 辛兌基等

右謹言駭痛情由段 矣等均是單劣窮拙底物耳 生世之後 未嘗有與人爭詰之端 則況姓族間乎 然而事出先代 法關風化 而我非訟人 人先訟我 則既稱子孫 詎可含嘿受 制 以自陷於背祖忘先之地乎 蓋矣家落鄉之後 始分派於九代祖兄弟行 而分里世居 分麓世葬 而各有界限 一無侵奪者 今幾乎四百年是如乎 不意今者 族丈辛 益壽 以矣家九代以下世居世葬之地 稱以都先山 局內暗生深長之計 題目養山 獨發回文 扶動 諸族 合以衆力 脅以呈官 九代以下世葬之地 勒以許納樣 督受不忘記 而大生 風波 大起鬧端是乎所 槩辛益壽 以矣派子孫 出係遠宗者也 此事之權輿 其所由來者漸矣 而 最初惹鬧者 乃其養祖辛守經也 其時立隻者 乃矣等旁高祖 而即辛益壽 生曾祖也 始祖以下 前後事實 都載於旁高祖所志草 而是非曲節 昭然於一舉目之間耳 不待矣 等之齒舌 而足爲一大證案是如乎 其略曰 伏以民亦本郡道內居生是如乎 七十年來 家

禍孔酷 勢不得已 移寓於本郡參南里者 今至四十餘年 而民之時年則八十有三歲矣 一自移接  
 之後 戀舊之忱 去而彌篤是白如乎 不幸今者 門中辛守經 光燦 惟利是務之輩 做  
 出無前可笑之奸 計欲奪民世次知生死居案山 及其矣祖父證參成文之地 而至有呈狀之舉  
 自先世敦睦之義 到此掃地 言念及此 不禁嗟咄 姑以家庭之所嘗聞及生來所嘗見  
 者 略陳梗槩爲齊 民本以京中世家也 八代祖爲本郡倅與本里居府尹韓彝相善 後爲光州牧 以  
 次子爲韓彝之婿 因居本里 卽民之七代祖也 其居址則北向之洞 而及其沒也葬  
 于其後南向之原 至於六代祖 又葬于考墳前 而六代祖有二子 長子則居于本基 卽守經之六代  
 祖也 次子則點基于先塋下麓南向之洞 卽民之五代祖也 守經之六代祖 亦葬于  
 考墳前 則脈已盡矣 民之五代祖 葬于先塋西邊至近之麓 而累代子孫 次次世葬 墓門向背 皆  
 與先塋相同 至於守經六代祖母 則考墳下更無餘地 故葬差遠越一洞東向  
 之麓 而累代子孫 亦爲次知入葬 分麓限界 各爲禁護 而不得踰越於限外者 乃是門規是乎等以  
 先塋局內 各有其主 而至於案山 則自民五代祖占基之後 次持禁護 以至於  
 今者 已過二百餘年是去乎 同守經之高祖夢賢 亦有學行之人也 構齋考妣塋側 名其齋曰戀齋  
 朝夕上塚 徇山禁伐 而不爲次知案山者 以民世世禁護之故也 至於戀  
 齋考妣之墓書堂邊 門擘及常漢 皆爲入葬 而不得禁折者 以其限外不爲踰護之致也 況其矣祖  
 先不爲案山次知者 又有一大明證焉 在民祖父兄弟居喪之日 上  
 項韓府尹後孫 占葬於案山至近相對之處 墓門向背 直向于七代祖塋域 而同塋域則底下 韓所  
 占則最爲高峻 相對壓臨 而守經等祖先 同爲子孫是乎矣  
 以民家世護之地 故無一人爭下是白遣 民祖父 勢不得已 至於訟下 則韓所占之下 有橫截官路  
 故其時城主 以路爲限 自路以下 使民祖父次知 自路以上韓次知亦爲有等以 韓遂  
 入葬 彼此子孫 各自世守爲白齊 同韓之後孫 居在一洞 推而問之 可知其實是乎旡 至於其矣  
 祖先成文之地還奪事段 民父在世之日 構齋塋側 禁養先塋及案山爲有如乎 其  
 時門人 進士辛惟一 亦其曾祖母墳山近處有世傳陳田 而同東陳田亦爲民父家案山是乎等以  
 與上項案山 并爲禁養次以 二去壬子年 自筆成文 而同守經之祖淑以宗孫 亦  
 爲證參爲有去乙 其矣等誣狀中 一則曰元無買賣之事是如爲臥乎所 田主自筆 宗孫爲證 則雖  
 給路人 爲其子孫者 似無後言是乎旡 一則曰不過一張休紙是如爲臥乎  
 所 其先所成之文 謂之以休紙 是何道理是乎旡 一則曰所居稍遠 不得禁護是如爲臥乎所 同辛  
 惟一兄弟及辛淑 居在本基 而與民父所居 鷄犬相隨之地 則於其墓有  
 何稍遠之事旡 一則曰受文記之後 絕無禁養之事是如爲臥乎所 民父禁養之時 虎豹成羣 民所  
 目見 則其果無禁養之事乎 至於數十年前 民之長兄之子兄弟 居在  
 本基乙仍于 一日招致村居賤擊 言以墳山守護之意 兼許曾祖父所置若干墓直畜庫 以爲山直  
 又囑近處氏族 相與作稷 禁養塋麓 而諸麓松翠 已成茂蔚之後  
 至喪葬及不得已之用 各自取用於次知之麓 而不得渾同斫伐於限外者 亦是稷規也 又於稷中

別用松木之事 亦爲取用於諸麓 而未嘗或及於案山 則渠等所謂  
 自稷共養者 未知何所據而云耶 若有自稷 果爲同禁 則萬無不及於案山之松 而只伐丘木之理  
是去乙 渠等白地捏造 以爲自稷同養 而敢此誣訴者 豈不痛哉 況民  
 之從孫萬休等 於案山穿破赤土處 樹松木之時 渠等無一人助役之事爲有臥乎所 以此推之 則  
 自稷同養之意 果安在哉 伏乞兼城主 細細參商教是後 下問於守  
 經等爲有乎矣 同案山 汝矣 祖先其有禁護之事是汝 又爲下問爲有矣 作稷之後 案山之松乙 稷  
 中渾同取用乎 以試其答 則昭昭天日之下 渠豈敢更造虛說 自陷  
 於罔上之罪乎 且民亦儒家子枝 加以耄耄之年 當此死亡之日 豈敢有與人相詰之意 而亦豈敢  
 一分誣罔於明鑑之下哉 大槩守經等 爲此非理之事者 無他民與  
 守經之七八代祖墓 龍尾至近禁養之處 守經等稱以其矣田畔 連年起耕是去乙 民從孫萬休從  
 兄弟等 據理禁抑 則守經等不爲停止 反爲含怒爲有如可 萬休  
 營造容膝之時 同案山中 渠矣所養松木五六株取用乙仍于 守經等始稱以門中族山案山 而暗  
 生橫奪之計 誣飾呈狀 推捉萬休是去乙 萬休等將欲與之入官  
 則守經等反爲巧誘萬休 請以私和是去乙 萬休信從其言 與守經等會于一處吐破之時 守經等  
 又做奸謀 卽書稷中約文爲乎矣 同案山所養之松及其矣祖  
 先成文之地 稷中渾同次知樣以 做語成文 誘使萬休 同爲着名爲去乙 萬休等言內 同案山及文  
 書之地 稷中渾同次知樣以造語 則吾等不可着名云云 則守  
 經等 又爲巧誘曰 此文非牢定之文也 姑爲草記以 依吐破之意爲有如可 門中齊進 示之於門長  
 而門長改造完議定書後 椎牛講信 更無不和之事是如去乙 萬  
 休等 以少年無謀陷於術中 同爲着名云云爲臥乎所 所謂門長 指民而言也 民得聞此言之後 卽  
 爲作書於守經等處 使之持約文來示 則光懔段 僅爲答書 而托  
 故不來爲遣 守經等進來 新反終不答書爲臥乎所 其爲計 不過民改定完議之際 必不從其矣等  
 渾同次知之意也 其爲計奸巧莫甚是齊 民年過八十老  
 昏 兼極無意世事 實不欲呈狀以治 而事係先代爺不喻 守經等心術 誠爲可惡 故不得已 敢此  
 煩瀆爲去乎 伏乞兼城主 狀中辭緣 商細鑑當教是後  
 嚴明處置 以杜守經等非理橫奪之習爲只爲云云是在果 蓋其由來事實 不過如是 而矣等何敢  
 一字增減 以自歸於誣先之域乎 如其不信取考本紙是  
白齊 自此之後 無復起鬧者矣 中年其子辛聖中 更爲繼發是如乎 其特立隻者 乃矣等祖父行  
 而其議送中曰 矣等十代祖 自京下來之後 世葬先山 在于家  
 後分麓用山 亦已近三百年後 屬疎遠之後 各有次知限界分張者 自是矣等傳來家法是如乎 到  
 于今日 門孫辛聖中亦 無端起鬧 敢生越界圖占之  
 計爲臥乎所 殊極無據事段 大槩矣等七代祖與聖中七代祖 實爲親兄弟 分麓用山之後 自古有  
 掘土成坎限界 今猶明白可證是乎汝 先塋層臺 下則舊院

墟也 自矣先祖次知 而矣移居墓下之後 時方禁護次知是乎旡 案山改置 自是矣先祖量付禁養  
 處是乎旡 上尔洞則故幸惟一兄弟成文於矣曾祖處 而幸聖  
 中曾祖爲證參是乎旡 中間一麓段 故幸應霖先山是如乎 子孫移鄉之後 成文於矣曾祖處是去  
 乙 右項皆幸聖中惹起擾之處 而以百年前傳來次知之地乙  
 聖中以末後年少後生 不識事理 敢生攘奪之心 如是起爭之狀 殊極駭악是去乎 伏乞使道嚴明  
 執法之下 一一參商 從實摘奸處置事 本官良中 行下  
 云云是乎 則詳查處置事題下 而矣家元無見奪之事矣 今者幸益壽 以矣等旁高祖之曾孫 承襲  
 其養家 又作鬧端 其於體面道理 實未知如何 而矣等切欲無言於  
 是非間耳 嗚呼 近四百年次知 年非不久也 連八九代入葬 代非不遠也 自前世傳來之規 既如  
 彼昭然 先父兄文字之跡 又如是炳然 則其將以傳來之規爲非而改轍  
 耶 抑將以文字之蹟爲僞而不信乎 子孫道理 固當遵規 官家處分 亦當從文是如乎 伏乞依前  
 例 嚴斷明處 而題給決案 以防後子孫無窮牆鬪之患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戊戌 月 日

#### 4-7)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해설】 1784년 도내면의 신태기 등이 7대조 제위답 문서를 가지고 간 얼족 신재수와 병작자 백사문을 처벌하고 문서와 추수 곡식 등을 찾아달라고 호소한 소지.

도내면 화민 신태기辛兌基, 신원묵辛元默, 신희묵辛希默, 신치묵辛致默, 신의묵辛誼默 등 여기에 삼가 분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7대조로 1년에 한번 제사지내는 제위답을 매취한 문권을 문중 얼족인 삼남森南에 사는 신재수辛再壽가 탈집奪執하여 납부하지 않는 이유 및 병작자竝作者로 외서外西면에 사는 백사문白士文이 저희들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스스로 베어들이는 모양을 앙소仰訴하니, 조사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모두 잡아오라고 제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재수에게 가서 보여주니 소위 신재수는 관의 제사를 냉시冷視하면서 소지를 빼앗아가서는 끝내 내주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파를 능멸하는 죄와 관을 모욕하는 풍습이 여기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저 백사문도 역시 표리합벽表裏閭闔이 된 자입니다. 이 어찌된 민습입니까? 사사로이는 잡아들일 길이 없으니 바라건대 관에서 두 사람에게 패자牌子를 발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하고 문기와 곡물은 바로 추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갑진년 9월 일

[제사]

먼저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기 위해서 신재수와 백사문을 공원公員이 안동眼同하여  
잡아올 것. 29일 공원에게.

관 [서업]

道內化民 辛兌基 · 辛元默 · 辛希默 · 辛致默 · 辛誼默等

右謹言憤痛情由段 矣等以七代祖 歲一祭位畚 買取文券 門擊森南居辛再壽奪執不納之由 及

竝作者 外西居白士文不告矣等 而私自刈入

之狀 仰訴則查處次 一併捉來題下 故往示再壽 所謂再壽 冷視官題 奪持所志 終不出給 且不

就訟 凌嫡之罪 侮官之習 到茲極矣 而惟彼士文

亦與表裏閣闢者也 何等民習乎 私無捉致之道 伏乞自官發牌兩人 依法嚴處 文記穀物 即日推

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辰九月 日

[題辭]

爲先拒逆罪/嚴治次 再壽/ 士文 公員眼/同捉來/事

廿九 公員

官[署押]

#### 4-8)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해설】 신태기 등이 위전位田 문권을 빼앗아 간 문중 얼손 신재수와 그의 흥계로 병작자가 마음대로  
수확을 한 백사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 소지. 앞뒤 문서와 연결됨.

도내면 화민 신태기, 신원묵, 신희묵, 신치묵, 신의묵 등

여기에 삼가 분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땅은 위전位田보다 귀한 것이 없고 문서는  
계권契券보다 막중한 것이 없으니 위전 문권을 종종 의 적자宗嬪에게 전해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서支庶가 빼앗아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일을 피해서 시작하

고 걱정을 교묘히 막아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중의 일족 신재수가 간암(奸暗)한 것은, 저희들이 7대조 묘위전을 경영하여 만들었는데 여러 번 계를 만들어 시목(柴木)을 판매하여 거래한 것이 여러 해입니다. 매번 저자에게서 잃어버린 나머지 겨우 29량 돈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봄에 산직(山直)에게 논을 사게 하니 이른바 신재수가 가운데에서 몰래 나와서 그의 외척인 백사문에게 4마지기의 논을 거간(居間)을 하고 가격에 따라서 문서를 만드는 날, 받은 신구(新舊) 문서를 몰래 산직에게 돌려서는 그의 소매에 넣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종가에 전송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답의 병작자가 저희들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산직에게서 탈취하여 백사문에게 마음대로 준 뒤에 이로 인하여 사문과 함께 다시 도매(盜賣)를 하려고 하니 그 마음이 정말 파측(叵測)합니다.

적서간의 구분이 엄격하고 일에는 공사가 있으니 어찌 감히 서얼이 적자에게 대항하겠으며 어찌 능히 사인이 공인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적자가 없다면 서얼이 혹 주관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 있는데 저자가 감히 어찌 이와 같이 한단 말입니까?

저자가 선묘(先墓)에 죄를 지은 것은 많습니다. 송추(松楸)를 또 지난봄에 몰래 매도하였는데,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오는 우환은 필연적입니다. 그 방법이 순치(馴致)되면 앞으로 도매(盜賣)하는 흥계를 어찌 믿겠습니까?

백사문에 이르러서는 이미 남의 논을 경식한다면 오직 논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정하게 분집(分執)하자는 뜻으로 정중하게 서로 약속을 하고, 벼를 수확하는 날에 와서 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재수가 백사문을 부동(浮動)하니 사문이 재수에게 붙어서 몰래 사사로이 자기를 살피우려는 욕심에 혼자 스스로 베어들인 후에는 전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 사문의 죄도 깊습니다. 저희들은 분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월에 일제히 양소하였으나 험세에 살기 바빠서 아직도 추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호소하니 바라건대 바르게 법을 처리하는 곳에서 이른바 재수와 사문을 모두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 적자를 능멸하여 분수를 범한 죄악과 몰래 베어들인 간교한 형상을 중히 치죄하신 후에 재수에게서 위의 논 신구(新舊) 문권을 바로 추심하여 주시고 사문에게서는 금년의 화곡(禾穀)도 역시 분납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뒷날의 폐해를 막아주시고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원통함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갑진년 9월 일

[제사]

조사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신재수, 백사문을 모두 잡아올 것.

24일.  
관 [서업]

道內化民 辛兌基·辛元默·辛希默·辛致默·辛誼默 等  
右謹言憤慟情由段 土莫貴於位田 文莫重於契券 則位田文券 傳置於宗嫡非乎 空奪於支庶可  
乎 事之謀始 慮之防巧 不可任置而無嚴哉 門孽  
辛再壽之奸暗也 矣等營立七代祖墓位 累度作稷賣柴 有所拮据者多年 而每每見失於渠家之  
餘 僅收二十九兩錢 昨年春 使山直買畚 則所謂再壽 從中  
暗出 居間於其外戚白似文四斗畚 而準價成文之日 所受新舊文書 暗回山直 攫入其袖曰 我當  
傳送于宗家云矣 尙無形影 而位畚竝作者 不告於矣等 私自  
奪取於山直 擅給似文之後 因與似文 更謀盜賣 其心所在 誠極叵測矣 分嚴嫡庶 事有公私 則  
敢以庶而抗嫡乎 能以私而奪公乎 嫡若無之 則孽或主之 而矣等  
尙在 渠敢如是乎 渠之作罪於先墓者多矣 松楸又爲盜賣於去春 則霜履冰至之患必矣 馴致其  
道 則前頭盜賣之凶計 豈不信然乎 至於似文段 既耕食他人  
之畚 則惟畚主之言是聽 而矣等以從公分執之意 丁寧相約 刈穫之日來告云矣 再壽浮動似文  
似文附托再壽 暗生濟私肥己之慾 獨自刈入之後 晏無一言 似文之  
罪吁亦深矣 矣等不勝憤慨 去四月良中 齊聲仰訴 而拘於險歲奔寓 迄未推卞 故茲敢更籲 伏乞  
正名按法之下 所謂再壽與似文 一併發牌捉致 重治凌嫡犯分之罪惡 暗然刈入之奸狀教是後  
再壽處 右畚新舊文券 卽爲推給教是遣 似文處 今年  
禾穀 亦爲分納 一以杜日後之弊 一以免見失之寃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辰九月 日

[題辭]

查處次 辛再壽 白師文 一併捉來事

廿四

官[署押]

#### 4-9) 1784년 화민化民 신지묵辛之默 등 소지所志

【해설】 신씨 문중에서 제사를 위해 마련한 위전 문서를 중간에서 탈취한 문중 얼족 신재수를 잡아서  
치죄해달라는 문중원들의 소지. 앞 문서와 연결됨.

도내면 화민 신치목, 신태원, 신행목, 신희목, 신지목 등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문에서 자손들에게 귀한 것은 귀천이 없이 그의 선조를 지키고 시사時祀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혹 이기심으로 효도심을 잊어버리고 공물公物을 가지고 사사로이 하려고 한다면 비록 종자적손宗子嫡孫이라도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지파의 서얼자손이겠습니까? 삼남森南에 사는 신재수는 저희들 집안의 하족下族입니다. 저희들은 함께 7대조 묘소의 향화香火를 위한 계획으로 길거한 물건이 있었는데 태반이 그 파에게 빠져나간 나머지 겨우 30량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난해 봄에 산직에게 맡겨서 편할 대로 논을 사게 하니 외서外西 궁산弓山 백사문에게서 그 마을 뒤의 명자命字 논 1부 4속, 또 3속, 또 번답[反畓] 4부 8속 곳을 매득하여 문서를 받을 때에 이른바 신재수가 가운데서 몰래 나서서 친구 문권을 그가 가지고 소매에 넣고는 산직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차 종가에 전납傳納하겠다.”고 하니 그도 역시 자손이니 그 방법을 속일 수가 있으나 산직을 공연히 돌려세우고 지금까지 끝내 납부하지 않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실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먹는 것도 부족하여 또 문서를 빼앗은 것이 어찌 뒷날 차지하려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묘 밑의 송추를 올봄에 마음대로 팔아먹으니 비단 무엄할 뿐만이 아니고 그 참월한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명법明法の 성주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부득이 모두 호소합니다. 바라건대 관에서 잡아들여 그 전후의 죄악을 중한 죄로 다스리시고 위의 매답문권은 바로 추급해주셔서 뒷날의 우환을 방지하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道內 化民 辛致默 · 辛兌元 · 辛行默 · 辛希默 · 辛之默 等

右謹言情由段 人家之所貴乎子孫者 無貴賤 以其守先兆奉時祀 而若或利心以忘孝 公物以謀私 則雖宗子嫡孫 倫理之所不容 而況支派庶孽子乎 森南居辛載壽 乃民等之下族也 民等共爲七代祖墓香火之計 有所拮拒之物 而太半滲漏於其派之餘 厘以三十兩錢 去年春 任山直 從便買畓 則外西弓山白斯文處 其村後命字畓一負四束 又三束 又五束 又反畓四負八束庫乙 買得受文時 所謂載壽 從中暗出新舊文券 渠自攫而袖之 謂山直曰 我將傳納於宗家云 則彼亦子孫也 可欺其方 而山直公然見回矣 至于今終始不納 則其心所在 實未可測也 食錢之猶不足 又奪之文書者 豈非日後次知之地頭乎 不特此也 墓下松楸 肆惡賣食於今春 則非徒無嚴 其爲僭越之罪如何 而明法之所難貸也 茲以不得已齊籲 伏乞

自官捉致重繩 其前後罪惡 而上項買畚文券 即日推給 以防日後之患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辰四月 日

[題辭]

辛載壽捉/來對下事

初十

官[署押]

#### 4-10) 1786년 화민化民 신태성辛兌成 단자單子

【해설】 신씨의 7대조묘 위답을 상놈 백사원에게서 매득하였는데 그때에 거간을 한 문중 얼손 신재수가 산직으로 경작을 함. 백가와 신재수가 동모하여 그 논을 도로 빼앗아 백가에게 줌.

성주城主에게 올리는 단자單子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태성辛兌成

진실로 황공하옵게도 성주 합하게 양달합니다. 대개 전답田畓을 매매하는 방법은 이미 그 가격을 정한 후에 피차간에 주고받아서 계권契券을 작성하여 그 논을 경작하는 것이 통행하는 상례常例입니다. 어찌 가격을 정하고 그 돈을 주지 않고 문기를 작성하여 그 논을 내주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혹 머리를 맞대고 부동符同하여 이리 저리 간계를 만들어서 논을 사는 사람을 속이고 가격 이상의 가격을 과하게 징수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먹고 심지어는 해가 지난 후에 이익이 다하여 정분이 소원해지는 날에는 또 간계를 내어 도리어 당초에 논을 산 사람에게서 다시 징수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심적心跡을 보면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니 인심이 교특巧匿한 것이 어찌 이에 이르렀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계묘癸卯년 봄에 7대조 묘위답墓位畓을 외서外西에 사는 상놈[常漢] 백사원白似元에게서 샀는데 중간에서 거간을 하여 가격을 정한 것은 저희 문중의 얼족 신재수辛載壽입니다. 4마지기 29량의 돈을 모두 수대로 주었고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저희들의 산직에게 계속 경작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해 갑진년 봄에 백가 놈과 신재수가 함께 모의하여 그 논을 몰래 빼앗아서 도로 백가 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제가 그의 집에 가서 3석조石租를 받아서 계속 그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단서가 있다면 어찌

이처럼 하겠습니까? 저놈은 화재로 잃어버렸다고 청탁을 하고 끝내 한 말 한 되도 준비하여 내지 않으니 그놈의 소위가 아 너무 참담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역시 3석조石租를 받고 이번 봄에 비로소 한번 제례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 당하여 농사가 흉년이 되어 백가놈이 병작并作의 사례로 나누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얼족인 신중갑辛重甲에게 가서 추수를 감독하라고 하고 또 타조打租 2석곡石穀을 감독하여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백가놈이 논값이라고 칭하면서 3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소지를 올리고 2석조石租를 빼앗아 갔습니다. 위답位畓의 제곡祭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백가놈이 끝없는 욕심을 내어 흉억胸臆을 자행恣行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저희의 분통함은 정말 어떠하겠습니까?

백가놈은 신재수의 외척으로 그 놈은 가장 척박한 것 중에서도 하등의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환매還賣를 하려고 20량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백가놈의 입에서 나온 말인 즉 계묘년은 대흥년이고 을사년은 대풍년입니다. 대흥년에 산 논을 갑자기 연속 두 해의 대풍년의 가격으로 장리를 줄이면 저간의 환롱한 흔적의 한 가닥 길이 분명히 드러나 의심이 없습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알겠습니까? 당초에 매매할 때에 이미 과한 가격의 과한 가격을 지급했는데 지금 4년 후에 당하여 또 이미 지급한 가격을 다시 징수하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러한 불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신재수와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니 저에게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위의 백가놈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그 전후의 흉악한 죄상을 중하게 다스린 후에 2석조石租를 바로 추급推給해주셔서 다행히도 선묘先墓가 향화香火를 거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천만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병오년 12월 일

[제사]

일이 매우 근거가 없다.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고 추급하기 위하여 백가놈을 잡아올 것. 27일.

행관 [서업]

城主前 單子

道內 化民 辛兌成

誠恐誠惶 仰達于

城主閣下 大凡田畓買賣之道 既決其價之後 彼此授受而成契券 耕其畓者 通行之常例也 寧有

垂其價不給錢而成文記出其畚之理是旣 苟  
或頭會符同 周羅舞奸 誣罔買畚之人 而過徵價外之價 分其利而偷食 至於閱歲經年之後 利盡  
情疎之日 又生奸計 返欲再徵於當初  
買畚之人者 究其心跡 非人所爲 人心巧匿 何至於此也 伏以民去癸卯春 買得七代祖墓位畚於  
外西居常漢白似元處 而居間決價者 民之門擊辛  
載壽也 四斗落二十九兩錢 沒數準給 而成文之後 使民之山直 因爲耕作矣 明年甲辰春 白漢  
與載壽 同謀而暗奪其畚 還給白漢 故其冬 民躬往渠  
家 三石租捧納 而因置渠家是如乎 其間若有一言一事 毫髮疑慮之端 則何可如是 而厥漢托以  
火災見失 終無升合備報之道 厥漢所爲 吁亦慘矣  
去年秋 亦捧三石租 今春始得行一祭之禮 而當今年穡事告歉之日 白漢以并作例分執之意爲  
言 故使門擊辛重甲 往以監秋 又監打租二石穀  
分半 而白漢稱以畚價 三兩未捧是如 誣呈所志 而攫奪二石租是乎所 位畚祭穀 何等至重 而  
白漢橫出無厭之欲 恣行胸臆 至於如此 民之憤痛 誠極如  
何哉 白漢乃載壽之外戚 而厥畚最是瘠薄之居下者也 去年秋 民欲爲還賣 而不給二十兩之說  
出於白漢之口 則癸卯大凶也 乙巳大豐也 大凶所  
買之畚 遽當連兩年大豐價 縮長利則底間幻弄之跡 一條路脈 昭著無疑 何待智者而後乎知 當  
初買賣之時 旣給過價之過價 今當四年之後 又欲再  
徵旣給之價 世上豈有如此不測之人乎 此不過與載壽私相予受 於民有何所關哉 上項白漢 發  
牌捉致 重治其前後窮凶極惡之罪教是後 二石租卽  
爲推給 幸得先墓無關香火地 千萬祈懇之至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丙午十二月 日

[題辭]

事極無據 各/別嚴治推給/次 白漢捉來/事

廿七

行官[署押]

#### 4-11) 1801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해설】 신가 6, 7대조 묘의 산직이면서 투장을 한 산직 황몽택을 처벌해달라는 소지.

도내 화민 신행묵辛行默, 신재수辛載壽, 신희묵辛希默, 신지묵辛之默, 신의묵辛誼默 등

여기에 삼가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대개 산직山直이라고 이름지어진 것은 금호禁護를 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투장偷葬을 하라고 그러한 것입니까? 세상에 혹 투장하는 풍습이 있습니다만, 산직이가 산주山主의 산을 범하였다라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7대조 참의공參議公, 6대조 참봉공參奉公의 묘가 군 북쪽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에 있는데 각 가의 사산私山이 여록餘麓에 매장한 것이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하나도 다른 사람의 무덤이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몇 년 전에 산직이인 황몽택黃夢宅이라는 놈이 그의 어머니를 투매偷埋하고 선조의 둘 사이의 지척인 곳 같은 향렬 나란히 매장을 하였습니다. 세도世道가 흉험凶險한 것이 저도 모르게 한심하고 담이 떨렸습니다. 저희들은 분박憤迫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굴이掘移하라고 하니 그놈은 그 잘못을 스스로 알고 말하기를 “소인小人의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이미 산직이의 이점으로 태어났으나 어찌 산주의 묘를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우매한 백성이 법리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어찌 관에 정소하기를 기다렸다가 굴이하겠습니까? 마땅히 2월에는 바로 굴이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간걸하므로 저희들이 유약한 소치로 그 방법에 속았습니다. 지난 봄 2월에 이르러 그놈이 이치가 풀리고 말이 안되니 일부러 아들의 병을 핑계대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또 구걸하여 말하기를 “몸은 비록 천한 놈賤瀆이지만 또한 사람입니다. 어찌 널리 용서하는 덕을 모르겠습니까? 아들의 병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오는 10월에는 바로 굴거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늘을 두고 거듭 맹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속임을 당하였으므로 다시는 그의 계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사람이니 어찌 이처럼 하고도 굴거하지 않겠는가 하고 믿고서 허락하였습니다. 10월이 또 지나갔으나 끝내 굴거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산직이로서 나의 덕을 만들었는데 나의 산을 빼앗으니 이러한 변괴는 고금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박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목소리를 같이 하여 양소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황몽택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어 그가 산직이로서 투장한 죄를 중하게 다스리신 연후에 이른바 투총은 바로 굴거하게 하여 유명한 수치를 설분하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유년 11월 일

[제사]

묘직墓直이가 투총偷塚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욱 근거가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안동眼同하여 잡아오면 사문査問한 후에 바로 처결處決할 것이다. 26일.

행관 [서압]



道內 化民 辛行默 · 辛載壽 · 辛希默 · 辛之默 · 辛誼默 等  
 右謹言冤痛情由段 大凡名之以山直者 欲使禁護而然耶 抑亦使偷葬而然耶 世或有偷葬之習  
 而未聞以山直犯於山主者也 民等七代祖參議公  
 六代祖參奉公墓 所在於郡北九水面隱仙洞 而各家私山 葬於餘麓 至于今二百餘年之間 一無  
 他人之塚矣 不意年前 山直黃夢宅爲名漢 偷埋其  
 母 葬於先私兩間咫尺之地 同行并列 世道凶險 不覺心寒胆慄 民等不勝憤迫 卽欲呈許掘移  
 則厥漢自知其非曰 小人之罪 萬死無惜 而既生於山直之利 則  
 敢害於山主之墓乎 此是愚氓未知法理之致也 何待呈官掘移耶 當以二月卽爲掘移之意 百般  
 懇乞 故民等柔弱之致 見欺於其方矣 至于去春二  
 月 則厥漢理屈辭縮 故稱以子病而舞詐 又乞曰身雖賤漢 亦是人也 豈不知寬恕之德耶 子病如  
 此 當以來十月卽日掘去之意 指天重盟是如乎 民等  
 既而見欺 則更不墮計矣 彼亦人也 豈有如是而不掘者乎 信而許之矣 十月又過 終不掘去是如  
 乎 渠以山直生我之德 而奪我之山 如此變怪 今古罕聞  
 者也 不勝冤迫 茲敢齊聲仰訴 伏乞  
 參商教是後 上項黃夢宅 發牌捉致 重治其以山直偷葬之罪 然後所謂偷塚 卽日掘去 以雪幽明  
 之恥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酉十一月日

[題辭]

墓直偷塚/ 比他人尤爲/無據 汝等眼/同捉來 則查問/後當處決事

廿六

行官[署押]

#### 4-12) 1801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해설】 영광 구수면 신가의 선산과 사산私山 사이에 투장을 한 산직 황몽택을 잡아다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 소지. 앞 소지와 연속임.

도내면 화민 신행묵辛行默, 신재수辛載壽, 신희묵辛希默, 신지묵辛之默, 신의묵辛誼默 등 여기에 삼가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본군本郡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의 7대조 참의공參議公 묘소의 아주 가까운 곳에 산직 늪山直漢 황몽택黃夢澤이 두

장偷葬한 일로 지난 번에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러 정소하였습니다. 그 제음題音에 “산직이가 투장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욱 말이 안되는 일이다. 너희들이 안동眼同하여 잡아오면 마땅히 엄히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받들고 일제히 나아가니 그놈은 스스로 그 죄를 알아서 숨어서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종적을 탐문하니 그놈이 절대 소송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 자가 산직이로서 산주山主의 선산先山과 사산私山 둘 사이의 땅에 투장한 것은 그 행위가 흉험凶險하다는 것을 이로 미루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중한 관제官題에도 완고히 저절하고 오지 않으니 역시 무법無法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의 사력私力으로는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다시 호소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황몽택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그가 투장하는 습속과 거역한 죄를 중하게 다스리시고 그 후에 이른바 투총은 바로 굴이掘移하여 무궁한 원한을 설분하게 해주십시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유년 12월 일

[제사]

황몽택을 마땅히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인 후에 대변對下할 것.

초6일. 구수 주인九水主人<sup>1</sup>

행관 [서업]

道內化民辛行默·辛載壽·辛希默·辛之默·辛誼默等

右謹言冤痛情由 民等本郡九水面隱仙洞七代祖參議公墓所至近之地 山直漢黃夢澤偷葬事 頃日良中 齊聲仰呈

是乎 則題音內 山直之偷葬 比他人尤爲無據 汝等眼同捉來 則當嚴處之意 行下教是乎所 民等奉 官題齊進是乎 則厥漢自知

其罪 隱避不見 故民等又使探蹤是乎 則厥漢萬無就訟之理是如乎 渠以山直偷葬於山主之先 山私山兩間之地 則其爲凶險 推此可知

矣 莫重官題之下 頑拒不來 則亦爲無法之民也 以民等之私力 不可捉來 故茲敢更訴 伏乞 參商教是後 同黃夢澤 發牌捉致 重治其偷葬之習 拒逆之罪 然後所謂儉塚 卽爲掘移 以雪無窮之冤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1 구수주인: 구수면 면주인을 말함. 보통 각 군현의 하급 장교나 교졸들이 면주인을 맡는다.

辛酉十二月 日

[題辭]

黃夢澤 當發/牌捉來後 對/卜事

初六 九水主人

行官[署押]

#### 4-13) 1802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소지所志

【해설】 구수면 은선동 신가의 산에 투장을 한 무장 김대우라는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소지.

도내면 화민 신행묵辛行默, 신지묵辛之默, 신의묵辛誼默, 신치묵辛處默 등

여기에 삼가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7대조 참의공, 6대조 참봉 성재공省齋公의 묘소가 군의 서쪽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에 있어서 각 가문의 자손들이 서로 계장繼葬을 한 것이 거의 삼백 년인데, 전혀 함 점 다른 사람의 무덤이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무장茂長에 사는 김대우金大佑라는 사람이 밤에 같은 산 아주 가까운 곳에 투매偷埋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선조인 성재공의 성리학性理學과 효도와 우애의 행적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고 정유란丁酉亂을 당하여서는 배를 타고 성묘聖廟의 위판位板 및 제기의궤祭器儀軌 등 물품을 받들고 바다로 나가서 온전히 보존하였습니다. 갑자년甲子年의 변란에는 먼저 창의하여 곡물을 모아 삼천 여 곡斛을 모아서 국용國用을 도왔습니다. 정묘호란丁卯胡亂에는 소모召募의 임무를 맡아서 진심을 다하여 규칙規劃을 한 것이 전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방백方伯들이 계속하여 조수노예操守勞勤로 추천하여 특별히 재랑齋郎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종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후생들을 교훈하면서 즐겁게 세상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수정賢愁亭의 유참찬俞參贊이 성은으로 본군에 보임되었을 때에 농석礮石과 묘표表墓는 미호漢湖 유상공俞相公이 비음碑陰을 썼으니 저희들의 선조先祖의 위성衛聖의 공로와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이와 같은데 오직 저 김대우金大佑라는 자는 마음대로 투매偷埋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여러 차례 정소呈訴하였는데 다른 관이라고 매번 은피隱避하고 끝내 소송에 나오지 않은 바, 대우의 여기에 있어서의 행위는 더욱 간흉奸凶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모두 소리를 함께 하여 양소仰訴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무장茂長 관에 이문하여 김대우를 잡아들여서 먼저 그가 사대부 산소에 투매偷埋한 죄를 다스린 후에 이른바 투총偷塚한 것을 바로 굴거掘去하여 유명幽明 통분을 설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 성주 처분

임술년 2월

[제사]

마땅히 무장 관茂長官에 이문移文할 것.

형리刑吏 초1일

행관 [서압]

道內化民辛行默·辛之默·辛誼默·辛處默等

右謹言冤痛情由段 民等七代祖參議公 六代祖參奉 省齋公墓所 在於郡西九水面隱仙洞 而

各家子孫 互相繼葬 至于今近

三百年之間 頓無一点他人之塚矣 不意茂長居金大佑爲名人 乘夜偷埋於同崗至近之地是如

乎 民等先祖省齋公性理之學 孝

友之行 爲世所推 而當丁酉之亂 舟奉聖廟位板及祭器儀軌等物 浮海得全 甲子之變 首倡義穀

而得三千餘斛 以補國

用 丁卯之亂 以召募之任 盡心規劃 亦如前日 故前後方伯 連薦操守勞勩 特除齋郎 而終始不

就 教訓後生 樂而忘世 故賢愁亭

俞參贊 恩補本郡時 甕石表墓 溪湖俞相公 制碑陰 則民等先祖衛聖之功 爲國之忠如是 而惟

彼金大佑者 肆然偷埋 故民等

累度呈訴 而稱以他官 每每隱避 終不就訟是乎所 大佑之所爲於此 尤極奸凶 故茲敢齊聲仰訴

伏乞

參商教是後 移文於茂長官 而捉致金大佑 先治其偷埋士夫家山所之罪教是後 所謂偷塚 卽爲

掘去 俾雪幽明之憤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戌二月

[題辭]

當移文于/茂長官事

刑吏 初一日

行官[署押]

#### 4-14) 1803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등 소지所志

【해설】 구수면 은선동 선조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산직 황몽택을 잡아서 치죄해달라는 소지.

도내면 화민 신행묵辛行默, 신희묵辛希默, 신의묵辛誼默, 신수묵辛修默, 신처묵辛處默, 신행정辛恒禎 등

여기에 삼가 원박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7대조 참의공參議公, 6대조 참봉공參奉公의 묘가 본군 구수면九岫面 은선동隱仙洞에 있고 좌우의 남은 산록山麓도 역시 많이 있어서 자손이 계장繼葬하고 있습니다. 산직 늪山直漢 한몽택黃夢宅이 뜻하지 않게 국내局內的 아주 가까운 곳에 투매偷埋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소呈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정월에 굴거掘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놈은 도리어 독을 품고 분노로 깊으려고 하여 몰래 이미 매장한 그의 아버지의 묘를 파내어 또 선산來龍의 지척인 곳에 매장하였습니다. 작년에 그의 어미의 묘를 파가고는 금년에는 그의 아버지를 매장하니 세상에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습니까? 그놈이 공손하지 못한 것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행묵辛行默, 신희묵辛希默의 친산親山으로 논할 것 같으면 맥을 누르고 내려다 보는 곳(脈脈俯臨之地)입니다. 법이 있는 세상에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산직이 투매한 것은 그 죄가 매우 크고 매년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악행이 매우 심하니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이에 소리를 함께 하여 양소하니 바라건대 엄명嚴明한 안법按法 아래에서 발례發例하여 통촉洞燭하신 후에 위의 황몽택黃夢宅을 차사를 파견하여 잡아들여 그가 행험行驗한 죄를 중하게 다스려주시옵시오. 그리고 이른바 투총偷塚한 것은 바로 굴거掘去하여 뒷날을 징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해년 윤2월 일

[제사]

조사摘姪한 후에 과연 이 소지의 말과 같거든 엄히 신칙하고 굴이掘移하기 위하여 잡아올릴 것.

28일 장자狀者에게

행관 [서압]

道內化民辛行默 · 辛希默 · 辛誼默 · 辛修默 · 辛處默 · 辛恒禎等

右謹言冤迫情由段 民等七代祖參議公六代祖參奉公墓 在於本郡九岫面隱仙洞 而左右餘麓

亦多 子孫之繼葬矣 山直漢黃夢宅 不意偷埋其母於局內至近之地 故至於呈訴  
 去年正月良中 以爲掘去矣 厥漢返爲含毒 欲報其憤怒 而暗掘其既葬之父 又埋於先山來龍咫  
 尺之地 去年掘其母 今年埋其父 世豈有如此變怪 而厥漢之不恭 從此可知也 且  
 以辛行默 辛希默親山論之 則壓脈俯臨之地也 有法之下 豈不寒心哉 以山直偷埋 罪莫大焉  
 連年故犯 惡莫甚焉 不勝其極 茲敢齊聲仰訴 伏乞  
 嚴明按法之下 發例洞燭教是後 上項黃夢宅 遺差捉致 重治其行驗之罪 而所謂偷塚 卽爲掘去  
 以徵日後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亥閏二月 日

[題辭]

摘奸後 果如此辭是去等 嚴飭掘移/次 捉上事

廿八 狀者

行官[署押]

#### 4-15) 1803년 화민化民 신행묵辛行默 등 소지所志

【해설】 선조 산소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고 마음대로 작벌을 한 산직 황몽택을 잡아서 치죄해달라는 소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희묵辛希默, 신행묵辛行默

여기에 삼가 원박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7대조 참의공, 6대조 참봉공의 묘소가 근의 서쪽 구수면九岫面 은선동隱仙洞에 있고 그 북쪽 산기슭은 저희들의 친산親山입니다. 수호守護한 지가 오래되어 200여년간에 한점 타인의 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작년에 산직놈[山直漢] 황몽택黃夢宅이 그의 어미의 묘를 저희들 선산아주 가까운 곳에 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이르고 품어주고 했으나 끝내 정소하기에 이르니 겨우 파갔습니다. 위 몽택夢宅은 그가 산직이로서 투매偷埋한 죄를 모르고 도리어 독을 품고 몰래 이미 매장을 했던 그의 아버지의 묘를 파서 마음대로 저희들 친산親山 주맥主脈의 지척이 되는 곳에 투매偷埋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송추松秋도 몰래 작벌하여 마침내 민둥산이 되게 하고 산 밑 마을 한시랑寒時廊에 나아가서 거주하였습니다.

저희들은 30리 되는 곳에 거주하여 전연 알지 못하다가 이번엔 추행楸行을 하다가 비로소 몽택의 정상情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러한 변이 있습니까? 산직

이가 투장偷葬한 것은 죄가 막대한 것인데 도리어 독을 품고 이미 매장을 했던 아버을  
가지고 그 부당한 원한을 갚으려고 하니 그놈의 흉험凶驗한 것은 논할 것이 없지만 저  
희들이 원박冤迫한 것은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감히 급한 소리로 양소仰訴  
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황몽택은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 그가 여러 번  
투매한 죄악과 송추松秋를 모두 작별한 죄를 중히 다스리시고 이른바 투매한 것은 바  
로 파가게 하여서 만의 하나라도 설분雪憤하도록 해주십시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해년 윤2월 일

[제사]

조사摘奸하여 고할 것. 27일 면임面任에게

행관 [서업]

道內化民辛希默 辛行默

右謹言冤迫情由段 民七代祖參議公六代祖參奉公墓所 在於郡西九岫面隱仙洞 而其北麓則

民等之親山也 守護已久 而二百餘年之間無一點他人之塚矣 不意去年良中

山直漢黃夢宅 偷埋其母塚於民之先山至近之地 故不能以化誨懷復 而竟至呈訴 艱辛掘去矣

同夢宅 不知其以山直偷埋之罪 返爲含毒 暗掘其既葬之父 肆然偷埋於民等

親山主脈咫尺之地 而左右松秋 亦爲暗斫 竟作濯濯 而出居於山下村寒時廊是乎矣 民等居在

三十里之地 故全然未知是如可 今作楸行 而始知夢宅之情狀 則世豈有如此之變乎

以山直偷葬 罪莫大焉 而返爲含毒 以其既葬之父 欲報其不當之怨 則厥漢之凶驗 非所可論

而民等之冤迫 誠極如何哉 茲敢疾聲仰訴 伏乞

參商教是後 同黃夢宅 發牌捉致 重治其累犯偷埋之惡 沒斫松秋之罪 然後所謂偷埋 卽地掘去

以雪萬一之憤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亥閏二月 日

[題辭]

摘奸以告/事 廿七面任

行官[署押]

## 4-16) 1803년 황몽택黃夢澤 수기手記

【해설】 신씨택 산소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황몽택이 내년 4월에 이장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수기.

계해년 3월 초2일 신 생원 앞 수기手記

여기에 수기를 씁니다. 저의 친산親山이 본면本面 은선동隱仙洞에 있습니다. 위의 택右宅 산소가 가까워서 기송起訟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이달은 3월입니다. 3월과 9월은 부동충不動塚이므로 오는 4월에 이총移塚하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수기를 합니다. 앞으로 약속을 배반하면, 이 수기를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입니다.

수기주手記主 황몽택黃夢澤 [작명]

증證 본면本面 풍헌風憲 조중익趙重翊 [작명]

약정約正 박여삼朴汝三 [작명]

癸亥三月初二日 辛生員前 手記

右手記事段 矣親山在於本面隱仙洞矣 右宅山所以近是如 起訟云云爲乎矣 此月則三月也 而三九月不動塚 故來四月移塚之意 如是成手記爲去乎 日後背約 則以此手記憑考爲乎乙事

手記主 黃夢澤 [着名]

證 本面風憲 趙重翊 [着名]

約正 朴汝三 [着名]

## 4-17) 1816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등 소지所志

【해설】 구수면 선대 산소 종손 신한묵 조비 분묘 위에 투장을 한 포한浦汗 임용덕林龍德을 잡아다가 투장을 파가도록 요청한 소지.

도대면 화민 신의묵辛誼默, 신수묵辛修默, 신한업辛恒業, 신한언辛恒彦

여기에 삼가 원박冤迫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7대조 참의공參議公, 6대조 참봉參奉 성재공省齋公 묘소가 균의 서쪽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에 있어서 대대로 계장繼葬을 하여 지금까지 300년 내에 다른 사람의 무덤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종손 宗孫 신행묵辛行默 조비祖妣의 분묘墳墓 용미龍尾 위 보수步數가 거의 없는 곳에 해면該面 구수九水에 사는 임용덕林龍德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밤을 틈타 그의 어머니를 투장하였다. 세도世道가 비록 떨어졌다고 해도 어떤 포한浦汗이 감히 양반가의 관작官爵이 있는 산소를 침탈합니까? 원박冤迫함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앙악仰籲하니 바라건대 명정明政 안법按法 밑에서 특별히 헤아리신 후에 위의 임용덕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 그 투장偷葬한 죄를 중히 다스리신 후에 이른바 투총偷塚은 즉시 굴이掘移하기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병자년 정월 일

[제사]

임용덕을 잡아올 것.

장자狀者에게

초7일

행관 [서업]

道內化民辛誼默·辛修默·辛恒禎·辛恒慥·辛恒彦

右謹言冤迫情由段 民七代祖參議公六代祖參奉省齋公墓所 在於郡西九水面隱仙洞 而世世

繼葬 至于今三百年內無他人一點塚矣 不意今者 宗孫辛行默祖妣墳

墓龍尾上 無步數之內 該面九水居林龍德爲名漢 乘夜偷埋其母葬 世道雖降 以么麼浦汗 安敢

侵奪於兩班家有官爵山所乎 不勝冤迫 茲敢齊聲仰籲 伏乞

明政按法之下 另加參商教是後 同林龍德 發牌捉致 重治其偷葬之罪 然後所謂偷塚 卽爲掘移

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丙子正月 日

[題辭]

林龍德/捉來/事

狀者

初七日

行官[署押]

## 4-18) 1817년 임용득林用得 수기手記

【해설】 위 소지의 이면에 첨부된 수기로, 망모를 투장한 임용득이 9월 22일까지 반드시 굴이한다는 것을 다짐한 수기.

정축丁丑년 8월 22일 신 생원 전 수기手記

여기에 수기手記를 쓰는 것은 저의 망모亡母를택의 선산에 핼매逼埋하였는데, 두 번二巡이나 스스로 파가겠다는 뜻으로 수기를 써서 납상納上하였습니다. 기한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도 지연하고 파가지 않아서 응송應訟하기 위하여 또 솟장을 올려서 직접 왔기에 9월 22일까지는 단연코 파서 옮길 것으로 백 가지로 간걸하여 또 수기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날짜에 만약 실기失期를 하면 관에 고하여 빙처憑處할 것입니다.

기주記主 임용득林用得 [작명]

丁丑八月二十二日 辛生員前 手記

右手記事段 矣身亡母 逼埋於宅先山

是如可 二巡自掘意 成手記納上矣

限日已過 延他未掘 則應訟次 又爲呈狀

親來是乎所 以九月二十二日 斷斷掘移之

意 百般懇乞 而又成手記爲去乎 右日

若失期 則告官憑處事

記主 林用得 [着名]

## 4-19) 1817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해설】 구수면 선조 산소 종가 증증조비 분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임용득이 이장을 약속하고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어서 그를 잡아다가 이장하게 할 것을 요청한 소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천묵辛天默, 신의묵辛誼默, 신항정辛恒禎, 신항업辛恒爌, 신항언辛恒彦

여기에 삼가 원통하고 분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선산이 군서郡西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에 있는데, 동쪽 기슭은 7대조 참의공, 6대조 참봉공의 묘소입니다. 그후에 각 파의 자손들이 대대로 계장繼葬을 하니 그 북쪽 기슭은 바로 종가宗家の

종증조비從曾祖妣의 분묘이고 종증조비는 바로 윤 장령尹掌壽의 손녀입니다. 지금까지 200여 년간 한 점의 다른 사람 무덤이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종가의 운잉雲仍이 잔체屨替하여 산 아래 촌의 구수미九水尾 사는 임용득林用得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작년에 마음대로 그의 어머니를 저의 종증조비 분묘 용미龍尾 위에 투매偷埋하여 분묘의 몸체가 반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혹 투장偷葬하는 변괴가 있지만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고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박憤迫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유를 갖추어 구관舊官 성주城主에게 양소하니 ‘엄히 다스리고 독굴督掘하기 위하여 잡아올 것’이라고 제음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제음을 받들어 그놈이 있는 곳에 가니 그놈은 그 죄가 두려워 지난 봄에 파웁기겠다는 뜻으로 백 가지로 애걸하여 수기手記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을 잘 모르는 소치로 그놈의 사계諒計에 빠져서 우선 허락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이르러서도 끝내 파웁기지 않아서 이번 가을 7월에 파웁기겠다는 뜻으로 또 간절히 구걸하며 말하기를 ‘오는 7월에 만약에 파웁기지 않으면 비록 산주택山主宅에서 사사로이 파버리더라도 전혀 한마디도 않겠다’는 뜻으로 다시 수기를 써서 바쳤습니다. 저희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비단 법리상으로 당연히 파가는 것이지만 저도 또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한 후에 어찌 감히 실기失期를 하겠습니까? 참으면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7월이 또 지나면 전혀 파웁길 길이 없고 무지농사舞智弄詐에 지나지 않고 세월을 지연시키다가 모탈謀頃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가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소리를 함께하여 인명안법仁明按法에 양약仰籲하오니 바라건대 특별히 헤아리신 후에 위의 임용득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사부士夫 집 산소에 투매偷埋한 죄를 먼저 중히 다스리고 그 후에 이른바 투총偷塚을 바로 파웁겨서 유명幽明의 치욕을 씻어주십시오. 행하 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정축년 8월 일

[제사]

사문査問하여 독굴督掘하기 위하여 잡아올 것.

장자狀者에게

19일

행관 [서압]

道內化民 辛天默 · 辛誼默 · 辛恒禎 · 辛恒懌 · 辛恒彦

右謹言至冤憤迫情由段 民等之先山 在於郡西九水面隱仙洞 而東麓則七代祖參議公六代祖

參奉公墓所 而其後各派子孫

世世繼葬 則其北麓乃宗家從曾祖妣墳墓 而從曾祖妣卽尹掌令之孫女也 于今二百餘年之間  
無他人一點塚矣 不幸

宗家雲仍孱替 則山下村九水尾居林用得爲名汗 不意去年良中 肆然偷埋其母於民從曾祖妣  
墳墓龍尾上 則墳體半

入於毀傷 世或有偷葬之變 而如此蔑法 前古未有 民等不勝憤迫 俱由仰訴於舊官城主前是乎  
則嚴治督掘次

捉來之意題下是乎所 民等奉題音 往于厥汗處 厥汗自慙其罪 以去春掘移之意 百般哀乞 而成  
手記以納 故民等以昧

事所致 墜於厥汗之詐計 姑爲許之 則至于去春 終不掘移 以今秋七月掘移之意 又爲懇乞曰  
來七月若不掘移

則雖山主宅私自掘去 初無一言之意 更成手記以納是乎所 民等所恃者 非但法理之當掘 渠亦  
人也 如是而後 豈敢失期

忍以至此 則七月又過 萬無掘移之道者 不過舞智弄詐 延他日月 而欲爲謀頃也 然則無可掘之  
日 故茲敢齊聲仰

籲於

仁明按法之下 伏乞另加參商教是後 同林用得發牌捉致 士夫家山所偷埋之罪 爲先重繩 然後  
所謂偷塚 卽

地掘移 以雪幽明之恥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丁丑八月 日

[題辭]

查問督掘/次 捉來事

狀者

十九日

行官[署押]

#### 4-20) 1818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소지所志

【해설】 구수면 선조 산소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임용득을 제소하여 원고 피고가 적간도형하여 보고 하라는 제임을 받아서 면임에게 찾아가니 임용득이 포한으로 무식하여 취하여 행패를 부리니 잡아다가 관제를 무시하고 양반을 능욕한 죄로 치죄해달라는 소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신수묵辛修默, 신항정辛恒禎

여기에 삼가 분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 에서 아주 가까운 곳 산하촌山下村 구수면九水面에 사는 임용득林用得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투장偷葬한 일은 일전에 양소仰訴하였는데, 제음題音에 '먼저 양척兩隻을 세워서 조사摘奸하고 도형圖形을 그려서 보고 하라'고 하여 양척이 ... 면임面任에게 대변한 바, 저희는 관제官題를 받들어 구수 면임九水面任에게 찾아가 본 즉 면임이 마침 ... 때문에 추심하기가 어려워서 임용득에게 가서 면임의 거처去處를 묻고 양척이 도형을 그린 즉 이른바 임용득은 본래 포해浦海의 어리석은 백성으로 법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선 대취하여 발악을 하면서 '관제官題는 내가 아는 바가 아니고 도형圖形도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질욕叱辱을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 분수를 무시하고 무법적인 사람이 이 사람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소리를 함께 하여 인명안법仁明按法에 양소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임용득을 패자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관제를 무시하고 양반을 능욕한 죄를 먼저 엄히 다스린 후에 이른바 투총偷塚을 파가도록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무인년 4월 일

[제사]

양쪽에서 도형圖形을 하는데 비록 완한頑漢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 만약 가지 않으면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낙과落科하는 것이니 저자가 비록 매우 어리석어도 어찌 감히 이것을 모르겠는가? 면임은 엄히 신칙하여 잡아와서 양측에서 도형을 그리는 것이 의당하다.

행관 [서압]

道內化民辛誼默 · 辛修默 · 辛恒禎

右謹言憤痛情由段 □…□至近之地 山下村九水面居林用得爲名汗偷葬事 日前仰訴是乎 則

題音內 爲先立兩隻摘奸圖

形以報 兩隻亦□…□卞於面任教是乎所 民奉官題 往尋於九水面任 則面任適□…□面所致

難以推尋 故去林用得處 問其面任去處 而以爲兩隻圖形之道是乎 則所謂林用得 素是浦海蠢

氓 不知法意者也

姑爲大醉肆惡曰 官題非吾知 圖形非吾知 因以叱辱 罔有記極 世豈有蔑分無法 至於如此之

汗乎 茲敢齊聲仰訴於

仁明按法之下爲去乎 伏乞參商教是後 同林用得 發牌捉致 不有官題凌辱兩班之罪 爲先嚴治

後 所謂偷塚 以爲

掘去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戊寅四月 日

[題辭]

兩立圖形/ 雖頑漢必/往 若不往/ 則不待訟/ 而自爲落科/ 渠雖至愚/ 安敢不知此也/ 面任嚴飭

捉來/ 以爲兩立(圖形□(之)/地宜□(當)/事

行官[署押]

### 4-21) 1824년 화민化民 신상리辛象離 소지所志

【해설】 신가의 선산에 투장한 사람과 면임을 처벌하기 위하여 전령 등을 내렸으나 나타나지 않으므로 투장한 총묘를 위굴하여 총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려고 하니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 소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허락하지 않음.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상리辛象離, 신중현辛重鉉, 신한섭辛翰燮 등

여기에 삼가 원통하고 분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선산에 투장한 놈을 수포搜捕하기 위하여 여러 번 정소呈訴하여 지루하게 시청視聽을 번거롭게 어지럽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매우 죄송합니다만 사정私情이 절박한 것은 실로 그만둘 수가 없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효리孝理의 덕택을 입어 두 차례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하였는데 해당 면임이 끝내 수고搜告하는 길이 없으며 투장한 놈偷葬漢이 전혀 스스로 나타날 리가 없으니 저희들의 각골刻骨의 원통함은 끝내 설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투총偷塚을 위굴圍掘하고 무덤 주인을 잡아들일 것으로 이에 감히 양약仰籲하니 헤아리신 후에 특별히 제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갑신년 4월 일 신상리辛象離/ 신실辛實/ 신무辛懋

신용辛裕/ 신길辛桔/ 신해辛楷/ 신계辛楔/ 신중현辛重鉉

신태익辛兌翊/ 신한섭辛翰燮/ 신처묵辛處默/ 신관묵辛寬默

신기복辛基復/ 신기순辛基峯/ 신항표辛恒杓/ 신하업辛恒爨

신항렬辛恒烈 등

[제사]

사정私情이 긴박한 것이 어찌 이르지 않겠는가. 다만 이러한 일은 반드시 관가官家에  
정소할 필요도 없고 관가도 역시 허시許施할 일이 아니다.

28일

행관 [서업]

靈光化民 辛象离 · 辛重鉉 · 辛翰燮等

右謹言怨憤情由段 民等先山偷葬漢搜捕次 累度呈訴 非不知支離傾瀆於視聽之下 殊涉罪悚 而私情  
之切迫 實出於不能自己者是白齊 幸蒙

孝理之德澤 不以爲煩兩度傳令於該面任是乎矣 該面任終無搜告之道是乎旣 偷葬漢 萬無自現之理  
是乎 則民等刻骨之冤痛 竟無可雪之路 故所謂偷塚掘掘 而以待塚主之現捉次 茲敢仰籲

參商教是後 特爲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甲申四月 日 辛象离/ 辛實/ 辛懋/ 辛榕/ 辛桔/ 辛楷/ 辛楔

辛重鉉/ 辛兌翊/ 辛翰燮/ 辛處默/ 辛寬默/ 辛基復/ 辛基峯/ 辛恒杓

辛恒業/ 辛恒烈 等

[題辭]

私情所迫 何/所不至 但此等/之事 不必呈/於官家 官家亦/非許施之事/向事

廿八

行官[署押]

#### 4-22) 1840년 겸민兼民 신굉규辛宏珪 소지所志

【해설】 선대 산소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이행년을 잡아다 치죄할 것을 요청한 소지. 도형을 그려오라  
고 함.

영광靈光 겸민兼民 신항정辛恒禎, 신항언辛恒彦, 신항룡辛恒龍, 신굉규辛宏珪 등

여기에 삼가 분박憤迫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8대조고 참의공, 7대조고 참봉공  
의 분묘에서 지척의 안산에 이행년李行年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능장勒葬을 ... 인 바, 대  
개 이 분묘를 수호하고 금양禁養한 것이 삼백여 년이어서 사산四山 안에 원래 다른 사람  
이 범장犯葬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유독 이행년이 저희들이 고약孤弱한 것을 우습게  
보고 감히 능장할 흉계를 내서 포구 주변의 무뢰배들을 많이 끌고 와서 한편으로는 구

박毆縛을 하고 한편으로는 녹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위 법은 멀고 호랑이는 가깝다는 것, 머리는 배에 미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의 지극히 원통한 것이 구구절절 이와 같습니다. 다만 엎드려 생각건대 이미 본군에 도형圖形 및 면임面任의 문장文狀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주께서는 특별히 흉년 백성의 형편을 살피셔서 소위 이행년을 바로 잡아와서 처결한다는 뜻으로 제음을 내려주시기를 행하해주십시오.

검성주兼城主 처분處分

경자년 4월 일

[제사]

보수步數가 얼마인지 모르고 가벼이 금할지 금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송체訟體가 아니다. 전의 제음에 따라 도척圖尺을 해올 것.

16일

검관兼官 [서업]

靈光兼民辛恒禎·辛恒彦·辛恒龍·辛宏珪等

右謹言憤迫情由事 民等以八代祖考參議公七代祖考參奉公墳墓咫尺之案 李行年無前勒葬之

□□□訴是乎所

大抵右墳墓守護禁養三百餘年 而四山之內元無他人犯葬之弊 而惟獨李行年 蔑視民等孤弱

敢生勒葬之凶計 多率浦邊

之無賴輩 一邊毆縛 一邊勒葬 則此所謂法遠虎近 鞭難及腹 民等之至冤 節節若是 而第伏念

既有本郡圖形及面任文

狀 伏願城主 特察歎年民勢教是 所謂李行年 卽爲捉來處決之意 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庚子四月 日

[題辭]

不知步數爲幾/許 輕定當禁與/不當禁 大非訟/體 依前題 圖/尺以來事

十六日

兼官[署押]

#### 4-23) 1840년 유학幼學 신항룡辛恒龍 의송議送

【해설】 선대의 분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이행년이 이를 막으려는 주인 일행을 포구 주변의 무뢰배



수십여 인을 끌고와 결박하고 난타하여 병으로 누워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수백 년 된 고충에 대해서는 면임이 사보하였으나 모두 자신들에게 도로 내주었음. 먼저 양반을 구타한 죄를 다스린 후에 투총한 것을 파기도록 해주기 바라는 의송.

영광靈光 유학幼學 신항정辛恒禎, 신항언辛恒彦, 신항룡辛恒龍 등

여기에 의송議送을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 8대조 참의공, 7대조 참봉공의 분묘가 본군 구수면九水面 은선동隱仙洞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호한 것이 삼백여 년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한 점도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개 저희들의 8대조는 지난 임진왜란 때에 성묘聖廟에 공이 있고 7대조는 갑자, 정묘 호란 때에 적개심으로 왕실을 지켜서 공로가 일대一代에 현저하였고 이름이 백세百世에 전해져서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모두 경모景慕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작년 10월에 산하촌山下村 한시랑韓侍郎에 사는 이행년李行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사람은 본래 어리석은 포구 백성입니다만, 법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아서 지척인 곳에 몰래 투장偷葬을 한바, 저희들은 대대로 고혈孤子하여서 8대 자손이 관冠을 쓴 사람이 겨우 3인입니다. 그 급보를 듣고 전도顛倒하며 가서 보니 부지불각지간不知不覺之間에 위 이가 높이 그 포구 주변의 무뢰배 수십여 인을 몰고 와서 한편으로는 결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난타亂打를 하여 어떤 자는 사력沙礫 위에 넘어 지기도 하고 어떤 자는 깊은 골짜기에서 밀고 차인 바, 저희들의 종형宗兄 신항정辛恒禎이 나이가 장차 70인데 그 난장亂杖을 맞아서 엎고서 귀가를 하고 이어서 병져서 누워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세 번이고 문밖에 나가지 못한 것이 여러 달입니다. 그때를 당하여 본관本官에서 조사摘劄을 하여 이미 자세히 일고 있습니다.

또 이가 높은 그 수백 년 된 주인 없는 고충古塚을 가리키며 저의 외조부모의 무덤이라고 하니 본관에서 해면의 면임에게 분부하여 조사 보고하게 하니, 면임의 조사 보고에서 그 고충을 밝힌 것이 역시 명확하니 세상에 어찌 저러한 윤리를 어렵게 하고 의리를 무시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산도山圖와 면임의 사보查報 문장文狀을 형청刑廳에 몇 달이나 두었다가 모두 저희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산송에 있어서는 바로 퇴송退送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민박悶迫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하나로 하여 관찰사의 효리孝理 하에 호소하오니 바라건대 세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의 이행년은 사나운 차사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그가 양반을 결박하여 구타한 죄를 먼저 중한 죄로 처벌하고 그후에 소위 투총偷塚은 즉각 파웁겨서 한편으로는 선현先賢을 흠모하는 풍조를 세우시고 한편으로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행하 해주십시오.

순사도巡使道 처분

경자년 3월 일

[제사]

도형을 조사[摘奸圖形]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본관本官에게. 초4일.

행사行使 [서업]

靈光幼學辛恒禎·辛恒彥·辛恒龍等

右議送事 伏以生等之八代祖參議公七代祖參奉公墳墓 在於本郡九水面隱仙洞 而至今守護者三百餘年之間 無他人一点塚色是齊 大抵生等之八代祖 奧在壬亂 有功聖廟 七代祖 在甲子丁卯之亂 敵愾王室 功顯一代 名傳百世 雖愚夫愚婦 皆知景慕是白加尼 不意去年十月良中 山下村韓侍郎居李行年爲名漢 素是蠢蠢浦氓 不顧法義 暗爲偷葬之計 於相望咫尺之地是乎所 生等世世孤子 八代子孫 冠纔三人 聞其急報 顛倒往赴 則不知不覺之間 同李漢 驅其浦邊無賴輩數十餘人 一邊結縛 一邊亂打 或者曳倒於沙磧之上 或者擠蹴於深谷之中是乎所 生等之宗兄辛恒禎 年將七十 逢其亂杖 擔而歸家 仍以病臥 則既絕復甦者三次矣 不出戶庭者數朔矣 當其時 自本官摘奸 已爲詳悉是矣 且李漢指其數百年無主古塚 稱以爲渠之外祖父母塚云 則自本官分付該面面任查報是如 面面任查報內 明其古塚 亦爲昭然 則世豈有如許難倫蔑義者乎 山圖與面面任查報文狀 留置刑廳者數月是如可 盡爲出給於生等是白遣 至於山訟 卽爲退送是乎所 茲敢不勝悶迫 齊聲仰籲於觀察孝理之下爲去乎 伏乞細細洞燭教是後 同李行年 發猛差捉致 爲先重繩 其結縛毆打兩班之罪 然後所謂偷塚 卽刻掘移 一以樹慕先賢之風 一以無愧於後昆之地

千萬祈懇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 處分

庚子三月 日

[題辭]

摘奸圖形 詳查/報來事

本官初四日

行使[署押]

#### 4-24) 1841년 수옥민囚獄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이 문서부터는 죽인 간의 都先山 소유권 用益權을 둘러싼 분쟁이 주요 쟁점이다. 선산의 구목을

방매하는데 종인 신기순 등이 60량을 요구하였다. 안주면 수영에 정소하겠다고 함. 도선산都先山 산송은 신행업과 신복현이 원고, 피고가 되어 진선津船, 향교, 아사橋舍 수리를 위한 구목丘木 매도와 이에 따른 수영水營에의 정소呈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내道內에 사는 수옥민囚獄民 신행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원박冤迫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형제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몸이었는데, 아 슬프다, 나뉘어져서 길거리의 사람이 되기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옳드려 생각건대 옛 사람이 길거리의 사람으로 나뉜 것도 오히려 슬프게 생각하였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찌 풍속이 그리 야박하여 마치 한 터럭이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길이 있다면 백 가지로 구함構陷을 하고 한번도 되돌아보며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시 같은 부모의 한 몸이 나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형제의 한 동기가 연결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대저 저의 13대조가 낙향한 후에 11대조 형제가 처음으로 도동리陶洞里와 입석리立石里 두 촌으로 나누어 거주하였는데 도동과 입석은 바로 한 길 사이입니다. 전도田土와 시장樂場이 그 길의 북쪽에 있는데 종가宗家에서 차지하였고 그 길의 남쪽에 있는 것은 저의 집에서 차지하여 지금까지 수호한 것입니다. 연기年紀로 말하자면 400년이고 지금까지 입장入葬한 것이 대수代數로 말하자면 11대입니다.

옳드려 생각하면 금년 3월에 저의 사산등私山嶺의 구목邱木이 충식蟲食하여 약간을 방매하였는데, 그 연유와 내력은 성주께서 이미 잘 알고계십니다. 당초에 소나무를 파는 날에 종인宗人 신기순辛基峯, 신복현辛復鉉이 비리非理의 욕심을 갑자기 내어 돈 60량을 징색하면서 만약 주지 않으면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呈訴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길이 한번 열리면 후폐後弊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재산을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후폐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에 정소함에 미쳐서는 저의 사산私山을 가리켜 도선산都先山이라고 하면서 연목椽木의 재목을 동괵棟檁이라고 하고 20량의 가격을 200량이라고 칭탁하면서 허구를 만들어 거짓으로 정소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땅에 사는 종인들은 그의 잘못을 이미 알아서 그 불가함을 알아서 다른 관에 여러 세대를 살던 객거客居 족속들과 동모하여 이름을 나열하고 항렬을 이루어서 함께 관정官庭에 들어가서 그 무소를 하는 것이 역시 이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번 취송就訟할 때에 저는 엄히 구속된 것이 세 차례이며 세 차례나 죄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 송금松禁을 범한 율로 논한다면 그 죄가 죽어도 풀려날 길이 없으나 만약 11대 구묘邱墓의 땅과 400년 수호한 땅이 종인宗人의 무소呈訴에 들어가

서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남의 자손이 되어 불초한 모습은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억울함은 그 통곡이 하늘에까지 미칠 것이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으나 병들어 아프게 부모를 부르고 원망을 그리워하며 천지에 호소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성주 합하께서는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니 저가 어찌 한번 불리보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밝은 판결이라는 혜택을 받아서 저의 백세의 주석(柱石)이 되는 문장이 되게 해주신다면 살아서는 꽃을 품고(含蕊) 죽어서는 결초보은 할 것이니 천만 축수하며 기원하는 것입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5월 일

道內居囚獄民辛恒僕

右謹言冤迫情由事 昔蘇氏有言曰 兄弟其初一人之身 而悲夫分而至於塗人 伏念古之人 以塗人之分 猶以爲悲 而今之人 何俗之薄

如有一毫利己之道 百端構陷 一無顧戀 此亦同父母一身之分乎 此亦同兄弟一氣之連乎 大抵民之十三代祖落鄉之後 至十一代祖兄弟 始爲分居于陶

洞里立石里兩村 則陶洞立石卽一路之間也 田土柴場在其路北者 自宗家次知是遣 在其路南者 自民家次知 于今守護者 以年紀言之 則四百

年也 至今入葬者 以代數言之 則十一代也 伏以今年三月良中 民之私山嶝 蟲食邱木 如干放賣 緣由來歷 城主旣爲諗察是白齊 當初賣松之日

宗人辛基峴 辛復鉞 橫生非理之欲 索錢六十兩是矣 若不給之 則往呈水營之意 威脅是乎所事至此境 反而思之 則此路一開 後弊難知 故民之不給

其錢 非惜其財也 以杜後弊之故也 及其呈營也 以民之私山 指以爲都先山 以椽木之材 稱以爲棟槨 以二十兩之價 托以爲二百兩 構虛誣呈 無所不至

是矣 及其就訟也 居茲土宗人 旣知其非 知其不可 與同謀他官數世客居之族 列名成行 同入官庭 其爲誣訴 亦爲無所不至是乎所 至於累

度就訟之際 民嚴囚三次是乎矣 三度受罪是乎所 如論其犯松之律 罪死難釋是乎乃 若使十一代邱墓之壟 四百年守護之地 入於宗人誣訴

中 一朝見失 則爲人子孫不肖之狀 已無足言論 而其爲冤枉 懷慟窮天 死不閉目 病痛之呼父母 怨慕之訴天地 人之常情也 而伏惟

城主閣下 天地父母 民豈無一呼一訴之道哉 伏乞細細洞燭教是後 另加哀憐 特蒙明決一字之澤 爲民百世柱石之文 則生當

含花 死當結草 千萬祝手祈懇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五月 日

#### 4-25) 1841년 화민化民 신경辛敬 소지所志

【해설】 문중 선산 문제로 정소하였는데, 신경은 문장으로서 신항업을 제각으로 불러도 오지 않고 문인을 보내니 신항업과 그 친족들이 때리고 문얼이라고 욕을 보임. 항업을 불러서 위 문중 얼족이라는 설을 분간해주기 바람.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경辛敬

여기에 삼가 분완憤惋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문중門中에서 선산先山 문제로 어제 정소呈訴를 하니 문중에 제음을 내렸습니다만, 제가 문장門長의 이름을 무릅쓰고 있어서 다른 여러 동족과 함께 제각祭閣에 모여 항업恒業을 불러서 오게 하니 여러 가지로 피하면서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아서 또 문인門人을 보내니 항업이 그 자서제질子孀弟侄과 함께 그를 끌어내고 발로 차서 문중을 꾸짖고 욕을 보였습니다. 또 하물며 문얼門蘖이라는 말로 저를 욕을 보이니 기타 해패駭悖하게 모독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끝내 관지官旨를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렇게 무엄하고 해패한 것이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우러러 안법按法 아래에 호소하오니 통촉하신 후에 위 항업을 법정에 잡아들이고 위의 문얼이라는 말을 분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서업]

신축년 윤3월 일

[제사]

문중門中에서 적절히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영에 정소할 것.  
30일.

道內化民辛敬

右謹言憤惋情由事 民之門中 以先山事 昨日呈訴 則題下門中教是乎所 民冒添門長之名是如  
乎 與他諸族 齊會祭閣 招致

恒慳是乎 則百般曲避 至暮不來 故又送門人 則恒慳與其子婿弟侄 曳而蹴之 叱辱門中是乎  
 迹 又況以門藥之說 汚辱於民是

如乎 其他駭悖 不可盡瀆也 以是而終不得曉諭官旨 世豈有如許無嚴駭悖之甚者乎 茲敢緣由  
 仰諭於

按法之下 洞燭教是後 同恒慳 捉致法庭 上項門藥之說 分揀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署押]

辛丑閏三月 日

[題辭]

自門中 量/宜勘處 不然則往呈于/水營向事

卅日

#### 4-26) 1841년 화민化民 신규현辛圭鉉 등 소지所志

【해설】 신경 등 문중 구성원들이 신항업이 선산 구목을 몰래 판 일에 대하여 송가를 문중에서 받도록 해달라는 문서. 미발未發.

도내道內 화민 신경辛敬, 신태익辛兌翊, 신한섭辛翰燮, 신기순辛基詢, 신기문辛基玟, 신성표辛性表, 신규현辛圭鉉, 신복현辛復鉉, 신기찬辛基燦 등

여기에 삼가 분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은 지난 번에 신항업辛恒業이 선산先山을 빼앗아 구목邱木을 몰래 판 일로 여러 번 원래의 성주에게 정소하여 성주께서 저희들의 지원至冤을 통촉하여 항업恒業의 죄상을 결장決杖을 하고 뇌수牢囚를 한 뒤에 다짐[拷罰]을 받고 결안決案을 성급해주어 한편으로는 유명幽明의 원冤을 설원하였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폐단을 막았습니다. 이는 실로 항업의 간활함이 신명神明한 성주에게서는 도망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원박冤迫한 사정도 역시 공홀히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주께서는 하늘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은택으로 저희들이 비록 뇌를 깨고 심장을 잘라서 머리를 드리고 결초보은해도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밤낮으로 동동거리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신명같은 성주의 돌아봄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해와 달 같은 고명한 성주께서는 반산음곡半山陰谷이 그 빛을 헤쳐도 하해河海와 같은 넓은 도량이 하나의 자갈로 그 흐름이 지체됩니다. 그렇다면 고명하

신 성주에게 누가 될 것이고 크나큰 성주의 아량에도 흠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성주께서는 일월과 같이 고명하고 하해와 같이 넓습니다. 지금 공결公決을 내려 저희들을 신원伸冤이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으니 어찌 고명하고 홍대한 것에 누와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결송에서 신원하는 날 성주께서 분부한 중에 “선산은 사산이 아니니 다짐을 받아 분간하여 결급하겠거니와 송가는 종종에서 책납할 것”이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은 종종에서 회의하여 처리하려고 물러나와서 바로 통문을 발하여 전유하여 각처에 소송한 사실을알리려고 할 때에 완악한 저 항업은 그만두려고 하지도 않고 끝내 후회하고 깨닫는 길이 없이 한결같이 악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올린 소지를 끝내 다 주지 못하고 팔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말하기를 “관에서 분부가 있는 후에 송가 200량을 문중에 납부하겠다.”고 하니 그 심사를 보면 정말 괴이합니다.

저자가 범한 죄는 비록 형으로 매를 치고 정배定配를 한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형으로 때리지도 않고 정배를 하지도 않으며 특별히 은택을 입은 것 같이 하니 저자에게는 매우 다행이지만 세 번 결장決杖을 하여 죄가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200량 선산의 구목을 판 돈을 갚겠으며 또 하물며 항업은 제가 향중鄉中의 호부豪富로서 이번 이 200량 돈은 저에게는 더욱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저 못된 자에게 이 돈을 먹게 해서 더욱 부익부가 되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저희들 빈잔하여 보충할 곳이 없는 문중이 헛되이 구목을 잃고 못된 놈의 손에 팔게 하여 잃고서 선영에 향화를 올리는 공물이 없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항업은 이미 말하기를 “송가 200량은 관의 분부가 있는 후에 문중에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니 엿드려 생각건대 성주께서는 왜 한 번 명령 내리는 것을 아껴서 그의 부익부하는 외람된 욕심을 장려하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서 이 부족한 문중에 보충하게 하지 않습니까? 심한 것은 항업의 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첩소牒訴를 성주께서 청람聽覽하시니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이는 화외化外의 것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용서하겠습니까? 이에 다시 사유를 갖추어 양약仰籲하오니 바라건대 통촉하신 후에 송가 200량을 즉각 문중에 추심해서 주시고 위 항업에게는 엄명하게 제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6월 일

道內化民辛檄·辛兌翊·辛翰變·辛基峴·辛基玟·辛性表·辛圭鉉·辛復鉉·辛基燦等  
右謹言憤痛情由事 伏以民等 向以辛恒慄 抑奪先山 偷賣邱木事 屢度呈原城主教是 洞燭民等  
之至冤 恒慄之罪狀 決杖牢囚之餘 捧俦音決案成給 一以雪幽明之冤 一以杜日

後接踵之弊教是乎所 此實恒慄之奸猾 莫逃於神明之下 而民等之冤迫 亦有所矜悶然者也 惟  
 我城主 如天莫量之澤 民等雖破腦剗心 殞首結草 無以報萬一矣 感激  
 無任 夙夜憧憧 庶竭尺寸 恐負我神明之所眷焉 竊伏念 日月高明 而半山陰谷 須損其光 河海  
 弘大 而一磯所激 猶滯其流 然則高明之所累而弘大之所欠也 顧我城主  
 高明如日月 弘大如河海矣 今者公決之下 民等伸冤 猶有所未盡 則豈不為高明弘大之所累欠  
 乎 曩者 民等決訟伸冤之日 城主教是分付內 先山而非私地 捧俸音分揀決給是在  
 果 松價段 自宗中責納為良教是乎等以 民等宗中會處之意 退即發文傳諭 以辨訟事實於各處  
 之際 頑彼恒慄 靡所止戾 終無悔悟之道 一向肆惡 前後所呈所志 終不盡給 揚臂大談  
 曰 有自官分付 然後松價二百兩當納于門中是如為乎尼 究厥心跡 良可怪也 渠之冒犯之罪 雖  
 刑極焉定配焉 固無所惜 而不刑捶不定配 特蒙如傷之澤者 於渠極幸 三度決杖 罪歸于  
 作也 然則豈可贖二百兩先山邱木所賣錢是乎旋 又況恒慄 渠是鄉中豪富 則今此二百兩錢 於  
 渠則富益富也 使渠不肖者甘食此錢 富益富可乎 使民等貧殘莫補之門中 空失邱木  
 所賣於不肖者之手 無以補先塋香火之供可乎 恒慄既曰 松價二百兩 有官分付 然後即納門中  
 云爾 則伏惟城主 何愛一令之令 盍勵其富益富之濫慾 盍捧其所當捧之捧 以  
 補此所不足之門中乎 甚矣恒慄之不肖也 民等牒訴 城主聽覽 不勝其煩擾 以致於此極 誠是化  
 外 豈可少有哉 茲更具由仰籲 懇乞洞燭教是後 松價二百兩 卽刻推  
 給於門中之意 同恒慄處嚴明題下為只為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六月 日

#### 4-27) 1841년 화민化民 신기년辛基年 등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 등이 선산 송추를 마음대로 판 대금을 종종에 돌려달라는 소지. 해문 30리에서 사양산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조령. 그래서 수영에 제소함.

도내면道內面 화민 신태익辛兌翊, 신한섭辛翰燮, 신명도辛命道, 신영묵辛永默, 신기순辛基純, 신기묵辛基默, 신기년辛基年, 신기문辛基文, 신기찬辛基燦 등

여기에 삼가 원분冤憤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저희들 문인門人 신항업辛恒業이 선산의 송추松楸를 몰래 판 것을 가지고 수영水營에 함께 고소하였더니, 제음에 “해문海門 30리의 사양산私養山은 일체 금양禁養하는 것이 조령朝令인데 임장任掌은 왜 금단의 길을 생각지 않고 산주山主는 왜 돌아보고 꺼리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사양私養이라고 하고 이처럼 낭자하게 범벌犯伐을 하니 요즈음 기강이 비록 해이해졌다고 해도 어찌 그런 도리가 있겠는가? 번와燔瓦 물주物主와 신향업을 우선 잡아 구속하고 보고하라는 뜻으로 본군에 관문關文을 보낼 것”이라고 행하行下하셨는 바, 지금 대변對下을 하여 신향업이 올린 소장을 보니 저희들 선조가 낙향한 처음에 도동陶洞, 입석立石 두 촌으로 나누어 거주하면서 한 조각의 땅 한 자의 토지라도 바로 한 그루의 풀과 나무라도 길 위와 길 아래로 경계를 나누어 차지했다고 운운한 것은 진실로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대개 선산을 종가에 전해주 — 것은 예법禮法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11대조는 지자지손支子支孫입니다. 선산이 어찌 지손에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 향업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예법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의 선산은 하나의 평강잔산平崗殘山입니다. 낙향한 이후에 대대로 계장繼葬한 곳인데, 빌려서 말하자면, 좌변左邊은 저 사람의 11대의 땅이고 우변右邊도 역시 저 사람의 11대 이후 부조父祖 이상을 계장繼葬하고 수호守護하였다고 하니, 한 조각의 땅도 안되는 것에서 어디가 선산이고 어디가 저의 사양私養이겠습니까? 거의 천 그루가 되는 크고 작은 송가松價 200량 돈을 단지 20량이라고 거짓으로 고하니 실로 탐람한 것이 맹랑하며 또 성전聖殿을 중수重修하는 문제라고 핑계 대고 부득이 작매斫賣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묘하게 꾸미고 차면遮面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작매斫賣할 때에 성전을 중수한다는 것은 일찍이 발론發論한 바가 없는데, 지금 이 한마디는 잠시 한 쪽의 말을 빌린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산의 소나무가 요즈음 벌레를 먹어서 마르고 굴곡져서 재목이 될 수가 없다”고 한 것도 거짓으로 고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산의 소나무는 싹이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한 잎도 일찍이 벌레 먹은 일이 없이 병 없이 잘 자라서 좋은 재목이 되었다는 것은 비단 한 문중에서 익숙하게 본 것 뿐만이 아니고 바로 한 면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저 사람이 감히 소설로 그 필설을 만들고 그 얼굴을 장식하여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여 삼척三尺의 법에서 도망하려고 하는데, 신감神鑑이 크게 보고 있으니 어찌 무망誣罔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엮드려 생각건대, 향업은 두세 명의 문중 사람 신기복辛基復, 신광한辛光漢, 신광섭辛光燮, 신향렬辛恒烈, 신향윤辛恒潤 등과 부화뇌동하여 이익을 가지고 꼬여서 거짓말을 날조하여 몰래 관가에 고소하여 선산을 가리켜 선산이 아니라고 하니 저도 모르게 한심할 뿐입니다. 아! 사람이 못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 손이 독을 품었어도 열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덮을 놓은 것이 비록 교묘하다고 해도 도깨비[魑魅]는 우정禹鼎을 벗어날 수가 없고 연치妍媸는 요경瑤鏡에서 스스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찌 그 기교機巧한 술법을 믿고 신명神明의 지엄至嚴함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까? 대개 구목을 몰래 파는 것은 이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가에 고소하여 그 죄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의 바른 것입니다. 이치가 굽어졌다면 어디에 간들 굽어지지 않겠으며 이치는 반드시 바른 것이니 어디에 간들 펴지지 않겠습니까? 옳드려 원하건대 밝은 판결로 처리하셔서 송가松價 200량 돈을 관정官庭에서 받아서 주셔서 문중에 보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윤3월 일

[서업]

[제사]

서로 번갈아가면서 정소呈訴를 하니 마치 편당偏黨이 있는 것 같다. 시비를 가릴 수가 없다.12일

道內面化民辛兌翊·辛翰燮·辛命道·辛永默·辛基純·辛基默·辛基年·辛基玟·辛基燦等  
右謹言冤憤情由事 伏以民等門人辛恒慳 偷賣先山松楸事 齊訴水營是白加尼 題音內 海門  
三十里私養山之一體禁養 自是朝令是去乙 任掌焉不思禁斷之道 山主焉無所顧忌之心 謂  
之私養

而若是浪[狼]藉犯伐 挽近紀綱雖曰解弛 寧有如許道理乎 燔瓦物主與辛恒慳 爲先捉囚報來  
之意 發關本郡向事 行下教是乎所 今者對下之下 伏見辛恒慳呈訴是乎 則民等先祖落鄉之  
初 分居陶

洞立石兩村 片土尺地 乃一草一木 以路上路下分界次知云云者 誠極可呵處也 大凡先山之傳  
宗 禮法之當然也 則渠之十一代祖 卽支子支孫也 先山豈可傳于支孫乎 然則恒慳之言 蔑  
法沒禮明矣 民等先山 不過一平

崗殘山也 落鄉以後 世世繼葬之地是去乙 借言以左邊爲渠之十一代之地 右邊亦爲渠十一代  
以後父祖以上繼葬守護云爾 則不過一片之地 何地爲先山 何地爲渠私養乎 近千株大小松  
價二百兩錢 只以二十兩瞞告

實是孟浪之貪婪是乎旡 且又托言以聖殿重修事 不得已斫賣云者 此亦渠不過巧飾遮面之說  
也 當初斫賣時 則聖殿重修 曾無發論是去乙 今此一言 借其暫時一隻之言者明也 又曰此  
山之松

比年蟲食 枯損屈曲 不得成材云者 亦是瞞告明矣 此山之松 自未茁之前至于今 一枝一葉 曾  
無蝕損 無恙善茁 以成品材者 非但一門之所慣見也 卽一面之所共知也 渠敢以不經小說  
利其筆舌 粧其縉面 皂以

爲白 東以指西 欲以逃三尺之律 而神鑑孔昭 豈容誣罔 又伏聞恒慳 符同二三門人辛基復 辛  
光漢 辛光燮 辛恒烈 辛恒潤等 陷之以利 捏造虛辭 暗訴官家 指先山曰非先山 自不覺寒

心矣 嗚呼 人  
 之不肖 一何至此 人之不淑 一何至此 一手雖毒 十日難掩 渠之設機 雖曰巧矣 而魑魅莫逃於  
 禹鼎 妍媸自明於瑤鏡 奈何徒恃其機巧之術 而不畏神明之至嚴乎 大抵偷賣丘木者 理之曲  
 也 訴于官 舉  
 其罪者 理之直也 理苟曲矣 何往不屈 理必直矣 何往不伸 伏願明決處之 松價二白兩錢 自官  
 庭捧給 以補門中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閏三月 日  
 [署押]  
 [題辭]  
 迭相呈訴/ 有若偏黨/者然 莫辨/是非事  
 十二日

#### 4-28) 1841년 화민化民 신명도辛命道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이 문중 선산 송목을 투매한 것은 돈 욕심이 아니라 종통을 빼앗으려는 것. 송금에 관한 것은 따로 정소할 곳이 있다는 제음.

도내道內 화민 신태익辛兌翊, 신한섭辛翰燮, 신명도辛命道 등  
 여기에 삼가 분원憤冤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호소하는 정경이 하늘에 빛이 없는 것 같으니 지원至冤을 이길 수가 없어서 피를 흘리며 원래의 제음을 문중에 내렸으며, 월소越訴 문제로 순순히 분부를 엄명하셨는 바, 진실로 황공하고 전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깊이 합하閣下에게 복종하고 오로지 덕화에 힘쓰는데 지극한 정성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회오悔悟를 발하게 하여 지극한 감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개 지금 수영에 정소한 것은 실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로愚魯한 우유迂儒로서 조박糟粕에 빠져서 다만 송금松禁만을 알 뿐이어서 죄는 실로 아깝지 않습니다만 이 펴지 못한 지극히 원통한 정에 죄를 준다면 일시一視의 은덕 아래에서 어찌 향우向隅의 탄식이 없겠습니까? 대개 항업은 부유해서 당초에 소나무를 작별할 때에는 돈에는 욕심이 없었고 오로지 종통宗統을 빼앗으려는 계책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향한 후에 세상世葬한 선산先山을 저의 사산私山이라고 하는 것이

니 그 심보를 추구해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제음에 의거하여 문중이 모두 모여서 향업을 초치하기를 두 번 세 번에 이르렀습니다만 끝내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문중 사람이 가서 불러오려고 하니 향업이 그 자서제질子壻弟姪과 함께 목을 잡고 끌어내어 발로 차면서 문중 및 문장門長을 비참하게 욕을 보였으니 그 끝이 없습니다. 결코 떳떳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 사육에 가려서 의리가 모두 손상이 되고 관령官令을 준수하지 않아서 문중에서 처치하려고 아무리 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삼장三章의 전장이 아니라면 징려懲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 공이 말하기를 “죄에 복종하고 사실을 말하면 비록 중한 죄라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인명仁明한 합하閣下께서는 이것을 참작하여 죄줄 것은 죄를 주고 원통한 것은 원통한 것 대로 해서 이 호천고지號天叩地的 애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향업을 법정에 잡아들여 법률에 따라 감처勘處하셔서 그 악습을 징계해주시고 선산은 다시는 침탈하지 않겠다는 뜻을 관정에서 다짐을 받아 입안으로 성급해주시고 송가松價 200량은 바로 받아주셔서 문중을 보조해주신다면 머리를 드리워 절초보은할 것입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윤3월 일

[서업] 신규현辛圭鉉/ 신치현辛致鉉/ 신기찬辛基燦

신기문辛基玟/ 신기년辛基年/ 신기묵辛基默/ 신형섭辛衡燮

신창섭辛彰燮/ 신흥섭辛洪燮/ 신철섭辛哲燮/ 신기순辛基純

신영묵辛永默/ 신성표辛性表/ 신명도辛命道/ 신한섭辛翰燮

신태익辛兌翊/ 신복현辛復鉉/ 신구현辛九鉉/ 신달현辛達鉉

신종현辛宗鉉 등

[제사]

송금松禁이라는 명목은 원래 가서 정소呈訴할 곳이 있다.

30일

道內化民辛兌翊 · 辛翰燮 · 辛命道等

右謹言憤冤情由事 伏以嗚呼情景 天日無光 不勝至冤 泣血呈原題下門中教是乎途 以越訴事 諄諄然 嚴明分付教是乎所 誠惶誠恐 不勝戰

慄之地 深服閣下 專務德化 以其至性之不容已者 起發悔悟也 無任感激之至 大抵今者 呈營 實非他也 民等以愚魯迂儒 昧此糟粕 但知松禁之所

典以然也 罪實無惜 而罪于此未伸至冤之情 則一視之下 豈無向隅之歎乎 盖以恒慄之富 當初 斫松者 意不在錢財之慾 專在奪宗之計 故民等落鄉後 世葬

先山 謂以渠之私山云者 究厥心跡 豈不寒心 民等昨日題音據 一門齊會 招致恒僕 至再至三  
終隱不見 故數三門人 專往招來 則恒僕與其子婿弟侄 扼項  
曳蹴 慘辱門中及門長 罔有記極 決難以秉彝言施也 噫私慾所蔽 義理都喪 官令無違 自門中  
處置 百爾無奈 如非三章之典 無以懲勵矣 諸葛公有  
言曰 服罪輸情者 雖重必釋 伏乞仁明閣下 參之酌之 罪其罪寃其寃 俾伸此號天叩地之慟是白  
乃 同恒僕 捉入法庭 依律勘處 以懲其習是白遣 先  
山更不侵奪之意 自官庭捧俵音立案成給是白遣 松價二百兩 卽刻捧給 以補門中之地 殞首結  
草之報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閏三月 日

[署押] 辛圭鉉/ 辛致鉉/ 辛基燦/ 辛基攻/ 辛基年/ 辛基默/ 辛衡燮  
辛彰燮/ 辛洪燮/ 辛哲燮/ 辛基純/ 辛永默/ 辛性表/ 辛命道/ 辛翰燮  
辛兌翊/ 辛復鉉/ 辛九鉉/ 辛達鉉/ 辛宗鉉等

[題辭]

以松禁爲名/ 則自有往/呈處事

卅日

#### 4-29) 1841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 신영규가 자신의 아버가 종종 구목을 투매하였다고 고소하여 곤장을 맞고 구속이 되어 죽게 생겼으니 대수하거나 주인보수하여 풀어주기를 바라는 소지. 투작(매)했는지를 조사하라는 처분.

도내道內 화민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삼가 피눈물을 흘리며 민박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얹드려 생각건대 저의 아버지가 사산私山이 구목邱木 문제로 두 번이나 성주의 결처決處를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종인宗人 신기순辛基峴, 신복현辛復鉉 등이 10여 그루를 다시 몰래 팔았다는 뜻으로 관정官庭에 무소誣訴하였습니다. 저의 아버를 엄히 곤장을 치고 수금囚禁한 후에 묵은 병에 더욱 악화되어 음식을 전폐하여 사생死生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된 정리情理로서는 매우 민박悶道합니다. 이에 효리孝理 아래에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하늘과 같은 은택을 내려서 제가 대신 구속되게 하거나 주인보수主人保囚를 하거나 양단간에 처분하여 하여금 병을 조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추松楸를 몰래 팔았다는 것은 먼저 조사摘奸를 할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만약 다시 몰래 파는 길이 있다면 역시 반드시 몰래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신기순, 신복현에게 엄히 조사심문을 하시면 저의 몰래 판 진위와 저들이 무소誣訴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미루어보면 신기순, 신복현이 거짓으로 읍과 영營에 무소誣訴를 한 것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마치 간폐肺肝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세히 통촉하여 처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5월 일

[서업]

[제사]

송추를 몰래 팔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올 것.

형방. 24일.

道內化民辛齡奎

右謹言泣血悶迫情由事 伏以民之父 以私山邱木事 兩度城主決處之下 不意今番良中 宗人辛基峴

辛復鉉等 十餘柱更爲偷賣之意 誣訴官庭是如 民之父 嚴杖囚禁之後 宿病添劇 飲食專廢 死生未分是齊 爲

人子情理 極爲悶迫是乎所 緣由仰訴於孝理之下 伏乞幸蒙如天之澤 以民代囚是白去乃 主人保囚是白去乃 兩端間處分

俾得調病之地是白乎尔 至於偷賣松楸事 爲先摘奸芬除良 使民若有更爲偷賣之道 亦必有偷賣之人 嚴加查

問於辛基峴 辛復鉉處 則民之偷賣眞爲[偽] 渠之誣訴與否 昭然可知 推此一款 辛基峴 辛復鉉 構虛誣呈 于邑于

營 無所不至 如見肺肝 特爲細細洞燭處分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五月 日

[署押]

[題辭]

松楸之偷賣(斫)/與否 詳爲/摘奸以來/事

刑 廿四

#### 4-30) 1841년 화민化民 신태명辛兌明 소지所志

【해설】 신복현 등이 신헌업의 사산 구목 투매 대금을 위선이니 문중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수영에 정 소하여 100량을 받아내서는 문중에 내지 않고 사사로이 썼으니 찾아달라는 소지.

도내道內 화민 신태명辛兌明 등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은 문운門運이 영체零替하여 돈목敦睦할 줄을 모르고 서로 정소呈訴하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리가 있는 곳에 욕심도 더 심하여 이에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양소仰訴합니다.

대개 당초에는 저의 종인宗人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 등이 신헌업辛恒業의 사산私山 구목邱木 문제를 명목상으로는 위선爲先이라고 하고 문중을 보조한다고 칭하면서 수영水營에 거짓으로 정소를 하고 관가官家를 속이면서 여러 달 상송相訟하였습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성주城主께서는 특별히 넓은 아량을 베푸셔서 소송을 그치게 하려는 은택을 내린 바, 족친간에 상송하는 습속은 비록 놀랍다고는 하지만 선조들을 위하여 문중에 보조하는 의리도 역시 신헌업에게서 취할 수 있어서 100량의 돈을 징출徵出하여 신복현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신복현 등은 그 돈을 받는 날 한 글자의 문서도 없이 선조를 위하고 문중을 보조한다고 하고는 사사로이 혼자 먹어버려 자기만 살찌우는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선조를 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이것은 자신을 사사로이 하려는 마음이니 실로 의리가 아닌 욕심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을 위한 의리가 아닌 욕심으로 영읍營邑을 속였으니 역시 그 죄를 논하면 도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참는다면 무엇을 참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양소仰訴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신복현 등을 법정에 잡아들여 위 100량 돈을 바로 환추還推하여 한편으로는 위선爲先의 도리를 제대로 하시고 한편으로는 비리의 습속을 징계하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서업]

신축년 10월 일

문유사門有司 신광섭辛光燮

종손宗孫 신헌유辛恒惟/ 신광한辛光漢/ 신기복辛基復

신헌일辛恒一/ 신헌룡辛恒龍/ 신헌렬辛恒烈

신봉규辛鳳奎/ 신헌언辛恒彦 등

[제사]

사실을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하여 신복현을 잡아올 것.

초2일. 형리刑吏에게

〈배면背面〉

물림[退]

道內化民辛兌明等

右謹言情由事 伏以民等 門運零替 不識敦睦 互相呈訴 極爲愧惶是乎乃 惟義所在 所欲有甚

茲敢冒沒仰訴爲去乎 大抵當初民之宗

人辛復鉉 辛基峒等 以辛恒慳私山邱木事 名以爲先 稱以補門 誣呈水營 欺罔官家 累月相訟

是如 伏惟城主特恤寬弘 息

訟之澤是白臥 族親相訟之習 雖云可駭 爲先補門之義 亦有可取於辛恒慳處 徵出百兩錢 以給

辛復鉉等是白齊 同復鉉等 及其捧

錢之日 無一字文 爲先補門之道是遣 私自獨吞 以爲肥己之資是乎所 然則名以爲先者 反是私

己之心也 稱以補門者 實爲非義之欲也 以此

私己非義之欲 欺罔營邑 亦論其罪 有所難逃 是可忍爲 孰不可忍爲 緣由仰訴 伏乞參商教是

後 同辛復鉉等 捉致法庭 上

項百兩錢 卽還推 一以爲爲先之道是遣 一以徵非理之習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署押]

辛丑十月 日

門有司 辛光燮

宗孫 辛恒惟/ 辛光漢/ 辛基復/ 辛恒一/ 辛恒龍/ 辛恒烈

辛鳳奎/ 辛恒彥 等

[題辭]

查實推給/次 辛復鉉/捉來事

初二 刑吏

〈背面〉

退

#### 4-31) 1841년 화민化民 신태익辛兌翊 소지所志

[해설] 신헥업이 선산 구목을 투매한 일로 수영에 제소함. 분계 차지, 문열, 편재사송.



영마(永馬) 화민(華民) 신태익(辛兌翊)

여기에 삼가 분하고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문중(門中)은 문인(門人) 신헌업(辛恒業)이 선산(先山)의 구목(丘木)을 몰래 팔아먹은 문제로 함께 수영(水營)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팔질(八蠶)의 나이로 천한 몸에 병이 많아서 대변(對卡)할 때에 막 병이 더 심해져서 사실을 말하는 곳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잡아가기를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겨우 병든 몸을 부축하고 비척비척 걸어서 감히 엄하고 위엄있는 성주에게 감히 그 사유를 대강 진술합니다. 바라건대 살피주십시오.

앞드려 생각건대 저는 일찍이 선조의 교훈을 지키면서 조금이나마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친친(親親)의 의리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통(愛痛)하게도 저 못난 문인 신헌업이 선조를 욕보이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도망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도리어 한 문중을 속이고 엉터리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낭자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편취하고 소송을 사주하여 경계를 나누어 차지하였다고 까지 하고 그 끝에는 사사로운 혐의로 문열(門孽) 운운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차마 참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저절로 한심합니다. 그가 정말 재산을 편취하고 소송을 사주했다고 한다면 재산을 편취한 것은 바로 문중에서 재산을 편취한 것이오 소송을 사주했다고 한다면 문중에서 소송을 사주한 것입니다. 경계를 나누어 차지하고 사사로운 혐의로 문열이라고 했다는 말은 실로 어떤 것을 보고 이 말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의 사욕이 비록 끝이 없다고는 해도 어찌 감히 저러한 엉터리 말로 이 속일 수 없는 것을 꾸미겠으며 그 중통을 빼앗고 그 법률에서 도망하겠습니까? 선대의 일은 선대의 일이고 사사로운 혐의는 사사로운 혐의입니다. 저 사람이 교묘한 말로 얼굴이 두터운 것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업이 사사로운 혐의가 있다고 하는 말은 구차할 뿐이니 그 간교한 것이 여기에서 탄로가 났습니다. 문열이 어찌 선산의 자손이 아닙니까?

대개 저의 선산은 낙향한 이후에 대대로 그 땅에 장례를 하고 대대로 종가를 전해와서 일찍이 윗길 아랫길의 경계의 구분이 없었고 항업의 11대를 부장(附葬)하였다는 곳도 바로 저의 제각(祭閣) 유지(遺址)의 위이니 다른 종족이 그 땅에 장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곳이 장례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업은 사산(私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변송(下訟)하는 밑천으로 하는 데 이는 어리석고 탐탐한 일입니다. 선산에 부장하는 것은 항업 뿐만이 아니라 각파 가운데 부조(父祖) 이상으로 부장한 것이 비단 두세 사람이 아니니, 지금 이 선산(先山)을 어찌 유독 한 사람 항업이 길을 가지고 경계를 나누어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구목(丘木)으로 말하자면 항업의 말 속에 중간 것은 거의 없고 작은 것은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크고 서까래에도 미치

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벤 것은 일찍이 이러한 소나무는 없고 품재品材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하물며 벌레 먹어서 재목이 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공론이 환히 있는데 어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있는 것들과 비교해보면 대변對辨할 것도 없이 자명합니다. 저 사람이 비록 성전聖殿을 중수重修하는데 번와燔瓦를 해야 해서 부득이 잘라서 팔았다고 하지만 성전을 중수한다는 것은 일찍이 잘라서 팔 때에는 말이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중대한 곳에다가 가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한때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산의 전 국내廂內를 모두 말하자면 과연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크고 서까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항업이 일찍이 몰래 판 곳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러한 송변訟卡이 없었던 것은 문중에서 이치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 친친親親하는 아름다움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못난 항업은 문중의 그러한 후의厚誼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한 맹랑한 탐람貪婪함을 가지고 있으니 대개 오늘날의 일은 부득이 해서 나온 것이고 실로 문중의 본의가 아닙니다.

또 들으니 문중 사람 신기복辛基復, 신광한辛光漢, 신광섭辛光燮, 신항렬辛恒烈, 신항윤辛恒潤, 신기영辛基永 등이 항업이 꼬이는 말을 듣고 이로운 게 좋고 사사로운 게 좋다는 식으로 선산을 가리켜 선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중이라고 자칭하면서 관정에서 입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변괴입니까? 저절로 한심해집니다. 이에 감히 대강을 말씀드려 우리러 호소합니다. 바라건대 신명神明하고 효리孝理가 있는 성주께서 통촉하신 후에 밝히 판결을 하여 처결하셔서 위 항업에게 다짐[拷誓]을 받고 입안立案을 성급成給해주셔서 선산을 보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뒤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윤3월 일

[서업]

[제사]

이미 진술한 말이니 회제回題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릴 것.

15일.

令予化民辛兌翊

右謹言憤冤情由事 民之門中 以門人辛恒慳偷賣先山丘木事 齊訴水營是乎所 民八蠶之年 賤軀多病 對卞之時 方在添劇 未參暴白 至於捉待之境 誠惶誠恐是白乎旻 今纔扶病轉跣 敢冒嚴威 畧陳其由 伏願垂察焉 伏以民早守先訓 粗知糟粕 非不知親親之義 而痛彼不肖門人恒慳 不顧忝先之罪 冒犯莫逃之科 而反誣一門 溝捏遁辭 極其狼[狼]藉 以至於騙財唆訟 及分界次知是如云云 而至其末 歸之於私嫌門藥云

云 此何言也此何言也 是可忍乎是可忍乎 不覺寒心矣 其苟曰騙財唆訟云爾 則騙財  
即門中之騙財 唆訟即門中之唆訟也 有曰分界次知及私嫌門藁之說 實未知何所見而出此言  
也 噫渠之私慾 雖曰不饜 豈敢以下經遁辭 飾此不可欺之方 而奪其宗逃  
其律乎 先事自先事 私嫌自私嫌也 渠欲以巧言遮顏之厚也 而其可得乎 然則恒僕私嫌之說 非  
苟而已 奸狀於斯綻路是乎旡 門藁豈非先山子孫乎 盖民之先山 自落鄉以  
後 世葬其地 世傳宗家 曾無上下路分界是白遣 恒僕之十一代附葬之地 即民祭閣遺址上 而他  
宗之不葬其地者 以其無可葬之地而然也 恒僕稱以私山自主張云 而欲以爲下  
訟之資 愚且婪矣 先山附葬 非徒恒僕而已 各派中父祖以上附葬者 非但二三人 則今此先山  
豈獨一恒僕以路分界次知乎 以丘木言之 恒僕言內 中者無幾 小者稍大於拇 而不  
及於椽云云是乎乃 今番所斫 曾無此箇松 而無非品材也 又況蝕損不成材云是乎乃 公論昭昭  
烏可掩乎 今以時存者較看 則不待自下而明矣 渠雖稱以聖殿重修  
燔瓦事 不得已斫賣云云是乎乃 聖殿重修 曾無發論於斫賣之時是去乙 今此假托於重大之地  
未然後者 欲以售一時之矚也 若以先山全局內統言之 則果有稍大於拇不  
及椽之松 此亦恒僕之曾者偷賣處也 而曾無此訟下者 門中責之以理 而欲保其親親之誼也 不  
肖恒僕 不度門中之厚誼 又有此孟浪之貪婪 盖今日之事 出於不得已 而  
實非門中之本意也 又伏聞門人辛基復 辛光漢 辛光燮 辛恒烈 辛恒潤 辛基永等 肯聽恒僕  
利誘之說 利其利私其私 指先山曰非先山 自稱門中 官庭立證云 此  
何變怪 自不覺寒心矣 茲敢舉暨仰諭爲去乎 伏乞  
神明孝理之下 洞燭教是後 明決處之 同恒僕處 捧俸音立案成給爲白乃 俾保先山之地爲乎旡  
以杜日後接踵之患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閏三月 日

[署押]

[題辭]

已爲陳言 以俟/回題之下事

十五

#### 4-32) 1841년 화민化民 신흥언辛恒彦 소지所志

【해설】 구속된 신흥언의 형 신흥업이 숙병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는 소지. 주인보수를 하도록 함.

도내道內 화민 신항언辛恒彦

여기에 삼가 민박悶迫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옳드려 생각건대 저의 형 항업恒業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병이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꾀병 같으나 본래 묵은 병이 있어서 지금까지 30여 년이나 앓고 있습니다. 비록 평소에 집에 있을 때에 오래 이부자리에 누워있었는데 이번에 구속된 것이 거의 10일이나 되니 묵은 병이 갑자기 심해져서 이리저리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식음을 전폐하여 민박悶迫한 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생의 은혜를 입어서 감히 대수代囚하겠다는 뜻으로 양소仰訴합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신명神明께서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윤3월 일

[서업]

[제사]

병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주인主人을 세워 보수保囚할 것.

17일

형리刑吏에게

道內化民辛恒彦

右謹言悶迫情由事 伏以民之兄恒業 方在囚獄 以病連瀆 似是陽稱是乎乃 素以宿病 沈吟于今三十餘年 雖平昔居家 長事床褥是白加尼 敢此囚禁 幾至十日 宿病頓劇 轉側隨人 又以食飲專廢是如 不勝悶迫之情 特蒙再生之恩 敢以代囚之意仰訴爲去乎 另加矜憐

神明處分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閏三月 日

[署押]

[題辭]

病勢既如此/ 姑爲主人保/囚事

十七

刑吏

4-33) 1841년 화민化民 신항언辛恒彦 소지所志

【해설】 신항언이 조카 신영규가 구속되어 있는데 구목가를 200량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량을 받음.

도내道內 화민 신항언辛恒彦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저의 조카 영규齡奎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서 감히 여기에 정소呈訴합니다. 매우 황송하오나 저의 종인宗人 신기순辛基詢, 신복현辛復鉉 등이 구목邱木 값 200량으로 여러 번 무소誣訴를 하였는데 제가 받은 돈은 단지 20량이고 사간 사람은 바로 본면 우평愚坪에 사는 오정구吳廷求입니다. 패자牌子를 발하여 추문推問하면 한마디로 변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형이 혈리구혈증血痢嘔血症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어서 매우 민박悶迫합니다. 이에 감히 양소仰訴하오니 바라건데 헤아리신 후에 신명神明께서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6월 일

[서업]

[제사]

오정구를 잡아와서 사실을 조사할 것.

형리刑吏에게.

초8일.

道內化民辛恒彦

右謹言情由事 伏以民之姪齡奎 方在囚獄 而敢此呈訴 極爲惶悚是乎乃 民之宗人辛基詢 辛復鉉等 以

邱木價二百兩 累度誣訴是矣 民之所捧錢 只是二十兩 則買去之人 卽本面愚坪居吳廷求也 發牌推問 則一言

可卞劓除良 民之兄 以血痢嘔血症 命在濱死 不勝悶迫 茲敢仰訴 伏乞參商教是後 神明處分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六月 日

[署押]

[題辭]

吳廷求捉/來查實事

刑吏

初八

## 4-34) 1841년 화민化民 신향업辛恒業 소지所志

도내道內 화민 신향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종인宗人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 등이 저의 송산松山을 가리켜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칭하면서 수영水營에 거짓 정소하여 관가官家를 기망하고 여러 달 상송相訟하기에 이르러서 성주城主께서도 이미 잘 살피셨습니다. 결안決案하는 날에 미처서는 성주께서 넓고 소송을 그치게 하려는 은택으로 위 신복현에게 100량 돈을 징급徵給하라는 뜻으로 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명嚴명한 관령官令 아래에서 감히 위월違越하지 못하고 가산家產을 모두 기울여 바로 비급備給한 바, 대개 위 복현 등이 3월에 수영에 정소한 때부터 6월까지 매일 읍에 정소한 것이 합하여 모두 13, 4차입니다. 그 사이의 말의 한 장의 뜻은 모두 위선爲先을 위한 정성이므로 한 글자의 의미가 문증을 보조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 없으니 매우 간절한 것이 마치 보본추감報本追感하는 마음입니다. 또 저는 저 사람들도 역시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이 돈은 바로 문중에 추납하여 위로는 성주께서 공정하게 판결한 은택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선영의 효사하는 교훈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날 위 복현 등이 사사로이 홀로 먹어서 자기를 살찌우는 자산으로 하고 한 글자의 글도 문증을 보조하고 조상을 위하는 길이 없으니 남의 자손이 된 자로서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그 돈을 주는 날에 당하여 저는 저 사람들의 문권文券을 추심하려는 뜻으로 정소하니 제음에 '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라는 뜻으로 행하한 바, 위 복현이 이 관제官題의 신엄申嚴함을 보고 저에게 간걸懇乞하기를 “신기찬이 문권을 가지고 도주하였으니 기산이 들어온 후에 바로 추급推給하겠다”고 운운하더니 그후에 기찬이 바로 돌아온 것이 지금 4, 5달이지만 끝내 추급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고도 역시 관령을 지키는 백성입니까? 이에 감히 연유를 갖추어 앙소하오니 바라건대 상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 신복현 등은 법정에 잡아들여서 먼저 관가를 기망하고 선영先靈에 못난 죄로 중히 다스리시고 그런 연유에 저 사람의 전후 문권 13장을 바로 추급해주셔서 앞으로의 폐단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의 돈 100량도 환추還推하셔서 비리의 욕심을 징계하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

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10월 일

道內化民辛恒慄

右謹言情由事 民之宗人辛復鉉 辛基峴等 指民之松山 稱以爲都先山 誣呈水營 欺罔官家 至於累月相訟 城主既爲稔察是白齊 及其決案之日 城主特

恤寬弘息訟之澤 同辛復鉉處 以百兩錢徵給之意 分付於民 故民嚴明官令之下 不敢違越 盡傾家產 卽爲備給是乎所 大抵同復鉉等之自三月呈營以後之六月 逐日呈

邑者 合爲十有三四次 而其間辭語一章之旨 盡是爲先之誠 一字之意 莫非補門之義 懇

懇切切 若有報本追感之心是矣 且民意謂渠輩亦有人心 則此錢卽爲推納於門中 上以不負

城主公決之澤 下以不忝先靈孝思之訓矣 及其捧錢之日 同復鉉等 私自獨吞 以爲肥己之資是

遣 無一字文 補門爲先之道是乎所 爲人子孫者 是可忍爲是乎矣 且當其給錢之日 民以渠文券推尋之意呈訴 則題音內 文券不給 萬萬痛駭之意 行下是乎所 同復鉉見此官題之申嚴 懇

乞於民曰 辛基粲持文券逃走 則基粲入來後 卽爲推給云云是白加尼 其後基粲 卽

爲還來者 于今四五朔是矣 終無推給之道是乎所 此亦有官令之民乎 茲敢緣由仰訴 伏乞細細

洞燭教是後 同辛復鉉等 捉致法庭 爲先重繩其欺罔官家 不肖先靈之罪

然後渠之前後文券十三張 卽爲推給 以杜日後之弊是遣 右錢百兩 亦爲還推 以徵非理之欲 千

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十月 日

#### 4-35) 1841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慄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이 자신의 논 9두락을 김석년에게 방매. 신복현과 소송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 70번 문서와 관련.

도내道內 입석立石에 사는 화민 신항업辛恒慄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의 논 9마지기가 고성촌高城村 앞에 있는데, 갈아먹으려고 한 차례 두 차례 경작을 하고 모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지난 3월에 저의 신수身數가 불행하여 신복현辛復鉉이 거짓을 만들어내서 여러 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위 북

현은 제가 옥에 있는 틈을 타서 위의 논이 그의 문전門前에 있는 고로 많은 노정奴丁을 이끌고 와서 하루아침에 모내기를 해서 마치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해도 어찌 그리 염치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저는 황송무지慙惶無地로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러한 간상奸狀을 몰랐습니다. 이때 저는 약간의 부채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논 20마지기를 읍에 사는 김석년金石年에게 팔았습니다. 위의 논 9마지기도 역시 방매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에 김석년의 말이 “지금 이 9마지기는 저 신가 양반이 강제로 빼앗아서 모내기를 하였으니 그 양반의 행역行臆을 이로 미루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 도조賭租를 감독해도 아마 시기를 늦출 것 같으니 도조도 역시 대산 마땅이 받아서 주겠다는 뜻으로 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운운”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리事理의 소재所在가 꼭 이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급한 상황에서 방매하였으니 말에 따라 표를 성급하되 도조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갈아먹고 저 사람이 비급備給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남이 불행한 것을 다행으로 하여 표를 성급해주는 것을 엿보았다가 오로지 일이 어그러지기를 바라므로 저에게 대신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장心腸입니까? 저는 비록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무슨 의리로 복현의 척조尺租를 대신 받겠습니까? 가령 저의 논이 아직 있어도 이미 탈경奪耕을 하였으니 도조賭租가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어찌겠습니까? 그러니 신복현이 김석년에 대해서 무슨 곡절로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까? 사리로 살펴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연유로 양소하오니 헤아리신 후에 신복현을 공정公庭에 잡아들여 법으로 다스려서 횡침橫侵하는 폐해가 없도록 처분 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12월 일

[서업]

[제사]

엄히 금단할 것.

면임面任에게.

20일.

道內立石居 化民 辛恒慳

右謹言 民之畓九斗落 在於高城村前 而耕食次一耕二耕秧坂落種矣 去三月良中 民身數不幸

爲辛復鉉誣罔構捏 至於累朔滯囚 則同復

鉉 乘民之在獄 右畓在於其矣門前之故 多率奴丁 一朝移插 如踏無人之境 以此一款言之 何



其無廉也 然而當此之時 民則悚惶無地 全沒世況  
 不知這間奸狀矣 此際民有如干債報 猝辦無路 故不得已畚二十斗落 放賣於邑底金石年處 而  
 右畚九斗落 亦入於放賣中矣 成文之時 金石年  
 言內 今此九斗落 彼辛班勒奪移種 則其班之行臆 推此可知 秋監賭租 必有愆期 賭租段置 亦  
 爲替當捧給之意 成票云云 則事理所在 必不如是 豈  
 除良 爲其急境放賣 依言票給是乎矣 以賭租言之 則渠自耕食 渠自備給 於理當然是去乙 彼  
 則幸人之不幸 而竊覘票給之事 專事齟齬 故欲替  
 徵於民者 抑何心腸是乎 噫 民雖九死一生 以何義而替徵復鉉之尺租乎 假令民畚尚在 既爲奪  
 耕 則賭租不必如是 況乎既賣於他人 則辛復鉉之於金  
 石年 有何委折而延他乎 揆以事理 萬萬無據 緣由仰訴爲去乎 參商教是後 辛復鉉捉致公庭  
 以法繩之 俾無橫侵之弊事 處分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十二月 日

[署押]

[題辭]

嚴加禁斷/事

面任

廿日

#### 4-36) 1841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이 선산 구목 벌레 먹은 것, 굵은 것을 법성포 전세 창고와 성전 수리를 위해 작별한 것  
 을 종인 신복현의 構誣 무함하지 말 것.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다고 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세도世道가 떨어져서 향촌에 아름다운 풍속이 없  
 고 친족 간의 돈목敦睦하는 풍습도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저의 종인宗人 신  
 복현辛復鉉과 같이 허구를 만들어서 동족을 무함하는 것이 이처럼 심합니까?

앞드려 생각건대, 저의 11대 분묘 계단 아래에 약간의 구목邱木이 있었는데 중간에 벌  
 레가 먹어서 받은 고사하고 받은 굵어서 하나도 재목이 될 가망이 없었습니다. 본면  
 本面 우평愚坪에 사는 오정구吳廷求가 지난 가을 이후에 촌의 뒤에 와야瓦治의 역을 설

행하겠다고 하면서 지난달에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번 봄에 당하여 법포法浦 전세  
田稅 창고가 허물어져서 비가 새서 세미稅米가 후패朽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중수  
重修하며 본읍本邑의 성전聖殿도 역시 중수重修하는데 개와改瓦는 폐할 수 없으며 불과  
나무도 나올 곳이 없다”고 운운합니다. 저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성인을 존송하는  
도리로서 그 매우 심하게 고사枯死한 것, 심하게 굵은 것을 골라서 부득이 조금 발매發  
賣를 하였습니다. 같은 저의 종인宗人 신복현辛復鉉이 억하심장抑何心匠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계책을 내서 혼단을 타서 거짓을 만듭니다. 본읍에 고하지 않고 법금法禁이라고  
빙자해서 바로 수영水營에 정소하고 금명간에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화색禍色  
이 지금 있지만 끝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성주가 환관還官하는 것  
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中道에까지 가서 자혜로운 목민관님께 강소控訴하오니 바라  
건대 헤아리신 후에 이 고자孤子와 같은 백성이 남의 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신축년 윤3월

[제사]

한쪽의 말로 제급題給하기는 어렵다.

초3일.

태인泰仁에서

행관 [서업]

道內化民辛恒僕

右謹言情由事 世道已降 鄉無美俗 族親間敦睦之風 廢之久矣 而豈有如民之宗人辛復鉉之構  
虛誣族 如是之甚乎

伏以民之十一代墳墓階下 有如干邱木 而中年爲蟲所食 半枯半曲 一無成材之望是加尼 本面  
愚坪居吳廷求 自去

秋以後 設瓦冶之役于其村後是如 去月良中 來言于民曰 當今春 法浦田稅庫 毀傷雨漏 稅米  
朽敗 今方

重修是允 本邑聖殿 亦爲重修 而改瓦不可廢 火木無出處云云是乎所 民爲國之心尊聖之道 擇  
其甚枯甚曲

者 不得已少許發賣矣 同民之宗人辛復鉉 抑何心匠 欲爲罔測之計 乘釁構虛 不告本邑 籍以  
法禁 直呈水營

今明間必爲來到 則禍色在即 未知末境之如何 茲以不得敢待城主之還官 跋涉中道 緣由控訴  
於

慈牧之下 伏乞參商教是後 哀此孤子之民 無至爲人誣陷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辛丑閏三月

[題辭]

一邊之言 難/以題給事

初三

在泰仁路

行官[署押]

#### 4-37) 1842년 기주記主 신두업辛斗業 수기手記

【해설】 동종 신항업과 벌송 문제로 싸움. 같은 곳에 살고 동종지친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 앞으로 다시 소송을 하면 반좌지율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수기. 암행어사에게 올린 소지에 점려된 문서임.

임인년 2월 12일

여기에 기사記事합니다. 동종同宗 신항업辛恒爍과 소나무를 벌채하는 일로 서로 힐난하다가 맞았다고 정소呈訴하여 양쪽이 대변對下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체事體가 같은 한 면에 있고 여러 세대 동안 같은 한 면에 살았을뿐더러 동종지친同宗至親 사이에 함께 송정訟庭에 들어가는 것은 일이 풍화風化와 관계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서로 화해하니 앞으로는 다시는 정소하지 말고 만약 다시 소송하는 폐단이 있다면 마땅히 반좌反左의 율律에 걸릴 것입니다. 이로써 빙고憑考할 것입니다.

기주記主 신두업辛斗業 [착명]

증인證人 풍헌風憲 이李 [착명]

검세관檢稅官 검독檢督 박민행朴敏行 [착명]

壬寅二月十二日

右記事段 與同宗辛恒爍 稱以

伐松事 相詰被打是如呈訴 至

於兩隻對下之境樣以 事體居

在一面 累代同(一面)居(生)券除良 同宗

至親之間 同人訟庭 事係風  
 化 故茲以相和 此後則更勿呈訴  
 是矣 若有更訴之弊 當有反左之  
 律 以此憑考爲乎乙事

記主 辛斗業 [着名]

證人 風憲李 [着名]

檢稅官 檢督 朴敏行 [着名]

#### 4-38) 1842년 수옥죄인囚獄罪人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 신복현의 무소로 6달 동안 정소함. 100량을 위선을 위해 쓴다고 하여 지급했으나 사용으로 씬. 9두락을 파는 과정에서 문제. 67번 문서와 관련.

수옥죄인囚獄罪人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삼가 진실로 황공하게도 감히 질통疾痛한 사정을 호소하여 부모와 같은 성주님께 양소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저는 작년 3월 이후로 죽인族人 신복현辛復鉉 등의 무소誣訴로 저의 늙은 아버지가 여러 차례 곤장을 맞고 구속된 끝에 다행히 성주의 공결公決의 혜택을 입어 이미 결안決案을 성급하였습니다. 또 신복현 등이 여섯 달 동안 정소하면서 매번 위선爲先이라고 칭탁하면서 그 받은 돈 100량은 한 자도 위선을 하는 길이 없고 사사로이 자기를 살찌우는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위로는 관가官家를 기망하고 아래로는 선영先靈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민습民習이고 이것도 역시 자손의 도리입니까? 지금 이 홍문虹門을 중수重修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작私斫을 하였다고 또 무소誣訴를 하고 송가松價를 징납徵納한다는 뜻으로 제가 수금囚禁 중에 있으니 황송무지입니다만, 그 하는 행위를 궁구해보면 전감前鑑이 멀지 않습니다. 이 돈은 저 사람이 스스로 받아 먹고 아마 선조를 보조할 리는 없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저는 관정에 나타나서 문유사門有司에게 지급하여 문증을 보조하게 하기를 천만 바랍니다.

또 신복현의 행역行臆은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개 저의 고성촌高城村 앞 들 9마지기 논이 있는데 바로 신복현의 문전門前입니다. 작년에 제가 갈아먹겠다는 뜻으로 못자리를 변경翻畔하고 보름도 안 지나서 장차 모내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위복현이 저의 늙은 아버지가 옥에 있는 것을 틈타서 그 노정奴丁을 이끌고 와서 하루 아침에 모내기를 마치기를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이 되어서 저는 긴급한 일이 있어서 위 논 9마지기를 부득이 읍인邑人 김석년金石年에게 팔았습니다. 그 가을에 추수를 감독할 때에 위 석년이 도조賭租 5섬을 정급定給하라고 하니 위 복현이 무슨 심장心腸인지 한 톨의 곡식도 비급備給하지 않았습니다. 위 석년은 제가 구답주舊畝主라고 하여 도리어 저에게 최촉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문 앞에 서있으니 곤욕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조 5섬을 제가 징급徵給하였으니 위 논을 위 복현이 80량을 지급하고 저 사람이 스스로 사들였습니다. 도조라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내 비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 신복현에게서 위 도조 5섬 값을 즉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3월 일

[제사]

관에서 알 일이 아니다.

12일

행관 [서압]

囚獄罪人 辛齡奎

右謹言誠惶誠恐敢呼疾痛之情 仰訴於城主父母之下爲去乎 伏乞細細垂察焉 民自去年三月以後 爲族人辛復鉉等之誣訴 民之老父 累度杖囚之餘 幸蒙城主公決之澤 既爲決案成給是白乎尔 且辛復鉉等 六朔呈訴 每每稱以爲先是如 及其捧錢百兩之無一字文爲先之道是遣 私爲肥己之資 是上以欺罔官家 下以不孝先靈 此亦民習 此亦子孫之道乎 今此虹門重修木 謂民私斫 又爲誣訴 而以松價徵納之意 民在於囚禁中 悚惶無地 是乎乃 究厥所爲 前鑑不遠 此錢渠自捧食 必無補先之理是齊 伏以民自官庭現納出給于門有司處 以爲補用門中之地 千萬望良是乎尔 且辛復鉉之行臆 不徒止斯而已 大抵民於高城村前坪有九斗落畝 而卽辛復鉉之門前也 去年良中 自民畊食之意 翻畊秧坂 不過一望 將爲移種之境是加尼 同復鉉 乘民老父之在獄 率其奴丁 一朝畢移 便若無主之物是乎乃 民禁之不得是加尼 及其六月也 民以緊急所致 右畝九斗落乙 不得已放賣於邑人金石年處是如 當其秋監之日 同石年賭租五石乙定給 則同復鉉於何心腸 一粒谷終無備給之道是齊 同石年 以民爲舊畝主 反爲催促於民 朝夕立門 困辱無比 是乎所 民勢出不已 其賭租五石 自民徵給 則右畝同復鉉給價八十兩 渠自買取 而名以賭租 則至于今日 終無備給之道 此何世道乎 伏乞細細洞燭後 同辛復鉉處 右賭租五石價 卽爲推給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三月 日

[題辭]

非官許知/向事

十二

行官[署押]

## 4-39) 1842년 유학幼學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미발 문서. 도선산 문제.

영광에 사는 유학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의송議送을 합니다. 저의 문운門運이 영체零替하여 자손이 잔약孱弱하고 겸하여 빈한하였기 때문에 14세 이하 27, 8촌이 되어도 모두 불과 수십 인입니다. 의당 특별히 더 돈목敦睦하여 밖으로 그 모욕을 막아내야 하는데, 아, 저 여러 족속은 한묵기구翰墨箕裘로서 이미 가성家聲을 실추시키고 시농공고士農工賈에도 역시 그 직업이 없으니 이미 살아갈 방도가 없어 항상 쟁탈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매번 한탄을 하면서 몇 안되는 적은 족인族人들이 협잡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평생을 칙궁勅躬하여 함께 비교 힐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소송의 척訟隻이 되어 여러 족속들이 저절로 한 편이 되고 저의 아버지는 홀로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송송松訟도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지금 있게 되었으니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대개 저의 집안은 수졸안분守拙安分하면서 세업世業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면서 겨우 기한飢寒은 면하였습니다. 이에 신복현辛復鉉의 조손祖孫이 취당聚黨을 설계하여 할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손자가 소송을 합니다. 저의 사산私山을 가리켜 도선산都先山이라고 하면서 그의 문열門擘을 보내 처음 수영水營에 정소할 때에 20량을 200량이라고 하고 서까래 재목을 관곽棺槨 재목이라고 하여 종기宗基를 뺏는다고 칭하면서 송금松禁을 범한다는 뜻을 말한 바, 기지基地는 소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영에 작송斫松을 정소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한다고 한들 저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 쓰는 것이 오로지 패망한 저의 집의 약간의 산업產業이고 또 본관本官에 취송就訟하는 날 관가에서 저 사람들을 보기를 마치 귀신 도깨비처럼 보아서 모두 화외化外的 형상을 하고 있어서 소송을 그치기 위해서 분부에 “송리訟理

로 말하자면 청시聽施할 수는 없으나 이미 여러 족속들의 제소齊訴이니 어찌 귀중歸重의 의리가 없겠는가? 돈 100량을 내서 문계門契에 주고 기지基地와 송추松楸는 다시는 기노起鬧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하고 입지立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백금百金을 징수 당하는 것은 원통스럽지만 관령官令은 거역할 수 없고 저자들도 흉험凶險해서 백번 참고 그것을 감담하였습니다. 저 염치 없는 무리들은 그 돈을 나누어 먹어버리고 또 지치지 않는 욕식을 냈으니 어찌 그 잔악한 것이 더욱 심한 것입니까?

대개 이 기지와 송추는 원래 내력이 있습니다. 저의 집 뒤에는 세 산기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슭이 바로 도선산都先山이어서 여러 후손이 서로 입장入葬하는 땅입니다. 동서 양쪽 산기슭은 바로 저의 12대 이후가 대대로 계장繼葬하는 땅이고 다른 여러 종족은 한 점의 무덤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저의 사산私山입니다. 본래 송삼松森의 색색이 없었는데 처음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직접 심어서 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원幅圓이 매우 좁고 햇수가 많지 않아서 그 수가 천 그루도 되지 못하였고 재목도 기둥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중에서는 별레 먹고 굽어진 나무가 있어서 간혹 발매發賣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일찍이 한 사람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저의 사송私松이고 사양私養이기 때문이니 많이 변명할 것도 없으니 통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읍營邑에 허위로 날조한 소송에는 일일이 거론하여 발명發明할 것도 못되지만 송사訟事를 이기고 지는 것[立落]은 오직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이가 장차 60인데 본래 묵은 병이 있어서 감히 이 중장重杖을 맞고 옥에 갇혀 병이 든 것이 지금까지 두 달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생긴 것이 조석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된 사람의 망극한 정으로는 잠시도 그 옆을 떠나지 못하여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도 집에는 단지 늙은 어미만이 있습니다. 저들 중 신기선辛基先은 그 아들 규현圭鉉과 그의 문얼門擘 기찬基燦이 무지하고 몰지각한 10여 명을 데리고 내정內庭에 들어와 옥을 하고 가산을 파괴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담을 쌓을 수가 없고 단지 솔가지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선산의 솔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전후좌우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해버리고 처마와 주춧돌만 우뚝 있어서 마치 빈집[虛堂]처럼 되었습니다. 비단 저의 집만이 아니라 이웃의 솔울타리를 모두 없애버리니 온마을이 마치 화적火賊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효리신명孝理神明 아래에 호소하오니 빨리 처분을 내리시고 특별히 하늘 같은 은택을 가하셔서 한편으로는 저의 아버지의 빈사상태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한편으로는 그 선배의 패악悖惡한 습성을 징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 순상巡相 처분

임인년 4월 일

靈光居 幼學 辛齡奎

右議送事 生之門運零替 子孫孱弱 兼以貧寒 十四世以下二十七八寸 都不過數十人 則宜乎別  
加敦睦 外禦其侮 而吁彼諸族 翰墨箕裘 已墜家聲 士農工賈 亦無其業 則既無資生之道 常  
有爭奪之

心 故生之父每有恨歎 數少族人 無非挾雜云 而恐歸一轍 勅躬平生 不與較詰 忽自昨年 仍爲  
訟隻 諸族自成一偏 生之父 獨立難支是如乎 今此松訟 古無而今有 抑何故哉 盖生之家守  
拙安分 不失世業 晝耕夜讀

僅免飢寒 則於是乎辛復鉉之祖孫 設計聚黨 祖爲而畫計 孫爲而作訴 以生之私山 指以爲都先  
山 勸送其門擘 始呈水營之際 以二十兩謂之二百兩 以椽材之木謂之棺槨 稱以奪宗基 犯  
松禁之意是乎所 基地可訟 則何

關於水營斫松 可禁則何關於渠輩乎 處心積慮 專爲敗亡生之家如干產業是如 及夫本官就訟  
之日 自官家見彼如鬼如蜮 舉皆化外之狀 爲於息訟 分付內 以訟理言之 不可聽施 而既其  
諸族之齊訴也 那可無歸重

之義哉 出錢一百兩 付之門稷後 基地與松楸 更勿起鬧之意 成給完文 立旨教是 故雖冤百金  
之徵 官令不可拒逆 彼輩亦爲凶險 故百忍冒當矣 惟彼無廉之輩 分食厥錢 又出不厭之慾  
何其殘害之滋甚者乎 蓋此基

地與松楸 自有來歷 生之家後有三麓 其中麓卽都先山 而諸孫互相入葬之地也 東西兩麓 卽生  
之十二代以後 世世繼葬之地 而無他諸宗一點塚 則是生之私山也 本無松森之色 而始自生  
之祖與父 手種培養 然幅圓甚狹

年紀無多 數未滿千 材不及棟 而其中蟲食屈曲之木 間或發賣者 將至數次 曾無一人敢言者  
此是生之私松私養 不在多卜 而可以洞燭教是乎尔 其所構捏於營邑之訴 有不足枚舉發明  
而訟事立落 惟俟處分之如何是

乎矣 生之父年將六十 素抱宿病 而敢此重杖之下 滯獄遘疾 于今兩朔 食飲全廢 殯死朝夕 故  
爲人子罔極之情 暫不移側 不得歸家 而只有老母在堂矣 彼輩中辛基先 使其子圭鉉與其門  
擘基絜 率無知沒覺十餘輩

突入內庭 叱辱破產 無所不至 而窮居凡節 不能築墻 只以松枝作籬矣 出自先山松田云 而前  
後左右 盡爲撤去 簷礎兀立 便成虛堂 非但生之家 徒然隣居民家松籬者 皆然撕殺 一村如  
徑[經]火賊乙仍于 茲敢呼籲於

孝理神明之下爲去乎 亟賜處分 特加如天之澤 一以救生之父殯死之命 一以懲其先輩悖惡之  
習 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相 處分

壬寅四月 日

#### 4-40) 1842년 유학幼學 신태명辛兌明 의송議送

【해설】 도선산都先山과 사산私山의 재목을 판 것에 대하여 종인 신복현 등이 수영에 무소하여 쟁송한 사건. 감영에 제소한 의송.

영광靈光 유학幼學 신태명辛兌明 등

여기에 의송議送을 합니다. 추경鄒經에 이르기를 “군자는 사리에 닿은 말로는 속일 수 있다.[君子可欺以其方]”<sup>2</sup>고 하였는데 이는 어찌 저의 종인宗人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詢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얽드려 생각건대, 지난해 신축년 3월에 위 신복현 등이 신항업辛恒業의 사산私山을 가지고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칭하고 그 구목邱木을 가지고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하였고 본읍本邑에 취송就訟한 것이 여섯 달입니다. 정소한 것이 20차례이고 한 문장의 뜻은 모두 위선爲先 한 글자의 의리이고 문중에 보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본읍의 성주가 그 말에 속아서 신항업에게서 100량 돈을 징출徵出하여 신복현, 신기순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의당 문중에 납입해야 하는데 위 두 사람은 그 돈을 받는 날 반씩 나누어 자기들 살찌우는데 쓰고 한 푼도 선영을 위하고 문중을 보조하는데 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렇게 법을 흐트러 뜨리고 이치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관풍효리觀風孝理에 양약仰籲합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 신복현, 신기순을 영정營庭에 잡아들여 위의 돈 100량을 하나하나 환추還推하여 선영의 향화香火에 쓰기를 천만 바라겠습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순상巡相 처분

임인년 2월 일 문유사門有司 신광섭辛光燮

종손宗孫 신항웅辛恒雄/ 신광한辛光漢

신기복辛基復/ 신항일辛恒一/ 신항룡辛恒龍

신항렬辛恒烈/ 신봉규辛鳳奎/ 신항언辛恒彦 등

2 맹자孟子가 “군자는 사리에 닿는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엉뚱한 말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속일 수는 없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라고 평한 이야기가 있다.(孟子 萬章(上)에 나온다.) 추경은 맹자.

겸사兼使 [서압]

[제사]

서로 번갈아 쟁송爭訟하니 위아래가 없고 민습民習이 해연駭然하다. 이미 결정된 소송에 대해서 아직도 이처럼 떠들썩하니 혹 송리訟理 끝에 아직 충분히 변별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결급決給할 것.

본관本官에게. 24일.

靈光幼學辛兌明等

右議送事 鄒經曰 君子可欺以其方 此豈非生之宗人辛復鉉 辛基峴之謂乎 伏以去年辛丑三月

良中 同辛復鉉等 以辛恒懌私山 稱以爲都先山 以其

邱木事 往呈水營 就訟本邑六朔 呈訴者 將至二十次 而一章之旨 盡是爲先一字之義 無非補

門 則本邑城主 見欺於其方之欺是如 於辛

恒懌處 徵出百兩錢 以給辛復鉉 辛基峴兩人是乎 則宜乎納于門中 而同兩人及其捧錢之日

分半肥己 無一字文爲先靈補門中之道是乎

所 世豈有如許亂法悖理之人乎 緣由仰籲於

觀風孝理之下爲去乎 伏乞細細洞燭教是後 同辛復鉉 辛基峴 捉致營庭 右錢百兩 一一還推

以爲先塋香火之地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巡相 處分

壬寅二月 日 門有司 辛光燮

宗孫 辛恒惟/ 辛光漢/ 辛基復/ 辛恒一/ 辛恒龍/ 辛恒烈/ 辛鳳奎/ 辛恒彥 等

兼使[署押]

[題辭]

迭相爭訟 不相/上下 民習駭然 既決之訟 尙此聒聒/ 或有訟理之未/及卞悉者而然乎/ 更加詳

查決給/事

本官 廿四日

#### 4-41) 1842년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懌 소지所志

【해설】 도선산都先山과 사산私山의 재목을 판 것에 대하여 종인 신복현 등이 수영에 무소하여 쟁송한 사건. 암행어사에 제소한 소지.

영광靈光 도내道內에 사는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생각건대, 저의 문운門運이 영체零替하여 자손이 잔약孱弱하고 낙향한지 13세 이후에 여러 족속들이 모두 해도 불과 수십 인입니다. 의당 특별히 돈묵敦睦하면 좋겠는데, 도리어 거짓을 날조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의 죽인 신복현辛復鉉 등과 같은 사람은 이처럼 심합니까?

대개 저의 13대조가 처음 낙향하여 본군本郡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에 와서 12대조가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長子는 바로 저의 종파宗派여서 계속 도동촌陶洞村에 살았고 그 차자次子는 바로 저의 11대조로서 입석촌立石村에 나뉘어 살았고 도동과 입석은 바로 길 하나 사이입니다. 마땅히 나뉘어 살 때에 길의 북쪽은 종가宗家가 주장하고 길의 남쪽은 저의 집이 차지하였습니다. 입석촌의 뒷산 기슭이 세 개의 기슭이 있는데 13대조의 옆에 11대조의 분묘가 가운데 기슭에 있어 여러 자손들이 서로 입장入葬하는 땅이고 이는 저의 선산등先山嶺이며 그 서쪽 기슭은 저의 11대 이후가 대대로 계장繼葬을 하면서 400년 동안 수호守護한 땅이고 한 점도 다른 종인의 무덤이 없으니 이는 저의 사산등私山嶺입니다. 그 동쪽 기슭은 바로 저의 11대조가 나뉘어 살 때의 구기舊基로 그후에 차차 옮겨 내려와서 이어서 구기에 입장入葬하였으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터는 바로 저의 증조모, 조부의 묘 계단 아래입니다. 이로 인연해서 동쪽과 서쪽 두 기슭이 저의 집에서 금양禁養을 하였고 저의 아버와 할아버가 직접 나무를 심어서 배양하여 정성을 쏟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벌레 먹고 굴곡진 재목은 간혹 발매發賣하였는데 종손宗孫에서부터 문중까지 일찍이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사로이 심고 사사로이 길러서 종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 신축년 3월에 본군의 성묘聖廟 수리소修理所에서 기외를 굶던 사람이 그중 분묘에 가깝고 그늘진 곳을 벌목伐木하여 팔기를 청하기에 20량을 받고 팔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위 복현이 저의 사산私山을 도선산都先山이라고 하면서 서까래 재목을 관곽棺槨이라고 칭하고 20량을 거짓으로 200량이라고 속이면서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呈訴하니 그 관문關文이 내려온 날 본관에서 장교를 발하여 조사[摘劄]를 하여 저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말하였다는 형상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회제廻題에 “범송犯松 조항으로 징려懲勵한다”는 뜻으로 행하行下하여 저는 6달 동안 구속[牢囚]이 되었고 세 번 결장決杖을 받았습니다. 신복현 등은 그래도 소송을 그치지 않고 몇 달을 계속 정소하면서 위선爲先을 한다고 칭하고 본읍의 전임[前等] 성주城主가 비록 저 사람들이 이치도 안되는 근거 없는 모습을 알고 있었으나 분란을 푼다는 뜻에서 100량을 저에게서 징출徵出하여 복현에게 내주니, 복현은 한 푼의 돈도 종중에 납부하지 않

고 사적으로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욕심에 차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꾸며서 헛소리를 만들어서 순영巡營에 가서 정소하니 제교題敎에 “본읍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행하셨습니다. 본읍에서는 저 사람들의 앞뒤의 비리非理를 일일이 들어서 보고하니 순사또巡使道께서 복현의 무소誣訴한 상황을 통촉하시어서 엄형감처嚴刑勘處하여 거의 발배發配하는 지경까지 갔다가 다행히 재생의 은택을 입어 이미 석방되어 돌아올 수가 있었으니 위 복현이 비리로 건송健訟하는 습관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송사가 만약 그 도선산을 가지고 한다면 종손이 있는데도 왜 기송起訟을 하지 않겠으며 위 복현이 홀로 기송했겠습니까? 이로서 보건대 복현의 간혹奸譎한 습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 개선의 정을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전후의 전말을 들어 암행명찰暗行明察님께 하나하나 우리러 호소하오니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위 복현을 엄형중승嚴刑重繩하셔서 먼 시골에서 호송好訟하는 폐단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처결을 하셔서 이 잔악한 백성이 선릉先麓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천만 축수祝手하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어사또御使道 처분

임인년 6월 일

암행어사 [서업]

[제사]

자세히 조사하여 엄히 처결할 것.

본관本官에게. 21일.

靈光道內居幼學 辛恒僕

右謹言情由事 伏以生之門運零替 子孫孱弱 落鄉十三世以後 諸族都不過數十人是如 宜乎另

加敦睦則可矣 反爲構捏 無所不至者 豈有如生之族人辛復鉉等 如是之

甚乎 大抵生之十三代祖 始爲落鄉於本郡道內面陶洞村 而至十二代祖 有子兄弟 則其長子卽

生之宗派而仍居于陶洞村是遣 其次子卽生之十一代祖 而分居于立石村 則陶洞立石 卽一

路 之間也 當其分居之時 路北自宗家主張是遣 路南自生家次知 而立石村後麓有三麓 則十三代

祖傍十一代祖墳墓 在於中麓 而諸子孫互相入葬之地 則是生之先山嶺是乎尔 其西麓 生

之十一代以後 世世繼葬 四百年守護之地 而無他宗人一點塚 則是生之私山嶺是乎尔 其東麓

卽生之十一代祖分居時舊基 而其後次次移下 仍以入葬於舊基 則生之今居家基 卽生之曾

祖母祖父墓

階下也 緣茲東西兩麓 自生家禁養 而生之父與祖 手植培養 靡不用誠 則其中蟲食屈曲之材

間或發賣 而自宗孫至門中 曾無一言者 以生私植私養 不關於宗中者也 去年辛丑三月良中

本郡

聖廟修理所燔瓦之人 請買其近墳墓背陰處伐木 故放賣其二十兩價松矣 不意同復鉉 以生之私山 指以爲都先山 以椽丫之材 稱以棺槨 以二十兩 誣以爲二百兩 往呈于水營 則及其關下之日 自本官發校摘奸 渠輩無據之狀 一一查報 而廻題內 以犯松一款懲勵之意行下 故生六朔牢囚 三度決杖 而辛復鉉等 猶不息訟 連月呈訴 稱以爲先 則本邑前等城主 雖知渠輩非理無據之狀是乎乃 以其釋紛之意 徵出一百兩於生 而出給于復鉉 則同復鉉 無一分錢 納宗中之道 而私自獨吞是乎矣 猶未充慾 又爲百端粧撰 構虛捉空 往呈巡營 則題教內 使本邑查報之意行下是白乎所 自本邑 渠輩前後非理之狀 枚舉以報是乎 則巡使道洞燭復鉉誣訴之狀 而嚴刑勘處 幾至發配之境矣 幸蒙再生之澤 既得放歸 則同復鉉非理健訟之習 不待言可下 而此訟若其都先山 則宗孫自在 何不起訟 而同復鉉獨爲起訟哉 推此觀之 復鉉奸譎之習 愈往愈甚 終無悔改之日 茲敢前後顛末 一一仰籲於 暗行明察之下爲去乎 伏乞細細垂察後 同復鉉嚴刑重繩 俾杜遐鄉好訟之弊是白乎旆 另加處決 俾此殘氓守護先壟之地 千萬祝手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御使道 處分

壬寅六月 日

暗行御史[署押]

[題辭]

詳查嚴處/事

本官廿一日

#### 4-42) 1842년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業 의송議送

【해설】 도선산都先山과 사산私山의 재목을 판 것에 대하여 종인 신복현 등이 수영에 무소하여 쟁송한 사건. 감영에 제소한 의송.

영광靈光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의송議送을 올립니다. 세상에 재산을 편취하는 습속이 있고 사람에게는 돈족敦族의 풍습이 없어서 한 터럭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백세의 떳떳함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의 족인族人인 신기순辛基峯, 신복현辛復鉉 등이 아니겠습니까?

없드려 생각건대, 저의 13대조가 처음 본군本郡 도내면道內面 도동리陶洞里로 낙향하여 12대조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長子是 바로 저의 방계 11대조 종파宗派로 계속 도동리에 살고 그 차자次子が 바로 저의 11대조인데 입석리立石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도동과 입석은 바로 한 길 사이입니다. 나뉘어 살 때에 전토田土와 시장柴場은 길을 계한으로 하여 길의 북쪽은 종가宗家에서 주장하고 길의 남쪽은 저의 집에서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낙향 후 3세의 분묘가 입석촌의 뒷 산기슭에 있게 되었고 이 산기슭은 여러 자손들이 서로 입장入葬하는 도선산都先山입니다. 그 동쪽은 바로 저의 11대조가 나뉘어 살 때의 집터의 구기舊基인데 그 후에 자손들이 차차 아래로 이사하여 내려와서 이어서 그 유허遺墟에 입장入葬하게 되었으니 지금 제가 사는 집터는 바로 저의 증조비曾祖妣 및 할아버지의 묘 아래입니다. 그 서쪽 기슭은 저의 11대조가 분거分居한 후에 일일이 계장繼葬을 하여 한 점의 다른 족인族人的 무덤이 없으니 이는 저의 사산私山입니다.

대개 동쪽편의 서쪽 기슭에 약간의 구목邱木이 있는데 이 해에 벌레가 먹어서 재목이 될 수가 없어서 지난 신축년 3월에 본면에 사는 사인土人 오정구吳廷求가 본읍의 성전聖殿을 중수重修하는데 기와를 굽겠다는 뜻으로 여러 번 사겠다고 하여 부득이 돈 20량을 받고 서쪽 기슭 한 조각 지역의 구목邱木을 조금 방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종인宗人 신기순辛基峴 등이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하겠다는 뜻으로 위협하고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그 뇌물을 주지 않은 것은 그의 끝이 없는 욕심으로는 그 끝장의 폐단이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영에 정소함에 미쳐 저의 구기舊基와 사산私山을 가리켜서 모두 도선산이라고 하고 서까래 정도의 재목을 관곽棺槨 재목이라고 칭하며 돈 20량을 200량으로 칭탁하는 등 허구를 만들어서 무정誣捏한 것입니다.

수영의 관문關文이 내려오는 날 본관本官은 바로 장교를 발하여 조사를 한 후에 신기순 등이 무정誣捏한 3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니 회제回題에 “신항업辛恒爨이 조수操守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범금犯禁의 율律을 범한 것은 징려徵勵하라”는 뜻으로 제음이 내려왔습니다. 저의 11대 계장繼葬한 무덤과 400년 수호한 땅을 하루 아침에 헐잡을 하는 종인宗人的 무함誣陷으로 관에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원박冤迫합니다. 그래서 전임 순사도巡使道가 좌정坐政할 때에 사유를 갖추어 양약仰籲하니 제음에 “마땅히 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결할 것”이라고 본관에 행하行下하셨습니다. 본관은 영제營題에 의거하여 특별히 자세히 조사한 후에 앞으로 여러 신씨들 중에서는 다시는 기노起鬧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입안立案을 결급決給해주셨습니다. 그 입안을 점련粘連하여 양약仰籲하오니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시고 영문營門에서 다시 입안을 성급해주셔서 영원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

니다. 행하하여주십시오.

순상巡相 처분

임인년 2월 일

겸사兼使 [서업]

[제사]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갑이 낮고 을이 못하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아직도 이처럼 도로에 분주하니 그 끝을 모르겠다. 민습民習이 놀랍다. 24 일.

靈光幼學 辛恒慄

右議送事 世有騙財之習 而人無敦族之風 如有一毫之利己 蔑然百世之誼者 豈有如生之族人

辛基峴 辛復鉉等乎 伏以生之十三代祖 始爲落鄉於本郡

道內面陶洞里 而至十二代祖 有子兄弟 則其長子卽生之旁十一代祖宗派 而仍居于陶洞里是

遣 其次子卽生之十一代祖 而分居于立石里 則陶洞立石 卽一

路之間也 及其分居時 田土柴場 以路爲限 路之北 自宗家主張是遣 路之南 自生之家次知是

白齊 於是焉 落鄉後三世墳墓 在於立石村後麓 而是麓則諸子

孫互相入葬之都先山也 其東邊卽生之十一代祖分居時家垵舊基 而其後子孫次次移家居下

而仍以入葬於遺墟 則今生之所居家基 卽生之曾祖妣及祖父墓

階下是旵 其西麓則生之十一代祖分居後一一繼葬 無他族人一點塚 則是生之私山 大抵東邊

西麓有如干邱木 而此年蟲食 不得成材是白加尼 去辛丑三

月良中 本面居士人吳廷求 以本邑聖殿重修燔瓦之意 屢度請買是乎所 不得已捧價二十兩 西

麓一片邱木 小許放賣矣 不意宗人辛基峴等 以往

呈水營之意 威脅索賂是矣 生之不給其賂者 恐其無厭之欲 未知末梢之弊也 及其呈水營也 指

生之舊基與私山 皆以爲都先山是旵 以椽木之材 稱以爲棺

槨 以價錢二十兩 托以爲二百兩 構虛誣呈是如 及其水營關下之日 自本官卽爲發校摘奸後 辛

基峴等誣呈三件事 一一詳查以報 則回題內辛恒慄之

緊於操守 未爲不可 而至於犯禁之律 徵勵之意 題下是乎所 生之十一代繼葬之塋 四百年守護

之地 一朝爲挾雜宗人之誣陷 至於官訟之境 極爲冤迫

故舊 巡使道坐政時 具由仰籲是乎 則題內 當悉本事詳查處決事 行下本官是乎所 自本官 據

營題 另加詳查後 日後諸辛中 更不起鬧之意 立

案決給是乎所 立案粘連仰籲爲去乎 伏乞細細洞燭後是遣 自營門更爲立案成給 以爲永世遵

守之地 千萬幸甚

行下向教是事

巡相 處分

壬寅二月日

兼使[署押]

[題辭]

孰是孰非 甲長/乙短 有誰知之 既已/得訟 尙此奔走道路 不知/其止 民習駭然/事  
廿四日

## 4-43) 1842년 죄민罪民 신기원辛基元 소지所志

【해설】 신기원이 신항업 등에게서 맞았는데 도리어 신석철에게 무소당하여 잡히는 지경이 되었다고 죄를 구별해달라는 소지.

도내道內 죄민罪民 신기원辛基元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족손族孫 석철石鐵이 그의 아버지가 맞았다고 무소하여 추착推掇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도 모르게 한심합니다. 청컨대 먼저 그 이유를 진술하고 다음에 그것이 거짓임을 변명하겠습니다.

대개 저는 지난 초1일에 출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마침 군교점群橋店에 도착하니 족인族人 항업恒業과 그의 노奴 귀남貴男이 문유사門有司 규현圭鉉을 발로 차서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습니다. 족질族侄 항렬恒烈이 그 속에 동참하여 함께 발로 찼는데 바로 규현圭鉉의 8촌형입니다. 이욕利欲이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의리를 돌아보지 않기에 만약 항업을 보면 매우 아프기에 제가 이치를 들어서 책망하고 피차간에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아 저 항업은 규현을 발로 찬 죄를 덮으려고 항렬에게 사주하여 맞은 것처럼 관가에 거짓 고소하여 사람을 망측罔測한 지경에 빠트리려고 하니 어찌 원왕冤枉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사실을 들어 변명을 하니 바라건대 분간하여 처분해주시고 죄가 없는 자는 자명自明하게 하고 죄가 있는 자는 자징自徵하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서압]

임인년 2월 일

[제사]

신씨 문중의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관도 역시 대꾸하기에 피곤하니 다시는 번거롭게 소송하지 말라.



19일.

道內 罪民 辛基元

右謹言 罪民今以族孫石鐵 以其父被打是如 至於誣訴推捉之境 自不覺寒心矣 請先陳  
其由 次辯其誣爲 盖民去初一日出他是如可 回路及暮 適到于群橋店 則族人恒僕與其奴  
貴男 蹙打門有司圭鉉 至死境 而族侄恒烈 同參其中 同爲蹙打 而卽圭鉉之八寸兄也 利欲  
至重 不顧義理 儻於恒僕者 瞻聆可痛 故罪民舉理言責 而彼此間救解矣 痛彼恒僕 欲  
掩蹙打圭鉉之罪 指嗾恒烈 被打樣誣訴官家 陷人於罔測之地者 豈不冤枉乎 茲  
敢據實暴辯 伏乞分揀處分 使無罪者自明 有罪者自徵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署押]

壬寅二月 日

[題辭]

辛氏一門之訟/ 迄可休矣 官亦疲/於應接 更勿煩訴/事

十九

#### 4-44) 1842년 화민化民 신경辛檄 소지所志

【해설】 신항업과 다투던 신복현이 정배 처분을 받음. 이에 문중에서는 신복현이 정배를 가든 속전을 내든 문중에서 부담해야 하니 신항업이 팔아먹은 송목 값 100량을 받아달라는 소지. 겸관에게 요청 하였으나 겸관이 곧 이임을 해야 하니 다음에 부임하는 신관에게 다시 소지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림. 이 소지는 상대방이 올린 것임.

영광靈光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경辛檄 등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문중의 선산 문제로 못한 족인族人 항업恒業과 송변訟下하다가 불행히도 족인 복현復鉉이 혼자 횡액을 당하여 정배定配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허속許贖 여부는 오직 영문營門의 처분에 있습니다. 비록 치행治行을 한다고는 해도 그 사람은 적빈赤貧하여 어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문중에서 함께 해야 할 일이니 속전을 내든 정배를 가든 그 비용은 불가불 문중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저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 항업에게서 작년의 송가松價 돈 못받은 것 100량은 이미 도선산都先山의 구목邱木을 판 것이니 이치상 못된 자의 손에서 헛되이 잃을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문중에서 써야할 돈을 아직도 이처럼 완강하게 거부하니 이 어찌 만만 무거운 것입니까? 이에 이러한 연유로 양양(仰籲)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돈 100량을 빠른 기일 내에 독촉하여 받으시고 속전을 내든 정배를 가든 간에 바로 만들어주시라는 뜻으로 모주 처분하여 행하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겸성주(兼城主) 처분

임인년 5월 일

신경(辛敬) / 신태익(辛兌翊) / 신한익(辛翰翊) / 신철(辛哲) / 신철(辛哲) / 신철(辛哲) / 신철(辛哲)

신흥(辛洪) / 신창(辛彰) / 신행(辛衡) / 신행(辛衡) / 신행(辛衡) / 신행(辛衡)

신명도(辛命道) / 신영묵(辛永默) / 신기용(辛基瑢) / 신기용(辛基瑢) / 신기용(辛基瑢) / 신기용(辛基瑢)

신기묵(辛基默) / 신기호(辛基浩) / 신치현(辛致鉉) / 신치현(辛致鉉) / 신치현(辛致鉉) / 신치현(辛致鉉)

신윤현(辛潤鉉) / 신성표(辛性表) / 신기보(辛基輔) / 신기보(辛基輔) / 신기보(辛基輔) / 신기보(辛基輔)

신기년(辛基年) / 신기원(辛基元) / 신종현(辛宗鉉) / 신종현(辛宗鉉) / 신종현(辛宗鉉) / 신종현(辛宗鉉)

신규현(辛圭鉉) / 신구현(辛九鉉) / 신궁현(辛肯鉉) / 신궁현(辛肯鉉) / 신궁현(辛肯鉉) / 신궁현(辛肯鉉)

신달현(辛達鉉) / 신석현(辛錫鉉) 등

[제사]

지금 부절을 풀려고 하니[解符, 이임(離任) 관에서 알 바가 아니다. 신관(新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소할 것.

27일

겸관(兼官) [서업]

靈光道內 化民 辛敬 等

右謹言 民等以門中先山事 與不肖族人恒慳訟下是如可 不幸族人復鉉 有此獨罹厄 至於定配之境 有罪無

罪 今不敢言 而許贖與否 惟在營門處分是白在果 雖曰治行 渠是赤貧 勢無其奈分叱除良 一門中所共之事 則

贖配間所用 不可不自門中治給 於理當然 而既無所儲是如乎 上項恒慳處 昨年松價錢未捧條 一百兩段 既是都先山

邱木所賣 則理不可空失於不肖者之手矣 堂堂門用之錢 尙此頑拒 豈不萬萬無據乎 茲以緣由 仰籲爲去乎 伏乞

參商教是後 右錢一百兩 刻期督捧 贖配間 趁爲治給之意 並只處分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壬寅五月 日

辛楸/ 辛兌翊/ 辛翰翊/ 辛哲燮/ 辛洪燮/ 辛彰燮/ 辛衡燮/ 辛命道/ 辛永默/ 辛基瑢/ 辛基默/ 辛基浩/ 辛致鉉/ 辛潤鉉/ 辛性表/ 辛基輔/ 辛基年/ 辛基元/ 辛宗鉉/ 辛圭鉉/ 辛九鉉/ 辛肯鉉/ 辛達鉉/ 辛錫鉉 等

[題辭]

今將解符/ 非官所知/ 待新官/ 更呈事

廿七

兼官[署押]

#### 4-45) 1842년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소지所志

【해설】 신굉규가 신복현 등 무리들이 한밤중에 난입하여 약탈해간 물건들을 찾아주고 처벌해달라는 소지. 문중 문제이니 기각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여기에 삼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믿고 안거安居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겁주는 사람은 세상이 모두 본면의 옥산玉山에 사는 신복현辛復鉉 등과 같다면 불쌍한 이 잔민殘民은 어떻게 지탱하고 살겠습니까? 저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여러 차례 기송起訟을 한 후에 헛된 것을 만들어내고 말을 지어내서 지난 9월 그믐날 밤 3경쯤에 위의 신복현이 제가 모장謀長이 되어서 그의 지친至親인 기찬基贊, 기원基元, 독보豆/口甫를 시켜서 그의 노와 함께 불러내서 작당을 하여 저의 집에 돌입하여 방 중에 있는 것이 단지 로강(路缸, 등잔) 하나 뿐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도둑질 해갔습니다. 저는 그 강포强暴함에 놀라서 금단禁斷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밤 4경쯤에는 그 무리들이 또 갑자기 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바로 방중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말안장馬鞍과 유기鎗器 등을 모두 겁략하여 도둑질 해갔습니다. 불과 석 달여 사이에 이러한 변고가 비일비재하니 이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에는 신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명정안법明政按法에 소리를 내어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이와 같은 겁략하는 무리들을 하나하나 법정에 잡아들어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시고 도둑질해간 물건은 응당 하나하나 추심하여 뒷날의 폐해를 막아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12월 일

[제사]

이 역시 종종의 상송相訟이니 환각還却할 것.

초3일.

道內化民辛宏珪

右謹言至冤情由事 伏以遐土愚氓 恃以安居者 惟是法也 而若使蔑法憫人 世皆如本面玉山居  
辛復鉉等 則哀此殘民 何以支居乎 欲奪民之先山 屢次起訟之後 做出捉空構虛之說 去九月晦日夜三更許 同辛  
復鉉 渠自坐以爲謀長使其至親基贊 基元 豆/口甫 與其奴者 呼聚作黨 突入民之家 房中所存 只時一路釘而已 故  
卽爲盜去是乎所 民畏其強暴 不能禁斷是如尼 昨日夜四更許 厥黨又爲猝來 叩門直入房中 所存馬鞍與鎗器等節 盡爲恫  
掠盜去是乎所 不過數三朔之間 此等之變 非一非再 則若此不已 則及其末梢 身命未保 豈不冤枉哉  
茲敢疾聲仰訴

於

明政按法之下爲去乎 伏乞細細洞燭教是後 如此恫掠之輩 一一捉致法庭 依律勘處是遣 盜去  
之物 應

爲一一推尋 以杜日後之弊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十二月 日

[題辭]

此亦是自宗中相/訟 還却事

初三日

## 4-46) 1842년 화민化民 신연구辛年奎 소지所志

【해설】 신기순 등이 작당하여 백모 등을 구타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 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는 소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앞으로는 소송하지 말하는 제음.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연구辛年奎

여기에 삼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11세 동안 수호한 땅에 단지 대송大松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위 신기순辛基峯이 4, 50명과 작당하여 갑자기 작벌斫伐하기에 금단을 하려고 하니 지난 14일에 저의 백모伯母를 구타하여 지금 사경死境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형수를 구타하여 이를 세 개나 부러트리고 종매從妹를 구타하여 두개골이 반분半分 되어 모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悶迫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감히 양소仰訴를 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셔서 하나하나 조사摘姦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8월 일

[제사]

이쪽 신가든 저쪽 신가든 만약 다시 소송하는 폐가 있다면 마땅히 엄형嚴刑에 처할 것. 16일.

행관行官 [서압]

道內化民 辛年奎

右謹言至冤情由事 民之十一世守護之地 只有大松一株矣 所謂辛基峯 作黨四五十名 肆然斫伐 故欲爲禁斷 則去十四日 搆打民之伯母 方在死境是遣 今日良中 又搆打民之兄嫂 折齒者三 而搆打從妹 頭骨半分 皆命在頃刻 故不勝悶迫 茲敢緣由仰訴 伏乞參商教是 一一摘姦 依律處分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八月 日

[題辭]

毋論此辛彼辛/ 如有更訴之弊/ 則當嚴刑向事

十六日

行官[署押]

#### 4-47)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 신복현을 처벌해달라는 소지. 이미 보고서가 순영에 올라갔으니 기다리라는 제음.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삼가 눈물을 삼기고 억울함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아버가 족인族人 신복현辛復鉉의 무날誣捏에 걸려서 지금 구속 중에 있는 것을 이유로 모두 양소仰訴하였으니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옳드려 생각건대 저의 14대조가 본군 도내면道內面 도동촌陶洞村에 낙향하였고 13대조에 이르러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장자長子是 저의 종파宗派로 도동촌에 계속 거주하고 그 차자次子가 바로 저의 12대조인데 입석촌立石村에 나뉘어 살았습니다. 도동과 입석은 바로 길 하나 사이입니다. 나뉘어 살 때를 당하여 길의 북쪽은 종가에서 주장하고 길의 남쪽은 저의 집에서 차지하여 14대조, 13대조, 방계 12대조의 분묘가 입석촌의 뒷산기슭에 있으니 이것이 저의 도선산都先山이어서 여러 자손들이 서로 입장入葬하는 곳입니다. 그 서쪽 기슭은 저의 12대 이후로 대대로 계장繼葬을 해서 400년 동안 수호한 땅이고 다른 종인의 한 점의 무덤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바로 저의 사산私山입니다. 그 동쪽 기슭은 저의 12대조가 나뉘어 살 때의 옛집터舊基인데 그후에 자손들이 차차로 아래로 이사해 내려와 이어서 옛집터에는 입장入葬을 하였으니 저의 지금 사는 집터는 바로 저의 고조모高祖母, 증조부曾祖父 묘의 계단 아래입니다.

대개 그 동서 산기슭에는 약간의 구목邱木이 있는데, 큰 것은 서까래 정도의 나무이고 적은 것은 지게대리 정도이었습니다. 작년 신축년 3월에 본군에서 성묘聖廟를 수리할 때에 기와를 굽는 사람이 그 근처 분묘의 그늘진 곳을 벌목하여 사겠다고 청하기에 그것을 20량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위 족인族人 신복현辛復鉉, 신규현辛奎鉉, 신기원辛基元 등이 저의 사산私山을 가지고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지칭하고 서까래 지겟다리 같은 나무를 관곽棺槨 재목이라고 칭하고, 20량 돈을 거짓으로 200량이라고 하여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하였습니다. 그 관문이 내려오는 날, 본관이 바로 장교를 발하여 조사摘劄하니, 그 회제回題에 범송犯松 한 조목으로 징려懲勵하라는 뜻으로 제음을 본읍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가 여섯 달 동안 구속牢囚이 되었고 세 차례 결장決杖을 받았습니다. 복현 등은 여러 달 동안 정소하겠다고는 뜻으로 매번 위선爲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읍의 구관舊官 성주城主가 비록 그 비리非理의 상황을 통촉하였으나 역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 소송을 그치게 하자는 뜻에서 저에게서 100량 돈을 징출徵出하여 복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 복현이 돈을 받는 날 하나도 위선을 한다는 말은 없고 사사로이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8월에 이르러서 본읍의 홍문虹門 중수소重修所의 도목수都木手가 와서 두 그루의 소나무를 저의 고조모高祖母 분묘 위에서 벌채하니 그 사이에 부러진 나무는 거의 8,9 그루였습니다. 금년 2월에 위 복현 등이 이 소나무를 가지고 또 거짓을 만들어 무소誣訴를 하여 저의 아버가 다시 죄를 받고 6량의 돈을 징수하였는데 그가 또 혼자 전날처럼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위로는 부모같은 관을 속이는 것이고 아래로는 조선의 영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끝이 없는 욕심은 그래도 부족하여 여러 가지로 거짓을 꾸며서 또 순절巡節에게 무소하였습니다. 위의 복현은 전에 관장을 핍박한 죄로 이미 감죄勘罪를 하였으나 엇드려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신규현辛奎鉉, 신기원辛基元을 법정에 잡아들여서 앞으로 기노起鬧하는 폐단을 징계하시고 한편으로는 이 잔악한 백성으로 하여금 선릉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겸성주兼城主 처분

임인년 4월 일

[제사]

보고서를 이미 봉하여 보냈는데 하필 또 소송인가. 오직 순영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

22일.

겸관兼官 [서업]

道內化民 辛齡奎

右謹言 飲泣悶鬱事 民之父入於族人辛復鉉之誣捏 方在囚禁中是如緣由 舉槩仰訴 伏乞細細垂察焉 伏以民之十四代祖

落鄉於本郡道內面陶洞村 而至十三代祖有子兄弟 則其長子民之宗派 而仍居于陶洞村是遣其次子 卽民之十二代祖 而分居于

立石村 則陶洞立石卽一路之間也 當其分居之時 路北自宗家主張是遣 路南自民家次知 而十四代祖十三代祖傍十二代祖墳墓 在於立石

村後麓 則是民之都先山 而諸子孫互相入葬之地是允 其西麓卽民之十二代以後世世繼葬四百年守護之地 無他宗人一點塚 則是

卽民之私山是允 其東麓卽民之十二代祖分居時舊基 而其後子孫 次次移下 仍以入葬於舊基 則民之今居家基 卽民之高祖

母曾祖父階下也 大抵其東西麓有如干邱木 而大者椽木 小者丫脚是加尼 去年辛丑三月良中本郡 聖廟修理所燔

瓦之人 請買其近墳墓背陰處伐木 故放賣其二十兩價松矣 同族人辛復鉉 辛奎鉉 辛基元等以民之私山 指以爲都

先山 以椽丫之木 稱以爲棺槨 以二十兩錢 誣以爲二百兩 往呈水營是如 及其關下之日 自本官卽爲發校摘奸是齊

及其回題之下 以犯松一款徵勸之意 題下於本邑 故民之父六朔牢囚 三度決杖是乎所 復鉉等連月呈訴之意 每以爲先

爲言 故本邑舊官城主 雖洞燭其非理之狀 而亦有可欺之方 故以其息訟之意 徵出百兩錢於民

以給復鉉是加尼 同復鉉及  
 其捧錢之日 無一字文爲先之道是遣 私自獨吞是加尼 至其八月 本邑虹門重修所都木手 來伐  
 二株松於民之高祖母墳墓上 則其間  
 所折之木 將至八九株是加尼 至今年二月 同復鉉等 以此松又爲構虛誣訴是如 民之父更加受  
 罪 徵錢六兩 渠又獨食 亦如前日  
 則是上以欺父母之官也 下以欺祖先之靈也 然渠之不厭之欲 猶爲不足 百端歸詐 又爲誣訴於  
 巡節之下是如 同復鉉 以  
 其舊逼官長之罪 既爲勘罪是乎乃 伏乞參商教是後 辛奎鉉 辛基元捉致法庭 以徵日後起鬧之  
 端是遣  
 一以使此殘民 俾得守護先壘之地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壬寅四月 日

[題辭]

報既封發/ 何必更訴 惟/待巡營處分之/如何事

廿二日

兼官[署押]

#### 4-48)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 흥문 중수 문제로 도목수와 면임이 보는 데서 작별을 하였는데 신복현이 무소함. 증인들을 데려와서 대질하라고 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아버가 작년 이후로 여러 번 족인族人의 무소 誣訴에 들어가 여러 번 대죄待罪를 하니 매우 황송합니다. 금번에는 또 작송斫松 문제로 또 무정誣告을 하여 감히 이번에도 대죄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먼 시골에 살고 있어서 매우 어리석고 노망합니다만 역시 금송禁松의 율律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여러 번 중죄를 받아서 스스로 징려懲勵하는 것을 알아서 비록 나무 한 가지 한 잎이라도 감히 사사로이 작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읍내의 도목수都木수가 흥문虹門을 중수하는 일로 와서 대송大松 두 그루를 벌채하였는데 그 큰 나무가 넘어질 때에 그 옆에 있는 중간 정도의 소나무도 자연히 부러진 것이 서



너 그루입니다. 그 동부면과 도내면 두 면의 군정軍丁이 굴러 가지고 갈 때에 혹은 지목支木이라고도 하고 혹은 횡목橫木이라고 하여 이렇게 작벌斫伐한 것이 역시 서너 그루입니다. 이번에 저의 죽인이 이 소나무를 아홉 그루라고 하고 또 제가 사사로이 작벌한 것이라고 하여 또 무소하였습시다. 그때의 도목수와 양 면의 면임을 잡아다가 사문査問하면 상세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소나무를 작벌한 것 이외에 다시 나무 한 가지 한 잎이라도 범하였다면 저는 범금의 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죽인이 감히 무소를 하였다면 역시 기망한 율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지난 달에 죄를 받은 후에 객증客症이 더해져서 식음을 할 수가 없으니 이에 감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할 것으로 대령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명神明께서 처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3월 일

[제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급히 데리고 와서 대변對辯할 것.

12일. 장자狀者에게.

[서업]

道內化民 辛齡奎

右謹言情由事 民之父 自去年以後 累入於族人之誣訴 累度待罪 極涉惶悚是加尼 至于今番

且以斫松事 又爲誣呈 敢此待

罪爲去乎 伏以民居在遐土 極爲愚魯 亦知禁松之律是乎尔 且去年累度重罪之下 自知徵勵 雖

一枝一葉 不敢私斫是

加尼 去年八月良中 邑內都木手 以虹門重修事 來伐大松二株是如 及其大木之將頽也 傍立中

松 自然中折者 已爲三四株

是乎尔 及其東部道內兩面軍丁 轉去之時 或以爲支木 或以爲橫木 以此斫伐者 亦爲數三株是

加尼 今此民之族人 以此松

稱以爲九株 稱以民私斫 又爲誣訴是乎乃 其時都木手與兩面面任 捉致査問 則昭昭可證是齊

若使民此松斫伐之外

更有一枝一葉之犯 則民難免犯禁之律是乎尔 若使族人敢爲誣訴 則亦難免欺罔之律是乎所

民之父去月受罪之

後 添以客症 不得食飲 茲敢民代父罪待令爲去乎 伏乞神明處分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三月 日

[題辭]

可證人 急爲/率來對卞/尙事

十二 狀

[署押]

#### 4-49)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해설】松價錢 문제. 작년에 100량. 이번에 6량을 신복현에게 지급함. 문권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으니 엄히 처벌하게 해달라고 함. 그러나 이미 늦었고 문권은 앞으로 문제가 되면 내라고 하겠으며 이 문서로 입지를 한다고 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3일 동안 수금囚禁된 후 특별히 성주의 재생의 은택을 입어 이미 출옥하였습니다. 하늘 같은 홍대한 은혜는 감격하여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히 이번의 송가전松價錢 6량은 지엄한 관령으로 감히 위월違越하지 못하고 이미 신복현辛復鉉에게 비급備給하였습니다만, 일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여 이에 감히 한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양소仰訴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주십시오.

산지山地는 저의 12세 동안의 수호한 땅인데 작년에 성주께서 이미 결정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작송斫松 문제는 홍문虹門을 중수重修할 때에 도목수都木手가 작벌한 소나무로 가전價錢은 단지 4량입니다. 위 복현은 저의 사산私山을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칭하면서 이 소나무를 가지고 제가 사작私斫하였다고 거짓을 꾸며서 무소誣訴하고 또 6량 돈을 징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미 100량 돈을 받아먹고 또 금년에는 이 돈을 받으니 이는 끝이 없는 욕심에 징구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불쌍한 이 고혈孤子의 백성은 어떻게 지탱하여 살겠습니까? 또 작년에 위 복현에게 저 사람의 앞뒤 문권文券을 추심推尋하겠다는 뜻으로 몇 일을 뇌수牢囚하고 성주의 분부도 매우 엄절嚴截하였는데 끝내 현납現納하지 않고 지금까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을 지키는 백성입니까? 이에 감히 소리내어 양소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신복현을 법정에 잡아들여서 특별히 아프게 다스리신 후에 먼저 저 사람의 문권을 하나하나 추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3월 일

[제사]

문권은 지금 이미 때가 늦었으니 우선 쟁론하지 말 것이다. 지금에 와서 문권의 유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이것으로써 입지立旨를 한다.

13일

[서업]

道內化民辛齡奎

右謹言 伏以民三日囚禁之餘 特蒙城主再生之澤 既得出獄 如天弘大之恩 無地感激之報是白  
齊 敢此今番 松價錢六兩是置

至嚴官令之下 不敢違越 已爲備給於辛復鉉處是乎乃 事極冤枉 茲敢冒萬死緣由仰訴 伏乞細  
細垂察焉 山地民

之十二世守護之地 而去年良中 城主已爲決處以給是白乎矣 至於斫松事 虹門重修時 都木手  
所斫之松 而價錢只是四兩

是去乙 同復鉉 以民私山 稱以爲都先山 以此松謂民私斫 構虛誣訴 又徵六兩錢是如 去年既  
爲捧食百兩錢 而今年又捧此錢 則

是無厭之欲 求之無已者也 哀此孤子之民 何以支居乎 且去年良中 同復鉉處 渠之前後文券推  
尋之意 數日牢囚 城主分付

極爲嚴截是白乎矣 終不現納 至今頑據者 此亦有法之氓乎 茲敢疾聲仰訴爲去乎 伏乞參商教  
是後 同辛復鉉 捉致法庭

另加痛治 爲先渠之文券 一一推尋 以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三月 日

[題辭]

文券則今已時晚/ 姑勿爭論 到今文/券有無 別無緊/關 此後更不得/如是之意 以此/爲立旨事

十三

[署押]

4-50) 1842년 화민化民 신헌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신헌업이 종인인 신두업의 무소를 당하고 구타를 당한 것. 벌송 문제는 다시는 기송하지 않겠

다는 신두업의 수표가 있으니 잘 구별해 달라는 소지.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었드려 생각건대 제가 종인宗人 신두업辛斗業의 무소誣訴에 빠졌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당한 것은 인근 촌에 증인이 있으며 벌송伐松 문제는 동부東部, 도내道內 두 면의 면임面任과 읍내의 도목수都木手が 관령官令을 받들고 대송大松 두 그루를 작벌斫伐할 때에 옆에 있던 다른 소나무가 넘어지는 중에 절단된 것이 8,9 그루입니다. 또 본면 면임이 자세히 조사하여 문보文報할 때에 위의 신두업이 스스로 이치가 풀린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기송起訟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표手票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위 신두업의 수표를 점련하여 양소하오니, 었드려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특별히 신명神明 같이 제음을 내려서 이 잔약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2월

[서업]

[제사]

이미 수표를 해서 사화私和를 하였으면 무송無訟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다.

14일.

道內化民 辛恒業

右謹言情由事 伏以民 冒入於宗人辛斗業之誣訴中是乎所 至於被打事 隣近村自有證人是允至

於伐松事 東部道內兩面面任 與邑內都木手 奉官令 大松二株斫伐之際 傍立餘松 頽然中折者已

爲八九株是如 及其本面面任 詳查文報之時 同辛斗業 自知理屈 更不起訟之意 成手票以給是乎所

如是同辛斗業手票 帖連仰訴 伏乞參商教是後 特爲神明題下 使此殘氓以爲支居之地爲只爲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二月

[署押]

[題辭]

既爲手票私/和 則可謂使/無訟事

4-51) 1842년 화민化民 신흥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관령을 받아 동부면 외탄진 진선 재목을 작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더 많이 남작한 송가를 받아달라는 소지. 향청에 조사하라고 지시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흥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초8일에 동부면 면임이 해면 외탄진瓦灘津의 진선津船을 개조한다는 뜻에서 관의 전령傳令을 받아 저의 증조모曾祖母 묘의 용미龍尾에서 벌송伐松을 하였는데, 저는 관령官令을 감히 위월違越할 수 없어서 그 선재에 쓰이는 것이 몇 그루인지 물으니 그의 말에 관재목棺材木 네 그루면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네 그루를 15량에 가격을 정하고 작별해 가라는 뜻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처의 병으로 지금 대변待變 중에 있어서 다시는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운반해 갈 때에 저는 처음 나가 보니 위 소나무 네 그루 외에 사사로이 남작濫斫한 것이 대송大松 7그루, 소송小松 5그루 합 12그루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잡목도 무수히 난작亂斫하여 이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렇게 법외의 길이 있겠습니까? 선재 재목에 이르러서는 관령이 있으니 당연히 작별해야 하거니와 나머지 송추松楸를 남작濫斫한 것은 이것은 저 사람의 사계私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이와 같은 잔악한 백성은 어떻게 지탱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위의 선재 재목 네 그루 외에 사사로이 남작한 소나무 12그루 값을 하나하나 징급徵給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12월 일

[제사]

잡아와 사실을 조사한 후에 품고稟告할 것.

11일.

향청鄉廳에.

[서업]

道內化民 辛恒業

右謹言情由事 今月初八日良中 東部面任 以該面瓦灘津船改造之意 奉官傳令來到于民之曾祖母墓龍

尾上伐松是乎所 民官令之下 不敢違越 問其船材所用幾株 則渠之言內 棺材木四株 則可用云  
云 故依其言

四株松決價十五兩斫去之意相約 而民則以妻病 時在待變中 故更不得出見矣 昨日良中 運去  
之時 民始爲出見 則右

松四株外 私自濫斫大松七株小松五株合十二株 而餘外雜木之無數亂斫 已無言論是如 世豈  
有如許法外之道乎

至船材木 官令之下 在所當斫是去伊臥 餘外松楸之濫斫 此不過渠之私計也 事至此境 如此殘  
民 何以支居乎

右船材木四株之外 私自濫斫松十二株價 一一徵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十二月 日

[題辭]

捉來查實後/ 稟告事

十一日

鄉廳

[署押]

#### 4-52) 1842년 화민化民 신행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선산 구목가 쟁송. 동부 풍헌과 신복현 결탁.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행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선산先山의 구목邱木을 와탄진瓦灘津 진선  
개조를 위하여 소나무 네 그루를 벌채한다는 것 외에 15그루를 더 작별한 일은 동부東部  
풍헌風憲과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에 성주의 분부 내에 송가松價를 징수하여 주라는 뜻으  
로 동부 풍헌에게 행하하였으나 위 풍헌이 관문官門을 나온 후에 팔을 휘두르며 큰소리  
로 말하기를 “비록 백번 천번 정소를 해도 송가松價는 지급하지 않을 것” 운운 하는바, 관  
령官令이 내려왔는데 어찌 저렇게 법을 무시하는 풍습이 있겠습니까? 그 본말을 궁구해  
보면 이는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 등과 사의私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  
지山地에는 원래 그 주인이 있고 솔을 기른 것도 그 주인이 있는데, 이는 구관舊官 성주께  
서 수영水營에 보고하고 순영巡營에 보고하여 이미 결정이 된 소송인데, 주인이 있는 소

나무를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찌 매매하는 길이 있으며 그 주인이 매매하면 값을 받을 때에 어찌 수표를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 한 조항은 동부면 풍헌과 신복현, 신기순이 백 가지로 간계를 부린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원통하고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다시 고소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동부 풍헌을 법정에 잡아들여서 먼저 그 범송犯松의 율律과 그가 관령을 멸시한 죄로 중하게 다스리시고 그 후에 앞에 작별한 네 그루 소나무 값 15량과 더 작별한 소나무 15그루 값을 하나하나 징급徵給해주실 것을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12월 일

[제사]

이미 관의 결정이 있으니 우선 기다리는 것도 무방하겠다.

20일.

[서업]

道內化民 辛恒慄

右謹言情由事 民昨日良中 以先山邱木 瓦灘津船改造伐松四株外 加斫十五株事 與東部風憲  
頭對時 城主分

付內 松價徵給之意 行下於東部風憲是乎乃 同風憲 出自官門之後 揚臂大談曰 雖百呈千訴  
松價不給云云是乎所

官令之下 豈有如許蔑法之習乎 究其本末 此不過與辛復鉉 辛基峴等有私議而然也 山地自有  
其主 養松自有其主 則是

舊官城主 報水營報巡營 既決之訟是如 有主之松 非其主 豈有買賣之道是乎旡 使其主買賣  
則捧價之時 豈有成

標之理乎 追此一款 東部風憲與辛復鉉 辛基峴之百態奸狀 不待智者而可知 茲敢不勝冤迫  
緣由更訴 伏乞

參商教是後 東部風憲 捉致法庭 爲先重繩其犯松之律果 與其蔑視官令之罪 然後前斫四株松  
價十五兩

果 加斫松十五株價 一一徵給之地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十二月 日

[題辭]

既有官決 姑待/無妨事

廿日  
[署押]

#### 4-53) 1842년 화민化民 신행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동부면 풍헌이 와탄진 진선을 개수한다고 관령을 받아 와서 작벌을 하였는데 솔 값을 주지 않음. 그래서 고소했는데 우선 기다리라는 제음이 있었고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빨리 받아달라고 호소함. 수령은 새해를 기다리라고 제음을 내림.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행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원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의 사산私山의 송추松楸를 남작濫斫한 일로 여러 번 정소呈訴를 하여 매우 황송하오나, 사람이 아프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불러서 고하니 저의 이 하늘에까지 닿는 아픔을 어찌 다만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한번도 자혜로운 목민관에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13세조가 낙향한 후에 11대를 대대로 계장繼葬한 곳에 약간의 구목邱木이 있는데 바로 저의 3세 동안 봉식封植하여 배양한 소나무입니다. 이번달 초8일에 동부면 풍헌이 해당 면 와탄진瓦灘津의 진선津船을 개조하는 일로 관령官令을 받들고 와서 대송大松 네 그루를 저의 증조모 분묘 위에서 작벌하고 15량으로 값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을 운반해갈 때에 소나무를 더 작벌한 것이 대중소大中小 합하여 15그루인데 위의 송가松價 15량도 역시 추급推給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위所爲를 궁구해보면 이는 동부 풍헌과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峯 등이 몰래 모의하여 남작한 것으로, 사사로이 먹어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바로 정소하니 조사하여 아뢰라는 뜻으로 향청鄉廳에 분부하여 장교를 발한 것이 두 번입니다. 솔 뿌리를 조사한 연후에 저와 동부 풍헌이 관정官庭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질할 때에 성주의 분부에 “전후의 송가를 일일이 추급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였으나 위의 풍헌은 전혀 추급할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소하니 제음題音에 “이미 관의 결정이 있었으니 우선 기다려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행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음을 받들고 풍헌에게 가서 보여 주고 기다린 것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새해가 하룻밤 남았는데 끝내 추급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력私力으로는 전혀 추봉推捧할 길이 없으므로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고소하오니 바라건대 자세히 통촉하신 후에 위 동부 풍헌을 차사差使를 발하여 법정에 잡아들여서 먼저 그가 관령을 거역한 죄를 중히 다스리고 그러한 연후에 네 그루의 송가 15량과 더 작벌한 소나무 15그루 값을 하나하나 추급하여 원통함을 호



소하는 폐가 없게 하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임인년 12월 일

[제사]

패자牌子를 발하여 잘못을 다스리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우선 새해를 기다렸다가 당연히 추급할 것.

28일.

[서업]

道內化民 辛恒慄

右謹言冤痛情由事 伏以民而私山松楸濫斫事 累度呈訴 極爲惶悚是乎乃 人有疾痛 必呼父母 而告之 民有此極天之痛 豈

敢徒懷畏慄之情 那無一呼仰告於慈牧之下乎 民十三世落鄉之後 十一代世世繼葬之地 有如 干邱木 而卽民之三世封植培養之松也

今月初八日良中 東部風憲 以該面瓦灘津船改造事 奉官令來斫大松四株於民之曾祖母墳墓 上 而決價十五兩矣 及其運去時 加斫

松並大中小合十五株 而右松價十五兩 亦不推給是如 究其所爲 此不過東部風憲與辛復鉉 辛 基峴等 暗謀濫斫 欲爲私食之計也 以此緣

由 卽爲呈訴 則查稟之意 分付鄉廳 發校再度 摘奸松根 然後民與東部風憲頭對官庭時 城主 分付內 前後松價 一一推給

之意 嚴勅是乎乃 同風憲 萬無推給之意是如 緣由更訴 則題音內 既有官決 姑待無妨之意 行 下教是 故奉題音往視風憲處

而待之 至于今日 新年隔夜是矣 終不推給則以民私力 萬無推捧之道 故茲敢冒死更訴爲去乎 伏乞 細細洞燭教是後 上項東部風憲 發差捉致法庭 爲先重繩其拒逆官令之罪 然後四株松價十五

兩果 加斫松十五株價 一一推 給 俾無呼冤之弊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十二月 日

[題辭]

發牌治非 此非其時/ 姑俟新年 當推給事

廿八日

[署押]

【해설】소지 초고 미발 문서.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동부東部の 옛 풍헌風憲 박정록朴正祿이 (신복현辛復鉉 등과 동모同謀하여 편재騙財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에 와탄진瓦灘津 진선津船 문제로 난작亂斫하여 ... 저의 원통하고 절박한 사정은 성주께서 이미 잘 살피셨습니다. 이달 초10일에 감히 다시 정소하니 향청은 ... 지금까지 10여 일이지만 끝내 징급徵給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박悶迫함을 이기지 못하여 좌수座首에게 물어보니 (신복현 등을 전혀 징급하려는 뜻이 없고 좌수에 이르러서도 지엄한 관령官令에도 감히 ...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명정안법明政按法에 양약하오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박정록을 관정에 잡아들이고 ... 전혀 징봉할 길이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의 원왕冤枉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에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정소하니 헤아리신 후에 위 박정록을 관정에 잡아들여 앞뒤의 송가松價를 하나하나 징급徵給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해년 정월 일

〈배면背面〉

수영, 순영 양쪽의 보고 초를 동봉함.

右謹言情由事 伏以東部舊風憲朴正祿(與辛復鉉等 同謀騙財) 去歲前十二月良中 以瓦灘津  
船事 亂斫 民

則民之冤迫情狀 城主既爲稔察是白齊(去)今月初十日良中 敢此更訴 則  
於鄉廳□...□ 至于今十餘日是乎矣 終不徵給 故民不勝悶迫 往問于座首  
(辛復鉉等 而萬無徵給之意是遣 至於座首 至嚴官令之下 非不敢)

茲敢冒沒 仰籲於明政按法之下爲去乎 伏乞參商教是後 上項朴正祿 自官庭捉  
問 萬無徵捧之道 事至此境 民之冤枉 倘復如何哉 茲敢冒沒更訴爲去乎  
參商教是後 同朴正祿 自官庭捉致 前後松價 一一徵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正月 日

[背面]

水巡營兩報草封

4-55) 1843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立旨

【해설】 소와 말을 도적 맞은 사실을 확인하는 입지.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에 사는 신가 노辛奴 귀남貴南  
여기에 삼가 사정을 진술합니다. 저의 댁 50량 값이 나가는 말과 50량 값이 나가는 소  
를 그저께 백주白晝 도적을 맞아 잃어버렸기에 뒷날 추심하는 의도에서 털색을 후록  
後錄하고 양소仰訴하오니 입지立旨를 성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사또使道 처분

계묘년 일

숫소[牛雌]

그 털은 붉고 누런

그 뿔은 아래로 굽어져 있고 뿔 하나는 속이 비었음.

말[馬]

그 털은 붉고 검음

그 이마에 흰 점이 있음

[제사]

성급成給할 것.

26일

[서업]

道內面立石里居 辛奴貴南

右謹陳情由事 矣宅五十兩價馬果 五十兩價牛 再昨日良中 白晝賊失 而日後推尋之意 毛色後

錄 仰訴立旨成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 處分

癸卯 日

牛雌

厥毛赤如黃

厥角下垂如曲而一角如奪核耳

馬

厥毛赤且黑

厥額有白点

[題辭]

成給事

廿六日

[署押]

## 4-56) 1843년 화민化民 신경辛敬 소지所志

【해설】문중에서 판 송목松木 문제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경辛敬 등

여기에 삼가 분통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문중에서 판 소나무를 족인族人 항업恒業이 흠쳐서 작별하여 공역公役이 정지되기에 이르러서 값을 도로 찾는 일로 일전에 정소하였습니다. 엇드려 사실을 조사하여 추급推給하라는 제교題敎를 받아 유향留鄕에게 가서 주었습니다. 위 항업은 성격이 본래 강포强暴하고 집이 또 부호여서 이미 관령을 거역한 것이 많습니다. 유향은 마음이 소졸疏拙하여 스스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는 피차간에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음을 받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을 주관하는 장교將校는 헛되이 이미 작별한 재목을 잃게 되었고 항업에게는 도리어 이미 지급한 돈을 문중에 책임을 지우고 문중은 돈을 받고 소나무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장교는 갑자기 소나무를 잃고 돈을 책임 지우니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모두 항업이 중간에서 소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19일에는 장교가 또 선산의 송추를 작별하고 항업이 함께 참여하여 계산하여 옮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符同한 흔적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연코 다시 계속할 수가 없고 또 하물며 돈으로 대신 작별하여 간 것은 꼭 장교를 괴이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관초에 항업이 재단한 패역悖戾입니다. 거의 자른 소나무가 구경에 합당하고 그런 연후에 선산과 사산私山을 분별할 수가 있고 종파宗派와 지파支派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읍소泣訴하는 것은 과연 재목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힐난하는 것은 바로 이곡裏曲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헤아려서 저 사람 집에 장치藏置된 재단목裁斷木 18그루를 바로 추급推給하여 문중에 부속하도록 처분해주십시오. 행하하십시오.

겸성주兼城主 처분

계묘년 5월 일

[제사]

이 소송에 대해서 들은 것이 이미 몇 년이라고 한다. 본관本官이 환아還衙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정소하여 질변質卞하는 것이 의당함.

21일

겸관兼官 [서업]

靈光化民 辛楸等

右謹言憤痛情由事 民等門中所賣之松 族人恒慳 偷竊斫斷 以至公役停止 還索價本事 日前呈訴 伏承查實推給之題教 往付留鄉是

乎矣 同恒慳 性本強暴 家且富豪 已多官令之拒逆 留鄉心常疏拙 自顧已事 不欲取怨於彼此

□奉 題音□手無言 所謂主事將校 空失既斫

之材 於恒慳 反責已給之價於門中 門中知以捧錢許松將校 忽以失松 責錢 此事彼事 都是恒

慳中間之紹介劣除良 今十九日 將校又斫先山松楸

也 恒慳同參計輸云 似是符同之跡 然此則斷不可復續 又況錢代斫去者 則不必深怪於將校 所

可痛者 卽是官初恒慳裁斷之悖臆也 幾斷之松 合有

區竟 然後可分先山與私山 可別宗派與支派 民等今此泣訴 果非材錢 而相詰卽是裏曲之所發

別般參量 渠家藏置裁斷木十八株 卽爲推給

付屬門中事 處分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癸卯五月 日

[題辭]

此訟之來/聞 已有年/所云 待本官/還衙 更呈/質卞宜當/事

廿一日

兼官[署押]

#### 4-57) 1843년 화민化民 신광한辛光漢 소지所志

【해설】 신복현이 문종을 보조한다는 핑계로 도선산 구목 문제(향교 성전 수리, 衙舍 수리 시의 구목 판매 대금)로 우마를 약탈해가는 횡포를 부리는 신복현 등을 처벌해달라는 소지.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광한辛光漢 등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큰 악이 있으면 하늘은 꼭 그것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커다란 죄가 있으면 귀신이 반드시 그것을 주멸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죽인族人인 소위 신복현辛復鉉이 조종祖宗을 욕보이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하늘이 왜 밝은 위에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귀신은 어찌하여 어두운 속에서 주멸하지 않습니까? 대강을 들어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저희들의 종인宗人 신항업辛恒業은 일찍이 문학文學을 하면서 세업을 지켜왔습니다. 만년에 경농耕農을 한 것 역시 기한飢寒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종종에 크게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난 복현은 억하심장抑何心匠으로 도리어 시기심을 내서 여러 가지로 모해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본군의 도내면道內面 입석촌立石村 뒤에는 세 산기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슭은 바로 저희들 낙향 시조의 도선산등都先山嶺이어서 여러 자손들이 서로 입장入葬하는 곳입니다. 그 서쪽 기슭은 바로 신항업의 11세 계장繼葬하는 땅으로 다른 종인은 한 점의 묘도 없습니다. 그 동쪽 기슭은 바로 신항업의 옛 집터였는데 이어서 입장入葬하는 땅입니다. 지난 신축년 봄에 본군의 성전聖殿을 중수重修할 때에 위 신항업이 그 서쪽 기슭에 있는 약간의 소나무를 방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복현이 헛된 말을 만들어 내서 수영水營에 정소하고 순영巡營에 정소하여 한편으로는 주육酒肉이 자금을 만들어 먹고 한편으로는 처자妻子를 배불리 먹일 계획입니다. 그 후에 당여黨與를 모아 일을 만들어 신항업의 집에 돌입하여 혹 밤중에 기물을 빼앗아가고 혹 백주에 우마牛馬를 끌어가서 파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욕심을 채웠으면 이것으로 족할 텐데 도리어 이 도둑질해간 것을 위선爲先이라고 하니 욕이 막심합니다. 아니 이 비루한 행동을 보충補宗이라고 이름붙이기 욕이 막심한 것입니다. 가령 복현이 만약에 위선을 하고 보충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오로지 재산을 편취하여 자기를 살찌우는 자산으로만 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과 복현은 똑같이 낙향한 한 선조의 자손이고 함께 분파하여 10세가 된 종족입니다. 만약 위선하는 길이 있다면 비록 마정방중磨頂放縱한다 해도 어찌 감히 사양하겠으며 만약 보충의 일이라고 한다면 죽어도 피하지 않을 것인데, 저 사람 혼자만 유독 위선을 하고 보충을 하는 마음이 있고 저희들 일문一門은 모두 위선 보충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금번에 본현本縣 아사衙舍를 중수하는 재목 값으로 말하더라도 위 복현은 끝없는 욕심으로 또 빼앗아가려는 계획을 세워서 군중을 모으고 당여를 만들어서 읍저邑邸에 숨겨둔 것이 또 두 달입니다. 뒤끝의 광경은 아마 망측한 거조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차將差를 정하여 신항업에게 보내셔서 월화성우越貨城隅의 폐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 해주십시오.

검성주兼城主 처분

계묘년 11월 일 신광한辛光漢/ 신기복辛基復  
신광섭辛光燮/ 신항렬辛恒烈/ 신항언辛恒彦  
신항운辛恒運/ 신항룡辛恒龍/ 신항일辛恒一  
신굉규辛宏奎/ 신항옹辛恒惟/ 신연규辛年奎 등

靈光化民 辛光漢等

右謹言情由事 世有稔惡 天必厭之 人有鉅罪 鬼必誅之 今此民等之族人 所謂辛復鉉之忝祖辱宗 極矣甚矣 天何不厭於昭昭之上矣 鬼何不誅於冥冥之中乎 舉槩仰籲 伏乞細垂察焉 民等之宗人辛恒慳 早事文學 謹守世業 晚服耕農 亦免飢寒 而且大有功於宗中矣 不肖復鉉 抑何心匠 反生猜忌之心 百端謀害 無所不至是如 大抵本郡道內面立石村後有三麓 而其中麓 卽民等之落鄉始祖之都先山嶺 而諸子孫互相入葬之地是乎旆 其西麓卽辛恒慳十一世繼葬之地 而無他宗人一點塚是乎尔 其東麓卽辛恒慳之舊居家基 而仍以入葬之地也 去辛丑年春良中 本郡聖殿重修時 同辛恒慳 放賣其西麓如干松矣 復鉉構成虛辭 呈水營呈巡營 一以爲吐食酒肉之資 一以爲飽喫妻子之計是尔 且其後聚黨作梗 突入辛恒慳之家 或乘夜器物之賊去 或白晝牛馬之牽賣者 亦匪一匪再 則於渠充欲 止斯足矣 而反以此偷盜之事 稱以爲先 忝莫甚焉 抑以是鄙累之行 名以補宗 辱莫極焉 假使復鉉 若有爲先補宗之心 專以騙財之欲 徒爲肥己之資乎 伏以民等與復鉉 同是落鄉一祖之孫也 共是分派十世之宗也 如有爲先之道 雖磨頂放縱 生何敢辭 如有補宗之事 死且不避 渠之一箇獨有爲先補宗之心 而民等之一門 俱無爲先補宗之心乎 以今番本縣衙舍重修材木價言之 同復鉉 不厭之欲 又出剽奪之計 聚羣成黨 隱匿邑邸 又今兩朔矣 未梢之景 必有罔測之舉 伏乞定將差 按送于辛恒慳處 無至越貨城隅之弊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癸卯十一月 日 辛光漢/ 辛基復/ 辛光燮/ 辛恒烈/ 辛恒彦/ 辛恒運/ 辛恒龍/ 辛恒一/ 辛宏奎/ 辛恒惟/ 辛年奎 等

4-58) 1843년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소지所志

【해설】 가내에 침입하여 말안장, 기명 등을 백주에 훔쳐간 신복현 등을 처벌해주시기 바람.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신복현辛復鉉 등 4, 5인이 당여를 모아 부화뇌동하여 여러 가지로 저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전후 내력을 성주께서는 대장 통촉하실 것이니 번거롭게 아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물러나고 두 번 물러나서 그 악습을 길러주었습니다. 작년 이래 말안장과 기명器皿 등을 백주에 흠쳐간 것은 죽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봄 2월에는 농구農牛 한 마리를 마음대로 도둑질해갔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이 폐농廢農에 이르렀습니다. 참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또 오늘은 말을 이웃 마을 혼행婚行에 보냈는데 저자들이 중로에 돌출하여 마부를 표략剽掠하여 어려움 없이 빼앗아 갔고 들판에 소를 방목하였으니 응당 백주에 흠쳐간 것입니다. 일시에 소와 말을 흠쳐가니 이 무슨 변괴이고 이 무슨 법리法理입니까? 저는 귀머거리 병어리처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아는 한에서는 공법公法이 있다고 하니 대강을 들어서 양소仰訴합니다. 법에 따라 처결해주실 것을 헤아려 처분해주십시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윤7월 일

[제사]

내가 전후 피차의 소장을 보니 다른 말이 없구나.

24일.

[서업]

道內化民 辛宏珪

右謹言情由事 辛復鉉等四五人 聚黨符同 百端作害於民者 不一其端 前後來歷 城主庶可洞燭  
教是 則不必煩達是矣 一退二

退 長其惡習 自昨年以來 馬鞍器皿等 白晝偷去 已無足論 而今春二月良中 農牛一隻 肆然盜  
去 而無處控伸 至於廢農 忍而至此矣 又於今日 送

馬於隣村婚行矣 彼輩突出中路 剽掠馬夫 無難奪去是遣 放牛於野外矣 應爲白晝偷去 一時牛  
馬之偷竊 是何變怪 此何法理 民則如聾如

啞 不知所爲 愚民所見知 有公法之所在 故舉槩仰訴爲去乎 依法處決事 參商處分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閏七月 日

[題辭]

官於前後彼此之/訴 無異辭事



廿四日  
[署押]

### 4-59) 1843년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소지所志

【해설】 가족을 구타하고 농구, 유기 등 기물을 도적질해간 신복현 등의 처벌을 원함.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굉규辛宏珪

여기에 삼가 민박悶迫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의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미가 죽  
인族人 신기원辛基元에게 구타당하여 지금 사정을 헤매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발  
괄白活을 하니 성주께서 저의 동종同宗 끼리의 상송相訟은 매우 불미스럽다는 뜻으로  
처분하셔서 저는 물러나 귀가를 하여 말씀에 감격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허물을 들어  
자책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어제 저녁에 신복현辛復鉉, 승철勝哲 등이 백주에 도  
적질을 할 마음으로 또 당여를 이끌고 바로 와서 바로 내정內庭으로 들어와 농구農牛  
를 도둑질하여 갔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전에 말안장, 요강과 유기鎗器 등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에는 비록 저  
사람들에게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제가 그때에 잃어버린 것은 아사餓死 지  
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경농畊農 시기를 당하여 이 농우를  
잃은 것은 저의 두 아픈 어머니 밑에서 폐농하고 아사할 것이니 결코 사람의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이에 감히 소리를 내어 양소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신명神明께서  
처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2월 일

[제사]

물러라[退]

道內化民 辛宏珪

右謹言悶迫情由事 昨日良中 民之老父老母 爲族人辛基元之摑搏 時在死境 故緣由白活 則城  
主以民之同宗相訟 極爲不美之意 處分教  
是 故民退而歸家 感教悔過 引咎自責是加尼 不意昨日暮 辛復鉉 勝哲等 以白晝行賊之心 又  
爲率黨卽來 直入內庭 盜去農牛是如 伏以前者  
馬鞍溺缸與鎗器等物 雖爲逢賊於渠輩是乎乃 民以此見失 不至於餓死之境是加尼 當此畊農

之時 失此農牛 則民兩病親之下 廢農餓死 切非  
 人子之道 故茲敢疾聲仰訴 伏乞神明處分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二月日

[題辭]

退

#### 4-60) 1843년 화민化民 신기복辛基復 소지所志

【해설】 신복현의 비리호송 문제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기복辛基復, 신항렬辛恒烈, 신항일辛恒一, 신항옹辛恒惟 등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접때에 신복현辛復鉉의 비리호송非理好  
 訟 문제로 관정에 들어가 양소하였습니다. 성주의 분부에 “족인族人 신항엽辛恒爍을 데  
 리고 오면 처결하여 주겠다”는 뜻으로 행하하였습니다. 신항엽은 또 발패發牌 중에 지  
 금 와서 대령하고 있으니 법정에 초치招致하여 명백하게 결처決處해주실 것을 천만 바  
 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12월 일

靈光化民 辛基復 辛恒烈 辛恒一 辛恒惟等

右謹言情由事 民等頃日良中 以辛復鉉非理好訟事 入庭仰訴是乎 則城主分付內 族人辛恒爍  
 率來

則處決以給之意 行下是乎所 辛恒爍又在發牌中 今來待令是乎 則招致法庭 明白決處之地 千  
 萬望良

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十二月日

#### 4-61)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현의 아사 수리시에 좌수 등에게 판 소나무 값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신복현이 빼앗을까 걱정. 보호해주실 것을 요청함.

영광靈光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저의 집 뒷산에 세 산기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슭이 저의 도선산都先山입니다. 그 서쪽 기슭이 바로 저의 11대 대대로 계장繼葬한 땅입니다. 그 동쪽 기슭은 저의 조부 이하가 자기 대에 매득하여 문권文券이 소상하고 3세를 계장繼葬한 땅입니다. 대대로 양송養松하여 웬만큼 울창하였습니다. 지난 신축년 봄에 본군의 성전聖殿을 중수重修할 때에 그 근처 사치莎處를 발매하여 벌목하였습니다. 신복현辛復鉉이 제멋대로 비리非理의 욕심을 내어 헛된 말을 만들어서 수영水營, 순영巡營에 정소한 바, 본군의 구관 성주舊官城主께서 특별히 자세히 조사하여 이미 결처決處하셨습니다. 위 복현은 이엄한 영읍營邑의 처결處決에도 징악인구懲惡引咎할 줄을 모르고 마음대로 작경作梗을 하고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혹은 밤중에 기물을 도둑질해가고 백주에 소와 말을 끌어가 팔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본현本縣의 아사衙畝를 중수重修할 때에 좌수座首가 색리色吏, 병교兵校와 함께 두 차례 와서 저의 집에서 매득한 곳의 구목邱木을 살 것을 청하기에 저는 수표手票를 받고 척매斥賣하였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위 소나무가 만약 저의 차지가 아니라면 제가 어찌 감히 사사로이 매매를 하겠으며 또 하물며 향색鄉色이 와서 저에게 산 것이겠습니까? 이 한 조항을 보더라도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사이에 다시 무엇을 놓겠습니까? 위 복현의 끝없는 욕심이 또 빼앗아가려는 계책을 내서 간모奸謀를 만들어 읍저邑邸에 숨어 있다가 주야간에 몰래 엿본 것이 지금 두 달째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끝장에는 아피 망측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잔약孱弱한 백성을 돌아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재목 값을 별도로 장차將差를 정하여 보내셔서 중간에 빼앗기는 폐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겸성주兼城主 처분

계묘년 12월 일

靈光化民 辛恒業

右謹言情由事 伏以民之家後山有三麓 而其中麓即民之都先山也 其西麓即民之十一代世

繼葬之地也 其東麓卽民之祖

父以下自己買得 文券昭詳 而三世繼葬之地是如 世世養松 有如干蒼色矣 去辛丑春 本郡聖殿  
重修時 發賣其近莎

處伐木是加尼 辛復鉉橫生非理之欲 構成虛辭 呈水營呈巡營是乎所 本郡舊官城主 另加詳查  
業爲決處是乎所

同復鉉 至嚴營邑處決之下 不知懲惡引咎 肆然作梗 一無顧忌 或乘夜器物之盜去 白晝牛馬之  
牽賣者 亦匪一匪再是乎所 今

番本縣衙舍重修時 座首與色吏兵校 兩次來到 請買於自民家買得處邱木 故民捧手票斥賣是  
乎所 伏念右松 若使

非民次知 則民何敢私賣是乎 又況鄉色來買於民乎 推此一款 物各有主 明若觀火 復何置款  
於其間哉 同復鉉不厭之欲

又出剽奪之計 襄服奸謀 隱伏邑邱 晝宵竊伺于今兩朔矣 事至此境 末梢之累 必有罔測之舉  
顧此孱弱之民 罔知所爲 緣

由仰訴 伏乞參商教是後 上項材木價 別定將差按送 無至中途剽掠之弊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癸卯十二月 日

#### 4-62) 1843년 화민化民 신헩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동부면 풍헌 박정록이 사산私山 송추松楸 난작亂斫한 문제로 정소, 공납이 끝난 후에 처리하겠  
다고 미룸.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헩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생각건대 동부東部 옛풍헌舊風憲 박정록朴  
正祿이 저의 사산私山 송추松楸를 난작亂斫한 일로 여러 번 정소呈訴하여 저의 억울한  
사정은 성주께서 이미 익히 살피셨습니다. 전에 관정에 들어가 호소하니 분부에 “공  
납公納을 요쇄了刷한 후에 마땅히 징봉徵奉하겠다”는 뜻으로 처분한 바, 저는 분부를  
기다린 것이 오늘에 일렀습니다. 앞서 생각건대 환분還分이 이미 지났으니 위 정록  
의 공납도 아피 요쇄了刷한 지경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번거롭게 하오니 헤아리신 후에 박정록을 차사를 발하여 잡아들여서 선재船材 소나  
무 네 그루 값 15량과 가작加斫한 소나무 16그루 값을 하나하나 징급徵給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2월 일

[제사]

아직 요쇄了刷하지 않았다.

초3일.

[서업]

道內化民 辛恒僕

右謹言情由事 伏以東部舊風憲朴正祿 以民之私山松楸亂斫事 累度呈訴 而民之冤枉情由 城主既爲稔

察是白齊 向日良中 入庭仰籲 則分付內 公納了刷之後 當徵捧之意 處分是乎所 民待分付 至于今日是

如 伏惟還分已過 同正祿之公納 必至了刷之境 故茲敢冒死更瀆爲去乎 伏乞參商教是後 朴正祿發差捉致 船材

松四株價十五兩果 加斫松十六株價 一一徵給之地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二月 日

[題辭]

尙未了刷事

初三日

[署押]

#### 4-63)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僕 소지所志

【해설】 위 문서에 이어짐. 공납이 끝난 후에 처리하겠다고 미룸.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항업辛恒僕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세전歲前 12월에 동부東部 구풍헌舊風憲 박정록朴正祿이 와탄진瓦灘津 진선津船 문제로 선재船材 소나무를 저의 선산에서 작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루 송가松價 15량과 가작加斫한 소나무 16그루 값을 끝내 추급推給하지

않는바, 이러한 연유로 여러 차례 양소(仰訴)하니 제음에 “공납(公納)이 지금 매우 바쁘니 료쇄(了刷) 후에 마땅히 징급(徵給)할 것”이라는 뜻으로 행하하셨습니다. 저는 제교(題敎)를 받들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정록의 공납이 거의 료쇄한 지경에 이르렀으리라고 생각되어 감이 여기에 다시 번거롭게 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 박정록을 법정에 잡아들여서 선재 소나무 네 그루 값 15량과 가작한 소나무 16그루 값을 모두 하나하나 추급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3월 일

[제사]

아직 감쇄(勘刷)가 되지 않았다.

초4일.

[서업]

道內化民 辛恒懌

右謹言情由事 去歲前十二月良中 東部舊風憲朴正祿 以瓦灘津船事 船材松來斫於民之先山 而四株松價十五兩果 加斫

松十六株價 終不推給是乎所 以此緣由 累度仰訴 則題音內公納方棘 了刷後當徵給之意 行下 是齋 民奉題敎 至

于今日是如 伏念當此際 正祿之公納 幾至於了刷之境 故敢此更瀆爲去乎 伏乞參商敎是後 同 朴正祿 捉致法庭 船材

松四株價十五兩果 加斫松十六株價並以 一一推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癸卯三月 日

[題辭]

尙未勘刷事

初四日

[署押]

#### 4-64) 1843년 화민(化民) 신허업(辛恒懌) 소지(所志)

[해설] 소나무 값 받으려는 소지.

영광靈光에 사는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혹 속이는 것도 있고 재산을 편취하는 습성이 있기도 하지만 어찌 저의 종인宗人 신복현辛復鉉, 신기순辛基峴, 신기원辛基元과 같겠습니까?

생각건대 저의 집 뒤에는 대대로 계장繼葬하는 사산私山 기슭이 있어서 여간의 구목邱木이 있습니다. 위 신복현 등이 비리의 욕심을 내서 저의 사산私山을 도선산都先山이라고 하고 헛된 말을 만들어 내서 재작년인 신축년 봄에 수영水營에 가서 정소를 하고 지난 해인 임인년 봄에는 또 순영巡營에 정소를 하였습니다. 본 군의 구관 성주가 좌정할 때에 영제營題를 받들어 이향吏鄉을 발하여 세 차례나 적간摘奸하여 자세히 조사한 후에 신복현 등의 비리의 상황을 통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복현을 엄정하고 엄형하도록 연유와 내력을 신리申理하고 논보論報하니 저 사람의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을 이미 두 영문營門 보사報辭에 자세한 바, 영읍의 처결이 이미 이처럼 엄명하다면 저 사람은 당연히 법을 두려워 하고 죄를 징창하여 허물을 후회해야 하는데, 이는 어찌 개전을 하지 않은 악행과 끝없는 욕심이 갈수록 자심하여 지난 12월에는 본군 동부면 와탄 진선瓦灘津船을 개조할 때에 위 신복현 등이 면임과 협모하여 대송 19그루를 저의 증조모, 조부의 분묘 용미龍尾 위에서 작별을 하였고 가전價錢은 사사로이 홀로 먹어버리고 끝내 추급推給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연유로 정소하니 본읍의 성주가 장교를 발하여 두 차례 적간한 후에 가전을 바로 추급하라는 제음을 내렸으나 이번에 상경하는 행차여서 징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본읍의 교방청教坊廳을 개조할 때에 전령傳令에 교방청 중수 소나무는 공론에 따라서 경내의 사양산에서 화매하되 만약에 공사를 빙자하여 억지로 사려는 폐단이 있다면 너 도목수都木手를 단연코 엄형하겠다는 뜻으로 행하하였습니다.

위 신복현 등이 이때를 틈타서 도목수와 부화뇌동하여 대송大松 24그루를 또 와서 전 12월에 작별한 곳에서 작별하였고 도목수도 저자들의 행역하는 간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동모한 것은 대개 송가가 1량 전으로 5, 6량가의 소나무를 살 수 있으므로 3전 돈으로 2, 3량의 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사서 함께 그 이익을 나누고 저에게 이르러서는 한 푼도 비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도 매번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영읍의 판결이며 세상에 어찌 주인이 있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양소하니 자세히 헤아려서 전후 작별한 43그루 송기를 하나하나 추급하여 세력이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다행히 선릉을 수호할 수 있게 되기를 천만 간절히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겸 성주兼城主 처분

계묘년 5월 일

[제사]

양쪽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12일 유향소留鄉所에게.

[서업]

靈光居化民 辛恒憐

右謹言情由事 世或有誣瞞之道 騙財之習 而豈有如民之宗人辛復鉉 辛基峴 辛基元之等乎

伏以民之家後 世世繼葬私山之麓

有如干邱木 而同腹鉉等 橫生非理之欲 以民之私山 指以爲都先山 構成虛辭 再昨年辛丑春

往呈 水營是遣 去年壬寅春 又呈巡營

是如 本郡舊官城主座廷時 奉營題發吏鄉 三度摘奸詳查之後 洞燭復鉉等非理之狀是齊 爲先

復鉉嚴杖嚴刑是白尔 緣由

來歷 申理論報 則渠矣萬萬無據之狀 已爲詳悉於兩營門報辭中是乎所 營邑處決 既如是嚴明

則渠當畏法懲罪 引咎悔過 而是何

不悛之惡 無厭之欲 去益滋甚 去十二月良中 本郡東部瓦灘津船改造時 同復鉉等 協謀面任

大松十九株來斫於民之曾祖母祖父墳墓龍尾上

而至於價錢 私自獨吞 終不推給是乎所 民緣由呈訴 則本邑城主 發校兩度摘奸後 價錢卽爲推

給之意題下 而今此上京行次教是

教未及徵給是白加尼 今又本邑教坊廳改造 而傳令內 教坊廳重修松 從公論和買於境內私良

山是矣 如有憑公勅買之弊 汝矣都木手斷當

嚴刑之意行下是乎所 同復鉉等 乘此時 符同都木手 大松二十四株 又爲來斫於前十二月所斫

處是如 至於都木手 非不知渠輩之行臆奸狀 而然

而與之同謀者 大抵松價以一兩錢買得五六兩價松是乎尔 以三錢錢買得二三兩價松 而同分

其利 則至於民無一字文備給之道是乎所 若

□□□ 每每如是 則□何有營邑之決是乎尔 世豈有有主之物乎 緣由疾聲仰訴 伏乞細細參商

教是後 前後所斫四十三株松

價一一推給 俾無□□之民 幸得守護先壟之地 千萬祈懇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城主 處分

癸卯五月 日

[題辭]

兩造詳查/報來事

十二日 留鄉所

[署押]



4-65)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소지所志

【해설】 도내면의 화민 신항업이 19촌 조카 신원종의 환곡을 족징한다고 온 것에 대하여 신원종의 환곡은 옛 창색 조병길의 사채이므로 족징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한 소지.

도내면道內面 화민化民 신항업辛恒業

여기에 삼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의 19촌 조카 신원종辛元宗의 환곡還穀 문제로 발패發牌하였습니다. 지엄한 관령官令에 전도顛倒하여 대령待令하였습니다. 금일은 바로 지난 번 창색倉色에게서 그 문서를 보니 위 신원종의 환곡은 바로 구 창색舊倉色인 조병길曹丙吉의 사채私債 23량 4전 8푼 대신 받은 환곡 50여 석입니다. 창색의 사채를 족징族徵의 환곡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양소仰訴하니 바라건대 신명神明처럼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하해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10월 일

[제사]

사실대로 조사하여 아될 것.

28일. 좌수에게.

道內化民辛恒業

右謹言情由事 昨日良申 以民十九寸姪辛元宗還穀事發牌是乎所 至嚴官令之下 顛倒待令是

如

今日卽去倉色處 見其文書 則同元宗還穀 乃舊倉色曹丙吉之私債二十三兩四錢八分代出代

還穀

五十餘石也 伏以倉色之私債 敢當徵族之還 極爲冤枉 故如是仰訴 伏乞神明處分之地 望良

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十月 日

[題辭]

從實查稟/事

座首 廿八日

## 4-66) 1843년 화민化民 신향업辛恒爨 소지所志

【해설】 신향업이 외탄 진선 수리를 위해 송추를 베어가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4그루 외에 더 작별하고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함. 차일피일 미루고 공납 시기가 끝난 후에 하라고 하여 다시 고소하니 향청에 제기하라고 하였으나 좌수는 이러한 문제는 대송이어서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관에 고소. 역시 공납이 끝나지 않았다고 미룸.

도내道內 화민化民 신향업辛恒爨

여기에 삼가 사정情由을 말합니다. 동부東部の 구 풍헌舊風憲 박정록朴正祿이 지난 세전歲前 12월에 외탄 진선 문제瓦灘津船事로 저의 사산 송추私山松楸를 난작亂斫하고서 도가전價錢을 끝내 비급備給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유緣由로 여러 차례 정소呈訴하였으니 저의 원망스럽고 긴박한 정상情狀은 성주城主께서 이미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10일에 다시 갱소更訴하니 제음題에 잡아와서 징급하라는 뜻으로 향청鄉廳에 분부하였습니다. 저는 제음을 받들고 바로 향청에 도부到付한 것이 지금까지 10여 일입니다만 끝내 징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박悶迫함을 이기지 못하여 좌수座首에게 가서 물어보니 좌수의 말이 이 소송은 대송大訟이어서 좌수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저의 원통하고 급박함은 어디에 강소控訴해야 합니까? 이에 감히 몰염치를 무릅쓰고 명정안법明政按法에 호소하니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위의 박정록을 관정官庭에 잡아들여서 먼저 범송犯松한 죄를 중한 죄로 다스리시고 그런 연후에 선재송船材松 4그루 값 15량과 더 작별한 소나무 16그루 값을 하나하나 징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하여 주십시오

성주 처분

계묘년 정월 일

[제사]

공납公納을 받는 것이 지금 막 바쁘니 다 받기 전에는 우선 거론하지 말고 사전私錢으로 의논할 일. 22일.

[서압]

道內化民辛恒爨

右謹言情由事 伏以東部舊風憲朴正祿 去歲前十二月良中 以瓦灘津船事 亂斫民之私山松楸 而價錢終不

備給是如 民以此緣由 累度呈訴 則民之冤迫情狀 城主既爲稔察是白齊 今月初十日良中 敢爲更訴 則題

音內 捉來徵給之意 分付於鄉廳是乎所 民奉題音 卽爲到付於鄉廳者 于今十餘日是乎矣 終不  
徵給 故民不勝

悶迫 往問于座首 則座首言內 此訟大訟 非座首不能勘當云云 事至此境 民之冤迫 控訴何地  
茲敢冒沒仰籲於

明政按法之下 伏乞參商教是後 上項朴正祿 自官庭捉致 爲先重繩其犯松之罪 然後船材松四  
株價十五

兩果 加斫松十六株價 一一徵給之地 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癸卯正月 日

[題辭]

公納之了刷方棘/ 畢捧之前 姑未/可(嚴督)舉 議於私錢/事

廿二日

[署押]

# 行郡守

青卜母戶婢禮春  
 四甲甲父初  
 天香奴開遊年  
 順陽奴者德  
 阿里金年四十二而  
 奴若金年二十八而  
 年十五癸丑父母  
 奴仁陽年十八而  
 禮母年二十九已  
 母戶婢生選奴後  
 二而年父母上同婢月春年四十二而  
 十七年父母上同婢延陽年二十一丁未父母上同婢云陽年十三已卯父母上  
 似玉奴山柱年十二而父松奴加印金母戶婢靈選奴無故甲年七辛酉父母上  
 月陽奴天上年四十已卯父松奴為生母戶天陽亦甲子戶口准俗者

제 5 장

## 가계와 동족결합

二十七辛卯父同以末卜母戶婢九春婢永至年五  
 婢同春收豆日年三十一丁酉印役父松奴為金母戶婢順  
 父松奴為金母戶婢順化奴塞選年三十六壬辰父母上同  
 子父奇奴介金母戶婢壬香探二月年二十二丙申父  
 魯世母戶婢正化奴月金年三十五癸巳父松奴秋文里  
 而金母戶婢順化奴順日年二十二丙午父母上同奴公  
 任年十九已酉父戶奴戒生母戶婢德春奴天陽年十五  
 金士真母戶婢露女奴者今年二十以申父奇奴介金  
 生母良女次云奴究陽年二十丙申父戶奴後生母良  
 成以居狂長興父良人金澳母戶奴春良奴春生



## 해 제

## 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영월신씨의 가계

고려시대부터 중앙 관료를 지내왔던 영월신씨가 전라도 영광으로 옮겨 정착하게 된 것은 6대조 신보안辛保安이 영광태수로 있을 때 영광군 부윤 한이韓彝 집안과 통혼을 맺게 됨으로 시작되었다<sup>1</sup>고 한다.

그런데 『영월신씨 세덕언행록寧越辛氏世德言行錄』 서문에 의하면, 영월신씨는 중국 당나라 천보연간(742-756; 당현종 : 신라 경덕왕)에 신라에 사신으로 왔던 신시랑辛侍郎이 당시 안록산의 난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귀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신라에 남아 영월에 적을 두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였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헌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영월신씨의 시조는 고려 인종 때 문하시중 정의공貞懿公 신경辛鏡(호 암곡岩谷)이다. 그는 성실함으로 덕업을 쌓아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다고 하지만 『고려사』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월신씨의 분파는 시조 정의공의 8세손 전교령공典校令公 신지화辛至和<sup>2</sup>의 4명의 아들대에서 이뤄졌다. 4명의 아들은 첫째 판밀직부사 천藏, 둘째 영산부원군 혁革, 셋째는 영월부원군 온蘊, 막내가 이부상서 한(韓)인데, 장자와 차남이 영산寧山을 관향으로 하고, 삼남과 막내가 영월寧越을 관향으로 하여 분파됨으로써 이들이 각각 영산씨와 영월신씨의 중시조가 되며, 그 가운데 막내 한(韓)은 고려 충숙왕조에 이부상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신군재辛君才가 영월신씨 비조鼻祖가 된다<sup>3</sup>. 군재의 아들 신비辛毗는 사영윤司營尹을 지냈으며, 신비의 아들 신거는 지문하찬성사를 지냈으며, 이외에도 공민왕조에 한성부윤을 지낸 신염辛廉 등이 있다. 영월신씨가 고려말 조선초 중앙 관료로서의 활동상은 4대 신당계辛唐係, 5대 신운길辛云吉 및 6대 신보안辛保安 등 3대의 기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1 신보안은 신사봉과 신사귀 두 아들이 있다.

2 금산보錦山譜에 의하면, 신지화는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한림학사 중서시랑 보문각대제학을 역임하고, 금자광록대부 사공 상서좌복야에 추봉되었다고 한다.

3 신유일 찬, 『영월신씨세덕언행록(1925년)』 「족보서」 “有諱君才 寧越之鼻祖也 其後遂奕世冠冕”

신보안의 조부 신당계는 충정왕 원년(1349) 봉익대부로 전리판서典理判書<sup>4</sup>를 지내고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받아 연천 백운동 서원에 배향되었다.

신보안의 부친 신운길辛云吉은 고려말 봉익대부 전의시사典儀寺事를 지냈으며 공주 목사를 역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운길은 영광군사靈光郡事를 지낸 진주 유씨柳氏 혜방蕙芳의 딸과 혼인하여 신보안 등 2남 3녀를 두었다.<sup>5</sup> 그는 당시 신진사대부의 좌장격인 목은 이색李穡과도 두터운 친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색은 신운길이 사망하자 이를 애도하며 오언시「곡신판사운길哭辛判事云吉」을 지었다. 『목은시고牧隱詩藁』에 전해지는 이 시에서 이색은 영월신씨 신운길과는 전라도 정읍 고부의 수금마을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냈으며, 신운길이 공주목사로 선정을 베푼 것을 기리고 있었다.<sup>6</sup>

신보안(?-1428)은 태조 6년(1397) 중랑장을 거쳐, 태종대 동북면병마사 겸 지주사사를 역임하였다. 태종 13년 한성소윤, 세종 원년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를 거쳐 영광군수, 광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세종 10년(1428) 7월 광주목 관아에서 사망하였다.<sup>7</sup> 따라서 둘째 아들 신사귀가 영광 부윤 한이의 딸과 혼인하여 영광군에 정착한 시기는 세종 10년 이전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보안의 자녀는 신사귀 외에도 형 신사봉과 아래 누이동생 2명이 있다.<sup>8</sup> 모두 신보안의 처 동래 정씨 사이에서 낳았다. 큰아들 신사봉은 종5품 행부사직行副司直으로 세조 3년(1457) 계유정란 3등 원종공신에 녹훈<sup>9</sup>되어 서울에서 활동하였으나,<sup>10</sup> 전술하였듯이 차남 신사귀는 영광에서 자리를 잡았다.

신사귀 후손 가운데 중앙 관료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신응망辛應望이다. 신응망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그의 고신을 중심으로 설명될 예정임으로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 신장길(1543-1598)과 사촌 신응순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신장길辛長吉(1543:중종38-1598:선조31)은 신응망의 아버지이다. 그는 학문에 힘써 경서와 제자백가를 익혔으나 과거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역학계몽지장도』를 저술하였으며, 성보, 역수, 복서, 의서에 이르기까지 해박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4 『고려사』권37, 세가 충정왕 원년 8월 27일 을묘조

5 신운길은 진주 유씨 사망 후 창녕 성씨 원도元度의 딸과 재혼하였다.

6 목은시고 권33, 시 곡신판사운길 “少也始相識 水金間往來 牧民流惠澤 取友盡英材 魯國香今歇 公州錦已裁 意長身世促 流水竟難廻”

7 신보안의 묘는 경기도 양주 노원리에 있다.

8 1434년(세종16년)에 작성된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에 의하면, 모 통정대부 광주목사 신보안 처 영인尹人 정씨의 재산을 장자 신사봉, 장녀 민보화의 처, 차남 학생 신사귀, 차녀 강자의의 처 4명이 상속받았는데, 당시 차남 신사귀에 대해서는 학생으로 되어 있다.(손계영,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 연구」 『영남학』 66호, 2018, 189-190쪽 참조)

9 『세조실록』권8, 세조 3년 8월 12일 계묘년.

10 신사봉의 세 아들 지한之翰, 지병之屏, 지번之蕃의 자손들이 통진, 경주, 기장에 세거하여 지금까지도 경상도 지역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각읍의 학행이 뛰어난 자를 뽑아 학관을 삼고 월봉을 주었으나 공은 군비에 써야 한다며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생 50명을 골라 공부를 가르쳤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왜적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응벽, 조카 신용순 등과 함께 향교 대성전에 있던 위패와 제기, 의궤 등의 물건을 바닷가 배에 실어 안전하게 대피시켜 놓기도 하였다.<sup>11</sup> 뿐만 아니라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사당에 제사지내는 일에 헌신하며 가산을 돌보지 않아 굶어죽었다고 한다. 호는 경직재敬直齋이다.<sup>12</sup> 그는 능성구씨와 결혼하여 2녀 1남을 낳았으나 아들은 일찍 죽었다. 구씨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광주 이씨와 재혼하여 2녀 1남을 낳았는데, 이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신용망이다. 동생은 신영길辛永吉(신용순의 부친)과 응길 등 5명이 있다.

신용순辛應純(1572:선조5-1636:인조14)의 자는 희순, 호는 성재로 부친은 증 공조참의 신영길이다. 신용순은 과거응시를 위한 공부를 싫어하고 경학에 열중하였다. 정유재란 때 영광에 왜군이 침입하자 큰아버지 신장길과 함께 향교의 위패, 제기 및 서적을 배에 싣고 안마도로 옮겨 자료가 망실되는 것을 막았다. 선조 36년 사마시에 생원 3등 55위에 합격하였으나,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비론이 현실화되자 문과에 응시하지 않고 두문불출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곡식 수백 석을 모아 찬조하였으며, 1627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사계 김장생의 소모유사로 곡식 3천석을 모아 난을 평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1634년(인조12) 군수 원두포의 천거로 희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저서로는 시집인 『성재집省齋集』과 역대 선인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성재만록省齋漫錄』과 『주자가례』를 주석한 『문공가례의절』 등이 있다. 서산 유씨 류형진의 딸과 혼인하여 사효思孝, 익효益孝, 흥효興孝 등 3남 5녀를 낳았다.

## 나. 가계와 동족결합 관련 영월신씨 고문서 해제

### 1) 고신류

영광신씨 교지는 모두 24건이다. 그 중 23건은 영광 신씨 가문에서 최고 벼슬을 한 신용망辛應望의 17세기 과거합격 교지 백패와 흥패가 각 1건씩이며, 나머지는 관직 임명 관련 교지이다.(국왕 유지宥旨 1건 포함). 나머지 1건은 19세기 중엽 신휘상辛徽常(1836-1924)에 대한 임명 교지이다.

『경국대전』 예전 문서식에 따라 4품이상의 관리 및 당상관의 부인에게 지급될 때에

11 『영월신씨세덕언행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517-110) 58-59쪽.

12 『영월신씨세덕언행록』에서 신장길을 경직재公敬直齋公, 또는 목사公牧使公이라 하였다.



는 교지라 하고, 문무관 5품이하의 관리 및 3품 이하 처들에게 발급된 것은 교첩이라고 구분되었듯이 신응망이 급제 후 처음 관직에 나아갈 때 받은 임명장은 국왕이 직접 내린 교지가 아니라 인사담당부서인 이조에서 승지를 통해 전달받은 명령에 의거해 발급한 것으로 “이조에서 ○년 ○월 ○일 봉교奉敎하여 신응망을 □□□□자리에 임명한다”고 되어있고, 아래에는 이를 담당할 정랑 및 좌랑 등의 관계자의 서명이 착명되어 있다.(5-1-3)부터(5-1-12)까지

그러나 신응망이 생원 입격 때 받은 합격증인 백패[(5-1-1)]와 문과급제 받은 홍패[(5-1-2)] 및 1633년 통훈대부 공조정랑에 임명될 때부터는 ‘교지’로 명명되어 있다(5-1-13), 그러나 이조에서 받은 교첩이든 국왕이 발급한 교지이든 문서 끝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요컨대 신장길의 아들 신응망(1595:선조28-1654:효종5)은 1617년(광해군9) 12월에 생원시 2인에 입격하여 백패 고신을 받았다. 7년 후인 1624년(인조2)에 문과 을과 7인으로 급제하여 홍패를 받았다.

신응망의 관직 임명문서는 1626년(인조4) 3월에 받은 것이 가장 앞서는데, 당시 그는 권지 승문원 부정자로 있으면서 종사랑 행승문원 부정자에 임명된다.<sup>13</sup>과거합격 후 첫 벼슬로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지 벼슬은 오늘날로 치면 시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해 6월과 7월에 연달아 통사랑 승문원 부정자에서 고공랑 승문원 정자로 품계와 관직이 오르고 있었다.

1627년(인조5)에는 승문원 주서에서 겸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게 된다. 1628년(인조6)에 받은 고신은 모두 4건이다. 2월 29일에는 전 주서 승의랑 신응망이 승의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되고, 3월에는 봉훈랑 행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옮겨진다. 같은 3월에 창신교위 행 용양위 부사정이 되었다가, 5개월 후인 8월 17일에는 승의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별가別加되고 있다.

관직에 오른 이후 내내 내직에 있었던 신응망은 1631년 이전에 외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631년 7월 17일에 경상도도사 신응망을 다시 중앙 내직인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년 뒤인 1633년 10월 28일에는 통훈대부 공조정랑으로 정5품에 임명된다. 1634년(인조12) 정월, 조봉대부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되었으나, 2개월 만인 3월 25일에는 전라도 함평 현감으로 외직발령을 받는다. 그리고 4년 뒤인 1638년 에는 금교도 찰방을 겸직케 되지만 9월 24

13 그런데 『승정원일기』를 보면, 신응망은 인조 3년(1625) 4월 7일(갑신)부터 승정원 가주서로, 인조 4년(1626) 6월 26일(정유) 부터는 수정가주서로, 인조 5년(1627) 4월 19일(을묘)부터는 사변가주서, 같은 해 5월 22일(정해)부터는 9월 28일(신묘)까지 주서로서 국왕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었다.

일 통훈대부로서 성균관 전직에 임명된다. 그러나 이후 몇 년간은 외직으로 봉직하고 있다. 1642년 4월 신용망은 황해도 도사, 1643년 11월에 고산도 찰방, 1645년 2월에는 공청도 도사에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망 문서로 마지막이 되는 것은 1646년(인조24)의 교지와 유지有旨이다. 인조는 12월 19일 신용망을 사헌부 장령(정4품)에 임명하면서 바로 다음날 신용망으로 하여금 조속히 상경하라는 명령문을 내렸다.

이상 23건의 신용망 교지를 통해, 신용망은 22세에 생원시, 29세에 문과합격 후, 30대에는 주로 승문원과 춘추관의 기주관, 주서로서 국왕을 측근에서 모셨으며, 40대 함평 현감으로 시작된 외직은 이후 금교도 찰방, 황해도 도사, 고산도 찰방, 공청도 도사의 공청도를 두루 역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1세인 1646년(인조24) 정4품의 사헌부장령을 역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용망의 관직활동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649년(효종즉위년)에 파주부사, 1652년(효종3) 장흥현령이 되었으나, 1654년(효종5) 2월 12일 60세의 나이로 '장흥현령 신용망 사망[身死]했다는 소식이 『조보朝報』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지막 임명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내린 임명장으로 1863년(철종14) 통선랑 신휘상을 통덕랑으로 올리고, 그 이듬해는 그의 장인 정종학鄭鐘學의 가자를 더한다는 내용이다. 신휘상은 그의 호적에도 유학幼學이라 한 것으로 볼 때 관직에 오른 적은 없다. 그러나 『영월신씨세보』(무술보:1898년) 편찬에 도유사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부친 신평규가 효자정문을 받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통문

영월신씨 입석리 고문서 가운데 통문은 모두 족보 제작과정에 일어났던 현안을 문중 족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족보편찬을 위한 회의를 알리는 통지문도 통문의 일종인데 이를 회문回文이라고 불렀다.

통문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1854년(철종5) 『영월신씨세보(갑인보)』<sup>14</sup> 편찬 마무리를

14 『영월신씨세보(갑인보)』는 30권 8책으로 철종 5년(1854)에 간행되었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B10B-310A)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B10B-0282)에 소장되어 있다. 발문은 정의공 27세손 신범근이 썼고, 서문은 신태근이 썼다. 제1책부터 제4책(권1-권8)까지는 사복정공파의 세보이고, 제4책(권9-권14)는 현감공파, 사인공파, 판서공파, 제5책(권15-권21)은 전첨공파, 군수공파, 현감공파, 사재경공파, 서윤공파, 참판공파, 제6책(권22-권24)는 목사공파, 제7책(권25-권27) 군사공파軍士公派, 제8책(권28-권30)에는 군사공파, 장령공파, 사복공파, 판서공파로 되어 있어 영월신씨의 각파를 알 수 있다.

위해 신휘상이 문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을 촉구하는 통문이다.〔5-2-5〕 이 통문에서 신휘상은 족보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범중엄과 소동과의 말을 인용하며, 같은 조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근본을 밝혀주는 족보가 없으면 남처럼 지내게 되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족보를 편찬해 위로는 조상들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들로 하여금 가문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족보 편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1875년에도 족보 편찬을 위한 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회문). 이 문서는 신복현, 신굉규, 신인규 3인이 영월신씨 대동보인 세보를 증수하기 위한 통문인데, 수신 대상은 고성, 도동, 입석, 월곡, 계동, 갈암, 송정리 등에 보낸 것으로서 당시 영월신씨 거주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1875년에 편찬된 세보는 현존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1887년(고종24, 정해년)에 간행된 『영월신씨세보(총6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1887년 세보(정해보)의 간행 준비가 187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통문 3건은 모두 1898년(무술년, 고종 광무2) 『영월신씨세보(무술보)』 편찬과 관련한 통문이다. 당시 영월신씨 문중은 족보편찬을 위해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 묘재墓齋에 족보청族譜廳을 설치하였는데, 문장門長은 신방묵辛邦默이며, 재정담당 유사인 신휘상辛徽常이 총괄 도유사였다. 이외 공사원公司員 신휘순辛徽順이 신진규辛鎭圭, 신취규辛最圭, 신종묵辛宗默과 함께 교정을 담당하고, 교정감수는 신정묵辛正默과 신항린辛恒麟이, 기초유사는 신휘전辛徽典과 신극희辛克喜, 회문유사回文有司는 신선규辛宣圭, 신동규辛東圭, 신휘문辛徽文, 수단유사收單有司는 신휘식辛徽湜, 신항진辛恒振, 신성규辛聲圭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5-2-1〕

영광의 영월신씨 문중은 족보 편찬을 완수하고자 여러 차례 의논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1899년(기해)에 영월신씨 문중에 보낸 문서〔5-2-3〕에 의하면 고진사공 신동혁의 아들 신철환과 족질 기환과 익환이 술선수범하여 비용을 쾌척함으로써 공주 감사에 족보청을 마련하고 대동보 편찬이 재개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출간한 것이 『영월신씨세보(무술보)』(건곤2책)였다. 이 책은 현재 종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sup>15</sup>

수표 1건 역시 1899년 2월에 족보간행과 관련하여 대문중大門中에서 보낸 수표이다. 새로 편찬되는 족보에 선조들의 언행록을 증수하려고 하였으나, 족인族人 휘상徽常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파의 행장이 입수되지 않아 『세덕언행록世德言行錄』은 갑인보甲寅譜(1854, 철종5)에 따라 시행하고 새로 들어오는 선행장善行狀 등은 모두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완의)을 알리는 문서이다. 표주標主는 대문중大門中 신종기辛宗基, 신휘순辛徽順, 신성규辛聲圭, 신휘진辛徽珍이었다.〔5-3-4〕

15 한중연 장서각에 MF본이 소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2518-41-22).

### 3) 효행기와 입안

공사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관계를 나타내고 아울러 증거로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에는 입안立案, 호적戶籍(호구단자 및 준호구), 완문, 완의, 하첩, 불망기, 수기手記, 수표手標, 척문尺文[자문] 등이 있다. 영월신씨 고문서에는 예조입안 2건, 호적 47건, 하첩1, 수표1건이 있다. 그 가운데 입안의 근거가 되는 효행기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효행기는 영월신씨 신굉규의 효행을 발취해 기록한 것이다. 신굉규는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7개월 동안 극진히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3년 시묘살이를 다하였다. 더욱이 산소 가까이에 물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 오는 불편함에도 조석의 상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꿈에 노인이 나타나 묘 곁에 물길이 있음을 알려주어 실제 그 곳을 팠더니 샘물이 나와 이곳이 효자천이 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5-2-7]

이러한 김굉규의 효행은 1892년 전라도의 진사 이응순이 상언하여 중앙에 보고되니 광서 18년(1892, 고종 29) 12월 28일에 동부승지 이근교가 왕에게 아뢰어 왕의 승낙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정려를 세우고, 그 자손은 연호와 환자 등의 제반 잡역을 모두 면제해주라는 예조입안[문서5-3-2]이 내려졌다. 이러한 예조입안에 의거하여 영광군수는 신굉규 자손에 대해 환호還戶 1호와 환결還結 2결 및 잡역을 면해준다는 하첩을 내렸다.[문서5-3-3]

이외에도 입후에 대한 예조입안이 1건이 있다. 1717년(숙종 43) 예조에서 신만정의 둘째 아들 신용백을 고 학생 신정수의 계후자로 승인하여 발급한 계후 입안이다. 신정수의 아내 유씨가 올린 소지와 용백의 친아버지 신만정 및 문중을 대표하여 유학 신만화 등의 승낙 소지를 받아, 『경국대전』 입후조에 의거하여 살펴본 결과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예조에서 입후를 허가하였다.[5-3-1]

### 4) 호구단자 및 준호구

영월신씨 문서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풍부한 호적자료이다. 호적은 호구단자戶口單자와 준호구准戶口를 일괄하여 칭한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주고받는 대상이 서로 상이하어 그 성격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인명별로 배열해 살펴보았다.

영월신씨 고문서 가운데 호적 자료는 1669년(현종 10) 신경룡辛慶隆(1646-1673)의 호적부터 1894년 신휘상辛徽常(1836-1924)까지 225년간에 걸쳐 있다. 전체 건수는 모

두 47건이다.

그런데 영월신씨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신경룡-신휘상에 이르  
기까지 거주지가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이다. 1669년 신경룡 준호구에 신고된 주소는  
영광군 무장면 교정리이다.[문서 5-4-1], 1681년(숙종7)에는 마촌면馬村面 제2 화촌리  
禾村里 제4통 제3[5-4-2]이었으나, 5-4-6) 1690년 유학 신정화(辛鼎和:신경룡의 아들)  
가 살았던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는 204년이 지난 1894년(고종31)에도 유학 신휘상이  
살고 있었다.

또한 호적대장에 수록된 노비명단의 변화를 통해 영월신씨의 재산의 변동을 살필  
수 있다. 1669년 신경룡이 거느린 노비는 총97명(노46명, 비51명), 1681년에 당시에는  
호주인 신경룡이 죽고 그의 부인인 처 함양박씨의 이름으로 호구단자가 발급되었  
는데 가솔노비의 수가 28명으로 극감하였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새로 7명의 노비가  
추가되어 입적되었다. 그런데 3년 뒤인 1687년(숙종13) 신구생(신경룡의 아들)이 신  
고한 호구단자의 가솔노비는 64명(노30명, 비 34명)으로 증가하였다. 1693년에는 47  
명(노23명, 비24명), 1696년(숙종22)에는 40명(노21명, 비19명)이었으나, 1717년(숙  
종43)이 되면 81명으로 급증한다. 물론 도망노비의 명단을 포함한 숫자로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20년 사이에 노비수가 두 배로 급증하였다. 노비증가 추  
세는 유학 신시갑 생전에 계속되고 있다. 신시갑은 전술한 입후입안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경룡의 장남 신정화의 아들이 일찍 죽어 그 동생 신정수가 가계를 잇게  
되었으나, 그 역시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정수의 부인 서산 유씨  
가 문중들의 허락을 받아 같은 집안 신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입후하여 아들로 삼  
은 자이다. 용백은 시갑으로 개명하였다.

그런데 영월신씨 집안의 경우 신시갑 때에 가장 많은 노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다. 1726년(영조2) 98명(노46명, 비52명), 1729년(영조5) 97명(노44명, 비53명) 1732년  
(영조8) 95명(노43명, 비52명), 1735년(영조11) 95명(노44명, 비55명), 1741년(영조17)  
77명(노34명, 비44명)이었다. 그런데 신시갑이 죽고 그 부인 선산김씨의 이름으로 신  
고된 호구단자인 1744년(영조17)의 슬거노비는 88명(노39명, 비49명), 1747년에는 78  
명(노34명, 비44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1759년 호구단자는 신시갑의 아들 신태  
성이 호주가 되었는데, 이 때는 천구賤口와 노비奴婢 명단을 구분하여 호적에 올리고  
있다. 당시 소유 천구는 29명(노14명, 비15명), 노비는 21명(노5명, 비16명)이었다. 6  
년 뒤인 1765년(영조41) 호구단자에는 신태성이 이름을 신양렬로 개명되어 있으며,  
거느리는 노비賤口는 41명(노17명, 비24명)으로 감소하였다.

노비 감소 추세는 이후에 계속되어 1771년(영조47)에는 31명, 1774년에는 26명,  
1777년(정조1)에는 28명, 1783년 24명, 1786년 17명, 1789년 19명, 1795(정조19)년

16명, 1810년(순조10)에는 15명, 1813년(순조13)과 1816년(순조16) 신수목 호구단자에 13명, 12명이었다. 1822년은 신항업 호구단자에는 13명, 1825년 13명, 1831년 7명, 1834년 13명, 1837년 15명, 1840년 13명, 1843년 17명이었다. 1858년은 신항업의 아들 신평규가 호주로 바뀌었으며, 노비[천구]는 15명이었다. 그리고 1861년 신평규가 거느리고 있는 노비[천구]는 21명이었는데, 이후 1879년 호구단자부터는 거느리고 있는 노비명단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호구단자를 통해 입석리 영월신씨가의 노비 소유는 18세기 초중기 신시갑 생전시에는 98명-95명을 거느릴 정도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노비수는 15명에서 17명 내외인데, 이들은 대부분 비 애섭과 비 중상의 남편, 자식, 손녀 손주들이었다.

그런데 1879년과 1882년 신평규 호구단자에 신고된 호주를 비롯한 가족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록에 오기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1858년에 호적에는 호주 신평규가 네 동생들, 특히 바로 아래 동생인 수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동생 모두는 결혼했음에도 아내와 함께 큰형 평규의 호적에 올려 있다. 그런데 1879년 호적에도 동생으로 되어있던 효규와 시규에 대해 1882년 호구단자에는 종제從弟라고 바뀌어 있다. 또한 1861년에 신평규의 나이는 47세라고 하였으나, 18년 후인 1879년 호적에는 65세여야 하는데 78세로 출생년도가 바뀌어 있어 19세기 후반기 호적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25년 동안 3년~9년 간격으로 작성된 호구단자 47건을 통해 입석리 영월신씨 가문의 호주 본인 및 처가의 부, 조부, 증조부 및 외조부의 이름 및 술거가족 등을 통해 재지사족들의 가계구성과 혼인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이 호노인지, 사노인지, 또 도망했다면 도망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부모 신분과 이름, 결혼한 노비의 처와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비들의 자족관계를 자세히 적고 있어서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의 사회사 및 인구변동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 5-1. 고신류

## 5-1-1) 1617년 유학 신응망辛應望이 생원시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白牌

【해설】 1617년(광해군9) 12월 16일에 신응망이 생원시에 2등 제12인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교지

유학 신응망이 생원 2등 제12인으로 입격入格<sup>1</sup>함

만력 45년(1617년, 광해군9) 12월 16일

[과거지보]

教旨

幼學辛應望 生員二等第十二人入格者

萬曆四十五年 十二月 十六日

[科擧之寶]

## 5-1-2) 1624년 생원 신응망이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

【해설】 1624년(인조2) 10월에 생원 신응망이 문과 을과 제7등으로 급제하여 발급한 문서.

교지

생원 신응망이 문과 을과 제7인으로 급제하여 출신出身<sup>2</sup> 함

천계 4년(1624, 인조2) 10월 일

[과거지보]

教旨

生員辛應望 文科乙科第七人及

第出身者

- 1 소과에 합격한 경우에는 백패에 입격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홍패와 백패 모두 科擧之寶를 찍는다.
- 2 대과에 합격하였으므로 급제라는 용어를 쓰고 홍패로 된 임명장을 받는다.



天啓四年 十月 日

[科學之寶]

### 5-1-3) 1626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6년에 7월 1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계공랑 행 승문원 부정자(정8품) 신응망을 계공랑 행승문원 정자(정7품)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6년(인조4) 7월 12일에  
왕명을 받들어 계공랑 행 승문원 부정자 신응망을 계공랑 행 승문원정자에 임명함.

천계 6년(1628, 인조4) 7월 12일

정랑

검판서 참판 참의 신 이 [착명]

좌랑 신 이 [착명]

吏曹 天啓六年七月十二日

奉

教 啓功郎行承文院副正

字辛應望爲啓功郎

行承文院正字者

天啓六年 七月 日

正郎

兼判書 參判 參議臣李[著名]

佐郎臣李[著名]

### 5-1-4) 1626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이조에서 1626년(인조4) 6월 21일에 왕명을 받들어 승문원 부정자 신응망의 품계를 정8품 통사랑에서 정7품의 계공랑으로 올려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6년 6월 21일에

왕명을 받들어 통사랑(정8품) 승문원 부정자 신응망을 계공랑(종7품) 행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함.

천계 6년(인조4, 병인) 6월 일

병인년 6월에 받은 별가<sup>3</sup>

정랑

검판서 참판 참의 신 이[착명]

좌랑 신 이[착명]

吏曹天啓六年六月

二十一日奉

敎通仕郎承文院副正

字辛應望爲啓功郎

行承文院副正字者

天啓六年六月 日

丙六別加

正郎

兼判書 參判 參議 臣 李[着名]

佐郎 臣 李[着名]

### 5-1-5) 1626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6년(인조4) 3월 초4일에 왕명을 받들어 권지 승문원 부정자 신응망을 종사랑(정9품) 행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6년 3월 초4일에

왕명을 받들어 권지<sup>4</sup> 승문원 부정자 신응망을 종사랑 행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함

천계 6년(인조4) 3월 일

정랑 검 판서 참판 신 이[착명]

3 별가別加 : 특별히 품계를 특별히 올려줌.

4 문과 출신의 경우 갑과 3인만이 즉시 임용되지만, 나머지 합격자는 대개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3관에 일종의 시보로서 분관된다. 신응망은 을과합격자였으므로 초임은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있다가 정식으로 정9품 관품을 받은 것이다.

참의 좌랑 신 김[작명]

吏曹天啓六年三月

初四日奉

教 權知承文院副正字

辛應望爲從仕郎

行承文院副正字

者

天啓六年三月 日

正郎

判書 參判 臣李[着名]

參議

佐郎 臣金[着名]

5-1-6) 1627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7년(인조5) 10월 초10일에 왕명을 받들어 서반직 품계인 여절교위(종6품) 부사정 신응망을 동반직 품계인 선교랑(종6품) 행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7년 10월 초10일에

교지를 받들어 여절교위 부사정 신응망을 선교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천계 7년(1627, 인조5) 초10월 일

정랑

판서 參判 參의 신 이 [작명]

좌랑 신 이 [작명]

吏曹天啓七年十月

初十日奉

教 勵節校尉副司正 辛

應望爲宣教郎行

承政院注書 兼 春秋

館記事官者

天啓七年十月 日

正郎

判書 參判 參議 臣 李[着名]

佐郎 臣 李[着名]

### 5-1-7) 1627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7년(인조5, 천계7) 8월에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정7품 품계)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신응망에게 선교랑(종6품 품계)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겸직을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7년(1627, 인조5) 8월에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신응망을 선교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선교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천계 7년(1627, 인조5) 8월 일

문과 을과에 입격으로 예에 따라 품계를 더함

정랑

검판서 參判 신 장 [착명] 參의

좌랑

가낭청 신 이 [착명]

吏曹天啓七年八月

日奉

教 務功郎承政院注書兼

春秋館記事官辛應望

爲宣教郎行承政院注

書兼春秋館記事官者

天啓七年八月 日

文科乙科例加

正郎

兼判書 參判 臣 張[着名] 參議

佐郎

假郎廳 臣 李[着名]

5-1-8) 1628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8년(인조6) 정월 17일에 왕명을 받들어 진용교위(정6품) 부사정에 있던 신응망을 승의랑(정6품)으로 올려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천계 8년(1628, 인조6) 정월 17일에  
왕명을 받들어 진용교위 부사정 신응망을 승의랑 행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에 임명함

천계 8년(1628, 무진) 정월 일  
무진년 정월에 별가하여 아울러 제수함

정랑

판서    참판 참의 신 전[착명]

좌랑 신 이[착명]

吏曹天啓八年正月

十七日奉

教進勇校尉副司正 辛

應望爲承議郎行

承政院注書兼春

秋館記事官者

天啓八年正月 日

戊正別加并授

正郎

判書    參判 參議 臣 全[着名]

佐郎 臣 李[着名]

## 5-1-9) 1628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8년(인조6, 무진) 2월 29일에 왕명을 받들어 전주서 승의랑 신응망에게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승정 원년(1628, 인조6 무진년) 2월 29일에 왕명을 받들어 전주서 승의랑 신응망을 승의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함

승정 원년 2월 일

정랑  
판서    참판 참의 신 진[작명]  
좌랑 신 이[작명]

吏曹崇禎元年二

月二十九日奉

教 前注書承議郎 辛

應望爲承議郎行

承政院注書兼春

秋館記事官者

崇禎元年二月 日

正郎  
判書    參判 參議 臣 全[着名]  
佐郎 臣 李[着名]

## 5-1-10) 1628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8년(인조6) 3월 7일에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정6품) 행 승정원 주서 신응망에게 봉훈랑(중 5품)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승정 원년(1628, 인조6) 3월 초7일에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신응망을 봉훈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승정 원년(1628, 인조6, 무진) 3월 일  
무신년 2월에 특별히 품계를 더함

정랑  
판서    참판 참의 신 김 [작명]  
          좌랑 신 이 [작명]

吏曹崇禎元年三月  
初七日奉  
敎承議郎行承政院注  
書兼春秋館記事官  
辛應望爲奉訓郎行  
承政院注書兼春秋  
館記事官者  
崇禎元年三月 日  
戊二別加

正郎  
判書    參判 參議 臣 金[着名]  
          佐郎 臣 李[着名]

### 5-1-11) 1628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28년(인조6) 3월 일에 왕명을 받들어 봉훈랑 행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사관 신응망을 창신 교위 행 용양위 부사정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승정 원년(1628, 인조6) 3월 일에  
왕명을 받들어 봉훈랑(종5품, 동반품계)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 신응망을 창  
신교위(종5품, 서반품계) 행 용양위 부사정에 임명함  
승정 원년(1628, 인조6) 3월 일

          참의    정랑 신  
검 판서    참판  
          참지    신 강[작명]  
          좌랑 신 김[작명]

□(吏)曹崇禎元□(年)三月

□日奉

教 奉訓郎行承

政院注書兼

春秋館記事官

辛應望爲彰信

校尉行龍驤衛副

司正者

崇禎元年三月 日

參議 正郎 臣

兼判書 參判

參知 臣 姜[着名]

佐郎 臣 金[着名]

### 5-1-12) 1631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1년(인조9) 7월에 경상도 도사 신응망에게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게 하는 교첩.

이조에서 승정 4년(1631, 인조9) 7월 17일에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 행 경상도 도사 신응망을 통덕랑 경상도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  
에 임명함

승정 4년 7월 일

정랑

행판서 參判 參의 신 윤[착명]

좌랑 신 채[착명]

吏曹崇禎四年七月

十七日奉

教 通德郎行慶尙道都

事辛應望爲通德

郎行慶尙道都事

兼春秋館記注官



者  
崇禎四年七月 日

正郎  
行判書 參判 參議 臣 尹 [着名]  
佐郎 臣 蔡 [着名]

### 5-1-13) 1633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3년(인조11) 10월 28일에 신응망을 통훈대부 공조정랑(정5품)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공조정랑에 임명함  
승정 6년(1633, 인조11) 10월 28일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工  
曹正郎者  
崇禎六年十月二十八日

### 5-1-14) 1634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4년(인조12) 정월 7일에 신응망을 예조정랑(정5품)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조봉대부(종4품)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함  
승정 7년(1634, 인조12, 갑술) 정월 초7일

教旨  
辛應望爲朝  
奉大夫行禮

曹正郎兼春  
秋館記注官  
者  
崇禎七年正月初七日

### 5-1-15) 1634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4년(인조12) 3월 25일에 신응망을 함평 현감(종6품)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봉렬대부(정4품 문산계) 행 함평현감(종6품)에 임명함  
송정 7년(1634, 인조12, 갑술) 3월 25일  
문과 을과 합격자로, 예에 따라 가자함<sup>5</sup>

教旨

辛應望爲奉  
列大夫行咸  
平縣監者  
崇禎七年三月二十五日  
文科乙科例加

### 5-1-16) 1635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5년(인조13) 3월에 신응망을 문산계 정3품의 문산계인 통훈대부로 올리고 외직인 전라도 함평 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 5 문과에 합격하면 갑과는 3품계, 을과는 2품계, 병과는 1품계를 더해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관료들의 등급 체계가 있어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차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등급에 따라 일수의 차이가 있어 정 7품 이하인 참하관參下官은 450일을, 종6품 이상인 참상관參上官은 900일을 복무하여야 했다. 또 고관인 정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은 이 규정에 있어 예외였다. 그 밖에도 특혜적인 승진 조치도 많았다.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에서 군공을 세우면 승진시켜 치하하였고, 왕세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이를 기념하여 모든 관료들을 한 등급 올려준다.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함평현감에 임명함

승정 8년(1635, 인조13, 을해) 3월 26일

을해년 3월에 내린 별가와 근무에 따른 가자를 합쳐서 초자<sup>6</sup>하여 임명함<sup>6</sup>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咸

平縣監者

崇禎八年三月二十六日

乙三別加仕加并超

### 5-1-17) 1638년 신응망<sup>辛應望</sup> 고신<sup>告身</sup>

【해설】 1638년(인조16) 9월 24일에 신응망을 정3품 문산계인 통훈대부에 올리고 내직인 성균관 전적(종6품)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행 성균관 전적<sup>7</sup>에 임명함

승덕 3년(인조16) 9월 24일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咸

均館典籍者

崇德三年九月二十四日

6 특별히 자급을 올려주는 별가와 근무일수를 합하여 자급을 올려주었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는 근무 일수가 차면 차차로 품계를 높여주는 순자법<sup>循資法</sup>이 시행되었다. 정7품 이하인 참하관은 450일을, 종6품 이상인 참상관은 900일을 근무하면 한 자급을 올려주었다. 반면 정3품 당상관 이상은 이러한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7 성균관 정6품 관직으로 도적<sup>圖籍</sup>의 수장<sup>收藏</sup>, 출납,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 5-1-18) 1638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38년(인조16) 9월에 신응망에게 금교도 찰방(종6품)을 겸하게 하는 임명장.

교지

신응망을 겸 금교도<sup>8</sup> 찰방<sup>9</sup>에 임명함

승덕 3년(인조16) 9월 25일

教旨

辛應望爲兼

金郊道察訪

者

崇德三年九月二十五日

## 5-1-19) 1642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42년(인조20) 4월 8일에 종5품 외관직인 황해도 도사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행 황해도사<sup>10</sup>에 임명함

승덕 7년(1642, 인조20, 임오) 4월 초8일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黃

海道都事者

崇德七年四月初八日

8 금교도 : 조선시대 황해도 금천(金川)의 금교역(金郊驛)을 중심으로 개성(開城) — 금천(金川) — 평산(平山) — 서흥(瑞興) — 봉산(鳳山) — 황주(黃州)에 이어지는 역로.

9 찰방 : 각 도(道)의 역참(驛站)을 관장하던 종6품의 동반 외관직.

10 도사 : 조선시대 각 도(道)에 딸린 종5품 동반 외관직. 지방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주관함.

5-1-20) 1643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43년(인조21) 11월에 신응망을 고산도 찰방을 겸직케 하는 임명장.

교지

신응망을 겸 고산도<sup>11</sup>찰방에 임명함  
숭덕 8년(1643, 인조21, 계미) 11월 16일

教旨

辛應望爲兼  
高山道察訪  
者  
崇德八年十一月十六日

5-1-21) 1645년<sup>12</sup>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45년(인조23) 2월 14일에 신응망을 외직인 공청도 도사(종5품)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행 공청도<sup>13</sup> 도사에 임명함  
순치 2년(1645, 인조23, 을유) 2월 14일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公  
淸道都事者

- 11 고산도高山道 : 조선시대 함경도 안변安邊의 고산역高山驛을 중심으로 안변-덕원-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으로 이어지던 역로.
- 1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자료관에는 이 고신이 1644년으로 되어있으나, 순치 2년은 1645년임으로 수정함.
- 13 공청도 : 충청도의 다른 옛 이름. 태조 4년(1395)에 정해진 충청도의 이름을 인조 6년(1628)에 공청도로 고쳤다. 이후 영조 1년(1725)에 홍충도洪忠道, 순조 25년(1825)에 공충도公忠道로 바꿔 부르다가 순조 34년(1834)에 다시 충청도가 되었다.

5-1-22) 1646년 신응망辛應望 고신告身

【해설】 1646년(인조24) 12월 19일에 신응망을 사헌부 장령(정4품)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신응망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함  
순치 3년(1646, 인조24) 12월 19일

教旨

辛應望爲通

訓大夫行司

憲府掌令者

順治三年十二月十九日

5-1-23) 1646년 신응망辛應望 유지有旨

【해설】 1646년(인조24) 12월 19일에 신응망을 사헌부 장령에 임명하면서 조속히 상경할 것을 명하는 유지. 유지는 국왕의 명을 승지가 대신 써서 전하는 문서이다.

사헌부 장령 신응망 열어볼 것

우부승지 남 [착명]

지금 너를 사헌부장령에 임명하니, 너는 빨리 상경하라는 국왕의 말씀임.

순치 3년(1646, 인조24) 12월 20일

司憲府掌令 辛應望 開坼

右副承旨南[著名]

今以爾爲司憲府掌令爾

其斯速上來事有

旨

順治三年十二月二十日

5-1-24) 1863년 신휘상辛徽常 고신告身<sup>14</sup>

【해설】 1863년 12월에 통선랑 신휘상을 장인 사간원 정언인 정종학의 계해년 자품을 대신 받아 가져  
하여 통덕랑에 임명하는 교첩.

이조에서 동치 2년(1863, 철종12) 12월 13일에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 신휘상을 통덕랑에 임명함  
동치 3년(1864) 정월 일  
처부(妻父)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 정종학의 계해 12월의 자품을 신휘상에게 특별히  
대신 더함

정랑  
행판서  참판  참의  신  김 [작명]  
좌랑

吏曹同治二年十二月十三

日奉

敎  通善郎辛徽常

爲通德郎者

同治三年正月  日

妻父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鄭鐘學癸十二

別代加

正郎  
行判書  參判  參議  臣  金 [著名]  
佐郎

14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자료관 교령류 no.98에서는 이 문서를 1864년으로 하였으나  
동치2년에 신휘상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임으로 1863년으로 수정함.

## 5-2. 통문通文류

### 5-2-1) 1898년 문장門長이 족보 편찬을 알리는 통문通文

【해설】 1898년에 영월신씨 문중에서 족보(영월신씨세보)를 편찬하기 위해 총 책임자인 문장門長(문장) 신방묵이 여러 종친들에게 족보 편찬의 배경을 알리고, 족보 편찬 조직과 그 담당자 명단을 공지하며 편찬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협조하는 문서

통문通文

삼가 알립니다.

집에는 족보가 있고 국가에는 역사서(冊)가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은 같지 않으나 벼슬하고 음직을 받은 것이며 충·열·효를 기록하는 것은 그 의리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가문에 족보가 없으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계파인가를 족히 증험할 수 없을 것이고 나라에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어질고 누가 그른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족보와 가승은 모두 어려운 것이지만 족보 편찬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오직 우리 영월 신씨 가문에서 족보를 만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대저 갑오년(1714, 숙종40), 병신년(1716, 숙종42)의 분보分譜는 감정이 끼어 있고, 을축년(1769, 영조45)의 속보續譜는 오히려 누락되고 소략한 것이 많았으며, 갑인년(1794, 정조18)의 파보派譜 또한 더욱 누락되어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우리 가문에서 남쪽으로 온 한 파가 궁벽한 먼 곳에 내려와서 세월이 점차 지나자 가문에 복이 넉넉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부담을 덜어낼 겨를도 없었고 밖으로는 바라볼 인재도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느라 만나기 어려워, 뜻은 있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지금 문중 종의宗議의 뜻이 같고 또 파보를 편찬하자는 의논이 두 가지입니다. 대성大姓으로 하여 이름 한 글자를 항렬로 하는 것이고, 도처에 흩어져 빠지고 누락된 것을 보충해 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모름지기 여러 종친(僉宗)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조상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종족간의 의리를 돈독히 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족보를 편찬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에 족보 편찬을 담당하는 여러 부분의 유사가 도처에 다닐 것이니 경비를 넉넉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 각 파의 수단修單에는 적서嫡庶를 분명히 할 것



일, 각 파는 먼저 소요 비용을 낼 것

무술(1898년, 고종 광무2) 2월 일 족보 편찬청을 영광 도내면 입석리 묘재에 설치함

발문 문장門長	방묵邦默
재정담당	휘상徽常 도유사를 겸함
공무원公司員	휘순徽順 교정을 겸함
교정校正	진규縉珪
	최규最珪
	종묵宗默
감인監印	정묵正默 수단유사를 겸함
	항린恒麟
기초유사起草有司	휘진徽典
	극희克喜 회문유사를 겸함
회문유사回文有司	선규宜珪
	동규東珪
	휘문徽文
수단유사收單有司	휘식徽湜
	항진恒振
	성규聲珪

通文

右通諭事 家之有譜 國之有乘 巨細不同 記其仕蔭忠烈孝  
則其義何異哉 家無譜 則不足徵於某之孫某之派 國無乘 則  
何所據於誰爲賢誰爲否也 譜與乘 俱難等置者 其爲譜也 豈其  
忽哉 噫 惟我寧辛之有譜久矣 夫甲丙之分譜 有所挾憾 乙丑之  
續譜 尙多闕略 甲寅之派譜 尤有見漏 寧欲無言 豈不寒心哉 南  
下一派 僻在遐陬 年紀漸次 門祚矩淺 內無息肩之暇 外無贍手之  
才 落落難合 有志未遂 盖亦有年矣 幸今宗議詢同 又爲派譜之  
議 而有二致焉 大姓之一字行列也 散處之闕漏補入者 是也 故  
茲敢敬通 幸須僉宗 一以敬尊祖之心 一以敦類族之誼 同心協力  
以爲設譜之地 豈不欽慕抑亦勉旃哉歟 幸甚  
此亦中 輪遍有司行到處 路費優爲助給事  
一 各派修單 嫡庶分明事

一 各派先出辦財事

戊戌二月 日 設譜廳于靈光道內立石墓齋

- 發文 門長            邦默
- 掌財有司            徽常 兼都有司
- 公司員                徽順 兼校正
- 校正                    縉珪
- 最珪
- 宗默
- 監印                    正默 兼收單有司
- 恒麟
- 起草有司                徽典
- 克喜 兼回文有司
- 回文有司                宜珪
- 東珪
- 徽文
- 收單有司                徽湜
- 恒振
- 聲珪

5-2-2) 1898년 문중門中 통문通文

【해설】 1898년(광무2) 3월, 영월신씨 문중에서 족보 편찬을 위해 구성된 각 지역 위원 명단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통문에 답함

통문에 답함

삼가 알립니다. 곧 회문이 도착하는 대로 족보 편찬에 필요한 수단과 각 조항을 통문 내용에 의거하여 준행함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무술년(1898, 광무2) 3월 일

- 종인 신응오 본읍 외서
- 종인 신영숙 본읍 황량
- 종인 신태욱 본읍 불갑
- 종인 신준팔 무안 진례면 방우동

종인 신군서 무안 금적면 외야동  
종인 신언녀 옥과 검방면 송강동  
종인 신치중 옥과 화면 조양  
종인 신경중  
종인 신선중 화면 함안  
종인 신치선 본읍 삼북 청산

答通

右通諭事 卽到回文內 族譜收單

與各付條 依通辭遵行之意 幸

甚

戊戌三月 日

宗人 辛應五 本邑 外西  
宗人 辛永淑 本邑 黃良  
宗人 辛太郁 本邑 佛甲  
宗人 辛俊八 務安 進禮面 放牛洞  
宗人 辛君西 務安 金積面 外冶洞  
宗人 辛彥汝 玉果 兼坊面 松江洞  
宗人 辛致中 玉果 火面 朝陽  
宗人 辛京中  
宗人 辛善中 火面 咸安  
宗人 辛治先 本邑 森北 靑山

5-2-3) 1899년 문중門中 통문通文

【해설】 족보 편찬의 일을 완수하고자 여러 차례 의논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고 진사공 신동혁의 아들 신철환과 족질 기환과 익환이 술선수범하여 비용을 쾌척함으로써 공주 갑사에 족보청을 마련하고 대동보 편찬이 재개 된 경위를 알리고자 1899년(기해)에 영월신씨 문중에 보낸 문서.

삼가 알립니다.

나라에는 역사책이 있고, 재야에는 가승이 있습니다. 가문에는 계통이 있어, 존귀함과 소원함에 비록 차이가 있으나, 문헌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아! 우리 신씨의 연원은

오래되었습니다. 시조 고려 조정 평장사 정의공<sup>15</sup>때부터 덕을 쌓아 자손에게 경사가 미치어 구름같이 자손이 번창하였으니 먼 후손들이 흠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sup>16</sup>이 일어난 이후로 씨족이 모두 흩어지고 분묘조차 망실되었으니 후손된 자로 애통하고 절박합니다. 이에 한림 선조<sup>17</sup>께서 다행히 네 아드님이 있어, 본관을 나누어 영산과 영월로 하니, 유파가 분연히 나누어졌으니<sup>18</sup> 그 조상은 한가지로 같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 좌우로 나뉘어져 사느라 끝내 통합된 족보를 갖지 못하니 이것은 우리 가문에 있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에 종족의 의논을 수합하여 각 파의 명단을 널리 모아 장차 통합된 족보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마침 흉년이 들어 중도에 일이 중단되었으니 늘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호라! 족보 편찬의 일을 계승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부침이 있어 편집을 끝내지 못한 채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자손들이 번창해졌으나, 점차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일이 더욱 요원해져 조상들의 소목 차례가 실리지 않아 연대를 징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더욱더 애매해질 것이니 아! 애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에 족보 편찬의 뜻을 의논하였으나, 혹자는 비용을 모으기가 어렵다 하여 스스로 해산하기도 하고, 혹자는 의심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결국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먼 친척들이 왕래하는 낭비의 수고로움이 없지 않았으며, 족보청은 쓸데없는 짓을 하였다는 나무람을 면하지 어려웠으니 실로 마음을 펴기가 어려워 매번 간절히 부끄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집안 조카 철환<sup>徹煥</sup>과 문중 조카 익환<sup>益煥</sup>과 익환<sup>翊煥</sup>이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세 집안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일족의 계보를 정리하여 먼저 그 갈래를 아름답게 하여 대동보를 편찬코자 하니 누가 이것을 보고 “우리 문중의 돈독한 화목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환<sup>徹煥</sup>은 바로 고 진사공<sup>故進士公</sup> 동혁<sup>東赫</sup>의 아들이며 고 정헌판부사<sup>故靖憲判府事</sup>의

15 고려 인종 6년(1138) 문과에 급제한 신경<sup>辛鏡</sup>을 말함. 그는 중국 8학사의 한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하여, 과거 급제 후 금자광록대부 문하시랑평장사에 올랐다고 하며, 자신이 살았던 중국 강서성 대유현에 있는 천축산<sup>天竺山</sup>과 산세가 비슷한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 영취산 아래에 정착함으로써 신씨의 시조가 되었다.

16 아마도 40년에 걸쳐 지속된 13세기 몽골 침입을 뜻하는 것 같다.

17 신경의 9세손 신지화<sup>辛至和</sup>를 뜻한다. 그의 4아들은 천(판밀직사사, 덕재공), 혁(영산부원군, 초당공), 온(영월부원군, 부원군), 한(이부판서, 판서공)이다. 영산파(덕재공파, 초당파)와 영월파(부원군파와 판서공파)로 대별된다.(한중연, 향토문화대전 영월신씨 참조)

18 신지화의 4아들을 파조로 하여 영월신씨는 영산파(덕재공파, 초당파)와 영월파(부원군파와 판서공 파)로 대별된다.(한중연, 향토문화대전 영월신씨 참조)

9세손입니다. 성품이 본디 질박하고 성실하여 문중사람들이 신복해 왔습니다. 일을 완수할 것을 도모하여 족보편찬의 일을 마치고자 스스로 사재를 털어 간행하기를 기약하여 이번 2월 그믐에 족보청을 공주 땅 갑사甲寺에 설치하고자 하오니 여러 제종은 각과의 각 명단을 2월 그믐 전에 자세히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족보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비록 매우 급하기는 하지만, 먼저 비용은 보내지 마시고, 먼저 교정지를 받아 본 후에 보냄으로써 그것으로 서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어찌 족보편찬의 큰일을 완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기는 여러 종씨는 위로는 조상에 대한 가지런한 정성을 추모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이 제비들처럼 우애롭게 지낼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종중사람들이 함께 묻고 문중이 단결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기해년(1899) 정월 일

右敬通事 國有史 野有乘 家有系者 尊疏雖  
殊 文獻則一也 噫 吾辛之淵源 粵自  
鼻祖麗朝平章事廷議公 樹德餘慶 雲仍滋  
蔓 常爲苗裔之瞻慕 而但兵燹後 氏族蕩失 墳  
墓茫昧 亦所爲後者痛迫也 逮夫翰林先朝[祖] 幸有  
四胤 分貫靈寧 派流岐分 然沿其同祖則一也 間因居  
相左右 未克統合譜族[族譜] 斯實吾門之欠事 故昔在甲  
乙年間 收拾族誼 博采派單 將成統譜之際 適因  
年荒 中塗處廢 恒庸深恨矣 嗚呼 繼承譜筆 亦有  
升降 更未蒐輯者 積有年所 而椒聊漸蕃 梓刊復遠  
昭穆之未載 年代之無徵 詎不爲彌 久愈昧之 嗟惜也  
哉 所以昔年 有志建議 而或難鳩財而自解 或緣狐  
疑而未濟 則遠宗不無勞 止之浪費 本廳難免 虛妄之  
厚誚 實難敷心 每切愧歎 顧今家侄徹煥 族侄益煥 翊煥  
擬蹈未就之前 躡克效同心之 僉應三家合財 一族修  
系 趾先美而纂大譜 則孰不曰寔出吾宗之敦睦乎 徹  
煥 卽故進士公東赫之子 故靖憲判府事之九世孫  
也 人素質實 爲宗信服 庶圖竣事 而竣事之方  
自辦私財 期於繡梓 而以今二月晦日 將設廳所于  
公州地甲寺 而僉宗氏 各派各[名]單 期於二月晦日前 詳  
細收送 而各錢 則廳用雖急 慎勿先送 的見校刊後

繼以收送 以爲互信 則豈非大事之準完耶 伏願  
 僉宗氏 上追慕先之齊誠 下垂貽後之燕謨 詢同  
 瓜瓞 團結花樹 千萬幸甚  
 己亥正月 日

#### 5-2-4) 족보 편찬을 위한 통문通文

【해설】 대동보(영월신씨세보) 편찬에 대한 통문을 받고서 영월파 입장에서 대동보 편찬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통문.

삼가 알립니다. 우리 신씨가 영산과 영월로 각각 나뉘어 편찬한 분보分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남쪽으로 내려온 일파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으며, 가문의 복이 천박하고 미약하여 안으로는 서로 어깨를 펴 가망이 없고, 밖으로는 남에게 도움을 줄 여력이 없이 흩어져 사느라 실로 합칠 겨를이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에 당신네 종친(貴宗)께서 통문을 발하여 저의 집안(賤門)에까지 이르러 모든 신씨 문중이 단결하게 되었으니 실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종종 의 의논이 모두 같이 되는 것은 실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뜻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함으로써 도리어 남의 말이 되어 도리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오직 바라기는 당신네 종주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右回通事 惟我辛氏 靈寧分譜 貫有譜幾矣 噫  
 南下一派 散在諸域 門祚淺薄 內無息肩之望 外  
 無贍手之才 落落難合 良有以也 際茲 貴宗發通  
 至於賤門 花樹團結 誠感于中 然而發處宗議 實  
 難循同 所謂有志未就 還愧於塗人之說 惟望  
 貴宗 以此恕諒 千萬幸甚

#### 5-2-5) 1854년 세보 편찬을 위해 발송한 통문

【해설】 1854년(철종5) 영월신씨 갑인세보 편찬 마무리를 위해 신휘상이 문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을 촉구하는 문서이다. 이 통문에서 신휘상은 족보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범종엄과

소동파의 말을 인용하며, 같은 조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근본을 밝혀주는 족보가 없으면 결국 길에서 만난 남처럼 지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뿌리를 알아 조상들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서 후손들이 가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족보 편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가 알립니다.

만 갈래 물줄기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같은 하나의 물줄기에서 나옵니다. 만 갈래의 나뭇가지도 그 출발을 살펴보면 같은 한 뿌리입니다. 처음 우리 신씨의 시조는 중국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동쪽으로 와서 터를 잡아 혈통을 이어서 자손들이 대를 이어왔습니다. 아래로 신라와 고려왕조대부터는 찬란하게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8세 선조는 문형의 자리에 올랐으니 무릇 여러 종친들이 누구인들 그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엽에 이르러 우리 문중이 두 파로 나뉘어 후손들을 이어 내려와 대수가 30세대에 이르니 1천년이 한 순간이 되어, 갈래는 멀어지고 조종은 소원해졌으니 진실로 가히 한탄스럽습니다.

문정공文正公 범중엄范仲淹이 이르기를 “우리 오중五中の 종족들이 매우 많지만 우리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손이다”라고 한 것은 어찌 그 근본을 미루어 살펴 남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아! 9권의 족보九卷譜로부터 대략 대동보가 이루어져서 갑인년(1854년, 철종5)에 이르러 겨우 파보派譜가 완성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이에 적조한 것이 40년이 넘었습니다. 늙어서 손자를 안고서도 선대가 남겨주신 지맥을 잊지 못하고 젊어서 결혼을 했으나 어찌 할 줄 모르니 가문의 후예들이 혹 관향을 묻거나 문중을 물어보아도 분파를 알지 못하고, 혹시 길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어 함께 성씨를 물으니 어찌 옛날 화목하고 돈독했던 의리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초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 보듯하니 소동파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처럼 대한다고 한 말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주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은 정한 이치요, 일은 끼리끼리 모이고 물은 유로 나뉘진다.[物以群分 方以類聚]” 했듯이 영물스러운 사람으로서 마땅이 유취類聚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유취의 도리는 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친친親親에 있으며, 친친의 도리는 족보를 편찬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중의 의논이 같아서 지금부터 족보를 편찬하는 뜻으로 저 먼 집안에까지 통문을 보냅니다. 원하옵건대 문중 여러분들께서는 통문이 도착하는 대로 뜻을 같이하여 여러 파분들에게 회람하여 함께 하나의 근원임을 살펴주시고, 만 갈래의 가지를 살펴 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줌으로써 첫째는 선대께서 남겨주신 뜻을 계승하고, 둘째는 후손들에게 밝은 가르침을 드리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사로이 보지마시고 본소에 일제히 모여 밝은 지혜를 모아 정확한 의논을 정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

니다.

右文爲通喻事 萬派之水 究其所自 則同  
 是一源也 萬枝之木 究其所出 則同是一根也  
 惟我鼻祖 中朝貂及東上龜基 承胤繼緒  
 降自羅麗 熾代冠冕 八世文衡 凡爲諸宗 孰  
 不蒙冒 至于中葉 門成二派 傳之後昆 代出  
 三十 千載一瞬 支遠宗疎 良可慨然 范公  
 之言 曰吳中宗族甚盛 吾祖宗視之 則一是子  
 孫 豈非追遠慕本之遺戒耶 粵自九卷譜 而  
 略成大同 逮于甲寅 纔成派譜 其間寂阻 四十有  
 年矣 白首抱孫 未續先世之餘蔓 少壯有室 未  
 知何 門之外裔 或慣面呼宗 而未辨分派 或行  
 路相逢 而共問姓氏 豈以前日敦睦之誼 今爲  
 楚越之情耶 蘇氏路人之說 良由此也 夫乾坤  
 定矣 物以群分 方以類聚 人於物靈 當先類聚  
 而類聚之道 在於親親 親親之道 莫如修譜 何幸  
 門議循同 自今修譜之意 邇遐發通 惟願僉宗  
 氏 通到日時 協謨同猷 回萬派而同注一源 理萬  
 枝而同歸一根 一以繼先世之遺模 二以垂來裔  
 之明戒 寔爲吾門之急務 毋作例視 濟會本所  
 爛籌確議之地 幸甚

### 5-2-6) 1875년 족보 편찬을 위해 보낸 회문回文

【해설】 신복현, 신광규, 신인규 3인이 1875년에 영월신씨 대동보인 영월신씨세보를 증수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밝히고 고성, 도동, 입석, 월곡, 계동, 갈암, 송정리 등에 사는 문중 족인들에게 보낸 통문.

회문回文

삼가 알립니다. 우리 문중의 대동보 편찬은 지난 1807년 정묘년<sup>19</sup>에 이미 있었습니다.

19 순조 7년(1807)에 간행된 『영월신씨세보』로 보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록번호 고2518041-14 참조)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을 잊지 못한 채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갑인년(1854)에 남쪽으로 내려온 영월 일파에서 가승을 간행한 것<sup>20</sup>은 진실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각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영성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한탄을 하니, 이렇게 된 것은 실은 은혜로 급히 서두르느라 첩牒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때문이었으니, 항상 한탄스러웠습니다. 향차 또 20년이 지나 각 집이 생존해있으나 거의 상전이 벽해가 될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에 삼가하여 갑인년 족보 편찬에 의거해서 다시 한 첩을 새로 출판하여, 우리 남파의 완전한 족보를 도모하고자 하니 어찌 감격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문서를 보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여러 문중께서는 이번 25일에 분사동粉土洞 제각祭閣에 모여 분명한 결정을 내리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을해(1875) 2월 24일

발신자 신복현辛復鉉, 신굉圭辛宏圭, 신인규辛寅圭

고성, 도동, 입석, 월곡, 계동, 갈암, 송정에 보냄

回文

右回諭事 吾宗大同之譜 在於已去丁卯 其  
後不遑繼修 過近百年 往在甲寅 南□(下)  
一派 家乘之刊 良以此也 然而各派中  
猶有疎漏之歎者 實因恩遽而牒未專  
成 常所慨然 況歲已廿稔 各家生存 幾近  
滄桑際 此稍康謹 依甲寅例 更修一牒 以  
圖南派之完譜 庶乎無憾 故茲以發文 伏願  
僉宗 今二十五日 齊會于粉土洞祭閣 以□  
爛確 收議之地 幸甚

乙亥 二月 二十四日 發文 辛復鉉

辛屹圭

辛寅圭

高城 陶洞 立石 月谷 桂洞

葛巖 松亭

20 1854년에 간행된 『영월신씨 갑인세보』로 보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록번호 고2518-41-4-1-5 참조)

## 5-2-7) 효행기孝行記

성책成冊

효자

신□□ 나이 64세, 본관 영월

일찍이 부친이 병석에 누워있던 7개월 동안 곁에서 탕약을 챙겨드리는 동안 자신의 몸에서 허리띠를 풀지 않고 몸소 약을 달여 드렸으며, 똥을 맛보며 병증을 살피고, 하늘에 기도하며 생명연장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부친이 돌아가시자,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수차례 하였다. 60이 넘어 몸이 이미 금약해졌음에도 3년 시묘살이를 하였다. 직접 장작을 패서 밥을 짓고, 머리는 길어지고 손가락에 주름이 잡혀도 조식으로 식사를 올렸다. 산 근처에는 처음에 원천源泉이 없었다. 홀연히 한 노인이 불려서 그와 더불어 묘 왼쪽으로 갔더니 한 곳을 가리키며 이르기를 이곳이 바로 너의 급수처이다 라고 말하였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당시는 날씨가 가뭄이 들어 땅이 메말랐는데, 노인이 가리켰던 곳을 파보니 맑고 시원한 물이湧출하여고, 그 물 맛은 아주 달았다. 이에 그 샘물을 이름하여 효자 천이라 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효자 김영순 나이 19세, 본관 김해 (이하 생략)

成冊

孝

辛□□年六十四 本寧越

嘗於其父之病 在於七朔 侍湯中 身不

解帶 躬自煎藥 嘗糞試症 祝天代命

及其不幸 袒括擗踊 頓絕方甦者 數矣

以六十既衰之年 三年侍墓 身自樵爨 熱

鬚皴指 朝夕奠揮 右山近處 初無源泉

忽有一老人 呼以與去墓左 一處指示 曰此是

汝之汲水處云而 驚以悟之則夢 時天

旱地燥 而因鑿其處 則清泉湧出 味

亦甘冽 因名其泉 曰孝子之泉也 豈非天

神感 其至誠至孝耶

金永淳 年十九 本金海



## 5-3. 예조 입안禮曹立案 등

### 5-3-1) 1717년 예조 입안

【해설】 1717년(숙종43) 예조에서 신만정의 둘째 아들 신용백을 고 학생 신정수의 계후자로 승인하여 발급한 계후 입안문서. 신정수의 아내 유씨가 올린 소지와 용백의 친아버지 신만정 및 문중 대표로 유학 신만화 등이 올린 승낙 소지를 받은 예조에서는 경국대전 입후조에 의거하여 살펴본 결과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입후를 허가함.

강희 56년(1717, 숙종43) 5월 일 예조 입안

이 입안은 계후繼後를 위한 것임.

예조 계목啓目에, “이번에 올라온 고 학생 신정수辛鼎受가 후사後嗣가 없어 그의 아내 유씨柳氏가 그 집의 동성 8촌 형인 만정萬挺의 둘째 아들 용백龍伯을 입후하려 한다는 정장呈狀이었습니다. 양쪽 호구를 살펴보니 입적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씨의 소지에, ‘가옹家翁의 적첩嫡妾이 모두 아들이 없이 죽으니 가옹의 동성 8촌형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려고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을 하오니 다른 예에 의하여 입후해달라.’ 는 소지입니다. 유씨의 함사緘辭에 ‘저의 가옹이 적첩이 모두 아들이 없이 죽어서 가옹의 동성 8촌형인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려고 양가에서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였고, 신만정의 조목條目에 ‘동성 8촌 동생 정수가 적첩이 모두 아들 없이 죽어서 나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려고 양가에서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였고, 신정수, 신만정 등과 문장門長인 유학幼學 신만화辛萬和의 조목에 ‘신정수가 적첩이 모두 아들 없이 죽어서 그의 처 유씨가 그의 가옹의 동성 8촌형인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려고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소지 및 함사, 조목에 의거하여 상고하니, 『경국대전』 입후조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를 삼는다.’ 고 했고, 주에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관에 고하여 사실을 기록한다.’ 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신용백을 신정수의 후사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강희 56년(1717, 숙종43) 5월 17일 우부승지 신이성조李聖肇가 담당하여 올린 계목에 그대로 윤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입안함.

정랑 죄량

판서    참판    참의[서업]   정랑 죄량

정랑 죄량 [서업]

康熙五十六年五月 日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啓目 節呈故學生辛鼎受無後 其妻柳氏 亦以其家翁同姓八寸兄萬挺第  
二子龍伯 立後爲良結 呈狀爲白有去乙 取考兩邊戶口則入籍的實是白在果 柳氏所志內 家翁  
嫡妾

俱無子身死 家翁同姓八寸兄萬挺第二子龍伯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所志 幼學  
辛萬挺

所志內 同姓八寸弟鼎受 嫡妾俱無子身死 矣第二子龍伯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  
所志 柳

氏緘辭 矣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姓八寸兄萬挺第二子龍伯 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  
實 辛

萬挺條目內 同姓八寸弟鼎受 嫡妾俱無子身死 矣第二子龍伯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的實 辛  
鼎受辛

萬挺等門長幼學辛萬和條目內 辛鼎受嫡妾俱無子身死 其妻柳氏亦 其家翁同姓八寸兄萬挺  
第

二子龍伯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的實事 所志及緘辭條目據相考 則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  
者 告

官立同宗支子爲後 註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事載錄 向前辛龍伯乙 辛鼎受繼後何如  
康熙

五十六年五月十七日 右副承旨 臣 李聖肇 次知 啓依允教事是去有等以 合行立案者

正郎 佐郎

判書 叅判 叅議 [署押] 正郎 佐郎

正郎 佐郎[署押]

### 5-3-2) 1892년 예조 입안

【해설】 1892년 전라도의 진사 이응순 등이 상언한 효자 신광규를 효행으로 정려하고 그 후손들은 연  
호세와 환곡의 잡역을 감면해주라는 예조 입안 문서.

광서 18년(고종28, 1892) 12월 일 예조 입안

이 입안은 효자 정려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계하하신 예조의 계목을 점련하여 계  
하하셨습니다. 이조의 계목을 보면 전라도 진사 이응순李膺純 등의 상언上言에 영광의  
고 학생 신광규가 효행이 탁이하여 증직의 은전을 베풀어 정려를 하시라고 하여 예조

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상언의 내용을 가져다 보니 신굉규는 고이조판서 문정공文貞公 당□□唐□□의 5세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도를 지극히 하여 부모를 섬겼습니다. 부모가 병환에 탕약을 직접 달이고, 똥을 맛보아 병세를 살폈으며, 하늘에 기도하며 의관을 한시도 풀지 않았으며, 잠도 자지 않고 7개월 동안 병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의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갖춰 장례를 치고 매일 묘소에 가서 비바람이 불어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 상을 당하여서도 초상과 예제를 전의 아버지 상과 같이 하였고 여막을 지키는 것을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직접 1리쯤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와 조석으로 전향을 올렸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묘 왼쪽을 가리켜서 그곳의 땅을 파 물을 얻으니 사람들이 효자천이라 하였습니다.

신굉규의 효행이 탁월하여 이미 증직의 은혜를 입었고 이어서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장려하는 뜻에 부합될 것입니다만, 은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신의 부서에서 감히 멋대로 할수 없으니 상께서 재가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광서 18년(1892, 고종29) 12월 28일에 동부승지 신 이근교가 담당하여 왕에게 아뢰었고,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정려가 세워질 때에 재목과 장인은 전례에 따라 관에서 거행하게 하며, 그 자손의 집에 부과되는 연호와 환자 등의 제반 잡역을 모두 면제해주도록 입안함.

			정랑	좌랑
판서 [서업]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정랑	좌랑

光緒十八年十二月日禮曹立案

右立案爲孝子旌閭事 節啓下教 曹啓日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吏曹啓目 啓則因全羅道進士李膺純等上言 靈光故學生辛宏珪 孝行卓異 施以贈職之典 旌

一款 令禮曹稟處亦爲白有等以 取考其上言內辭緣 則辛宏珪 則故吏判文貞公唐□□

五世孫也 自在髫齡 至孝事親 盡誠父病 侍湯嘗糞 祝天衣不解 常夜不就寢 七朔救護 果□□

先丁外憂 擗踊幾絕 襄葬遵禮 日往□□ 風雨不廢 又遭內艱 初終禮制 一如前喪 因廬側□

如生 躬自汲水於一里許 以供朝夕之奠 夢有一老 指示墓左 掘得泉湧 人謂孝子泉是如爲

有馭乎所 辛宏珪之孝行卓異 既蒙貽贈 則繼施旌閭之典 恐合加獎之義是白□□

干恩典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光緒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 同副承旨臣李根教次知□

啓 依回啓施行爲良如教事 判下教是□ 旌門豎立時 材木匠手 依例自官舉行爲有□

子孫家烟戶還上等諸般雜役 一併蠲際爲遣 合行立案者

正郎 佐郎



기해년(1899, 광무3) 2월 일 수표

여기에 수표합니다. 지금 보청譜廳에서 족보를 수정할 때에 죽인族人인 휘상徽常의 집안은 자세히 현록하고 각 파의 행장은 하나도 현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덕언행록世德言行錄은 갑인보甲寅譜에 따라 시행하고 새로 들어오는 선행장善行狀 등은 모두 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각 파의 선조에 실제 행한 의리가 있다면 따로 다른 문권을 만들고 지금의 족보에서는 넣지 않기로 완의를 하였습니다.

표주 대문중

신종기 [착명]      신□□ [착명]      신휘순 [착명]

신성규 [착명]      신휘진 [착명]

己亥二月日 票

右票事 方今譜廳修

正時 族人徽常之家 此

細細懸錄是遣 各派行狀

無一現錄 故世德言行錄

依甲寅譜施行之意 新入

善行狀等 一併勿施爲去

乎 若有各派先祖實

行之義 則別成他券是

遣 今譜勿入完議爲

乎乙事

標主 大門中

辛宗基 [着名]

辛□□ [着名]

辛徽順 [着名]

辛聲珪 [着名]

辛徽珍 [着名]





## 5-4. 호구 자료

## 5-4-1) 1669년 신경릉辛慶隆 준호구准戶口

【해설】 1669년(현종10)에 영광군에서 무장면 교정리에 사는 유학 신경릉 가의 호구 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해 준 준호구. 호주 신경릉은 신응망의 손자로, 현재 나이 24세, 처 박씨는 28세이며,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다. 이외에 총 97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내종(노이) 46명, 계집종(비)이 51명이었으나, 그 가운데 24명의 노비가 도망을 하였는데, 주로 병오년과 신축년에 도망하였다.

강희 8년(1669, 현종10) ○월 ○일 영광군靈光郡

기유년(1669, 현종10)에 장적인 호구 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묘장면畝長面 교정리橋項里에 사는 호戶 유학 신경릉辛慶隆(24세, 병술생), 본적 영월.

아버지 선무랑宣務郎 익진翊震

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장령 행司憲府掌令 응망應望

증조부 학생學生 장길長吉

외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이훈李暉, 본적 함풍咸豐

처妻 박씨朴氏(28세, 임오생), 본적 함양咸陽

아버지 유학幼學 상수尙粹

조부 학생學生 구려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종정宗挺

외조부 학생學生 정문호鄭文湖, 본적 초계草溪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契]

노 아생牙生(36세, 갑술생), 양역仰役<sup>21</sup>, 아버지 호노 도생道生, 어머니 호비 천향天香, 전 처 양녀 채운彩雲, 후처後妻 양녀 석을녀石乙女

비 천상天上(33세, 정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은 호노戶奴 일수日守

노 석을세石乙世(31세, 기미생), 처는 없음.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처례處禮(22세, 무자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은 사노인데 이름은 모름

노 석을천石乙千(18세, 임진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21 仰役은 노비 중 주로 가내 사환노비를 일컬어 양역노비라 칭할 때 쓴다.

노 갑생甲生(46세, 갑자생) 아버지는 사노 수배守陪, 어머니 호비 정화丁化, 처 양녀 사개士介

노 준생準生(44세, 병인생) 양역노비. 부모는 같음. 처는 양녀 길여吉女

비 순화順化(42세, 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 사노 내은금內隱金

비 순양順陽(38세, 임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 사노 어둔於屯

노 생이生伊(36세, 갑술생) 양역. 부모는 위와 같음. 처 양녀 기진개其眞介

노 육생六生(32세, 무인생) 양역. 부모는 위와 같음. 처 사비 백향自香

노 아리금牙里金(24세, 병술생) 처는 없음. 양역. 아버지 사노 노세魯世, 어머니 호비 연화延化

노 일수日守(44세, 병인생) 양역,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처는 같은 비 천상千上

노 일생日生(41세, 기사생) 양역, 부모는 위와 같음. 처는 사비 일금一今

비 내은이內隱伊(70세, 경자생) 병자년에 도망,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斤, 어머니 호비戶婢 내은서誚隱西, 남편은 모름

비 내은월內隱月(67세, 계묘생) 병오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은 사노 석을금石乙金

비 점이點伊(64세, 병오생) 병오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은 교노校奴이나 누구인지 모름

비 춘양春陽(38세, 임신생) 아버지 사노 내은동內隱同, 어머니 호비 윤개尹介, 남편 사노 私奴 환이還伊

비 추상秋上(30세, 경진생) 신축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은 누구인지 모름

비 갑생甲生(46세, 갑자생) 병오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守代, 남편 경포인보京炮人保 충기忠起

노 준이準伊(27세, 계미생) 신축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처는 없음

비 해당海棠(27세, 계미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호노 학지鶴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노 매석賣石(16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춘이春伊(30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남편 사노 私奴 인남仁男

비 매금賣金(18세, 임진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호노 학지鶴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노 칠금七金(25세, 을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처는 사비 애금愛今

노 칠인七仁(24세, 병술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으며 처는 없음.

비 덕춘德春(21세, 기축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 호노 계생戒生

- 비 덕환德還 (19세, 신묘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덕화德化 (13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장덕掌德 (10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자은덕者隱德 (7세, 계묘생)
- 비 자은금者隱金 (5세, 을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일현月賢 (21세, 기축생) 양역, 아버지 사노寺奴 추은문을리愁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 노 월금月金 (17세, 계사생) 양역,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월향月香 (13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월양 (11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줄금鋤金 (9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두향杜香 (39세, 신미생) 갑진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寺奴 구인복九仁卜, 어머니 호비 수인守仁, 남편은 모름
- 노 매남賣男 (25세, 을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어자은금於自隱金, 어머니 호비 철상哲上 처는 양녀 노양老陽
- 노 매생賣生 (19세, 신묘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처는 양녀 애당愛棠
- 비 상이尙伊 (16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철양哲陽 (24세, 병술) 아버지 사노 철생哲生, 어머니 호비 상추尙秋, 남편 사노 복명復明
- 비 철옥哲玉 (19세, 신묘생) 양역노비
- 노 철인哲仁 (12세, 무술생)
- 비 철금哲金 (7세, 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백은덕白隱德 (20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오남五男, 어머니 호비 상환尙還
- 노 백은금白隱金 (15세, 을미생)
- 비 해양海陽 (12세, 무술생)
- 비 노랑이老郎伊 (9세, 신축생)
- 노 금금金金 (5세, 을사생)
- 비 예상禮上 (2세, 무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차명次明 (12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양운良云, 어머니 호비 상금尙金
- 노 차선次善 (10세, 경자생)
- 비 동개同介 (5세, 을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일향日香 (22세, 무자생) 아버지 관노官奴 개질지介叱之, 어머니 호비 은향隱香, 남편 은사노이나 이름은 모름

- 비 월향月香 (19세, 신묘생) 양역노비
- 노 만이萬伊 (15세, 을미생)
- 노 만생萬生 (10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사인士仁 (15세, 을미생) 아버지 호노 갑생甲生, 어머니 양녀 사개士介
- 비 사환士還 (19세, 신묘생) 양역노비
- 비 문환聞還 (14세, 병신생)
- 노 매일賣日 (11세, 을해생)
- 노 약금約金 (9세, 신축생)
- 노 순백順白 (3세, 정미생) 아버지 사노私奴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戶婢 순화順化
- 비 매양賣陽 (13세, 정유생)
- 노 축이丑伊 (9세, 신축생)
- 노 축금丑金 (3세, 정미생) 아버지 호노戶奴 준생準生, 어머니 양녀良女 길례吉禮
- 비 사옥似玉 (16세, 갑오생)
- 비 승옥勝玉 (12세, 무술생)
- 비 연향延香 (5세, 을사생) 아버지 사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순양順陽
- 비 예단禮丹 (12세, 무술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彩云
- 노 석을시石乙屎 (5세, 을사생) 아버지 위와 같음. 어머니 양녀 돌녀鬪女
- 노 석을금石乙金 (2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매덕賣德 (4세, 병오생) 아버지 호노 관남實男, 어머니 양녀 노양老陽
- 노 일립日立 (9세, 신축생) 아버지 호오 일수日守, 어머니 호비 천상千尙
- 노 인철仁哲 (10세, 경자생)
- 노 소남小男 (6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 노 선이善伊 (19세, 신묘생) 병오년에 도망
- 비 단이丹伊 (13세, 정유생) 병오년에 도망. 아버지 경포京炮 충기忠己, 어머니 호비 갑생甲生
- 노 춘금春金 (17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환이還伊, 어머니 호 춘량春良
- 노 복선復善 (2세, 무신생) 아버지 사노 복기卜期, 어머니 호비 철량哲良
- 비 옥금玉金 (16세, 갑오생) 양역노비, 아버지 둔영군屯營軍 오화인吳火仁, 어머니 호비 생환生還
- 비 내은화內隱化 (37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일례日禮, 남편은 모름
- 노 정남丁男 (69세, 신축생) 도망. 아버지 사노私奴 정립丁立, 어머니 호비 작은애者斤介, 처는 모름

노 괴생怪生(26세, 갑신생) 도망. 아버지 사노 괴산怪山, 어머니 호비 춘안春安, 처는 모름  
 비 맹화孟化(70세, 경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맹산孟山, 어머니 호비 복덕卜德, 남편의  
 이름은 모름

비 연화延化(58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극복極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남편은  
 모름

노 천일千一(44세, 무인생) 아버지 장인匠人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처는 양녀  
 이나 이름을 모름

비 영옥永玉(36세, 갑술생) 도망. 아버지 호노 영남永男,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남편은  
 모름

비 끝춘蠢春(29세, 신사생) 도망. 아버지는 호노 말복蠢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남편  
 은 모름

노 분손粉孫(26세, 갑신생) 도망. 아버지 사노 문지間之, 어머니 호비 동춘同春, 처는 모름

노 봉례奉禮(29세, 신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 덕일德一, 어머니 양녀 봉덕奉德, 처는 모름

비 말량蠢良(37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정병正兵 말금蠢金,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남  
 편은 모름

비 동춘同春(60세, 경술생) 도망. 아버지 사노 곽노郭奴, 어머니 호비 정월正月, 남편은  
 사노 동립同立

노 덕일德日(53세, 정사생) 도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처는 모름

비 정춘丁春(45세, 을축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남편의 이름은 모름

등等

병오년 호구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행 군수 [서업]

두 글자를 개인함[周挾貳字改印]

康熙八年□月日 靈光郡

考 己酉成籍戶口帳內 畝長面橋項里 住戶 幼學辛慶隆 年二十四丙戌 本寧越 父 宣務郎翊震  
 祖通訓大夫行

司憲府掌令應望 曾祖 學生長吉 外祖成均生員 李暉 本咸豐 妻朴氏 年二十八壬午 籍咸陽 父  
 幼學 尙粹 祖

學生 佻 曾祖 成均進士宗挺 外祖 學生鄭文湖 本草溪 率 奴牙生 年三十六甲戌 仰役 父戶奴  
 道生 母戶婢

天香 前妻良女彩雲 後妻良女石乙女 婢天上 年三十三丁丑 父母上同 夫戶奴日守 奴石乙世  
 年三十一己卯 妻無

仰役 父母上同 婢處禮 年二十二戊子 仰役 父母上同 夫私奴不知 奴石乙千 年十八壬辰 仰役  
父母上同 奴甲生 年  
四十六甲子 父私奴守陪 母戶婢丁化 妻良女士介 奴準生 年四十四丙寅 仰役 父母上同 妻良  
女吉女 婢順化 年四十二戊  
辰 父母上同 夫私奴內隱金 婢順陽 年三十八壬申 父母上同 夫私奴於屯 奴生伊 年三十六甲  
戌 仰役 父母上同 妻良女其眞  
介 奴六生 年三十二戊寅 仰役 父母上同 妻私婢自香 奴牙里金 年二十四丙戌 妻無 仰役 父  
私奴魯世 母戶婢延化 奴  
日守 年四十四丙寅 仰役 父戶奴奉生 母良女 妻同婢千上 奴日生 年四十一己巳 仰役 父母上  
同妻私婢一今 婢內隱伊  
年七十庚子 丙子逃 父水軍崔漢斤 母戶婢訥隱西非 夫不知 婢內隱月 年六十七癸卯 丙午逃  
父母上同 夫私奴石乙金 婢點伊 年  
六十四丙午 丙午逃 父母上同 夫校奴不知 婢春陽 年三十八壬申 父私奴內隱同 母戶婢尹介  
夫私奴還伊 婢秋上 年三十庚辰 辛丑  
逃 父母上同 夫不知 婢甲生 年四十六甲子 丙午逃 父私奴益老 母戶婢守代 夫京炮人保忠起  
奴準伊 年二十七癸未 辛丑逃 父母上同  
妻無 婢海棠 年二十七癸未 辛丑逃 父戶奴鶴只 母良女分化 奴賣石 年十六甲午 辛丑逃 父母  
上同 婢春伊 年三十庚辰 父寺奴介金 母戶  
婢壬香 夫私奴仁男 婢賣今 年十八壬辰 辛丑逃 父戶奴鶴只 母良女分化 奴七金 年二十五乙  
酉 仰役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妻私婢  
愛今 奴七仁 年二十四丙戌 仰役 父母上同 妻無 婢德春 年二十一己丑 仰役 父母上同 夫戶  
奴戒生 婢德還 年十九辛卯 仰役 父母上同 婢德化  
年十三丁酉 父母上同 婢 掌德 年十庚子 父母上同 婢 者隱德 年七癸卯 婢 者隱今 年五乙巳  
父母上同 婢 月賢 年二十一己丑 仰役 父寺奴愁隱文乙里  
母戶婢月生 奴 月金 年十七癸巳 仰役 父母上同 婢月香 年十三 父母上同 婢月陽 年十一己  
亥 父母上同 奴 鈔金 年九辛丑 父母上同 婢杜香 年三十九辛  
未 甲辰逃 父寺奴九仁卜 母戶婢守仁 夫不知 奴賣男 年二十五乙酉 仰役 父私奴於自隱金 母  
戶婢哲上 妻良女老陽 奴賣生 年十九辛卯 仰役 父母上同 妻良  
女愛棠 婢尚伊 年十六甲午 父母上同 婢哲陽 [年]二十四丙戌 父私奴哲 生母戶婢尚秋 夫私  
奴復明 婢哲玉 年十九辛卯 仰役 奴哲仁 年十二戊戌 婢哲  
今 年七癸卯 父母上同 婢白隱德 年二十庚戌 父私奴五男 母戶婢尚還 奴白隱金 年十五乙未  
婢海陽 年十二戊戌 婢老郎伊 年九辛丑 奴金金 年五乙巳  
婢禮上 年二戊申 父母上同 奴次明 年十二戊戌 父私奴良云 母戶婢尚今 奴次善 年十庚子 婢

同介 年五乙巳 父母上同 婢日香 年二十二戊子 父官奴介叱之  
 母戶婢隱香 夫私奴不知 婢月香 年十九辛卯 仰役 奴萬伊 年十五乙未 奴萬生 年十庚子 父母  
 上同 奴士仁 年十五乙未 父戶奴甲生 母良女士介 婢士還 年十九  
 辛卯 仰役 婢聞還 年十四丙申 奴賣日 十一乙亥 奴約金 年九辛丑 奴順白 年三丁未 父私奴  
 內隱金 母戶婢順化 婢賣陽 年十三丁酉 奴丑伊 年九辛丑  
 丑金 年三丁未 父戶奴準 生母良女吉禮 婢似玉 年十六甲午 婢勝玉 年十二戊戌 婢延香 年五  
 乙巳 父私奴於屯 母戶婢順陽 婢禮丹 年十二戊戌 父戶奴牙  
 生 母良女彩云 奴石乙屎 年五乙巳 父上同 母良女夏女 奴石乙金 年三丁未 父母上同 婢賣德  
 年四丙午 父戶奴實男 母良女老陽 奴 日立 年九辛丑 父戶奴日守  
 母戶婢千尙 奴仁哲 年十庚子 奴小男 年六甲辰 父私奴仁男 母戶婢春伊 奴善伊 年十九辛卯  
 丙午逃 婢丹伊 年十三丁酉 丙午逃 父京炮忠己 母戶婢甲生  
 奴春今 年十七癸巳 父私奴還伊 母戶婢春良 奴復善 年二戊申 父私奴卜期 母戶婢哲良 婢玉  
 今年十六甲午 仰役 父屯營軍吳火仁 母戶婢生還 婢內隱化  
 年三十七癸酉 逃父戶奴春生 母良女日禮 夫不知 奴丁男 年六十九辛丑 逃 父私奴丁立 母戶  
 婢者斤介 妻不知 奴怪生 年二十六甲申 逃 父私奴怪山 母戶婢春安 妻不知 婢孟化 年  
 七十庚子 逃 父戶奴盃山 母戶婢卜德 夫名不知 婢延化 年五十八壬子 逃 父戶奴極卜 母良女  
 延春 夫不知 奴千一 年四十四戊寅 父匠人青卜 母戶婢禮春 妻良女不知 婢永玉 年三十  
 六甲戌 逃 父戶奴永男 母戶婢卜禮 夫不知 奴歪春 年二十九辛巳 逃 夫戶奴歪卜 母戶婢九春  
 夫不知 奴粉孫 年二十六甲申 逃 父私奴問之 母戶婢同春 妻不知 奴奉禮 年二十九  
 辛巳 逃 父戶奴德一 母良女奉德 妻不知 婢歪良 年三十七癸酉 逃 父正兵歪金 母戶婢愛化  
 夫不知 婢同春 年六十庚戌 逃 父私奴郭奴 母戶婢正月 夫私奴同立 奴德日 年  
 五十三丁巳 逃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妻不知 婢丁春 年四十五乙丑 逃 父母上同 夫名不知  
 等 丙午戶口相准給者

行郡守[署押]

[周挾貳字改印]

## 5-4-2) 1681년 신경룡 처 박씨 준호구准戶口

【해설】 1681년(숙종7)에 영광군에서 마촌면 화촌리에 사는 신경룡 가의 호구 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해 준 준호구. 호주 신경룡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박씨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  
 1681년 현재, 박씨의 나이는 40세이며, 슬하에는 두 아들 즉, 14세 장남 구생과 11세의 구세가 있  
 으며, 박씨의 서얼 오빠 박제가 호구에 보인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모두 28명으로, 사내종 15명, 계집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도망간 15명의 노비명단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동거하고 있는 노비수는 12년전 호구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강희20년(1681, 신유)9월 ○일 영광군靈光郡

신유년에 작성한 호구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마촌면馬村面 제2 화촌리禾村里 제4통 제3에 사는

호고 학생故學生 신경릉辛慶隆의 처妻 박씨朴氏(40, 임오생) 본적 함양咸陽

아버지 학생 상수尙粹

조부 학생 구려

증조부 성균진사 종정宗挺

외조부 학생 정문호鄭文湖 본적 초계本草溪

솔거하는 맏아들 구생久生(14세, 무신생)

차자次子 구세久世(11세, 신해생)

솔거하는 열남擘甥 박계梯(25세, 정유생) 평창昌平에서 살다가 이사해옴

솔거하는 노비 명단

노奴 생이生伊(48세, 갑술생) 양역仰役, 아버지 사노私奴 수배守倍, 어머니 호비호화□화□化 처 양녀良女 모진개毛眞介

노奴 일수一守(56세, 병인생) 아버지 호노戶奴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비婢 내은이內隱伊(81세, 경오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진주晉州에 살고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戶婢 누질서비訥叱西非

비婢 내은월內隱月(79세, 계묘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진주에 살고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戶婢 누질서비訥叱西非

비婢 점이占伊(77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김해에 살고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戶婢 늑은서비訥隱西非

비婢 춘양春陽(50세, 임신생) 아버지 사노私奴 내은동內隱同, 어머니 호비戶婢 윤개尹介

노奴 준이准伊(29세, 계사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私奴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戶婢 수대水代

노奴 두석斗石(28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학지鶴只, 어머니 양녀良女분화粉化

비婢 두금斗金(30세, 임진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학지鶴只, 어머니 양녀良女분화粉化

노奴 칠금七金(37세, 을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戶婢 임향壬香

노奴 칠인七仁 (36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戶婢 임향壬香  
 비婢 일향日香 (34세, 무자생) 도망. 아버지 관노官奴 개질지介叱之, 어머니戶婢 은향恩香  
 노奴 돌시堧屎 (17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戶奴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良女 차운次雲  
 노奴 돌금堧金 (15세, 정미생) 아버지 호노戶奴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차운次雲  
 비婢 내은화內隱化 (49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良女 일례日禮  
 노奴 정남丁男 (81세, 신축생) 도망가서 경주에 있음逃在慶州. 아버지 사노私奴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戶婢 작은개者斤介  
 노奴 괴생怪生 (38세, 갑신생) 도망가 창원에 있음. 아버지 사노私奴 괴산怪山, 어머니 호  
 비戶婢 추난秋難  
 비婢 맹화孟化 (82세, 경자생) 도망하여 경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戶奴 울산蔚山, 어머니  
 호비戶婢 복덕卜德  
 비婢 연화延化 (69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계복戒卜, 어머니 양녀良女 연춘延春  
 노奴 천일千一 (56세, 병인생) 도망. 아버지 장인匠人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戶婢 예춘禮春  
 비婢 영옥永玉 (48세, 갑술)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영남永男, 어머니 호비戶婢 복례卜禮  
 노奴 말춘耑春 (31세, 신묘)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말복耑卜, 어머니 호비戶婢 구춘九春  
 노奴 분손分孫 (38세, 갑신) 도망. 아버지 사노私奴 동지同知, 어머니 호비戶婢 동춘同春  
 노奴 두은일豆隱日 (25세, 정유) 양역仰役. 아버지 사노私奴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戶  
 婢 순화順化  
 노奴 돌천堧千 (29세, 계사) 양역仰役, 아버지 사노私奴 도생道生, 어머니 호비戶婢 천향天香  
 비婢 개환開還 (27세, 을미) 아버지 사노私奴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戶婢 순화順化  
 비婢 승옥勝玉 (24세, 무술) 양역. 아버지 사노私奴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戶婢 순양順陽  
 비婢 자은덕者隱德 (22세, 경자) 양역. 아버지 사노寺奴 노개금奴介金, 어머니 호비戶婢  
 임향壬香

等等

무오년 호구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행 군수 [서업]

빠뜨린 글자는 6개임을 날인함周挾陸字改印<sup>22</sup>

康熙二十年九月日 靈光郡

22 주협무개인 : 호적대장 등 문서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말. 주는 동그라미를 친다는 뜻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은 빠뜨린 글자를 본란本欄 옆으로 써 넣는 것을 말함. 호적을 만들 때 묵인墨印이나 붉은 글자로 난외欄外에 찍거나 씌. 2자를 삭제하고 1자를 끼어넣었을 때는 '周二字挾一字改印(삭제한 것 2자 끼어넣은 것 1자로 바꿈. 끝.)'으로 쓰게 됨.

考 辛酉成籍戶口帳內 馬村面 第二 禾村里住 第四統第三戶 住 故學生 辛慶  
隆 妻朴氏 年四十壬午 籍咸陽 父 學生 尙粹 祖 學生 侏 曾祖 成均進士 宗挺  
外祖 學生 鄭文湖 本草溪 率子 久生 年十四戊申 次子 久世 年十一辛亥 率孳甥  
朴悌 年二十五丁酉 昌平 移去 率奴生伊 年四十八甲戌 仰役 父私奴守倍 母戶婢貞  
化 妻良女毛眞介 奴一守 年五十六丙寅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婢內隱伊 年八十一庚午  
丙午逃 在晉州 父水軍崔漢根 母戶婢訥叱西非 婢內隱月 年七十九癸卯 丙午逃 在晉  
州 父水軍崔漢根 母戶婢訥叱西非 婢占伊 年七十七乙巳 丙午逃 在金海 父水軍崔漢  
根 母戶婢訥隱西非 婢春陽 年五十壬申 父私奴內隱同 母戶婢尹介 奴准伊 年二十九癸巳  
辛丑逃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奴斗石 年二十八甲午 辛丑逃 父戶奴鶴只 母良女粉  
化 婢斗 今年三十壬辰 辛丑逃 父戶奴鶴只 母良女粉化 奴七金 年三十七乙酉 父寺奴  
介金 母戶婢壬香 奴七仁 年三十六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日香 年三十四戊  
子 逃 父官奴介叱之 母戶婢恩香 奴夏屎 年十七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次雲 奴夏金  
年十五丁未 父戶奴牙生 母良女次云 婢內隱化 年四十九癸酉 逃父戶奴奉生 母良女日  
禮 奴丁男 年八十一辛丑 逃在慶州 父私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奴怪生 年三十八甲申  
逃 在昌原 父私奴怪山 母戶婢秋難 婢孟化 年八十二庚子 逃在慶州 父戶奴蔚山 母戶  
婢卜德 婢延化 年六十九壬子 逃 父戶奴戒卜 母良女延春 奴千一 年五十六丙寅 逃 父匠  
人靑卜 母戶婢禮春 婢永玉 年四十八甲戌 逃 父戶奴永男 母戶婢卜禮 奴歪春 年  
三十一辛卯 逃 父戶奴歪卜 母戶婢九春 奴分孫 年三十八甲申 逃 父私奴同知 母戶婢同  
春 奴豆隱日 年二十五丁酉 仰役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奴夏千 年二十九癸巳 仰役 父  
私奴道生 母戶婢天香 婢開還 年二十七乙未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婢勝玉 年二十  
四戊戌 仰役 父私奴於屯 母戶婢順陽 婢者隱德 年二十二庚子 仰役 父寺奴奴介  
金 母戶婢壬香 等 戊午戶口相準給者

行郡守[署押]

[周挾陸字改印]

### 5-4-3) 1681년 신경릉辛慶隆 처妻 호구단자戶口單子

【해설】 1681년(숙종7)에 작성된 영광군에서 마촌면 제1 화촌리에 사는 고故 신경릉의 처 박씨 집의 호구단자로 가족은 두 아들 구생과 구세 및 서얼동생 박제가 있으며, 소유한 노비는 총 6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 및 김해 등지에 살고 있다.

마촌馬村 제1 화촌리禾村里 호적단자戶籍單口

무오년(1678, 숙종4) 호구와 비교하여 발급함戶口相准

제4 제3호의

호고 학생 신경룡辛慶隆 처 박씨妻朴氏 (40세, 임오생) 본적 함양咸陽

아버지 학생 상수尙粹

조부 학생 구倅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종정宗挺

외조부 학생 정문호鄭文湖 본적 초계草溪

술거하는 아들 구생久生(14세, 무신생)

작은 아들 구세(11세, 신해생)

술거하는 서얼 박제朴梯(25, 정유생) 창평으로 이거함

술거하는 노비

노 생이生伊 (48, 갑술생) 양역仰役. 아버지 사노私奴 수배守倍, 어머니 호비 정화貞化, 처 양녀 모진개毛眞介

노 일수一守 (56세, 병인생) 아버지 호노戶奴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노 일생一生 (53세, 기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戶奴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비 내은이內隱伊 (81세, 경오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늘질서비訥叱西非

비 내은월內隱月 (79세, 계묘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늘질서비訥叱西非

비 점이占伊 (77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군水軍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늘질서비訥叱西非<sup>23</sup>

馬村 第一 禾村里 戶籍單口 戊午(1678, 숙4) 戶口相准

第四口 第三 戶 故學生 辛慶隆 妻朴氏 年四十 壬午 籍咸陽

父 學生 尙粹

祖 學生 倅

曾祖 成均進士 宗挺

外祖 學生 鄭文湖 本草溪

率子 久生 □(年)十四 戊申

次子 久□(世) □(年)十一 辛亥

23 이하 문서의 훼손이 심해 판독 불가

率擘 朴悌 年二十五丁酉 昌平移去  
率奴生伊 年四十八甲戌 仰役  
父私奴 守倍  
母戶婢 貞化  
妻良女 毛眞介  
奴一守 年五十六丙寅  
父戶奴 奉生  
母良女 一禮  
奴一生 年五十三己巳 逃  
父戶奴 奉生  
母良女 一禮  
婢內隱伊 年八十一庚午 丙午逃 在晉州  
父水軍崔漢根  
母戶婢 訥叱西非  
婢內隱月 年七十九癸卯 丙午逃 在晉州  
父水軍崔漢斤  
母戶婢訥叱西非  
婢占伊 年七十七乙巳 丙午逃 在金海  
父水軍崔漢斤  
母戶婢訥叱西非

#### 5-4-4) 1684년 신경릉辛慶隆 처妻 박씨朴氏 준호구准戶口

【해설】 1684년(숙종7)에 영광군에서 마촌면 화촌리에 사는 신경릉 가의 호구 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해 준 준호구. 고 신경릉의 처 박씨는 43세였고, 슬하에는 장자 구생(17세), 차자 구세(14세)가 있다. 기존 소유 노비는 28명이었으나, 외에 새로 노비 7명이 증가하였다.

강희 23년(1684, 숙종7) 12월 일 영광군  
갑자년(숙종10, 1684)에 장적한 호구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마촌면 제2 화촌리 제6통 제1  
호에 사는 고 학생 신경릉의 처 박씨(43세, 임오생), 본적 함양  
아버지 학생學生 상수尙粹

조부 학생學生 구依

증조부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 장사랑將仕郎 종정宗挺

외조부 학생學生 정문호鄭文湖 본적 초계草溪

솔거하는 아들 구생久生(17세, 무신생)

둘째 아들 구세久世(14세, 신해생)

솔거하는 노비

노 생이生伊(51세, 갑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수배守倍, 어머니 호비 정화貞化 처 양녀 모진개毛真介

노 일수일수一守(59세, 병인생) 아버지 호노戶奴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良女 일례一禮

노 일생一生(56세, 기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비 노은이內隱伊(84세, 신축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내은서비誦隱西非

비 내은월內隱月(82세, 계묘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내은서비誦隱西非

비 점이占伊(80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김해에 있음.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내은서비誦隱西非

비 춘양春陽(53세, 임신생) 아버지 사노 내은동內隱同 어머니 호비 윤개尹介

비 준이準伊(32세, 계사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노 두석斗石(31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粉化

노 칠금七金(40세, 을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노 칠인七仁(39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비 일향日香(34세, 무자생) 도망. 아버지 관노官奴 개질지介叱之 어머니 호비 은향恩香

노 돌시疋屎(20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차운次雲

노 돌금疋金(18세, 정미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분운粉云

비 내은화內隱化(52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日禮

노 정남丁男(84세, 신축생) 도망하여 경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노 괴생怪生(41세, 갑신생) 도망하여 창원에 있음. 아버지 사노私奴 괴산怪山 어머니 호비 戶婢 추난秋難

비 맹산孟化(85세, 경자생) 도망하여 경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 울산蔚山 어머니 호비 복덕卜德

비 연화延化(72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노 천일千一 (59세, 병인생) 도망. 아버지 장인匠人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비 영옥永玉 (51세, 갑술생) 도망. 아버지 호노 영남永男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노 끝춘耑春 (34세, 신묘생) 도망. 아버지 호노 끝복耑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노 분손分孫 (41세, 갑신생) 도망. 아버지 사노私奴 동지同知 어머니 호비 동춘同春  
 노 두은일豆隱日 (28세, 정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私奴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戶  
 婢 순화順化  
 노 돌천堧千 (32세, 계사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도생道生 어머니 호비 천향天香  
 비 개환開還 (30세, 을미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비 승옥勝玉 (27세, 무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순양順陽  
 비 자은덕者隱德 (25세, 경자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  
 壬香

새로 거느리게 된 노비 명단新率<sup>24</sup>

비 이월二月 (29세, 병신생) 아버지 사노私奴 차돌시次戛屎 어머니 호비 논화論化  
 노 순발順發 (47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학지鶴只 어머니 양녀 분화粉化  
 노 아리금阿里金 (39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노세魯世 어머니 호비 연화延化  
 노 월금月金 (32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추은문을리愁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비 월양月陽 (26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추은문을리愁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노 조금鬻金 (24세, 신축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후은문을리愁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신유년(1681, 숙종7) 호구 단자와 대조하여 발급함辛酉戶口相準者

행 군수[서업]

[5글자를 바꾸어 씀] 끝

康熙二十三年十二月日 靈光郡 准 黃□文昌趙□□

考 甲子成籍戶口帳內 馬村面第二 禾村里第六統第一 戶住 故學生 辛慶隆 妻朴氏 年  
 四十三 壬午 籍咸陽 父 學生 尙粹 祖 學生 球 曾祖 掌苑署別提將仕郎 宗挺 外祖 學生  
 鄭文湖 本草溪 率子 久生 年十七 戊申 次子 久世 年十四 辛亥 率 奴生伊 年五十一 甲戌 仰役  
 父私奴 守倍 母戶婢 貞化 妻良女 毛眞 介 奴 一守 年五十九 丙寅 父戶奴 奉生 母良女 一禮 奴  
 一生 年五十六 己巳 逃 父戶奴 奉生 母良女 一禮 婢內隱伊 八十四 辛丑 丙午 逃 在晉州 父水軍 崔  
 漢根 母戶婢 訥隱西非 婢內隱月 年八十二 癸卯 丙午 逃 在晉州 父水軍 崔漢根 母戶婢 訥隱西非

婢占伊年八十乙巳 丙午逃在金海 父水軍崔漢根 母戶婢訥隱西非 婢春陽 年五十三壬申  
 父私奴內隱同 母戶婢尹介 奴準伊 年三十二癸巳 辛丑逃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奴斗石  
 年三十一甲午 辛丑逃 父戶奴鶴伊 母良女粉化 奴七金 年四十乙酉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奴七仁 年三十九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日香 年三十四戊子 逃 父官奴介叱之 母  
 戶婢恩香 奴芑屎 年二十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次雲 奴芑金 年十八丁未 父戶奴牙生  
 母良女粉云 婢內隱化 年五十二癸酉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日禮 奴丁男 年八十四辛丑  
 逃 在慶州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奴怪生 年四十一甲申 逃在昌原 父私奴怪山 母戶婢  
 秋難 婢孟化 年八十五庚子 逃 在慶州 父戶奴蔚山 母戶婢卜德 婢延化 年七十二壬子  
 逃 父戶奴戒卜 母良女延春 奴千一年五十九丙寅 逃 父匠人青卜 母戶婢禮春 婢永玉 年  
 五十一甲戌 逃 父戶奴永男 母戶婢卜禮 奴黍春 年三十四辛卯 逃 父戶奴黍卜 母戶婢  
 九春 奴分孫 年四十一甲申 逃 父私奴同知 母戶婢同春 奴豆隱日 年二十八丁酉 仰役 父私奴  
 內隱金 母戶婢順化 奴芑千 年三十二癸巳 仰役 父私奴道生 母戶婢天香 婢開還 年三十  
 乙未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婢勝玉 年二十七戊戌 仰役 父私奴於屯 母戶婢順陽 婢者隱  
 德 年二十五庚子 仰役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新率 婢二月 年二十九丙申 父私奴次  
 芑屎 母戶婢論化 奴順發 年四十七戊寅 父私奴鶴只 母良女粉化 奴阿里金 年三十九丙  
 戌 父私奴魯世 母戶婢延化 奴月金 年三十二癸巳 父私奴愁隱文乙里 母戶婢月生 婢月  
 陽 年二十六己亥 父私奴愁隱文乙里 母戶婢月生 奴鏹金 年二十四辛丑 仰役 父私奴愁隱  
 文乙里 母戶婢月生 辛西戶口相準者

行郡守[署押]

[周挾五字改印]

#### 5-4-5) 1687년(숙종13, 정묘) 유학幼學 신구생辛久生 준호구准戶口

【해설】 1687년(숙종13) 영광군에서 영광 마촌면 제2 화촌리에 사는 신구생의 호구 사항을 호적대장  
 에서 베껴 발급해준 준호구. 호주 신구생은 신정화로 개명하였으며 당시 나이는 20세로 결혼을 하여  
 아내는 24세 광주 김씨이다. 함께 사는 가족은 동생 구세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총 64명으로  
 사내종이 30명, 계집종이 34명이다.

강희 26년(1687, 숙종13) 12월 일 영광군

정묘년(1687, 숙종13)에 장적한 호구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마촌면 제2 화촌리 제 통 제1

호戶 박씨 대신 자子 유학幼學 신구생辛久生(20세, 무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경릉慶隆  
 조부 선무랑宣務郎 익진翊震  
 증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 응망應望  
 외조부 학생學生 박상수朴尙粹  
 처 김씨(24세) 본적 광주光州  
 아버지 종사랑從仕郎 세광世光  
 조부 통덕랑通德郎 여상汝鎬  
 증조부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행선교  
 랑行宣敎郎 목릉참봉穆陵參奉 우급友級  
 외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행 신령현감新寧縣監 김단金湍 본적 부안扶安  
 동생 구세久世 (17세, 신해생)

노 생이生二(54세, 갑술생) 아버지 사노 수배守倍 어머니 호비 막화莫化 처 양녀 모진개  
 毛真介

노 일수一守 갑자년(1684)에 사망 甲子故

노 일생一生 (59세, 기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비 내은이內隱伊 (87세, 신축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에 있음. 아버지 수군 최한근崔漢  
 根 어머니 호비 내은서비訥隱西非

비 내은월內隱月 (85세, 계묘생) 도망해 위와 같음. 부모는 위와 같음 逃居上同 父母上同

비 점이占伊 (83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김해에 있음.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춘양春陽 (56세, 임신생) 아버지 사노 내은동內隱同 어머니 호비 윤개尹介

노 준이俊伊 (35세, 계사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노 두석斗石 (34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하여 공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 학지鶴只 어  
 머니 양녀 분화粉化

노 돌박疇朴 (27세, 신축생)

비 두금豆金 (32세, 병신생)

노 해상海常 (30세, 무술생)

노 두생斗生 (29세, 기해생) 도망하여 위와 같음.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칠금七金 (병인년(1686년)에 사망 丙寅故

노 칠인七仁 (42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비 일향一香 (40세, 무자생) 도망. 아버지 관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恩香

비 돌시疇屎 (2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차운次云

노 두금豆金 을축년(1685년)에 사망 乙丑故

- 노 내화內化 (55세, 계유생) 도망逃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월녀月女
- 노 정남丁男 (87세, 신축생) 도망해 경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 정운丁雲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 노 괴생怪生 (44세, 갑신생) 도망해 창원에 있음. 아버지 사노 괴산怪山 어머니 호비 추난秋難
- 비 맹화孟化 (88세, 경자생) 도망해 경주에 있음. 아버지 호노 울산蔚山 어머니 호비 덕복母德卜
- 비 연화延化 (75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용복戒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 노 천일千一 (62세, 병인생) 도망. 아버지 장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 비 말춘末春 (37세, 신묘생) 도망. 아버지 같은 노비 말복末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 비 영옥永玉 (54세, 갑술생) 도망. 아버지 호노 영남永男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 노 분손分孫 (44세, 갑신생) 도망. 아버지 사노 동지同知 어머니 호비 동춘同春
- 노 두은일豆隱日 (31세, 정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노 돌천扈千 (35세, 계사생) 양역노비仰役 아버지 사노 도생道生 어머니 호비 천향天香
- 비 개환開還 (33세, 을미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비 색환塞還 (36세, 임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 비 승옥勝玉 (30세, 무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어둔금於屯金 어머니 호비 순양順陽
- 비 자은덕者隱德 (28세, 경자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 비 이월二月 (32세, 병신생) 도망逃 아버지 사노 私奴 차돌시次扈屎 어머니 같은 노비 내은화內隱化
- 노 순발順發 병인년(1686)에 사망丙寅故
- 노 아리금阿里金 (42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노세魯世 어머니 호비 연화延化
- 노 월금月金 (35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추문리秋文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 비 석양月陽 (29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약금若金 (28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노 순일順日 (22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공남公南 (23세, 을사생) 아버지 사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 비 논지論之(15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개이介伊 (19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 비 실양失陽 (15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봉이奉伊 (13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인양仁陽(18세, 경술생) 아버지 양인 김사진 어머니 호비 처녀處女  
 비 자금者今(20세, 무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비 장덕長德(31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예단禮丹(29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차운次云  
 비 선양先陽(20세, 무신생) 아버지 호노 준생俊生 어머니 양녀 선금先今  
 비 옥금玉今(30세, 무술생) 아버지 군영 군병郡營軍兵 대인대仁 어머니 호비 생환生還  
 노 준일俊日(30세, 무술생) 장흥에 거주居在長興 아버지 양인 김해金海 어머니 호비 춘  
 량春良  
 노 춘생春生(32세, 병신생) 장흥에 거주居上同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옥이玉伊(22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월향月香(42세, 병술생) 아버지 관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恩香  
 비 사옥似玉(30세) 오계사烏鷄師 아버지 사노 어약금於若金 어머니 같은 비同婢 순양順陽  
 노 석목石木(17세, 신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연양延陽(21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운양云陽(13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정해丁每(11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동이同伊, 어머니 호비 사옥似玉  
 비 사계四桂(12세, 병진생) 아버지 사노 가이금加伊金 어머니 호비 새환塞還  
 노 무고리無故里(7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백옥白玉(13세, 을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半松 어머니 호비 월양月陽  
 비 천상天上(4?세, 기묘생) 아버지 사노 돌생石乙生 어머니 호비 천양天陽  
 등등 갑자년(1684, 숙종10) 호구 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행군수行郡守 [서업]

[3자를 고쳐씀. 끝]

康熙二十六年十二月日 靈光郡  
 考 成籍戶口帳內 馬村面第二 禾村里 住 第六統 第一 戶住 朴氏 代子幼學 辛久生 年二十戊  
 申 本寧越 父學  
 生 慶隆 祖 宣務郎 翊震 曾祖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應望 外祖 學生 朴尙粹 妻 金氏 年  
 二十四 籍光州  
 父 從仕郎 世光 祖 通德郎 汝錦 曾祖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宣教郎穆陵參  
 奉 友佖  
 外祖 通訓大夫行新寧縣監 金湍 本扶安 弟 久世 年十七辛亥 奴生伊 年五十四甲戌 父私奴守  
 倍 母戶婢莫化 妻良女

毛眞介 奴一守 甲子故 奴 一生 年五十九己巳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婢內隱伊 年  
 八十七辛丑 丙午逃在晉州 父水軍崔  
 漢根 母戶婢訥隱西非 婢內隱月 年八十五癸卯 逃居上同 父母上同 婢占伊 年八十三乙巳 丙  
 午逃 在金海 父母上同 婢春陽 年  
 五十六壬申 父私奴內隱同 母戶婢尹介 奴俊伊 年三十五癸巳 辛丑逃 父私奴益老 母戶婢水  
 代奴 斗石 年三十四甲午 辛丑逃 在  
 公州 父戶奴鶴只 母良女粉化 奴芻朴 年二十七辛丑 婢豆今 年三十二丙申 奴海常 年三十戊  
 戌 奴斗生 年二十九己亥  
 逃居上同 父母上同 奴七金 丙寅故 奴七仁 年四十二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一香 年  
 四十戊子 逃 父官奴介之 母戶  
 婢恩香 奴芻屎 年二十三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次云 奴豆金 乙丑故 奴內化 年五十五癸酉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月  
 女 奴丁男 年八十七辛丑 逃在慶州 父戶奴丁雲 母戶婢者斤介 怪生 年四十四甲申 逃在昌原  
 父私奴怪山 母戶婢秋難 婢孟  
 化 年八十八庚子 逃在慶州 父戶奴蔚山 母戶婢德卜 婢延化 年七十五壬子 逃 父戶奴戒卜 母  
 良女延春 奴千一 年六十二丙寅 逃 父匠人  
 青卜 母戶婢禮春 婢末春 年三十七辛卯 逃 父同奴末卜 母戶婢九春 婢永玉 年五十四甲戌 逃  
 父戶奴永男 母戶婢卜禮 奴分孫 年  
 四十四甲申 逃 父私奴同知 母戶婢同春 奴豆隱日 年三十一丁酉 仰役 父私奴內隱金 母戶婢  
 順化 奴芻千 年三十五癸巳 仰役 父私奴道生 母戶婢  
 天香 婢開還 年三十三乙未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婢塞還 年三十六壬辰 父母上同 婢勝  
 玉 年三十戊戌 仰役 父私奴於屯金 母戶  
 婢順陽 婢者隱德 年二十八庚子 仰役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二月 年三十二丙申 逃 父私  
 奴次芻屎 母同婢內隱化 奴順發 丙寅故 奴  
 阿里金 年四十二丙戌 父私奴魯世 母戶婢延化 奴月金 年三十五癸巳 父私奴秋文里 母戶婢  
 月生 婢月陽 年二十九己亥 父母上同  
 奴若金 年二十八庚子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奴順日 年二十二丙午 父母上同 奴公南 年  
 二十三乙巳 父私奴仁男 母戶婢春伊 婢論之  
 年十五癸丑 父母上同 婢介伊 年十九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婢失陽 年十五癸丑 父母  
 上同 奴奉伊 年十三乙卯 父母上同  
 婢仁陽 年十八庚戌 父良人金士眞 母戶婢處女 婢 者今 年二十戊申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長德 年三十一丁酉 父母上同 婢  
 禮丹 年二十九己亥 父私奴牙生 母良女次云 婢先陽 年二十戊申 父戶奴俊生 母良女先今 婢

玉今年三十戊戌 父郡營軍兵大仁  
 母戶婢生還 奴俊日 年三十戊戌 居在長興 父良人金海 母戶婢春良 奴春生 年三十二丙申 居  
 上同 父母上同 婢玉伊 年二十  
 二丙午 父母上同 婢月香 年四十二丙戌 父官奴介之 母戶婢恩香 婢似玉 年三十 烏鷄師 父私  
 奴於若 金母同婢順陽 奴石木 年  
 十七辛亥 父母上同 婢延陽 年二十一丁未 父母上同 婢云陽 年十三乙卯 父母上同 奴丁每 年  
 十一丁巳 父□□□(私奴同)伊 母戶婢  
 似玉 婢四桂 年十二丙辰 父私奴加伊金 母戶婢塞還 奴無故里 年七辛酉 父母上同 婢白玉 年  
 十三乙卯 父私奴半松 母戶婢  
 月陽 婢天上 年四十□己卯 父私奴石乙生 母戶婢天陽 等 甲子戶口准給者  
 行郡守[署押]  
 [周挾參字改印]

### 5-4-6) 1690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호구단자戶口單子

【해설】 1690년(숙종16)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유학 신정화의 호구단자로, 가족은 4살 연상인 처 광산 김씨(27세)와 신정좌로 개명한 동생(20세) 뿐이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字  
 제○통 제 호戶 유학幼學 신구생辛久生 개명改名 정화鼎和 (23세, 무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경릉慶隆  
 조부 선무랑宣務郎 익진翊震  
 증조부 통훈대부 행 사헌부장령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응망應望  
 외조부 학생學生 박상수朴尙粹 본적 함양咸陽  
 처妻 김씨金氏 (27세) 본적 광산光山  
 아버지 장사랑從仕郎 세광世光  
 조부 통덕랑通德郎 여상汝鏞  
 증조부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행 선교랑 목릉참봉贈嘉善大夫兵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行宣教郎 穆陵參奉 우급友級  
 외조부 통훈대부 행 신령현감通訓大夫行新寧縣監 김단金湍 본적 부안扶安  
 슬거하는 동생弟 구세久世 개명 정좌鼎佐 (20세, 신해생)

道內面第三 立石里 戶籍單字  
 第 統 第 戶 幼學 辛久生 改名鼎和 年二十三 戊申 本寧越  
 父 學生 慶隆  
 祖 宣務郎 翊震  
 曾祖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應望  
 外祖 學生 朴尙粹 本咸陽  
 妻 金氏 年二十七 籍光山  
 父 從仕郎 世光  
 祖 通德郎 汝錦  
 曾祖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宣教郎  
 穆陵參奉 友伋  
 外祖 通訓大夫行新寧縣監 金湍 本扶安  
 率 弟 久世 改名鼎佐 年二十 辛亥

#### 5-4-7) 1693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준호구准戶口

【해설】 1693년(숙종19) 영광군에서 영광군 도내면 제3 입석리 제6통 3호에 거주하는 신정화(26세)의 호구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배껴 발급해준 준호구. 가족은 처 광산 김씨와 5세 아들 용수 및 23세의 동생 신정좌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23명, 계집종 24명으로 총 47명이다. 많은 노비가 도망하여 타지에서 사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경상도 칠원, 진주, 김해, 원주 등 7지역의 협조문서를 통해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강희 32년(1693, 숙종19) 월 일 영광군靈光郡  
 계유년(1693, 숙종19)에 장적한 호구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거주住 제6통 제3호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26세, 무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경릉慶隆  
 조부 선무랑宣務郎 익진翊震  
 증조부 통훈대부 행 사헌부장령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응망應望  
 외조부 학생學生 박상수朴尙粹 본적 함양咸陽  
 처妻 김씨金氏 (30세, 갑진생) 본적 광산光山  
 아버지 장사랑從仕郎 세광世光  
 조부 통덕랑通德郎 여상汝錦

증조부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兼 행行 선교랑宣敎郎 목릉참봉穆陵參奉 우급友偈

외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신령현감新寧縣監 김단金湍 본적 부인扶安

솔거하는 동생弟 구세久世 개명 정좌鼎佐 (23세, 신해생)

솔거하는 아들子 용수首龍 (5세, 을사생)

솔거하는 노비

노 두은일豆隱日 (37세, 정유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和

노 선금善金 (34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순일) (28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새환塞還 (42세, 임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개환開還 (39세, 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석목石木 (21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순양順陽

비 승옥勝玉 (36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연양軟陽 (27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운양云陽 (17세, 정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선양先陽 (26세, 무신생) 아버지 호노 준생俊生 어머니 양녀 선금仙今

노 금월金月 (41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추문리愁文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비 월양月陽 (35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광주光州에 거주

노 돌시痘屎 (29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彩雲. 양역노비仰役

비 예단禮丹 (35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함평咸平에 거주

노 만이萬伊 (36세, 무술생) 아버지 관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恩香

비 일향日香 (46세, 무자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월향月香 (48세, 병술생) 도망해 영암靈岩에 있음.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畝 (35세, 기해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기사년에 도망已逃

노 춘생春生 (38세, 병신생) 아버지 양인 박환朴還 어머니 호비 춘양春陽. 장흥長興에 거주.

비 옥이玉伊 (34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사는 곳도 위와 같음

노 칠인七仁 (48세, 병술생) 도망. 아버지 사노寺奴 근금斤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비 자은덕者隱德 (34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장성長城에 거주

비 개이년介伊年 (25세, 기유생) 도망해 창원昌原에 있음. 아버지 호노 이생李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비 사양史陽 (21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해 진주晉州에 거주

- 노 봉이奉伊 (19세, 을묘생) 기사년에 도망하여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공남□南 (29세, 을사생) 도망. 아버지 사노寺奴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 노 수남水南 (25세, 기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내은이內隱之 (21세, 계축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백이百伊 (24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 노 이백伊百 (19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일생一生 (65세, 기사생) 아버지 사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逃
- 비 내은이內隱伊 (93세 신축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진주晉州에 거주. 아버지 수군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호비 와질서비臥叱西非
- 비 내은월內隱月 (91세, 계묘생) 도망해 위와 같은 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점이占伊 (89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하여 김해金海에 있음.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준이俊伊 (41세, 계사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 노 두석斗石 (40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하여 공주公州에 있음. 아버지 호비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粉化
- 노 석박石朴 (33세, 신축생) 도망해 위와 같은 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두금豆金 (38세, 병신생) 신축년에 도망해 위와 같은 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해상海常 (36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사는 곳도 위와 같음.
- 비 내은화內隱化 (61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 노 정남丁男 (94세, 경자생) 도망해 경주에 있음. 아버지 사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은금者隱今
- 노 괴생怪生 (50세, 갑신생) 도망해 창원昌原에 있음. 아버지 사노 괴산怪山, 어머니 호비 추난秋難
- 비 맹화孟化 (94세, 경자생) 도망해 경주에 있음. 아버지 사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은금者隱今
- 비 연화延化 (81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 노 천일千一 (68세, 병인생) 아버지 장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 노 끝춘醜春 (43세, 신묘생) 도망. 아버지 호노 말복謫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 노 명세名世 (20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돌세堧世, 어머니 호비 월이月耳. 양역노비
- 노 정매鄭梅 (16세, 무오생) 아버지 사노 동이同伊, 어머니 호비 사옥士玉. 양역노비
- 등 경오년 호구 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행 군수 [서업]

[5글자를 고쳐 씀. 끝]



康熙 三十二年 月 日 靈光郡

考 癸酉成籍戶口帳內 道內面第三 立石里住第六統第三戶 幼學 辛鼎和 年二十六戊申 本寧越  
父 學生慶隆 祖 宣務郎翊震 曾祖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應望 外祖 學生朴尙粹 本籍咸陽  
妻金氏 年三十甲辰 籍光山 父 從仕郎世光 祖 通德郎汝錫 曾祖 贈嘉善大夫兵曹參判行宣教郎  
穆陵參奉友伋 外祖 通訓大夫行新寧縣監金湍 本扶安 率 弟鼎佐 改名鼎受 年二十三辛亥  
率子首龍 年五己巳 率 奴豆隱日 年三十七丁酉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和 奴善金 年三十四  
庚子 父母上同 奴□□(順一)  
年二十八丙午 父母上同 婢塞還 年四十二壬辰 父母上同 婢開還 年三十九乙未 父母上同 奴  
石木 年二十一癸□…□(丑父私)  
奴於屯 母戶婢順陽 婢勝玉 年三十六戊戌 父母上同 □□(婢軟)陽 年二十七丁未 父母上同  
婢云陽 年十七丁巳 父母上同  
婢先陽 年二十六戊申 父戶奴俊生 母良女仙今 奴金月 年四十一癸巳 父私奴愁文里 母戶婢  
月生  
婢月陽 年三十五己亥 父母上同 居在光州 奴夏屎 年二十九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彩雲 仰役  
婢禮丹 年三十五己亥 父母上同 居在咸平 奴萬伊 年三十六戊戌 父官奴介之 母戶婢恩香  
婢日香 年四十六戊子 逃 父母上同 婢月春 年四十八丙戌 逃在靈岩 父母上同 婢愛忬 年  
三十五己亥 父  
名不知 母戶婢日香 己巳逃 奴春生 年三十八丙申 父良人朴還 母戶婢春陽 居在長興 婢玉伊  
年三十四庚  
子 父母上同 居地上同 奴七仁 年四十八丙戌 逃 父寺奴斤金 母戶婢壬香 婢者隱德 年  
三十四庚子 父母上同 居在  
長城 婢介伊年 二十五己酉 逃在昌原 父戶奴李生 母戶婢德春 婢史陽 年二十一癸丑 父母上  
同 逃居晉州  
奴奉伊 年十九乙卯 己巳逃在晉州 父母上同 □(奴)□南 年二十九乙巳 逃 父寺奴仁男 母戶  
婢春伊 奴水  
南 年二十五 己酉逃 父母上同 婢內隱之 年二十一癸丑 逃 父母上同 奴百伊 年二十四庚戌  
父私奴□□  
母戶婢德還 奴伊百 年十九乙卯 父母上同 奴一生 年六十五己巳 父私奴奉生 母良女一禮逃  
婢內隱伊 年  
九十三辛丑 丙午逃在晉州 父水軍崔漢根 母戶婢臥叱西非 婢內隱月 年九十一癸卯 逃居上同  
父母上同  
婢占伊 年八十九乙巳 丙午逃 在金海 父母上同 奴俊伊 年四十一癸巳 辛丑逃 父私奴益老 母  
戶婢水

代 奴斗石 年四十甲午 辛丑逃在公州 父戶奴鶴伊 母良女粉化 奴石朴 年三十三辛丑 逃居上  
同 父母

上同 婢豆今 年三十八丙申 辛丑逃 居上同 父母上同 婢海常 年三十六戊戌 父母上同 地居上  
同 婢 內隱

化 年六十一癸酉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奴丁男 年九十四庚子 逃在慶州 父私奴丁云 母  
戶婢者隱今

奴怪生 年五十甲申 逃在昌原 父私奴怪山 母戶婢秋難 婢孟化 年九十四庚子 逃在慶州 父私  
奴丁云 母戶婢者隱今 婢延化 年八十一壬子 逃 父戶奴戒卜 母良女延春 奴千一 年六十八丙  
寅 父匠人

靑卜 母戶婢禮春 奴靑春 年四十三辛卯 逃 父戶奴靑卜 母戶婢九春 奴名世 年二十甲寅 父戶奴  
夏世 母戶婢月耳 仰役 奴鄭梅 年十六戊午 父私奴同伊 母戶婢土玉 仰役 等 庚午戶口相準  
給者

行郡守[署押]

[周五字改印]

#### 5-4-8) 1702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해설】 1702년(숙종28) 영광군에서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에 거주하는 고 신정수의 처 서산 유씨의 호  
구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배껴 발급해준 준호구. 가족은 조카 수룡 1인만 있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38명, 계집종 36명으로 총 74명이다. 그런데 사망한 노비가 1명 있고, 14명의 노비가 도망가  
서 타지에서 살고 있다.

강희 41년(1702년, 숙종28) 월 일 영광군

임오년(1702)에 성적成籍한 호구 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제 동 제 호戶 고故 유학幼學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30세, 계  
축생) 본적 서산瑞山

아버지 학생學生 지렴之濂

조부 학생學生 필수必壽

증조부曾祖 학생學生 성익聖翊

외조부外祖 선교랑宣教郎 이시겸李時謙 본적 전의全義

조카姪 수룡首龍(14세, 기사생)

솔거하는 노비 명단

- 노 정해丁每 (25세, 무오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동이同伊 어머니 호비 사옥土玉
- 노 영만永萬 (14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土玉
- 노 영산永山 (12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영금永今 (10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상인尙仁 (25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돌천夏天 어머니 호비 선량善良
- 노 상명尙命 (17세, 병인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상만尙萬 (14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인봉仁奉 (21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士眞 어머니 호비 처례處禮
- 비 인량仁良 (33세, 경술생) 장성長城에 거함.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인단仁丹 (23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소남小男 (38세, 을사생) 무장茂長에 거함.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같은 비 춘이春伊
- 노 수남壽男 (34세, 기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논지論之 (30세, 계축생) 무장茂長에 거함.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두은일豆隱一 (45세, 정유생) 아버지 사노 논금論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노 약금若金 사망故
- 노 순일順一 (37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논금論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비 승옥勝玉 (44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어둔이於屯伊 어머니 호비 순량順良
- 비 연량連良 (36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운량云良 (26세, 정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월금月金 (50세, 계사생) 룡주綾州에 거주. 아버지 사노 추문을이愁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 비 월향月香 (44세, 기해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소을금所乙金 (43세, 경자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돌시豆屍 (38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미운米云
- 비 예단禮丹 (43세, 경자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尙介
- 노 만이萬伊 (44세, 무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관노 개질지介姪只 어머니 호비 덕향德香
- 비 일향日香 (44세, 무술생) 영암靈岩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월춘月春 (57세, 병술생) 영암靈岩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애선愛先 (44세, 기해생) 도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 비 이례二禮 (26세, 정사생) 영암靈岩에 거함.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이름

은 모름

노 노직老卽 (14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천귀千貴 (16세, 정묘생) 영암靈岩에 거주.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노 천인七仁 (57세, 병술생) 도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任香

비 자근덕者斤德 (43세, 경자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근금者斤今 (39세, 갑진생) 무장茂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개이介伊 (34세, 기유생) 창원昌原에 거주. 아버지 호노 계생季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비 실향失香 (30세, 계축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봉이鳳伊 (28세, 을묘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백이白伊 (33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실현失賢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노 이백二百 (28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오백五百 (19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 (74세, 기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비 논월論月 (97세, 계묘생) 진주晉州에 거주. 아버지 수군 최한근崔還根 어머니 호비 와서비臥西非

비 논이論伊 (99세, 신축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점이占伊 (98세, 을축생) 김해金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준이準伊 (50세, 계사생)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奴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노 두석豆石 (49세, 갑오생) 공주公州에 거주.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노 돌박堠朴 (42세, 신축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두금豆今 (47세, 병신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해당海棠 (45세, 무술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논화論化 (70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노 정남貞男 (100세, 경자생) 경주慶州에 거주. 아버지 호노 정운丁雲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비 연화延化 (93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계박季朴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노 천일千日 (77세, 병인생) 도망. 아버지 장인 청박淸朴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비 말춘末春 (51세, 신묘생) 도망. 아버지 호노 말박末朴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노 명세明世 (29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들세堠世 어머니 호비 월口月口

비 백옥白玉 (22세, 정사생) 도망. 아버지 사노 무송無松 어머니 호비 월량月良

비 조운鋤云 (23세, 경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조은금鋤隱今 (21세, 임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이금二金 (21세, 임술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사노 한백漢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노 유봉流奉 (14세, 기사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유금流金 (12세, 신미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억봉憶奉 (25세, 무오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金  
 비 감지甘只 (23세, 경신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감금甘金 (19세, 갑자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계士戒 (28세, 을묘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가저금加底金 어머니 호비 새환塞還  
 노 선흥善興 (21세, 임술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랑士良 (16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만遂萬 (21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遠金 어머니 같은 비 정덕正德  
 비 도량道良 (19세, 갑자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만새萬世 (14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취례翠禮 (12세, 신미생) 아버지 노 차을번次乙卞 어머니 호비 연향延香  
 비 독덕禿德 (21세, 임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일수一守 어머니 호비 천상千上  
 비 흥금欣金 (年□□, 을축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반송盤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노 도석道石 (25세, 무오생) 양역노비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금산금山 (22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등등 기묘년 호구를 대조하여 발급함己卯戶口相準給者

행 군수 [서업]

[주협무개인]

康熙四十一年 月 日 靈光郡

考 壬午成籍戶口帳內 道內面 立石里 住第統第戶 故 幼學 辛鼎受妻 柳氏 年三十癸丑 籍瑞山  
 父學生 之濂 祖學生 必壽 曾祖學生 聖翊 外祖 宣教郎 李時謙 本全義 姪 首龍 年十四己巳 率奴  
 丁 每 年二十五戊午 仰役 父私奴同伊 母戶婢士玉 奴永萬 年十四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士玉  
 奴永山

年十二辛未 父母上同 婢永今 年十癸酉 父母上同 奴尙仁 年二十五戊午 父戶奴夏天 母戶婢善  
 良奴

尙命 年十七丙寅 仰役 父母上同 奴尙萬 年十四己巳 父母上同 奴仁奉 年二十一壬戌 父私奴士  
 眞 母戶

婢處禮 婢仁良 年三十三庚戌 居長城 父母上同 婢仁丹 年二十三庚申 父母上同 奴小男 年  
 三十八

乙巳 居茂長 父戶奴仁男 母同婢春伊 奴壽男 年三十四己酉 逃 父母上同 婢論之 年三十癸丑 居  
 茂長 父母上同 奴豆隱 一 年四十六丁酉 父私奴論金 母戶婢順化 奴若金故 奴順一 年三十七丙

## 午父

私奴論金 母戶婢順化 婢勝玉 年四十五戊戌 父私奴於屯伊 母戶婢順良 婢連良 年三十六  
 丁未 父母上同 婢云良 年二十六丁巳 父母上同 奴月金 年五十癸巳 居綾州 父私奴愁文乙伊  
 戶婢月生 婢月香 年四十四己亥 逃 父母上同 奴所乙金 年四十三庚子 逃 父母上同 奴芻屎 年三  
 十八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米云 婢禮丹 年四十三庚子 居咸平 父戶奴牙生 母良女禮尙介  
 奴萬伊 年四十四戊戌 仰役 父官奴介姪只 母戶婢德香 婢日香 年四十四戊戌 居靈岩 父母上  
 同 婢月春 年五十七丙戌 居靈岩 父母上同 婢愛先 年四十四己亥 逃 父名不知 母戶婢日香  
 婢二禮 年二十六丁巳 居靈岩 父戶奴春生 母良女名不知 奴老卽 年十四己巳 父母上同 婢千  
 貴 年十六丁卯 居靈岩 父名不知 母戶婢玉伊 奴七仁 年五十七丙戌 逃 父寺奴介金 母戶婢  
 任香 婢者斤德 年四十三庚子 逃 父母上同 婢者斤今 年三十九甲辰 居茂長 父母  
 上同 婢介伊 年三十四己酉 居昌原 父戶奴季生 母戶婢德春 婢失香 年三十癸丑  
 居晉州 父母上同 奴鳳伊 年二十八乙卯 居晉州 父母上同 奴白伊 年三十三庚戌 父  
 私奴失賢 母戶婢德還 奴二百 年二十八乙卯 父母上同 奴五百 年十九甲子 父母上同 奴  
 一生 年七十四己巳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婢論月 年九十七癸卯 居晉州 父水  
 軍崔還根 母戶婢臥西非 婢論伊 年九十九辛丑 居晉州 父母上同 婢占伊 年九  
 十八乙丑 居金海 父母上同 奴準伊 年五十癸巳 逃 父私奴益奴 母戶婢水代 奴豆石 年  
 四十九甲午 居公州 父戶奴鶴伊 母良女分化 奴芻朴 年四十二辛丑 居公州 父母上同  
 婢豆今 年四十七丙申 居公州 父母上同 婢海棠 年四十五戊戌 居公州 父母上同 婢  
 論化 年七十癸酉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奴貞男 年百庚子 居慶州 父戶奴丁雲 母  
 戶婢者斤介 婢延化 年九十三壬子 逃 父戶奴季朴 母良女延春 奴千日 年七十七丙寅  
 逃 父匠人清朴 母戶婢禮春 婢末春 年五十一辛卯 逃 父戶奴末朴 母戶婢九春奴 明世  
 年二十九 甲寅 父戶奴芻 母戶婢月? 婢白玉 年二十二丁巳 逃 父私奴無松 母戶婢月良  
 婢鋤云 年二十三庚申 逃 父母上同 婢鋤隱 今年二十一壬戌 逃 父母上同 奴二金 年二十一  
 壬戌 居咸平 父私奴漢白 母戶婢禮丹 奴流奉 年十四己巳 居咸平 父母上同 奴流金 年十  
 二辛未 居咸平 父母上同 奴憶奉 年二十五戊午 居咸平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婢  
 甘只 年二十三庚申 居咸平 父母上同 奴甘金 年十九甲子 居咸平 父母上同 婢士戒 年二  
 十八乙卯 仰役 父私奴加底金 母戶婢塞還 奴善興 年二十一壬戌 仰役 父母上同 婢士良  
 年十六丁卯 父母上同 奴遂萬 年二十一壬戌 父私奴遠金 母同 婢正德 婢道良 年十九  
 甲子 仰役 父母上同 奴萬世 年十四己巳 父母上同 婢翠禮 年十二辛未 父私奴次乙下 其  
 母戶婢延香 婢禿德 年二十一壬戌 仰役 父私奴一守 母戶婢千上 婢欣金 年十八乙丑  
 仰役 父私奴盤松 母戶婢月香 奴道石 年二十五戊午 仰役 父戶奴生伊 母良女名  
 不知 婢今山 年二十二辛未 父母上同 等 己卯戶口相準給者

行郡守[署押]

[周挾無改印]

5-4-9) 1705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해설】 1705년(숙종31) 영광군에서 영광군 마촌면 화천리 제12통에 거주하는 고 신정수의 처 서산 유씨의 호구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배껴 발급해준 준호구. 가족은 17세의 조카 수룡 1인만 있다. 수룡은 시태로 개명하였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36명, 계집종 37명으로 총 73명이다. 그런데 사망한 노비가 3명이 있고, 11명의 노비가 도망가서 타지에서 살고 있다.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 12월 일 영광군

을유년에 성적成籍한 호구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마촌면馬村面 제2 화촌리禾村里에 거주하는 제12통 제2호구 고故 유학幼學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33세, 계축생) 본적 서산瑞山

아버지 학생學生 지렴之濂

조부 학생學生 필수必壽

증조부曾祖 학생學生 성익聖翊

외조부外祖 선교랑宣敎郎 이시겸李時謙 본적 전의全義

조카姪 수룡首龍 개명 시태始泰 (17세, 기사생)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노 정해丁每 (28세, 무오생) 양역 노비, 아버지 사노 동이同伊 어머니 호비 사옥土玉

노 영만永萬 (17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위와 같음

노 영산永山 (15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영금永今 (13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인봉仁奉 (24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士進 어머니 호비 처녀處女

비 인량仁良 (36세, 경술생) 장성長城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인단仁丹 (26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소남小男 (41세, 을사생) 무장茂長에 거주.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같은 비 춘이春伊

노 수남壽男 (37세, 기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두은일豆隱日 (49세, 정유생) 아버지 사노 논금論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비 내은지內隱之 (33세, 계축생) 무장茂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약금若金 사망故  
 노 순일順一 (40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남水男 (37세, 기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승옥承玉 사망故  
 비 연량年良 (39세, 정미생) 아버지 사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순량順良  
 비 운량云良 (29세, 정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월량月金 (53세, 계사생) 능주綾州에 거주. 아버지 사노 추문을이愁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비 월향月香 (47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소을금所乙金 (45세, 신축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돌시堯屎 (4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미운米云  
 비 예단禮丹 (46세, 경자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上介  
 노 만이萬伊 (47세, 무술생) 양역노비. 아버지 관노 개질지介叱只 어머니 호비 은향隱香  
 비 일향日香 (47세, 무술생) 영암靈岩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월춘月春 (60세, 병술생) 영암靈岩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先 (47세, 기해생) 도망. 아버지 이름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비 이례二禮 (29세, 정사생) 영암靈岩에 거주.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이름모름  
 노 노랑老郎 (17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천귀千貴 (19세, 정묘생) 영암靈岩에 거주. 아버지 이름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노 칠인七仁 (60세, 병술생) 도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任香  
 비 자근덕者斤德 (46세, 경자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은금者隱金 (42세, 갑진생) 무장茂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개이介伊 (37세, 기유생) 창원昌原에 거주.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비 실향失香 (33세, 계축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봉이奉伊 (31세, 을묘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백이百伊 (36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실현失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노 이백二百 (31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오백五百 (22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일생日生 (77세, 기사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日禮  
 비 내은월內隱月 (100세, 계미생) 진주晉州에 거주. 아버지 수근 최환근崔還根 어머니 호비 와서비臥西非  
 비 내은이內隱伊 (102세, 신축생)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접이占伊(101세, 을축생) 김해金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준이準伊(53세, 계사생)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노 두석豆石(52세, 갑오생) 공주公州에 거주.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노 돌박堧朴(45세, 신축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두금豆金(50세, 병신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해당海堂(47세, 무술생) 공주公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내은화內隱化(73세, 계유생) 도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노 정남貞男(103세, 경자생) 경주慶州에 거주.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가근  
 개者斤介  
 비 연화延化(96세, 임자생) 도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노 천일千日(80세, 병인생) 도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비 말질춘未叱春(55세, 신묘생) 도망. 아버지 호노 끝복未叱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노 명세命世(32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돌세堧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玄  
 비 백오白玉(29세, 정사생) 도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량月良  
 비 조운鋤云(26세, 경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조은금鋤隱今(24세, 임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이금二金(24세, 임술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노 유봉流奉(17세, 기사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유금流金(15세, 신미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억봉憶奉(26세, 경신생) 함평咸平에 거주.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비 감지甘只(26세, 경신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감금甘金(22세, 갑자생) 함평咸平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계士戒(31세, 을묘생) 아버지 사노 가응금加應金 어머니 호비 색환色還  
 노 선흥先興(24세, 임술생) 양역노비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랑士良(19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만遂萬(24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같은 노비母 장덕丈德  
 비 도량道良(22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만세萬世(17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취례翠禮(15세, 신미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卞只 어머니 호비 연향延香  
 비 독선禿德 사망故  
 비 흥금欣金(21세, 을축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 반송盤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노 도석道石(28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금산今山(25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등. 을유년에 자수함.

## 행 군수[서업]

[주협무개인]

康熙四十四年 十二月 日靈光郡

考 乙酉成籍戶口帳內 馬村面第二 禾村里 住 第十二統 第二戶 故 幼學 辛鼎受 妻柳氏 年  
三十三癸丑 籍瑞山 父 學生 之濂 祖

學生 必壽 曾祖 學生 聖翊 外祖 宣教郎 李時謙 本全義 率姪 首龍 改名始泰 年十七己巳 率  
奴丁 每 年二十八戊午 仰役

父私奴同伊 母戶婢士玉 奴永萬 年十七己巳 父良人□□(自興) 母上同 奴永山 年十五辛未  
父母上同 婢永今 年十三癸酉 父母上同

奴上仁 年二十八戊午 仰役 父芻千 母戶婢光良 奴上命 年二十丙寅 仰役 父母上同 奴上萬  
年十七己巳 父母上同 奴仁奉 年

二十四壬戌 父私奴士進 母戶婢處女 婢仁良 年三十六庚戌 居長城 父母上同 婢仁丹 年  
二十六庚申 父母上同 奴小男 年四

十一乙巳 居茂長 父戶奴仁男 母同婢春伊 奴水男 年三十七己酉 逃 父母上同 婢內隱之 年  
三十三癸丑 居茂長 父母上同 奴豆隱

日 年四十九丁酉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奴若金 故 奴順一 年四十丙午 父母上同 婢承玉  
故 婢年良 年三十九丁未 父私奴於

屯 母戶婢順良 婢云良 年二十九丁巳 父母上同 奴月金 年五十三癸巳 居綾州 父私奴愁文乙  
伊 母戶婢月生 婢月香 年四

十七己亥 父母上同 奴所乙金 年四十五辛丑 逃 父母上同 奴芻屎 年四十三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米云 婢禮丹 年四十六庚

子 居咸平 父戶奴牙生 母良女禮上介 奴萬伊 年四十七戊戌 仰役 父官奴介叱只 母戶婢隱香  
婢日香年 四十七戊戌 居靈

岩 父母上同 婢月春 年六十丙戌 居靈岩 父母上同 婢愛先 年四十七己亥 逃 父名不知 母戶  
婢日香 婢二禮 年二十九丁巳 居

靈岩 父戶奴春生 母良女名不知 奴老郎 年十七己巳 父母上同 婢千貴 年十九丁卯 居靈岩 父  
名不知 母戶婢玉伊 奴七

仁 年六十丙戌 逃 父寺奴介金 母戶婢任香 婢者斤德 年四十六庚子 逃 父母上同 婢者隱金  
年四十二甲辰 居茂長 父母上

同 婢介伊 年三十七己酉 居昌原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婢失香 年三十三癸丑 居晉州 父母  
上同 奴奉伊 年三十一乙卯

居晉州 父母上同 奴百伊 年三十六庚戌 父私奴失玄 母戶婢德還 奴二百 年三十一乙卯 父母

上同 奴五百 年二十二甲子 父母上同 奴  
日生 年七十七己巳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日禮 婢內隱月 年百癸未 居晉州 父水軍崔還根 母  
戶婢臥西非 婢內隱伊 年百二辛  
丑居晉州 父母上同 婢占伊 年百一乙丑 居金海 父母上同 奴準伊 年五十三癸巳 逃 父私奴益  
老 母戶婢水代 奴豆石 年五十二甲  
午 居公州 父戶奴鶴 母良女分化 奴芻朴 年四十五辛丑 居公州 父母上同 婢豆今 年五十丙申  
居公州 父母上同 婢海堂 年  
四十七戊戌 居公州 父母上同 婢內隱化 年七十三癸酉 逃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奴貞男年  
百三庚子 居慶州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婢延化 年九十六壬子 逃 父戶奴戒卜 母良女延春 奴千日 年八十丙寅 逃 父良  
人青卜 母戶婢禮春 婢末叱  
春 年五十五辛卯 逃 父戶奴末叱卜 母戶婢九春 奴命世 年三十二甲寅 父戶奴芻世 母戶婢月  
玄 婢白玉 年二十九丁巳 逃  
父私奴班松 母戶婢月良 婢鋤云 年二十六庚申 逃 父母上同 婢鋤隱今 年二十四壬戌 逃 父母  
上同 奴二金 年二十四壬戌 居咸  
平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奴流奉 年十七己巳 居咸平 父母上同 奴流金 年十五辛未 居咸平  
父母上同 奴憶奉 年二十  
六庚申 居咸平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婢甘只年二十六庚申 居咸平 父母上同 奴甘金 年  
二十二甲子 居咸平 父母上同  
婢士戒 年三十一乙卯 父私奴加應金 母戶婢色還 奴先興 年二十四壬戌 仰役 父母上同 婢士  
良年十九丁卯 父母上同 奴  
遂萬 年二十四壬戌 父私奴元金 母同婢丈德 婢道良 年二十二甲子 父母上同 奴萬世 年十七  
己巳 父母上同 婢翠禮 年  
十五辛未 父私奴次乙卞只 母戶婢延香 婢禿德故 婢欣金 年二十一乙丑 仰役 父私奴盤松 母  
戶婢月香 奴道石 年二  
十八戊午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婢今山 年二十五辛酉 父母上同 等 乙酉自首  
行郡守[署押]  
[周挾無改印]

5-4-10) 1696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준호구准戶<sup>25</sup>

【해설】 1696년(숙종22) 영광군에서 영광군 도내면 제3 입석리에 거주하는 신정화의 호구 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서 성급해준 준호구. 가족은 17세의 아들 수룡과 동생 정수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21명, 계집종 19명으로 총 40명이다. 그런데 사망한 노비가 2명이 있고, 12명이 도망가서 타지에서 살고 있으며, 속량한 노비도 보인다.

강희 35년(1696, 숙종22, 병자)9월 일 영광군靈光郡

병자년(숙종22, 1696)에 성적인 호구를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 제○동 제○에 거주하는 호戶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29세, 무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경릉慶隆

조부 선무랑宣務郎 익진翊震

증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 응망應望

외조부 학생學生 박상수朴尙粹 본적 함양咸陽

처妻 김씨金氏(33세 갑진생) 본적 광산光山

아버지 종사랑從仕郎 세광世光

조부 통덕랑通德郎 여상汝鏞

증조부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행행 선교랑宣敎郎 목릉참봉穆陵參奉  
우급友級

외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신령현감新寧縣監 김단金湍 본적 부안扶安

솔거하는 동생 정수鼎受(26세, 신해생)

솔거하는 아들 수룡首龍(8세, 기사생)

솔거하는 노비[率]

노 소남小男(32세, 을사생) 양역노비 아버지 사노私奴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戶婢 춘이春伊

노□男(28세, 기유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비 내은지內隱之(21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두은일豆隱日(40세, 정유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노 선금善金(37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순일順日(31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25 이 준호구는 강희 35년으로 병자년 1696년임. 고문서자료관에 1709년 준호구로 한 것은 오류임.

- 비 새환塞還 (45세, 임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개환皆還 (41세, 을미생) 사망故  
 노 석목石木 (24세, 계축생) 도망. 아버지 사노 어석이於石伊 어머니 호비 순양順陽  
 비 청옥淸玉 (39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연향連香 (30세, 정미생) 병자년에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운양雲陽 (20세, 정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양역노비  
 비 선양畝陽 (39세) 속량贖良  
 노 월금月金 (44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추석리愁夕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비 월양月陽 (38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광주光州에 거주  
 노 돌시芻屎 (32세, 을사생) 양역 노비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雲  
 비 예단禮段 (38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함평咸平에 거주  
 노 만이萬伊 (39세, 무술생) 아버지 관노 개은지介隱之 어머니 호비戶婢 은향銀香. 양역  
 노비  
 비 일향日香 (49세, 무자생) 도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월향月香 (51세, 병술생) 도망하여 영암靈岩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仙 (38세, 기해생) 도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노 춘생春生 사망故  
 비 이례二禮 (20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지생支生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영암靈岩에  
 거주  
 노 노랑老郎 (8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천무인千無人 (10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에  
 거주  
 노 칠인七仁 (51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비 자은덕者隱德 (37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장성長城에 거주  
 비 자은금者隱金 (33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장성長城에 거주  
 비 개이介伊 (28세, 기유생) 도망해 창원昌原에 거주.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비 실양失陽 (24세, 계축생) 도망해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봉이奉伊 (22세, 을묘생) 도망해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백이白伊 (27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선현先玄 어머니 호비 도환逃還  
 노 이백二白 (21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오백五百 (13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양역노비  
 노 일생一生 (68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94세, 계묘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晉州에 거주. 아버지 수군 최한근  
崔漢近 어머니 호비 와서비臥西非

비 내은이內隱伊(96세, 신축생) 병오년에 도망해 진주晉州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점이點伊(92세, 을사생) 병오년에 도망해 김해金海에 거주.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억이億伊(44세, 계사생) 신축년에 도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노 두석斗石(43세, 갑오생) 신축년에 도망해 공주公州에 거주.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  
머니 양녀 분화分化  
노 돌박돌朴(36세)<sup>26</sup> □…□  
□…□

康熙三十五年 九月 日 靈光郡

考 丙子成籍戶口帳內 道內面 第三 立石住 第統 第 戶 幼學 辛鼎和 年二十九戊申  
本寧越 父 學生 慶隆 祖 宣務郎 翊震 曾祖 通訓大夫 行 司憲府掌令 應望 外祖 學生  
朴尙粹 本咸陽 妻金氏 年三十三甲辰 籍光山 父 從仕郎 世光 祖 通德郎 汝鎰 曾祖 贈嘉  
善大夫 兵曹參判 行 宣教郎 穆陵 參奉 友伋 外祖 通訓大夫 行 新寧縣監 金湍 本扶安 率 弟鼎  
受 年二十六辛亥 率 子首龍 年八己巳 率 奴小男 年三十二乙巳 仰役 父私奴仁男 母戶婢春  
伊 奴□  
男 年二十八己酉 逃 父母上同 婢內隱之 年二十一癸丑 父母上同 奴豆隱日 年四十丁酉 父私  
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奴善金 年三十七庚子 父母上同 奴順日 年三十一丙午 父母上同 婢塞還 年四十  
五壬辰 父母上同 婢皆還 年四十一乙未 故 奴石木 年二十四癸丑 逃 父私奴於石伊 母戶婢順  
陽  
婢淸玉 年三十九戊戌 父母上同 婢連香 年三十丁未 丙子逃 父母上同 婢雲陽 年二十丁巳  
父母上同 仰役 婢畚陽 年三十九 贖良 奴月金 年四十四癸巳 父私奴愁夕里 母戶婢月生 婢  
月陽 年三十八己亥 父母上同 居光州 奴芻屎 年三十二乙巳 仰役 父戶奴牙生 母良女采  
雲 婢禮段 年三十八己亥 父母上同 居咸平 奴萬伊 年三十九戊戌 父官奴介隱之 母戶婢  
銀香 仰役 婢日香 年四十九戊子 逃 父母上同 婢月春 年五十一丙戌 逃在靈岩 父母上同 婢  
愛仙 年三十八己亥 逃父名不知 母戶婢日香 奴春生 故 婢二禮 年二十丁巳 父戶奴支生 母  
良女名不知 居靈岩 奴老郎 年八己巳 父母上同 奴千無人 年十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  
伊 居靈岩 奴七仁 年五十一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婢者隱德 年三十七庚  
子 父母上同 居長城 婢者隱 今年三十三甲辰 父母上同 居長城 婢介伊 年二十八己酉

26 이하 파손되어 판독 불가

逃在昌原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婢失陽 年二十四癸丑 逃在晉州 父母上同 奴奉伊  
年二十二乙卯 逃在晉州 父母上同 奴白伊年二十七庚戌 父私奴先玄 母戶婢逃還 奴  
二白 年二十一乙卯 父母上同 奴五百年十三甲子 父母上同 仰役 奴一生 年六十八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內隱月 年九十四癸卯 丙午逃在晉州 父水軍崔漢  
近 母戶婢馱西非 婢內隱伊 年九十六辛丑 丙午逃在晉州 父母上同 婢點伊 年九十二  
乙巳 丙午逃在金海 父母上同 奴億伊 年四十四癸巳 辛丑逃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奴斗石 年四十三甲午 辛丑逃在恭[公]州 父戶奴鶴伊 母良女分化 奴夏朴 年三十六  
[辛丑]□…□

### 5-4-11) 1717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해설】 1717년(숙종43) 광주목에서 서면 동각리 침산동 작촌에 거주하는 고 신정수의 처 서산 유씨의 호구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배껴 발급해준 준호구. 함께 사는 가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40명, 계집종 41명으로 총 81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가 25명이나 된다. 이들의 거주지는 영광, 무장, 영암, 함평, 경주, 공주 등에서 살고 있다.

강희56년(1717, 숙종43) 월 일 광주목光州牧

정유년에 성적한 호구 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서면西面 동각리東角里 침산동 작촌砵山東作村 거주住 제16통 제2호戶

고故 학생學生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45세, 계축생) 본적 서산瑞山

아버지 학생學生 지겸之謙

조부 학생學生 필수必壽

증조부 학생學生 성익聖翊

외조부 선교랑宣敎郎 이시겸李時謙 본적 전의全義

솔거하는 노비 명단

솔비率婢 조운鉅云(38세, 경신생) 아버지 양인 반송盤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솔비 사경士京(28세, 경오생) 아버지 사노 응금應金 어머니 호비 사환士還

솔비 운선雲畵(15세, 계미생) 아버지 이름모름 어머니 호비 운양雲陽 도로 돌아옴還現

솔거하는 노비[率]

노 정해丁梅(40세, 무오생) 아버지 사노 동이同伊 어머니 호비 사옥士玉. 영광靈光 거주

- 노 영만永萬 (29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위와 같음. 도망
- 노 영산永山 (27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비 두금斗壽 (62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인 분화分化
- 노 상인上仁 (40세, 무오생) 아버지 사노 돌천堽天 어머니 호비 선양先陽. 영광靈光 거주
- 노 상면上明 (32세, 병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상만上萬 (29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상필上必 (24세, 갑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인봉仁奉 (36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士進 어머니 호비 처례處禮. 영광靈光 거주
- 비 인량仁良 (48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장성長城 거주
- 비 인단仁丹 (38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영광靈光 거주
- 노 소만小萬 (5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 노 수남水男 (49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비 갑지甲之 (45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무장茂長 거주
- 노 두은일豆隱日 (61세, 정유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영광靈光 거주
- 노 순일順日 (52세, 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 위와 같음
- 비 연향連香 (51세, 정미생) 아버지 사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수량水良 영광靈光 거주
- 노 월금月金 (65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추질문愁叱文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逃
- 비 월향月香 (59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솔금鬮金 (57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돌시堽屎 (5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彩雲. 도망逃
- 비 예단禮丹 (58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上介. 도망逃
- 노 만이萬伊 (60세, 무술생) 아버지 관노 개질지介叱之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광靈光 거주
- 비 일향日香 (70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영암靈岩 거주
- 비 월춘月春 (72세, 병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영암 거주
- 비 애선愛畝 (59세, 기해생) 아버지 이름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도망
- 비 이례二禮 (41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 모름
- 노 노랑老郎 (29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逃
- 노 귀천貴賤 (31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 노 칠인七仁 (72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寺奴 개질금奴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 비 자근덕者斤德 (58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비 자근금者斤壽 (54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비 개이伊(49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 비 실향實香(45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주
- 노 봉이奉伊(43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 위와 같음
- 노 백이百伊(48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실현實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 노 이백二白(43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오백五白(34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등등3노비 영광靈光에 거주
- 노 일생一生(89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 비 갑월甲月(106세, 계묘생) 아버지 수군 최한근崔還斤 어머니 호비 눌은서비訥隱西非.  
진주 晉州에 거주
- 비 내은이內隱伊(107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위와 같은 곳에 거주居上同
- 비 점이占伊(95세, 을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 거주
- 노 준이準伊(65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 노 돌박堊朴(57세, 신축생)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주公州 거주
- 노 두석豆石(64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위와 같은 곳에 거주居上同
- 비 해당海棠(60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위와 같은 곳에 거주居上同
- 비 내은지內隱之(85세, 계유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 노 정남丁男(118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지근개者斤介. 경주慶州에 거주
- 비 연화連化(106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양녀 연춘延春. 도망逃
- 노 천일千日(92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逃
- 비 끝춘未叱春(67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未叱(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도망逃
- 노 명세明世(44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돌세堊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玄. 영광靈光에 거주
- 비 백옥白玉(41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반송盤松 어머니 호비 월량月良. 도망逃
- 노 설운雪雲(37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逃
- 비 줄금鋤金(33세, [임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逃
- 노 이금二金(33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함평咸平에 거주
- 비 사계士戒(43세, 을묘생) 아버지 사노 응금應金 어머니 호비 사환士還. 영광靈光에 거주
- 노 선흥先興(36세, 임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사랑士良(31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유봉留奉(29세, 기사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함평咸平에 거주
- 노 유금留金(27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감지甘之(38세, 경신생)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 노 감금甘金(34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등 3인은 함평咸平에 거주

노 수만水萬 (36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逃

비 도량道良 (34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외노遜奴 만세萬世 (29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외비遜婢 취례取禮 (27세, 신미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連香

외비遜婢 혼전欣前 (33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盤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외노遜奴 돌석돌石 (40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산금山今 (37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춘학春鶴 (26세, 임신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連香

외비遜婢 추향秋向 (18세, 경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외비遜婢 장덕長德 (58세, 경자생) 아버지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向

외비遜婢 두질금묘수 (61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학이鶴伊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

주公州에 거주

비 매화每化 (108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울산蔚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외비遜婢 정춘丁春 (103세, 을축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외거노비遜婢 영옥永玉 (84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伏禮

외거노비遜婢 끝량耄良 (84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등等

갑오년(1714, 숙종40) 호구 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창 서원昌書員

준 색準色

목사[서업]

[주협무개인]

康熙伍拾陸年 月 日 光州牧

考 丁酉成籍戶口帳內 西面東角里 砧山東作村 住 第拾陸統 第貳戶 故 學生 辛鼎受 妻柳氏

年肆拾伍癸丑 籍瑞山 父 學生之濂 祖 學生必壽 曾祖 學生聖翊 外祖 宣教郎 李時

謙本全義 率 婢鈕云 年參拾捌庚申 父良人盤松 母戶婢月香 率婢士京 年貳拾捌

庚午 父私奴應金 母戶婢士還 率婢雲叕 年拾伍癸未 父名不知 母戶婢雲陽 還現 率奴丁

梅 年肆拾戊午 父私奴同伊 母戶婢士玉 居靈光 奴永萬 年貳拾玖己巳 父良人自興 母上

同 逃 奴永山 年貳拾柒辛未 父母上同 逃婢斗今 年陸拾貳丙申 父戶奴鶴伊 母良女

分化 奴上仁 年肆拾戊午 父私奴夏天 母戶婢先陽 居靈光 奴上明 年參拾貳丙寅

父母上同 逃 奴上萬 年貳拾玖己巳 父母上同 逃 奴上必 年貳拾肆甲戌 父母上同 逃奴

仁奉 年參拾陸壬戌 父私奴士進 母戶婢處禮 居靈光 婢仁良 年肆拾捌庚戌 父  
 母上同 居長城 婢仁丹 年參拾捌庚申 父母上同 居靈光 奴小萬 年伍拾參乙巳 父戶奴  
 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奴水男 年肆拾玖己酉 父母上同 逃 婢甲之 年肆拾伍癸丑  
 父母上同 居茂長 奴豆隱日 年陸拾壹丁酉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居靈光 奴順日  
 年伍拾貳丙午 父母上同 居上同 婢連香 年伍拾壹丁未 父私奴於屯 母戶婢水  
 良 居靈光 奴月金 年陸拾伍癸巳 父私奴愁叱文 母戶婢月生 逃 婢月香 年伍拾玖  
 己亥 父母上同 逃奴璽金 年伍拾柒辛丑 父母上同 逃 奴芑屎 年伍拾參乙巳 父  
 戶奴牙生 母良女彩雲 逃 婢禮丹 年伍拾捌庚子 父戶奴牙生 母良女禮上介 逃  
 奴萬伊 年陸拾戌戌 父官奴介叱之 母戶婢銀香 居靈光 婢日香 年柒拾戌子  
 父母上同 居靈岩 婢月春 年柒拾貳丙戌 父母上同 居同 婢愛忒 年伍拾玖己  
 亥 父名不知 母戶婢日香 逃 婢二禮 年肆拾壹丁巳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奴老郎 年貳拾玖己巳 父母上同 逃 老[奴]貴賤 年參拾壹丁卯 父名不知 母戶婢  
 玉伊居靈岩 奴七仁 年柒拾貳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者斤德  
 年伍拾捌庚子 父母上同 逃 婢者斤今 年伍拾肆甲辰 父母上同 逃 婢介伊  
 年肆拾玖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實香 年肆拾伍癸丑 父母  
 上同 居晉州 奴奉伊 年肆拾參乙卯 父母上同 居上同 奴百伊 年肆拾捌庚戌  
 父私奴實玄 母戶婢德還 奴二白 年肆拾參乙卯 父母上同 奴五白年參拾肆  
 甲子 父母上同 等 參口居靈光 奴一生 年捌拾玖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婢甲月 年百陸癸卯 父水軍崔還斤 母戶婢訥隱西非 居晉州 婢內隱伊 年百柒  
 辛丑 父母上同 居上同 同婢占伊 年玖拾伍乙巳 父母上同 居金海 奴準伊 年陸  
 拾伍癸巳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逃 奴芑朴 年伍拾柒辛丑 父戶奴鶴伊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豆石 年陸拾肆甲午 父母上同 居上同 婢海棠 年陸拾戌戌 父母上同 居上同  
 婢內隱之 年捌拾伍癸酉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奴丁男 年百拾捌庚子 父戶奴丁云  
 母者斤介 居慶州 婢連化 年百陸壬子 父戶奴戒卜 母良女延春 逃 奴千日 年玖拾  
 貳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婢末叱春 年陸拾柒辛卯 父戶奴末叱□ 母戶  
 婢九春 逃 奴明世 年肆拾肆甲寅 父戶奴芑世 母戶婢月玄 居靈光 婢白玉 年肆拾  
 壹丁巳 父私奴盤松 母戶婢□□ 逃 奴雪雲 年參拾柒庚申 父母上同 逃 婢鏗金  
 年參拾參 父母上同 逃 奴二金 年參拾參壬戌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咸平 婢  
 士戒 年肆拾參乙卯 父私奴應金 母戶婢士還 居靈光 奴先興 年參拾陸壬戌  
 父母上同 婢士良 年參拾壹丁卯 父母上同 奴留奉 年貳拾玖己巳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咸平 奴留金 年貳拾柒辛未 父母上同 婢甘之 年參拾捌庚  
 申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奴甘金 年參拾肆甲子 父母上同 等 參口居咸平 奴水  
 萬 年參拾陸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道良 年參拾肆甲子 父母上

同 逃奴萬世 年貳拾玖己巳父母上同 逃婢取禮 年貳拾柒辛未 父私奴次乙卞只  
 母戶婢連香 逃婢欣前 年參拾參乙丑 父私奴盤松 母戶婢月香 逃奴玆石 年  
 肆拾戌午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婢山今 年參拾柒辛酉 父母上同 奴  
 春鶴 年貳拾陸壬申 父私奴次乙卞只 母戶婢連香 逃婢秋向 年拾捌庚辰  
 父母上同 逃婢長德 年伍拾捌庚子 父介金 母戶婢壬向 逃婢豆叱 今年陸拾  
 貳丙申 父戶奴鶴伊 母良女分化 居公州 婢每化 年百捌庚子 父戶奴蔚山 母良  
 女名不知 逃婢丁春 年百參乙丑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逃婢永玉 年捌拾肆甲  
 戌 父名不知 母戶婢伏禮 逃婢歪良 年捌拾肆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等  
 甲午戶口準給者

牧使[署押]

[周挾無改印]

#### 5-4-12) 1726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해설】 1726년(영조2) 영광군에서 도내면 제3 입석리에 거주하는 신시갑의 호구대장. 아버지는 고 신 정수이며, 생부는 신만정이다. 처는 서산 유씨이며,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52명, 사내종 46명으로 98명에 달하지만, 선대로부터 도망간 노비 37명의 명단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들은 광주, 무장, 함평, 영암, 창원, 진주, 공주 등지에서 살고 있다. 또한 승려가 된 노비도 있다.

도내면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字

제 통 제 호戶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30세, 정축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정수鼎受

생부生父 학생學生 만정萬挺

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익진翊震

외조부 학생學生 유지겸柳之濂 본적 서령瑞寧

봉모奉母 유씨柳氏 (54세, 계축생) 본적 서령瑞寧

처 유씨柳氏 (26세, 신사생) 본적 서령瑞寧

처의 아버지 학생學生 지모之模

처의 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경서景瑞

처의 증조부 선교랑<sup>宣教郎</sup> 요한<sup>耀漢</sup>  
외조부<sup>外祖</sup> 학생<sup>學生</sup> 윤유흥<sup>尹惟興</sup> 본적 무송<sup>茂松</sup>

솔거하는 노비 명단<sup>率</sup>

- 비 운선<sup>云仙</sup> (27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sup>四明</sup> 어머니 호비 운량<sup>云良</sup>. 양역노비<sup>仰役</sup>  
비 조운<sup>鋤云</sup> (47세, 경신생) 아버지 반송<sup>班松</sup> 어머니 호비 월향<sup>月香</sup>. 도망<sup>逃</sup>  
노 선흥<sup>先興</sup> (45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가응이<sup>加應伊</sup>금<sup>金</sup> 어머니 사환<sup>四還</sup>. 광주<sup>光州</sup> 거주  
비 사용<sup>四用</sup> (52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sup>東部</sup>에 거주  
비 사랑<sup>四良</sup> (40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사경<sup>四京</sup> (34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백이<sup>白伊</sup> (57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실현<sup>失玄</sup> 어머니 호비 덕환<sup>德還</sup>.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이배<sup>二倍</sup> (52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사배<sup>四倍</sup> (43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자갈이<sup>者葛伊</sup> (27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sup>白伊</sup>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주은걸이<sup>注隱乞伊</sup> (3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예<sup>小艾</sup> (19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sup>人吏</sup> 김해빈<sup>金海賓</sup> 어머니 호비 사계<sup>四戒</sup>.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황개<sup>黃介</sup> (16세, 신묘생) 아버지 인리<sup>人吏</sup> 황두익<sup>黃斗益</sup> 어머니 호비 사랑<sup>四良</sup>.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개덕<sup>介德</sup> (9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sup>甲戌</sup> 어머니 호비 사랑<sup>四良</sup>.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영만<sup>永萬</sup> (38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sup>自興</sup> 어머니 호비 사옥<sup>四玉</sup>. 도망<sup>逃</sup>  
노 영산<sup>永山</sup> (36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두금<sup>豆金</sup> (71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sup>下只</sup> 어머니 양녀 분화<sup>分化</sup>. 공주<sup>公州</sup> 거주  
노 돌박이<sup>堦朴伊</sup> (66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두석이<sup>豆石伊</sup> (73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sup>亥棠</sup> (69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상인<sup>上仁</sup> (49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돌천<sup>堦天</sup> 어머니 호비 선량<sup>先良</sup>. 올해 도망  
노 상필<sup>上必</sup> (33세, 갑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인봉<sup>仁奉</sup> (45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sup>四真</sup> 어머니 호비 처녀<sup>處女</sup>. 각호<sup>各戶</sup>

노 만귀萬貴 (25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망동亡同 어머니 호비 인단仁丹. 양역노비  
 노 만숙萬肅 (22세, 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노숙老肅 (19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소만小萬 (62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비 내은지內隱之(53세, 갑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수만水萬 (58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소례小禮 (20세, 정해생) 아버지 사노 최산崔山 어머니 호비 내은지內隱之. 위와 같은  
 곳에 거주  
 노 소재小才 (18세, 기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정小丁 (14세, 계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정이丁伊 (12세, 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순일順一 (61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함평咸平  
 거주  
 노 기봉己奉 (35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順一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선己先 (30세, 정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27세, 경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한己汗 (23세, 갑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태진太眞 (18세, 기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연향軟香 (60세, 정미생) 아버지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수량守良. 도망  
 비 춘례春禮 (40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卞只 어머니 호비 연향軟香. 도망  
 노 춘하지春下只(34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각호各戶  
 비 춘덕春德 (24세, 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금년에 도망  
 노 월춘月金 (74세, 계사생) 아버지는 사노 하은문을이禾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월향月香 (68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줄금鋤乙金 (66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돌시彘屎 (62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彩雲. 도망  
 비 예단禮丹 (68세, 기해생) 아버지는 위와 같음.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上介 무장茂長 거주  
 비 귀단貴丹 (29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단례禮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화貴化 (7세, 경자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귀단貴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5세, 임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귀진貴眞(3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일향日香(79세, 무자생) 아버지 관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恩香. 영암靈岩 거주  
 비 월춘月春(81세, 병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先(86세, 기해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도망  
 비 이례二禮(50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노랑老郎(38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귀천貴天(40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81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자은덕者隱德(67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노은금老隱今(63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개이介伊(58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비 실향失香(54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주  
 노 봉이奉伊(52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일생日生(98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104세, 계축생) 아버지 수군 최환개崔還介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106세, 신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점이占伊(102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 거주  
 노 준이俊伊(74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비 내은화內隱化(94세, 계유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노 정남丁南(127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이丁云伊 어머니 호비 자은근개者隱斤介.  
 경주慶州 거주  
 비 연화連化(115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박戒朴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千日(101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醜春(76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박醜朴 어머니 호비 구춘久春. 도망  
 노 명세明世(53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돌금堧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現. 도망  
 노 김약이金若伊(16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을봉乙奉(12세, 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백옥白玉(40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이雪雲伊(47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조응금鋤應今(42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감금甘金(43세, 갑자생) 아버지 양인 사봉四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함평咸平 거주  
 노 수만水萬(45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 비 도개道介 (43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만세萬世 (38세, 기사생) 아버지 원주元州 어머니 호비 인량승仁良. 승려僧. 장성長城  
 거주  
 비 만례萬禮 (30세, 정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정읍井邑 거주  
 노 만동萬同 (25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무장茂長 거주  
 비 혼전欣田 (42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도석道石 (49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오서동에  
 거주  
 비 산금山今 (46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장덕丈德 (67세, 경자생) 아버지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소단小丹 (16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인봉이 데  
 리고 있음  
 비 소대小代 (10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 (7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매화每化 (107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해  
 창원昌原 거주  
 비 정춘丁春 (112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도망  
 비 수옥永玉 (93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도망  
 비 말량藐良 (93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도망

[끝]

용정 4년(1726, 영조2) 8월 일 유학 신시갑辛始甲 [착명]

道內面 第三 立石里戶籍單字  
 第 統第 戶 幼學 辛始甲 年三十丁丑 本寧越  
 父 學生 鼎受  
 生父 學生 萬挺  
 祖 學生 慶隆  
 曾祖 宣教郎 翊震  
 外祖 學生 柳之濂 本瑞寧  
 奉母 柳氏 年五十四[癸丑] 籍瑞寧  
 妻 柳氏 年二十六辛巳 籍瑞寧  
 父 學生 之模  
 祖 成均生員 景瑞



曾祖 宣教郎 耀漢  
外祖 學生 尹惟興 本茂松  
率 婢云仙 年二十七庚辰 父私奴四明 母戶婢云良 仰役  
婢鋤云 年四十七庚申 父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先興 年四十五壬戌 父私奴加應伊金 母四還 居光州  
婢四戒 年五十二乙卯 父母上同 居東部  
婢四良 年四十丁卯 父母上同 居上同  
婢四京 年三十四癸酉 父母上同 居上同  
奴白伊 年五十七庚戌 父私奴失玄 母戶婢德還 居上同  
奴二倍 年五十二乙卯 父母上同 居上同  
奴四倍 年四十三甲子 父母上同 居上同  
奴者葛伊 年二十七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注隱乞伊 年三甲辰 父母上同 居上同  
婢小艾 年十九戊子 父人吏金海賓 母戶婢四戒 居上同  
奴黃介 年十六辛卯 父人吏黃斗益 母戶婢四良 居上同  
婢介德 年九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四良 居上同  
奴永萬 年三十八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四玉 逃  
奴永山 年三十六辛未 父母上同 逃  
婢豆金 年七十一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夏朴伊 年六十六辛丑 父母上同 居上同  
奴豆石伊 年七十三甲午 父母上同 居上同  
婢亥棠 年六十九戊戌 父母上同 居上同  
奴上仁 年四十九戊午 父[戶]奴夏天 母戶婢先良 今年逃  
奴上必 年三十三甲戌 父母上同 逃  
奴仁奉 年四十五壬戌 父私奴四眞 母戶婢處女 各戶  
奴萬貴 年二十五壬午 父良人亡同 母戶婢仁丹 仰役  
奴萬肅 年二十二乙酉 父母上同 今年逃  
奴老肅 年十九戊子 父母上同 逃  
奴小萬 年六十二乙巳 父戶奴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婢內隱之 年五十三甲寅 父母上同 居上同  
奴水萬 年五十八己酉 父母上同 逃  
婢小禮 年二十丁亥 父私奴崔山 母戶婢內隱之 居上同  
奴小才 年十八己丑 父母上同 居上同

婢小丁 年十四癸巳 父母上同 居上同  
 婢丁伊 年十二乙未 父母上同 居上同  
 奴順一 年六十一丙午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居咸平  
 奴己奉 年三十五壬申 父戶奴順一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己先 年三十丁丑 父母上同 居上同  
 婢貴禮 年二十七庚辰 父母上同 居上同  
 奴己汗 年二十三甲申 父母上同 居上同  
 婢太眞 年十八己丑 父母上同 居上同  
 婢軟香 年六十丁未 父於屯 母戶婢守良 逃  
 婢春禮 年四十丁卯 父私奴次乙卞只 母戶婢軟香 逃  
 奴春下只 年三十四癸酉 父母上同 各戶  
 婢春德 年二十四癸未 父母上同 今年逃  
 奴月金 年七十四癸巳 父私奴禾隱文乙伊 母戶婢月生 逃  
 婢月香 年六十八己亥 父母上同 逃  
 奴鋤乙金 年六十六辛丑 父母上同 逃  
 奴夏屎 年六十二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彩云 逃  
 婢禮丹 年六十八己亥 父上同 母良女禮上介 居茂長  
 婢貴丹 年二十九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上同  
 婢貴化 年七庚子 父名不知 母戶婢貴丹 居上同  
 婢貴禮 年五壬寅 父母上同 居上同  
 婢貴眞 年三甲辰 父母上同 居上同  
 婢日香 年七十九戊子 父官奴介之 母戶婢恩香 居靈岩  
 婢月春 年八十一丙戌 父母上同居上同  
 婢愛先 年六十八己亥 父名不知 母戶婢日香 逃  
 婢二禮 年五十丁巳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奴貴天 年四十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伊 居靈岩  
 奴七仁 年八十一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者隱德 年六十七庚子 父母上同 逃  
 婢老隱今 年六十三甲辰 父母上同 逃  
 婢介伊 年五十八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失香 年五十四癸丑 父母上同 居晉州  
 奴奉伊 年五十二乙卯 父母上同 居上同  
 奴日生 年九十八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內隱月 年百十四癸丑 父水軍崔還介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內隱伊 年百十六辛亥 父母上同 居上同  
婢占伊 年百二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奴俊伊 年七十四癸巳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逃  
婢內隱化 年九十四癸酉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奴丁南 年百二十七庚子 父戶奴丁云伊 母戶婢者隱斤介 居慶州  
婢連化 年百十五壬子 父戶奴戒朴 母戶婢延春 逃  
奴千日 年百一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奴歪春 年七十六辛卯 父戶奴歪朴 母戶婢久春 逃  
奴明世 年五十三甲寅 父戶奴玆世 母戶婢月現 逃  
奴金若伊 年十六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名不知 逃  
奴乙奉 年十二乙未 父母上同 逃  
婢白玉年 四十丁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雪云伊 年四十七庚申 父母上同 逃  
婢鋤應今 年四十二乙丑 父母上同 逃  
奴甘金 年四十三甲子 父良人四奉 母戶婢玉 今居咸平  
奴水萬 年四十五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道介 年四十三甲子 父母上同 逃  
奴萬世 年三十八己巳 父元州 母戶婢仁良 僧居長城  
婢萬禮 年三十丁丑 父母上同 居井邑  
奴萬同 年二十五壬午 父母上同 居茂長  
婢欣田 年四十二乙丑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道石 年四十九戊午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居五瑞洞  
婢山今 年四十六辛酉 父母上同 逃  
婢丈德 年六十七庚子 父檢金 母戶婢壬香 逃  
婢小丹 年十六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仁奉率  
婢小代 年十丁酉 父母上同  
奴水生 年七庚子 父母上同  
婢每化 年百十七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逃居昌原  
婢丁春 年百十二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逃  
婢永玉 年九十三甲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逃  
婢歪良 年九十三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逃  
際

### 5-4-13) 1729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해설】 1729년(영조5) 영광군에서 도내면 제3 입석리 제1통에 거주하는 신시갑의 호구대장. 아버지는 고 신정수이며, 생부는 신만정이다. 처는 서산 유씨이며,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53명, 사내종 44명으로 98명에 달하지만, 1명이 죽고, 선대로부터 도망간 노비 34명의 명단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들은 광주, 무장, 함평, 영암, 창원, 진주, 공주 등지에서 살고 있다. 3년전 호구대장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5호戶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33세, 정축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정수鼎受

생부生父 학생學生 만정萬挺

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익진翊震

외조부 학생學生 유지겸柳之濂 본적 서령瑞寧

봉모奉母 유씨柳氏 (57세, 계축생) 본적 서령瑞寧

처 유씨柳氏 (29세, 신사생) 본적 서령瑞寧

아버지 학생學生 지모之模

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서단景瑞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요한耀漢

외조부外祖 학생學生 윤유흥尹惟興 본적 무송茂松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비 운선云先 (30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四明 어머니 호비 윤량云良. 양역노비 仰役

비 조운鋤云 (50세, 경신) 아버지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戶婢 일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 (38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가응이금加應伊金 어머니 호비 사환四還.

광주光州 거주

비 사계四桂 (55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비 사랑四良 (43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비 사경四京 (37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노 백이白伊 사망故

노 이배二倍 (55세, 을묘생) 아버지 사노 선현先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사창社倉에 거주

노 사배四倍 (46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에 거주

노 자갈者葛 (30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주은걸注隱乞 (6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예小艾 (22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人吏 김해빈金海賓 어머니 호비 사계四戒.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황개黃介 (19세, 신묘생) 아버지 인리 황두익黃斗益 어머니 호비 사랑四良.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개덕介德 (12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四良.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영만永萬 (41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四玉 양역노비仰役

노 영산永山 (39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두금豆旣 (74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주公州에 거주

노 돌박堠朴 (69세, 신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두석豆石 (76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亥棠 (72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상인上仁 (52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돌천堠天 어머니 호비 선량先良 묘거畝巨에 거주

노 상필上必 (36세, 갑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인봉仁奉 (48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四眞 어머니 호비 처녀處女. 입호立戶

노 만귀萬貴 (28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망동亡同 어머니 호비 인단仁丹. 염소豔所 거주

노 만숙萬叔 (25세, 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노숙老叔 (22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소만小萬 (65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비 내은지內隱之 (56세, 갑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수만水萬 (61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소례小禮 (23세, 정해생) 아버지 사노 최산崔山 어머니 호비 내은지內隱之.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재小才 (21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정小丁 (16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정이丁伊 (15세, 을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순일順日 (64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동부東部

거주

노 기봉己奉 (38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順日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선己先 (33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30세, 경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한己汗 (26세, 갑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태진太眞 (21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연향軟香 (63세, 정미생) 아버지 양인 어둔於屯 어머니 호비 수량守良. 고부古阜 거주

비 춘례春禮 (43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軟香.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춘하지春下只 (37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소갈촌蘇葛村에 거주. 각호各戶

비 춘덕春德 (27세, 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월금月金 (77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이禾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월향月香 (71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逃

노 돌시豆屎 (65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蔡云. 도망逃

비 예단禮丹 (71세, 기해생) 아버지 위와 같음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上介 무정茂長 거주

비 귀단貴丹 (32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화貴化 (10세, 경자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귀단貴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8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진貴眞 (6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일향日香 (82세, 무자생) 아버지 관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비 월춘月春 (84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先 (71세, 기해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도망

비 이례二禮 (53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노랑老郎 (41세, 기사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귀천貴天 (43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 (84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자은덕者隱德 (70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자은금者隱今 (66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개이介伊 (61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비 실향失香 (57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

- 노 봉이奉伊 (55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 (101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 (117세, 계축생) 아버지 수군 최환개崔還介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 (119세, 신해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접이占伊 (105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노 준이俊伊 (77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비 내은화內隱化 (97세, 계유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노 정남丁男 (130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경주慶州  
거주  
비 연향延香 (108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天日 (104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醜春 (79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醜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도망  
노 명세明世 (56세, 갑인생) 아버지 호노 돌세堧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現. 도망  
노 금약金若 (19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을봉乙奉 (15세, 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백옥白玉 (43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 (50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서응금鋤應今 (45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감금甘金 (46세, 갑자생) 아버지 양인 사봉량斯奉良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함평咸平  
거주  
노 수만水萬 (48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私奴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적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 (46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만세萬世 (41세, 기사생) 아버지 이름은 원주元州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승僧 장성長  
城에 거주  
비 만례萬禮 (33세, 정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정읍井邑에 거주  
노 만동萬同 (28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무장茂長에 거주  
비 혼전欣田 (45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도석道石 (52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戶奴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서동五  
瑞洞에 거주  
비 소금小今 (49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장덕丈德 (70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소단小丹 (19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인봉仁奉이

거느림率

비 소대小代 (13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인봉仁奉이 거느림率

노 줄금鋤乙金 (69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이禾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매화每化 (120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창원昌原  
거주

비 정춘丁春 (115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도망

비 영옥永玉 (96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도망

비 끝량耄良 (96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도망  
제際

옹정 7년(1729, 영조5, 을유) 5월 일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서업]

행 군수 [서업]

[7자를 고쳤음. 끝]

道內面 第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第五戶 幼學辛始甲 年三十三丁丑 本寧越

父學生 鼎受

生父學生 萬挺

祖學生 慶隆

曾祖宣教郎 翊震

外祖學生 柳之濂 本瑞寧

奉母柳氏 年五十七癸丑

妻柳氏 年二十九辛巳 籍瑞寧

父學生 之模

祖成均生員 景瑞

曾祖宣教郎 耀漢

外祖學生 尹惟興 本茂松

率婢云先 年三十庚辰 父私奴四明 母戶婢云良 仰役

婢鋤云 年五十庚申 父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先興 年四十八壬戌 父私奴加應伊金 母戶婢四還 居光州

婢四桂 年五十五乙卯 父母上同 居東部

婢四良 年四十三丁卯 父母居上同

婢四京 年三十七癸酉 父母居上同



奴白伊 故  
奴二倍 年五十五乙卯 父私奴先玄 母戶婢德還 居社倉  
奴四倍 年四十六甲子 父母上同 居東部  
奴者葛 年三十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注隱乞 年六甲辰 父母居上同  
婢小艾 年二十二戊子 父人吏金海賓 母戶婢四桂 居上同  
奴黃介 年十九辛卯 父人吏黃斗益 母戶婢四良 居上同  
婢介德 年十二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四良 居上同  
奴永萬 年四十一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四玉 仰役  
奴永山 年三十九辛未 父母上同 逃  
婢豆今 年七十四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夏朴 年六十九辛丑 父母上同 居上同  
奴豆石 年七十六甲午 父母居上同  
婢亥棠 年七十二戊戌 父母居上同  
奴上仁 年五十二戊午 父戶奴夏天 母戶婢先良 居歙巨  
奴上必 年三十六甲戌 父母上同 逃  
奴仁奉 年四十八壬戌 父私奴四眞 母戶婢處女 立戶  
奴萬貴 年二十八壬午 父良人亡同 母戶婢仁丹 居豔所  
奴萬叔 年二十五乙酉 父母上同 逃  
奴老叔 年二十二戊子 父母上同 逃  
奴小萬 年六十五乙巳 父戶奴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婢內隱之 年五十六甲寅 父母上同 居上同  
奴水萬 年六十一己酉 父母上同 逃  
婢小禮 年二十三丁亥 父私奴崔山 母戶婢內隱之 居上同  
婢小才 年二十一己丑 父母居上同  
婢小丁 年十六甲午 父母居上同  
婢丁伊 年十五乙未 父母居上同  
奴順日 年六十四丙午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居東部  
奴己奉 年三十八壬申 父戶奴順日 母良女名不知居上同  
奴己先 年三十三丁丑 父母居上同  
婢貴禮 年三十庚辰 父母居上同  
奴己汗 年二十六甲申 父母居上同  
婢太眞 年二十一己丑 父母居上同

婢軟香 年六十三丁未 父良人於屯 母戶婢守良 居古阜  
 婢春禮 年四十三丁卯 父私奴次乙下只 母戶婢軟香 居上同  
 奴春下只 年三十七癸酉 父母上同 居蘇葛村 各戶  
 婢春德 年二十七癸未 父母上同居上同  
 奴月金 年七十七癸巳 父私奴禾隱文乙伊 母戶婢月生逃  
 婢月香 年七十一己亥 父母上同 逃  
 奴夏屎 年六十五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采云 逃  
 婢禮丹 年七十一己亥 父上同 母良女禮上介 居茂長  
 婢貴丹 年三十二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上同  
 婢貴化 年十庚子 父名不知 母戶婢貴丹 居上同  
 婢貴禮 年八壬寅 父母居上同  
 婢貴眞 年六甲辰 父母居上同  
 婢日香 年八十二戊子 父官奴介之 母戶婢銀香 居靈岩  
 婢月春 年八十四丙戌 父母居上同  
 婢愛先 年七十一己亥 父名不知 母戶婢日香 逃  
 婢二禮 年五十三丁巳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奴老郎 年四十一己巳 父母居上同 逃  
 奴貴天 年四十三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伊 居靈岩  
 奴七仁 年八十四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者隱德 年七十庚子 父母上同 逃  
 婢者隱今 年六十六甲辰 父母上同 逃  
 婢介伊 年六十一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居昌原  
 婢失香 年五十七癸丑 父母上同 居晉州  
 奴奉伊 年五十五乙卯 父母居上同  
 奴一生 年百一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內隱月 年百十七癸丑 父水軍崔還介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內隱伊 年百十九辛亥 父母居上同  
 婢占伊 年百五乙丑 父母上同居金海  
 奴俊伊 年七十七癸巳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逃  
 婢內隱化 年九十七癸酉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逃  
 奴丁男 年一百三十庚子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居慶州  
 婢延香 年百八壬子 父戶奴戒卜 母戶婢延春 逃  
 奴天日 年百四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奴恠春 年七十九辛卯 父戶奴恠卜 母戶婢九春 逃  
奴明世 年五十六甲寅 父戶奴玆世 母戶婢月現 逃  
奴金若 年十九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名不知 逃  
奴乙奉 年十五乙未 父母上同 逃  
婢白玉 年四十三丁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雪云 年五十庚申 父母上同 逃  
婢鋤應 年四十五乙丑 父母上同 逃  
奴甘金 年四十六甲子 父良人斯奉 良[母]戶婢玉今 居咸平  
奴水萬 年四十八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道介 年四十六甲子 父母上同 逃  
奴萬世 年四十一己巳 父元州 母戶婢仁良 僧 居長城  
婢萬禮 年三十三丁丑 父母上同 居井邑  
奴萬同 年二十八壬午 父母上同 居茂長  
婢欣田 年四十五乙丑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道石 年五十二戊午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居五瑞洞  
婢小今 年四十九辛酉 父母上同 逃  
婢丈德 年七十庚子 父私奴檢金 母戶婢壬香 逃  
婢小丹 年十九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仁奉率  
婢小代 年十三丁酉 父母上同 仁奉率  
奴鋤乙金 年六十九辛丑 父私奴禾隱文 乙伊 母戶婢月生 逃  
婢每化 年百二十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居昌原  
婢丁春 年百十五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逃  
婢永玉 年九十六甲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逃  
婢恠良 年九十六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逃  
際

雍正七年 五月 日 幼學 辛始甲[署押]

行郡守[署押]

[周挾柒字改印]

### 5-4-14) 1732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해설】 1732년(영조8) 영광군 도내면 제3 입석리 제4통에 사는 신시갑의 호구단자. 당시 36세인 신시

값은 아내가 죽어서 선산 김씨의 부인을 맞이하였다.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52명, 사내종 43명으로 95명에 달한다. 그러나 4명의 노비가 사망하였고, 1명의 노비는 방매하였다. 그런데 선대로부터 도망간 노비 30명의 명단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서류상 이들의 나이가 100살이 넘는 사람이 8명이나 된다. 이들은 광주, 무장, 함평, 영암, 창원, 진주, 공주 등지에서 살고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4통 제2호戶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36세, 정축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정수鼎受

생부生父 학생學生 만정萬挺

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익진翊震

외조부 학생學生 유지겸柳之濂 본적 서령瑞寧

봉모奉母 유씨柳氏 (60세, 계축생)

처 유씨柳氏 사망故

처 김씨金氏 (23세, 경인생) 본적 선산善山

처의 아버지 학생學生 선일善一

처의 조부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여숙汝淑

처의 증조부曾祖 학생學生 우헌友憲

처의 외조부外祖 학생學生 이영李瑩 본적 함풍咸豐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비 운선云先 (33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四明 어머니 호비 윤량云良. 양역노비

비 서운鋤云 (53세, 경신생) 아버지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戶婢 일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 (41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가응이금加應伊金 어머니 호비 사환四還.

광주光州 거주

비 사계四桂 (58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비 사랑四良 (46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비 사경四京 (40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に 거주

노 이배二倍 사망故

노 사배四倍 (49세, 갑자생) 아버지 사노 실현實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동부東部に 거주

노 자갈者葛 (33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주은결<sub>洵隱乞</sub> (9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예<sub>小艾</sub> (25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sub>人吏</sub> 김해빈<sub>金海賓</sub> 어머니 호비 사계<sub>四戒</sub>.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황개<sub>黃介</sub> (22세, 신묘생) 아버지 인리 황두익<sub>黃斗益</sub> 어머니 호비 사랑<sub>四良</sub>. 양역노비  
비 개덕<sub>介德</sub> (15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sub>甲戌</sub> 어머니 호비 사랑<sub>四良</sub>  
노 영만<sub>永萬</sub> (44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sub>自興</sub> 어머니 호비 사옥<sub>四玉</sub>  
노 영산<sub>永山</sub> (42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두금<sub>斗金</sub> (77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sub>下只</sub> 어머니 양녀 분화<sub>分化</sub>. 공주<sub>公州</sub>에 거주  
노 돌박<sub>斗朴</sub> (72세, 신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두석<sub>斗石</sub> (79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sub>亥棠</sub> (75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상인<sub>上仁</sub> (55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돌천<sub>斗天</sub> 어머니 호비 선량<sub>先良</sub> 묘장<sub>畝長</sub>에 거주  
노 상필<sub>上必</sub> 방매<sub>放賣</sub>  
노 인봉<sub>仁奉</sub> (51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sub>四眞</sub> 어머니 호비 처녀<sub>處女</sub>. 입호<sub>立戶</sub>  
노 만귀<sub>萬貴</sub> (31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망동<sub>亡同</sub> 어머니 호비 인단<sub>仁丹</sub>. 염소<sub>鹽所</sub> 거주  
노 만숙<sub>萬叔</sub> (28세, 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노숙<sub>老叔</sub> (25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소만<sub>小萬</sub> (68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sub>仁男</sub> 어머니 호비 춘이<sub>春伊</sub>. 무장<sub>茂長</sub> 거주  
비 내은지<sub>內隱之</sub> (59세, 갑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수만<sub>水萬</sub> (64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소례<sub>小禮</sub> (26세, 정해생) 아버지 사노 최산<sub>崔山</sub> 어머니 호비 내은지<sub>內隱之</sub>.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재<sub>小才</sub> (24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정<sub>小丁</sub> (19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정이<sub>丁伊</sub> (18세, 을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순일<sub>順日</sub> (67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sub>內隱金</sub> 어머니 호비 순화<sub>順化</sub>. 동부<sub>東部</sub> 거주  
노 기봉<sub>己奉</sub> (38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sub>順日</sub>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선<sub>己先</sub> (33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sub>貴禮</sub> (33세, 경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한<sub>奇汗</sub> 사망<sub>故</sub>  
비 태진<sub>太眞</sub> (24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연향軟香 (66세, 정미생) 아버지 양인 어둔이於屯伊 어머니 호비 수량水良. 소갈蘇葛  
거주노 춘하지春下只 (40세, 계유생) 아버지 사노 차을번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軟  
香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춘례春禮 사망故

비 춘덕春德 방량放良

노 월금月金 (80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이禾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월향月香 (64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逃

노 돌시芻屎 (68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사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云. 도망

비 예단禮丹 (74세, 기해생) 아버지 위와 같음 어머니 양녀 예상개. 무장茂長에 거주

비 귀단貴丹 (35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화貴化 (13세, 경자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귀단貴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11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진貴進 (9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일향日香 (85세, 무자생) 아버지 반노班奴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비 월춘月春 (87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畝 (74세, 기해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도망

비 이례二禮 (56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노랑老郎 (44세, 기사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귀천貴千 (46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 (87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자은덕者隱德 (73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자은금者隱今 (69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개이介伊 (64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비 실향實香 (60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주

노 봉이奉伊 (58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 (104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日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 (120세, 계축생) 아버지 수군 최환개崔還介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 (122세, 신해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점이占伊 (108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 노 준이俊伊 (80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비 내은화內隱化 (100세, 계유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노 정남丁男 (133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경주 慶州  
 거주  
 비 연향延香 (111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天日 (107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耑春 (82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耑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도망  
 노 명세明世 (60세, 계축생) 아버지 호노 돌세堠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現. 입호立戶  
 노 소약所若 (22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을봉乙奉 사망故  
 비 백옥白玉 (46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 (53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서응금鋤應今 (45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감금甘金 (49세, 갑자생) 아버지 양인 사봉斯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金. 함평咸平에 거주  
 노 수만水萬 (51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私奴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 (49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만세萬世 (44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원승元昇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승려僧가 되어  
 장성長城에 거주  
 비 만례萬禮 (36세, 정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정읍井邑에 거주  
 노 만동萬同 (31세, 임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흔전欣田 (48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도석道石 (55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戶奴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오서동  
 五瑞洞에 거주  
 비 소금小今 (49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장덕丈德 (73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소단小丹 (22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인봉仁奉이  
 거느림  
 비 소대小代 (19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줄금鋤乙金 (72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리禾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매화每化 (123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창원昌原  
 거주  
 비 정춘丁春 (118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도망

비 영옥永玉(99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도망  
 비 끝량雋良(99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도망  
 제際

용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9월 일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서업]

행 군수[서업]

[1자를 고쳤음. 끝.]

道內面 第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四統 第二 戶 幼學 辛始甲 年三十六 丁丑 本寧越

父 學生 鼎受

生父 學生 萬挺

祖 學生 慶隆

曾祖 宣教郎 翊震

外祖 學生 柳之濂 本瑞寧

奉母 柳氏 年六十 癸丑

妻 柳氏 故

妻 金氏 年二十三 庚寅 籍善山

父 學生 善一

祖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汝淑

曾祖 學生 友憲

外祖 學生 李瑩 本咸豐

率

婢 云仙 年三十三 庚辰 父私奴四明 母戶婢云良 仰役

婢 鋤云 年五十三 庚申 父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先興 年四十一 壬戌 父私奴加應伊金 母戶婢塞還 居光州

婢 四戒 年五十八 乙卯 父母上同 居東部

婢 四良 年四十六 丁卯 父母上同 居敵長

婢 四京 年四十 癸酉 父母上同 居東部

奴 二倍 故

奴 四倍 年四十九 甲子 父私奴實玄 母戶婢德還 居東部

奴 者曷 年三十三 庚辰 父戶奴百伊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 注隱乞 年九 甲辰 父母居上同

婢 小艾 年二十五 戊子 父人吏金海彬 母戶婢四戒 居上同



奴 黃介 年二十二辛卯 父人吏黃斗益 母戶婢四良 仰役  
婢 介德 年十五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四良  
奴 永萬 年四十四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四玉  
奴 永山 年四十二辛未 父母上同 逃  
奴 豆今 年七十七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 夏朴 年七十二辛丑 父母居上同  
奴 豆石 年七十九甲午 父母居上同  
婢 亥棠 年七十五戊戌 父母居上同  
奴 上仁 年五十五戊午 父戶奴夏天 母戶婢善良 居歙長  
奴 上必 放賣  
奴 仁奉 年五十一壬戌 父私奴四進 母戶婢處禮 立戶  
奴 萬貴 年三十一壬午 父良人望同 母戶婢仁丹 居豔所  
奴 萬叔 年二十八乙酉 父母上同 逃  
奴 老叔 年二十五戊子 父母上同 逃  
奴 小萬 年六十八乙巳 父戶奴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婢 內隱之 年五十九甲寅 父母居上同  
奴 水萬 年六十四己酉 父母上同 逃  
婢 小禮 年二十六丁亥 父私奴崔山 母戶婢內隱之 居上同  
奴 小才 年二十四己丑 父母居上同  
婢 小丁 年十九甲午 父母居上同  
婢 丁伊 年十八乙未 父母居上同  
奴 順日 年六十七丙午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居東部  
奴 奇奉 年四十一壬申 父戶奴順日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 奇先 年三十六丁丑 父母居上同  
婢 貴禮 年三十三庚辰 父母居上同  
奴 奇汗 故  
婢 太眞 年二十四己丑 父母居上同  
婢 軟香 年六十六丁未 父良人於屯伊 母戶婢水良 居蘇葛  
奴 春下只 年四十 父私奴次乙下只 母戶婢軟香 居上同  
婢 春禮 故  
婢 春德 放良  
奴 月金 年八十癸巳 父私奴禾隱文乙伊 母戶婢月生 逃  
婢 月香 年六十四己亥 父母上同 逃

奴 夏屎 年六十八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采云 逃  
 婢 禮丹 年七十四己亥 父上同 母良女禮上介 居茂長  
 婢 貴丹 年三十五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上同  
 婢 貴化 年十三庚子 父名不知 母戶婢貴丹 居上同  
 婢 貴禮 年十一壬寅 父母居上同  
 婢 貴進 年九甲辰 父母居上同  
 婢 日香 年八十五戊子 父班奴介之 母戶婢銀香 居靈岩  
 婢 月春 年八十七丙戌 父母居上同  
 婢 愛忞 年七十四己亥 父名不知 母戶婢日香 逃  
 婢 二禮 年五十六丁巳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奴 老郎 年四十四己巳 父母居上同  
 奴 貴千 年四十六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伊 居靈岩  
 奴 七仁 年八十七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 者隱德 年七十三庚子 父母上同 逃  
 婢 者隱今 年六十九甲辰 父母上同 逃  
 婢 介伊 年六十四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 實香 年六十癸丑 父母上同 居晉州  
 奴 奉伊 年五十八乙卯 父母居上同  
 奴 一生 年百四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日禮 逃  
 婢 內隱月 年百二十癸丑 父水軍崔還介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 內隱伊 年百二十二辛亥 父母居上同  
 婢 占伊年 百八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奴 俊伊 年八十癸巳 父私奴益老 母水代 逃  
 婢 內隱化 年百癸酉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奴 丁男 年百三十三庚子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居慶州  
 婢 延香 年百一十一壬子 父戶奴戒卜 母延春 逃  
 奴 天日 年百七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奴 盞春 年八十二辛卯 父戶奴盞卜 母戶婢九春 逃  
 奴 明世 年六十癸丑 父戶奴夏世 母戶婢月玄 立戶  
 奴 所若 年二十二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名不知  
 奴 乙奉 故  
 婢 白玉 年四十六丁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雪云 年五十三庚申 父母上同 逃

婢 鋤應今年四十八乙丑 父母上同 逃  
奴 甘金 年四十九甲子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居咸平  
奴 水萬 年五十一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 道介 年四十九甲子 父母上同 逃  
奴 萬世 年四十四己巳 父良人元昇 母戶婢仁良 爲僧居長城  
婢 萬禮 年三十六丁丑 父母上同 居茂長  
奴 萬同 年三十一壬午 父母居上同  
婢 欣田 年四十八乙丑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道石 年五十五戊午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居五瑞洞  
婢 小今年四十九辛酉 父母上同 逃  
婢 丈德 年七十三庚子 父私奴檢金 母戶婢壬香 逃  
婢 小丹 年二十二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仁奉率  
婢 小代 年十六丁酉 父母上同  
奴 鋤乙金 年七十二辛丑 父私奴禾隱文乙里 母戶婢月生 逃  
婢 每化 年百二十三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居昌原  
婢 丁春 年百十八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逃  
婢 永玉 年九十九甲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逃  
婢 恠良 年九十九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逃  
際

雍正十年 九月 日 幼學 辛始甲[署押]

行郡守[署押]

[周挾一字改印]

### 5-4-15) 1735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해설】 1735년(영조11)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2통에 사는 신시갑의 호구대장. 가족은 당시 39세 신시갑과 부인 김씨, 노모 유씨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55명, 사내종 44명으로 95명에 달한다. 그러나 1명의 노비가 사망하였고, 1명의 노비는 방매하였다. 종전 호구대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선대로부터 도망간 노비 28명의 명단이 서류상 기록되고 있어, 그들 가운데는 100살이 넘는 노비가 12명이나 된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2통 제4호戶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39세, 정축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정수鼎受

생부生父 학생學生 만정萬挺

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익진翊震

외조부 학생學生 유지겸柳之濂 본적 서령瑞寧

봉모奉母 유씨柳氏 (63세, [계축생])

처 김씨金氏 (26세, 경인생) 본적 선산善山

아버지 학생學生 선일善一

조부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여숙汝淑

증조부 학생學生 우헌友憲

외조부 학생學生 이영李瑩 본적 함풍咸豐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비 운선云先 (36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四明 어머니 호비 윤량云良

비 조운鋤云 (56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일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 (44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私奴 가응이금加應伊金 어머니 호비 사환四還 광  
주光州 거주

비 사계士戒 (61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랑士良 (46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경士京 (40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사배四倍 (52세, 갑자생) 아버지 사노 실현實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노 자갈者葛 (36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주은걸注隱乞 (12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예小艾 (28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人吏 김해빈金海賓 어머니 호비 사계四戒

노 황개黃介 (26세, 경인생) 아버지 인리 황두익黃斗益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양역노비

비 개덕介德 (18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노 영만英萬 (47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士玉

노 영산英山 (45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영암靈岩에 거주

비 두금豆歿 (80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주公州에 거주

노 돌박扈朴 (75세, 신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두석豆石 (82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亥棠 (78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상인上仁 (58세, 무오생) 아버지 호노 돌천堧天 어머니 호비 선량先良
- 노 인봉仁奉 (54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士眞 어머니 호비 천례天禮
- 노 만귀萬貴 (34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망동亡同 어머니 호비 인단仁丹
- 노 만숙萬菽 (31세, 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노숙老肅 (28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노 소만小萬 (71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 비 내은지內隱之 (62세, 갑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수만水萬 (674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 비 소례小禮 (30세, 정해생) 아버지 사노 최산崔山 어머니 호비 내은지內隱之.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소재小才 (27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소정小丁 (22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정이丁伊 (20세, 병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순일順日 (70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내은금內隱金 어머니 호비 순화順化
- 노 기봉己奉 (44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順日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노 기선己先 (39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귀례貴禮 (36세, 경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태진太眞 (27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연향軟香 (69세, 정미생) 아버지 양인 어둔이於屯 어머니 호비 수량水良
- 노 춘하지春下只 (43세, 계유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延香
- 노 월금月金 (83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이禾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 비 월향月香 (67세, 기해생) 부모 도망 위와 같음
- 노 돌시堧屎 (71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云. 도망
- 비 예단禮丹 (77세, 기해생) 아버지 위와 같음. 어머니 양녀 예상개禮上介 무장茂長 거주
- 비 귀단貴丹 (38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귀화貴化 (16세, 경자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귀단貴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귀례貴進 (14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일향日香 (88세, 무자생) 아버지 반노班奴 개지슈之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 비 월춘月春 (90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애선愛先 (77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일향日香. 산음山陰 거주

비 이례二禮 (59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노랑老郎 (47세, 기사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귀천貴天 (49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지玉只.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 (90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寺奴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자은덕者隱德 (76세, 경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자은금者隱今 (72세, 갑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개이介伊 (67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비 실향失香 (63세, 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주  
 노 봉이奉伊 (61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 (107세, 기사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 (123세, 계축생) 아버지 수군 최환개崔還介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 (125세, 신해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점이占伊 (111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노 준이俊伊 (83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비 내은화內隱化 (103세, 계유생) 아버지 호노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노 정남丁男 (136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경주慶州  
 거주  
 비 연향延香 (114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天日 (110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숯春 (85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숯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도망  
 노 명세明世 (63세, 계축생) 아버지 호노 돌세堦世 어머니 호비 월현月現.  
 노 금약金弱 (25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백옥白玉 (49세, 정사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 (56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서응금西應今 (51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감금甘金 (55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사봉四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노 수만水萬 (54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 (52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만세萬世 (47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원일승元一升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승려가 되  
 어 장성사長城寺에 거주  
 노 만동萬同 (34세, 임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만례萬禮 방매放賣

- 비 혼전欣田 (51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도석道石 사망故
- 노 승필升必 (28세 무자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노 승주升主 (25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매이梅伊 (21세, 을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설중매雪中梅 (17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소금小今 (52세, 신유생) 아버지 호노 생이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 비 장덕長德 (76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 비 소단小丹 (25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비 소대小代 (19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수생水生 (17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생금生今 (13세, 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금덕金德 (32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함평咸平  
거주
- 비 금개金介 (25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몽치蒙治 (22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양역노비仰役
- 노 원옥元玉 (17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기봉己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노 수동水同 (10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土京
- 비 연순延順 (7세, 기유생) 아버지 관노 영초英草 어머니 호비 소애小艾
- 노 동원同元 (10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금덕金
- 노 솔금鬃金 (75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화은문을리禾隱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 비 매화梅化 (126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창원昌原  
거주
- 비 정춘丁春 (122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영옥永玉 (102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도망
- 비 끝량耑良 (102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도망  
제際
- 옹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4월 일 유학 신시갑 [서업]  
행 군수 [서업]

道內面 第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二統 第四戶 幼學 辛始甲 年三十九丁丑 本寧越

父 學生 鼎受

生父 學生 萬挺

祖 學生 慶隆

曾祖 宣教郎 翊震

外祖 學生 柳之濂 本瑞寧

奉母 柳氏 年六十三

妻 金氏 年二十六庚寅 籍善山

父 學生 善一

祖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汝淑

曾祖 學生 友憲

外祖 學生 李瑩 本咸豐

率

婢 云先 年三十六庚辰 父私奴士明 母戶婢云良

婢 鋤云 年五十六庚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先興 年四十四壬申 父私奴加應伊金 母戶婢塞還 居光州

婢 士戒 年六十一乙卯 父母上同

婢 士良 年四十九丁卯 父母上同

婢 士京 年四十三癸酉 父母上同

奴 四倍 年五十二甲子 父私奴實玄 母戶婢德還

奴 者曷伊 年三十六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婢 注隱乞 年十二甲辰 父母上同

婢 小艾 年二十八戊子 父人吏金海彬 母戶婢四戒

奴 黃介 年二十六庚寅 父人吏黃斗翼 母戶婢士良 仰役

婢 介德 年十八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士良 仰役

奴 英萬 年四十七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士玉

奴 英山 年四十五辛未 父母上同 居靈岩

婢 豆今 年八十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 亓朴 年七十五辛丑 父母居上同

奴 豆石 年八十二甲午 父母居上同

婢 亥棠 年七十八戊戌 父母居上同

奴 上仁 年五十八戊午 父戶奴夏天 母戶婢先良

奴 仁奉 年五十四壬戌 父私奴士進 母戶婢天禮



奴 萬貴 年三十四壬午 父良人亡同 母戶婢仁丹  
奴 萬菽 年三十一乙酉 父母上同 逃  
奴 老肅 年二十八戊子 父母上同 逃  
奴 小萬 年七十一乙巳 父戶奴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婢 內隱之 年六十二甲寅 父母居上同  
奴 水萬 年六十七己酉 父母居上同  
婢 小禮 年三十丁亥 父私奴崔山 母戶婢內隱之 居上同  
婢 小丁 年二十二甲午 父母居上同  
婢 丁伊 年二十丙申 父母居上同  
奴 順日 年七十丙午 父私奴內隱金 母戶婢順化  
奴 己奉 年四十四壬申 父戶奴順日 母良女名不知  
奴 己先 年三十九丁丑 父母上同  
婢 貴禮 年三十六庚辰 父母上同  
婢 太眞 年二十七己丑 父母上同  
婢 軟香 年六十九丁未 父良人於屯 母戶婢水良  
奴 春下只 年四十三 父私奴次乙下只 母戶婢軟香  
奴 月金 年八十三癸巳 父私奴禾文乙伊 母戶婢月生 逃  
婢 月香 年六十七己亥 父母逃上同  
奴 芟屎 年七十一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彩云 逃  
婢 禮丹 年七十七己亥 父上同 母良女禮上介 居茂長  
婢 貴丹 年三十八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上同  
婢 貴化 年十六庚子 父名不知 母戶婢貴丹 居上同  
婢 貴眞 年十四壬寅 父母居上同  
婢 日香 年八十八戊子 父班奴介之 母戶婢銀香 居靈岩  
婢 月春 年九十丙戌 父母居上同  
婢 愛先 年七十七己亥 父私奴檢金 母戶婢日香 居山陰  
婢 二禮 年五十九丁巳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奴 老郎 年四十七 父母上同 逃  
奴 貴天 年四十九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只 居靈岩  
奴 七仁 年九十丙戌 父寺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 者隱德 年七十六庚子 父母上同 逃  
婢 者隱今 年七十二甲辰 父母上同 逃  
婢 介伊 年六十七己酉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 失香 年六十三癸丑 父母上同 居晉州  
 奴 奉伊 年六十一乙卯 父母居上同  
 奴 一生 年百七己巳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 內隱月 年百二十三癸丑 父水軍崔還介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 內隱伊 年百二十五辛亥 父母居上同  
 婢 占伊 年百十一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奴 俊伊 年八十三癸巳 父私奴益老 母水代 逃  
 婢 內隱化 年百三癸酉 父戶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奴 丁男 年百三十六庚子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居慶州  
 婢 延香 年百十四壬子 父戶奴戒卜 母戶婢延春 逃  
 奴 天日 年百十丙寅 父良人清卜 母戶婢禮春 逃  
 奴 歪春 年八十五辛卯 父戶奴歪卜 母戶婢求春 逃  
 奴 明世 年六十三癸丑 父戶奴夏世 母戶婢月玄  
 奴 金弱 年二十五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名不知  
 婢 白玉 年四十九丁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雪云 年五十六庚申 父母上同 逃  
 婢 西應今 年五十一乙丑 父母上同 逃  
 奴 甘金 年五十五辛酉 父良人四奉 母戶婢玉今  
 奴 水萬 年五十四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 道介 年五十二甲子 父母上同 逃  
 奴 萬世 年四十七己巳 父良人元一升 母戶婢仁良 僧居□城寺  
 奴 萬同 年三十四壬午 父母居上同 居茂長  
 婢 萬禮 放賣  
 婢 欣田 年五十一乙丑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道石 故  
 奴 升必 年二十八戊子 父戶奴道石 母良女名不知  
 奴 升主 年二十五辛卯 父母上同  
 婢 梅伊 年二十一乙未 父母上同  
 婢 雪中梅 年十七己亥 父母上同  
 婢 小今 年五十二辛酉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婢 長德 年七十六辛丑 父私奴檢金 母戶婢壬香 逃  
 婢 小丹 年二十五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 小代 年十九丁酉 父母上同

奴 水生 年十七己亥 父母上同  
 婢 生今年十三癸卯 父母上同  
 婢 金德年三十二甲申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居咸平  
 婢 金介 年二十五辛卯 父母上同  
 奴 蒙治 年二十二甲午 父母上同 仰役  
 奴 元玉 年十七己亥 父戶奴己奉 母良女名不知  
 奴 水同 年十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土京  
 婢 延順 年七己酉 父官奴英草 母戶婢小艾  
 奴 同元 年十丙午 父私奴名不知 母戶婢金德  
 奴 璽金 年七十五辛丑 父私奴禾隱文乙里 母戶婢月生 逃  
 婢 每化 年百二十六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居昌原  
 婢 丁春 年百二十二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居上同  
 婢 永玉 年百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逃  
 婢 奩良 年百二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逃  
 際  
 雍正十三年 四月 日 幼學 辛始甲[署押]  
 行郡守[署押]

### 5-4-16) 1741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해설】 1741년(영조17)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에 사는 신시갑의 호구단자. 가족은 45세 신시갑과 31세의 부인 김씨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44명, 사내종 34명으로 77명으로 9년 전에 비해 다소 줄었다. 또한 종전 호구대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선대 때 부터의 도망 노비 23명의 명단 중에는 100살이 넘는 노비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3호戶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45세, 정축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정수鼎受  
 생부生父 학생學生 만정萬挺  
 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증조부 선교랑宣敎郎 익진翊震  
 외조부 학생學生 유지겸柳之濂 본적 서령瑞寧

처 김씨金氏 (32세, 경인생) 본적 선산善山  
 아버지 학생學生 선일善一  
 조부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여숙汝淑  
 증조부曾祖 학생學生 우헌友憲  
 외조부外祖 학생學生 이영李瑩 본적 함풍咸豐

####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비 운선云先 (42세, 경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士明 어머니 호비 윤량云良. 본군本郡에 거주  
 비 조운鋤云 (62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戶婢 일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 (60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私奴 가응加應 어머니 같은 비同婢 새환塞還  
 광주光州에 거주  
 비 사계士戒 (67세, 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동부東部에 거주  
 비 사랑士良 (55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경士景 (49세, 계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사배士倍 (58세, 갑자생) 아버지 사노 실현失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유성개有成介 (30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士倍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함. 거주지  
 는 위와 같음  
 노 자갈者葛 (42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주은걸注隱乞 (18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애小艾 (34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人吏 김해빈金海賓 어머니 호비 사계士戒. 거주  
 지는 위와 같음  
 비 기봉己奉 (50세, 임신생) 아버지 속량노비贖奴 순일順一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  
 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선己先 (45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42세, 경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태진太眞 (33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개덕介德 (24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양역노비仰役  
 노 영만永萬 (53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자흥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士玉. 본군本郡에 거주  
 노 영산永山 (51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양암靈岩에 거주  
 비 두금豆寸 (86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주公州에 거주  
 노 돌박忽朴 (81세, 신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두석豆石 (88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亥唐 (84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인봉仁奉 (60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士辰 어머니 호비 처례處禮  
 노 만귀萬貴 (40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망동亡同 어머니 호비 인단仁丹 염소에 거주  
 노 만숙萬肅 (37세, 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함평咸平 영풍永豊에 거주  
 노 소만小萬 (77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노 수만水萬 (73세, 기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춘하지春下只 (49세, 계유생) 아버지 사노 차을변지次乙下只 어머니 호비 연향軟香  
 노 월금月金 (89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문을리禾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월향月香 (73세, 기해생) 부모와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父母逃上同  
 노 돌시堧屎 (77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云. 도망  
 비 귀단貴丹 (44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무장茂長 거주  
 비 귀화貴化 (22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선종善宗 어머니 호비 귀단貴丹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진貴辰 (20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업덕業德 (17세, 을사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일향一香 (94세, 무자생) 아버지 사노 개지介之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비 월봉月春 (96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애선愛先 (83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일향一香. 산음山陰 거주  
 비 이례二禮 (65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노 노랑老郎 (53세, 기사생) 부모와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父母逃上同  
 노 귀천貴天 (55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 (96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자은덕者隱德 (82세, 경자생) 부모와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비 개년介年 (73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덕춘德春 창원昌原에 거주  
 비 실향實香 (72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노 봉이奉伊 (67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 (113세, 기사생) 아버지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비 내은월內隱月 (129세, 계축생)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汗根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에 거주  
 비 점이占伊 (117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 (131세, 신해생) 부모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화內隱化 (119세, 계유생) 아버지 사노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내은월內隱月. 진

## 주晉州에 거주

노 준이俊伊 (89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노 정남丁南 (142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무주茂州  
에 거주

비 연향延香 (120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千日 (116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皃春 (91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皃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도망

노 소야지所也只 (31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백옥白玉 (55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 (62세, 경신생) 부모 및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비 서응금鋤應今 (57세, 을축생) 부모 및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비 흥금欣金 (51세, 신미생) 부모 및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노 감금甘金 (61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노 수만水萬 (60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 年五十八 갑자생) 부모 및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노 만동萬同 (40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원승元升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무장茂長 거주

노 승필升必 (34세, 무자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에  
거주

노 승주升柱 (31세, 신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매이每伊 (27세, 을미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설중매雪中梅 (23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소금小今 (55세, 정묘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비 장덕丈德 (81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비 소단小丹 (31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  
거주

비 소대蘇代 (25세, 정유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 (23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생금生今 (19세, 계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금이덕金伊德 (38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함평咸  
평에 거주

비 금이개金伊介 (31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본군本郡에 거주

노 몽치蒙治 (28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안역노비

노 원옥元玉 (23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기봉己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

거주

노 수도水道 (16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土景.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연순延旬 (13세, 기유생) 아버지 관노 영초永草 어머니 호비 소애小艾

노 동원同元 (16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순봉順奉 어머니 호비 금이덕金伊德 함평咸平에  
거주

노 설금鬚金 (81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주은문을리注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정춘丁春 (127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창원昌原에 거주

비 맹화孟化 (132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영옥永玉 (108세)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도망

비 춘양春陽 (108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도망

끝際

건륭 6년(1741, 영조17) 5월 일 유학 신시갑辛始甲

점임 행 현감[서업]

[주협자개인]

道內面 第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三戶 幼學辛始甲 年四十五丁丑 本寧越

父 學生 鼎受

生父 學生 萬挺

祖 學生 慶隆

曾祖 宣教郎 翊震

外祖 學生 柳之濂 本瑞寧

妻金氏 年三十一庚寅 籍善山

父 學生 善一

祖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汝淑

曾祖 學生 友憲

外祖 學生 李瑩 本咸豐

率

婢 云仙 年四十二庚辰 父私奴士明 母戶婢云良 居本郡

婢 鋤云 年六十二庚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先興 年六十壬戌 父私奴加應 母同婢塞還 居光州  
 婢 士戒 年六十七乙卯 父母上同 居東部  
 婢 士良 年五十五丁卯 父母上同  
 婢 士景 年四十九癸酉 父母居上同  
 奴 士倍 年五十八甲子 父私奴失玄 母同婢德還 居上同  
 婢 有成介 年三十壬辰 父戶奴士倍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 者曷 年四十二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 注隱乞 年十八甲辰 父母居上同  
 婢 小艾 年三十四戊子 父人吏金海彬 母戶婢士戒 居上同  
 奴 己奉 年五十壬申 父贖奴順一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 己先 年四十五丁丑 父母居上同  
 婢 貴禮 年四十二庚辰 父母居上同  
 婢 太眞 年三十三己丑 父母居上同  
 婢 介德 年二十四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士良 仰役  
 奴 永萬 年五十三己巳 父良人自興 母戶婢士玉 居本郡  
 奴 永山 年五十一辛未 父母上同 居靈岩  
 婢 豆今 年八十六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奴 夏朴 年八十一辛丑 父母居上同  
 奴 豆石 年八十八甲午 父母居上同  
 婢 亥唐 年八十四戊戌 父母居上同  
 奴 仁奉 年六十壬戌 父私奴士辰 母戶婢處禮  
 奴 萬貴 年四十壬午 父良人亡同 母戶婢仁丹 居?所  
 奴 萬肅 年三十七乙酉 父母上同 居咸平永豐  
 奴 小萬 年七十七乙巳 父戶奴仁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奴 水萬 年七十三己酉 父母居上同  
 奴 春下只 年四十九癸酉 父私奴次乙下只 母戶婢軟香  
 奴 小丁 年二十八甲午 父私奴崔山 母戶婢內隱之 居茂長  
 奴 月金 年八十九癸巳 父私奴禾文乙里 母戶婢月生 逃  
 婢 月香 年七十三己亥 父母逃上同  
 奴 夏屎 年七十七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采云 逃  
 婢 貴丹 年四十四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茂長  
 婢 貴化 年二十二庚子 父私奴善宗 母戶婢貴丹 居上同  
 婢 貴辰 年二十壬寅 父母居上同



婢 業德 年十七乙巳 父母居上同  
婢 一香 年九十四戊子 父私奴介之 母戶婢銀香 居靈岩  
婢 月春 年九十六丙戌 父母居上同  
婢 愛先 年八十三己亥 父私奴檢金 母戶婢一香 居山陰  
婢 二禮 年六十五丁巳 父戶奴春生 母良女名不知 逃  
奴 老郎 年五十三己巳 父母逃上同  
奴 貴天 年五十五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伊 居靈岩  
奴 七仁 年九十六丙戌 父私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 者隱德 年八十二庚子 父母逃上同  
婢 介年 七十三己酉 父戶奴戒生 母德春 居昌原  
婢 實香 年七十二庚戌 父母上同 居晉州  
奴 奉伊 年六十七乙卯 父母居上同  
奴 一生 年百十三己巳 父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 內隱月 年百二十九癸丑 父水軍崔汗根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 占伊 年百十七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婢 內隱伊 年百三十一辛亥 父母上同 居晉州  
婢 內隱化 年百十九癸酉 父私奴不知 母戶婢內隱月 居晉州  
奴 俊伊 年八十九癸巳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逃  
奴 丁南 年百四十二庚子 父戶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居茂州  
婢 延香 年百二十壬子 父戶奴戒卜 母戶婢延春 逃  
奴 千日 年百十六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奴 歪春 年九十一辛卯 父戶奴歪卜 母戶婢九春 逃  
奴 所也只 年三十一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 白玉 年五十五丁卯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 雪云 年六十二庚申 父母逃上同  
婢 鋤應 年五十七乙丑 父母逃上同  
婢 欣金 年五十一辛未 父母逃上同  
奴 甘金 年六十一辛酉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奴 水萬 年六十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 道介 年五十八甲子 父母逃上同  
奴 萬同 年四十壬午 父良人元升 母戶婢仁良 居茂長  
奴 升必 年三十四戊子 父戶奴道石 母良女名不知 居本郡  
奴 升柱 年三十一辛卯 父母居上同

婢 每伊 年二十七乙未 父母居上同  
 婢 雪中梅 年二十三己亥 父母居上同  
 婢 小今 年五十五丁卯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婢 丈德 年八十一辛丑 父私奴檢金 母戶婢壬香 逃  
 婢 小丹 年三十一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居本郡  
 婢 蘇代 年二十五丁酉 父母居上同  
 奴 水生 年二十三己亥 父母居上同  
 婢 生今 年十九癸卯 父母居上同  
 婢 金伊德 年三十八甲申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居咸平  
 婢 金伊介 年三十一辛卯 父母上同 居本郡  
 奴 蒙治 年二十八甲午 父母上同 仰役  
 奴 元玉 年二十三己亥 父戶奴己奉 母良女名不知 居本郡  
 奴 水道 年十六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景 居上同  
 婢 延甸 年十三己酉 父官奴永草 母戶婢小艾  
 奴 同元 年十六丙午 父私奴順奉 母戶婢金伊德 居咸平  
 奴 鏗金 年八十一辛丑 父私奴注隱文乙伊 母戶婢月生 逃  
 婢 丁春 年百二十七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居昌原  
 婢 孟化 年百三十二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 永玉 年百八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逃  
 婢 春陽 年百八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逃  
 際  
 乾隆六年 五月 日 幼學 辛始甲  
 兼任行縣監[署押]  
 [周挾 字改印]

#### 5-4-17) 1744년 신시갑 처 김씨 호구단자

【해설】 1744년(영조17)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에 사는 고 신시갑의 처 김씨의 호구단자. 가족은 35세김씨 외에 10살의 아들 성장이 있다. 성장은 태성으로 개명된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계집종 49명, 사내종 39명으로 총 88명이다. 이들 중에는 도망노비는 16명, 사망노비 3명, 팔거나, 방매한 6명의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비해 노비 이동이 보이고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호戶 고故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처 김씨(35세, 경인생) 본적 선산善山  
아버지 학생學生 선일善一  
조부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여숙汝淑  
증조부 학생學生 우헌友憲  
외조부 학생學生 이영李瑩 본적 함풍咸豐  
아들 성장聖長(10세, 을묘생)

솔거하는 노비 명단率

비 운선云先 사망故  
비 서운鋤云(65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戶婢 월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63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가응이加應伊 어머니 같은 비同婢 새환塞還.  
광주光州에 거주  
비 사계士戒 사망故  
비 사랑四良(58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경士景(52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군내郡內에 거주  
노 사배四倍(61세, 갑자생) 아버지 사노 실현實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유성개有成介(33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四倍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  
는 위와 같음  
노 자갈리者葛里(45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  
지는 위와 같음  
비 주은걸주隱乞(21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애小艾(37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人吏 김해빈金海賓 어머니 호비 사계士戒. 무장  
茂長에 거주  
비 기봉起奉(53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順日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기선起先(48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례貴禮 방매放賣  
비 태진太眞(36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개덕介德(27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노 영만英萬(58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朴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四玉. 본군本郡에 거주  
노 영산英山(54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영암靈岩에 거주

- 비 두질금豆此今 (89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각이雀伊 어머니 양녀 분화分化. 공주公州  
에 거주
- 노 돌박堠朴 (84세, 신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두질석豆此石 (91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해당亥當 (87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인봉仁奉 (63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사진四辰 어머니 호비 처례處禮
- 노 만귀萬貴 판賣
- 노 만숙萬肅 판賣
- 노 소만小萬 (80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 노 수만水萬 (80세, 기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노 소정小丁 (31세, 갑오생) 아버지 사노 풍산豐山 어머니 호비 내은지內隱之 무장茂長에  
거주
- 노 춘하지春下只 사망故
- 노 월금月金 (92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문을리禾文乙里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 비 월향月香 (66세, 기해생) 부모 도망
- 노 돌시堠屎 (80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云. 도망
- 비 귀화貴化 판賣
- 비 귀단貴丹 (47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무장茂長 거주
- 비 귀진貴辰 (23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업덕業德 판賣
- 비 일향日香 (97세, 무자생) 아버지 사노 가이可伊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 비 월봉月春 (99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출업出業
- 비 애선愛先 (83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일향一香. 산음山陰 거주
- 비 이례二禮 (68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 노 노랑老郎 (56세, 기사생) 부모와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 노 귀천貴天 (58세, 정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이玉伊. 영암靈岩 거주
- 노 칠인七仁 (99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 비 자은덕者隱德 (85세, 경자생) 부모와 도망한 것이 위와 같음
- 비 개덕介德 (76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덕춘德春 창원昌原에 거주
- 비 실향實香 (75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 노 봉이奉伊 (70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 노 일생一生 (116세, 기사생) 아버지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 비 내은월內隱月 (132세, 계축생)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汗根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에 거주

비 점이占伊 (120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 (134세, 신해생) 부모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화內隱化 (121세, 계유생) 아버지 사노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내은월內隱月.  
진주晉州에 거주

노 준이俊伊 (92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호비 수대水代. 도망

노 정남丁南 (145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호비 자근개者斤介. 무주茂州  
에 거주

비 연향延香 (123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千日 (119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醜春 (94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醜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노 소야지所也只 (34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백옥白玉 (58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 (65세, 경신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비 서응금鋤應今 (60세, 을축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비 흥금欣金 (54세, 신미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노 감금甘金 (64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金

노 수만水萬 (63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 (61세, 갑자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노 만동萬同 (43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원승元升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무장茂長 거주

노 승필升必 (37세, 무자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에  
거주

노 승주升柱 (34세, 신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매[이]每[伊] 판賣

비 설중매雪中梅 (25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소금小寸 (58세, 정묘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비 장덕長德 (84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덕금德金 어머니 호비 사향士香. 도망

비 소단小丹 (34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에  
거주

비 소대小代 (28세, 정유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 (26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생금生寸 (22세, 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금덕金德 (41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함평咸平에

거주

비 금계金介 (34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오서동五瑞洞에 거주

노 몽치蒙治 (31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원옥元玉 (26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기봉己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에  
거주노 수도水道 (19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士京.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연순軟順 (16세, 기유생) 아버지 관노 영초英草 어머니 호비 소애小艾

노 동원同元 (19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순봉順奉 어머니 호비 금덕金德

노 설금黓金 (84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주은문을리注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정춘丁春 (130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창원昌原에 거주

비 맹화孟化 (135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영옥永玉 (111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비 춘양春陽 (111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끝際

## 행 군수[서업]

道內面 第三 立石里戶籍單子

第一統 第二戶 故幼學辛始甲 妻金氏 年三十五庚寅 籍善山

父學生 善一

祖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汝淑

曾祖 學生 友憲

外祖 學生 李瑩 本咸豐

子 聖長 年十乙卯

率

婢云先故

婢鋤云 年六十五庚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先興 年六十三壬戌 父私奴加應伊 母同婢塞還 居光州 婢士戒 故

婢四良 年五十八丁卯 父母上同 婢士景 年五十二癸酉 父母上同 居郡

內 奴四倍 年六十一甲子 父私奴實玄 母同婢德還 居上同 婢有成

介 年三十三壬辰 父戶奴四倍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者曷里 年四十五

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婢注隱乞 年二十一甲辰 父母

居上同 婢小艾 年三十七戊子 父人吏金海彬 母戶婢士戒 居茂長 奴

起奉 年五十三壬申 父戶奴順日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起先 年四十八丁丑 父母居上同 婢貴禮 放賣 婢太眞 年三十六己丑 父母居上同 婢介德 年二十七戊戌 父私奴甲 戌 母戶婢士良 奴英萬 年五十八己巳 父良人朴自興 母戶婢四玉 居本郡 奴英山 年五十四辛未 父母上同 居靈岩 婢豆叱 今年八十九庚申 父戶奴霍伊 母良女分化 居公州奴 芻朴 年八十四辛丑 父母居上同 奴豆叱石 年九十一甲午 父母居上同 婢 亥當 年八十七戊戌 父母居上同 奴仁奉 年六十三壬戌 父私奴四進 母戶婢處禮 奴萬貴賣 奴萬肅賣 奴小萬 年八十乙巳 父戶奴仁 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奴水萬 年八十己丑 父母居上同 奴小丁 年三十一甲午 父私奴豐山 母戶婢內隱之 居茂長 奴春下只 故 奴月金 年九十二癸巳 父私奴禾文乙里 母戶婢月生逃 婢月香 年六十六己亥 父母逃 奴芻年 年八十乙巳 父戶奴牙生 母良女采云 逃 奴貴化賣婢 貴丹 年四十七戊寅 父私奴汗白 母戶婢禮丹 居茂長 婢貴眞 年二十三壬寅 父母居上同 婢業德賣 婢日香 年九十七戊子 父私奴介伊 母戶婢銀香 居靈岩 婢月春 年九十九丙戌 父母居上同 出業 先 年八十六己亥 父私奴檢金 母戶婢日香 居山陰 婢二禮 年六十八丁巳 父戶奴春生 母良女名不知 逃 奴老郎 年五十六己巳 父母居上同 奴貴千 年五十八丁卯 父名不知 母戶婢玉只 居靈岩 奴七仁 年九十九丙戌 父私奴介金 母戶婢壬香 逃 婢者隱德 年八十五庚子 父母逃上同 婢介德 年七十六己丑 父戶奴戒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實香 年七十五庚戌 父母上同 居晉州 奴奉伊 年七十乙卯 父母居上同 奴一生 年百十六己巳 父私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內隱月 年百三十二癸丑 父水軍崔汗根 母戶婢臥隱西非 居晉州 婢占伊 年百二十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婢內隱伊 年百三十四辛亥 父母上同 居晉州 婢內隱化 年百二十一癸丑 父私奴不知 母戶婢內隱月 居晉州 奴準伊 年九十二癸巳 父私奴益老 母戶婢水代 逃 奴丁南 年百四十五庚子 父私奴丁云 母戶婢者斤介 居慶州 婢延香 年百二十三壬子 父私奴戒卜 母戶婢延春 逃 奴千日 年百十九丙寅 父良人青卜 母戶婢禮春 逃 奴黍春 年九十四辛卯 父戶奴黍卜 母戶婢九春 奴所也只 年三十四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白玉 年五十八丁卯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雪云 年六十五庚申 父母逃上同 婢鋤應 今年六十乙丑 父母逃上同 婢欣金 年五十四辛未 父母逃上同 奴一金 年六十四辛酉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奴水萬 年六十三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長德 逃 婢道

介年六十一甲子 父母逃上同 奴萬同年 四十三壬午 父良人元升 母戶  
 婢仁良 居茂長 奴升必 年三十七戊子 父戶奴道石 母良女名不知 居  
 本郡 奴升主 年三十四辛卯 父母居上同 婢每[伊]賣 婢雪中梅 年  
 二十五己亥 父母居上同 婢小今 年五十八丁卯 父戶奴生伊 母良女  
 名不知 逃 婢長德 年八十四辛丑 父私奴德金 母戶婢士香 逃 婢小丹  
 年三十四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居本郡 婢小代 年二十八  
 丁酉 父母居上同 奴水生 年二十六己亥 父母居上同 婢生今 年二十  
 二癸卯 父母上同 婢金德 年四十一甲申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居  
 咸平 婢金介 年三十四辛卯 父母上同 居五瑞洞 奴蒙治 年三十  
 一甲午 父母上同 奴元玉 年二十六己亥 父戶奴己奉 母良女名不知 居  
 郡內 奴水道 年十九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京 居上同 婢軟  
 順 年十六己酉 父官奴英草 母戶婢小艾 奴同元 年十九丙午 父私  
 奴順奉 母戶婢金德 奴鏗金 年八十四辛丑 父私奴注隱文乙伊 母戶  
 婢月生逃 婢丁春 年百三十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居昌原 婢  
 孟化 年百三十五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婢永玉 年百十一甲  
 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婢春陽 年百十一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際

行郡守 [署押]

[周挾字改印]

### 5-4-18) 1747년 과부 김씨 호구단자

【해설】 1744년(영조17)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3통에 사는 고 신시갑의 처 김씨의 호구단자. 가족  
 은 38세 김씨 외에 13살의 아들 태성이 있다. 이 아들은 처음 이름은 성장이었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  
 는 계집종 44명, 사내종 34명으로 총 78이다. 3년 전에 비해 10명이 줄었다. 78명 속에는 도망노비는  
 19명, 사망노비 1명, 1명의 판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

제3통 제4호戶 과부寡婦 김씨金氏 (38세, 경인생) 본적 선산善山

아버지 학생學生 선일善一

조부 절충장군折衝將軍 행행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여숙汝淑

증조부 학생學生 우현友憲



외조부 학생學生 이영李瑩 본적 함풍咸豊  
솔거하는 아들 태성兌成(13세, 을묘생)

비 서운鋤云(68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戶婢 월향月香. 도망  
노 선흥先興(66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私奴 가응리加應里 어머니 같은 비同婢 새환塞還.  
광주光州에 거주

비 사랑士良(61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사경士京(55세, 계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군내郡內에 거주

노 사배士倍(64세, 갑자생) 아버지 사노 실현實玄 어머니 호비 덕환德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유성개有成介(36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四倍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  
는 위와 같음

노 자갈者葛(48세, 경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주은걸注隱乞(24세, 갑진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소애小艾(40세, 무자생) 아버지 인리人吏 김해빈金海賓 어머니 호비 사계士戒. 무장  
茂長에 거주

비 기봉己奉(56세, 임신생) 아버지 호노 순일順一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군내群內에  
거주

노 기선己先(51세, 정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태진太眞(39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개덕介德(30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四良 본면本面に 거주

비 두질금豆叱寸(89세, 경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공주公  
州에 거주

노 영산英山(57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박자흥朴自興 어머니 호비 사옥四玉. 영암靈岩에  
거주

노 돌박忽朴(87세, 신축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노 두질석豆叱石(94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공주公州에 거주

비 해당亥棠(90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소만小萬(8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인남仁男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무장茂長 거주

노 수만水萬(89세, 기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소정小丁(34세, 갑오생) 아버지 사노 풍산豐山 어머니 호비 내은지內隱之 무장茂長  
거주

- 노 월금月金(95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화문을이 禾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월향月香(69세, 기해생) 부모 위와 같음. 도망
- 노 돌시 纒屎(83세, 을사생) 아버지 호노 아생牙生 어머니 양녀 채운采云. 도망  
 비 귀단貴丹(50세, 무인생) 아버지 사노 한백汗白 어머니 호비 예단禮丹 무장茂長에 거주  
 비 귀진貴辰(26세, 임인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일향一香(100세, 무자생) 아버지 사노 개이介伊 어머니 호비 은향銀香 영암靈岩 거주  
 비 월춘月春(102세, 병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채선蔡先(89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일향一香. 산음山陰 거주  
 비 이례二禮(71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춘생春生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 노 노랑老郎(59세, 기사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귀천貴千(71세, 정사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옥지玉只. 영암靈岩 거주  
 노 칠인七仁(102세, 병술생) 아버지 사노 개금介金 어머니 호비 임향壬香. 도망
- 비 자은덕者隱德(88세, 경자생) 부모 위와 같음. 도망  
 비 개덕介德(79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戒生 어머니 덕춘德春. 창원昌原 거주  
 비 실향失鄉(78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 노 봉이奉伊(73세, 을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일생一生(109세, 기사생) 아버지 봉생奉生 어머니 양녀 일례一禮. 도망
- 비 내은월內隱月(135세, 계축생) 아버지 수근 최한근崔汗根 어머니 호비 와은서비臥隱  
 西非. 진주晉州 거주
- 비 점이占伊(120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 거주  
 비 내은이內隱伊(137세, 신해생) 부모 위와 같음. 진주晉州 거주  
 비 내은화內隱化(123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이름은 모름 어머니 같은 비同婢 내은월  
 內隱月. 진주晉州 거주
- 노 준이俊伊(95세, 계사생) 아버지 사노 익노益老 어머니 같은 비 수대水代. 도망  
 노 정남丁南(148세, 경자생) 아버지 호노 정운丁云 어머니 같은 비 자근개者斤介. 경주  
 慶州거주
- 비 연향延香(126세, 임자생) 아버지 호노 계복戒卜 어머니 호비 연춘延春. 도망  
 노 천일千日(112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청복靑卜 어머니 호비 예춘禮春. 도망  
 노 끝춘醜春(97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끝복醜卜 어머니 호비 구춘九春  
 노 소야지所也只(37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 비 백옥白玉(61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노 설운雪云(68세, 경신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비 서응금 鋤應今(63세, 을축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 비 혼금欣金(57세, 신미생) 부모 및 도망함이 위와 같음  
노 감금甘金(67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사봉士奉 어머니 호비 옥금玉今  
노 수만水萬(67세, 임술생) 아버지 사노 원금元金 어머니 호비 장덕長德. 도망  
비 도개道介(64세, 갑자생) 부모 위와 같음. 도망  
노 만동萬同(46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원승元升 어머니 호비 인량仁良. 무장茂長 거주  
노 승필升必(40세, 무자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  
거주  
비 설중매雪中梅(28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승주升圭(37세, 신묘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소금小今(61세, 정묘생) 아버지 호노 생이生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도망  
비 장덕長德(87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덕금德金 어머니 호비 사향四香. 도망  
비 소단小丹(37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  
거주  
비 소대小代(31세, 정유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29세, 기해생) 부모와 거주지가 위와 같음  
비 금덕金德(44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함평咸平  
거주  
비 금개金介(37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본면本面に 거주  
노 몽치蒙治(34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원옥元玉(29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기봉己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본군本郡  
거주  
노 수도水道(22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士京.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동원同元(22세, 병오생) 아버지 사노 순봉順奉 어머니 호비 금덕金德  
노 설금설金(87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주은문을리注隱文乙伊 어머니 호비 월생月生.  
도망  
비 정춘丁春(133세, 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맹화孟化 창원昌原에 거주  
비 맹화孟化(148세, 경술생) 아버지 호노 울산鬱山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영옥永玉(104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복례卜禮  
비 춘양春陽(104세, 갑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애화愛化  
노 태건太巾(25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기봉己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군내郡內  
거주  
노 □재□才(18세, 경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수진水眞 (19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기선己先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옥은검정目隱檢丁 (15세, 계축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귀화貴化 (25세, 계묘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례□禮 군내郡內 거주  
 비 범덕凡德 (18세, 경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쾌□快□ (8세, 신유생) 아버지 관노 해종亥宗 어머니 호노 태진太眞  
 노 춘계春桂 (15세, 계축생) 아버지 호노 □갈□曷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시□時 (9세 기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상득上得 (3세, 기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사읍금沙邑金 (경신생) 아버지 사노 사읍사이沙邑舍伊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노 청룡靑龍 (7세, 신유생) 아버지 이름은 모름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노 갑룡甲龍 (5세, 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행군수[서업]

[주협자개인]

道內面 第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三統第四戶 寡婦金氏 年三十八庚寅 籍善山

父 學生 善一

祖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汝淑

曾祖 學生 友憲

外祖 學生 李瑩 本咸豐

率子 兌成 年十三乙卯

婢 鋤云 年六十八庚申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先興 年六十

六壬戌 父私奴加應里 母同婢塞還 居光州 婢士良 年六十一丁卯 父母

上同 婢士京 年五十五癸酉 父母上同 居郡內 奴士倍 年六十四甲子 父私

奴實玄 母同婢德還 居上同 婢有成介 年三十六壬辰 父戶奴四倍

母良女名不知 居上同 奴者曷 年四十八庚辰 父戶奴白伊 母良女

名不知 居上同 婢注隱乞 年二十四甲辰 父母居上同 婢小艾 年四十

戊子 父人吏金海彬 母戶婢士戒 居茂長 婢生今 年二十五癸卯父

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仰役 奴太伊 年三十一丁酉 父戶奴尙

仁 母私婢愛先 仰役 奴己奉 年五十六壬申 父戶奴順一 母良女名不知

居郡內 奴己先 年五十一丁丑 父母居上同 婢太眞 年三十九己丑 父

母居上同 婢己德 年三十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四良 居本面 婢

豆叱今 年八十九庚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名不知 居公州 奴英山 年

五十七辛未 父良人朴自興 母戶婢四玉 居靈岩 奴芑朴 年八十七  
 辛丑 父戶奴下只 母良女名不知 奴豆叱石 年九十四甲午 父母上同 居公  
 州 婢亥棠 年九十戊戌 父母居上同 奴小萬 年八十三乙巳 父戶奴仁  
 男 母戶婢春伊 居茂長 奴水萬 年九十九己丑 父母居上同 奴小丁  
 年三十四甲午 父私奴豐山 母戶婢內隱之居上同 奴月金 年九十五  
 癸巳 父私奴禾文乙伊 母同婢月生 逃 婢月香 年六十九己亥 父母  
 逃上同 奴芑屎 年八十三乙巳 父同奴牙生 母良女采云 逃 婢貴  
 丹 年五十戊寅 父私奴汗白 母同婢禮丹 居茂長 婢貴眞 年  
 二十六壬寅 父母居上同 婢一香 年百戊子 父私奴介伊 母同婢恩  
 香 居靈岩 婢月春 年百二丙戌 父母居上同 奴蔡先 年八十九己  
 亥 父私奴檢金 母戶婢一香 居山陰 婢二禮 年七十一丁巳 父同奴  
 春生 母良女名不知 逃 奴老郎 年五十九己巳 父母居上同 奴貴千 年  
 七十一丁巳 父名不知 母同婢玉只 居靈岩 奴七仁 年百二丙戌 父私奴  
 介 金母同婢士香 逃 婢者隱德 年八十八庚子 父母逃上同 婢介德  
 年七十九己丑 父同奴桂生 母同婢德春 居昌原 婢失香 年七十八  
 庚戌 父母上同 居晉州 奴奉伊 年七十三乙卯父母 居上同 奴一生  
 年百九己巳 父私奴奉生 母良女一禮 逃 婢內隱月 年百三十五癸  
 丑 父水軍崔汗根 母同婢臥隱西非 居晉州 婢占伊 年百二十三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婢內隱伊 年百三十七辛亥 父母上同 居晉州婢  
 內隱化 年百二十三癸丑 父私奴名不知 母同婢內隱月 居晉州 奴俊  
 伊 年九十五癸巳 父私奴益老 母同婢水代 逃 奴丁男 年百四十八庚  
 子 父私奴丁云 母同婢者斤介 居慶州 婢延香 年百二十六壬子  
 父私奴戒卜 母同婢延春 逃 奴千日 年百十二丙寅 父良人春卜 母  
 戶婢禮春 逃 奴恠春 年九十七辛卯 父戶奴末卜 母同婢九春 奴所  
 也只 年三十七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白玉 年六十一丁卯 父  
 私奴班松 母戶婢月香 逃 奴雪云 年六十八庚申 父母逃上同 婢  
 鋤應今 年六十三乙丑 父母逃上同 婢欣金 年五十七辛未 父母逃  
 上同 奴一金 年六十七辛酉 父良人士奉 母戶婢玉今 奴水萬 年六十七  
 壬戌 父私奴元金 母戶婢丈德 逃 婢道介 年六十四甲子 父母逃上同  
 奴萬同 年四十六壬午 父良人元升 母戶婢仁良 居茂長 奴升必  
 年四十戊子 父戶奴道石 母良女名不知 居本郡 婢雪中梅 年二十  
 八己亥 父母居上同 奴升主 年三十七辛卯 父母居上同 婢小今  
 年六十一丁卯 父戶奴生伊 母良女名不知 逃 婢長德 年八十七辛丑 父

私奴德金 母戶婢四香 逃婢小丹 年三十七辛卯 父戶奴仁奉 母良女  
 名不知 居本面 婢小代 年三十一丁酉 父母居上同 奴水生 年二十九己亥  
 父母居上同 婢金德 年四十四甲申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居咸平  
 婢金介 年三十七辛卯 父母上同 居本面 奴蒙治 年三十四甲午 父母上  
 同 奴元柱 年二十九己亥 父戶奴己奉 母良女名不知 奴水道 年二十二  
 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京 居上同 奴同元 年二十二丙午 父私奴  
 順奉 母戶婢金德 奴鏗金 年八十七辛丑 父私奴注隱文乙金 母戶婢  
 月生 逃婢丁春 年百三十三乙卯 父名不知 母戶婢孟化 居昌原 婢孟  
 化 年百四十八庚戌 父戶奴鬱山 母良女名不知 婢英玉 年百四甲戌  
 父名不知 母戶婢卜禮 婢春陽 年百四甲戌 父名不知 母戶婢愛化  
 奴太巾 年二十五癸卯 父戶奴己奉 母良女名不知 居郡內 奴  
 二才 年十八庚戌 父母居上同 奴水眞 年十九己酉 父戶奴己先 母良  
 女名不知 婢目隱檢丁 年十五癸丑 父母居上同 婢貴化 年二十五癸卯  
 父名不知 母戶婢□禮 居郡內 婢凡德 年十八庚戌 父母居上同 奴快得  
 年八辛酉 父官奴亥宗 母戶奴太眞 奴春桂 年十五癸丑 父戶奴□  
 曷 母良女名不知 婢時 年九己未 父母上同 奴上得 年三己丑 父母上  
 同 奴沙邑金 年庚申 父私奴沙邑舍伊 母戶婢有成介 奴青  
 龍 年七辛酉 父名不知 母戶婢注隱乞 奴甲龍 年五癸亥 父母上同

行郡守[署押]

[周挾字改印]

#### 5-4-19) 1759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59년(영조35) 도내면 입석리 제2통 제5에 사는 유학 신태성이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구 단자. 가족은 길러주신 어머니 김씨와 아내 정씨가 있다. 그런데,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에 대해 천구와 노비를 나눠 놓은 것이 특색이다. 천구는 모두 29명(사내종 14명, 계집종 15명), 노비는 21명(사내종 5명, 계집종 16명)이었다.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2통 제5호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25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봉모奉母 김씨金氏 (50세, 경인생)

처妻 정씨鄭氏 (32세, 무신생), 본적 동래東萊  
아버지 학생學生 학선學先  
조부 통덕랑通德郎 재영載瑛  
증조부 선무랑宣務郎 원화元和  
외조부 학생學生 송형宋珩, 본적 신평新平

친구賤口

비 개덕이介德 (42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노 태이太伊 (43세, 정유생) 아버지 호노 상인尙仁 어머니 사비 애선愛先  
노 원태元太 (19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동비 개덕이介德 양역노비仰役  
비 사랑士良 (72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가응리加應里 어머니 호비 새환塞還  
비 유성개有姓介 (47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土拜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읍내  
거주  
노 자갈이者葛伊 사망故  
비 준걸이準乞伊 (36세, 갑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남편  
이세태李世太 흥덕興德 용동공龍洞谷에 거주  
비 납화納化 (23세, 정사생) 아버지 호노 개이介伊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복덕卜德 (14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산이山伊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양역仰役을 매  
득買得함  
비 소화小和 (52세, 무자생) 아버지 이인吏人 선빈鮮彬 어머니 호비 사계士桂  
비 생금生金 (36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금춘금春  
비 소단小單 (49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대小大 (42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 (41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본면本面に 거주  
노 소악이所惡伊 (48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서응금鋤應今 (74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이班松伊 어머니 같은 비 월향月香. 함  
평 해제咸平海堤 거주  
비 금덕金德 (55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금개金介(46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본면本面に 거주  
 노 수도修道(34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土卿 읍내邑內에  
 거주  
 노 사읍금沙邑金(16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사읍사리沙邑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姓介  
 노 금동金同 사망故  
 노 야오금也五金(54세, 을유생) 아버지 사노 마분馬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今  
 노 문걸文乞(39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把回 어머니 서응금鋤應今 함평海平  
 평海堤에 거주  
 노 귀선貴先(21세, 기미생) 아버지 호노 몽치夢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귀원貴元(19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임선林先(19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청산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임상林上(14세, 병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병금丙今(12세, 무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원守遠(12세, 무진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도망逃

노비 명단[奴婢秩]

비 운선雲先(59세, 무진생) 아버지 사노 사명四明 어머니 호비 운량云良  
 비 서운鋤云(79세, ??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비 두금豆今(123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분화粉化. 공주公州에  
 거주  
 노 돌박扠朴(118세, 신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두석豆石(115세, 갑오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해당海堂(111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비 설중매雪中梅(40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노 소만小萬(114세) 아버지 호노 일남一南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비 애선愛先(120세) 아버지 사노 검금檢金 어머니 호비 일향一香. 산음山陰에 거주  
 비 개이介伊(110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癸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에 거주  
 비 실향實香(106세)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비 백옥白玉(72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같은 비 월향月香  
 노 설운雪云(79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개덕介德(89세, 신해생) 아버지 같은 노 계생戒生 어머니 같은 비 덕춘德春 창원昌原  
 에 거주  
 비 실향實香(89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비 내은월內隱月(146세, 계축생) 아버지 수순 최한근崔漢根 어머니 같은 비 와서비臥西非  
비 점이占伊(124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김해金海에 거주  
비 논이論伊(149세)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비 논화論化(122세) 아버지 사노 이름은 모름 어머니 같은 비 논월論月. 거주지는 위와  
같음  
노 정남情男(157세, 경자생) 아버지 사노 정운情云 어머니 같은 비 소근개小斤介. 경주  
慶州에 거주  
비 소정小丁(45세, 갑오생) 아버지 사노 최산이崔山伊 어머니 호비 논지論之  
끝際

행 현감[서업]

건륭 23년(1758, 영조23) 월 일

[주협자개인]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二統 第五戶 幼學辛兌成 年二十五乙卯 本寧越

父 學生 始甲

祖 學生 鼎受

曾祖 學生 慶隆

外祖 學生 金善一 本善山

奉母 金氏 年五十庚寅

妻 鄭氏 年三十二戊申 籍東萊

父 學生 學先

祖 通德郎 載瑛

曾祖 宣務郎 元和

外祖 學生 宋珩 本新平

賤口

率 婢介德 年四十二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士良 奴太伊 年四十三丁酉 父戶奴尙仁

母私婢愛先 奴元太 年十九辛酉 父私奴占山 母同婢介德 仰役 婢士良 年

七十二丁卯 父私奴加應里 母戶婢塞還 婢有姓介 年四十七壬辰 父戶奴士拜

母良女名不知 居邑內 奴者葛伊 故 婢準乞伊 年三十六甲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夫李世太 居興德龍洞谷 婢納化 年二十三丁巳 父戶奴介伊

母戶婢金介 婢卜德 年十四丙寅 父良人山伊 母私婢奉化 買得仰役

婢小和 年五十二戊子 父吏人鮮彬 母戶婢士桂 婢生金 年三十六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今春 婢小單 年四十九辛卯 父母上同 婢小大年  
 四十二丁酉 父母上同 奴水生 年四十一己亥 父母上同 居本面 奴所惡伊  
 年四十八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居上同 婢鏹應 今年七十四乙丑 父  
 私奴班松伊 母同婢月香 居咸平海堤 婢金德 年五十五甲申 父戶奴甘金 母  
 良女名不知 婢金介 年四十六辛卯 父母上同 居本面 奴修道 年三十四丙午  
 父良人片後纘 母戶婢士卿 居邑內 奴沙邑金 年十六庚申 父私奴沙邑沙里  
 母戶婢有姓介 奴金同 故 奴也五金 年五十四乙酉 父私奴馬糞 母戶婢鏹應  
 今 奴文乞 年三十九辛丑 父良人姜把回 母鏹應今 居咸平海堤 奴貴先  
 年二十一己未 父戶奴夢治 母戶婢小大 奴貴元 年十九辛酉 父母上同 奴林先  
 年十九辛酉 父良人青山 母戶婢小丹 婢林上 年十四丙寅 父母上同 婢丙  
 今年十二戊辰 父母上同 奴守遠 年十二戊辰 父私奴占山 母戶婢介德 逃  
 奴婢秩 婢雲先 年伍拾玖庚辰 父私奴四明 母戶婢云良 婢鏹云 年七十九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婢豆 今年百二十三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粉化 居  
 公州 奴夏朴 年百十八辛丑 父母上同 奴豆石 年百十五甲午 父母居上同 婢  
 海堂 年百十一戊戌 居上同 婢雪中梅 年四十己亥 父戶奴道石 母良女名  
 不知 奴小萬 年百十四 父戶奴一南 母戶婢春伊 婢愛先 年百二十 父  
 私奴檢金 母戶婢一香 居山陰 婢介伊 年百十己酉 父戶奴癸生 母戶婢德  
 春 居昌元 婢實香 年百六 父母上同 居晉州 婢白玉 年七十二丁卯 父私奴  
 班松 母同婢月香 奴雪云 年七十九庚申 父母上同 婢介德 年八十九辛  
 亥 父同奴戒生 母同婢德春 居昌原 婢實香 年八十九庚戌 父母上同居  
 晉州 婢內隱月 年百四十六癸丑 父水軍崔漢根 母同婢臥西非 婢占  
 伊 年百二十四乙丑 父母上同 居金海 婢論伊 年百四十九 父母上同 居晉州  
 婢論化 年百二十二 父私奴名不知 母同婢論月 居上同 奴情男 年百五十  
 七庚子 父私奴情云 母同婢小斤介 居慶州 婢小丁 年四十五甲午 父私奴崔  
 山伊 母戶婢論之  
 際

行縣監[署押]

乾隆二十三年 月 日

[周挾 字改印]

5-4-20) 1765년 유학(幼學) 신앙렬(辛亮烈) 호구단자

【해설】 1765년(영조41) 도내면 입석리 제2통 제3에 사는 신앙렬이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구단자. 신앙렬은 신태성이 개명한 이름이다. 당시 신앙렬은 32세였으며, 어머니 김씨는 56세, 처는 나주 오씨로 25세이다. 이전의 호구단자에서 처는 동래 정씨였으나, 이번 호구단자에는 나주 오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처한 후 재혼한 것을 보인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사내종 17명, 계집 종 24명으로 모두 41명이지만, 100살이 넘는 노비들은 생존자가 아닐 가능성이 큼으로 실제 소유노비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2통 제3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개명 양렬(亮烈) (31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봉모(奉母) 김씨(金氏) (56세, 경인생)

처(妻) 오씨(吳氏) (25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친구 명단(賤口)

솔노 원태(元太) (25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같은 비 개덕(介德)

비 유성개(有姓介) (54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四拜)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읍내(邑內) 거주

비 개덕(介德) (48세, 무술생) 어머니 호비 사랑(四良)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노 태이(太伊) (49세, 정유생) 아버지 호노 상인(尙仁) 어머니 사비 애선(愛先)

비 주은걸이(注隱乞伊) (42세, 갑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남편 세태(世太). 흥덕(興德)에 거주

비 복덕(卜德) (20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산이(山伊)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비 생금(生金) (43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금춘(今春)

비 소대(小大) (49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소단小丹 (55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수생水生 (47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소악지所惡只 (55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正禮
- 비 서응금鋤應今 (81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같은 비 월향月香. 함평咸  
평에 거주
- 비 양덕襄德 (62세, 갑신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비 금개金介 (52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수도修道 (40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厚贊 어머니 호비 사경四景. 읍내邑內  
거주
- 노 사읍금沙邑金 (26세, 경신생) 아버지 양인 사읍사리沙邑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性介
- 비 사읍진沙邑眞 (20세, 병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야오금也五金 (61세, 을유생) 아버지 사노 마분馬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金
- 노 문걸文乞 (45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波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金
- 노 귀선貴先 (27세, 기미생) 아버지 호노 몽치夢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 노 귀원貴元 (25세, 신유생)
- 비 아망개阿望介 (11세, 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임선臨先 (□□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 비 병금丙今 (18세, 무진생)
- 비 임상臨上 (21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수원水元 (28세, 무진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 노 숙원宿元 (15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노 이동二東 (19세, 정묘생) 아버지 양인 세태[世]태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 비 이덕二德 (16세, 경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태금太今 (34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태백太白 어머니 호비 운선雲先
- 비 서운鋤云 (85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 비 백옥白玉 (79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두금豆今 (129세, 병신생) 아버지 호노 하지下只 어머니 양녀 분화[分]화. 공주公州에  
거주
- 비 해당海堂 (117세, 무술생) 부모와 거주지는 위와 같음
- 비 설중매雪中梅 (47세, 기해생) 아버지 호노 도석道石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 노 소만小滿 (121세, □□생) 아버지 호노 일남一南 어머니 호비 춘이春伊
- 노 수만壽[萬] (117세, [기]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 비 개이伊伊 (117세, 기유생) 아버지 호노 계생季生 어머니 호비 덕춘德春 창원昌原에 거주

비 실향失香 (112세, □□생) 부모는 위와 같음. 진주晉州에 거주  
노 설운雪云 (86세, 경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같은 비 월향月香  
비 소정小正 (51세, 갑오생) 아버지 사노 산이山伊 어머니 호비 논지論之  
끝際

행 군수 [서업]

건륭 30년(1765, 영조41) 월 일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二統第三戶 幼學辛兌成 改名亮烈 年三十一乙卯 本寧越

父 學生 始甲

祖 學生 鼎受

曾祖 學生 慶隆

外祖 學生 金善一 本善山

奉母 金氏 年五十六庚寅

妻 吳氏 年二十五辛酉 籍羅州

父 學生 時敬

祖 學生 大楫

曾祖 學生 泰錫

外祖 學生 金斗極 本光山

賤口

率奴元太 年二十五辛酉 父私奴占山 母同婢介德 婢有姓介 年五十四壬辰 父戶奴四拜 母良  
女名不知 居邑內 婢介德 年四十八戊戌 母戶婢四良 父私奴甲戌 奴太伊 年四十九丁酉 父  
戶奴尙仁 母私婢愛先 婢注隱乞伊 年四十二甲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夫世太居  
興德 婢卜德 年二十丙寅 父良人山伊 母私婢奉化 婢生金 年四十三癸卯 父戶奴仁  
奉 母良女今春 婢小大 年四十九丁酉 父母上同 婢小丹 年五十五辛卯 父母上同 奴水生  
年四十七己亥 父母上同 奴所惡只 年五十五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正禮 婢饒應今  
年八十一乙丑 父私奴班松 母同婢月香 居咸平 婢襄德 年六十二甲申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婢金介 年五十二甲午 父母上同 奴修道 年四十丙午 父良人片  
厚贊 母戶婢四景 居邑內 奴沙邑金 年二十六庚申 父良人沙邑沙里 母戶婢  
有性介 婢沙邑眞 年二十丙寅 父母上同 奴也五金 年六十一乙酉 父私奴馬糞  
母戶婢鋤應金 奴文乞 年四十五辛丑 父良人姜波回 母戶婢鋤應金 奴貴  
先 年二十七己未 父戶奴夢治 母戶婢小大 奴貴元 年二十五辛酉 婢阿望介  
年十一乙亥 父母上同 奴臨先 年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丙今 年十八戊辰

婢臨上 年二十一乙丑 父母上同 奴水元 年二十八戊辰 父私奴占山 母戶婢介德 奴  
 宿元年十五 辛未] 父母上同 奴二東 年十九丁卯 父良人[世]太 母戶婢注隱乞 婢  
 二德 年十六庚申 父母上同 婢太今年三十四[癸丑] 父私奴太白 母戶婢雲先  
 婢鋤云 年八十五辛酉 父私奴班松 母戶婢月香 婢白玉 年七十九丁卯 父母  
 上同 婢豆今年百二十九丙申 父戶奴下只 母良女[分]化 居公州 婢海堂  
 年百十七戊戌 父母居上同 婢雪中梅 年四十七己亥 父戶奴道石 母良女  
 名不知 奴小滿 年百二十一 父戶奴一南 母戶婢春伊 奴壽[萬] 年百十七 父母上同  
 婢介伊 年百十七己酉 父戶奴季生 母戶婢德春 居昌原 婢失香 年  
 百十二 父母上同 居晉州 奴雪云 年八十六庚申 父私奴班松 母同婢月香  
 婢小正 年五十一甲午 父私奴山伊 母戶婢論之  
 際

行郡守 [署押]

乾隆三十年 月 日

[周挾字改印]

#### 5-4-21) 1771년 유학幼學 신성렬辛性烈 호구단자

【해설】 1771년(영조47, 신묘)에 도내면 제4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호 유학 신성렬이 영광군에 호  
 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구단자. 호주인 신성렬의 가족은 62세의 어머니 김씨와 31세의 처 나주 오씨  
 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구는 31명으로, 사내종 15명, 계집 종 16명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 2명이  
 죽었고, 3명의 도망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도내면 道內面 제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 호戶 유학 신성렬辛性烈 (37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봉모奉母 김씨金氏 (62세, 경인생)

처 오씨吳氏 (31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친구 명단賤口秩

솔비 복덕福德(26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이裵山伊 어머니 사노 봉화奉化

비 유성개有成介(60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士倍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읍내邑  
內에 거주

비 개덕介德(54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士良

노 태이太伊 사망故

노 원태元太(31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点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양역노비仰役

비 주은걸이注隱乞伊(48세, 갑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남  
편 이세태李世太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비 생금生今(49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경인년에  
도망庚寅逃

비 소대小大(55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단小丹(61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53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소야지所也只(61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금개衰介(58세, 갑오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노 수도水道(46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士京

노 사읍금沙邑金(32세, 경신생) 아버지 양인 사읍사리沙邑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비 사읍진沙邑辰(28세, 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재삼在三(24세, 무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문걸文乞(51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破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今

노 귀선貴先(33세, 기미생) 아버지 호노 몽치夢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귀원貴元(31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아망개阿望介(17세, 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임선林先(31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今(22세, 경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임상林上(27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원水元 사망故

노 숙원宿元(21세, 신미생) 아버지 사노 점산点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노 이동二東(25세, 정묘생) 아버지 세태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비 이덕二德 (21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태금太金 (40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태백太白 어머니 호비 운선云先  
 비 서운鋤云 (91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逃  
 비 백옥白玉 (85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노 함평咸平金 (23세, 기사생) 어머니 호비 생금生金 아버지 양인 용금龍金. 경인년에  
 도망  
 끝際

행 군수 [서업]

건륭 36년 신묘(1771) 월 일

[주협자개인]

道內面 第四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二 戶 幼學辛性烈 年三十七乙卯 本寧越

父 學生 始甲

祖 學生 鼎受

曾祖 學生 慶隆

外祖 學生 金善一 本善山

奉母 金氏 齡六十二庚寅

妻 吳氏 歲三十一辛酉 籍羅州

父 學生 時敬

祖 學生 大楫

曾祖 學生 泰錫

外祖 學生 金斗極 本光山

賤口秩

率 婢福德 年二十六丙寅 父良人襄山伊 母私婢奉化 婢有成介  
 年六十壬辰 父戶奴士倍 母良女名不知 居邑內 婢介德 年五十四  
 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士良 奴太伊故 奴元太 年三十一辛  
 酉 父私奴点山 母戶婢介德 仰役 婢注隱乞伊 年四十八甲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夫李世太 居興德校村 婢生今 年  
 四十九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庚寅逃 婢小大 年五  
 十五丁酉 父母上同 婢小丹 年六十一辛卯 父母上同 奴水生 年  
 五十三己亥 父母上同 奴所也只 年六十一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衰介 年五十八甲午 父戶奴甘金 母良女名



不知 奴水道 年四十六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京 奴  
沙邑金 年三十二庚申 父良人沙邑沙里 母戶婢有成介 婢  
沙邑辰 年二十八甲子 父母上同 奴在三 年二十四戊辰 父  
母上同 奴文乞 年五十一辛丑 父良人姜破回 母戶婢鋤  
應今 奴貴先 年三十三己未 父戶奴夢治 母戶婢小大  
奴貴元 年三十一辛酉 父母上同 婢阿望介 年十七乙亥 父  
母上同 奴林先 年三十一辛酉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  
丙今年二十二庚午 父母上同 婢林上 年二十七乙丑 父母  
上同 奴水元故 奴宿元 年二十一辛未 父私奴点山 母戶  
婢介德 奴二東 年二十五丁卯 父世太 母戶婢注隱乞 婢  
二德 年二十一辛未 父母上同 婢太今年四十癸丑 父私  
奴太白 母戶婢云先 婢鋤云 年九十一辛酉 父私奴班  
松 母戶婢月香 逃 婢白玉 年八十五丁卯 父母上同  
逃 奴咸平金 年二十三己巳 母戶婢生今 父良人龍今  
庚寅逃

際

行郡守

乾隆三十六年辛卯 月 日

[周挾字改印]

### 5-4-22) 1774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74년(영조50) 도내면 제4 입석리 제1통 제4에 사는 신태성이 40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신태성은 신성렬의 고친 이름이다. 가족으로는 키워준 어머니 김씨와 아내 오씨가 있으며,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 노비 10명, 계집 종 16명 그 가운데 도망노비는 1명이다.

도내면 道內面 제4 입석리 立石里 호적단자 戶籍單子

제1통 제4 호戶 유학幼學 신성렬辛性烈의 고친 이름은 태성兌成 (40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봉양하고 있는 어머니奉母 김씨金氏 (65세, 경인생)  
 처 오씨吳氏 (34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 친구 명단(賤口秩)

솔비 복덕福德 (29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이裵山伊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비 유성개有成介 (63세, 임진생) 아버지 호노 사배士倍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개덕介德 (57세, 무술생) 어머니 호비 사랑四良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비 주은걸注隱乞 (51세, 갑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白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남편  
 이세태李世太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비 생금生今 (52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소대小大 (58세, 정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단小丹 (64세, 신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생水生 (56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소야지所也只 (64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금개金介 (61세, 갑오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노 수도水道 (49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土京  
 노 문걸文乞 (54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破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今  
 노 귀선貴先 (36세, 기미생) 아버지 호노 몽치夢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귀원貴元 (34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아망개阿望介 920세, 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임선林先 (34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今 (27세, 무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임상林上 (30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원태元太 (34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点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노 숙원宿元 (24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지自[芝] 916세, 기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이동二同 (28세, 정묘생) 아버지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비 이덕二德 (24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태금太金(42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태백太白 어머니 호비 운선云先  
비 서운鋤云(94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비 백옥白玉(88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끝際

건륭 39년(영조50, 갑오)○월○일

행군수 [서업]

[주협자개인]

道內面 [四]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第四戶 幼學 辛性烈 改名兌成 年四十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 本善山

奉母金氏 齡六十五庚寅

妻吳氏 歲三十四辛酉 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楨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賤口秩

率婢福德 年二十九丙寅 父良人裴山伊 母私婢奉化 婢有成介 年

六十三壬辰 父戶奴士倍 母良女名不知 婢介德 年五十七戊戌 母戶婢

四良 父私奴甲戌 婢注隱乞 年五十一甲辰 父戶奴白伊 母良女名不知 夫

李世太 居興德校村 婢生今 年五十二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

名不知 婢小大 年五十八丁酉 父母上同 婢小丹 年六十四辛卯

父母上同 奴水生 年五十六己亥 父母上同 奴所也只 年六十四辛

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金介 年六十一甲午 父戶奴甘金

母良女名不知 奴水道 年四十九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

京 奴文乞 年五十四辛丑 父良人姜破回 母戶婢鋤應今 奴貴先 年

三十六己未 父戶奴夢治 母戶婢小大 奴貴元 年三十四辛酉 父母

上同 婢阿望介 年二十乙亥 父母上同 奴林先 年三十四辛酉 父良

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丙今 年二十七戊辰 父母上同 婢林上 年

三十乙丑 父母上同 奴元太 年三十四辛酉 父私奴点山 母戶  
 婢介德 奴宿元 年二十四辛未 父母上同 婢自芝 年十六  
 己卯 父母上同 奴二同 年二十八丁卯 父世太 母戶婢注隱  
 乞 婢二德 年二十四辛未 父母上同 婢太今 年四十二癸丑  
 父私奴太白 母戶婢云先 婢鋤云 年九十四辛酉 父私奴  
 班松 母戶婢月香 婢白玉 年八十八丁卯 父母上同 逃  
 際  
 乾隆三十九年 月 日  
 行郡守 [署押]  
 [周挾字改印]

#### 5-4-23) 1777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性 호구단자<sup>27</sup>

【해설】 1771년(정조1, 정유)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신태성이 43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신태성은 신성렬의 고친 이름이다. 가족으로는 키워준 어머니 김씨(68세)와 아내 오씨(37세)와 아들 치목(22세)과 며느리 동래 정씨(22세) 부부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 노비 12명, 계집종 16명 그 가운데 남녀 종 각각 1명씩 사망하였으며, 도망한 노비 3명은 모두 계집종이었다.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 통 제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43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어머니奉母 김씨金氏(68세, 경인생)  
 처 오씨吳氏(歲 37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27 호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을묘생으로 보아 신태성으로 판독하였다.

가솔率

아들 치묵致默(22세, 병자생)

외조부 학생學生 정학선鄭學先 본적 동래東萊

부인 정씨鄭氏(22세, 병자생) 본적 동래東萊

천구 명단[賤口秩]

솔비 복덕福德(32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이裵山伊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비 유성개有成介 사망故

비 개덕介德(60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량士良

노 원태元太(37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호비 개덕介德 양역노비仰役

노 숙원宿元(27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대小大(61세, 정유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소단小丹(67세, 신묘생)

노 수생水生(59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생금生金(55세, 계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경인년에 도망庚寅逃

노 소야지所也只(67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금개金介(54세, 갑오생) 아버지 호노 감금甘金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노 수도水道(52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後贊 어머니 호비 사경士京

노 사읍금沙邑金(38세, 경신생) 아버지 양인 사읍사리沙邑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비 사읍진沙邑眞 사망故

노 재삼在三(30세, 무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

비 주은걸이注隱乞伊(54세, 갑진생) 아버지 호노 백이伯伊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흥

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문걸文乞(57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破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今

노 귀원貴元(37세, 신유생) 아버지 호노 몽치夢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비 아망개阿望介(23세, 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임선林先(37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今(28세, 경오생)

비 임산林上(33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이동二東(31세, 정묘생) 아버지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비 이덕二德(27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태금太今(45세, 신축생) 아버지 사노 태백太白 어머니 호비 운선云先

노 함평금咸平金 (29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용금龍今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백옥白玉 (91세, 정묘생) 아버지 사노 반송班松 어머니 호비 월향月香. 도망  
 비 자질이自叱伊 (24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이금利金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남편 사노  
 회음금晦音金. 병신년에 도망

끝際

행군수

건륭 42년 정유(1777, 정조원년) 월 일

[주협 자개인]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 統第 戶幼學 辛□□ 年四十三乙卯 本寧越

父 學生 始甲

祖 學生 鼎受

曾祖 學生 慶隆

外祖 學生 金善一本善山

奉母金氏 齡六十八庚寅

妻吳氏 歲三十七辛酉 籍羅州

父 學生 時敬

祖 學生 大楫

曾祖 學生 泰錫

外祖 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 致默 年二十二丙子

外祖 學生 鄭學先 本東萊

婦鄭氏 年二十二丙子 籍東萊

賤口秩

率 婢福德 年三十二丙寅 父良人裴山伊 母私婢奉化 婢有成介故 婢

介德 年六十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士良 奴元太 年三十七辛酉 父私奴占山

母戶婢介德 仰役 奴宿元 年二十七辛未 父母上同 婢小大 年六十一丁酉 父戶奴仁

奉 母良女名不知 婢小丹 年六十七辛卯 奴水生 年五十九己亥 父母

上同 婢生今 年五十五癸卯 父母上同 庚寅逃 奴所也只 年六十七辛卯 父

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金介 年五十四甲午 父戶奴甘金 母良女名

不知 奴水道 年五十二丙午 父良人片後贊 母戶婢士京 奴沙邑金 年三

十八庚申 父良人沙邑沙里 母戶婢有成介 婢沙邑眞故 奴在三 年三十戊

辰 父母上同 逃 婢注隱乞伊 年五十四甲辰 父戶奴伯伊 母良女名不知 居  
興德校村 奴文乞 年五十七辛丑 父良人姜破回 母戶婢鋤應今 奴貴元 年  
三十七辛酉 父戶奴夢治 母戶婢小大婢阿望介 年二十三乙亥 父母上同 奴林  
先 年三十七辛酉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丙今 年二十八庚午 婢林上 年三十  
三乙丑 父母上同 奴二東 年三十一丁卯 父世太 母戶婢注隱乞 婢二德 年二十七  
辛未 父母上同 婢太今 年四十五癸丑 父私奴太白 母戶婢云先 奴咸平金 年二十  
九己巳 父良人龍今 母戶婢生今 婢白玉 年九十一丁卯 父私奴班松 母戶婢  
月香 逃 婢自叱伊 年二十四甲戌 父良人利[金] 母戶婢金介 夫私奴晦音金 丙申逃  
際

行郡守

乾隆四十二年丁酉 月 日

[周挾字改印]

### 5-4-24) 1780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80년(정조4)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3통 제6에 사는 신태성이 46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  
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키워준 어머니 김씨(71세)와 아내 오씨(40세)와 아들 차목(25세)  
가 있다. 3년전 호적에 있었던 며느리 동래정씨는 보이지 않는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11  
명, 계집종 13명 그 가운데 계집종 2명이 사망하였으며, 도망한 노비 3명이었으나, 그 가운데 거주지  
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3통 제6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46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學生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어머니奉母 김씨金氏 (齡 71세, 경인생)  
처 오씨吳氏 (歲 40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솔거하는 아들 치묵致默(25세, 병자생)

외조부 학생學生 정학선鄭學先 본적 동래東萊

친구 명단賤口秩

비 개덕介德(63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호비 사랑土良

노 원태元太(40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같은 비 개덕介德. 양역노비仰役

노 숙원夙元(30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대小大(64세, 정유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소단小丹(70세, 신묘생)

노 수생守生(62세, 기해생)

비 생금生金(58세, 계묘생) 위 3사람의 부모는 모두 같음父母並上同

노 소야지所也只(70세, 신묘생) 아버지 호노 명세明世 어머니 양녀 정례丁禮

비 금개金介 사망故

노 수도水道(55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厚贊 어머니 호비 사경土京

노 재삼再三(33세, 무진생) 아버지 양인 샵사리颯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도망逃

비 주은걸注隱乞 사망故

노 문걸文乞(60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破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金

노 귀원貴元(40세, 신유생) 아버지 호노 몽치蒙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비 아망개阿望介(26세, 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임선林先(40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청산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金(31세, 경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임상林尙(36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이동二同(34세, 정묘생) 아버지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注隱乞

비 이덕二德(30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흥덕 교촌에 거주興德校村

비 태금太金(48세, 계축생) 아버지 사노 태백太白 어머니 호비 운선云先

노 함평금咸平金(32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용금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金

비 자질이自吡伊(27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남편 사노

회음금晦音金. 병신년에 도망하여 무장 판정리茂長板井里에 거주

비 복덕卜德(35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裵山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정유년에 도망

丁酉逃

끝際

건륭 45년 경자(1780) 월 일



행 군수 [서업]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三統第六戶 幼學辛兌成 年四十六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本善山

奉母金氏 齡七十一庚寅

妻吳氏 歲四十辛酉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楫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 致默 年二十五丙子

外祖學生 鄭學先 本東萊

賤口秩

婢介德 年六十三戊戌 父私奴甲戌 母戶婢土良 奴元太 年四十辛酉 父私奴占

山 母同婢介德 仰役 奴夙元 年三十辛未 父母上同 婢小大 年六十四丁酉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小丹 年七十辛卯 奴守生 年六十二己亥 婢

生今 年五十八癸卯 父母並上同 奴所也只 年七十辛卯 父戶奴明世 母良女丁禮

婢金介故 奴水道 年五十五丙午 父良人片厚贊 母戶婢土京 奴再三 年三十

三戊辰 父良人颯沙里 母戶婢有成介 逃 婢注隱乞故 奴文乞 年六十辛丑 父良人

姜破回 母戶婢鋤應今 奴貴元 年四十辛酉 父戶奴蒙治 母戶婢小大 婢阿望

介 年二十六乙亥 父母上同 奴林先 年四十辛酉 父良人青山 母戶婢小丹 婢丙

今 [年]三十一庚午 父母上同 婢林尙 年三十六乙丑 父母上同 奴二同 年三十四丁卯 父

李世太 母戶婢注隱乞 婢二德 年三十辛未 父母上同 居興德校村 婢太今

年四十八癸丑 父私奴太白 母戶婢云先 奴咸平金 年三十二己巳 父良人用金 母戶婢

生今 婢自叱伊 年二十七甲戌 父良人金利 母戶婢金介 夫私奴晦音金 丙申逃 居

茂長板井里 婢卜德 年三十五丙寅 父良[人]襄山 母私婢奉化 丁酉逃

際

乾隆四十五年庚子 月 日

行郡守 [署押]

5-4-25) 1783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83년(정조7)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3통 제6에 사는 신태성이 49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키워준 어머니 김씨(74세)와 아내 오씨(43세)와 아들 치묵(28세)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종 9명, 계집종 9명이며, 그 가운데 도망 노비가 3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호구단자에서는 노비들의 아버지가 양인인 경우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3통 제6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49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어머니奉母 김씨金氏 (74세, 경인생)  
처 오씨吳氏 (43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술거하는 아들 치묵致默 (28세, 병자생)  
외조부 학생學生 정학선鄭學先 본적 동래東萊

친구 명단賤口秩

비 개덕介德 (66세, 무술생) 아버지 사노 갑술甲戌 어머니 같은 비 사랑士良  
노 원태元太 (43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같은 비 개덕介德 양역노비仰役  
노 숙원夙元 (33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소대小大 (67세, 정유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소단小丹 (73세, 신묘생)  
노 수생水生 (65세, 기해생)

비 생금生金(61세, 계묘생) 모두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수도이水道伊(58세, 병오생) 아버지 양인 편후찬片厚贊 어머니 호비 사경士景  
비 아망개阿亡介(29세, 을해생) 아버지 호노 몽치蒙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임선林先(43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金(34세, 경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노 이동二同(37세, 정묘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브 주은걸母戶婢注隱乞  
비 이덕二德(33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함평금咸平金(35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용금龍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金  
비 자질이自叱伊(30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무장 판정  
茂長板井에 거주  
비 복덕卜德(38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裵山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정유년에 도망  
丁酉逃  
노 재삼再三(36세, 무진생) 아버지 양인 편삽사리片颯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도망逃  
노 문걸이文乞伊(63세, 신축생) 아버지 양인 강파회姜破回 어머니 호비 서응금鋤應金.  
도망해 함평해咸平海에 거주  
끝際  
건륭48년 계묘○월○일  
                  행 군수 [서업]  
[주협 자개인]

靈光郡 道內面立石里 戶籍單子  
第三統第六戶 幼學辛兌成 年四十九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本善山  
奉母 金氏 齡七十四庚寅  
妻 吳氏 歲四十三辛酉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楫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 致默 年二十八丙子

外祖學生 鄭學先 本東萊

賤口秩

婢介德 年六十六戊戌 父私奴甲戌 母同婢士良 奴元太 年四十三辛酉 父私  
奴占山 母同婢介德 仰役 奴夙元 年三十三辛未 父母上同 婢小大年六十七丁  
酉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小丹 年七十三辛卯 奴水生 年六十五己  
亥 婢生今 年六十一癸卯 父母並上同 奴水道伊 年五十八丙午 父良人  
片厚贊 母戶婢士景 婢阿亡介 年二十九乙亥 父戶奴蒙治 母戶婢小大 奴  
林先 年四十三辛酉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丙今 年三十四庚午 父  
母上同 奴二同 年三十七丁卯 父李世太 母戶婢注隱乞 婢二德 年三十三辛  
未 父母上同 居興德校村 奴咸平金 年三十五己巳 父良人龍今 母戶婢生  
今 婢自叱伊 年三十甲戌 父良人金利 母戶婢金介 居茂長板井 婢卜  
德 年三十八丙寅 父良人褰山 母私婢奉化 丁酉逃 奴再三 年三十六戊辰 父  
良人片颯沙里 母戶婢有成介 逃 奴文乞伊 年六十三辛丑 父良人姜破回 母  
戶婢鋤應今 逃居咸平海 際

乾隆四十八年癸卯 月 日

行郡守 [署押]

[周挾 字改印]

#### 5-4-26) 1786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86년(정조10) 영광군 도내면 제4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유학 신태성이 52세에 영광군  
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그사이에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오씨  
(46세)와 아들 치묵(31세)만 있고, 어머니 김씨가 돌아가셔서 명단에 없어졌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9명, 계집종 8명으로 줄었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52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처 오씨吳氏(46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술거하는 아들 치묵致默(31세, 병자생)  
외조부 학생學生 정학선鄭學先 본적 동래東萊

친구 명단賤口秩

노 원태元太(46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같은 비 개덕介德  
노 숙원夙元(36세, 신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비 소단小丹(76세, 신묘생)  
노 수생守生(68세, 기해생)  
비 생금生今(64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모름  
비 아망개阿亡介(32세, 을해생) 아버지 호노 몽치蒙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임선林先(46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병금丙今(37세, 경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이덕二德(36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죽걸이竹乞伊  
노 이동二同(41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함평금咸平金(38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龔今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노 금해이金海伊(25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비 운애雲愛(19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33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노 대련大連(16세, 신묘생) 아버지 사노 금청금今靑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복덕이福德伊(41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裵山 어머니 사비 봉화奉化. 정유년에  
도망丁酉逃  
노 재삼再三(39세, 무진생) 아버지 양인 편삽사리片颯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有成介. 도  
망逃

행 군수 [서업]

건륭51년 병오○월○일

[주협 자 개인]

道內面 第四 立石里戶籍單子

第一統第二戶 幼學辛兌成 年五十二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 本善山

妻吳氏 歲四十六辛酉 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楫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 致默 年三十一丙子

外祖學生 鄭學先 本東萊

賤口秩

奴元太 年四十六辛酉 父私奴占山 母同婢介德 奴夙元 年三十

六辛未 父母上同 婢小丹 年七十六辛卯 奴守生 年六十八己亥

婢生 今年六十四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阿亡

介 年三十二乙亥 父戶奴蒙治 母戶婢小大 奴林先 年四十

六辛酉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丙 今年三十七庚午 父母

上同 婢二德 年三十六三辛未 父李世太 母戶婢竹乞伊 奴二同

年四十一丁卯 父母上同 居興德校村 奴咸平金 年三十八己

巳 父良人金用[龍]今 母戶婢生今 奴金海伊 年二十五壬午 父

母上同 婢雲愛 年十九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三十三

甲戌 父良人金利 母戶婢金介 奴大連 年十六辛卯 父私

奴今青金 母戶婢自叱伊 婢福德伊 年四十一丙寅 父良[人]襄山

母私婢奉化 丁酉逃 奴再三 年三十九戊辰 父良人片颯沙里 母戶

婢有成介 逃

行郡守 [署押]

乾隆五十一年丙午月 日

[周挾 字改印]

### 5-4-27) 1789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89년(정조13)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3에 사는 신태성이 55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그사이에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오씨(49세)와 아들 치목을 대신하여 차자인 수묵(22세)의 이름이 올라있다. 치목이 독립을 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명단에 없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10명, 계집종 9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도내면道內面 제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3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55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처 오씨吳氏 (49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가솔率

아들 수묵修默 (22세, 무자생)

친구 명단賤口秩

노 숙원夙元 (39세, 신미생) 아버지 사노 점산占山 어머니 같은 비 개덕介德

노 수생守生 (71세, 기해생)

비 생금生今 (67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알 수 없음

비 병금丙今 (40세 경오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임상林相 (43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이덕二德 (39세, 신미생) 아버지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이走隱乞伊

노 이동二同 (43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흥덕 교촌居興德校村에 거주

노 함평금咸平金 (41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今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노 김해金亥 (28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운애雲愛 (22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 (36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노 대린大麟 (19세, 신묘생) 아버지 사노 회음금晦音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대례大禮 (16세, 갑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구적久迪 (12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자은지自隱知  
 노 윤봉이尹峰伊 (15세, 기미생) 아버지 양인 윤변음산이尹卞音山伊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비 복덕福德 (44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裴山 어머니 비 봉화母婢鳳花 정유년에 도  
 망丁酉逃  
 노 재삼再三 (42세, 무진생) 아버지 양인 샵사리颯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도망  
 비 아망개阿亡介 (35세, 을해생) 아버지 호노 몽치蒙治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증득衆得 (8세, 임인생) 아버지 사노 영주靈周 어머니 호비 아망개阿亡介. 병오년에  
 도망 丙午逃

행군수[서업]

건륭 54년 기유년(정조13) ○월 ○일

[주협 자개인]

道內面第四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第三戶 幼學辛兌成 年五十五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 本善山

妻吳氏 歲四十九辛酉 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楫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 幼學 修默 年二十二戊子

賤口秩

奴夙元 年三十九辛未 父私奴占山 母同婢介德 奴守生 年七十一己亥 婢生今年

六十七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丙今年四十庚午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林相 年四十三丁卯 父母上同 婢二德 年三十九辛未 父李世

太 母戶婢走隱乞伊 奴二同 年四十三丁卯 父母上同 居興德校村 奴咸平金 年



四十一己巳 父良人金用今 母戶婢生今 奴金亥 年二十八壬午 父母上同 婢雲  
愛 年二十二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三十六甲戌 父良人金利 母戶婢  
金介 奴大隣 年十九辛卯 父私奴晦音金 母戶婢自叱伊 婢大禮 年十六甲  
午 父母上同 奴久迪 年十二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知 奴尹峰伊  
年十五己未 父良人尹卞音山伊 母戶婢丙今 婢福德 年四十四 父良人裴山 母  
婢鳳花 丁酉逃 奴再三 年四十二戊辰 父良人颯沙里 母戶婢有成介 逃 婢阿亡介  
年三十五乙亥 父戶奴蒙治 母戶婢小大 奴衆得 年八壬寅 父私奴靈周 母戶  
婢阿亡介 丙午逃

行郡守[署押]

乾隆五十四年 己酉月 日

[周挾 字改印]

### 5-4-28) 1795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해설】 1795년(정조19)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3에 사는 신태성이 61세에 영광군에 호구사  
향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아내 오씨(55세)와 아들 수묵(28세)이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  
은 사내노비 8명, 계집종 8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한 노비는 없는데  
노비 수가 줄었다.

도내면道內面 제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3 호戶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61세, 을묘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시갑始甲

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증조부 학생學生 경릉慶隆

외조부 학생學生 김선일金善一 본적 선산善山

처 오씨吳氏 (55세, 신유생) 본적 나주羅州

아버지 학생學生 시경時敬

조부 학생學生 대집大楫

증조부 학생學生 태석泰錫

외조부 학생學生 김두극金斗極 본적 광산光山

솔거하는 아들 수묵修默 (28세, 무자생)

천구 명단(賤口秩)

비 생금(生今) (70세, 계묘생) 아버지 호노 인봉(仁奉) 어머니 양녀 이름은 알수 없음  
 비 병금(丙今) (46세, 경오생) 아버지 양인 임청산(林靑山) 어머니 호비 소단(小丹)  
 비 이덕(二德) (45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이(走隱乞伊)  
 노 이동(二同) (49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함평(咸平金) (47세, 기사생) 아버지 양인 김용(金用)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노 김해(金亥) (34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운애(雲愛) (29세, 무장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 (42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대례(大禮) (22세, 갑오생) [아버지 호]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구적(九迪) (18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知)  
 노 윤봉이(尹峰伊) (21세, 을미생) 아버지 양인 윤복음산이(尹卜音山伊)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노 자근봉이(者斤峯伊) (19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복덕(福德) (50세, [병인생]) 아버지 양인 배산이(裵山伊) 어머니 비 봉화(婢鳳花) 정유년에  
 도망(丁酉逃)  
 노 재삼(再三) (48세, 무진생) 아버지 양인 삽사리(插沙里) 어머니 호비 유성개(有成介). 도망  
 비 아망개(阿亡介) (41세, 을해생) 아버지 호노 몽고리(蒙古里) 어머니 호비 소대(小大)  
 노 몽득(衆得) (13세, 임인생) 아버지 사노 영주(靈周) 어머니 호비 아망개(阿亡介). 흥덕 송촌  
 흥덕(松村)에 거주

행군수[서업]

건륭 60년 을묘(1795, 정조19) ○월 ○일

[주협 자개인]

靈光郡 道內面第四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三 戶 幼學辛兌成 年六十一乙卯 本寧越

父學生 始甲

祖學生 鼎受

曾祖學生 慶隆

外祖學生 金善一 本善山

妻吳氏 歲五十五辛酉 籍羅州

父學生 時敬

祖學生 大楫

曾祖學生 泰錫

外祖學生 金斗極 本光山

率子修默 年二十八戊子

賤口秩

婢生今年七十癸卯 父戶奴仁奉 母良女名不知 婢丙今年四十六庚午 父良人林青山

母戶婢小丹 婢二德 年四十五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隱乞伊 奴二同 年四十九

丁卯 父母上同 居興德校村 奴咸平金 年四十七己巳 父良人金用[龍]今 母戶婢生今 奴

金亥 年三十四壬午 父母上同 婢雲愛 年二十九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四十二甲戌 父

良人金利 母戶婢金介 婢大禮 年二十二甲午 [父戶]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九迪

年十八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知 奴尹峰伊 年二十一乙未 父良人尹卞音山伊 母

戶婢丙今 奴者斤峯伊 年十九戊戌 父母上同 婢福德 年五十 父良人襄山伊 母

婢鳳花 丁酉逃 奴再三年四十八戊辰 父良人插沙里 母戶婢有成介 逃 婢阿亡介 年四

十一乙亥 父戶奴蒙古里 母戶婢小大 奴衆得 年十三壬寅 父私奴靈周 母戶婢阿

亡介 居興德松村

行郡守[署押]

乾隆六十年乙卯月 日

[周挾 字改印]

### 5-4-29) 1810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대자代子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해설】 1810년(순조10) 영광군 도내면 제4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신태성의 둘째 아들 신수묵이 43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처 상산 김씨(45세)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6명, 계집종 7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신태성辛兌成을 이은 아들代子 유학幼學 수묵修默 (43세, 무자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태성兌成

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증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외조부 학생學生 오시경吳時敬 본적 나주羅州

처妻 김씨金氏 (45세, 병술생) 본적 상산尙山

아버지 유학幼學 훈勳

조부 학생學生 진상摺相

증조부 학생學生 탁濯

외증조부 학생學生 기종서奇宗胥 본관 행주幸州

친구 명단賤口秩

비 이덕二德 (60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걸이走隱去伊

노 이동二東 (64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해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지매之每 (49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容今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 (43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 (58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구은貴銀 (21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애섬愛蟻 (10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녀大女

비 목은매目隱每 (10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득금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윤봉允奉 (36세, 을미생) 아버지 양인 윤변음산이尹卞音山伊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노 자근봉者斤奉 (33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오봉五奉 (25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복덕卜德 (65세, 병인생) 정유년에 도망丁酉逃

노 구적貴迪 (33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행 군수[서업]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第四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 戶 辛兌成 代子 幼學修默 年四十三 戊子 本寧越

父學生 兌成

祖學生 始甲

曾祖學生 鼎受

外祖學生 吳時敬 本羅州

妻金氏 歲四十五 丙戌 本商山

父幼學 勳

祖學生 摺相

曾祖學生 濯

外祖學生 奇宗胥 本幸州

賤口秩

婢二德 年六十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隱去伊  
奴二東 年六十四丁卯 父母上同 逃居興德校村 奴之每  
年四十九壬午 父良人金容今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四  
十三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五十八甲戌 父良人金利  
母戶婢金介 婢貴銀 年二十一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  
自叱伊 婢愛蟾 年十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女 婢目隱  
每 年十辛酉 父良人得金 母戶婢云愛 奴允奉 年三十六乙  
未 父良人尹卞音山伊 母戶婢丙今 奴者斤奉 年三十三戊戌 父  
母上同 奴五奉 年二十五丁未 父母上同 婢卜德 年六十五丙寅 丁  
酉逃 奴貴迪 年三十三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

### 5-4-30) 1813년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해설】 1813년(순조13)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2통 제1에 사는 유학 신수묵이 46세에 영광군에 호구사  
향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처상산 김씨(48세)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6명, 계  
집종 7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13명 노비의 아버지는 모두 양인이다. 호  
구단자에 년도 표기는 없으나 호주 신수묵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813년인 것으로 비정하였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2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46세, 무자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태성兌成  
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증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외조부 학생學生 오시경吳時敬 본적 나주羅州  
처妻 김씨金氏 (48세, 병술생) 본적 상산尙山  
아버지 유학幼學 훈勳  
조부 학생學生 진상摺相  
증조부 학생學生 탁濯  
외조부 학생學生 기중서奇宗胥 본적 행주幸州

천구 명단賤口秩

비 이덕二德(63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거이走去伊  
 노 이동二東(67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해 흥덕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지매之每(52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容今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46세, 무장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60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이金伊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구랑貴娘(24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애섬愛蟻(13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녀大女  
 비 목은매目隱每(13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득금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윤봉允奉(39세, 을미생) 아버지 양인 윤변음산이尹卞音山伊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노 자근봉者斤奉(36세, 무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오봉五逢(28세, 정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복덕卜德(68세, 병술생) 정유년에 도망  
 노 구적九迪(36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自隱只

행 군수[서업]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二統第一戶 幼學辛修默 年四十六戊子 本寧越

父學生 兌成

祖學生 始甲

曾祖學生 鼎受

外祖學生 吳時敬 本羅州

妻 金氏 歲四十八丙戌 本商山

父幼學 勳

祖學生 摺相

曾祖學生 濯

外祖學生 奇宗胥 本幸州

賤口秩

婢二德 年六十三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去伊

奴二東 年六十七丁卯 父母上同 逃居興德校村 奴之每 年

五十二壬午 父良人金容今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四十六戊

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六十甲戌 父良人金伊 母戶婢

金介 婢貴娘 年二十四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婢  
愛蟾 年十三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女 婢目隱每 年  
十三辛酉 父良人得金 母戶婢云愛 奴允奉 年三十九  
乙未 [父良人尹卞音山伊 母戶婢丙今] 奴者斤奉 年三十六戊戌 父母上同 奴五峯 年  
二十八丁未 父母上同 婢卜德 年六十八丙戌 丁酉逃  
奴九迪 年三十六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  
只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

### 5-4-31) 1816년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해설】 1816년(순조16)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유학 신수묵이 49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처 상산 김씨(51세)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5명, 계집종 7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1명은 확실하게 도망하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에 사는 호戶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49세, 무자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태성兌成  
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증조부 학생學生 정수鼎受  
외조부 학생學生 오시경吳時敬 본적 나주羅州  
처妻 김씨金氏 (51세, 병술생) 본적 상산商山  
아버지 유학幼學 훈勳  
조부 학생學生 진상摺相  
증조부 학생學生 탁濯  
외조부 학생學生 기종서奇宗胥 본적 행주幸州

병자년(1816년) 호구丙子式의 천구 명단賤口秩  
비 이덕二德(66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거이走隱去伊  
노 이동二東(69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가 흥덕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지매之每 (55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容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 (49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 (63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리金利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구랑貴娘 (26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애섬愛蟾 (16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비 목은매目隱每 (16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득금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윤봉允奉 (39세, 을미생) [아버지 양인 윤변음산이尹卞音山伊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비 복덕卜德 (71세, 병인생) 정유년에 도망  
 노 구적貴迪 (39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노 구남貴南 (38세, 기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二戶 幼學辛修默 年四十九戊子 本寧越

父學生 兌成

祖學生 始甲

曾祖學生 鼎受

外祖學生 吳時敬 本羅州

妻 金氏 歲五十一 本商山

父幼學 勳

祖學生 摺相

曾祖學生 濯

外祖學生 奇宗胥 本幸州

丙子式 賤口秩

婢二德 年六十六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隱去伊 奴二東 年六十九丁卯 父母

上同 逃去興德校村 奴之每 年五十五壬午 父良人金容金 母戶婢生今 婢云

愛 年四十九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六十三甲戌 父良人金利 母戶

婢金介 婢貴娘 年二十六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婢愛蟾 年

十六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婢目隱每 年十六辛酉 父良人得金 母私奴云

愛 奴允奉 年三十九戊戌 [父良人尹卞音山伊]母[戶婢]丙今 婢卜德 年七十一丙寅 丁酉逃 奴

貴迪 年三十九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奴貴南 年己酉生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行郡守 [署押]

[靈光郡戶口]

### 5-4-32) 1822년 유학幼學 화민 신흥업辛恒業 호구단자

【해설】 1822년(임오, 순조 22)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3에 사는 유학 신흥업이 34세에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신흥업은 원래 조부 신태성의 둘째아들 수목의 이들이지만 큰아버지 신치묵에 입양되어 대를 이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37세)가 있으며, 동생 향언(26세)이 함께 살고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6명, 계집종 7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노비는 노 선원(18세)이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3 호戶 유학幼學 신흥업辛恒業(34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生父 학생學生 수목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 강씨姜氏 (37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유학幼學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솔거하는 동생 향언恒彦 (26세, 정사생)

외조부 학생學生 김훈金勳, 본적 상산商山

임오년 호구식壬午式의 천구 명단[賤口稵]

비 이덕二德 (72세, 신미생) 아버지 양인良人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은거이走隱去伊

노 이동二東 (76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하여 흥덕 교촌興德校村에 거주

노 지매之每 [(60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 (55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 (79세, 갑술생) 아버지 양인 김이金伊 어머니 호비 김개金介

비 귀랑貴郎 (32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애섬愛蟾 (22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비 목은매目隱每 (22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김득금金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윤봉允奉 (45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윤변음산尹卞音山 어머니 병금丙今  
 비 복덕卜德 (77세, 병인생) 정유년에 도망丁酉逃  
 노 구적九迪 (45세, 병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노 귀남貴南 (44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선이鮮顯 (18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행군수 [서업]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第三 戶幼學 辛恒僕 年三十四己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三十七丙午 籍晉州

父幼學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 弟恒彦 年二十六丁巳

外祖學生 金勳 本商山

壬午式

賤口秩

婢二德 年七十二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隱去伊 奴二東

年七十六丁卯 父母上同 逃去興德校村 奴之每 [年六十壬午] 父良人金用金 [母]奴戶婢

生今 婢云愛 年五十五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年七十九甲戌

父良人金伊 母戶婢金介 婢貴郎 年三十三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婢愛蟾 年二十二辛

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婢目隱每 年二十二辛

酉 父良人金得金 母戶婢云愛 奴允奉 年四十  
五戊戌 父良人尹卞音山 母丙今 婢卜德 年七十七  
丙寅 丁酉逃 奴九迪 年四十五戊戌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奴貴南 年四十四己亥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鮮願 年十八乙丑 父私奴達三 母  
戶婢大連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

### 5-4-33) 1825년 유학幼學 화민 신한업辛恒業 호구단자

【해설】 1825년(순조25)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3에 사는 유학 신한업이 37세에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39세)가 있으며, 동생 향언(29세)과 함께 살고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사내노비 6명, 계집종 7명이다. 그 가운데 도망 노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3의 호戶 유학 신한업(37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 치묵致默  
생부生父 학생 수묵修默  
조부 학생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 시갑始甲  
외조부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 강씨姜氏 (39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유학幼學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솔거하는 동생 향언恒彦 (29세, 정사생)  
외조부 학생學生 김훈金勳 본적 상산尙山  
을유년 호구식[乙酉式]

천구 명단賤口秩

비 이덕二德(75세, 신미생)아버지 양인 이세태李世太 어머니 호비 주거은이走去隱伊  
 노 이동二東(79세, 정묘생) 부모는 위와 같음. 도망하여 흥덕교촌에 거주  
 노 지모之母(63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57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자질이自叱伊(79세, 경오생) 아버지 양인 김이金伊 어머니 호비 금개金介  
 비 귀랑貴娘(35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애섬愛蟻(24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비 목은매目隱每(24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김득금金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윤봉允奉(47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변음산卞音山 어머니 호비 병금丙今  
 비 복덕卜德(79세) 정유년에 도망  
 노 구적九迪(47세, 무술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自隱只  
 노 귀남貴南(47세, 기해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선이鮮顯(19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三戶 幼學辛恒慥 年三十七己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三十九丙午 籍晉州  
 父幼學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 弟恒彥 年二十九丁巳  
 外祖學生 金勳 本商山  
 乙酉式  
 賤口秩  
 婢二德 年七十五辛未 父良人李世太 母戶婢走去隱伊 奴二東

年七十九丁卯 父母上同 逃去興德校村奴之母 年六十三壬午 父良人金用金奴[母]  
戶婢生今 婢云愛 五十七戊子 父母上同 婢自叱伊 七十九庚午  
父良人金伊 母戶婢金介 婢貴娘 年三十五庚戌 父私奴晦  
金 母戶婢自叱伊 婢愛蟾 年二十四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婢目隱每 年二十四辛酉 父良人金得金 母戶  
婢云愛 奴允奉 年四十七戊戌 父良人下音山 母戶婢  
丙今 婢卜德 年七十九 丁酉逃 奴九迪 年四十七戊戌 父  
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奴貴南 年四十七[六]己  
亥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鮮願 年十九乙丑 父  
私奴達三 母戶婢大連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 [印]

### 5-4-34) 1831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해설】 1831년(순조31)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2통 제1에 사는 유학 신항업이 43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신묘식이라는 글귀와 신항업의 나이로 볼 때 신묘년은 1831년 호구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46세)가 있으며, 동생 항언(35세)이 함께 살고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노비 4명, 계집종 6명인데, 대부분의 노비의 아버지는 양인이었다. 그 가운데 도망한 비 복덕은 오래전에 도망하였음에도 계속 호적에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2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業(43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 학생學生 수묵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外祖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 강씨姜氏 (46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학생學生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솔거하는 동생 향언恒彦(35세, 정사생)  
 외조 학생學生 김훈金勳 본적 상산商山  
 신묘식(1831년)

친구 명단(賤口秩)

노 지모之母(69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64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귀향貴娘(42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귀남貴南(53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섬愛蟾(31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노 선원鮮顯(27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목자은目隱每(31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김득금金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노 구적九迪(53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김동옥金東玉 어머니 호비 자은지自隱只  
 비 복덕卜德(86세, 정유생) 도망  
 비 알중諷中(16세, 을해생)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勝用 어머니 호비 중상中尙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 [흑인]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二統第一戶 幼學辛恒僕 年四十三己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四十六丙午 籍晉州

父學生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弟 恒彦 年三十五丁巳

外祖學生 金勳 本商山

辛卯式  
 賤口秩  
 奴之母 [年六十九壬午] 父良人金用金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六  
 十四戊子 父母上同 婢貴娘 年四十二庚戌 父私奴晦  
 金 母戶婢自叱伊 奴貴南 年五十三己亥 父母上同 婢  
 愛蟾 年三十一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  
 連 奴鮮願 年二十七乙丑 父母上同 婢目隱每 年  
 三十一辛酉 父良人金得金 母戶婢云愛 奴九  
 迪 年五十三己亥 父良人金東玉 母戶婢白隱只 婢  
 卜德 年八十六丁酉 逃 婢謁中 年十六乙亥  
 父良人趙勝用 母戶婢中尙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35) 1834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 호구단자

【해설】 1834년(순조34)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유학 신항업이 46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갑오식이라는 글귀와 신항업의 나이로 볼 때 갑오년은 1834년 호구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49세)가 있으며, 동생 항언(38세)와 아들 수규(20세)와 함께 살고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노비 5명, 계집종 8명으로 총 13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명이 늘었다. 그 가운데 도망한 비 복덕은 오래전에 도망하였음에도 계속 호적에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항업辛恒爨(46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 학생學生 수묵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外祖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 강씨姜氏 (49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학생學生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솔거하는 동생 항언恒彦(38세, 정사생)  
 외조 학생學生 김훈金勳 본적 상산商山  
 아들 수규秀奎(20세, 을해생)  
 갑오식(1834년)

친구 명단[賤口秩]  
 노 지매之母[每] (72세, 임오생)[年七十七壬午]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  
 금生今  
 비 운애云愛 (67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귀랑貴娘 (45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귀남貴南 (56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섬愛蟻 (34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노 선원鮮元 (30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화섬花蟻 (30세, 을축생)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勝用 어머니 호비 중상中尙  
 비 알중謁中 (19세, 병자생[을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일운례日云禮 (9세, 병술생) 아버지 양인 김광철金光哲 어머니 호비 애섬愛蟻  
 비 점단占丹 (13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임갑철林甲哲 어머니 사비 순금順今  
 노 동이東伊 (18세, 병자생) 아버지 사노 이손이李孫伊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노 구적九迪 (56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김동옥金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비 복덕卜德 (89세, 정유생) 도망  
 행군수  
 [영광군호구]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戶 幼學 辛恒慄 年四十六己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四十九丙午 籍晉州

父學生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弟 恒彥 年三十八丁巳

外祖學生金 勳本商山

率子 秀奎 年二十乙亥

甲午式

賤口秩

奴之母 父良人金用金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六

十七戊子 父母上同 婢貴娘 年四十五庚戌 父私

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貴南 年五十六己亥 父母上同 婢愛蟾

年三十四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奴鮮元 年

三十乙丑 父母上同 婢花蟾 年三十乙丑 父良人

趙勝用 母戶婢中尙 婢遏中 年十九丙子[乙亥] 父母上同 婢

日云禮 年九歲丙戌 父良人金光哲 母戶婢愛蟾

婢占丹 年十三壬午 父良人林甲哲 母私婢順

今 奴東伊 年十八丙子 父私奴李孫伊 母戶婢貴

娘 奴九迪 年五十六己亥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

只 婢卜德 年八十九丁酉 逃

行郡守

[靈光郡戶口][黑印]

### 5-4-36) 1837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해설】 1837년(헌종3) 영광군 도내면 제9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유학 신항업이 49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정유식이라는 글귀와 신항업의 처 강씨의 나이로 볼 때 정유년은 1837년 호구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에 신항업의 나이 59세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이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52세)만 있고, 3년전 호구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동생 항언과 아들 수규의 이름은 없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노비 7명, 계집종 8명으로 총 15명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어린 노비의 추가로 인해 2명이 늘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9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항업辛恒爨(49세, 을유생) 본적 영원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 학생學生 수묵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보주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妻 강씨姜氏 (52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학생學生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정유식(1837년 호구식)

#### 친구 명단[賤口秩]

노 지모之母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 (70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비 귀항貴娘 (48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귀남貴男 (59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해원亥元 (33세, 을축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이大連伊  
 비 화섬華蟻 (33세, 을축생)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勝用 어머니 호비 중상이仲尙伊  
 노 연동連同 (25세, 임신생)  
 비 알중이暹中伊 (22세, 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일운례日云禮 (21세, 병술생) 아버지 양인 김광철金光哲 어머니 호비 애섬愛蟻  
 비 점단占但 (16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임광철林甲哲 어머니 호비 순금順今  
 노 동이東伊 (21세, 정축생) 아버지 사노 손이孫伊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노 구적九適 (59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비 복덕卜德 (89세, 정축생) 도망逃  
 노 용득用得 (12세, 을유생)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아버지 사노 손이孫伊  
 비 씨례氏禮 (7세, 기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행군수[서업]

靈光郡 道內面 第九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 戶 幼學 辛恒慥 年五[四]十九己亥[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五十二丙午 籍晉州  
父學生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丁酉式  
賤口秩  
奴之母 父良人金用金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七十戊子  
父母上同 婢貴娘 年四十八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自  
叱伊 奴貴男 年五十九己亥 父母上同 奴亥元 年三十三乙  
丑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伊 婢華蟾 年三十三乙丑  
父良人趙勝用 母戶婢仲尙伊 奴連同 年二十五  
壬申 婢遏中伊 年二十二丙子 父母上同 婢日云  
禮 年十一丙戌 父良人金光哲 母戶婢愛蟾 婢  
占但 年十六壬午 父良人林甲哲 母戶婢順今 奴東  
伊 年二十一丁丑 父私奴孫伊 母戶婢貴娘 奴九適 年  
五十九己亥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婢卜德 年  
八十九丁丑 逃 奴用得 年十二乙酉 母戶婢貴娘 父私  
奴孫伊 婢氏禮 七歲己丑 父母上同  
行郡守[署押]

### 5-4-37) 1840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慥 호구단자

【해설】 1840년(헌종6) 영광군 도내면 제2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유학 신항업이 52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경자식이라는 글귀와 신항업의 처 강씨의 나이로 볼

때 정유년은 1840년 호구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원문에 신항업의 나이 62세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이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55세)와 3년전 호구에서 없어졌던 동생 항언(44세)이 다시 가솔로 포함되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노비 5명, 계집종 8명으로 총 13명으로 3년 전에 비하여 2명이 줄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2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지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항업辛恒業(52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 학생學生 수묵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 강씨姜氏(55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학생學生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솔거하는 동생弟 항언恒彦 (44세, 정사생)  
 외조부 학생學生 김훈金勳 본적 상산商山  
 경자년(1840년) 호구식庚子式

천구 명단賤口秩  
 노 지모之母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用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云愛 (74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母上同  
 비 귀랑貴娘 (51세, 경술생)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귀남貴男 (62세, 기해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애섬愛蟻 (41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노 선원鮮元 (36세, 을축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화섬花蟻 (36세, 을축생)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勝用 어머니 호비 중상中尙  
 비 알중盪中 (25세, 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목은례日[目]云禮 (15세, 병술생) 아버지 양인 김광철金光哲 어머니 호비 애섬愛蟻  
 비 점담占丹 (19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임갑철林甲哲 어머니 사비 순금順今  
 노 동이東伊 (25세, 병자생) 아버지 사노 손이孫伊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노 구적九迪 (62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비 복덕卜德 (95세, 정유생) 도망  
    행군수 [서업]  
영광군호구 [흑인]

靈光郡 道內面 第二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 戶 幼學 辛恒僕 年六[五]十二己亥[酉]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五十五丙午 籍晉州

父學生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弟 恒彦 年四十四丁巳

外祖學生 金勳 本商山

庚子式

賤口秩

奴之母 父良人金用金 母戶婢生今 婢云愛 年七十四戊子 父母上同

婢貴娘 年五十一庚戌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貴男 年六十二己亥 父母

上同 婢愛蟾 年四十一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奴鮮元 年

三十六乙丑 父母上同 婢花蟾 年三十六乙丑 父良人趙勝用 母戶婢

中尙 婢遏中 年二十五丙子 父母上同 婢日[目]云禮 年十五丙戌 父良人

金光哲 母戶婢愛蟾 婢占丹 年十九壬午 父良人林甲哲 母私

婢順今 奴東伊 年二十五丙子 父私奴孫伊 母戶婢貴娘 奴九

迪 年六十二己亥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婢卜德 年九十

五丁酉 逃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38) 1843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해설】 1843년(헌종9) 영광군 도내면 제13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유학 신항업이 55세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경자식이라는 글귀와 신항업의 처 강씨의 나이로 볼 때 정유년은 1843년 호구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원문에 신항업의 나이 65세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이다. 가족으로는 처 진주 강씨(57세)와 3년전 호구에서 있었던 동생 항언이 없어지고, 기술로 아들 광규(29세, 을해생)와 며느리 민씨(34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들 광규는 9년 전에 호적에 올려있던 아들 수규(秀圭, 을해생)와 동인인물로 보인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남자노비 6명, 계집종 1명으로 총 17명으로 3년 전에 비하여 4명이 늘었다. 노비들의 어린 소생들이 호적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호구단자는 노비의 자녀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비 애섬과 비 중상이 낳은 각 자녀들을 나이순으로 밝혀 기록하고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13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항업 (55세, 기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치묵致默

생부 학생學生 수묵修默

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始甲

외조부 학생學生 정이동鄭履東, 본적 동래東萊

처妻 강씨姜氏 (57세, 병오생) 본적 진주晉州

아버지 학생學生 치환致煥

조부 학생學生 주학柱學

증조부 학생學生 명래命來

외조부 학생學生 김택려金宅麗 본적 영광靈光

데리고 사는 아들奉子 광규 (29세, 을해생)

며느리 민씨婦閔氏 (34세, 경오생) 본적 여흥驪興

계묘년 호구식癸卯式

친구 명단賤口秩

노 지매之每 아버지 양인 김용금金龍金 어머니 호비 생금生今

비 운애雲愛 (76세, 무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대련大連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노 귀남貴南 (65세, 기해생)

비 중상仲尙 (67세, 정유생)

비 귀랑貴娘 (54세, 경술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해원亥元 (39세, 을축생)

비 애섬愛蟾 (43세, 신유생)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애섬愛蟾의 첫째 소생一所生 노 일운금一云金[日雲金](22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김광철  
金光哲

비 중상仲尙의 첫째 소생一所生 비 화섬花蟾(39세, 을축생), 둘째 소생二所生 노 영국令國  
(37세, 정묘생), 셋째 소생三所生 비 알중邊中(28세, 병자생). 이들의 아버지는 조승용趙勝用.

매득買得 비婢 점단占旦(22세, 임오생) 아버지 양인 임갑철林甲哲 어머니 호비 순금順今

(비) 운애雲愛의 첫째 소생所生 비 목은매目隱每(43세, 신유생)의 아버지 양인 득금得金

비 목은매目隱每 첫째 소생一所生 비 오몽례五夢禮(16세, 정해생)

노 구적九適(65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비 복덕卜德(97세, 정축생) 도망逃

행군수 [서업]

영광군호구 [혹인]

靈光郡 道內面第十三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戶 幼學辛恒慥 年六[五]十五己亥[西] 本寧越

父學生 致默

生父學生 修默

祖學生 兌成

曾祖學生 始甲

外祖學生 鄭履東 本東萊

妻姜氏 歲五十七丙午 籍晉州

父學生 致煥

祖學生 柱學

曾祖學生 命來

外祖學生 金宅麗 本靈光

率子 宏珪 年二十九乙亥

婦閔氏 年三十四庚午 籍驪興

癸卯式

賤口秩

奴之每 父良人金龍金 母戶婢生今 婢雲愛 年七十六戊子 父母上同 婢大

連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奴貴南 年六十五己亥 婢仲尙 年六十  
 七丁酉 婢貴娘 年五十四庚戌 父母上同 奴亥元 年三十九乙丑 婢愛蟾 年四十三  
 辛酉 父私奴達三 母戶婢大連 愛蟾一所生 奴一云金[日雲金] 年二十二壬午 父良人金光  
 哲 婢仲尙一所生 婢花蟾 年三十九乙丑 二所生 奴令國 年三十七丁卯 三所生  
 婢遏中 年二十八丙子 父趙勝用 買得婢占但 年二十二壬午 父良人  
 林甲哲 母戶婢順今 雲愛一所生 婢目隱每 年四十三辛酉 父良人得金  
 婢目隱每 一所生 婢五夢禮 年十六丁亥 奴九適 年六十五己亥 父良人  
 李東玉 母戶婢白隱只 婢卜德 年九十七丁丑 逃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39) 1858년 유학幼學 화민 신광규 호구단자

【해설】 1858년(철종10,무오) 영광군 도내면 제17 입석리 제1통 제1호에 사는 유학 신광규 44세에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제출한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무오식이라는 글귀와 신광규의 나이로 볼 때 무오년 1858년 호구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43년(계묘년) 호주 신항업이 신고한 호구식에서 아들 신광규의 나이는 29세였는데, 이 무오식에서 호주 신광규의 나이가 4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5년 후의 호구단자이므로, 이때가 1858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호구단자는 중간 5줄의 내용이 훼손되어 있으나, 1861년(신유년) 호주 신광규 호구단자의 내용을 통해 추정하면 이 부분은 호주 김광규의 어머니 강씨, 처 민씨의 4대조에 대한 정보이다. 따라서 1861년 호적을 통해 훼손 부분을 복원하였다. 함께 사는 형제로는 1861년 호구와 같이 첫째 동생 수규와 나머지 세 동생 일규, 효규, 시규 부부가 있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노 5구, 비 10구로 총 15구로 15년 전에 비하여 2구가 줄었다. 그 가운데 도망한 비 복덕은 오래 전에 죽었을 터인데 계속 호적에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17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호戶 유학幼學 신광규辛宏珪 (44세, 을해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항업恒業  
 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증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외조부 학생學生 강치환姜致煥 본적 진주晉州  
 어머니 강씨 (73세, 병오생) 口…口(奉母姜氏 齡七十)三丙午  
 처 민씨(49세, 경오생), 본적 여흥驪興



□…□(아버지 통덕랑 효기)

□…□(조부 학생 사금)

□…□(증조부 성균진사 증 가선대)부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중수宗秀

외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인리鄭仁里 본적 진주晉州

솔거하는 동생 수규輸珪(42세, 정축생)

둘째 동생 일규日珪(38세, 신사생)

부인 기씨奇氏(39세, 경진생) 본적 행주幸州

셋째 동생 효규孝珪(36세, 계미생)

부인 이씨李氏(32세, 정해생) 본적 함풍咸豐

넷째 동생[次弟] 시규時珪(31세, 무자생)

부인 이씨李氏(32세, 정해생) 본적 전주全州

무오년 호구식

천구 명단[賤口稵]

노 귀남貴南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중상仲尙(76세, 계묘생)

비 귀랑貴娘(68세, 신새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영국令國(52세, 정묘생) 어머니 호비 중상仲尙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承用

비 화섬化蟻(54세, 을축생)

비 알중盍中(43세, 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동이東伊(42세, 정축생) 아버지 사노 손이孫伊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노 용득用得(37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목은매目隱每(58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김득금金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비 오목녀五目女(32세, 정해생) 아버지 양인 천명득千明得 어머니 호비 목은매目隱每

비 점단占但(38세, 신사생) 아버지 양인 임갑철甲哲 어머니 호비 순금順今

비 삼심參心(17세, 임인생) 아버지 양인 박춘일朴春一

비 순금順今(14세, 을사생)

비 천덕賤德(7세, 임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구적九適(79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백은지白隱只

비 복덕卜德 정축년에 도망

행군수 [서업]

靈光郡 道內面 第十七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一 戶 幼學辛宏珪 年四十四乙亥 本寧越  
 父 學生 恒懌  
 祖 學生 致默  
 曾祖 學生 兌成  
 外祖 學生 姜致煥 本晉州  
 □…□(奉母 姜氏 齡七十) 三丙午  
 □…□(妻閔氏 歲四十) 九庚午 籍驪興  
 □…□(父 通德郎 敦基)  
 □…□(祖 學生 思肯)  
 □…□(曾祖 成均進士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宗秀  
 外祖 成均生員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 鄭仁里 本晉州  
 率弟 翰珪 年四十二丁丑  
 次弟 日珪 年三十八辛巳  
 嫂 奇氏 歲三十九庚辰 籍幸州  
 次弟 孝珪 年三十六癸未  
 嫂 李氏 歲三十二丁亥 籍咸豐  
 次弟 時珪 年三十一戊子  
 嫂 李氏 歲三十二丁亥 籍全州  
 戊午式  
 賤口秩 奴貴南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婢仲尙 年  
 七十六癸卯 婢貴娘 年六十八辛亥 父母上同 奴  
 令國 年五十二丁卯 母戶婢仲尙 父良人趙承  
 用 婢化蟾 年五十四乙丑 婢遏中 年四十三  
 丙子 父母上同 奴東伊 年四十二丁丑 父私奴  
 孫伊 母戶婢貴娘 奴用得 年三十七壬午  
 父母上同 婢目隱每 年五十八辛酉 父良人金  
 得金 母戶婢云愛 婢五目女 年三十二丁  
 亥 父良人千明得 母戶婢目隱每 婢占但 年  
 三十八辛巳 父良人林甲哲 母戶婢順今 婢  
 參心 年十七壬寅 父良人朴春一 婢順今 年

十四乙巳 婢賤德 年七歲壬子 父母上  
同 奴九適 年七十九己亥 父良人李東玉 母  
戶婢白隱只 婢卜德 丁丑逃  
行郡守 [署押]  
靈光郡戶口 [黑印]

### 5-4-40) 1861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광규 호구단자

【해설】 1861년(철종12)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4에 사는 유학 신광규 47세에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신유식이라는 글귀와 신광규의 나이로 볼 때 1861년 호구단자임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호주 김광규의 어머니 강씨(76세), 처 민씨(52세)와 네 동생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거느리고 있는 천인은 노 7구, 비 14구 총 21구로 3년 전에 비하여 6구가 늘었다. 그 가운데 도망한 비 복덕은 오래전에 죽었을 터인데 계속 호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버지 양인 박춘일이 낳은 노비들이 도망하였다. 1861년 신유식 호적은 영월신씨 소유 노비가 등재된 마지막 호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4 호戶 유학幼學 신광규 (47세, 을해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항업  
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증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외조부 학생學生 강치환姜致煥 본적 진주晉州  
어머니奉母 강씨姜氏 (76세, 병오생)  
처 민씨閔氏(52세, 경오생), 본적 여흥驪興  
아버지 통덕랑通德郎 효기敷基  
조부 학생學生 사금思肯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  
同知義禁府事 종수宗秀  
외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인리鄭仁里 본  
적 진주晉州  
솔거하는 동생 한규翰珪 (45세, 정축생)  
둘째 동생 일규日珪(41세, 신사생)

부인 기씨奇氏(42세, 경진생) 본적 행주幸州  
 셋째 동생 효규孝珪(39세, 계미생)  
 부인 이씨李氏(35세, 정해생) 본적 함풍咸豐  
 넷째 동생次弟 시규時珪(34세, 무자생)  
 부인 이씨李氏(35세, 정해생) 본적 전주全州  
 영광군호구[관인]  
 신유년(1861년) 호구식[辛酉式]

친구 명단[賤口秩]  
 노 귀남貴男 아버지 사노 회금晦金 어머니 호비 자질이自叱伊  
 비 대련大連(정미생)  
 비 중상仲尙(73세, 기유생)  
 비 귀랑貴娘(기미생) 부모는 위와 같음(아마도 대련, 중상, 귀랑이 형제인 듯)  
 노 해구亥九[元](57세, 을축생) 어머니 호비 대련大連 아버지 사노 달삼達三  
 비 애섬愛蟻(61세, 신유생) 부모는 위와 같음父(해구와 애섬이 오누이)  
 노 일운금一云金(40세, 임오생) 어머니 호비 애섬愛蟻 아버지 양인 김광철金光哲  
 비 일운녀一云女(30세, 임진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영국畝國(55세, 정묘생) 어머니 호비 중상仲尙 아버지 양인 조승용趙承用  
 비 화섬化蟻(57세, 을축생)  
 비 알중盍中(46세, 병자생) 부모는 위와 같음  
 노 동이東伊(45세, 정축생) 어머니 호비 귀랑貴娘 아버지 사노 손이孫伊  
 노 용득用得(40세, 임오생) 부모는 위와 같음  
 비 목은매目隱每(61세, 신유생) 아버지 양인 김득금金得金 어머니 호비 운애云愛  
 비 오목예五目禮(35세, 정해생) 경술년에 도망庚戌逃 아버지 양인 천명득千明得 어머니  
 호비 목은매目隱每  
 비 점단占但(41세, 신사생) 아버지 양인 임갑철林甲哲 어머니 호비 순금順今  
 비 복덕卜德 정축년에 도망  
 비 삼심忝心(20세, 임인생)  
 비 순금順今(17세, 을사생)  
 비 순례順禮(10세, 임자생) 아버지 양인 박춘일朴春日 기미년에 도망己未逃  
 노 구적九適(83세, 기해생) 아버지 양인 이동옥李東玉 어머니 호비 자은지自隱只  
 행군수 [서업]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四 戶 幼學辛宏珪 年四十七乙亥 本寧越  
父 學生 恒懌  
祖 學生 致默  
曾祖 學生 兌成  
外祖 學生 姜致煥 本晉州  
奉母 姜氏 齡七十六丙午  
妻 閔氏 歲五十二庚午 籍驪興  
父 通德郎 敦基  
祖 學生 思肯  
曾祖 成均進士 贈嘉善大夫 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宗秀  
外祖 成均生員 通訓大夫 司憲府監察 鄭仁里 本晉州  
率 弟 翰珪 年四十五丁丑  
次弟 日珪 年四十一辛巳  
嫂 奇氏 歲四十二庚辰 籍幸州  
次弟 孝珪 年三十九癸未  
嫂 李氏 歲三十五丁亥 籍咸豐  
次弟 時珪 年三十四戊子  
嫂 李氏 歲三十五丁亥 籍全州  
辛酉式  
賤口秩  
奴貴男 父私奴晦金 母戶婢自叱伊 婢大連 年丁未婢  
仲尙 年七十三己酉 婢貴娘 年己未 父母上同 奴亥九[元]  
年五十七乙丑 母戶婢大連 父私奴達三 婢愛蟾 年六十  
一辛酉 父母上同 奴一云金 年四十壬午 母戶婢愛蟾 父良  
人金光哲 婢一云女 年三十壬辰 父母上同 奴令國 年五十  
[五十]五丁卯 母戶婢仲尙 父良人趙承用 婢化蟾 年  
五十七乙丑 婢遏中 年四十六丙子 父母上同 奴東伊  
年四十五丁丑 母戶婢貴娘 父私奴孫伊 奴用得  
年四十壬午 父母上同 婢目每 年六十一辛□(西) 父良  
人金得金 母戶婢云愛 婢五目禮 年三十五  
丁亥 庚戌逃 父良人千明得 母戶婢目隱每 婢  
占但 年四十一辛巳 父良人林甲哲 母戶婢順

今婢卜德 丁丑逃 婢忝心 年二十壬寅 婢  
 順今年十七乙巳 婢順禮 年十歲壬子 父  
 良人朴春日 己未逃 奴九適 年八十  
 三己亥 父良人李東玉 母戶婢白隱  
 只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41) 187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광규 호구단자

【해설】 1879년(고종16)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유학 신광규 78세<sup>28</sup>에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기묘식이라는 글귀와 신광규의 나이로 볼 때 1879년 호구단자임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민씨(52세)와 아들 휘상과 두 동생 일규와 효규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 이전 기록임에도 거느리고 있는 천구 명단은 보이지 않는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 호戶 유학幼學 신광규(47세, 을해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항업  
 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증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외조부 학생學生 강치환姜致煥 본적 진주晉州  
 처 민씨閔氏, 본적 여흥驪興  
 아버지 통덕랑通德郎 효기黻基  
 조부 학생學生 사금思肯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  
 同知義禁府事 중수宗秀  
 외조부 성균생원成均生員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인리鄭仁里 본  
 적 진주晉州  
 솔거하는 아들 휘상徽常(34세, 병오생)  
 사촌 동생 일규日珪(69세, 신미생)

28 1879년 유학 신광규의 나이는 65세가 맞다. 18년 전인 1861년 호구단자에 신광규의 나이는 47세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학생 항언恒彦  
외조부 학생學生 이철연李澈淵 본관 함평咸平  
사촌 동생從弟 효규孝珪(67세, 계유생)  
기묘식  
행군수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戶 幼學 辛宏珪 年七十八壬戌 本寧越  
父 學生 恒僕  
祖 學生 致默  
曾祖 學生 兌成  
外祖 學生 姜致煥 本晉州  
妻 閔氏 歲七十九辛酉 籍驪興  
父 通德郎 敦基  
祖 學生 思肯  
曾祖 成均進士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宗秀  
外祖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 鄭仁里 本晉州  
率  
子 徽常 年三十四丙午  
從弟 日珪 年六十九辛未  
父 學生 恒彦  
外祖 學生 李澈淵 本咸平  
次 從弟 孝珪 年六十七癸酉  
己卯式  
行郡守

5-4-42) 1879년유학幼學 환鰥 신진규辛縉珪 호구단자

【해설】 1879년(고종16)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유학 홀아비[鰥] 신진규(46세)가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1879년 신광규 호구와 같은 해 호구단자이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홀아버이鰥 신진규辛縉珪(46세, 갑오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환일恒一  
 조부 학생學生 기익基翊  
 증조부 학생學生 중한重漢  
 외조부 학생學生 윤유검尹有儉 본적 파평坡平  
 기묘년 호구식[己卯式]  
 행군수  
 영광군호구 [흑인]

靈光郡道 內面立 石里戶籍 單子  
 第一統 第一戶 幼學 鰥 辛縉珪 年四十六甲午 本寧越  
 父學生 恒一  
 祖學生 基翊  
 曾祖學生 重漢  
 外祖學生 尹有儉 本坡平  
 己卯式  
 行郡守  
 靈光郡戶口[黑印]

#### 5-4-43) 1882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광규 호구단자

【해설】 1882년(고종19)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호 유학 신광규 81세<sup>29)</sup>에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호구단자 내에 임오식이라는 글귀와 신광규의 나이로 볼 때 1882년 호구단자임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민씨(82세)와 아들 휘상(53세)과 두 동생 일규(72세)와 효규(70세)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일규와 효규에 대해서 1879년에는 동생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從弟종제로 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 호戶 유학幼學 신광규辛宏珪(81세, 임술생), 본적 영월本寧越

29) 1882년 유학 신광규의 나이는 68세여야 맞다. 18년 전인 1861년에는 47살이었다.



아버지 학생學生 항업恒業  
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증조부 학생學生 태성兌成  
외조부 학생學生 강치환姜致煥 본적 진주晉州  
처 민씨閔氏 (82세, 신유생) 본적 여흥驪興  
아버지 통덕랑通德郎 효기敦基  
조부 학생學生 사공思肯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  
同知義禁府事 종수宗秀  
외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인리鄭仁里 본적 진주晉州  
솔거하는 아들 휘상徽常(53세, 경인[병오]생)  
사촌 동생 일규日珪(72세, 신미생)  
아버지 학생 항언恒彦  
외조부 학생學生 이철연李澈淵 본관 함평咸平  
차次 사촌 동생從弟 효규孝珪(70세, 계유생)  
임오년 호구식壬午式  
기묘년 호구식과 대조함[己卯戶口相準]  
          행군수 [서업]  
영광군호구 [혹인]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二戶 幼學 辛宏珪 年八十一 壬戌 本寧越  
父 學生 恒業  
祖 學生 致默  
曾祖 學生 兌成  
外祖 學生 姜致煥 本晉州  
妻 閔氏 歲八十二 辛酉 籍驪興  
父 通德郎 敦基  
祖 學生 思肯  
曾祖 成均進士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宗秀  
外祖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 鄭仁里 本晉州  
率子 徽常 年五十三 庚寅  
從弟 日珪 七十二 辛未

父 學生 恒彦  
 外祖 學生 李澈淵 本咸平  
 次從弟 孝珪 年七十癸酉  
 壬午式  
 己卯戶口相準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44) 188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광규 호구단자

【해설】 1885년(고종22),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호 유학 신광규가 영광군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민씨(85세)와 아들 휘상(56세)과 두 사촌 동생 일규(75세)와 효규(73세)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일규와 효규에 대해서 1879년에는 동생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종제從弟로 되어 있다. 이들의 아버지와 외조부의 이름이 신광규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전 호구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호구단자는 신광규 이름으로 올린 마지막 호적으로, 3년 뒤에는 아들 신휘상이 호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사이에 신광규와 그 부인이 사망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 통제 호戶 유학幼學 신광규 (84세, 임술생) 본적 영월本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항업  
 조부 학생 치묵致默  
 증조부 학생 태성兌成  
 외조부 학생 강치환姜致煥 본적 진주晉州  
 처 민씨閔氏 (85세, 신유생), 본적 여흥驪興  
 아버지 통덕랑通德郎 효기敦基  
 조부 학생 사궁思肯  
 증조부 성균진사成均進士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중수宗秀  
 외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인리鄭仁里 본적 진주晉州  
 슬거하는 아들 휘상徽常(56세, 경인[병오]생)  
 사촌 동생 일규日珪(75세, 신미[신사]생)  
 아버지 학생 항언恒彦

외조부 학생 이철연李澈淵 본관 함평咸平  
차 사촌 동생從弟 효규孝珪(73세, 계유생)  
을유년 호구식[壬午式]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흑인]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 統第 戶 幼學 辛宏珪 年八十四 壬戌 本寧越  
父 學生 恒僕  
祖 學生 致默  
曾祖 學生 兌成  
外祖 學生 姜致煥 本晉州  
妻 閔氏 歲八十五 辛酉 籍驪興  
父 通德郎 敦基  
祖 學生 思肯  
曾祖 成均進士 贈嘉善大夫禮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宗秀  
外祖 通訓大夫 行司憲府 監察 鄭仁里 本晉州  
率子 徽常 年五十六 庚寅  
從弟 日珪 年七十五 辛未  
父 學生 恒彦  
外祖 學生 李澈淵 本咸豐  
次從弟 孝珪 年七十三 癸酉  
乙酉式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 5-4-45) 1888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휘상辛徽常 호구단자

【해설】 1888년(고종25) 무자년,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1에 사는 호 유학 신휘상이 52세 때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경주 김씨(43세)만 등재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제14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1 호戶 유학幼學 신휘상辛徽常 (52세, 병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학생學生 굉규  
 조부 학생學生 항업恒業  
 증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외조부 통덕랑通德郎 민효기閔敷基 본적 여흥驪興  
 처妻 김씨金氏 (43세, 병오생) 본적 경주慶州  
 아버지 학생學生 이학以學  
 조부 통정대부通政大夫 여창麗昌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時甲  
 외조부 학생學生 김원철金元喆 본적 광산光山  
 무자년 호구식戊子式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흑인]

靈光郡 道內面 第十四立石里 戶籍單子  
 第一 統 第一 戶 幼學 辛徽常 年五十三丙申 本寧越  
 父 學生 宏珪  
 祖 學生 恒業  
 曾祖 學生 致默  
 外祖 通德郎 閔敷基 本驪興  
 妻 金氏 歲四十三丙午 籍慶州  
 父 學生 以學  
 祖 通政大夫 麗昌  
 曾祖 學生 時甲  
 外祖 學生 金元喆 本光山  
 戊子式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官印]

#### 5-4-46) 1894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휘상辛徽常 호구단자

【해설】 1894년(고종31) 갑오년,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호 유학 신휘상이 58세 때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경주 김씨(49세)만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6년 전 1888년 호구단자에서 학생으로 칭했던 신굉규가 동몽교관 조봉대부로 증직이 되어 있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 통 제 에 사는 호戶 유학幼學 신휘상(58세, 병신생), 본적 영월寧越  
아버지 증贈 동몽교관童蒙敎官 조봉대부朝奉大夫 평규  
조부 학생學生 항업  
증조부 학생學生 치묵致默  
외조부 통덕랑通德郎 민효기閔敷基 본관 여흥驪興  
처 김씨(48세, 병오생), 본적 경주慶州  
아버지 학생學生 이학以學  
조부 통정대부通政大夫 여창麗昌  
증조부 학생學生 시갑時甲  
외조부 학생學生 김원철金元喆 본적 광산光山  
갑오식甲午式  
                  행군수 [서업]  
영광군호구 [흑인]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 統 第 戶 幼學 辛徽常 年五十八丙申 本寧越  
父 贈童蒙敎官朝奉大夫 宏珪  
祖 學生恒僕  
曾祖 學生致默  
外祖 通德郎閔敷基 本驪興  
妻金氏 歲四十八丙午 籍慶州  
父 學生以學  
祖 通政大夫麗昌  
曾祖 學生時甲  
外祖 學生金元喆 本光山  
甲午式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5-4-47) 188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항진辛恒振 호구단자

【해설】 1885년(고종22),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 제1통 제2에 사는 호 유학 신항진이 37세 때 영광군에

호구사항을 적어 올린 호적단자. 가족으로는 호주의 처 전주 이씨(36세)만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신  
항진 및 그의 선대에 대한 이름이 처음 보인다. 추측컨대 신항업과 항렬이 같은 영월신씨가로 보인다.

영광군靈光郡 도내면道內面 입석리立石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제1통 제2 호戶 유학 신항진辛恒振(37세, 무신생), 본적 영월  
아버지 학생 기석基錫  
조부 학생택명宅明  
증조부 학생정權  
외조부 학생한안지韓安祉, 본적 청주淸州  
처 이씨(36세, 경술생), 본적 전주全州  
아버지 학생學生가백可白  
조부 학생문발文發  
증조부 학생윤흥潤興  
외조부 학생學生정환두鄭煥斗, 본적 진주晉州  
을유년 호구식乙酉式  
          행군수[서업]  
영광군호구[흑인]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 戶籍單子  
第一統 第二 戶幼學 辛恒振 年三十七 戊申 本寧越  
父 學生 基錫  
祖 學生 宅明  
曾祖 學生 權  
外祖 學生 韓安祉 本淸州  
妻 李氏 年三十六 庚戌 籍全州  
父 學生 可白  
祖 學生 文發  
曾祖 學生 潤興  
外祖 學生 鄭煥斗 本晉州  
乙酉式  
          行郡守[署押]  
靈光郡戶口[黑印]



제 1 장 재산의 소유와 상속

1-1. 재산 상속과 증여

1-1-1) 1608년 신장길辛長吉 처妻 이씨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 23

1-1-2) 1646년 신장길 처 이씨 분급문기 ..... 26

1-1-3) 1650년 신응망辛應望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和會文記 ..... 27

1-1-4) 1669년 신응망 처 정씨丁氏 분급문기 ..... 33

1-1-5) 1709년 장손 신시태辛始泰 처妻 고씨高氏와 차자次子 ..... 36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 화회문기和會文記

1-1-6) 1709년 장손 신시태 처 고씨와 차자 신정수 처 유씨 화회문기..... 45

1-1-7) 1618년 신장길辛長吉 처妻 이씨李氏 별급문기..... 52

1-1-8) 1624년 신장길 처 이씨 별급문기..... 53

1-1-9) 1624년 신장길 처 이씨 별급문기..... 54

1-1-10) 1624년 이성異姓 삼촌숙三寸叔 이락李珞 별급문기..... 55

1-1-11) 1670년 계조모繼祖母 정씨丁氏 별급문기別給文記 ..... 56

1-1-12) 1689년 신경릉辛慶隆 처妻 박씨朴氏 별급문기 ..... 57

1-1-13) 1689년 신경릉 처 박씨 별급문기 ..... 58

1-1-14) 1693년 신경릉 처 박씨 별급문기 ..... 60

1-1-15) 1693년 신경릉 처 박씨 별급문기 ..... 61

1-1-16) 1693년 신경릉 처 박씨 별급문기 ..... 62

1-1-17) 1694년 신경릉 처 박씨 별급문기 ..... 64

1-1-18) 1704년 신정수辛鼎受 처 유씨柳氏 별급문기 ..... 65

1-1-19) 1713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66

1-1-20) 1720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 66

1-1-21) 1720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 71

1-1-22) 1731년 신정수 처 유씨 별급문기 ..... 72

1-1-23) 갑술년 부父 별급문기 ..... 73

1-1-24) 1709년 신정수 처 유씨 노비 상환문기償還文記 ..... 74

1-1-25) 1609년 이극벌李克攬 증여문기 ..... 75

1-1-26) 1609년 정제원丁濟園 증여문기 ..... 75



## 1-2. 시장柴場과 가사家畬의 매매

1-2-1) 1584년 임인수林寅洙 시장柴場 매매명문	77
1-2-2) 1789년 신희묵辛希默 시장 매매명문	78
1-2-3) 1792년 김명철金明喆 시장 매매명문	79
1-2-4) 1792년 오상준吳相準 시장 매매명문과 1793년 진광進光 수기手記	79
1-2-5) 1793년 서평석徐彭石 시장 매매명문	81
1-2-6) 1794년 양시원梁時元 시장 매매명문	82
1-2-7) 1804년 이동신李東信 시장 매매명문	82
1-2-8) 1814년 성규진成奎鎭 시장 매매명문	83
1-2-9) 1815년 이진우李辰友 시장 매매명문	84
1-2-10) 1819년 이진관李振寬 시장 매매명문	85
1-2-11) 1828년 한명희韓明禧 시장 매매명문	86
1-2-12) 1834년 강현희姜賢會 시장 매매명문	87
1-2-13) 1834년 신기복辛基復 시장 매매명문	88
1-2-14) 1835년 신응룡辛應龍 시장 매매명문	89
1-2-15) 1835년 이귀룡李貴龍 시장 매매명문	89
1-2-16) 1838년 신영섭辛永燮 시장 매매명문	90
1-2-17) 1839년 신영섭辛永燮 시장 매매명문	91
1-2-18) 1840년 박석운朴錫潤 시장 매매명문	92
1-2-19) 1840년 신항룡辛恒龍 시장 매매명문	93
1-2-20) 1842년 신항룡辛恒龍 시장 매매명문	93
1-2-21) 1850년 신광섭辛光燮 시장 매매명문	94
1-2-22) 1850년 이생원李生員 노奴 어남於南 전당명문典當明文	95
1-2-23) 1851년 신항신辛恒愼 시장 매매명문	96
1-2-24) 1851년 신응록辛應祿 시장 매매명문	97
1-2-25) 1852년 신항유辛恒維 시장 매매명문	98
1-2-26) 1852년 신광섭辛光燮 시장 매매명문	99
1-2-27) 1854년 신생원택辛生員宅 시장 매매명문	100
1-2-28) 1854년 신항두辛恒斗 시장 매매명문	100
1-2-29) 1856년 김송강金松江 시장 매매명문	101
1-2-30) 1858년 이자여李子汝 시장 매매명문	102
1-2-31) 1859년 박운회朴允會 시장 매매명문	103
1-2-32) 1863년 신진규辛縉珪 시장 매매명문	104

1-2-33) 1863년 신항석辛恒石 시장 매매명문 .....	104
1-2-34) 1870년 유재영庚載盈 시장 매매명문 .....	105
1-2-35) 1870년 신진규辛縉珪 시장 매매명문 .....	106
1-2-36) 1877년 신문규辛文珪 시장 매매명문 .....	107
1-2-37) 1877년 오치인吳致仁 시장 매매명문 .....	108
1-2-38) 1888년 신항흔辛恒忻 시장 매매명문 .....	108
1-2-39) 계유년 모북 시장 증여문기 및 매매명문 .....	109
1-2-40) 1816년 이진백李鎭白 가대家垵 매매명문 .....	110
1-2-41) 1818년 김복남金福男 가사家舍 매매명문 .....	111
1-2-42) 1825년 이치룡李治龍 가사 매매명문 .....	112
1-2-43) 1835년 신영섭辛永燮 가사 매매명문 .....	113
1-2-44) 1865년 이식원李植遠 가사 매매명문 .....	113
1-2-45) 1867년 이봉채李鳳彩 가사 매매명문 .....	114
1-2-46) 1870년 정재형丁載亨 가사 전당명문 .....	115
1-2-47) 1871년 유방갑庾邦甲 가사 및 시장 매매명문 .....	116
1-2-48) 1873년 정석희丁錫禧 가사 매매명문 .....	117
1-2-49) 1886년 이계하李啓夏 가사 매매명문 .....	117
1-2-50) 1899년 한영의韓永儀 가사 매매명문 .....	118
<b>1-3. 시장柴場과 송추松楸의 관리 운영</b>	
1-3-1) 19세기 중엽 송추松楸 분쟁 소지所志 초본 .....	121
1-3-2) 19세기 중엽 송추松楸 분쟁 소지所志 초본 .....	123
1-3-3) 마촌면馬村面 분묘墳墓 송추松楸 분쟁 소지 초본 .....	125
1-3-4) 을유년 화민化民 신복렬辛復烈 등 소지 .....	127

## 제 2 장 노비와 토지의 거래

### 2-1. 노비 거래

(노비 매매)

2-1-1) 1608년 영광군에서 신장길 처이씨 측에 발급한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 ...	139
2-1-2) 1678년 영광군에서 박철생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문기 사급 입안 ...	143
2-1-3) 1756년(영조 32) 신태운이 신태성에게 노비를 매매한 문기 .....	148

(노비 허급)

2-1-4) 1609년 정제원이 신응망에게 노비를 허급한 문기 .....	149
--	-----

(자매自賣)

2-1-5) 1852년 김순일이 딸 복녀를 자매自賣한 문기 ..... 150  
 2-1-6) 1877년 박 조이가 동생 자근녀를 신 생원택에 자매自賣한 문기 ... 151

**2-2. 토지 거래**

(논밭 매매)

2-2-1) 1646년 김성기가 신씨가 노 일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53  
 2-2-2) 1649년 신철성이 신 장령 택에 발급한 논을 매매한 문기 ..... 154  
 2-2-3) 1673년 사노 과회가 신 생원택 노 갑생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54  
 2-2-4) 1682년 상남이 명세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 155  
 2-2-5) 1686년 박축금이 노 만이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56  
 2-2-6) 1684년 정두서가 박자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157  
 2-2-7) 1696년 사노 과회가 신 생원택 노 소남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 158  
 2-2-8) 1708년 신만상이 신운룡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 158  
 2-2-9) 1755년 김종재가 신헌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59  
 2-2-10) 1756년 신태서가 이이탄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0  
 2-2-11) 1756년 정원창이 정최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1  
 2-2-12) 1759년 이행민이 외5촌숙 신상관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기 ..... 162  
 2-2-13) 1767년 양성원이 정최갑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3  
 2-2-14) 1770년 장한규가 신 생원 노 원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4  
 2-2-15) 1770년 박상우가 신헌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5  
 2-2-16) 1770년(영조 46) 신 조이가 신헌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6  
 2-2-17) 1772년 박거구리가 김태관에게 밭을 매매한 문기 ..... 166  
 2-2-18) 1772년 심무가 이기진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7  
 2-2-19) 1780년대 이동신이 김순택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8  
 2-2-20) 1794년 동신이 3촌질 백열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69  
 2-2-21) 1811년 김준득이 신헌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70  
 2-2-22) 1816년 신희묵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71  
 2-2-23) 1816년 이진복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72  
 2-2-24) 1810년대 이영식이 신태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73  
 2-2-25) 1819년 이흥건이 한광심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74  
 2-2-26) 1819년 최연갑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74  
 2-2-27) 1821년 박용하가 논을 매매한 문기 ..... 175  
 2-2-28) 1826년 김재황이 이응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76  
 2-2-29) 1827년 신중현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77

2-2-30) 1827년 이지용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78

2-2-31) 1828년 정재욱이 박명량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79

2-2-32) 1830년 표인득이 이응종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80

2-2-33) 1830년 신계가 논을 매매한 문기 ..... 181

2-2-34) 1835년 신영진이 족장族丈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82

2-2-35) 1836년 김씨가 이옥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83

2-2-36) 1837년 강기회가 표종형에게 밭과 시장을 매매한 문기 ..... 183

2-2-37) 1838년 신항준이 종인宗人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84

2-2-38) 1841년 이응종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 ..... 185

2-2-39) 1847년 한명화가 논을 매매한 문기 ..... 186

2-2-40) 1847년 정훤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87

2-2-41) 1847년 최치현이 모시밭을 매매한 문기 ..... 188

2-2-42) 1853년 신항유가 논을 매매한 문기 ..... 189

2-2-43) 1896년 이이춘이 신 생원에게 묵은 땅을 매매한 문기 ..... 189

2-2-44) 1898년 박상록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90

2-2-45) 1898년 정영동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91

2-2-46) 1900년 김경석이 논을 매매한 문기 ..... 192

2-2-47) 1913년 신태현이 신극수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3

(문중 및 계穰의 논밭 거래)

2-2-48) 1612년 신유일, 신수일이 신응순에게 진전陳田을 허급한 문기 ..... 194

2-2-49) 1754년 신명응이 문장 신경룡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5

2-2-50) 1770년대 경침이 족제族弟 단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6

2-2-51) 1787년 신우곤이 과계장 신치묵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6

2-2-52) 1789년 정천달이 문계장 신태성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7

2-2-53) 1789년 이동옥이 문계장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8

2-2-54) 1790년 이득채가 계장 신의묵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9

2-2-55) 1791년 계공원穰公員 김영옥이 신생원댁 노 시원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199

2-2-56) 1814년 신항엽이 논을 매매한 문기 ..... 200

2-2-57) 1833년 문장 신계가 논을 매매한 문기 ..... 201

2-2-58) 1850년 신광섭이 입석촌 계에 논을 매매한 문기 ..... 202

2-2-59) 1853년 문중에서 신평규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203

2-2-60) 1861년 신용규가 사문중私門中에 논을 매매한 문기 ..... 204

2-2-61) 1916년 신씨 문중에서 논을 매매한 토지매매 계약서 ..... 205

(논밭의 거래와 노비의 역할)

2-2-62) 17세기 말 노 막생이 노 신금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 206

2-2-63) 1778년이 생원 노 당감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 208

2-2-64) 1798년 신 생원 노 회금이 논밭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배자 ..... 209

2-2-65) 1860년 김 생원택 노 유철이 신 생원택 노에게 논을 매매한 문기 ... 211

(논밭 납상納上, 상환相換 등)

2-2-66) 1685년 노 생이가 상전에게 토지를 납상納上한 문기 ..... 212

2-2-67) 1709년 고 신시대 처 고씨가 3촌 숙모인 유씨에게 논을 값은 문기 213

2-2-68) 1775년 박거골이가 이생원택 노에게 논밭을 바친 문기 ..... 213

2-2-69) 1810년 신중덕이 족질과 밭을 상환한 문기 ..... 214

2-2-70) 1850년 신광섭이 문중에 논을 바친 문기 ..... 215

(소작과 전당, 환퇴)

2-2-71) 1837년 오정린이가 논을 매매한 문기 ..... 216

2-2-72) 1843년 오진규가 논을 매매한 문기와 관련 수표手標 ..... 217

2-2-73) 1845년 유문복이 논을 매매한 문기 ..... 219

2-2-74) 1846년 정석진이 논을 매매한 문기 ..... 220

(산지와 묘 석물 매매)

2-2-75) 1850년 이봉채가 신광규에게 산지를 매매한 문기 ..... 221

2-2-76) 1873년 정창섭이 비석을 매매한 문기 ..... 222

2-2-77) 1874년 이돈중이 신광규에게 산지를 매매한 문기 ..... 223

2-2-78) 1879년 오치인이 산지를 매매한 문기 ..... 224

2-2-79) 1886년 김경조가 선산 석물을 매매한 문기 ..... 225

2-2-80) 1887년 김경조가 신 생원택에 선산 석물을 매매한 문기 ..... 226

(논밭 거래에 수반되어 작성된 문서들)

2-2-81) 1766년 신갑수 등의 완의完議 ..... 226

2-2-82) 병자년 원창 처 임씨가 정 생원 적장택에 써 준 불망기 ..... 228

**2-3. 채무**

2-3-1) 1842년 신향업이 작성한 수표手標 ..... 229

2-3-2) 1844년 은기경이 작성한 수기手記 ..... 229

2-3-3) 1854년 신봉규가 작성한 수표 ..... 230

2-3-4) 갑자년 신경로가 작성한 수표 ..... 231

2-3-5) 1887년 신취년이 작성한 수표 ..... 231

제 3 장 노비, 전답, 환곡, 잡역 관련 소송

3-1) 1610년 2월 초동草童 신응망辛應望 소지所志 ..... 241

3-2) 1610년 2월 관동卍童 신응망辛應望 소지所志..... 243

3-3) 1624년 생원生員 화민化民 신응망辛應望 발괄[白活] ..... 246

3-4) 1629년 신 생원택辛生員宅 세전노世傳奴 자갈者曷 입지立旨 ..... 247

3-5) 1631년 찰방察訪 신응망辛應望 정사呈辭 ..... 249

3-6) 1642년 신 생원택 노辛生員宅奴 두질일豆叱日 소지所志 ..... 250

3-7) 1643년 신 생원택 노辛生員宅奴 독일豆□日 소지所志 ..... 252

3-8) 1646년 조신한曹信漢 소지所志 ..... 254

3-9) 1648년 신 장령택辛掌令宅 노奴 독일豆□日, 순일順日 소지所志 ..... 256

3-10) 1658년 장령掌令 신응망辛應望 처妻 정씨丁氏 소지所志 ..... 259

3-11) 1659년 신 호노辛戶奴 독일豆□日, 소남小男 소지所志 ..... 261

3-12) 1662년 신륵노辛楡奴 인봉仁奉 입지立旨 ..... 263

3-13) 166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경릉辛慶隆 단자單子 ..... 264

3-14) 166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경릉辛慶隆 소지所志 ..... 266

3-15) 1671~1700년 화민化民 신정수辛鼎受 단자單子 ..... 267

3-16) 1674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흥효辛興孝 입지立旨 ..... 268

3-17) 169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정화辛鼎和 소지所志 ..... 269

3-18)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 271

3-19) 1714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 273

3-20) 1736년 김원익金元益 등 소지所志 ..... 275

3-21)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所志 ..... 276

3-22) 1747년 신시갑辛始甲 처妻 김씨金氏 소지所志 ..... 278

3-23) 1747년 신태기辛兌基 입지立旨 ..... 279

3-24) 183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立旨 ..... 280

3-25) 1832년 화민化民 신대원辛大元 등 소지所志 ..... 281

3-26) 1838년 공원公員 수본手本 ..... 283

3-27) 1838년 화민化民 신항엽辛恒爍 소지所志 ..... 284

3-28) 1838년 화민化民 신항엽辛恒爍 소지所志 ..... 286

3-29) 1838년 화민化民 신항준辛恒俊 수기手記 ..... 287

3-30) 1839년 화민化民 신흥규辛宏珪 소지所志 ..... 288

3-31) 1843년 소주所主 입지立旨 ..... 290

3-32)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엽辛恒爍 소지所志 ..... 291

## 제 4 장 산송 관련 문서

4-1) 1707년 화민化民 신만상辛萬祥 등 소지所志	303
4-2) 1709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소지所志	304
4-3) 1733년 화민化民 신경침辛景沈 등 소지所志	311
4-4) 173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구생辛久生 발활[白活]	312
4-5) 1778년 소지所志 초草	314
4-6) 1778년 화민化民 신태기辛兌基 등 소지所志	319
4-7)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327
4-8) 1784년 화민化民 신원묵辛元默 등 소지所志	328
4-9) 1784년 화민化民 신지묵辛之默 등 소지所志	330
4-10) 1786년 화민化民 신태성辛兌成 단자單子	332
4-11) 1801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334
4-12) 1801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336
4-13) 1802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소지所志	338
4-14) 1803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등 소지所志	340
4-15) 1803년 화민化民 신행묵辛行默 등 소지所志	341
4-16) 1803년 황몽택黃夢澤 수기手記	343
4-17) 1816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등 소지所志	343
4-18) 1817년 임용득林用得 수기手記	345
4-19) 1817년 화민化民 신의묵辛誼默 등 소지所志	345
4-20) 1818년 화민化民 신수묵辛修默 소지所志	347
4-21) 1824년 화민化民 신상리辛象離 소지所志	349
4-22) 1840년 겸민兼民 신희규辛宏珪 소지所志	350
4-23) 1840년 유학幼學 신희룡辛恒龍 의송議送	351
4-24) 1841년 수옥민囚獄民 신희엽辛恒爨 소지所志	353
4-25) 1841년 화민化民 신희경辛檄 소지所志	356
4-26) 1841년 화민化民 신희현辛圭鉉 등 소지所志	357
4-27) 1841년 화민化民 신희기辛基年 등 소지所志	359
4-28) 1841년 화민化民 신희명도辛命道 소지所志	362
4-29) 1841년 화민化民 신희영규辛齡奎 소지所志	364
4-30) 1841년 화민化民 신희태명辛兌明 소지所志	366
4-31) 1841년 화민化民 신희태익辛兌翊 소지所志	367
4-32) 1841년 화민化民 신희항언辛恒彦 소지所志	370

4-33) 1841년 화민化民 신항언辛恒彦 소지所志 ..... 372

4-34) 1841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373

4-35) 1841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374

4-36) 1841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376

4-37) 1842년 기주記主 신두업辛斗業 수기手記 ..... 378

4-38) 1842년 수옥죄인囚獄罪人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 379

4-39) 1842년 유학幼學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 381

4-40) 1842년 유학幼學 신태명辛兌明 의송議送 ..... 384

4-41) 1842년 유학幼學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385

4-42) 1842년 유학幼學 신항업辛恒爨 의송議送 ..... 388

4-43) 1842년 죄민罪民 신기원辛基元 소지所志 ..... 391

4-44) 1842년 화민化民 신경辛檄 소지所志 ..... 392

4-45) 1842년 화민化民 신희규辛宏珪 소지所志 ..... 394

4-46) 1842년 화민化民 신연규辛年奎 소지所志 ..... 395

4-47)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 396

4-48)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 399

4-49) 1842년 화민化民 신영규辛齡奎 소지所志 ..... 401

4-50) 1842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02

4-51) 1842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04

4-52) 1842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05

4-53) 1842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07

4-54) 1843년 소지所志 ..... 409

4-55) 1843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입지立旨 ..... 410

4-56) 1843년 화민化民 신경辛檄 소지所志 ..... 411

4-57) 1843년 화민化民 신희한辛光漢 소지所志 ..... 412

4-58) 1843년 화민化民 신희규辛宏珪 소지所志 ..... 414

4-59) 1843년 화민化民 신희규辛宏珪 소지所志 ..... 416

4-60) 1843년 화민化民 신기복辛基復 소지所志 ..... 417

4-61)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18

4-62)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19

4-63)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20

4-64)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21

4-65)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24



4-66) 1843년 화민化民 신항업辛恒爨 소지所志 ..... 425

## 제 5 장 가계와 동족결합

### 5-1. 고신류

5-1-1) 1617년 유학 신용망辛應望이 생원시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白牌 ... 439

5-1-2) 1624년 생원 신용망이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 ..... 439

5-1-3) 1626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0

5-1-4) 1626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0

5-1-5) 1626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1

5-1-6) 1627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2

5-1-7) 1627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3

5-1-8) 162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4

5-1-9) 162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5

5-1-10) 162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5

5-1-11) 162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6

5-1-12) 1631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7

5-1-13) 1633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8

5-1-14) 1634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8

5-1-15) 1634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9

5-1-16) 1635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49

5-1-17) 163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0

5-1-18) 1638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1

5-1-19) 1642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1

5-1-20) 1643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2

5-1-21) 1645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2

5-1-22) 1646년 신용망辛應望 고신告身 ..... 453

5-1-23) 1646년 신용망辛應望 유지有旨 ..... 453

5-1-24) 1863년 신회상辛徽常 고신告身 ..... 454

### 5-2. 통문通文류

5-2-1) 1898년 문장門長이 족보 편찬을 알리는 통문通文 ..... 455

5-2-2) 1898년 문중門中 통문通文 ..... 457

5-2-3) 1899년 문중門中 통문通文 ..... 458

5-2-4) 족보 편찬을 위한 통문通文 ..... 461

5-2-5) 1854년 세보 편찬을 위해 발송한 통문	461
5-2-6) 1875년 족보 편찬을 위해 보낸 회문回文	463
5-2-7) 효행기孝行記	465
<b>5-3. 예조 입안禮曹立案 등</b>	
5-3-1) 1717년 예조 입안	467
5-3-2) 1892년 예조 입안	468
5-3-3) 1891년 영광군수靈光郡守 하첩下帖	470
5-3-4) 1899년 수표手票	470
<b>5-4. 호구 자료</b>	
5-4-1) 1669년 신경룡辛慶隆 준호구准戶口	473
5-4-2) 1681년 신경룡 처 박씨 준호구准戶口	479
5-4-3) 1681년 신경룡辛慶隆 처妻 호구단자戶口單子	482
5-4-4) 1684년 신경룡辛慶隆 처妻 박씨朴氏 준호구准戶口	484
5-4-5) 1687년(숙종13, 정묘) 유학幼學 신구생辛久生 준호구准戶口	487
5-4-6) 1690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호구단자戶口單子	492
5-4-7) 1693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준호구准戶口	493
5-4-8) 1702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497
5-4-9) 1705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502
5-4-10) 1696년 유학幼學 신정화辛鼎和 준호구准戶口	507
5-4-11) 1717년 신정수辛鼎受 처妻 유씨柳氏 준호구准戶口	510
5-4-12) 1726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515
5-4-14) 1732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530
5-4-15) 1735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538
5-4-16) 1741년 유학幼學 신시갑辛始甲 호구단자	546
5-4-17) 1744년 신시갑 처 김씨 호구단자	553
5-4-18) 1747년 과부 김씨 호구단자	559
5-4-19) 1759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65
5-4-20) 1765년 유학幼學) 신양렬辛亮烈 호구단자	570
5-4-21) 1771년 유학幼學 신성렬辛性烈 호구단자	573
5-4-22) 1774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76
5-4-23) 1777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性 호구단자	579
5-4-24) 1780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82
5-4-25) 1783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85

5-4-26) 1786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87
5-4-27) 1789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90
5-4-28) 1795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호구단자	592
5-4-29) 1810년 유학幼學 신태성辛兌成 대자代子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594
5-4-30) 1813년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596
5-4-31) 1816년 유학幼學 신수묵辛修默 호구단자	598
5-4-32) 1822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00
5-4-33) 1825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02
5-4-34) 1831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04
5-4-35) 1834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 호구단자	606
5-4-36) 1837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08
5-4-37) 1840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10
5-4-38) 1843년 유학幼學 화민 신항업辛恒業 호구단자	613
5-4-39) 1858년 유학幼學 화민 신굉규 호구단자	615
5-4-40) 1861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굉규 호구단자	618
5-4-41) 1879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굉규 호구단자	621
5-4-42) 1879년 유학幼學 환鰥 신진규辛縉珪 호구단자	622
5-4-43) 1882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굉규 호구단자	623
5-4-44) 188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굉규 호구단자	625
5-4-45) 1888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휘상辛徽常 호구단자	626
5-4-46) 1894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휘상辛徽常 호구단자	627
5-4-47) 1885년 유학幼學 화민化民 신항진辛恒振 호구단자	628

• **번역자 약력**

김현영 : 한국고문서학회 명예회장

박 경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박한남 :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호남한국학자료총서 5

##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인쇄 2020년 1월 10일

발행 2020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역자 김현영 박 경 박한남

편집제작 시보사

5811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북길 21-2

전화 061-375-9515 팩스 061-372-1516

비매품

ISBN 979-11-968006-9-7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